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028-01

# '08년도 FTA기금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 연차 점검 · 평가보고서

2008. 6.



# 목 차

## 제 I 부 2008년 연차평가 개요

1. 평가 배경과 목적 .....	3
2. 2008년 연차 평가 특징 .....	4
3. 평가 진행 .....	5
4.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	11
5. 평가결과 활용 .....	13

## 제 II 부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1. 총평 .....	17
2. 평가결과 분석 .....	20
3. 평가결과 시사점 .....	30
4. 결론 .....	38
○ 상대평가등급 부여 결과 (등급별 가나다순) .....	39
○ 사업별 평가결과 (시·도순) .....	40

## 제 III 부 사업별 평가 보고서

1. 울산 울주과수육성사업 .....	47
2. 경기 잎맞춤과수육성사업 .....	62
3. 강원 원주과수육성사업 .....	78
4. 충북 영동과수육성사업 .....	95
5. 충북 옥천포도육성사업 .....	111
6. 충북 제천과수육성사업 .....	126
7. 충북 충북원협과수육성사업 .....	142
8. 충북 햇사레과수육성사업 .....	157
9. 충남 남부과수육성사업 .....	173
10. 충남 연기과수육성사업 .....	191
11. 충남 예산당진과수육성사업 .....	206
12. 충남 천안거봉포도육성사업 .....	221
13. 충남 천안배육성사업 .....	237
14. 전북 고창과수육성사업 .....	255

15.	전북	김제·완주 포도육성사업	271
16.	전북	남원과수육성사업	286
17.	전북	동부산악권 과수육성사업	300
18.	전북	서남부평야 과수육성사업	317
19.	전남	동부과수육성사업	333
20.	전남	배육성사업	350
21.	전남	유자육성사업	366
22.	전남	한국참다래육성사업	381
23.	경북	경산과수육성사업	397
24.	경북	경주과수육성사업	413
25.	경북	군위·구미사과육성사업	428
26.	경북	김천과수육성사업	443
27.	경북	문경·상주과수육성사업	459
28.	경북	봉화과수육성사업	474
29.	경북	상주과수육성사업	489
30.	경북	성주과수육성사업	506
31.	경북	안동과수육성사업	522
32.	경북	영덕과수육성사업	538
33.	경북	영주과수육성사업	554
34.	경북	영천과수육성사업	569
35.	경북	예천과수육성사업	585
36.	경북	의성과수육성사업	600
37.	경북	청도과수육성사업	615
38.	경북	청송영양과수육성사업	630
39.	경북	칠곡과수육성사업	646
40.	경북	포항과수육성사업	660
41.	경남	김해단감육성사업	679
42.	경남	밀양얼음골사과육성사업	696
43.	경남	사천과수육성사업	711
44.	경남	서북부과수육성사업	728
45.	경남	진주과수육성사업	744
46.	경남	창녕단감육성사업	762
47.	경남	창원단감육성사업	777
48.	경남	하동과수육성사업	793
49.	경남	합안과수육성사업	809
50.	제주	감협감귤육성사업	827
51.	제주	농협감귤육성사업	842
52.	전국	과실공동브랜드육성사업	858

# 제 I 부

---

## 2008년 연차평가 개요



# 1. 평가 배경과 목적

## 가.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 과수산업은 개방 확대와 함께 치열한 글로벌 시장 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고품질화와 브랜드화를 대안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은 과수 산업의 고품질화와 규모화 된 판매사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의 자율계획에 따라 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3단계 심사·평가를 통하여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 '04년부터 '08년까지 총58개 사업계획에 대하여 4,542억원(기금기준)이 생산 시설현대화, 거점APC 건립, 생산기반정비 등에 집중 지원되었음.

### < FTA기금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연 도	예산	지원 실적							
		계	생산시설	기반정비	거점APC	브랜드	고당도	농기계	가공시설
'04년 실적 (17개 사업)	967	426	300	39	64	-	-	8	15
'05년 실적 (31개 사업)	955	927	574	102	225	-	-	26	-
'06년 실적 (44개 사업)	901	896	557	103	211	-	-	20	5
'07년 실적 (52개 사업)	800	775	367	83	303	22	-	-	-
'08년 계획 (58개 사업)	919	919	625	97	149	25	23	-	-
계	4,542	3,943	2,423	424	952	47	23	54	20

## 나. 연차 평가 목적

- 연차평가는 각 지역별, 단위사업별 사업추진 실태 점검 및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사업 방향의 재정립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표를 둠.
- 계획-집행-성과 등 단계별로 사업 전체 과정에 대해 점검하고, 주된 사업 관리 사항을 평가 지표로 선정함으로써 사업 체계화에 기여함.
- 평가 결과는 지속적으로 환류하여 개선 대책 수립에 활용하며,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실시함으로써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함.

## 2. 2008년 연차 평가 특징

### 가. 현장 실사 도입

- 기존 평가는 실적보고서에 근거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08년 연차 평가는 현장 실사를 도입함으로써 사전에 실적보고서 검증을 강화하고, 사업담당자의 인식 제고와 내부 정비에 기여하였음.
- 종합평가 방식은 평가단이 짧은 시간에 개별 사업 이해, 사실 확인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함.

### 나. 평가운영 전문기관 활용

- 농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자체 평가를 진행 하였으나, 현장 실사 도입에 따른 업무 부담과 효율성 문제 발생함.
- 평가운영 전문기관을 활용함으로써 평가 업무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도모하였고, 현장 피드백을 활성화하였음.

※ 평가운영 전문기관 선정 : (주)지역농업네트워크

### 다. 지표 보강 및 세분화

#### □ 평가 항목 추가

-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미개시자 조사, 중도 포기자 처리, 예비대상자 선정 등 세부 추진 사항을 평가요소로 반영하였음.
- 공동선별·공동계산,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 품질관리 매뉴얼 활용 등 판매체계 구축의 핵심과제를 평가지표로 추가함.

#### □ 상황 변화에 따른 지표 수정

- 시행주체는 법인화와 품목농협 등 주관조직으로 변경이 완료되었으므로 실질적 역할을 평가하도록 변경하였음.
- 시행주체 사업실적 기준을 100억원, +20% 수준으로 조정하고, 금액과 물량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지표 개선함.
- 배점이 높은 예산집행률 등 항목을 하향하고, 평가 항목에 따라 우수 실적 및 문제 요소에 대한 가·감점 사항을 추가하여 합리화를 도모하였음.

### 3. 평가 진행

#### 가. 평가 대상

- 총52개 사업 : 10개 시도, 85개 시·군
- '07년도에 진행된 51개 사업과 과실브랜드육성사업(전국)을 포함하여 총52개 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하였음.
- 2년차 이상 기존 사업이 44개이고, '07년 신규사업이 8개임.

#### < 2008년 연차평가 대상 분포 >

구분	계	전국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4 선정	17	-	-	1	-	2	1	1	1	6	4	1
'05 선정	14	-	1	-	-	1	1	1	3	3	4	-
'06 선정	13	-	-	-	-	2	2	2	-	6	1	-
'07 선정	8	1	-	-	1	-	1	1	-	3	-	1
계	52	1	1	1	1	5	5	5	4	18	9	2

\*전국은 과실전국공동브랜드육성사업(한국과수농협연합회)임.

- 사업추진 전(全)단계 : 계획, 집행, 성과
- '07년 추진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였으며, 시차가 필요한 사항은 '06년말과 '08년초에 진행한 내용을 포함하였음.
- 농가지원 및 마케팅시스템 구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을 주요 평가 대상으로 하였고, 과수기반 정비, 거점APC, 과실브랜드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하였음.

#### 나. 평가체계 및 평가단 구성

- 평가 체계
- 평가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팀
- 평가운영 : (주)지역농업네트워크

기관	역할 분담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기준 시달
지역농업네트워크	- 평가단 운영 및 평가결과 종합
시·도	- 광역 단위 평가서 작성업무 주관
시·군	- 시·군 단위 평가서 작성업무 주관 - 광역 단위 평가서 작성 실무 (주관 시·군)
사업운영주체	- 사업실적 등 관련자료 제출 및 평가서 작성 실무



□ 평가단 구성

- 평가단은 산·학·연·관·연 전문가로 구성하였음 : 대학,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시행주체, KREI 등
- 평가위원은 기존 선정·평가 위원 이외에 신규 위원을 위촉하여 총35명으로 운영하였음. (참고 : '07년 연차평가 평가위원 24명)
- 평가단은 5개팀으로 구분하여 팀별 7명으로 운영하였으며, 각 팀에는 평가 운영기관의 간사 1인을 배치하여 평가 진행과 보고서 작성을 수행하였음.

□ 평가단 역할

- 현장실사 : 평가위원 1인과 간사 1인이 현장 방문하여 사업 내용 파악과 실적보고서 검증, 계량 지표 점수 산출
- 종합평가 : 팀별 배정 사업(10~11개소)에 대한 비계량 지표 평가

□ 평가운영기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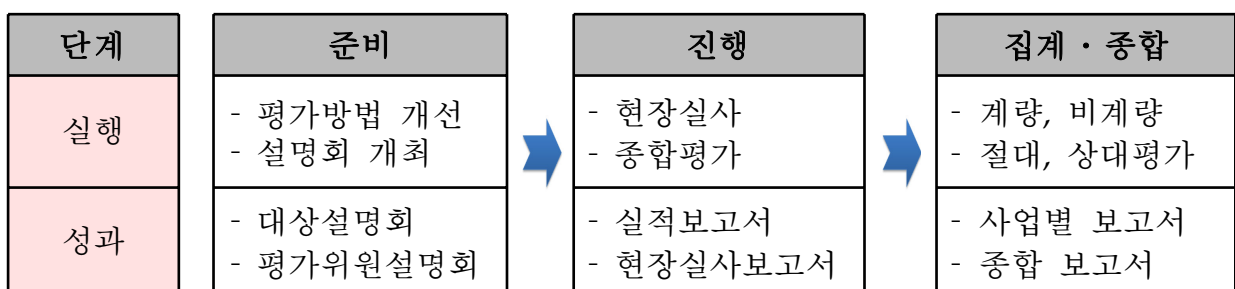
- 설명회 및 보고회 개최 : 평가설명회, 평가위원설명회, 최종보고회
- 평가단 운영 : 현장실사 및 종합평가 진행
- 평가결과 취합 및 보고서 작성 : 실적보고서 취합·인쇄, 평가결과 집계, 중간보고서 작성, 현장 의견 조회, 평가결과 최종보고서 작성

다. 추진 절차 및 일정

□ 준비 → 진행 → 집계·종합 3단계로 진행

- 준비 단계 : 평가개선 의견 수렴, 설명회
- 진행 : 실적보고서 접수, 현장 실사, 종합평가
- 집계·종합 : 평가보고서 초안, 대상자 의견 조회, 최종보고서

< '08년 연차평가 추진 단계 >



## 〈팀별 평가 위원〉

구분	소 속		직 급	성 명	비고
1팀	상명대	식물산업공학부	교수	양용준	대학
	농촌경제연구원	농산업연구센터	연구원	국승용	연구
	aT(유통공사)	도매시장부	부장	최대일	유통
	농협중앙회	원예부	차장	오환묵	농협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과장	최광해	시도
	(주)평화ENG	-	대표이사	김기중	산업체
	안성과수농협	유통사업소	과장	도상온	시행주체
2팀	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이희찬	대학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과장	신용억	연구
	aT(유통공사)	유통교육원	팀장	전제영	유통
	과수농협연합회	-	상무	백영현	시행주체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담당	김왕식	시도
	충청북도	음성군	계장	장관옥	시군
	참다래사업단	-	차장	조삼형	시행주체
3팀	충남대	원예학과	교수	천종필	대학
	한국식품연구원	유통연구단	단장	김병삼	연구
	aT(유통공사)	물류지원부	부장	배상원	유통
	농협중앙회	원예부	팀장	강호성	농협
	충청남도	천안시	계장	박재웅	시군
	경상북도	의성군	계장	송강수	시군
	천안배원협	지도과	상무	심훈기	시행주체
4팀	중앙대	식물응용과학과	교수	김종기	대학
	농촌진흥청	수확후유통연구실	연구사	위태석	연구
	aT(유통공사)	FTA기금팀	팀장	최근원	유통
	과수농협연합회	-	부장	류양형	농협
	충청남도	농산과	담당	이종익	시도
	전라북도	남원시	계장	방묘원	시군
	충주농협	지도과	팀장	김수연	시행주체
5팀	충북대	경영학과	교수	박종섭	대학
	현대ENG	플랜트사업부	부장	한용건	연구
	aT(유통공사)	FTA기금팀	차장	이상길	유통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팀장	임규수	농협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담당	양혜연	시도
	경기도	안성시	계장	박두희	시군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팀장	강영재	시행주체

## 〈팀별 평가 대상〉

	시도	시군	사업주체	사업명	주품목	선정년도
1팀	충북	옥천	옥천농협	옥천포도육성	포도	'06
	경북	의성	의성조합 공동법인	의성과수육성	사과	'04
	충북	<u>음성</u> ,이천,여주	햇사레조합 공동법인	햇사레과수육성	복숭아	'05
	전국	전국	한국과수 연합회	전국과실 브랜드육성	사과,감귤	'07
	경북	안동	경북농금 안동지소	안동과수육성	사과	'04
	충남	<u>논산</u> ,공주,부여,보령, 서천,청양	참후레쉬 영농법인	충남남부과수육성	배,포도	'07
	전북	고창	고창조합 공동법인	고창과수육성	배,복분자	'05
	경남	<u>거창</u> ,함양,합천	NH유통	경남서북부 과수육성	사과	'04
	경북	영덕	경북농금 영덕지소	영덕과수육성	사과,복숭아	'07
	전북	<u>장수</u> ,무주,진안,남원	S-APC	전북동부산악권 과수육성	사과	'04
	경북	<u>청송</u> ,영양	경북농금 청송지소	청송영양과수육성	사과	'06
	2팀	경기	<u>안성</u> ,평택,화성,안산	잎맞춤조합 공동법인	잎맞춤과수육성	배,포도
경북		영주	경북농금 영주지소	영주과수육성	사과	'04
경남		사천	사천농협	사천과수육성	단감,배	'05
충남		천안	입장농협	천안거봉포도육성	거봉포도	'05
충남		천안	천안배원협	천안배육성	배	'04
경북		예천	경북농금 예천지소	예천과수육성	사과	'06
경북		봉화	봉화조합공 동법인	봉화과수육성	사과	'04
경남		하동	하동농협	하동과수육성	배, 단감	'05
전북		<u>정읍</u> ,임실,전주,익산, 김제,완주	정읍농산물 유통법인	전북서남부평야 과수육성	사과,배	'07
전남		<u>순천</u> ,구례,광양,보성, 강진,장흥,여수,곡성	순천조합 공동법인	전남동부과수육성	단감	'05
경남		진주	진주조합공 동법인	진주과수육성	단감,배	'04
3팀		경북	성주	성주조합 공동법인	성주과수육성	사과
	경북	경산	자인농협	경산과수육성	포도,복숭아	'07
	경남	밀양	얼음골 마케팅영농	밀양얼음골 사과육성	사과	'04

	시도	시군	사업주체	사업명	주품목	선정년도
3팀	충북	충주, 청주, 증평, 괴산, 청원, 진천, 단양, 보은	충북원협	충북원협과수육성	사과	'04
	경남	창녕	창녕농협	창녕단감육성	단감	'06
	전북	남원	남원원협	남원과수육성	복숭아	'06
	충남	연기	연기조합공동법인	연기과수육성	복숭아, 배	'06
	전남	고흥, 완도	유자영농법인	전남유자육성	유자	'05
	경북	청도	청도농협	청도과수육성	복숭아	'06
	경북	칠곡	경북농금성주지소	칠곡과수육성	포도, 사과	'07
4팀	강원	원주	원주원협	원주과수육성	배, 복숭아	'07
	제주	제주, 서귀포	제주감협	제주감협감귤육성	감귤	'04
	제주	제주, 서귀포	제주조합공동법인	제주농협감귤육성	감귤	'07
	경북	군위, 구미	경북농금군위지소	군위·구미사과육성	사과	'06
	충북	제천	제천농협	제천과수육성	사과	'06
	경북	문경, 상주	경북농금문경지소	문경·상주과수육성	사과	'06
	경북	상주	상주조합공동법인	상주과수육성	포도, 배	'05
	전북	김제, 완주	백구농협	김제·완주포도육성	포도	'06
	전남	해남, 고흥, 무안, 보성, 순천, 영암, 장흥, 진도, 고성, 창원, 제주, 서귀포	한국참다래유통	한국참다래육성	키위	'05
	경북	김천	남면농협	김천과수육성	포도	'04
	5팀	경북	포항	기계농협	포항과수육성	사과
충북		영동	영동농협	영동과수육성	포도	'04
경북		경주	경북농금경주지소	경주과수육성	사과, 배	'06
경남		창원	창원조합공동법인	창원단감육성	단감	'05
경남		김해	김해조합공동법인	김해단감육성	단감	'04
충남		예산, 당진	예산농금	예산당진과수육성	사과	'06
전남		나주, 화순, 함평, 순천, 곡성, 장흥, 강진, 영암, 보성, 장성	나주배조합공동법인	전남배육성	배	'04
경북		영천	영천농협	영천과수육성	포도, 사과	'05
경남		함안	삼철농협	함안과수육성	단감, 감	'05
울산		울주	울산원협	울주과수육성	배	'05

## 〈2008년 연차 평가 진행 일정〉

평가 진행	날짜	비고
기본계획 수립	08.1.23.(수)	
평가운영 업체 선정	08.2.15.(금)	
평가개선 실무협의회	08.2.20.(수)	aT센터 중회의실
시·도 담당관 협의회	08.2.27.(수)	농림수산식품부 회의실
평가 대상자 설명회 - 평가 기준 전달, 일정 계획 통보	08.3.6.(목)	aT센터 대회의실
실적보고서 접수	08.3.31.(월)	
평가위원 설명회	08.4.2.(수)	농촌진흥청 경영정보회의실
현장 실사	08.4.7.(월) ~08.4.30.(수)	
실적보고서 검토 및 현장 실사 보고서 작성	08.5.7.(화)	
종합 평가	08.5.8.(목) ~ 08.5.9.(금)	남서울연수원
평가 결과 집계 및 중간보고서 작성	08.5.13(화) ~08.5.23.(금)	
평가 대상자 의견 조회	08.5.26.(월) ~08.5.29.(목)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08.5.30.(금) ~08.6.17.(화)	
평가결과 발표 및 최종보고회	08.6.	

## 4.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 가. 평가지표

#### □ 평가지표 구성

- 평가지표는 계획, 집행, 성과 단계로 구분하여 사업 진행과 결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음.

#### < 평가 지표 구성 >

단계	주요 평가 항목
계획	지역여건에 맞는 계획수립 여부와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노력, 평가결과 반영 등 적절성 평가
집행	출하약정 여부 및 정도, 사업추진 과정의 자체평가 및 개선내용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 여부, 집행 실적 등 평가
성과	법인화 등 사업운영체제 정비와 출하약정 이행율, 농가조직화, 연합사업실적 등 사업성과를 평가

#### □ 계량, 비계량 지표

- 각 단계별로 수치화된 계량 평가와 평가위원 의견을 종합한 비계량 평가를 혼합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였음.
- 계량, 비계량 가중치 : 계량 56점, 비계량 44점, 항목별로 가점 1~3점, 감점 0.01~1점 부여

#### < 단계별 계량, 비계량 지표 배점 현황 >

구 분	계획단계			집행단계			성과단계		
	계량	비계량	합계	계량	비계량	합계	계량	비계량	합계
당 초 (A)	-	10	10	35	15	50	28	12	40
변 경 (B)	-	10	10	34	16	50	22	18	40
증 감(B-A)	-	-	-	△1	1	-	△6	6	-

## 나. 평가방법

### □ 계량지표 (56점) : 실적 평가

- 계량지표는 ① 계획 대비 실적평가 (기준 지표의 달성율, 증가율로 계산) ② 사업 지침에 따른 이행 여부 직접 득점 부여로 평가하였음.
- 계량지표 항목별 득점 기준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요령"으로 사전에 공지하여 적용함.

#### < 계량지표 평가 방법 예 >

계획대비 실적 평가	사업지침 이행여부 득점
- 계획달성율(%) = 실적 / 계획 × 100 - 득점 = 가중치 × 계획달성율	- 사업지침 이행 여부 : 이행 문서 확인 - 이행 수준별 득점 부여

### □ 비계량지표 (44점) : 9등급 평가

- 평가 등급은 5개 등급(A~F)을 기본으로 하고, 각각의 기본 등급에 대해 보다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 +점수(A+, B+ 등)를 부여하여 9등급으로 분류.
- 평가위원은 9등급으로 표시하고, 득점은 평점기준에 의거하여 점수로 환산.

#### < 비계량지표 평점 계산식 >

등급	A <sup>+</sup>	A <sup>0</sup>	B <sup>+</sup>	B <sup>0</sup>	C <sup>+</sup>	C <sup>0</sup>	D <sup>+</sup>	D <sup>0</sup>	F
평점	100.0	92.5	85.0	77.5	70.0	62.5	55.0	47.5	40.0

- 비계량지표는 종합평가시 각 팀별 평가위원 7인의 등급 표시를 평점으로 환산하고 최고득점, 최저득점 각1인을 제외한 5인의 평균으로 산출.
- 팀별 편차를 확인하기 위해 팀별 비계량지표에 대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고, 유의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평균점수 보정을 실시.

### □ 종합평점 및 등급 부여

- 전체 항목의 평점을 합산하고, 가감점을 추가 합산하여 **절대 등급**을 산출. 계획, 집행, 성과 각 단계별 평가 결과에 대한 절대 등급도 추가 산출함.
- 52개 평가대상 사업 중 전국브랜드육성(한국과수농협연합회)을 제외, 총 51개 사업계획의 최종 점수 순위를 배열하여 **상대 등급**을 부여함.

## 5. 평가결과 활용

- '07년 사업실적 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방향 재정립
  -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보완대책 마련 시행
    - ⇒ 향후 신규사업자 선정 심사평가지 문제 발생소지 사전 제거
  - 사업운영주체 등이 평가를 통하여 평가기준 등에 명시한 사업방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인식을 재고하는 기회로 활용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우수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향후 예산 배정시 당해 연도 예산규모 및 신청현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 자율사업계획수립지원비(사업운영지원비) 지원 확대
  - 우수 조직(조직원) 포상 및 해외 선진지 견학 실시
- 부실 사업에 대한 페널티 부여
  - 부품목 사업실적, 광역사업 참여정도, 시·군별 역할 등을 재평가 후 지원효과가 없는 부문과 사업계획은 예산지원 축소



## 〈상대 평가 등급별 예산 차등 지원방안〉

등 급		범위(순위)	인센티브 및 패널티
A등급 (매우우수)	A+ (3개소)	상위 5% (1~3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시설 : 50%내외 증액</li> <li>◦ 수립지원비 : 20백만원 내외 지원</li> <li>◦ 선진지 견학 : 2~3명 내외</li> <li>◦ 농림수산물부 장관상 표창</li> </ul>
	A° (5개소)	10% (4~8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시설 : 40%내외 증액</li> <li>◦ 수립지원비 : 15백만원 내외 지원</li> <li>◦ 선진지 견학 : 1명</li> </ul>
B등급 (우수)	B+ (5개소)	10% (9~13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시설 : 30%내외 증액</li> <li>◦ 수립지원비 : 10백만원 내외 지원</li> <li>◦ 선진지 견학 : 1명(일부)</li> </ul>
	B° (5개소)	10% (14~18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시설 : 20%내외 증액</li> <li>◦ 수립지원비 : 5백만원 내외 지원</li> </ul>
C등급 (보통)	C+ (7개소)	15% (19~25위)	◦ 생산시설 : 10%내외 증액
	C° (8개소)	15% (26~33위)	◦ 생산시설 : 예년수준 지원
D등급 (약간미흡)	D+ (5개소)	10% (34~38위)	◦ 생산시설 : 10%내외 감액
	D° (5개소)	10% (39~43위)	◦ 생산시설 : 20%내외 감액
E등급 (미흡)	E+ (5개소)	10% (44~48위)	◦ 생산시설 : 30%내외 감액
	E° (3개소)	5% (49~51위)	◦ 생산시설 : 50%내외 감액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시설현대화('09년) : '07년 대비 증감 지원</li> <li>* 자율계획수립지원비('08년) : 사업당 추가 지원</li> <li>* 해외선진지 견학('08년) : 사업당 약간명(약 20여명)</li> <li>* 우수 시·도에는 수립지원비 및 선진지 견학 부여</li> <li>* 지자체 사업이 아닌 전국과실브랜드사업은 제외</li> </ul>	

## 제 II 부

---

#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 1. 총평

### □ 개방화 시대 과수산업 발전의 기반 마련

-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은 개방화(開放化)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과수 산업 지원 정책으로, 전략 방향을 고품질화와 지역통합에 의한 규모화된 마케팅 시스템 구축으로 설정하였음.
- '07년 수행된 52개 사업의 연차 평가를 수행한 결과, 지난 4년간의 사업을 통해 품목과 지역 특성에 맞도록 과수 생산 시설의 개선이 진행되었고, 주산지(主產地)를 중심으로 규모화·집중화된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 예산집행을 제고 및 사업관리 수준 향상

- '07년 사업의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예산(국고 및 지방비, 실적보고서 기준)은 866억4천만원이었으며, 집행액 711억1천만원으로 집행율은 83.5%임. 국고보조금 기준으로는 예산액 319억원, 집행액 249억원으로 집행율 78.1%를 보였으며, '06년 예산집행율이 69.6%인 점을 감안하면 집행 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됨.
- 주체간 협의 강화, 농가 선정의 공정성 강화, 미개시자 일제 조사,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관리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전국적인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신청서, 심사표, 출하약정서 등 양식의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어 이후에 보다 향상된 사업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이외에도,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농가 피해 방지와 안정적 사업 추진을 추구하고 (38개 사업, 74.5%), 시행지침의 시설, 단가를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해 노력 (32개 사업, 68.6%) 하는 등 효과적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도 확산되고 있음.

### □ 시행주체 중심의 판매사업 체계화

- 올해 평가에서는 시행주체를 기준으로 단순계통출하를 제외한 체계화된 판매사업 실적만을 집계하였음. '07년 사업의 전체 출하액은 3,062억원('06년 2,421억원 대비 26.5% 증가), 출하약정 이행율 67.1%, 공동선별·공동계산

비율 38.7%, 브랜드출하율 53.4% 등을 보이고 있어 시행주체 중심으로 판매사업의 체계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일부 시행주체의 경우 신설 법인은 설립 초기단계로 사업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있었고, 농협·품목조합 등의 경우 전체 판매 실적 중에서 체계화된 판매사업의 비중이 적고, 농가조직·내부조직과 유통 시설 등 사업 기반이 취약한 경우도 있었음. 사업 실적이 저조한 조직은 우선 품질관리 중심의 판매사업 체계화를 추진하여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 광역사업 정비 노력 필요

- 광역사업 중에는 잎맞춤과수산업육성, 햇사레과수산업육성 등 시행주체 중심으로 효과적인 사업관리와 우수한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사업계획의 경우 참여 시·군간 협의가 부족하고 시행주체의 주도력이 떨어지는 등 개선이 필요함 .
- 광역사업이 단순한 예산 배분과 농가 지원으로 접근할 경우 ① 예산 집행률 저하 ② 시·군간 사업 통일 미흡으로 혼란과 민원 제기 ③ 비효율적인 행정 관리 ④ 시행주체의 사업 실적 향상 미흡 ⑤ 지역 과수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광역사업은 지역간 협력을 통해 규모화·집중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되어야 하며, 광역사업의 최우선 해결 과제는 참여 시군과 주체가 참여하는 "과수산업발전 협의회"를 정규화하고 다양한 협의·추진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무 협의회를 활성화 하는 것임. 또한, 사업관리가 부실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권역 분리·조정 및 시행주체의 변경 등 사업계획의 검토가 필요함.

#### □ 거점APC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사업 시스템 정비

- 거점APC는 '06년에 4개소가 완공되어 가동되기 시작하였으며, '07년에 1개소가 추가 완공되어 '08.3월 현재 5개소가 가동되고 있음. 또한 '08년말까지 완공예정인 4개소, '09년초에 6개소가 완공예정인 총10개소의 거점APC 건립공사가 진행중임.

- 입지선정 검토, 각종 인·허가, 실시설계, 시공업체 선정 등의 절차 이행으로 인해 공기가 많이 소요되어 당초 2년차 사업을 3년차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시군 유통회사·과원규모화사업 등 관련사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중형규모의 거점APC건립 활성화, 공공유형 지원기준의 강화, 표준 운영매뉴얼 제작 보급 등의 사업 보완대책을 추진중에 있음.
- 과수산업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약(跳躍) 필요
  - '07년을 기점으로 과수 재배 기반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선정 연차별로 다소 편차는 있으나 생산시설현대화 등 기반(하드웨어) 확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
  - 이후의 과제는 사업 주체들의 성장과 시장 경쟁력 확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하드웨어에 농가 조직 강화, 품질관리 능력 향상, 전문 인력 육성, 브랜드 정착과 홍보 강화 등 운영(소프트웨어) 측면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금번 평가에 공동선별, 공동계산 실적, 교육 실행 성과, 품질관리 매뉴얼 운영 등 운영 측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들이 추가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시행주체의 성장과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과 모니터링 필요.
  -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도 지역 협력으로 안정적인 생산·출하 체계를 갖추고, 차별성과 효율성을 발휘하는 강력한 마케팅 주체가 성장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화된 사업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함.

## 2. 평가결과 분석

### 가. 평가결과 요약

#### □ 평가결과 집계 제외 대상

- 본 자료에서는 총 52개 평가 대상 사업 중 과실전국공동브랜드육성사업 1개를 제외한 51개 사업계획의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집계하였음.
- 과실전국공동브랜드육성사업(한국과수농협연합회)은 브랜드육성사업만 시행하였고,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은 시행하지 않아 평가 지표 중 미해당 항목이 다수 존재함. 이에 사업 진행, 관리에 대한 점검을 주로 실시하였고 절대평가 등급은 부여하였으나, 순위에 따른 상대평가는 제외함.

#### □ 절대 평가결과

- 절대평가는 평가대상 51개 사업을 총 5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분류.
- 1등급은 1개소(2.0%)였고 2등급 10개소(19.6%), 3등급 16개소(31.4%), 4등급 15개소(29.4%), 5등급 9개소(17.6%)로 나타났음.
-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① 선정연도별 : '07년 신규 사업은 모두 3등급 이하로 평가되었음 ② 광역사업, 단일사업 여부 : 큰 편차는 없으나 각 유형에서 4등급 이하 비중이 광역사업은 50%, 단일사업은 45.5%로 나타나 광역사업이 다소 부진함 ③ 시행주체별 : 농업회사법인 유형 3개소가 모두 4등급 이하로 평가되었고, 지역농협 유형은 14개소 가운데 50.0%인 7개소가 4등급 이하로 평가되었음.
- 시행주체 유형별 분석에서 농업회사법인은 신설 법인이고, 지역농협은 기존 연합사업단에서 변경된 경우가 많아 사업이 아직 체계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51개 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3단계별 등급 분포를 보면, 계획단계는 3등급이 62.7%, 집행단계는 3~4등급이 70.6%, 성과단계는 4~5등급이 49.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과단계의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것은 단순계통 출하실적을 배제하는 등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득점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되나, 사업 규모화와 공동선별·공동계산에 기반한 체계화된 판매사업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시·도별 절대평가 결과 분포 >

(단위 : 개소,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계
충 북		2		1	2	5
충 남		1	3		1	5
전 북		2	1	1	1	5
전 남			1	2	1	4
경 북		4	7	6	1	18
경 남			3	4	2	9
기 타	1	1	1	1	1	5
합 계	1	10	16	15	9	51
비 중	2.0%	19.6%	31.4%	29.4%	17.6%	100.0%

\* 기타 : 울산, 경기, 강원, 제주

\* 과실전국공동브랜드육성사업 : 2등급

< 유형별 절대평가 결과 분포 >

(단위 : 개소,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계	
선정연도	'04	1	6	3	5	2	17
	'05		2	5	5	2	14
	'06		2	4	4	3	13
	'07			4	1	2	7
광역여부	광역	1	3	5	7	3	19
	단일		7	11	8	6	32
시행주체유형	농업회사법인				2	1	3
	영농조합법인			2	1	1	4
	조합공동법인	1	4	4	3	2	14
	지역농협		2	5	3	4	14
	품목농협		4	5	6	1	16

< 사업 추진 단계별 평가 결과 분포 >

(단위 : 개소,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계	
총괄	개소수	1	10	16	15	9	51
	비중	2.0%	19.6%	31.4%	29.4%	17.6%	100.0%
계획	개소수		10	32	8	1	51
	비중	0.0%	19.6%	62.7%	15.7%	2.0%	100.0%
집행	개소수		10	18	18	5	51
	비중	0.0%	19.6%	35.3%	35.3%	9.8%	100.0%
성과	개소수	4	11	8	14	14	51
	비중	7.8%	21.6%	15.7%	27.5%	27.4%	100.0%



□ 상대평가 결과

- 51개 사업에 대해 순위별로 상대평가 등급을 부여한 결과 경북이 A등급 8개소 중 4개소에 해당하였고, E등급이 1개소만 있는 등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 유형별로 보면, 사업 연차수가 많은 '04년 선정 사업과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품목조합 등으로 시행주체가 안정된 경우가 상위권에 분포하였음.

< 시·도별 상대평가 결과 분포 >

(단위 : 개소, %)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합계
울산				1		1
경기	1					1
강원					1	1
충북	1	1	1		2	5
충남	1	3		1	0	5
전북		2	2		1	5
전남		1		2	1	4
경북	4	1	9	3	1	18
경남		1	3	3	2	9
제주	1	1				2
합계	8	10	15	10	8	51

< 유형별 상대평가 결과 분포 >

(단위 : 개소, %)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합계	
선정연도	'04	6	3	4	2	2	17
	'05	1	4	2	5	2	14
	'06	1	1	7	2	2	13
	'07		2	2	1	2	7
광역여부	광역	4	3	6	3	3	19
	단일	4	7	9	7	5	32
시행주체유형	농업회사법인			2		1	3
	영농조합법인		2		1	1	4
	조합공동법인	4	4	1	4	1	14
	지역농협	1	2	5	2	4	14
	품목농협	3	2	7	3	1	16

## 나. 계획단계

### □ 계획단계의 요구

- 계획단계에서는 당초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사업 참여 주체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충분한 의견 수렴, 협의를 수행해야 함.
- 시행 지침에는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과수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농가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간담회, 대표농가 회의 등을 시행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 평가결과 문제점

- 대부분의 지역에서 과수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 조정을 위해 체계적인 의사결정과 협의체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과수발전 협의회"가 지역 과수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 조정, 결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 선정 등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단순하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나 실제 회의 개최와 의견 청취 등 활용실적이 미흡하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전문가 부재, 회의 초빙의 문제 등을 이유로 전문가 풀(pool) 구성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음.
- 주체간 협의에 있어서는 정규화, 정례화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협의체의 구성, 권한 부여가 불분명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 단순하게 의견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회의 안건 정리·문서화, 회의 결과의 환류(피드백)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음.
- 계획단계에서 농가 의견 수렴활동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는 부분임. 사업설명회, 농가조직 대표자 간담회, 영농설계 교육 등 다양한 기회에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의견 수렴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 농가 수요와 사업계획을 직접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 개선 방향

- **과수산업 발전협의회**를 지역의 과수산업 주체들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체로서 사업계획 수립, 조정을 위한 의사결정·협의체로 활성화해야 함. 산하에 실무운영위원회,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배치하여 체계화해야 함.
- **외부 전문가 자문단**은 회의만이 아니라 교육, 사안별 서면 자문 등으로 의견 청취 방법을 다양화 해야 함.
- **책임자, 담당자간 협의**는 정규화, 정례화하도록 함. 단위에 따라 명칭을 부여하고, 간사 주체를 정하여 회의 소집, 안건 정리, 회의 결과 정리, 환류 및 이행점검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집행단계

### □ 집행단계의 요구

- 집행단계에서는 계획단계의 협의·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시행 지침에서 요구하는 이행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특히, 사업 추진 과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인 집행노력으로 예산 집행율을 제고하는 것이 주된 과제임. 이를 위해 객관적 대상자 선정, 예비대상자 운영, 조기착공 노력, 자재일괄 구매, 우수 시공업체 선정과 단가조정 등이 시행되어야 함.

### □ 평가결과 문제점

- 집행단계의 평가 항목들은 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많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행·개선 노력이 있었음. 현저하게 시행지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주요 과제를 시행하지 않거나 지연 시행한 경우도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은 시행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함.
- **대상자 선정 시기**는 전년도말까지 선정을 완료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선정 이후 교부결정과 농가통보를 3월~4월에 시행하여 실제 사업 착공 시기가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또한 **1,2순위 구분 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적용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적용한 경우가 많았음.

**< 사업대상자 선정 관련 이행 실적 >**

(단위 : 개소, %)

사업대상자 선정시기				1·2순위 구분 접수, 평가			
전년도 12월이전 (2.00)	당년 2월이전 (1.00)	당년 3월이후 (0.50)	합계	구분평가 시행 (1.00)	순위구분* 미흡 (0.50)	구분평가 시행 않음 (0.00)	합계
9	12	30	51	7	10	34	51
17.6%	23.5%	58.8%	100.0%	13.7%	19.6%	66.7%	100.0%

\* 순위구분 미흡은 1,2순위를 구분했으나 모두 2순위로 평가한 경우나 심사표의 접수 배점으로 1,2순위를 구분 적용한 경우임

- **출하약정**은 지원사업과 시행주체의 판매사업을 직접 연계하는 중요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우수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출하약정 이행이 미흡하거나, 출하약정 자체가 실질화되지 못하여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판단되었음. 지원농가는 전원 약정을 체결하고, 농가 생산량 대비 80% 이상을 약정토록 한 내용은 준수되었으나, ① 약정 이행율이 저조(성과단계 평가 결과 참조)하고, ② 약정이 시행주체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거나 ③ 건립중인 APC가 완공·가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질화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대상자 선정·활용**, 예산 집행율 제고를 위한 **미개시자 일제 조사, 중도포기자 관리** 강화 노력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행되었음. 다만, 미개시자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고 단순한 점검에 그칠 경우 집행율 제고 효과가 떨어지므로,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시공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명확히 관리해야 함. 특히 사업대상자 선정이 늦어지면 미개시자 조사, 중도포기자 관리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주의가 요망됨.

**<미개시자 조사, 중도포기자 관리 이행 실적>**

(단위 : 개소, %)

선정후 2개월이내 미개시자 조사				중도포기자 관리				
적정시행 (1.00)	미흡시행 (0.50)	미시행 (0.00)	합계	적정시행 (2.00)	미흡 (1.00)	매우미흡 (0.50)	부적정 (0.00)	합계
20	8	23	51	38	7	2	4	51
39.2%	15.7%	45.1%	100.0%	73.5%	13.7%	3.9%	7.8%	100.0%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자재 일괄 구매, 공신력 있는 시공업체 선정과 지역 여건에 맞는 단가·세부 시설기준 조정이 시행되었으나 미시행 지역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또한, 이들 추진과제의 이해도가 낮아 세밀한 평가·선정 보다는 단순한 자료 수집, 심의회를 통한 단순 의결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함.

**< 효과적 예산집행 이행 실적 >**

(단위 : 개소, %)

자재 일괄 구매			시공업체 선정						단가 조정			합계
우수 (1.00)	미흡 (0.50)	미시행 (0.00)	매우 우수 (5.00)	우수 (4.00)	보통 (3.00)	다소 미흡 (2.00)	미흡 (1.00)	미시행 (0.00)	위원회 시행 (3.00)	단순 시행 (2.00)	미시행 (0.00)	
12	11	28	3	3	6	9	17	13	19	16	16	51
23.5%	21.6%	54.9%	5.9%	5.9%	11.8%	17.6%	33.3%	25.5%	37.3%	31.4%	31.4%	100.0%

- 대부분 과수 주산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봉지·포장재 지원, 생산 부자재 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FTA기금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집중화·규모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대다수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음. 특히, 타 사업 예산 활용이 FTA기금 지원사업과 경합되어 지원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지자체 과수사업의 FTA기금 사업 연계, 시행주체 중심의 규모화·집중화 추구가 원칙으로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개선 방향

- 전년도 말 이전에 조기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객관적인 심사지표를 적용해야 함. 조기 선정과 함께 사업시행 년도 1월~2월말 이내에 **교부결정 및 농가통보를 완료**토록 함으로써 착공시기를 앞당기도록 해야 함. 또한 접수 단계부터 **1,2순위를 구분**하도록 하고, 평가도 구분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행주체와 출하약정을 맺고 공동선별·공동계산에 참여하는 정예화된 농가에게 우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출하약정**은 "형식적" 계약 체결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시행주체가 충분한 판매사업 역량을 확보해야 하고, 지역 과수 통합마케팅 주체로서 체계화된 협력·판매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또한, **출하약정 이행률 제고**를 위한 자체사업 연계, 시행주체의 인센티브·패널티 시스템 강화 등 실제 농가의 출하와 연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실질화해야 함.
- 예산집행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미개시자 조사, 중도포기자 관리** 철저 등 기본 노력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관리 노력과 우수한 사업 추진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분기별 모니터링제, 시공업체 점검, 시기·단계별 안내문 발송 등임.
- **우수 시공업체 선정**은 가급적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시행토록 하고, 자격사항과 시방서 등 기본 서류와 함께 시공실적, 만족도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자재일괄구매**는 시행주체가 통합구매에 따른 비용절감·품질보증 확대를 추구하도록 하고, 농협계통구매의 경우에도 운송임 등 계약부대 조건 개선 등 효과적 구매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단가조정**은 전국 표준단가를 참고하되 과수발전협의회에서 전문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조정하도록 시행지침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라. 성과단계

### □ 성과단계의 요구

- 성과단계에서는 시행주체의 체계화된 판매사업 실적의 향상을 요구함. 법인화 및 독립채산 등으로 사업조직을 정비하고, 판매사업 규모화 및 실적 증대, 공동선별·공동계산 확대, 공동브랜드 판매규모 확대 등을 요구.
- 특히, 시장경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품질관리에 기반한 전체 판매사업의 체계화가 필요하므로 품질관리 기준의 보유·활용, 농가 교육 및 조직화 추진 등 보다 심화된 사업 능력 향상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

### □ 평가결과 문제점

- **법인화 및 독립사업부서화**는 시행주체의 판매사업 조직을 체계화하는 중요한 사항이나 조직에 따라 일부 혼란이 존재하고 있음.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사업초기 출하권 단일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기존 연합사업단과 병행 운영 되어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지소 등 단일조직의 경우에도 사업 조직이 작고, 유통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행주체로서 실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음.
- **출하약정 이행율**은 사업계획별 평균이 68.0%로 다소 낮은 수준임.
- 시행주체의 **판매사업 실적**은 총 3,062억원이며, '06년과 비교하면 26.5% 증가하였음. 단순 계통판매를 제외한 체계화된 판매사업 실적만을 집계한 결과로서 체계화된 판매사업 규모가 적은 것으로 판단됨. (평균 78억원) 이외에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은 총판매액의 53.5%, **공동브랜드 출하액**은 총판매액의 53.7% 수준으로 추가적인 사업 규모 확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주품목인 과수보다는 과채류 등 부품목에 치우쳐 사업을 전개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 < 출하량 및 출하액 실적 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출하액		
2006년	2007년	증가율	2006년	2007년	증가율
122,985	152,200	23.8%	242,124	306,225	26.5%

- **만족도 조사와 평가, 환류체계 구축**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추진 방법에 대한 모델이 정립되지 않아 관련 실적이 없는 사업이 22개소(43.1%)에 해당. 연말에 행정·시행주체가 공동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세부 항목에 대한 농가 설문조사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수 사례들도 있었으므로 적극적인 벤치마킹이 필요함.
- **농가 교육**은 재배기술 향상과 함께 리더 육성, 정예 농가 조직화를 목적으로 시행주체가 주도하여 추진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일반 생산농가를 대상으로한 "기술 교육"이 주로 추진되어 미흡하였음. **품질관리 매뉴얼**은 실제 생산·상품화 과정에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자료, 참고 자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 품질관리 매뉴얼 활용 실적 >**

(단위 : 개소, %)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					품질관리 매뉴얼 활용					
우수 (2.00~)	보통 (1.50~)	미흡 (1.00~)	미시행 (0.00)	합계	매우우수 (3.00~)	우수 (2.50~)	보통 (2.00~)	미흡 (1.50~)	미활용 (0.00)	합계
6	21	2	22	51	7	17	12	1	14	50
11.8%	41.2%	3.9%	43.1%	100.0%	13.7%	33.3%	23.5%	2.0%	27.5%	100.0%

□ **개선 방향**

- 시행주체의 **법인화 및 독립사업조직화**는 형식적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운영상의 효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함. 시행주체와의 출하약정을 강화(참여조직 약정 배제)하고, 기존 연합사업단 업무를 시행주체로 적절하게 이관하는 작업도 진행되어야 함.
- FTA기금 사업이 실제 시행주체의 **유통사업 규모화와 마케팅역량 향상**으로 이루어지도록 각종 성과지표의 관리가 필요함. 출하물량·출하액 증대를 위해 원물조달부터 마케팅 강화, 내부 조직 강화 등 종합적인 사업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특히 체계화된 판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동선별·공동계산 활성화와 APC 운영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함.



- 판매사업 수준 향상을 위해 **품질관리 매뉴얼**을 보유·제작하도록 하고, 생산과정과 선별·포장, APC 운영 등 실제 업무의 지침으로 준수되는 매뉴얼로 전환되어야 함. 또한 **농가교육**은 정예농가 육성과 재배기술 향상을 목표로 생산, 유통, 마케팅, 리더쉽 등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욱 발전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지역특성화 교육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3. 평가결과 시사점

#### 가. 지속적인 사업관리 체계화 성과

##### □ 예산집행률 제고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은 시행초기 예산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였고, 다수 농가와 주체에게 다양한 세부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 관리의 복잡성이 문제로 되었음. 그러나, 올해 연차평가 결과 예산 집행율이 대폭 향상되어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07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국고 보조금 예산집행율은 78.0%로서 '06년 69.6%보다 상당한 개선 실적을 보였음.

#### < '07년 국고보조금 집행 실적 >

(단위 : 백만원, %)

시도	합계			지역(사업계획)별 평균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개소수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울산	114	70	60.9%	1	114	70	60.9%
경기	1,184	1,144	96.6%	1	1,184	1,144	96.6%
강원	108	25	22.9%	1	108	25	22.9%
충북	2,079	1,600	77.0%	5	416	320	83.0%
충남	3,433	2,642	76.9%	5	687	528	88.7%
전북	3,605	2,404	66.7%	5	721	481	81.1%
전남	2,561	1,736	67.8%	4	640	434	75.1%
경북	11,198	8,689	77.6%	18	622	483	81.7%
경남	2,090	1,753	83.9%	9	232	195	93.4%
제주	5,500	4,799	87.2%	2	2,750	2,399	86.0%
합계	31,872	24,860	78.0%	51	625	487	82.9%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 사업관리의 체계화 노력

- 사업관리 체계화는 ① 표준 양식 제시 ② 사업 추진 절차 세분화 ③ 선진 사례 전파를 통해 중점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외에 시·도별 교차 점검, 연차 평가 피드백 및 모니터링 등 지속적 관리를 추진한 결과로 이해됨.
-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원칙을 준수할 경우 적시에 문제 발생 여지를 최소화하여 추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부실 시공 방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각종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였음.

#### □ 담당자 교체시 업무 전달과 신규 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 필요

- 금번 평가 결과 행정 담당자가 교체되거나, 신규 사업지역의 경우 사업 관리가 부실하여 저조한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었음.
- 사업 지침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정하여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은 담당자의 실천 노력과 원칙적 적용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음.
- 따라서, 담당자 교체시 사업 추진 절차, 점검 사항들을 리스트화하여 전달하고, 행정 및 시행주체 신규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여 지침 이행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함.

### 나. 협의체 활성화와 광역사업 체계화를 위한 노력 필요

#### □ 규모화를 위한 지역내 협의체 운영 등 개선 필요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은 행정, 사업시행주체, 농가 3주체간의 협력을 통해서 성과가 나타나도록 구성되어 있음. 지역내 협의체 운영과 시군간 협력(광역사업의 경우)을 체계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임.
-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는 규모화와 지역 통합마케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활성화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산·학·연·관 협의체 운영이 미흡하고, 행정과 사업주체간 협의, 참여 조직간 협의가 미흡함.

- 사업 조직, 이해 관계자,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과수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정 사항을 물론 지역 마케팅 계획, 시설 확충 등 총괄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외에, 품목별 분과, 실무운영위원회, 담당자회의 등으로 의사결정과 협의 단위를 분리하여 원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광역사업의 체계화 노력 미흡
  - 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사업은 총 19개 사업(제주 2개사업, 한국과 수농협연합회 포함)임.
  - 광역사업으로 규모화를 달성하고, 브랜드 통합과 판매주체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도 있으나, 일부 지역은 행정과 시행주체 간의 협력이 미흡할 뿐 아니라 행정기관간(지자체간) 협력도 미흡하여 사업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광역사업의 경우 주관 시·군의 주도하에 참여 시·군간 의사결정 협의회가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전체 참여 시·군의 사업통일과 일정 관리, 시행주체를 중심으로 한 역할 분담 등 체계적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광역 과수발전 협의회 운영이 정례화 되어야 함.
  - 또한, 광역사업 운영 활성화와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주관 시·군이 사업주도력을 발휘하여 진행 일정 통일, 관리 양식 통일, 일제 추진 사항(예 : 미개시자 조사, 시공업체 선정 등)에 대한 총괄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자체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 차원의 사업관리 노력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 시행주체 변경에 따른 보완 조치 필요

- 시행주체 변경 현황과 문제점
  - '07년 중 시행주체 변경이 이루어진 사업이 19개였음. 기존 연합사업단의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으로 단일화하거나, 주관조직을 지정하여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으로 시행주체를 변경하였음.
  - FTA기금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은 지원 농가가 시행주체와 출하약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선순위 추천, 사업집행 현장확인·모니터링, 1차 정산 등 주된 사업 관리를 시행주체가 주도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주체 변경 지역 중 이러한 요구에 적합하도록 개선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연합사업단 사업이 지속되면서 시행주체 중심의 역할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일부 있었음.

< '07년 시행주체 변경 사업 현황 >

변경 유형		개소수	비고
'06년사업	'07년사업		
농협 연합사업단	지역농협	11	영동과수, 옥천포도, 제천과수 천안거봉, 경산과수*, 김천과수 청도과수, 영천과수, 사천과수 창녕단감, 함안과수
	조합공동사업법인	5	앞맞춤과수**, 전남동부 전남배, 의성과수, 창원단감,
	품목농협	1	울주과수
	농업회사법인	1	경남서북부(거창외)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1	고흥유자
합계		19	

주\* : 경산과수육성은 '07년 신규사업으로 당초 연합사업단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시행 중 지역농협(자인농협)으로 변경.

주\*\* : 앞맞춤과수육성은 '07년 경기농협연합사업단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08년 3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함.

□ 시행주체 변경에 따른 보완 조치 시행

- 사업 진행 중에 시행주체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후 사업에서는 사업집행 관련 역할 배분 조정, 출하 약정 갱신, 판매권 및 사업관리 이관 등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사업 지원을 위해 형식적인 출하 약정을 체결하거나, 내실 없는 판매 규모 확대를 추구하기 보다는 지역 여건과 사업 체계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

업 관리와 실제 판매사업 추진의 역할 분담을 재조정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연합사업단에서 지역농협으로 시행주체가 변경된 유형은 지역 대표 농협으로서 주관조합 중심의 마케팅 통합, 유통시설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참여 농협간 협약을 통해 역할 분담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라. 지역 브랜드 마케팅 추진의 심화 필요

### □ 출하 체계 개선 노력

- 지역 과수 판매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모화·집중화와 함께 판매 조직, 상품화 관리, 홍보·마케팅의 수준향상이 필요한데, 현재 지역 과수 마케팅 시스템은 기존의 조직과 사업 방식에 새로운 생산·유통 기반이 중첩, 경합되어 혼란이 존재하고 있음.

< 과수 마케팅 관련 주요 지표 >

대항목	소항목	단위	합계	지역(사업계획)별 평균
출하약정 이행	출하약정물량	톤	92,248	2,306
	실제출하물량	톤	61,897	1,547
	약정이행율	%	67.1%	68.0%
공동선별 공동계산 (39개소)	2006년 실적	백만원	97,152	2,491
	2007년 실적	백만원	118,588	3,041
	증가율	%	22.1%	50.2%
	판매액대비 공선,공계	%	38.7%	53.5%
브랜드출하 (39개소)	2007년 총판매액	백만원	306,225	7,852
	2007년브랜드판매액	백만원	163,432	3,986
	브랜드판매비율	%	53.4%	50.8%

\* 주 : 공동선별·공동계산, 브랜드출하 항목은 실적 평가를 수행한 51개 사업중 판매사업 실적을 인정하지 않은 12개소를 제외한 39개소의 합산, 평균치임.

- 금번 연차평가에서는 시행주체를 기준으로 단순계통 실적을 완전히 배제하여 실적을 산출하였고, 그 결과 사업계획별 평균 비율지표들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체계화된 판매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 시행주체의 판매사업 취급 규모와 비교하면 체계적인 판매사업 추진 비중이 미흡한 상황임. 개소당 판매액이 78.5억원에 불과하고, 공동선별·공동계산액 30.4억원, 브랜드 출하액 39.9억원으로 시·군 이상의 과수 전문 마케팅 조직의 판매 규모로는 다소 미흡한 수준임. 지속적인 판매사업 체계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대부분 지역에서 브랜드의 필요성과 육성 의지는 강하나, 체계적인 원물조달과 품질관리를 통해 상품성을 유지하고, 높은 소비지 인지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미흡한 상황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 브랜드 중심의 판매사업 체계화 필요
  - 과수 브랜드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① 출하약정의 실질화 ② 정예농가 조직 중심의 공동선별·공동계산 확대 ③ 품질관리 매뉴얼 운영 ④ 효과적인 브랜드 정착과 시장 인지도 강화 등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이어지는 사업 전반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단순한 공동브랜드 개발, 디자인에 치우쳐 신규 개발에 매몰되기 보다는 기존 브랜드라도 시장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주산지·지역 이미지와 결합시킴으로써 초기 단계의 정착에 노력해야 함.

## 마. 거점APC 운영 준비의 체계화

- 거점APC 건립, 운영 현황
  - '08년 3월 현재 운영중인 거점APC는 5개소임. 가장 먼저 준공된 장수APC가 내부사정으로 인해 '06년 9월 준공이후 현재까지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농협연합사업단으로 운영주체를 교체하여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고 원물확보 방안을 수립토록 대책을 추진중에 있음.
  - 운영중인 거점APC 가운데 제주감귤농협, 대구경북능금농협 영주지소의 경우 비교적 단기간에 사업물량 확보와 성과 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성마춤조합공동사업법인은 추가적인 물량 확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08년 완공예정 거점APC 준비 현황

-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선별기 업체·기종 선정이 이미 이루어져 '08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점APC는 의성조합공동사업법인(의성), 예산능금농협(예산),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음성), 충북원예농협(충주)임.
- 이외에 제주감귤농협(제주),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제주), 대구경북능금농협 문경지소(문경)는 '08년 연내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미착공 상태로 기본설계 완료, 업체선정 과정 등에서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조만간 완공이 예상되는 이들 거점APC 추진 지역에서는 자문단 운영, 농가 조직 재편, 운영주체 조직 보강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① 기존 농협 및 작목 조직의 출하체계 개편 ② 거점APC 연중 가동을 위한 운영 계획 수립 ③ 운영주체의 내부 조직 보강에 따른 수익력 확보 방안 마련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거점APC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 완공을 앞두고 있는 거점APC의 경우 기존 사업의 시행착오를 참고하여 사전에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초기 단계부터 실패하지 않는 사업기반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함.
- 기존 사업에서의 시행착오에서 확인한 점검 사항은 ① 역량있는 운영 책임자 (CEO 등)와 실무자 확보 ② 연중 출하, 손익분기 가동을 확보를 위한 품목별(주품목, 부품목) 사업 운영 ③ 선별기, 저온저장고 등 초기 시설 가동 시 문제 발생 사안의 신속한 해결 ④ 시설 운영 상황에 따른 단계적·탄력적인 작업 인력 투입 준비 등임.
- 이러한 실무 사항 이외에 가장 중요한 점은 원물 확보를 위한 기존 출하 조직 설득과 사업 유인(誘引)임. 이것은 운영주체 단독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행정과 운영 주체, 참여조직의 일체화된 노력이 필요함.
- 완전한 물량 통합 이전에 브랜드 통합, 출하권 단일화에 대한 합의가 우선 필요하고 기존 출하조직의 역할을 무시하기 보다는 참여·배분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안착(安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참고 : 거점APC 건립 진행 및 운영 현황('08.31.) >**

시도	주관 시군	운영주체	예산 (억원)	진행현황	연차평가 확인 사항
경기	안성시	안성마춤 조합공동사업법인	122	'06.9.완공	· '07년배,포도 3,117톤처리
충북	음성군	햇사레과일 조합공동사업법인	151	'08.12. 완공예정	· 실시설계완료('07.10.) · 토목(50%),건설공사(2%) · 선별기 제작 중
충북	충주시	충북원예농협	177	'08.9. 완공예정	· 선별기 선정 ('07.3.) · 토목우선공사 완료 · 토목공사(15%)
충남	예산군	예산능금농협	150	'08.9. 완공예정	· 실시설계완료 · 토목공사(17%)
전남	나주시	나주 조합공동사업법인	180	'09.1. 완공추진	· 토목공사 진행중 · 선별기 선정 진행중
전남	순천시	순천 조합공동사업법인	127	'09. 완공추진	· 운영주체법인설립('07.10.) · 설계업체 선정 중
전북	장수군	(주)S-APC	175	'06.9. 완공	· 비상경영 상황 · 농협연합사업단 운영결의 · 농가출자지분 인수
경북	영주시	대구경북능금농협 영주지소	178	'07.11.완공	· '07년 사과 1,255톤 취급
경북	의성군	의성 조합공동사업법인	180	'08.7. 완공예정	· 총괄공정을 90% · 품목별연합회 농가조직화
경북	문경시	대구경북능금농협 문경지소	149	'08.10. 완공추진	· 기본설계 완료('08.3.)
경남	거창군	(주)NH유통	186	'09.4. 완공추진	· 운영주체법인설립('07.5.) · 도 기본설계 심의요청
경남	밀양시	밀양농협/ 얼음골유통영농조합	40	'06.9.완공	· 기존APC보완 · 개별APC로 운영
제주	-	제주감귤농협	83	'06.11.완공	· '07년 감귤 7,655톤 처리 · 영세선과장 통폐합추진
제주	-	제주감귤농협	120	'08.12. 완공추진	· 실시설계 완료 · 시공업체 선정 준비
제주	-	제주 조합공동사업법인	125	'08.12. 완공추진	· 설계용역계약('07.10.) · 시공업체 선정 입찰 중
합계	15개소		2,143	완공5개소	

\* 주 : 본 자료는 실적보고서와 현장실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임. 농식품부 예산액과 상이할 수 있음.



## 4. 결론

### □ 연차 평가의 요구 사항

-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 지원사업 평가는 계획, 집행, 성과 3단계를 관통하는 철저한 사업 관리와 행정, 시행주체, 참여조직 3주체의 강력한 협력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음.
- 엄격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현장 실사, 평가단 운영 등 2중, 3중의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정밀한 시행 지침의 적용을 강제하는 이유는 다양한 품목, 지역 여건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사업 집행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과수 생산·유통 전반의 발전 토대를 신속히 구축하도록 요구하는 것임.

### □ 평가결과 "우수"와 "미흡"의 의미

- 평가에서 "매우 우수"로 판단된 곳들은 3단계 관리, 3주체 협력이 체계화되어 전반적인 사업 추진 성과가 우수한 곳이며, 3단계 혹은 3주체 중 부족한 부문이 존재하는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 받았음.
- 평가에서 "미흡"으로 판단된 곳들은 전반적인 사업 관리 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시행 주체 중심의 협력체계가 불완전한 곳임. 비교적 규모화 된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참여 조직간 역할 분담이 미흡하거나, 출하·마케팅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정책적 요구에 불합치(不합致)한 곳임. 사업계획의 재검토와 사업 범위, 예산 및 추진 시스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 도약을 위한 준비 필요

-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을 통해 고품질 생산시설, 유통시설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지역 과수산업의 기반이 확충·변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 과수산업은 개방화에 대응하여 도약(跳躍)을 준비해야 하며, 이것은 확충된 생산·유통 기반과 사업주체의 마케팅 역량이 결합될 때에 이루어질 수 있음.
- 효율(效率)과 집중(集中)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외부 환경변화에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상대평가등급 부여 결과 (등급별 가나다순)〉

등급	개소수	범위	대상 사업
A등급 (매우우수)	8개소	15%	김천과수육성, 봉화과수육성 성주과수육성, 영주과수육성 예산당진과수육성, 잎맞춤과수육성 제주감협감귤육성, 햇사래과수육성
B등급 (우수)	10개소	20%	고창과수육성, 남원과수육성 영동과수육성, 의성과수육성 제주농협감귤육성, 창원단감육성 천안거봉포도육성, 천안배육성 충남남부과수육성, 한국참다래육성
C등급 (보통)	15개소	30%	경남서북부과수육성, 경산과수육성 경주과수육성, 군위구미사과육성 김제완주포도육성, 문경상주사과육성 상주과수육성, 안동과수육성 예천과수육성, 전북동부산악권과수육성 창녕단감육성, 청도과수육성 충북원협과수육성, 칠곡과수육성 하동과수육성
D등급 (약간미흡)	10개소	20%	김해단감육성, 사천과수육성 연기과수육성, 영덕과수육성 영천과수육성, 울주과수육성 전남동부과수육성, 전남유자육성 진주과수육성, 청송영양과수육성,
E등급 (미흡)	8개소	15%	밀양얼음골사과육성, 옥천포도육성 원주과수육성, 전남배육성 전북서남부평야과수육성, 제천과수육성 포항과수육성, 함안과수육성

\* 각 등급별 사업명 가나다 순임. 순위가 아님에 주의.

### 〈사업별 평가결과 (시·도순)〉

시도	시군	시행주체	사업명	평가팀	절대 평가결과				상대평가급 (등급)
					계획 (10)	집행 (50)	성과 (40)	합계 (등급)	
울산	울주	울산원협	울주과수육성	5팀	D+	D+	F	4	D
경기	안성외3	앞맞춤조합 공동법인	앞맞춤 과수육성	2팀	B0	B+	A0	1	A
강원	원주	원주원협	원주과수육성	4팀	D+	F	F	5	E
충북	영동	영동농협	영동과수육성	5팀	C+	B0	B0	2	B
충북	옥천	옥천농협	옥천포도육성	1팀	C0	D+	F	5	E
충북	제천	제천농협	제천과수육성	4팀	C0	D+	F	5	E
충북	충주외7	충북원협	충북원협 과수육성	3팀	C+	D+	D+	4	C
충북	음성외2	햇사레조합 공동법인	햇사레 과수육성	1팀	B0	B+	A0	2	A
충남	논산외5	참후레쉬 영농법인	충남남부성 과수육성	1팀	C0	D+	B+	3	B
충남	연기	연기조합 공동법인	연기과수육성	3팀	D+	C0	F	5	D
충남	예산외1	예산농금	예산당진 과수육성	5팀	C+	B0	B+	2	A
충남	천안	입장농협	천안거봉 포도육성	2팀	C+	C+	C+	3	B
충남	천안	천안배원협	천안배육성	2팀	C+	B0	C+	3	B
전북	고창	고창조합 공동법인	고창과수육성	1팀	C0	B0	B0	2	B
전북	김제외1	백구농협	김제·완주 포도육성	4팀	D+	D+	C+	3	C
전북	남원	남원원협	남원과수육성	3팀	B+	C+	B0	2	B
전북	장수외3	(주)S-APC	전북동부산악권 과수육성	1팀	C0	C0	D+	4	C
전북	정읍외5	정읍농산물 유통법인	전북서남부평야 과수육성	2팀	D+	F	F	5	E
전남	고흥외1	고흥유자 영농법인	전남유자육성	3팀	C0	C0	F	4	D
전남	나주외9	나주배조합 공동법인	전남배육성	5팀	F	F	D0	5	E
전남	순천외7	순천조합 공동법인	전남동부과수 육성	2팀	C0	D+	F	4	D
전남	해남외11	한국참다래 유통	한국참다래 육성	4팀	C+	C0	B+	3	B
경북	경산	자인농협	경산과수육성	3팀	C+	C+	D0	3	C
경북	경주	경북농금 경주지소	경주과수육성	5팀	C+	D+	D+	4	C
경북	군위외1	경북농금 군위지소	군위·구미 사과육성	4팀	C0	D+	D0	4	C

시도	시군	사업주체	사업명	평가팀	절대 평가결과				상대평가 (등급)
					계획 (10)	집행 (50)	성과 (40)	합계 (등급)	
경북	김천	남면농협	김천과수육성	4팀	C+	B0	B0	2	A
경북	문경외1	경북농금소 문경지소	문경·상주 과수육성	4팀	C+	D+	C+	3	C
경북	봉화	봉화조합인 공동법인	봉화과수육성	2팀	B0	C+	B+	2	A
경북	상주	상주조합인 공동법인	상주과수육성	4팀	C0	D0	B+	3	C
경북	성주	성주조합인 공동법인	성주과수육성	3팀	B+	B0	B+	2	A
경북	안동	경북농금소 안동지소	안동과수육성	1팀	C+	D+	C+	3	C
경북	영덕	경북농금소 영덕지소	영덕과수육성	1팀	C0	D+	D+	4	D
경북	영주	경북농금소 영주지소	영주과수육성	2팀	B0	B0	A0	2	A
경북	영천	영천농협	영천과수육성	5팀	C0	D+	F	4	D
경북	예천	경북농금소 예천지소	예천과수육성	2팀	C+	C+	D+	3	C
경북	의성	의성조합인 공동법인	의성과수육성	1팀	B0	B0	D0	3	B
경북	청도	청도농협	청도과수육성	3팀	B0	D+	D0	4	C
경북	청송외1	경북농금소 청송지소	청송영양과수 육성	1팀	C0	F	D0	4	D
경북	칠곡	경북농금소 성주지소	칠곡과수육성	3팀	C0	C+	D0	3	C
경북	포항	기계농협	포항과수육성	5팀	D+	F	D0	5	E
경남	김해	김해조합인 공동법인	김해단감육성	5팀	C0	C0	F	4	D
경남	밀양	얼음골 마케팅영농	밀양얼음골 사과육성	3팀	C+	D0	F	5	E
경남	사천	사천농협	사천과수육성	2팀	C0	C0	F	4	D
경남	거창외2	(주)NH유통	경남서북부 과수육성	1팀	C0	C0	D0	4	C
경남	진주	진주조합인 공동법인	진주과수육성	2팀	C0	C0	F	4	D
경남	창녕	창녕농협	창녕단감육성	3팀	C+	C0	D+	3	C
경남	창원	창원조합인 공동법인	창원단감육성	5팀	B0	C+	C+	3	B
경남	하동	하동농협	하동과수육성	2팀	D+	D+	C+	3	C
경남	함안	삼칠농협	함안과수육성	5팀	D+	D0	F	5	E
제주	제주외1	제주감협	제주감협 감육성	4팀	B0	C+	A0	2	A
제주	제주외1	제주조합인 공동법인	제주농협 감육성	4팀	C+	C+	B0	3	B
전국	전국	한국과수 농협연합회	전국과실 브랜드육성	1팀	D+	C+	A0	2	제외



제 Ⅲ 부

---

**사업별 평가 보고서**



## 울산광역시·경기도·강원도

1. 울산 울주과수육성사업 ..... 47
2. 경기 앞맞춤과수육성사업 ..... 62
3. 강원 원주과수육성사업 ..... 78





1(5-10)	울주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배                      (보조) 단감	선정년도	2005
사업주관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업시행주체	울산원예농업협동조합
참여시군	울주군		
득점현황	<b>합계 (100)</b>	4등급	
	계획단계(10)	D+	
	집행단계(50)	D+	
	성과단계(40)	F	

## 1. 총괄

### 사업체 일반현황

- 울주지역은 배 주산지로서 전국 배 생산량의 5%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임.
- 울주지역에서는 울산원협과 서생농협이 주로 배를 취급하고 있으며 울산원협에서는 공판장을 운영하여 농가들에게 편의 제공.

### 핵심성과

- 품목광역조직인 울산원예농협과 FTA기금사업의 연계추진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의 집중지원.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07년 7월에 울주과수연합사업단에서 울산원예농협으로 사업시행주체를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시행주체가 품목농협으로서 사업역량 발휘가 중요하며, 도시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울산배의 특화품목화를 추진해야 함.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주지역의 배 생산규모는 1,600ha이며 생산량은 34,000톤 규모로 전국적인 배 주산지임.</li> <li>국내시장으로는 울산원예농협 공판장이나 영남권 시장에 주로 출하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적인 주산지의 명성에 부합하는 내수시장의 판로 다변화를 통한 배 수취가격 향상을 도모</li> <li>준비중인 APC의 설치 및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전 체계 정비 등 사전노력 경주</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산원예농협과 행정간 협의 체계는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시행주체의 역량은 아직까지 미흡</li> <li>시행주체에서는 FTA사업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인 사업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li> <li>울산원예농협 내 FTA전담인력 배치가 미흡</li> <li>수출단지에 대한 관리 지도능력은 우수하나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농가정예화 노력이 미흡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과 시행주체간 협의를 통하여 FTA사업 목표에 대한 상호 공유 및 명확한 업무 역할분담체계 구축 필요</li> <li>시행주체가 주도하는 사업추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li> <li>울산원예농협 내에 FTA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업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를 높여야 함.</li> <li>정예농가 육성을 통한 FTA사업과 유통사업의 계열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집행율은 69%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임.</li> <li>특히 상반기 집행실적이 없으며 불용예산이 72백만원이 발생하여 예산집행을 제고 노력이 필요</li> <li>사업대상자 선정이 매우 지연되어 문제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사업에 대한 농가 설명회 등 사전 홍보 강화</li> <li>사업대상자 선정시기를 앞당기고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조기 예산집행을 위한 시행주체 및 참여조직간 협의 체계 구축</li> <li>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사, 중간점검을 통한 사업예측성 강화</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산원예농협과 서생농협이 주요 배 취급 농협이나 조합간 마케팅 통합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주체인 울산원예농협은 참여조합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FTA 사업 뿐만 아니라 마케팅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4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D+</b>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D0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D0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0
	<b>집행단계 소계</b>	<b>50</b>	<b>D+</b>
집 행 단 계  I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b>14</b>	C0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C+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C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C+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1.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b>10</b>	C+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60	
③ 출하약정 주체	2	2.00	
④ 출하약정기간	1	0.2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D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C0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3.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3.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D+
	① 예산집행률	10	6.09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D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D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0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0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5.42	
<b>성과단계 소계</b>		<b>40</b>	<b>F</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D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F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0.64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2	1.87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53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1.27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3	0.4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3	D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0.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0.37
	⑨ 기타 사업실적	1	0.64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C+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0.00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F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12
	② 교육 횟수	1	0.57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D0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C0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비계량	0.00 F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C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과수발전협의회가 자문회의를 대체하여 운영되었으며 일부 유통 전문가 등을 포함해서 운영됨.
- 단 과수발전협의회 자문위원들이 자문기능을 수행한 실적은 없으며 사업 대상자 선정 등 각종 사업추진 심의, 의결 기능 수행에 초점을 맞추었음.
- 농업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1회, 견학, 교육 등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의 실적은 우수함.
- 다만, 자문회의를 통한 과수산업발전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개선이 요구되며 주요 분야 전문가 참여를 추진하고, 회의 및 E-Mail, 서면자문 등 의견 청취통로를 다양화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야 함.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행정과 시행주체간 2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시행주체 변경 및 기타 사업 추진 관련 실무 회의 개최는 양호함.
- 그러나 사업시행주체와 참여조직간 회의실적이 부재하며 이는 곧 공동마케팅 등에 대한 회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행정과 시행주체간 협의 체계를 더욱 더 공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시행주체와 참여농협간 협의 체계를 구축해야 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평가점검결과에 대한 개선실적은 일부 이루어졌으나 자문회의의 경우 형식적인 외부전문가 선정 및 회의 운영 등으로 내실 있는 회의 체계 구축이 필요
- 출하약정이행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시행주체와 참여조직간 잦은 회의 체계를 마련해야 함.

나. 집행단계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			
시·군		○	○	○		◎	
읍·면	○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합	○	○		○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사업시행주체가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FTA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짐.
- 시행주체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지도점검, 1차 정산 등에서 시행주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행정, 참여조직간 역할분담 계획을 수립해야 함.

② 1,2순위 준수여부

- 신청서 상에는 1, 2, 3순위까지 구분하여 접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07년 사업의 경우 1순위 농가가 없어 분리하여 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음.
- 1, 2순위를 구분하여 접수하는 것은 지원과 출하를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신청단계부터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약정”농가를 1순위로 구분하여 분리·평가해야 함.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농가를 우대함으로써 농가조직화 및 유통규모화를 위한 확고한 기반마련이 필요하며, 농가 참여도 제고와 책임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행주체 판매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정부정책수용성 지표 중 수출, 친환경, 과수재해보험 참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통규모화 지표에서 계통출하실적, 공동선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양호함.
- 우선순위 심사표의 심사항목별 배점 구간을 좁힐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도 계량화된 실적과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연동될 수 있는 심사표 유지 노력이 필요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신청 농가 대비 선정률은 63%로 실질적인 심사 결과가 반영되어 있음.
- 심사결과를 보면 전 점수대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40점 미만은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강한 원칙을 가지고 사업 시행.
- 다만 60점 미만에 가장 많은 농가들이 분포하고 있어 하향 평준화된 사업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또한 동점자 발생에 대비하여 실적 등과 연계하여 점수를 차등 부여할 필요가 있음.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사업대상자 선정이 '07년 6월에 최종 선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행정절차 이행이 미흡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년도말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교부 결정, 선정통보 등 관련 행정절차를 조기에 진행하여 영농철 이전 사업이 개시되도록 노력해야 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미개시자가 3명 발생하여 사업포기 각서를 징구하고 향후 FTA지원사업 배제됨을 공지함



- 시행주체, 참여조직, 행정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미개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하고 농가들을 독려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노력 필요.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출하약정서에 FTA사업 지원배제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울주군에서는 해당 사항 없음.
- 출하약정서 뿐만 아니라 신청서 및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동일한 내용을 명기하여 농가들이 중도포기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사항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예비대상자를 20% 선정하여 중도포기 물량에 대해 사업자 변경 조치 시행
- 예비대상자의 경우 당해 연도 뿐만 아니라 차년도 우선권을 부여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 지원된 예비대상자를 다음 연도에 우선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 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61	33	54	753	133	17.7	울주과수발전연합사업단	1
'06년	111	56	50.4	2,770	357	12.9	"	1
'07년	23	23	100	1,097	877	80.0	울산원예농협	1
계	195	112	68.1	4,620	1,367	36.8		

- 사업대상농가 100%가 출하약정을 체결하였음.

##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출하약정은 생산량의 80% 이상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07년 80.0%로 전년 12.9%에 비해 적정화되었음.

## ③ 출하약정 주체

- 시행주체인 울산원예농업협동조합과 체결하여 적정함.

## ④ 출하약정기간

- 출하약정기간은 1년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약정기간을 5년 이상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농가가 장기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출하약정서 상에 향후 3년간 FTA기금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브랜드 사용권, 시행주체의 사업에서 배제됨을 명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규정이나 인센티브 방안은 없음.
-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페널티 사항을 명확히 하여 출하약정이행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사업추진 실적이 없음.
- 구매 물량 규모화를 통한 교섭력 확대가 가능한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일괄구매를 실시해야 함. 지역 여건을 고려하되 우수 업체를 대상으로 비교견적, 혹은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단가 인하와 우수한 품질의 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과수발전협의회에서 업체 선정을 추진하였으며 평가지표에 따라 각 업체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양호함.

- 향후에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업체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업체 선정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하여 시공업체에 대한 품질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시행하여 업체에 대한 서비스 개선조치, 차후 사업참여 불가 원칙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방풍망과 관수시설에 대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조정(방풍망은 인하, 관수시설은 인상) 하였음
- 전국 표준 단가를 그대로 활용하기 보다는 매년 주요 사업에 대한 단가를 현실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	-	-	-	-	-	-	-	-	-	-%
기타사업	-	-	228	228		35	128	156	-	72	69%
<b>합 계</b>	-	-	<b>228</b>	<b>228</b>		<b>35</b>	<b>128</b>	<b>156</b>	-	<b>72</b>	<b>69%</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업 규모가 228백만원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은 69%로 미흡하며 특히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 예산집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시기를 앞당겨 상반기 조기집행을 유도해야 할 뿐 아니라 전액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
- 향후에도 조기에 사업을 개시하여 집행율을 높이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 관리에 있어 지속적 관리가 요구됨.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사업시행주체와 울산시, 울주군 등 주관기관 간 합동 사업추진 점검을 통하여 사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조기 사업추진을 독려하였고 미개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이 양호함.
- 향후에도 사업지도를 위한 농가방문 및 사업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업추진 진도를 수시로 파악하여 농가를 독려해야 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사업신청시 용자희망여부를 파악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 심사를 할 때 대출가능여부 등 사전 신용조회 실시하였음
- 용자예산을 희망하는 농가 중에서 용자예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주체에서 사전 홍보 등에 더욱 노력해야 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통상적인 지자체 지원사업은 있으나 효과적으로 연계된 지원사업은 없음.
- FTA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대상농가를 정예농가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시행주체의 자체지원사업 등과 연계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농식품부 등 기관의 점검 지적사항 미이행 없음
-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및 제출 후 수정, 허위사실 기재 없음
- 보고서류 제출 지연(-5.42점) : 미제출 4건(-4점), 지연일 142일(-1.42점)
- 향후에는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에서 주관농협인 울산원예농협으로 사업시행주체를 변경하였으며 총무계에서 겸직으로 FTA관련 사업업무 추진.

- 전담인력의 경우 FTA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438	133	268	30%
2006년	357	243	503	68%
<b>2007년</b>	<b>877</b>	<b>188</b>	<b>378</b>	<b>21%</b>
계	1,672	564	1,149	33%

- 시행주체 변경 이후 출하약정에 대한 농가 이해 부족으로 농가 약정이행률 저하. 약정이행율이 21%에 불과하여 출하약정의 실질화와 이행 확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791	830	4%	1,412	1,757	24%

- 취급물량의 4%, 취급액의 24%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1,250	1,412	1,757	12.9%

- 사업실적이 전년 대비 12.9% 증가에 그쳐 사업실적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율(B/A)
실적(백만원)	1,757	1,274	72%

- '07년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은 72%로 우수하나 취급실적 확대를 통한 유통규모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D-C)/C
663	574	-	1,180	1,274	7%

- '06년 대비 '07년 실적 증가율이 7%에 그쳐 향후 사업에서는 유통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실적 증대에 대한 노력이 요구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울산보배" 공동브랜드가 개발되어 있으나 활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시행주체에서는 공동브랜드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을 확립하고 브랜드 사용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통해 브랜드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율(B/A)
사업실적(백만원)	1,757	0	0%

- 공동브랜드 사용이 전혀 안 되고 있어 공동브랜드 사업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C-B)/B
조합원수(명)	150	123	126	2.4%

- 지역 과수 생산기반에 비교하여 유통사업 참여 농가수가 매우 적음.

- 유통규모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예농가 위주로 참여농가수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사업 규모화와 체계적인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순 계통출하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⑨ 기타 사업실적

- 농자재 및 포장재 판매사업, 울산원예농협 공판장 사업 실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소 증가 추세임. 특히 공판장 실적의 경우 06년 대비 13.4% 정도 성장하였음.
- 농가의 소득증대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확대가 필요함.

###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대상농업인, 비농업인 모두에게 FTA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양호함.
- FTA사업 만족도 뿐만 아니라 자재 및 시공업체 등에 대한 품질만족도 조사도 병행하여 농가실익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실적이 없음.
- 자체평가를 통하여 FTA사업 전반에 대한 애로점 및 문제점을 발굴하여 익년도 사업에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필요할 경우 자체평가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사업시스템 및 과수산업에 대한 진단을 받을 필요도 있음.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울산원협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기술 및 유통교육을 4회에 걸쳐 약 234명을 대상으로 추진.
- 수출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을 겨냥한 정예농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참여조직과 시행주체 간 교육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울산원협에서 배 재배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나 '03년 이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배 재배매뉴얼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재배매뉴얼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매뉴얼 개발 필요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07년 약 800톤 규모의 배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외 전반적인 사업 성과가 미흡하므로 총 사업 실적의 규모화 된 경영 및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사업시행주체와 행정간 업무 추진 노력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사업시행주체는 참여조직을 총괄하여 FTA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전반에 대한 이해와 조정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임.



2(2-01)	앞맞춤과수산업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포도, 배 (보조)	선정년도	2004
사업주관기관	경기도	사업시행주체	앞맞춤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시군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안산시		
득점현황	합계 (100)	1등급	
	계획단계(10)	B0	
	집행단계(50)	B+	
	성과단계(40)	A0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앞맞춤조합공동사업법인은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안산시 등 경기남부 배·포도 주산지역을 포괄하는 3개 품목농협과 9개지역농협, 안성맞춤조합공동사업법인을 참여조직으로 사업 운영.
- 배는 경기도 생산량의 55.8%, 포도는 66.6%를 차지하여 상당한 사업기반을 갖추고 있음.
- '04년 안성맞춤배, '05년 경기남부배, '06년 경기남부포도가 각각 지정되었으나 '06년부터 "앞맞춤과수육성사업"으로 통합하여 도단위 사업으로 추진.

### □ 핵심성과

- 경기도와 경기농협이 공동기획하고 농협-농업인이 공동 실행하는 도단위 공동마케팅 사업모델로써 글로벌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음.
- 지역특성화교육사업과 연계하여 안정적 사업 확장의 핵심 요소인 농가조직화를 탄탄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의 농업교육훈련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획득함.
- 농식품부의 과실브랜드육성사업 및 공동마케팅조직 육성지원사업과 지방정부의 선택형맞춤농정, 앞맞춤 육성사업, 농협중앙회의 지역자율추진사업을 총체적으로 결합하여 사업성과를 올리고 있음.

- 체계화된 공개평가 방식에 의한 시공업체 선정(전국 벤치마킹사례로 소개) 및 평가를 실시하고 농가가 사업 진행 중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업체가 지자체나 농협에 대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사전에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집행체계가 뛰어나 .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04년부터 시군 단위로 지정받았으나 '06년부터 도단위 광역연합사업으로 일괄 통합하여 시행함.
- 경기도-경기농협 협력사업으로 배·포도 일괄 시행.
- '08년 3월 사업시행주체의 법인화가 완료되었으며, 법인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해 해결할 과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
- 앞맞춤은 우수 과실브랜드로서 적극적인 홍보활동,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나 소비자에 대한 브랜드 노출빈도가 상대적으로 출하시기와 유통되는 판매장에 집중이 되어 있음.
- 향후에는 시장을 다변화하고 유통망의 확장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를 통해 노출빈도 증가를 모색하거나 판매장 중심의 홍보 판촉활동을 보다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출사업 역시 시장다변화의 한 방안으로 볼 수 있으며 시장다변화, 유통망 확장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출사업의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는 경기도 생산량의 55.8%, 포도는 66.6%를 차지하여 생산기반이 뛰어남.</li> <li>거점APC가 완공되어 운영되는 등 상품화 기반도 뛰어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주체가 사업초기 우수한 사업량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이를 확충하여 명실상부한 지역대표 과수사업단으로 발전되어야 함.</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경기농협-농업인 협력체계 및 자문위원회, 전문기관 컨설팅 등 지원조직 환류체계 우수함.</li> <li>정책사업지원과 연계한 법인화가 완료되었으나 시기가 늦음.</li> <li>출하약정 이행율이 '06년 28.4%에서 '07년 61.0%로 개선되었으나 제재실적 등은 미흡.</li> <li>사업 추진체계가 매우 우수한 조직이나 보고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연합사업단의 사업성과와 추진 의지가 법인화로 인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법인 중심의 사업체계 구축 및 이를 위한 관계자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li> <li>출하약정 이행율 제고 및 미이행 농가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우수 농가 인센티브 제공이 확대되어야 함.</li> <li>보고 서류의 기일을 엄수 및 관리 강화 요망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집행을 및 조기집행을 우수.</li> <li>사업신청량이 사업량에 비해 충분히 많지는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수 사업자로서 사업량이 계속 확대되므로 지속적 사업확장 및 사업메뉴의 다양화가 요구됨.</li> <li>사업자 선정 이후 교부결정, 통보 등 행정절차의 조기 이행 필요.</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체간 협의 및 연계가 우수하나 일부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관행적인 약정서류 등을 사용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성시의 사업약정서를 시행주체가 제공하는 표준양식으로 전환하여, 약정 미이행 농가 등에 대한 일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b>총 계</b>	<b>100</b>	<b>1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B0</b>
계 획 단 계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자문 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B+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B+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B0
	<b>집행단계 소계</b>	<b>50</b>	<b>B+</b>
집 행 단 계  I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B+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1.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B+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B+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1.0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1.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62	
③ 출하약정 주체	2	2.00	
④ 출하약정기간	1	1.0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B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B+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5	5.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3.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A0
	① 예산집행률	10	9.66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B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A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1.46	
<b>성과단계 소개</b>		<b>40</b>	<b>A0</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3	B+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22	B+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2.80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3.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제류만 해당	3	1.09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2.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2.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B+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3.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3.00
	⑨ 기타 사업실적	1	0.5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2	B0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2	1.94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5	A0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1.00	
② 교육 횟수	1	1.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A0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A0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4.79	
	비계량	B+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B+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연합사업 전반 및 세부사업별로 맞춤형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농업특성화 교육을 연계 시행하며 농업인 의견 수렴하였음.
- 연합사업 추진과 재배기술, 시설 도입 및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정례화 된 전문가 자문 및 농업인 의견수렴이 매우 우수함.
- 다만, 집합교육이나 회의형식의 자문과 동시에 특정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개별면담, 전화,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4개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브랜드 마케팅사업을 추진하며 경기도와 경기농협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농협과 농업인이 공동으로 실행하는 안정적 사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경기도, 경기농협 외 참여시군 및 농협, 농업인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하고 있으며 실무협의는 월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기타회의는 사업진행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어 매우 우수한 사례임.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개선실적이 우수함.
- 사업단에서 약정서 및 사업신청서의 기본 양식을 제공하였음에도 일부 시군에서 이를 따르지 않고 별도의 문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출하약정 미이행농가에 대한 대책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안성시는 출하약정서를 사업단에서 제시된 표준양식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 사업단내에서의 통일이 필요함.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역할분담도>

구 분	신청서 접수	현장 심사	우선순위 심사	지도 점검	1차 정산	최종 정산	시공업체 선정	시군자체 평가	농가교육 설명회
시·도				○			○	○	○
시·군	◎	◎	○	○	◎	◎	○	○	○
농업기술센터							○		○
읍·면	◎	○							○
사업시행주체	○	○	◎	◎	○		◎	◎	◎
참여조합	○	◎							○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사업단은 총괄적인 계획수립에서 집행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하고 있으며,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시공업체선정, 농가교육사업을 주도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음.
- 다만, 도 단위 광역사업으로 예산배정이 시·군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신청서 접수, 현장심사 및 정산을 해당 시군의 주관하에 참여조합 및 읍면이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주체와 지자체의 협력을 증대하여 사업시행주체의 역할을 증대하여야 함.

## ② 1,2순위 준수여부

- 사업참여 자격을 100%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 농가로 한정하여 1순위자만을 지원하는 등 유통규모화를 위한 노력이 우수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정부정책수용성 지표에서는 공동선별참여(3), 공동계산참여(6), GAP인증(3), IFP 참여(3), 생산이력제 실행(3), 재해보험(3), 저농약이상품질인증(3), 수출(3) 등이 반영되었고. 유통규모화 촉진은 계통출하 및 공동브랜드 참여(30) 등이 반영되어 있어 우선 순위심사표는 대체적으로 우수한 편임.
- 동점자 처리기준이 불분명하나 '08년부터는 후계농업인 유무, 여성농업인 우대 등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음.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07년 신청농가의 80%수준에서 농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의 점수가 단계적으로 부여되고 있어 동점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적 등과 연계하여 점수를 차등 부여할 필요가 있음.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대상자 확정은 '06년 12월 중에 이루어졌으나,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은 안성시를 제외하고는 '07년 2월말에 이루어져 다소 늦은 감이 있으므로 과수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조기 선정, 통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사업 시행계획을 통보('07.3.2)하며 4월말까지 미착공시 사업대상 선정이 취소됨을 명기하고, 일제 조사 및 미개시자 조치를 적정히 처리하는 등 매우 우수함.

##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중도포기자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대상자로 대체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였음.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안성시 및 안산시 선정 취소자를 사전에 선정한 예비대상자로 교체하여 사업 시행하였으나, 미 지원된 예비대상자는 다음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 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 정 주 체	④ 약 정 기 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44	44	100	2,228	1,774	79.6	사업시행 주체	1
'06년	771	771	100	5,830	4,765	81.7	사업시행 주체	1
'07년	327	327	100	2,578	2,082	80.8	사업시행 주체	5
계	1,142	1,142	100	10,636	8,621	81.1	-	

- 사업신청시 출하약정을 의무화하여 지원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약정 체결하여 양호함.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출하약정서에 예상생산량 및 약정량을 명시하고 있으며, '07년 약정물량 비율은 80.8%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③ 출하약정 주체

- 출하약정은 시행주체인 "경기농협연합사업단"으로 하여 적정하게 체결하였으나 법인이 설립되었으므로 추후에는 잎맞춤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출하약정을 갱신하는 등 법인중심체제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④ 출하약정기간

- '07년부터 5년으로 조정하여 유통규모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출하약정서에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사업에서 배제함을 명기하고 있으나 안성시의 경우 이를 명기하지 않은 기존양식의 약정서를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사업단 자체의 '잇맞춤 브랜드 관리규약'에 별도의 제재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실적은 없으며 우수농가 인센티브 실적은 있음.
- 지원농가에 대한 출하약정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미출하 농가에 대한 패널티 부여를 실질화하여 출하 및 마케팅 물량 확대와 농가 충성도를 확보하도록 해야 함.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자재 일괄 구매를 위하여 특정 자재(필름)의 분리 구매를 추진하였으나 시공단가 상승으로 중단된 바가 있지만, 시행주체 및 참여조직간 협력으로 주요 자재를 공동구매 함으로써 농가 부담 경감과 우수 품질의 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추진이 필요함.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특히, 객관적 선정기준 마련, 서류평가와 공개평가를 거치도록 한 2단계 선정방법, 평가시 품질개선 및 계약조건 조정이 가능토록 한 점은 매우 우수한 사례임.
- 업체 선정 과정과 관리 방식에 대한 모범 사례로서 타 지역 전파가 필요함.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단가조정위원회를 통해 서해안 지역의 강풍을 고려하는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적정 사업단가를 적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 노력이 우수함.

##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
기타사업			2,460	2,460	1,303	633	442	2,378		82	96%
<b>합계</b>			<b>2,460</b>	<b>2,460</b>	<b>1,303</b>	<b>633</b>	<b>442</b>	<b>2,378</b>		<b>82</b>	<b>96%</b>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생산기반조성											%
거점APC											%
과실브랜드			400	400		320	80	400			100%
<b>합계</b>			<b>400</b>	<b>400</b>		<b>320</b>	<b>80</b>	<b>400</b>			<b>100%</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율이 96%로 우수한 편이나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집행을 제고를 위한 점검회의 및 현장 출장을 통한 독려노력이 돋보이고 평가회와 교육사업을 통한 노력이 인정됨.

### ③ 융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사업대상자 확인이전에 사업참여 농협(대출기관 겸합)을 통한 사전 신용조회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융자예산 집행으로 타지역 미사용 융자금을 전배받을 정도로 우수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경기도의 잎맞춤 광역공동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및 거점APC 지원사업은 잎맞춤 사업단을 선택하여 집중 육성하는 대표 사례로 평가되나, 포장재 지원사업이나, 선별장 지원, 비가림 장려금 등은 FTA기금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움.
- 향후에는 자체 사업과 FTA기금사업 연계를 강화하여 선택과 집중의 과수 산업 육성이 필요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농식품부 등 외부기관의 점검 지적사항은 없으며,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및 제출 후 수정, 허위사실 기재 없음.
- 보고서류 제출지연(-1.46점) : 미제출 0건(0점), 지연일 176일(-1.76점), 조기일 30일(+0.30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잎맞춤조합공동사업법인의 등기를 완료('08.3.28)하였으나 법인설립 초기로 기존 경기농협연합사업단과 협력하여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는 등 아직까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실질적인 유통주체로서 자리매김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중앙회(지역본부) 주도적 사업 구조로 참여농협의 사업추진 의지가 다소 미약한 면이 있으므로 법·제도 개선 추이를 살피 적절한 법인격(중앙회 출자) 및 사업추진체계 보완을 마련해야 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1,774	1,303	2,504	73.5%
2006년	4,765	4,483	8,828	94.1%
<b>2007년</b>	<b>2,082</b>	<b>1,943</b>	<b>4,141</b>	<b>93.3%</b>
계	8,621	7,729	15,473	89.6%

- '07년 약정량 2,082톤 대비 출하량 1,943톤은 93.3%로 다소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출하약정 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592	1,231	108%	1,786	3,645	104%

- '06년 신규사업단으로 출하액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	1,786	3,645	104%

- '07년 사업실적이 전년대비 104% 증가하는 등 매우 우수하므로 지속적으로 사업실적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④ 공동선별, 공동계산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3,645	3,645	100%

- 사업량 전체에 대한 공동선별·공동계산을 실시하여 유통규모화를 위한 노력이 매우 우수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 량기준(톤)			금 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D-C)/C
592	1,231	108%	1,786	3,645	104%

- '07년 사업실적이 전년대비 108% 증가하는 등 매우 우수하므로 지속적으로 유통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실적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잎맞춤 브랜드를 '06년 12월 특허청에 등록하였고, 사업량 전체를 '잎맞춤' 브랜드로 출하하는 등 활용실적이 우수하며, 품질고급화 추진 및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언론노출과 홍보에도 노력한 성과가 인정됨.
-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정기적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적시 이벤트로 보다 효율적인 판촉 방안을 마련해야 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C-B)/B
사업실적(백만원)	-	1,786	3,645	104%

- 사업량 전체를 공동브랜드 활용하여 출하하는 등 매우 우수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0	485	585	20.6%

- 안정적 사업확대 및 지속적인 교육사업으로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이 높으나 유통규모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예농가 위주로 참여농가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⑨ 기타 사업실적

- '07년도 포장재 공동구매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농가의 비용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사업확대가 필요함.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시공업체 만족도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농업인, 농협, 행정 등 154명 참여)를 매년 실시하였으며, 업체별 점수를 산출하여 차년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음.
- 다만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농가 만족도조사는 실시하였으나 결과활용이 미흡하므로 환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 및 전문컨설팅 업체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 제시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환류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출하약정 이행률(56.5%)이 다소 낮은 수준이므로 미이행 농가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이행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출하 확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공모를 통해 농식품부 지역특성화교육사업('07년 560백만원)을 진행하였으며, 동 사업평가에서 A등급 획득, 국정브리핑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농가 맞춤형 교육으로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접목되어 우수사례로 인정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농가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사진 자료 삽입 등 2차 업데이트 초고 작업중에 있고, 재배일지와 생산·유통매뉴얼을 바인더식으로 제작하여 상시적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하고 ERP와 연계한 환류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 우수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출하증가율(104%)이 우수하고, 예산 조기 집행율도 다소 우수함.
- 품목 특성상 물량이 집중 출하되는 명절 선물세트의 전략적 아이템 적용을 통한 상품 차별화로 시장 성과 획득, 썬키스트에 버금가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음.
-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시공업체 선정시 전국우수사례로 선정, 58개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참관.
- 농식품부 지역특성화교육, 경기도 선택형맞춤농정 등 정책사업을 연계 실시하고 있으며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한 ERP시스템 개발 우수함.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과 거점APC, 과실브랜드 사업, 지역특성화 교육을 결합하여 추진하는 시행주체의 의지와 열의가 뛰어나며 경기도 및 경기농협의 협력도도 높게 평가됨.
- 안성 거점APC의 물량 확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 시행주체, 운영조직간의 협력과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3(401)	원주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배, 복숭아	(보조)	선정년도	2007
사업주관기관	원주시	사업시행주체	원주원예농협	
참여시군	원주시			
득점현황	합계 (100)	5등급		
	계획단계(10)	D+		
	집행단계(50)	F		
	성과단계(40)	F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동 사업은 원주원예농협이 사업시행주체가 되어 관내 준고랭지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는 배, 복숭아를 주품목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 '07년 신규사업자로 고품질 생산기반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총 사업비 432백만원을 투자하여 관수관비시설 외 7종의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음.

### □ 핵심성과

-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기반 확대 및 우량품종 갱신으로 브랜드화 및 농가 소득 증대 기반 확충.
- '07년 첫 사업으로 FTA사업에 대한 농가 이해 증진과 원주원협 중심의 브랜드마케팅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사업시행 첫해로 사업관리 체계 미구축과 농가들의 FTA기금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당초 사업비 216백만원 중 155백만원을 이월하여 예산집행률이 22.9%로 매우 저조함.
- 향후 체계적인 사업관리과 선진사례 습득, 행정과 원주원협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의지, 명확한 역할분담으로 예산집행률을 높여야 함.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악산 일대의 준고랭지 지역을 중심으로 배, 복숭아 재배가 집단화되어 있으나, 농가 고령화, 비선호 복숭아 품종 다수 등으로 소비자 기호변화에 대응 미흡.</li> <li>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한 과수원 축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장년, 정예농가 중심으로 특성화된 주품목(복숭아, 배) 육성 필요함.</li> <li>공동브랜드 품질관리 조례 제정, 공동선별·공동계산 조직 육성 등 치악산 브랜드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 강화 필요.</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와 원협의 역할분담 미흡. 특히 원협의 실질적인 사업주도력과 사업관리 역량이 미흡함.</li> <li>전반적인 사업추진 체계가 미흡하여 시에서 주도하는 최소한의 행정적 절차가 이행되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과 시행주체간 협의를 강화하고 과수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실질적 의사결정체, 농가의견 수렴 창구로 운영.</li> <li>시행주체가 단순 공판장 운영에서 탈피하여 공동선별·공동계산을 포함한 체계화된 판매사업을 운영해야 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확정이 4월 이후에 되어 전체 사업 및 예산집행이 지연.</li> <li>FTA사업지침을 잘못 해석하여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사업추진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했음.</li> <li>생산시설현대화사업 집행율이 22.9%에 불과하여 극히 저조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추진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므로 특단의 개선노력이 필요. 첫째 사업으로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적극적인 벤치마킹과 지침이해 노력조차 부족했음.</li> <li>사업담당자의 관심, 집행 의지, 사업 진행과정의 모니터링과 효과적인 사업 추진 노력이 필요.</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주시-원주원협 단일 사업으로 원협소속 작목반 이외 참여조직이 없음.</li> <li>지역내 과수출하조직의 참여가 원활하지 않고, 지역내 협의가 극히 부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주시 과수산업 기반이 축소되는 속에서 복숭아, 배 중심의 적극적 조직 참여가 필요.</li> <li>지역농협, 연합사업단 등 체계화된 판매사업 조직을 아우르는 지역 협력 방식을 모색해야 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5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D+</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D0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C0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F</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D+</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D0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D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D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C+</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61	
③ 출하약정 주체	2	2.00	
④ 출하약정기간	1	0.2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0.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0.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F
	① 예산집행률	10	2.29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D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D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D0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D0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04	
<b>성과단계 소계</b>		<b>40</b>	<b>F</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3	D0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22	F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3.00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0.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00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0.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0.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C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0.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0.00
	⑨ 기타 사업실적	1	0.8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2	F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2	F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5	F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05	
② 교육 횟수	1	0.29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D0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F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0.11	
	비계량	F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D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FTA사업을 원주시 과수산업발전과 연계한 종합계획 부재. 행정과 사업시행주체 모두 FTA사업의 추진목적과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미흡.
- 사업계획 수립시 자문회의 미활용 (자문회의 미구성. 활용실적 없음)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획단계 사업 수요 및 의견 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업 전반의 내실을 기해야 하며 특정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개별면담, 전화,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농가 의견수렴도 시기, 횟수, 내용 등 모두 불충분. (사업시행지침 오해석으로 인한 사업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농가 의견수렴 회의 1회 실시).
- 행정, 사업시행주체 모두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지역과수산업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필요.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행정, 사업시행주체 모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며 연 2회 단순 협의에 그침.
- 시와 원협간에 FTA사업 추진을 위한 보다 명확한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과 사업인력의 확대가 시급하며,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직간 협의회와 담당자 실무위원회, 농가조직 운영위원회 등으로 체계화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명확화와 조직간 협력을 강화해야 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07년 신규사업자로 해당사항 없음.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	
시·군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합	○	○	○	○	○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사업주관기관인 원주시가 신청서 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정산까지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시행주체인 원주원협은 우선순위 심사의 보조 역할만 담당.
- 사업기관별 역할분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원주원협의 역할이 극히 미약.
- 따라서 총괄적인 계획수립에서부터 집행까지 모든 업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사업단인 원주원협이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단, 사업시행주체가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되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조직간 협력 및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함.

#### ② 1,2순위 준수여부

- 1,2순위 구분 없이 사업신청과 심사가 이루어져 개선이 필요함.

- 1, 2순위의 구분은 사업에 지원하는 농가와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를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신청서 접수단계에서부터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우선순위 심사표에 공동선별·공동계산, 친환경, 재해보험가입 등이 빠져 있고,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미흡함.
- 표준 심사표를 지역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 정책 수용성, 유통규모화 촉진, 기타 합리적 기준을 고루 반영하여 계량화된 실적과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연동될 수 있는 심사표 도입이 필요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품종갱신은 신청자 전원이 선정된 반면, 시설사업은 65점 이하 농가비율이 51%로 하위 점수에 상당수의 농가가 편중되어 있고, 동점자 처리기준에 빠져 있는 등 우선순위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짐.
- 변별력확보를 위해 심사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 역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 방안 마련이 필요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우선순위 심사는 '06년 12월에 완료되었으나 선정을 위한 원주시 농정심의회가 '07년 3월에 실시되어 선정이 지연되었으며 교부금 통지가 '07. 4월 17일 이루어짐.
- 대상자 선정을 전년도 연말까지 완료하여 영농철 이전에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및 보조금교부결정 역시 지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1차 보조금 교부 통지가 '07.4.17. 시행으로 사업추진 지연되었고 개별통지 후 미개시자에 대한 종합적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업추진 독려 공문 발송(7.18) 등 노력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미흡.

- 사업 조기 추진 및 2개월 경과 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분석을 통한 대응조치 강화 필요.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중도포기시 향후 FTA사업에서 제외됨을 출하약정서에 명시하였고, 장기 미개시자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의사를 확인한 후 포기각서 작성 유도하여 30명으로부터 사업포기각서를 받은 점이 우수함.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예비대상자 11명을 선정하였으며, 중도포기자 발생시 후순위자에게 자동 지원되도록 농정심의회에서 결정함.
- 더불어 향후 예비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미 선정된 예비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06년								
'07년	124	124	100	330	265	80.3	원예농협	1
계	124	124	100	330	265	80.3		

- 사업신청시 의무적으로 출하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어 124농가 전체가 출하약정을 체결한 점이 우수하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신청 단계에서부터 출하약정을 의무화하여 지원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약정율이 80% 이상인 점은 인정되지만, 절대적 출하 약정량이 너무 적어 동 사업의 목표인 유통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는 거리가 있음.
- 향후 참여농가확대와 약정물량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③ 출하약정 주체

- 약정주체는 사업시행주체인 원주원협으로 적정하게 체결하였음.

## ④ 출하약정기간

- 약정기간이 약정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5년 이상 장기 약정을 체결하여 농가의 책임성과 체계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행주체 중심의 효과적인 출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약정 이행 또는 불이행에 따른 조치사항을 명문화하지 않았으며 실행실적도 없는 상황임.
- 향후 규모화, 품질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약정이행율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내용을 약정서에 명문화하고 실질적 실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자재일괄구매 추진 실적이 없음.
-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비교견적서 취합, 평가 등을 통해 투명한 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농가비용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해 노력한 실적이 없으며, 향후 시공업체 선정 기준 설정·심사하여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비교 견적, 시공 후 농가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농가 만족도 제고 필요.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관련 실적이 없으며, 향후 사업시행주체와 주관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일괄 단가조정 등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임.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65	65		2.5		2.5	62.5		3.8%
기타사업			151	151		13.5	33.5	47	104		31%
<b>합계</b>			<b>216</b>	<b>216</b>		<b>16</b>	<b>33.5</b>	<b>49.5</b>	<b>166.5</b>		<b>22.9%</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업확정 지연으로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예산집행 실적이 22.9%로 매우 미흡하고, 특히 상반기 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
- 향후에는 사업의 조기 확정과 사업기관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 필요.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시, 원협 모두 FTA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 의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 사업지도를 위한 농가방문 및 사업별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통해 사업추진 진도를 수시로 파악하고 농가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명확하게 하여 예산집행율을 제고하여야 함.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별도의 노력이 없는데, 향후 사전 농가신용 점검을 통해 사업부진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추진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사업신청단계에서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징구하여 사전 신용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원주시는 '07년에 배, 복숭아를 대상으로 포장재 지원사업,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방제지원사업, 명품화사업 등을 시행함. (총사업비 : 413백만원)
- 그러나 FTA사업 대상자 우선지원 등 FTA사업과의 연계성은 미흡함.
- 향후 FTA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와 이를 정책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07.9. 농식품부 지적사항인 약정기간, 선정심사기준에 대해서는 '08년부터 농식품부 표준안을 사용하여 보완하였음.
- '07.9. 강원도 지적사항인 '보식에 의한 품종갱신사업 추진 금지'에 의거 8농가 4,356천원의 보조금 회수 조치 시행.
- 보고서류 제출지연(-0.04점) :미제출 0건(0점), 지연 17일(-0.17점) 조기일 13일(+0.13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원협의 사업운영체계는 담당자 1명 지정(타업무 겸직) 운영. 실질적으로 약정체결 등 일부 업무만 수행.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과수산업의 주도 주체로서 사업역량의 향상이 필요하며, 판매사업 인력 보강 및 FTA기금사업 관리 전담인력 혹은 책임자 업무분장을 실시하여 보다 강화된 사업 집행 관리가 필요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
2006년				%
<b>2007년</b>	<b>265</b>	<b>305</b>	<b>505</b>	<b>115.1%</b>
계	265	305	505	115.1%

- 위 약정 출하액은 모두 원협 공판장으로 출하한 실적으로, 별도로 원협이 품질관리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지는 않았음.
- 출하약정 물량을 바탕으로 단순 계통 출하가 아닌, 체계화된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역량의 향상이 필요함.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	-	%	-	-	%

- 원협 공판장 물량 이외에 원협 차원에서 농가조직, 품질관리, 상품화, 마케팅 기능을 수행하는 물량은 없는 상황임
- 향후 공판장으로 들어오는 물량 외, 별도의 농가조직을 구성하고 공동선별을 통해 상품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임

####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

- 과수부문에서 공판장 운영 이외에 별도의 사업실적 관리는 없음

④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

- 과수부문에서 공판장 운영 이외에 별도의 사업실적 관리는 없음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	-	%	-	-	%

- 과수부문에서 공판장 운영 이외에 별도의 사업실적 관리는 없음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시 공동브랜드인 '치악산' : 상표등록 완료.
- 원주시 전체 농가가 사용 가능
- 브랜드파워 제고를 위해서는 공동브랜드 사용주체를 품질관리가 가능한 주체 또는 FTA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행주체 중심으로 브랜드사용주체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 율(B/A)
사업실적(백만원)			

- 공판장 출하, 단순 계통 출하 이외에 시행주체가 주도하여 품질관리를 시행하는 '치악산' 공동브랜드 판매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 (실적보고서에 기재하였으나 시행주체의 출하실적이 없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를 인정하지 않았음.)
- 향후 공동선별·공동계산제 도입이 필요하며, 행정차원에서의 브랜드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조치가 필요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

- 공판장 출하 이외의 유통사업은 없음
- 향후 유통규모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사업확대 및 지속적 교육사업운영이 필요하며 정예농가 위주로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수를 확대해야 함.

⑨ 기타 사업실적

- 취나물 등 나물류사업실적이 '06년 1,388백만원에서 '07년 1,610백만원으로 16%의 증가율을 보임
- 향후에도 농가의 소득증대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확대가 필요함.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농가만족도 조사, 사업 모니터링 등 의견수렴 실적이 없음.
-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주체와 주관기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회의와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가 필요하며 농가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시행 성과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 개선과 성과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관련 실적이 없음.
- 향후 사업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내실화를 기해야 하며 종합적인 농가 만족도 조사와 시공업체 평가, 유통사업 성과를 검토하고 차년도 예산 집행 및 성과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농가조직화 교육실적은 2회 99명에 불과하고, 외부 전문강사가 아닌 원협

의 조합장이 모두 실시하여 형식적인 교육에 머물고 있음.

- 농가의 사업참여율 제고 및 약정이행을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농가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농가들의 사업이해도 증진과 유통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가 요구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별도의 매뉴얼 보유 사실 없음.
- 향후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등에서 제작한 표준매뉴얼을 지역 여건에 맞도록 보완하여 농가에게 보급함으로써 고품질 과수 재배 확대 유도 필요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예산 조기집행실적이 일부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미흡함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매우 미흡하며 특히 사업시행주체인 원협의 사업추진 의지가 매우 취약함
- 보다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원주 과수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보완, 수립하고, 시와 원협의 명확한 역할 분담 및 사업추진 의지 확립이 요구됨.

## 충청북도·충청남도

4. 충북 영동과수육성사업 ..... 95
5. 충북 옥천포도육성사업 ..... 111
6. 충북 제천과수육성사업 ..... 126
7. 충북 충북원협과수육성사업 ..... 142
8. 충북 햇사레과수육성사업 ..... 157
9. 충남 남부과수육성사업 ..... 173
10. 충남 연기과수육성사업 ..... 191
11. 충남 예산당진과수육성사업 ..... 206
12. 충남 천안거봉포도육성사업 ..... 221
13. 충남 천안배육성사업 ..... 237





4(5-02)	영동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포도 (보조) 사과·배·복숭아·자두	선정년도	2004
사업주관기관	영동군	사업시행주체	영동농협
참여시군	영동군		
득점현황	합계(100)	2등급	
	계획단계(10)	C+	
	집행단계(50)	B0	
	성과단계(40)	B0	

## 1. 총괄

### 사업체 일반현황

- 영동지역은 포도 주산지로 전국 생산량의 10% 이상을 생산하고 있음.
- 영동농협은 참여조직인 황간농협과 더불어 APC를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상품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핵심성과

-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지속적 지원으로 고품질 포도산업 육성을 도모하였고, 메이빌 브랜드 마케팅 시스템의 안정화 추진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농협연합사업단에서 '07년 7월 이후 영동농협으로 사업시행주체가 변경되어 FTA업무를 영동농협에서 시행중에 있으나 연합마케팅은 연합사업단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사업이 이원화 되어 있음
- 시행주체 중심으로 지역과수 통합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분담과 사업관리 기능의 이관 등 운영 조직의 조정이 필요함.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적인 포도주산지로서 약 4만톤의 포도가 생산되고 있는 지역임.</li> <li>• 메이빌 브랜드 마케팅이 활성화되었으나 여전히 전체 생산량 대비 취급 비율은 미흡한 수준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동농협 및 황간농협 APC의 실질적인 연계시스템 확보를 통해 메이빌 브랜드 마케팅의 지속적 확대 추진</li> <li>• 고품질 생산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인근 지역간 연계방안 마련</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사업단에서 영동농협으로 사업이관이 되었으나 FTA사업과 공동마케팅사업이 이원화 체계로 운영될 계획임.</li> <li>• 행정과 농협간 연계시스템은 확보되어 있으나 차별화된 자체지원시스템은 미흡</li> <li>• 영동농협으로 시행주체가 변경되었으나 영동농협 내 FTA사업 전담인력의 사업이해도가 낮은 편임.</li> <li>• 정예농가 육성을 위한 사업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사업단에서 주관조합으로 시행주체를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적합한 지역협력 방식과 사업운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li> <li>• 지자체 및 시행주체가 중심이 되어 대상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연계사업 발굴 필요</li> <li>• FTA전담인력에 대한 업무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여 차질 없는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도관리</li> <li>•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시스템 마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집행율은 96.4%로 우수한 편임.</li> <li>• 상반기 집행율보다 하반기 집행율이 높은 편임.</li> <li>• 사업자 선정 시기가 지연되어, 상반기 사업집행이 저조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들에 대한 사업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조기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체계 구축</li> <li>• 상반기 조기집행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참여조직간 협력체계 강화</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사업단과 참여조직간 연계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영동농협과의 연계시스템은 미흡</li> <li>• FTA사업 뿐만 아니라 마케팅 연계가 병행되어야 하나 참여조직간 이해관계가 일부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주체와 연합사업단간 사업운영에 대한 명확한 역할분담 구축</li> <li>• 참여조직간 협의를 통하여 FTA사업과 연계한 연합마케팅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2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C+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B0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B0</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B0</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B+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5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C+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C+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1.0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1.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C+</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68	
③ 출하약정 주체	2	1.00	
④ 출하약정기간	1	1.0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D+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5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2.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3.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B+
	① 예산집행률	10	9.70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B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B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B0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B0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63	
<b>성과단계 소계</b>		<b>40</b>	<b>B0</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C+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C0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2.83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0.9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3.00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2.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2.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B+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1.49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0.39
	⑨ 기타 사업실적	1	0.35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B0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B0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D0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12
	② 교육 횟수	1	0.43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C0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B+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비계량	1.91 B0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B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행정, 학계, 농협, 농업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06년 3회 개최에서 '07년 11회 개최로 운영 실적이 대폭 증가함.
- 군청, 농협에 FTA기금사업 관련 애로상당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농업인 의견수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나, 수렴 실적은 '06년 24회에서 '07년 9회로 감소함.
- 자문회의 운영시 단순 심의, 의결 기능 뿐만 아니라 영동군 과수산업전반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실질적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조치가 요망됨.
- 또한 주요 분야 전문가 참여를 추진하고, 회의 및 E-Mail, 서면자문 등 의견 청취통로를 다양화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야 함.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와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7회 개최하여, FTA기금사업 추진 현안 및 사업시행주체 변경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07년 하반기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정례화 할 필요가 있음.
- 지원대상조직간의 협의실적은 3회에 그쳐 FTA기금사업 및 연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계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법인설립에서 영동농협으로 사업주체 변경, 우선순위심사표 개선, 동점자처리기준 마련, 사업비 집행률 제고 등 평가 점검결과에 대한 꾸준한 개선 노력이 엿보임.
- 다만, 출하약정 이행여부에 따른 인센티브와 제재기준 마련에 관한 개선사항은 이행하지 않음.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시·군		○		○		○	
농업기술센터							
읍·면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합	○	○		○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07년 사업시행주체 변경(영동농협)에 따라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지도점검 등이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이루어짐.
- 영동농협의 경우 FTA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연합사업단에서는 업무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② 1,2순위 준수여부

- 신청서 상에는 1, 2순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우선순위 심사 평가 시에 1, 2순위를 구분하여 평가함.

- 1, 2순위 구분은 사업에 지원하는 농가와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를 연계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지역통합과 협력적 농가조직화를 위한 연계방안으로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접수단계에서부터 1, 2순위를 구분하여 평가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정책수용성, 유통규모화 촉진,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지표를 운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항목별 계량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표준 양식을 활용하되 지역과 품목 여건에 적합하도록 항목과 배점을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07년에 293농가가 신청하여 261농가를 선정하여 선정율이 89%였음('06년도는 82.7% 기록).
- 심사결과 점수분포는 71~75점이 33.7%로 가장 높고, 나머지 점수대는 다소 불규칙한 형태로 나타남.
- 동점자 발생 시 전년도 예비후보자, 동일과종 재배면적이 많은 자, 사업신청 면적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
- 사전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 신청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객관적인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심사와 우선순위 배정을 엄격히 진행할 필요가 있음.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06.12.27일에 충북도 보고(가선정) 하였으나, 농정심의회의 심의 확정이 '07.2.13일에 실시되어 선정완료 및 교부금 결정이 지연되었음.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년도말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교부결정, 선정통보 등 관련 행정절차를 조기에 진행하여 영농철 이전에 사업이 개시되도록 노력해야 함.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사업 미개시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단가상승 및 작목전환 등의 사유로 발생한 미개시자 30명에 대해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추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배제 등 적절하게 처리함.
- 출하약정서 상에 2개월 이내 사업 미착공시 대상자 선정이 자동 취소된다는 사실을 명기하여 농가들에게 공지하였음.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중도포기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추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에서 배제 등 적절하게 처리함.
- 미개시자 및 중도포기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미개시자는 농가 선정 통보후 2개월 이내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개시 가능성이 낮은 농가에 대해 조치토록 하며, 중도포기자에 대해서는 연도 중 불가항력적 사유 이외에 포기할 경우 포기서 징구 및 3년간 명단 관리, 타 사업 지원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예비대상자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
- 사업미개시자 및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과수면적이 많은 자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였음.
- 향후 미지원 된 예비 대상자를 다음 연도에 우선 지원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 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426	426	100	3,818	3,818	100	농협연합 사업단장	5
'06년	302	302	100	2,939	2,779	94.5		5
'07년	261	261	100	1,053	885	84.0		5
계	989	989	100	7,810	7,482	95.8	-	

- 사업신청 단계에서 출하약정서 징구 및 출하약정 미체결시 사업선정 배제로 100% 출하약정 체결

###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출하약정물량은 시행지침에 따라 80% 이상을 원칙으로 체결하였고, 생산량 대비 출하물량 기준으로 약정을 체결
- '07년 약정농가 생산량 1,053톤에 대해 885톤 약정으로 약정률 84.0%를 기록('06년 94.5%에 비해 감소함)

### ③ 출하약정 주체

- '07년 상반기 출하약정주체는 사업시행주체 '농협연합사업단'으로 적정하게 체결하였으나 시행주체 변경 이후 영동농협으로 출하약정 주체를 변경, 기존 약정 갱신 노력을 하지 않았음.
- 단, '07년 사업시행주체 변경에 따라 '08년부터는 출하약정주체를 영동농협으로 변경하여 운영해야 함.

### ④ 출하약정기간

- 출하약정기간은 5년으로 표기하여 적용함.
- 단, 표준화된 양식이 아닌 점은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약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출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출하약정 불이행농가에 대해 차기년도부터 3년간 영동군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원칙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제재 사례는 없음.
- 출하약정 이행농가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FTA기금사업 순위 결정시 우선권 부여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없음.
- 제재사항 및 인센티브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여 시행주체 및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각종 예산 및 제도를 통하여 출하약정 이행 및 위반시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 패널티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사업시행주체(영동농협)가 파이프, 비닐에 대한 자재일괄구매를 시행(497백만원)하여 자재 단가인하를 통한 농가부담 경감 등을 추진하였으나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로서 계통구매의 경우 실질적 가격절감 효과가 없고 개별 구입 시에도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음.
- 향후 계통구매가 아닌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견적서 징구와 입찰에 의한 가격비교, 품질관리 조건 요구를 시행하여 실질적 공동구매 효과가 발생하도록 노력해야 함.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농정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 선정, 공지함.
- 2개 업체 중 2개 업체 모두를 선정하였고, 영동군내 소재여부와 공사시 민원발생 및 행정조치사항 위한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전문가 참여에 의한 시공업체 자격과 시공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정은 미흡함.
- 시공업체 선정시 공정한 평가표를 통한 검증을 실시하고 연말에 시공업체에 대한 애로사항 및 품질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불만사항이 많거나 만족도가 떨어지는 업체는 향후 사업 참여불가 등의 원칙을 세워야 할 것임.

###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단가조정심의회('06.8.21)에서 우량품종갱신 외 4종에 대해 단가 조정, 농림수산식품부 기준단가를 지역현실에 맞도록 세부내용별로 가감하여 단가를 산정.
- 단가조정심의회를 운영 하는 등 노력한 점이 인정됨.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자재가격 변동이 이루어지므로 주요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업 단가 검토와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 시공 기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 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41	188.8	229.8							
기타사업	254.8	267.4	376.2	898.4	338		749.6	1,087.6		40.6	96.4%
<b>합 계</b>	254.8	308.4	565	1,128.2	338		749.6	1,087.6		40.6	<b>96.4%</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예산액 1,128백만원 중에 집행액은 1,088백만원으로 집행률 96.4%임. 농식품부 국고 정산 기준으로도 '07년 예산집행율 97.0%로 나타나 우수.
- 다만,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주기적인 현지점검 및 전화독촉으로 사업추진을 독려하였음.
- FTA사업에 대한 사전교육, 점검회의 강화, 현장확인, 미완료 농가 개별 방문 등 예산집행을 제고 노력 필요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보조금 집행과 동시에 해당농협에 통보하여 대출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조치하였음.
- 용자예산의 경우 사업신청시 희망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 용자예산이 필요한 농가에게 적기에 대출될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일부 정비해야 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FTA기금사업 포도 우량품종갱신 사업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자부담 중 일부를 농협에서 지원('07년 68백만원)
- FTA기금사업 참여농가에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지방비조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FTA기금사업과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07년 62.8ha, 85농가, 432백만원 지원)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외부 감사, 점검 등 지적사항 이행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자체 감사, 점검 지적사항 이행사항 : 시행주체의 사업착수 독려 미흡 개선 지적사항에 대해 현장점검 등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독려로 사업 완료.
- 보고서류 제출 지연(-0.63점) : 미체출 1건(-1점), 지연일 42일(-0.42점), 조기일79일(+0.79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사업주체 변경 : 영농농협('07.7.2)
- 영농농협에 책임자(상무), 실무자 1인 등 FTA사업 담당자와 참여농협별 담당자 5명 운영.
- FTA기금사업 지원을 위한 실무조직으로 실제 마케팅 추진을 위한 협력 조직과 괴리되어 있으므로 시행주체 중심의 공동마케팅 체계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3,818	3,818	8,182	100 %
2006년	2,779	2,714	5,436	97.7 %
<b>2007년</b>	<b>885</b>	<b>834</b>	<b>2,675</b>	<b>94.2 %</b>
계	7,482	7,366	16,293	98.4 %

- 지원농가 261명 중 출하가능 농가 166명 중에서 실제 출하농가는 114명으로 출하이행률 68.7% 기록.
- '07년 출하약정물량 대비 출하실적은 834톤으로 94.2% 기록하여 '06년에 비해 다소 낮아졌음. 출하약정 이행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3,356	3,543	5.5%	9,841	10,477	6.46%

- '06년 대비 출하량은 5.5%, 출하금액은 6.46% 증가함.
- 영동군 관내 포도 출하액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체계화된 마케팅에 기반한 사업규모 적음. 단순 계통출하에서 탈피하여 품질관리, 지역 브랜드화 등 체계화된 마케팅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지역 물량 결집과 규모확대에 노력해야 함.

####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4,074	9,841	10,477	6.46%

- 사업실적은 매년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07년 10,477백만원 달성하여 우수함.

④ 공동선별, 공동계산 실적 (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율(B/A)
실적(백만원)	10,477	8,917	85%

- 총사업실적 및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이 85%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 생산량과 비교하면 다소 미흡. 사업규모 확대와 공동선별·공동계산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D-C)/C
2,460	3,189	29.6%	6,263	8,917	42.3%

-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42%로 유통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실적 증대 노력이 필요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포도의 시군 공동브랜드 "May Vill"을 '05년 개발하였고, 브랜드사용자는 농협연합사업단임. 상표등록 완료, 공동브랜드 조례제정
- '07년 공동브랜드를 활용하여 APC에서 선별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브랜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음.
- 드라마 협찬, 인터넷 포탈 홍보 등 브랜드 홍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우수한 사례로 파악되며, 보다 효과적 품질관리와 출하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부 운영 체계를 보완해야 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율(B/A)
사업실적(백만원)	10,477	5,201	49.6

- 전체 사업실적 중에 49.6%를 공동브랜드로 출하.
- 공동브랜드 활용 기준을 확립하고, 시행주체 중심의 브랜드 마케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4,789	4,803	4,928	2.6%

- 참여농협 출하실적이 있는 농가로 '06년 대비 소폭 증가함

⑨ 기타 사업실적

- 과일류 이외 쌀, 호두, 꽃감 등 2,874백만원으로 판매사업 실적 기록.
- 영동농협의 농자재 판매사업(8,788백만원)과 포장재 공동구매(2,389백만원) 실적 기록.
- 협동조합 본연의 다양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지역 농가 실익 증진에 기여해야 함.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지원 농가 만족도 조사 실시('07.12.15-30)하여 FTA기금사업 총괄 및 지원사업별 만족도를 파악하였고 조사결과 비가림 연동하우스에 대한 자재비 단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 지원단가에 불만도가 높게 나타났고, '08년 사업 지침에 반영한 점이 우수함.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여 FTA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진단하고 향후 시행주체 변경에 따른 FTA 및 과수산업발전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우수함.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농산물공동브랜드 경영교육, 안전농산물 생산교육, 재배기술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 FTA사업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정예농가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품질관리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확인 결과 자체 품질기준으로 확인됨.
-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 표준매뉴얼을 사용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재배단계에서 최종 상품화 단계까지 포괄할 수 있는 품질관리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출하증가율 우수 '06년 9,841 ⇒ '07년 10,477로 증가
- 자체점검에 의한 보조금 회수 사례 : 생산시설현대화를 지원 받은 농가가 과원폐업지원사업을 이중으로 지원받아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지원사업비를 회수('07년 750천원, 폐원총사업비에서 감액 후 지급)
- 영동군 공동브랜드 May Vill 전국단위 평가 우수
  - '07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07.6.21)
  - '07년 농식품 파워브랜드대전 동상 수상('07.10.31)
- 예산 조기집행을 실적이 인정됨.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전반적으로 시행주체 및 행정기관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음.
- 다만 FTA사업과 마케팅사업이 분리됨에 따라 시행주체와 연합사업단 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의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임.

5(1-01)	옥천포도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포도 (보조)	선정년도	2006
사업주관기관	옥천군	사업시행주체	옥천농협
참여시군	옥천군		
득점현황	합계 (100)	5등급	
	계획단계(10)	C0	
	집행단계(50)	D+	
	성과단계(40)	F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옥천군은 과거 가온하우스 시설포도 주산지역으로, 한칠레 FTA체결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
- '05년말 현재 포도 농가 1,756호, 재배면적 786.2ha, 생산량 12,314톤이며 포도연구소, 묘목단지, 가공공장(옥천농협) 등 연계기반을 갖추고 있음

### □ 핵심 성과

- '06년부터 FTA기금사업을 시작하였고,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비가림하우스(연동), 간이비가림시설 지원을 중심으로 지원, 가온 재배에서 무가온 재배로 전환 추진
- 포도연구소 신품종 "자랑" 보급, APC건립 추진, "금강보고"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로 신사업 기반 확충 단계에 있음

### □ 사업체 유형에 따른 특이 사항

- 농협군지부의 농협연합사업단이 시행주체였으나, 조합공동사업법인 전환을 추진하다 중단, '07년 7월에 옥천농협을 시행주체로 변경.
- 시행주체의 기능이 전무하고 연합사업단도 형식화되어 사업 주체의 재정비가 필요함.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도 가온하우스 재배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수입산 경합, 고비용 생산 등의 문제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용절감형 무가온 재배, 친환경 포도 중심으로 전환 추진</li> <li>폐원, 무가온전환 등 과거로의 역전/회귀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사업관리 철저 필요</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주체가 미확립되어 군청 주도로 사업 추진</li> <li>협업체 운영이 매우 미흡함</li> <li>농협군지부와 지역농협이 참여하는 연합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마케팅 추진에 미흡</li> <li>연합사업단 판매실적은 증가했으나, 지역 연합과 마케팅 체계화에 미흡함 (기금사업과 출하체계 개선과 분리)</li> <li>출하, 판매 사업 체계화 등을 APC 건립 이후로 미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기금사업 시행주체(육천농협)를 명확히 하고, 군지부 연합사업단의 기존 역할을 모두 시행주체로 이관하여야 함</li> <li>시행주체에 전담인력 편성 등 주도적으로 기획, 사업 추진에 참여해야 함</li> <li>기금사업과 시행주체 중심의 출하체계 및 농가조직화와 연계를 강화해야 함</li> <li>APC건립 이전이라도 시행주체 중심으로 교육, 품질관리, 브랜드 판매 등 판매사업 실질화와 필요</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 집행 실적 96.1%로 비교적 우수하고, 과정도 지침에 준하여 이루어졌음</li> <li>그러나, 과수산업 혁신을 위한 노력보다는 형식적 출하약정 체결 등 최소한의 적용에 그침</li> <li>과학화영농지구, 댐규제 주변지역 지원 등 자체지원사업과 경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8년부터 표준 양식에 따라 신청서, 심사표, 출하약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운영 필요함</li> <li>기획단계의 사전 수요 조사와 평가단계에서 만족도 조사 및 자체 평가회 등을 실질화해야 함</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관농협 방식의 사업체계하에 연합사업단 운영이 지속되고 있어 참여농협과 사업시행주체의 협력도는 떨어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기금사업 시행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행주체와 참여주체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5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0</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 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C0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C0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D+</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C0</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D0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C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C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1.0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1.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C+</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68	
③ 출하약정 주체	2	0.50	
④ 출하약정기간	1	1.0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5	0.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2.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B+
	① 예산집행률	10	9.60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C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C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D0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D0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3.32	
<b>성과단계 소계</b>		<b>40</b>	<b>F</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C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F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0.00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0.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00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0.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0.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C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0.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0.00
	⑨ 기타 사업실적	1	0.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F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F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F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00
	② 교육 횟수	1	0.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F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C0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1.38	
	비계량	C0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D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으며, 산학연관 과수발전협의회는 운영하였으나 사업계획 심의, 사업대상자 선정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수준에서 운용하였음.
- 농업인 의견수렴은 설문조사 등 체계화된 내용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 청취로 진행되었고 활용 성과가 미흡함.
- 과수발전 협의회를 지역 과수산업 발전과 관련한 기획과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정례화된 협의체로 활성화해야 하고, 재배기술 향상과 시설도입,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활용을 강화. 전문가 자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별면담, 전화,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시행주체는 당초 연합사업단을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중단하고 옥천농협으로 변경.
- 시행주체 법인화 및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행정, 농협간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외에 FTA 사업추진과 관련한 행정, 주체 및 참여조직간 협의가 미흡함.
- 변경된 시행주체(옥천농협) 중심으로 역할을 재편하고, 행정-시행주체간 협의를 활성화해야 함. 실무운영위원회, 농가대표자 협의회 등 협의체를 단위별로 구분하여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07년 연차평가 결과 협의회 운영 활성화, 사업 시행주체 및 참여조직 역할 명확화, 심사표 개정, 출하약정 체계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받았음.

- 시행 주체를 중심으로 한 실무운영위원회 활성화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옥천농협 APC 건립 등 추진 상황에 변화가 없으며 개선 노력 없이 과제가 존치되어 있음.
- 점검, 평가의 요구사항은 지침, 전국적인 사업 시행 경험과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한 모범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협의 활성화, 지역 내 사업주체간 역할 분담 강화, 시행주체 중심의 통합마켓팅 체계 재정립 등 중요 과제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함.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시·군						○	
농업기술센터							
읍·면	○	○	○	○	○		
사업시행주체							
참여조합							

- FTA기금사업은 군 및 읍/면 행정조직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주체인 옥천농협은 참여에 그치고 있음. 특히, 기존 군지부 연합사업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참여농협의 역할도 조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사업 추진, 관리에 시행주체의 역할이 없음.

- 신청접수, 심사, 지도, 1차 정산 등 사업추진 핵심 기능을 시행주체 주도로 전환하여, 지원사업과 시행주체 중심의 판매사업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② 1,2순위 준수여부

- 1, 2순위를 구분하였으나, "전국조직의 회원... "으로 준용하였기 때문에 모든 농가를 2순위로 평가하여 미흡함.
- 사업 신청단계부터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농가를 1순위로 구분하여 분리·평가함으로써 농가조직화 및 유통규모화를 위한 확고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농가 참여도 제고와 책임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행주체 판매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심사표는 경작자 연령(20), 과원 규모(25), 나무수령(20), 품질관리인증단계(20), 조직화여부(작목반공동출하)(15)로 평가. 정책 수용성, 유통규모화 촉진 등 종합적 평가 항목이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이 필요함.
- '08년 사업은 심사표를 농식품부가 제시한 표준양식으로 개정하였으나, 지역여건에 적합한 내용으로 세부 적용 지표를 검토하여 진행해야 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신청농가가 45농가로 적은 상황에서 27농가가 선정되어 60%가 선정되었음.
- 변별력 강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인 심사표 항목을 적용하고, 출하체계 강화를 전제로 하는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해야 함.
- 표준양식을 지역 여건에 맞게 수정 적용해야 하고, 평가항목의 배점을 단계적으로 부여할 경우 동점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적 등과 연계하여 점수를 차등 부여함으로써 변별력을 강화해야 함.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07. 2. 15. 과수분야 산학관연 협의회 (5명 참석)에서 선정.
- 시행 전년도 말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교부 결정, 농가 통보 등 관련 행정 절차도 1월중 조기에 진행함으로써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선정이후 2개월 경과 시점인 4.23.~4.30. 읍면 담당공무원을 통해 사업 개시 여부를 확인. 미개시 농가 6농가를 확인하고 사업 포기서 징구 및 향후 사업 제외 조치를 취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중도포기시 3개년간 FTA기금사업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교부결정서와 출하 약정서에 명시하였음.
- 중도포기는 8명이 발생하였으며, 이들에 대해 향후 3개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제외 및 포기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적정하게 처리함.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선정인원이 적기 때문에 세부 사업 중 간이비가림, 우량품종 갱신 사업에 각각 2명을 예비대상자로 선정.
- 포기 물량을 2명의 예비대상자에게 배정하여 적정하게 추진하였음.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06년	152	152	100	817	683	83.6	참여조합	5
'07년	27	27	100	117	98	84.0	참여조합	5
계	179	179	100	934	781	83.6	-	

- FTA기금사업 지원과 출하약정서를 동시에 접수하였기 때문에 지원농가는 100% 약정을 체결하였음.

##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출하약정은 재배면적과 전년도 평균단수를 적용하여 예상수확량을 산출하고 80% 이상을 의무출하 하도록 명시.
- 약정농가 생산량 117톤 대비 98톤을 약정하여 약정율은 84%임.

## ③ 출하약정 주체

- 출하약정 주체는 농가가 소속된 지역농협과 맺었으며, 출하약정서는 품목, 재배면적, 예상수확량, 계약물량, 약정기간 등 극히 행정적인 필요 항목만을 명시한 형식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농가명만 명시되며, 약정주체는 미표시. 산지유통센터 건립 이후에 의무 출하는 것으로 표시하여 현실성이 없는 약정임.
- 출하 약정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전제 조건임. FTA기금 생산유통지원사업은 단순하게 농가들의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주체 중심의 규모화와 지역 마케팅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므로 APC 완공 이전이라도 출하약정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행되어야 함.

## ④ 출하약정기간

- 5년으로 명시하여 적정하나 실질화 된 출하약정이 아닌 형식적인 사항이므로 장기 출하계약을 통해 농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행주체의 효과적인 판매, 마케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출하약정 미이행시 FTA기금사업에서 향후 3년간 배제함을 명시.
- 실질적이고 효력을 갖는 출하약정이 아니고 제재 실적 전무함.
- 출하약정서에는 약정 미 이행시 3년간 FTA기금지원사업 배제가 명시되어야 하고, 약정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상벌 조항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농가별 점검이 진행되어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농가들의 출하이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시행하지 않음.
- 시행주체가 주도하여 주요 자재를 공동구매 함으로써 농가 부담 경감과 우수 품질의 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추진이 필요함.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시행하지 않음.
- 농가선택권을 보장하되, 시공능력과 지역내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우수 업체를 지정, 부실을 방지하고 사업 시행의 효과를 높여야 함.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세부사업별 지원 단가 조정 심의회를 개최하여 단가를 조정하였음.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단순 검토한 결과를 그대로 승인하여 조정.
- 전국 평균의 사업단가와 사업 메뉴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가 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세부 시설 기준과 단가를 조정. 생산시설 설치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비용절감, 농가 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함.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4	4			1	1		3	25.0%
기타사업			255	255	79	93	76	248		7	97.3%
합 계			259	259	79	93	77	249		10	96.1%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예산 규모가 작으며 집행율은 96%로 대부분 집행하였으나 일부 불용액이 발생.

-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며, 상반기 집행율 제고를 통해 영농철 도래로 사업 지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선정시 미개시 및 중도포기에 따른 불이익을 통보. 미개시 및 중도포기자 발생시 조속한 대체 선정 추진 등 통상적인 집행률 제고 노력이 있었음.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사전 용자 희망 여부 확인하고 희망 농가만 용자금 배정.
- 용자 예산 수요가 적지만,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희망농가에게 용자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 점은 바람직한 노력으로 평가되며, 필요 농가에게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출기관 협력, 시공 진도에 따른 추가 용자 안내 등 효과적 자금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고갈습 포도재배 지원사업,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 사업,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청정농산물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 친환경농약통 지원사업, 댐규제 주변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등 자체 사업 시행.
-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댐규제 주변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은 포도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보조율이 높아 FTA기금사업과 결합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음.
- FTA기금사업의 당초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고, 자체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외부 감사/점검, 자체 감사 지적사항 해당 없음.
- 보고 서류 제출 지연 감점 (-3.32) : 미제출 4건(-4.0점), 지연일 10일(-0.1점), 조기일 78일(+0.78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05년부터 '07년 3월까지 연합사업단을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갔으나 중단하고, 옥천농협으로 시행주체를 변경.
- 연합사업단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 주체 변경에 따른 변화는 없음. 연합사업단 체계인 협의회와 판매과장으로 구성된 실무운영위 등 조직체계를 그대로 유지.
- 변경된 시행주체인 옥천농협은 별도의 전담 조직, 인력을 편성하여 정책추진에 참여하고, 연합사업단과의 역할분담 및 APC추진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사업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 '07년 사업은 연합사업단에서 옥천농협으로 시행주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실적은 연합사업단 실적이며, 출하 약정이 형식적일 뿐 아니라 옥천농협이 시행주체로서 역할이 없기 때문에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음.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
2006년	683	716	2,494	104.8%
<b>2007년</b>	<b>98</b>	<b>100</b>	<b>238</b>	<b>102.0%</b>
계	781	816	2,732	104.5%

- 약정량 98톤 대비 출하량은 100톤으로 102.0%에 해당. (약정농가가 약정 대상자인 지역농협으로 출하한 실적을 표시함.)
- 시행주체의 사업 실적이 아닌 연합사업단 실적으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 /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86	368	327.9%	462	1,225	165.2%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462	1,225	165.2%

- 연합사업단의 과실 출하실적으로 '07년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내용적으로는 군지부 연합사업을 도지역본부 연합사업으로 개편하여 농협유통센터로 출하한 것임.
- 시행주체의 사업 실적이 아닌 연합사업단 실적으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1,225	1,225	100.0%

- 연합사업단은 옥천농협 양곡창고를 임대하여 출하물량 전체를 공동선별·공동계산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
- 시행주체의 사업 실적이 아닌 연합사업단 실적으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86	368	327.9%	462	1,225	165.2%

- 시행주체의 사업 실적이 아닌 연합사업단 실적으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옥천군의 지역공동브랜드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금강보고" 브랜드를 개발하여 '07.1.24. 등록하였음.

- 야립간판, 축제 활용 등 외부 홍보사업도 시행되고 있음.
- 지역공동브랜드로서 지역내 생산물에 부착가능하고 연합사업단도 금강보고 브랜드로 사업을 시행하였음.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 율(B/A)
사업실적(백만원)	1,225	1,225	100%

- 시행주체의 사업 실적이 아닌 연합사업단 실적으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152	709	366.4%

- 연합사업 출하농가를 표시. '06년과 비교하여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참여농가수도 급증하였음.
- 시행주체의 사업 실적이 아닌 연합사업단 실적으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⑨ 기타 사업실적

- 기타사업 실적이 일부 있으나 시행주체의 역할이 없어 인정하지 않음.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실적이 없음.
- 사업 진행 과정 모니터링과 종료시 농가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 집행과 성과를 검토해야 하며,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함.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실적이 없음.
- 연차 평가회, 자체 평가보고서 작성 및 참여조직 협의 등 사업 성과를 정리하고, 집행과정 개선과 성과 향상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야 함.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옥천군청에서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였고, 기타 포도관련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음.
- 교육이 시행주체와 직접 연계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통합마케팅, 지역과수산업 발전 방향에 맞춘 체계화된 조직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함.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품질관리 매뉴얼이 농협중앙회/포도전국협의회에서 제작한 일반 교재를 보유한 것으로 실제 농가 교육, 품질관리 활용은 미흡함.
- 브랜드 마케팅에서 품질관리가 중요해지는 상황이므로, 생산부터 저장, 상품화, 판매·유통 단계를 아우르는 품질관리 매뉴얼을 보유·활용해야 함.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해당 없음.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사업추진 내용이 부실하고 시행주체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음.
- FTA기금사업이 자체 사업과 결합되는 내용으로 진행되어 당초 목표와 달리 사업 추진이 부진함.



6(405)	제천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사과 (보조)	선정년도	2006
사업주관기관	제천시	사업시행주체	제천농협
참여시군	제천시		
특점현황	합계 (100)	5등급	
	계획단계(10)	C0	
	집행단계(50)	D+	
	성과단계(40)	F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제천과수산업발전계획 사업범위는 제천시이고 관내 4개농협과 사과영농조합법인이 참여.
- 제천 사과는 약 600ha의 면적에서 10,000톤의 생산량으로 전국 생산량의 2.8%를 점유. 중부권 고지대로 일교차가 커서 품질이 우수.
- '06년 집행액은 1,722백만원임 (예산집행을 91%).

### □ 핵심성과

- 생산성이 떨어지는 성목원에서 유목 과원으로의 갱신.
- 제천농협을 중심으로 종합유통망 체계 구축기반 추진 중 (제천농협 '08년 APC 건립 추진).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 사항

- '07년 2월까지 기존 연합사업단의 법인화를 추진하였으나, 10월 제천농협으로 시행주체 변경.
- 주관농협 방식으로 전환하여 책임성과 업무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지역내 협력 부진, 판매시스템 미확립 등 전반적 사업 실적이 부진하므로 개선 노력 필요함.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천 사과는 연간 1만톤 정도 생산되고 있으나, 브랜드화와 품질 관리체계 구축이 매우 미흡함</li> <li>• FTA사업 시행주체인 제천농협의 사업기반(유통시설, 농가조직 등)이 취약함</li> <li>• 제천시 과수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기금 지원사업으로 중장년, 지속적 생산의지를 갖춘 정예농가를 육성하여 중장기적인 지역과수산업 틀을 마련해야 함.</li> <li>• 과수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특성화된 산업 육성, 공동브랜드를 통한 마케팅 추진이 필요.</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천농협의 실질적인 사업주도력 미흡하며, 특히, 제천농협이 FTA 사업을 주도할 인력, 체계가 부족</li> <li>• FTA사업에 대한 내부 점검체계 미흡 (각종 서류 및 추진상황 보고·점검 등)</li> <li>• 지역내 협의체 운영, 농가 의견 수렴, 공신력 있는 시공업체 선정, 단가조정 등 사업관리 전반이 미흡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와 제천농협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시행주체 주도의 사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체계화. 특히, 시행주체의 과수 판매사업 역량 강화와 관리 조직 강화 등 실질적 노력이 필요함.</li> <li>• 사업추진 전반의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체 운영, 사업대상자 조기선정, 시공업체 선정, 단가조정, 예산집행을 제고 노력 등이 이루어져야 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확정 지연으로 농가들이 수확후 사업착수 희망. 이로 인해 전체 사업 및 예산집행이 지연됨.</li> <li>• 사업착수 여부 및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점검과 사업추진 독려 미흡.</li> <li>• 불용예산 발생 방지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조기 확정으로 조기 사업착수 유도</li> <li>• 제천시 과수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FTA사업 예산과 시 자체사업 예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활용 유도</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주체는 과수 출하물량이 적고, 공동 선별·공동계산 조직, 품질관리 매뉴얼 작성 등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유통 노력이 미흡함.</li> <li>• 참여조직의 역할 및 FTA사업 참여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내 출하주체간 협력으로 규모화, 특성화된 브랜드 마케팅 시스템 구축 필요.</li> <li>• 시행주체 중심으로 참여조직(지역농협)의 역할 및 과일 출하 역량 확대가 필요.</li> <li>• 정예농가조직 육성,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시스템 등 기본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5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0</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D0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C0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0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D+</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C0</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D0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D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D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1.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B0</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51	
③ 출하약정 주체	2	2.00	
④ 출하약정기간	1	1.0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D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5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0.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0.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C+
	① 예산집행률	10	8.78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D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D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2.56
<b>성과단계 소계</b>		<b>40</b>	<b>F</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C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F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0.00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0.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00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0.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0.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D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0.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0.00
	⑨ 기타 사업실적	1	0.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D0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F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F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07
	② 교육 횟수	1	0.29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D0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F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0.53	
	비계량	D0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D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사업계획 수립시 자문회의는 구성되어 있으나, FTA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자문활동이 미흡하고, 농가 의견수렴도 교육 시 건의사항 청취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전문영역에 따라 서면 자문, E-Mail 등 다양한 의견청취 통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FTA사업을 제천시 과수산업발전과 연계한 종합계획이 부재함. 행정, 사업 시행주체 모두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지역과수산업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함.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총 6명으로 구성(조합장 5명, 시 유통팀장 1명. 위원장 제천농협 조합장). '07년 사업관련 총 6회 개최하여 '07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행주체 변경, 주체간 역할분담 등 주요 안건 처리.
- 또한, 사업참여조직간에도 '07.8.14. 협의를 통해 변경된 사업시행주체 중심의 연합사업 방안을 협의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함.
- 그러나 FTA사업을 통해 고품질 사과와 규모화 및 마케팅활동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사안별 업무협약에 그쳐 실질적인 사업력 강화로 연결되지 못했으므로 조직간 협의회와 담당자 실무위원회 등으로 체계화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명확화와 조직간 협력을 강화해야 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07년 연차평가 지적사항 가운데 우선순위심사표 보완, 사업시행주체 변경 및 운영협약 체결, 제천농협 실적 제출, 농가설문조사 등이 이루어짐.

- 그러나 자문위원회 및 농업인 의견수렴 강화,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우선선정, 출하물량 확대(지자체 사업 우선지원 등), 신규 공동브랜드 개발은 미흡하거나 추진되지 않아 해당 내용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됨.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	
시·군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합	○	○	○	○	○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전체적으로 사업시행주체인 제천농협이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 정산을 실시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은 우수하나, 참여조합의 사업지원이 미흡함.
- 주관조합의 역할 제고와 함께 참여조직에 역할을 부여하여 사업 참여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② 1,2순위 준수여부

- 1,2순위 구분 심사 안됨.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사업과 출하 체계 개선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수출, 친환경, 재해보험, 약정기간, 출하약정율, 출하실적 등이 심사표에 포함되어 있고, 동점자 처리 기준도 포함하고 있어 정부정책의 수용, 유통규모화 촉진 부문은 우수한 편임.
- 그러나 시행주체 중심의 실질적인 마케팅 강화를 위한 공동선별·공동계산 시행 등 출하권위임 및 품질관리 부문이 누락되어 있음.
- 표준 양식에 따라 심사표를 개선하되 지역 여건과 시행주체 중심의 출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으로 적용해야 하며 계량화된 실적과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연동될 수 있는 심사표 도입이 필요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60점 이하 농가가 75.7%로 심사표의 변별력이 매우 약하고 신청자 농가의 99.5%가 선정되어 탈락여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심사표의 변별력을 높여 사업대상자 선정에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하며 평가항목의 점수를 실적 등과 연계하여 차등 부여해야 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우선순위 심사는 12월에 완료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제천시에 보고하였으나 교부금 결정 통지가 '07년 3월에 이루어짐.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년도말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해야 할 뿐 아니라 교부결정, 선정 통보 등 관련 행정 절차 역시 조기에 진행하여 영농철 이전에 사업이 개시되도록 노력해야 함.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1차 보조금 교부 통지가 '07년 3월에 시행되어 대부분 수확 후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여 사업추진 지연. 2개월 이후 35명 미개시자 발생하여 단계적으로 사업독려, 포기각서 징구 등의 조치 시행함
- 보조금교부결정의 조기 확정을 통한 조기 집행 유도, 교부금 통지 2개월 후 시점에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분석을 통한 대응조치 강화 필요.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중도포기시 향후 FTA사업에서 제외됨을 출하약정서에 명시하였으며, 영농포기자, 용자·자부담 미확보 농가 등 총 27명에 대해 포기각서를 징구하여 후순위자에게 사업기회를 부여했음.
- 중도포기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신청시 농가들이 실행 가능성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신청하도록 유도 필요.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중도포기자 발생시 후순위자를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적정하게 처리함.
- 향후에도 미 지원된 예비대상자를 다음 연도에 우선 지원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 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 정 주 체	④ 약 정 기간(년)
	지원농가수(A)	약정농가수(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D)	비율(%) (D/C)		
'05년								
'06년	55	55	100	956	496	51.9	공동사업법인	1년
'07년	61	61	100	333	270	81.0	공동사업법인 (상반기)	1년
							제천농협 (하반기)	5년
계	116	116	100	1,289	766	66.45	-	

- 사업지원농가는 의무적으로 출하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점은 우수함.



##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약정율이 80% 이상인 점은 비교적 우수하지만, 약정량이 너무 적어서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움.
- 형식적 연합 판매에서 탈피하고, 제천농협 중심의 사업 약정량 확대 필요.

## ③ 출하약정 주체

- 약정주체는 '07.년 2월까지는 연합사업단과 체결하였고, '07.년 7월 이후에 제천농협으로 체결하였는데 시행주체가 변경되기도 전('07. 10월)에 참여조합인 제천농협으로 체결한 것은 부적절함.
- 그러나 향후에는 계속 사업시행주체인 제천농협으로 출하약정을 체결하여 농가조직화 및 유통의 규모화를 도모하여야 함

## ④ 출하약정기간

- '07.2.까지는 약정기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07.7. 이후에는 5년 이상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체결.
- 약정기간을 5년 장기로 전환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약정불이행시 FTA관련 사업 3년간 지원 배제 조항은 있으나, 실제 집행실적은 없음.
- 약정 이행농가가 제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동선별비, 연합마케팅 포장재 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은 우수함.

##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농업용파이프, 포장재 등을 제천농협이 참여조합 물량을 취합하여 농협중앙회 계통구매로 공급하였으나 실질적 가격절감 효과가 없었으며 업체간 비교견적 및 협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인하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미흡했음.

- 향후 자재 공동구매 뿐만 아니라 비교견적, 협상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비용절감 노력 필요.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실적 없음.
- 향후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업체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평가표에 의거하여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교 견적, 시공 후 농가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농가 만족도 제고 필요.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실적 없음.
- 지역 여건에 맞도록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며 단가조정심의회 개최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함.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① 예산집행률

- 상반기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생산기반조성 예산이 대부분 이월되는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 관리가 미흡함.
- 향후에는 조기에 사업을 개시하여 집행율을 높이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 요구됨.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0	218	237	455	0	173	199	372	0	28	81.7%
기타사업	0	0	566	566	0	160	287	447	0	52	78.9%
합계	0	218	803	1,021	0	333	486	819	0	80	80.2%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생산기반조성			433	433			22		411		5.3%
거점APC											%
과실브랜드											%
<b>합계</b>	<b>0</b>	<b>0</b>	<b>433</b>	<b>433</b>	<b>0</b>	<b>0</b>	<b>22</b>	<b>0</b>	<b>411</b>		<b>5.3%</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이 미흡함.
- 전반적으로 제천시와 제천농협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 필요하며 사업지도를 위한 농가방문 및 사업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업추진 진도를 수시파악하여 농가를 독려해야 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전화 등 단순 독려에 그침. 사전 자금 수요 파악, 용자 가능 여부 판단, 대출 기관 협조 통지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 필요.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제천시는 사업시행주체의 경상운영비, 공동선별비, 공동브랜드 포장재비, 상품성향상사업비 등을 지원. (약 8억원) 또한, FTA사업에 참여하여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 시행주체인 제천농협의 판매사업 추진력이 미약하여 지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는 비중이 높음.
- APC건립을 비롯하여 제천농협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들이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배가된 노력이 필요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농식품부 지적사항인 '공신력있는 지역업체 선정후 공사시행 미흡'은 '08년

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비 단가조정'은 실행하지 않음.

- 점검 지적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으로 사업 개선에 활용하도록 해야 함.
- 보고서류 제출 지연(-2.56점) : 실적보고서 지연 1일(-1점), 미제출 2건(-2점), 지연일 20일(-0.20점), 조기일 64일(+0.64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07.10. 사업시행주체 변경 승인. (신청 : '07.5. 연합사업단 → 제천농협)
- 제천농협은 직원 1명이 자금운용, 참여조직 역할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FTA사업에 의한 생산기반 강화가 마케팅 강화로 연결되지 않음.
- 향후 FTA사업과 판매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개편 필요.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시행주체 변경에 따라 적정한 사업이관과 실적 집계가 이루어져야 하나, 기존 연합사업단 실적 외에 보완 자료 제시가 불충분하여 판매사업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음.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
2006년	427	176	426	41.2%
<b>2007년</b>	<b>270</b>	<b>54</b>	<b>147</b>	<b>20.0%</b>
계	697	230	573	30.60%

- 약정 이행율이 20%로 매우 저조. 적극적인 약정 이행을 제고 노력 필요.
- 보완 자료 제시가 불충분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없음.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176	54	-31%	426	147	-65%

- 사업시행주체 변경으로 사업실적 감소. ('06년 연합사업단 실적)
- 제천농협의 판매사업 강화 및 참여조직의 물량 결집 등 전체적인 사업체계 구축 미흡함. 제천농협은 농가조직화, 공동선별·공동계산제 시행 등 판매사업 강화 와 참여조직과의 실질적인 연합사업 체계 구축 필요함.
- 보완 자료 제시가 불충분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없음.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426	147	-65.0%

- 사업시행주체 변경으로 사업실적 감소하였으나 향후 사업에서는 사업실적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보완 자료 제시가 불충분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없음.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147	8	5.4%

- 사과영농조합법인 시설을 임대하여 일부 공동선별을 실시했으나 실적이 미미함. APC 보유 설치 이전이라도 공동선별·공동계산 시스템을 확장하고 유통형 작목반 육성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보완 자료 제시가 불충분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없음.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176	4	-91%	426	8	-94%

- '06년 대비 '07년 실적이 감소하여 향후 사업에서는 유통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실적 증대에 대한 노력이 요구됨.
- 보완 자료 제시가 불충분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없음.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시 공동브랜드 : '금강산으로 가는 제천사과' (상표등록 불가)
- 사용권 : 제천시 관내 전체 농가
- 현재 제천시 공동브랜드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하고, 품질관리 체계도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브랜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상표등록이 가능한 신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품질관리 기준 설정 및 조례제정 등을 통해 품질관리가 가능한 공동브랜드 육성 필요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율(B/A)
사업실적(백만원)	147	147	100%

- 사업량 전체를 공동브랜드 활용하여 출하하는 등 매우 우수하며, 향후에도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조례 제정 등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 보완 자료 제시가 불충분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없음.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48	21	-56%

- 위 실적은 제천농협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수임.
- 향후 제천농협과 참여조직 모두 농가조직화 및 연합마케팅 사업 강화 필요

하며 유통규모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예농가 위주로 참여농가수를 확대해 나가야 함.

- 보완 자료 제시가 불충분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없음.

### ⑨ 기타 사업실적

- 보완 자료 제시가 불충분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없음.

###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농가대상 설문지 확인결과 만족도 등이 주 설문 내용이었으며, 종합분석 없이 각 항목별 비율만 산출.
- 보다 체계적인 설문과 종합분석을 통해 FTA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사업시행 성과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 개선과 성과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평가 실적 없음.
- 시기별 모니터링과 점검 사항에 대한 사업 반영으로 집행과정의 개선에도 노력해야 함. 또한, FTA기금 사업과 판매사업을 종합한 체계적인 자체 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연차별 평가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해소와 성과 향상에 노력해야 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농가조직화 교육실적은 2회 140명에 불과하고, 기술교육 중심으로 시행.
- 농가조직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부재.
- 농가의 사업참여율 제고 및 약정이행율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내실 있는 농가 기술 교육, 조직화 및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보유 및 활용 실적 없음.
- 향후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등에서 제작한 표준매뉴얼을 지역 여건에 맞도록 보완하여 농가에게 보급함으로써 고품질 과수 재배 확대 유도 필요.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전반적인 사업 성과가 미흡하여 총 사업 실적의 규모화 된 경영 및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전반적으로 사업시행주체가 제천농협으로 바뀌었으나 사업추진체계가 정비되지 못함. 특히 제천농협의 사업능력이 취약한 상태로 FTA사업이 제천시의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제천시 과수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시와 제천농협의 명확한 역할분담 및 제천농협의 판매사업 역량 강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7(3-04)	충북원협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사과 (보조) 배, 복숭아	선정년도	2004
사업주관기관	충주시	사업시행주체	충북원협
참여시군	충주시,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득점현황	합계 (100)	4등급	
	계획단계(10)	C+	
	집행단계(50)	D+	
	성과단계(40)	D+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충북 전체를 사업권역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조합임.
- 거점APC 사업자로 '08년 완공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생산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거점APC의 안정적인 원물조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핵심성과

-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거점APC 출하에 대한 농가의식을 개선.
- 동사업과 연계하여 '07년말에 공동브랜드 '프레샤인'을 개발.
- 동사업 추진으로 생산과 유통의 계열화를 위한 기반 구축.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04년 충주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05년 괴산군, '06년 진천, 단양, 청원 등 매년 사업 권역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음.
- 거점APC를 건립 중이며, 독립사무소 개설 및 독립회계 구축, 원물 조달 확대와 상품화 추진 등 체계적인 사업 준비가 필요.
- 광역사업조직으로 충북도와 참여시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함.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북전체를 포괄하는 사업권역이기 때문에 충북원협을 중심으로 참여시군의 농가조직 및 생산자단체가 개별화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단위로 규모화된 생산기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유통주체 중심의 계열화가 필요함</li> <li>참여시군의 개별 유통시설 설치 지원이 억제되도록 충북도 차원의 조정이 필요함</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북원협이 대부분의 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어 바람직함</li> <li>그러나 8개시군이 참여하는 광역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시군간 협력체계 및 시군과 사업시행주체와의 협력체계는 매우 미흡함</li> <li>또, 시행주체인 충북원협 본소에서 사업을 총괄관리 하고 있으나 지소 및 참여 작목반과의 효율적 연계 및 사업지도는 다소 미흡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주체와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함</li> <li>충북원협이 주관하여 참여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충북도에서 참여시군과 충북원협간 원활한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li> <li>통일된 사업관리와 농가관리를 위해서는 거점APC 완공 후 독립사업소를 개설하여 관련업무에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가수요조사, 홍보, 설명회개최, 미개시자조사 및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고 참여시군과의 유기적 협력이 없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문제가 발생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주체, 충북도, 참여시군 간 효율적 역할분담과 체계적인 추진시스템을 구축해야 함</li> <li>특히, 사전적 수요조사와 홍보,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미개시자조사 등 사업관리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함</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북원협, 충북도, 참여시군간 협력과 공동 사업추진이 매우 미흡함</li> <li>동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참여시군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대부분의 참여시군은 소극적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체간 유기적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회의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li> <li>시군단위의 기본적 협력체계를 넘어 농가조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4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C+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C0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D+</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C0</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B0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C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B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1.0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B+</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63	
③ 출하약정 주체	2	2.00	
④ 출하약정기간	1	1.0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1.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1.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2.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D0
	① 예산집행률	10	5.15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D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C+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2.99	
<b>성과단계 소계</b>		<b>40</b>	<b>D+</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C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F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1.94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0.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2.23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2.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0.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D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0.46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0.36
	⑨ 기타 사업실적	1	1.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C+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C+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A0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1.00
	② 교육 횟수	1	1.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B+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F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1.59	
	비계량	C0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C+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안건을 제시하여 자문을 받았음. 단, '07년 계획단계에서는 회의가 1회만 개최됨으로 미흡. 농업인 의견수렴은 충주시 대표농가 중심으로 추진되어 광역사업으로서의 체계적인 의견수렴은 미흡함.
-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보다 활성화하고, 사안별로 서면, E-mail 등 다양한 의견 청취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농가 의견 수렴도 연차별 설문조사와 함께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통로를 확보하고 주산지 시군 단위로 의견 수렴 범위를 확장해야 함.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충북원협과 행정기관간 협의 및 회의의 횟수는 적으나 내용적 측면에서 거점APC, 과실브랜드 육성사업, FTA기금사업 등 다양한 협의를 하였음.
- 참여시군과의 협의는 충북원협이 개별 시군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일관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충북도 및 참여시군 전체가 참여한 협의 및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행정, 시행주체, 참여조직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정립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명확화와 조직간 협력을 강화해야 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자문회의 운영은 개선되었고, 심사표, 약정서, 집행실적, 공동브랜드 개발 등에서 개선 실적이 인정됨.
- 그러나, 충북원협 중심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시군의 참여는 여전히 미흡하고 시군 자체사업 연계도 충주시의 경우만 시행됨으로써 미흡.
- 연차평가의 지적, 점검사항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함.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홍보)
시·도							
시·군	○	○	○	○	○	○	○
농업기술센터							
읍·면							
사업시행주체	○	○	○	○	○		○
참여조합							

○ 주관기관

- 충북원협이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정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
- 시행주체를 중심으로 우선순위 심사 등 핵심 업무를 진행하되, 행정과 참여조직이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② 1,2순위 준수여부

- 1, 2순위로 구분하여 신청,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 희망농가가 부재함이 원인으로 제시되었으나, 거점APC의 안정적인 원물조달과 마케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농가조직화가 필요함. FTA기금지원사업과 적극 연계하여 공동선별·공동계산 및 장기계약출하농가에 대한 우대방안 적극적으로 홍보, 활용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심사표의 평가항목이 용수확보여부, 수령, 재배경력, 과원규모, 사업여건, 평가자의견, 사업추진능력 등으로 구성되었음. 주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정책 수용성 및 유통규모화 촉진 지표가 미반영되어 있음.
- 표준 양식을 활용하되 지역과 품목 여건에 적합하도록 항목과 배점을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신청자의 점수분포가 특정점수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점수배분 등에서 변별력이 낮아 심사표와 심사과정의 개선이 필요함.
- 우선 순위 심사는 공정성, 객관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심사표의 개선과 함께 심사과정도 행정과 시행주체 공동의 현장실사와 순위부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06. 12. 26 농정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충주시)
- 광역사업으로서 시·군별 행정 집행 시기가 상이할 뿐 아니라, 전체 일정 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교부결정, 농가 통보 등 시행 일정 취합이 불가하였음. 주관 시·군과 시행주체 중심으로 사업 시기의 통일과 총괄적인 사업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특히,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 교부결정, 농가통보 등 행정 절차가 지연되어 착공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한 이행이 이루어져야 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미개시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없음.
-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관리 및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 대상자 통보 후 2개월 경과시점에서 행정, 시행주체가 협력하여 미개시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사업신청서에 3년간 FTA기금사업에서 배제 명시되고 있음.

- 중도포기자가 보은군 등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음. 전체 시군 간 협력과 시행주체의 노력이 필수적이나, 사전 수요조사 철저와 사업대상자 평가와 선정을 더욱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사업신청량이 부족하여 당초 신청자 이외에 추가 신청자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운영.
- 체계적인 수요조사와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설명으로 사업 신청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예비대상자를 차년도 사업 선정과도 연결함으로써 농가의 참여와 관심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향후 예비대상자 선정 시에 미 선정된 예비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398	398	100%	9,880	4,940	50%	사업시행주체	1년
'06년	167	167	100%	3,023	1,542	51%	사업시행주체	1년
'07년	81	81	100%	1,118	913	81.7%	사업시행주체	5년
계	646	646	100%	14,021	7,395	52.7%		

-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출하약정을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사업 지원농가 전체와 출하약정이 체결되었음.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07년 약정농가 생산량 대비 81.7% 출하약정 체결
- 전년도에 비해 출하약정율은 증가하였으나 농가수가 감소하여 절대적인 물량확보는 감소하였음. 거점 APC 가동을 앞두고 있으므로, 출하약정의 실질화와 함께 출하약정 이행, 농가 확대와 약정량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③ 출하약정 주체

- 시행주체인 충북원협과 체결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였음.

④ 출하약정기간

- 출하약정서를 재작성하여 약정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점이 매우 우수함.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약정 불이행 농가에 대해 3년간 FTA기금 사업 배제와 공동브랜드 활용을 배제하도록 규정. 조합 내규로 부락단위 지원사업 배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미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사례가 있음.
- 광역사업으로 농가 결집력이 약한 것이 현실이므로 농가 조직화를 위한 노력과 출하이행율을 제고 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 연계사업 활용 등 실효성이 있는 제재,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함.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농업용 파이프에 대한 일괄구매 실적이 있으나, 시공업체를 통한 일괄구매 방식으로서 사업비 절감보다는 효율적 사업추진에 치중.
- 시행주체가 주도하여 일괄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규모화를 통한 교섭력을 발휘하여 단가 인하와 품질 조건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별도의 평가 없이 기존 업체를 중심으로 단순 선정하여 공지하고 있음.
-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업체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평가표에 의거하여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일부 사업에서 실무자가 단순 검토하여 단가를 조정하여 미흡함.

- 단가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체 세부 사업에 대해서 시설 설치 기준과 사업단가를 검토해야 함.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고 농가 부담 경감과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625	525	52	52	15	6	8	29	2	21	55.8 %
기타사업	974	1,257	698	698	20	121	291	432	149	117	61.9 %
<b>합 계</b>	<b>1,599</b>	<b>1,782</b>	<b>750</b>	<b>750</b>	<b>35</b>	<b>127</b>	<b>299</b>	<b>461</b>	<b>151</b>	<b>138</b>	<b>61.5 %</b>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생산기반조성											%
거점APC	17,720	17,520	17,520	17,520			50	50	17,470		0.3 %
과실브랜드			400	400					400		0 %
<b>합 계</b>	<b>17,720</b>	<b>17,520</b>	<b>17,920</b>	<b>17,920</b>			<b>50</b>	<b>50</b>	<b>17,870</b>		<b>0.3 %</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서의 집행율은 61.5%로 매우 미흡하여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거점APC 예산은 대부분 '08년으로 이월되었음. 여러 시행상의 문제 요소가 있으나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시행 노력을 배가해야 함.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예산집행율이 낮은 이유는 충북원협, 충북도, 참여시군 간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 및 협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근원이 있음. 또한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충북원협 사업을 통합하였기 때문에 체계적인 사업 시스템 구축에도 한계가 있었음.

- 시군별 사업추진 방식을 통일하고, 시행주체의 노력과 함께 도 및 시군 간 협의를 활성화. 또한 사업 과정 관리를 위한 시군 공동 일제조사, 현장 모니터링을 체계화하고 시군별 농가 홍보, 설명회, 조직화 노력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신청서 접수 시 용자가능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은 하였으나 실질적인 용자집행과 연계되지 못함.
- 용자 대출 안내문 발송 및 사전 교육을 더욱 더 강화하고 신청서 접수단계에서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징구 사전 신용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충주시와 일부 참여시군만 부수적으로 연계된 지원 사업이 있어 전반적으로 미흡함.
- 충북도와 참여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통한 연계 지원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농림수산식품부 및 자체감사 및 점검을 모두 이행함
- 보고서류 제출지연(-2.99점) : 미제출 3건(-3점), 보고지연일 68일(-0.68점), 조기일 69일(+0.69점)
- 보고서 미제출이 다수 발생하여 사업 관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미제출과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와 관계자의 주의가 필요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충북원협 내부 업무분장표에 의거하여 전담부서로 편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본소와 지소간 유기적 협력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거점APC 완공과 연계하여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내부조직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4,940	3,239	4,302	65.6 %
2006년	1,544	797	1,362	51.6 %
<b>2007년</b>	<b>913</b>	<b>590</b>	<b>1,055</b>	<b>64.6 %</b>
계	7,397	4,626	6,719	62.5 %

- 출하약정이행율이 64.6% 수준으로 다소 낮고, 지역산업 여건 및 중장기 사업 운영 목표를 감안할 경우 규모가 적은 것으로 판단됨.
- 농가조직화를 강화하고 충분한 사업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4,740	3,544	- 25.2 %	8,191	7,431	- 9.3 %

- 단순 계통출하실적을 제외한 사업 실적에서 출하량 및 출하금액이 감소.
- 품질관리에 기반하여 보다 체계화된 판매, 마케팅을 추진하여 사업 규모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9,660	8,191	7,431	- 9.3 %

- '06년 대비 '07년 총 사업 실적이 감소하였음
- 향후 시행주체의 사업실적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율(B/A)
실적(백만원)	7,431	3,087	41.5 %

- 단순 계통출하실적을 제외한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은 3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으나 지역생산량과 비교시 규모화가 매우 부족함.
- 지역 기반과 거점APC 운영을 고려할 때 사업 물량 확대와 공동선별·공동계산에 근거한 안정적 판매사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D-C)/C
3,437	1,691	-50.8 %	4,980	3,087	-38.0 %

-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이 급감하여 체계적인 농가조직 관리와 신규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농가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기존의 '토옥' 브랜드를 사용하다가, 2007년 말 동사업과 연계하여 '프레샤인'을 개발하였음.
- 본격적인 홍보, 마케팅이 전개되지 않아 소비지 인지가 미흡하고, 품질관리와 브랜드 차별화가 미흡하므로 지속적인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율(B/A)
사업실적(백만원)	7,431	1,151	15.5 %

- 기존 브랜드 '토옥'의 사업실적으로 공동브랜드 출하비율이 낮음
- '07년말에 개발한 '프레샤인'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농가조직화와 마케팅을 통해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을 제고해야 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4,256	4,176	4,276	2.4 %

- 유통사업 참여조합원의 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체계화된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와 작목반 육성이 미흡. 본점과 지소별 정예농가 육성, 정예 작목반 육성을 추진하여 강력한 협력조직, 출하조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⑨ 기타 사업실적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구매액(백만원)	2,311	2,438	2,934	20.3 %

- 포장재 공동구매 실적이 20.3% 증가하여 매우 우수하나 농가의 소득 증대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해 타품목에 대한 판매사업 및 농자재구매사업에 대한 노력도 병행해야 함.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지원 대상 81농가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 만족 33%보다 보통41%, 불만족 21%로 만족도가 나타났음.
- 설문조사 문항수를 늘려서 체계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을 포함토록 하여 사업 개선에 활용해야 함.
- 설문조사 이외에 연차별 평가회, 농가대표자 간담회, 시군별 담당자 토론회 등 다양한 평가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주관하여 자체평가를 하고 개선한 점은 매우 우수하나, 참여시군 및 충북도 등 행정, 시행주체가 모두 참여한 자체 평가가 필요함.
- 충북지역 과수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일하고, 거점APC 추진 등 현안에 대한 점검과 중장기적인 발전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매년 자체 점검하는 방식을 제도화해야 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충북원협이 내부 지도사를 활용한 교육충실도는 매우 우수함.
- 재배기술에 치우친 교육에서 탈피하여, 수확 후 관리 및 유통분야, 조직화 교육을 추가하여 정예농가 육성과 협력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매뉴얼 대신 충북원협 소식지로 재배기술 등을 보급하고 있으나 매뉴얼로 인정하기 어려움.
- 광역사업조직으로 거점APC 중심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고품질 과실 생산이 필수적이므로 지역실정에 맞는 재배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며, 품질관리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확 후 관리, 저장, 유통 등 매뉴얼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자체점검에 의한 보조금 회수 사례 1건.
- 향후에는 총 사업 실적의 규모화 된 경영 및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광역사업조직인 충북원협이 충북도 및 참여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 기존 사업의 통합 등 사업 체계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던 만큼 시행주체와 도, 시군 행정간의 협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충북원협은 거점APC 운영을 위해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기존 지소간 역할 분담 강화, 내부 조직 보강으로 초기단계부터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8(1-03)	햇사레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복숭아 (보조) 사과, 배	선정년도	2004
사업주관기관	음성군	사업시행주체	햇사레과일 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시군	음성군,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득점현황	합계 (100)	2등급	
	계획단계(10)	B0	
	집행단계(50)	B+	
	성과단계(40)	A0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중부권 복숭아 주산지인 음성, 이천, 여주를 사업범위로 경기/충북 2개도에 걸친 광역사업임.
- '06년 10,967톤 394억원 출하에서 '07년 13,906톤 405억원으로 일기 불순에 따른 과실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업량 및 취급액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이 우수함.
- '07년 FTA기금사업은 생산시설현대화 외 8개 사업 70억원의 투자를 시행하였고,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집행율은 '06년 64.6%에서 81.7%로 일부 향상되었음.
- 거점APC는 당초 '07년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계획보다 건립이 지연되고 있음. '07.12.31. 일괄시공 계약이 완료되어 토목 및 건축공사, 선별기 제작이 진행되고 있으며 '08년 12월 완공 예정임.

### □ 핵심성과

- '02년부터 시작된 공동마케팅 사업을 통해 지역 브랜드 통합과 출하창구 단일화를 실현하여 "햇사레" 브랜드 파워를 강화, 실질적인 농가 소득 향상을 달성하였음.



- 2개도, 3개 시군, 4개 농협이 참여하는 광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조직을 중심으로 한 정책 연계와 행정, 시행주체 조직간 협의·의사결정을 체계화함으로써 모범적인 사업추진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 사항

- 4개 조합 및 경기지역본부 연합사업단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을 완료하였음. ('07.3.22. 설립인가, '07.5.22. 등기 완료, '07.12.27. 독립회계 운영 개시)
-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은 외부 CEO영입, 독립회계 구성, 파견직 및 자체직원 운영 등 사업 시스템을 어느 정도 구축하였음. 그러나, 거점APC 운영에 대비하여, 원물 조달 범위 확대와 공동선별·공동계산 시스템 재구축, 의사결정 체계 정비, 내부 조직 확충 방안 등 세부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준비해야 함.
- "햇사레"는 유통 종사자와 소비자로부터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나, 유모계 복숭아 단일 품목으로 매년 7~9월에만 단기간에 출시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4개 조합 생산량에도 한계에 이르러 '07년 성장률이 2.7%에 그치는 등 성장성이 둔화되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업 확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부권 확장(음성군, 이천시 등 지역내 확장, 충주 등 외연 확장)과 남부권 무모계 복숭아를 포함한 상품 확장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거점 APC의 연중 운영을 위해 사과, 배, 수박, 인삼 등 타 품목 운영 방안도 마련해야 함.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숭아(유모계) 주산지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참여 농가 및 작목반이 많아 지역별 품질관리 격차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차원의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li> <li>• 냉해, 출하기 일기불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주체(햇사레법인) 중심으로 사업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시군간 협력도 원활</li> <li>• 거점APC 건립과 함께 참여조직 역할 재편 모색</li> <li>• FTA기금사업과 과실브랜드, 공동마케팅 조직 등 복합 사업 추진</li> <li>• 브랜드 사용료 부과 등 법인 수익 확보와 독립경영을 위한 준비 노력이 돋보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사업 전환으로 시군, 참여농협, 농가조직간 협의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li> <li>• 실무협의회 중심의 농가 의견 수렴과 동시에 전반적인 사업 수요 파악이 필요</li> <li>• 이천, 음성 시군간 브랜드 통합과 공동지원 강화로 브랜드의 지속적 홍보 강화</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집행률은 향상 ('06년 64.6% → '07년 81.7%) 되었으나 보다 높은 집행률 달성 노력 필요</li> <li>• 접수, 평가, 현장 점검 등 집행 전반이 안정화되어 있음</li> <li>• 현장 점검, 연차평가, 자체 보고서 작성 등 우수한 집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천시의 경우 미개시자 조사 등 집행관리가 다소 미흡하였으므로 개선이 필요함</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APC가 '08.12. 완공 예정이나, 운영을 위한 내부 조직 정비, 계획 수립이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확대와 대규모 거점APC 운영에 대비하여 내부조직 정비 방안 마련과 지역내 협의 필요</li> <li>• 부품목인 수박을 포함하여 음성·이천지역 참여조합 확대 및 협력조직 구성 필요.</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2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B0</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C+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B+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B+
	<b>집행단계 소계</b>	<b>50</b>	<b>B+</b>
집 행 단 계  I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B0</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B+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1.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B+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B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67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A0</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94
	③ 출하약정 주체	2	2.00
	④ 출하약정기간	1	1.0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A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A0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5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5.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3.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B0
	① 예산집행률	10	8.27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B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A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B+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B+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69	
<b>성과단계 소계</b>		<b>40</b>	<b>A0</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A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B0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3.00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1.71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3.00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2.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1.09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A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3.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1.11
	⑨ 기타 사업실적	1	0.5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B+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B+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B0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1.00
	② 교육 횟수	1	0.71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B0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A0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3.69	
	비계량	B+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B+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거점APC 건립과 관련한 전문가를 주 구성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였고, 운영내용도 거점APC에 치중한 면이 있음.
- 농가 의견 수렴은 연차별 설문조사, 참여조합별 현장 간담회, 농가대표 "실무운영위원회"를 통해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하여 사업에 반영하였음.
- "과수발전협의회"를 참여지역과 조직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구로 활성화하고, 자문단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정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개별면담, 전화,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지원대상조직간에는 법인 이사회, 임시총회, 실무 분과 등으로 정례화 된 협의를 진행하였고, 참여 시군 간에도 행정기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등 사업추진 노력이 우수함.
- 다양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협의체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의사결정 범위 조정, 안전 선정 및 의결 단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07년 연차평가 결과, 자문회의 활성화, 농업인 의견 수렴 강화, 예산집행율 제고, FTA사업추진에 시행주체 역할 강화, 약정 내용 강화 등을 요구.
- 예산집행율 제고 노력, 농업인 의견 수렴 강화, 시행주체인 법인의 역할 강화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개선 실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시공업체선정)
시·도							
시·군		○	○	○		○	○
농업기술센터							
읍·면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합	○	○	○	○	○		○

- 신청서 접수와 현장심사 등은 참여조합에서 협조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우선 순위심사, 시공업체 선정 등은 시행주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② 1,2순위 준수여부

- 신청서에 1순위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약정), 2순위(장기출하약정)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순위별 분리평가를 실시하여 적정히 처리.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정책수용성, 유통규모화 촉진,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지표를 운용. 객관성 확보를 위한 세부 배점을 표시 하는 등 우수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691농가가 신청하여 206농가를 선정하여 선정율이 29.8%였음. (전년도 예산집행실적이 낮아 일부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임.) 심사 결과의 변별력, 분포 등 적정함.
- 세부사업별, 군별로 구분하여 사업대상자 순위를 매기고 있어 동점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 동점자는 모두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그러나, 신청농가수와 비교하여 선정농가수가 적어 선정과정 관리와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가 필요함.
- 동점자 처리기준을 심사표에 명시하고, 동점자도 처리기준에 따라 순위를 부여해야 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음성군 '06.12.27. 이천시 '06.12.27. 여주군 '06.12.28.(가선정) 등 사업대상자 선정을 사업전년도말까지 완료하여 우수함. 그러나, 사업대상자 확정통보가 '07.3.5., 교부결정 통보가 '07.3.20. 시행되어 선정결과 및 보조금교부결정이 지체된 것은 개선하여야 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사업대상자 선정 2개월 후인 '07. 5월(5.21.~5.28)에 미개시자를 조사하였으나, 일부 시군(이천시)은 미개시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등 사업점검이 미흡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중도포기자는 산업단지로 편입된 불가피한 사유 1건 이외에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자에서 배제, 별도 관리대장으로 명단 관리.
- 중도포기시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대상자 확정 통지 및 교조금교부결정서에 명시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였음.

####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사업대상자 선정시 세부사업별로 후순위자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공지.

- 중도포기자 물량을 후순위에 따라 재배정 추진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였으나, 미 지원된 예비대상자는 다음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 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417	353	84.7	3,116	2,975	95.5	참여조합	1~5년
'06년	246	189	76.8	1,752	1,694	96.7	참여조합	1~5년
'07년	206	206	100	1,732	1,679	96.9	햇사레과일조합 공동사업법인	5년
계	869	748	86.1	6,600	6,348	96.2	-	-

- '07년에는 법인 출범과 함께 기존 약정방식에서 탈피. 법인과의 출하약정을 선정심사의 전제조건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FTA기금사업 지원농가는 전원 약정 체결하여 적정함.

###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약정서에 생산예상량 및 약정물량을 표시하여 생산량(1,732톤) 대비 96.9% 약정(1,679톤)을 체결하여 우수함.

### ③ 출하약정 주체

- 출하약정 주체는 시행주체인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적정하게 체결하였음.

### ④ 출하약정기간

- 출하약정 물량을 5개년間に 걸쳐 표시하도록 양식화하였으며, 5년간 적용됨을 문구로 표시. 장기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실제 이행여부를 관리하므로 우수한 사례로 판단됨.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출하약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약정서에 출하선급금 지급 중지, 3년간 FTA기금지원사업 배제, 햇사레 공동브랜드 사용권 배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법인 규약에 출하약정 미이행 농가에 대해 2년간 법인사업 참여 금지를 명시하였음.
- 제재 방법을 명시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농가별 출하약정 및 이행실적을 관리하여 '07년에는 출하약정 미이행 5농가에 대해 브랜드 사용 금지 처분하고 '08년 FTA기금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매우 우수한 사례임.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사업시행주체의 자재 일괄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참여조합에서 구매한 자재도 농협중앙회 계통구매를 활용하여 자재의 품질은 확보하였으나, 구입 비용절감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은 미흡함.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전문선정위원회('07.2.22.개최)를 별도로 개최하여 심사, 평가를 실시하였고, 시공실적, 자격유무, 재무상태, 시방서, 견적서 등 자료 검토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하여 매우 우수함.
- 다만 외부전문가 참여가 미흡하므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평가표도 실질적인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단가조정심의회('06.12.22. 개최)에서 우산형지주 외 1종에 대해 재해대비 규격을 강화하여 단가 상향 조정을 시행하였음.

##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19	76	95		39	26.5	65.5		29.5	68.9%
기타사업		102	632	734	3	320	288.5	611.5	15	107.5	83.3%
<b>합계</b>		<b>121</b>	<b>708</b>	<b>829</b>	<b>3</b>	<b>359</b>	<b>315</b>	<b>677</b>	<b>15</b>	<b>137.0</b>	<b>81.7%</b>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생산기반조성			1,592	1,592			1,245	1,245	347		78.2%
거점APC		3,351	11,520	14,871	144	112		256	14,615		1.7%
과실브랜드			400	400			400	400			100%
<b>합계</b>		<b>3,351</b>	<b>13,512</b>	<b>16,863</b>	<b>144</b>	<b>112</b>	<b>1,645</b>	<b>1,901</b>	<b>14,962</b>		<b>11.3%</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율이 81.7%로 미흡하며, 특히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므로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농업인 교육, 현장 확인, 미완료 농가 개별 방문 등으로 사업집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전년에 비해 예산집행률이 향상되었으나, 보다 높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시군간 일체화된 추진 노력이 필요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용자 소요 규모를 신청단계부터 사전 파악, 보조금 교부 결정과 함께 해당 농협에 통보하여 조기 대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자체사업 농가 선정심사표를 FTA기금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운용함으로써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음

- 각종 과수 생산 사업을 1) 생산 부자재 등 농가 지원과 2) 홍보비 지원 등 시행주체 지원을 구분하되 사업 통합과 규모화를 위해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 조건 등 연계 장치를 강화해야 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시도교체점검에서 미개시자 조치 강화, 거점APC의 신속한 추진 요구 : 미개시자 조치 강화 및 거점APC 12.2. 준공예정으로 지적 사항 이행노력
- 보고서류 제출지연 (-0.69점) : 미제출 1건(-1점), 지연일 29일(-0.29점), 조기일 60일(+0.60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법인 설립 인가 '07.3.22, 법인 등기 '07.5.22. 완료하였으며, 독립회계를 '07.12.27. 개설하여 운영 중임.
- 마케팅 사업 운영을 위한 조직 정비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거점 APC 운영에 대비하고 한계에 부딪힌 사업 확대를 위해서, 협의체계와 내부 조직 운영 방안을 세워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2,975	2,842	9,321	95.6%
2006년	1,694	1,635	5,363	96.5%
<b>2007년</b>	<b>1,679</b>	<b>1,737</b>	<b>6,172</b>	<b>103.5%</b>
계	6,348	6,214	20,856	97.9%

- '07년 약정량 1,679톤 대비 출하량 1,737톤으로 103.5% 출하실적을 달성하여 우수한 성과를 보임.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10,967	13,906	26.8%	39,407	40,487	2.7%

- '06년 대비 물량은 26.8%증가하였으나, 금액은 2.7% 증가. 과잉생산으로 판매단가가 저하된 상황에서도 출하/판매액을 성장시킴으로써 우수한 성과를 도출해낸 것으로 판단됨.

※ 헛사레법인은 지역내 복숭아 생산 물량의 결집이 완성된 단계로서 사업 확장 및 성장의 한계에 도달. 대표 품목조직으로 성장 및 통합된 지역마케팅 전문조직으로서 중장기 사업 구상 마련이 필요함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33,324	39,407	40,487	2.7

- 헛사레법인의 총사업실적은 40,487백만원으로 일정 수준 규모화를 달성하였음.
- 그러나, 유모계 복숭아 단일품목으로 사업 성장에 한계가 있고, 다품목·지역확대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경쟁 마케팅조직의 성장에 대응하여 중부권 확대 및 상품 확대를 통해 마케팅 경쟁력을 증대시켜야 함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40,487	14,114	34.9%

- 전체 사업실적 중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은 35% 수준으로 양호하나 헛사레 브랜드의 가치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3,491	4,123	18.1%	13,608	14,114	3.7%

- '06년 13,608백만원 대비 '07년 14,114백만원으로 3.7% 증가하였음. 공동선별·공동계산 사업 물량이 크고 규모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케팅 추진과 가치 향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공동선별·공동계산 시스템을 품질관리 중심으로 발전적으로 수준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공동브랜드는 "햇사레"로 기존 개발된 브랜드를 활용.
- 법인화에 따라 브랜드 소유권을 4개조합 공동소유에서 법인으로 이전하고, 품질관리 기준 정비, 품질관리 검사원 운영 등 브랜드 활용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인정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율(B/A)
사업실적(백만원)	40,487	40,487	100%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물량을 "햇사레" 브랜드로 출하함.
- 햇사레는 노변 판매 물량의 "햇사레" 브랜드 판매가 지속적인 문제 요소로 이해되고 있음. 음성군에서 노변 판매장 등록제 등 관리 노력은 있으나 실질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PC 공동선별 상품의 차별화를 위한 서브 브랜드 운영과 순회 검품, 불시 검품, 포장재 관리 철저 등 다각적인 브랜드 관리 노력이 필요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2,050	2,026	2,176	7.4%

- '07년 헛사레 출하실적이 있는 농가는 2,176농가로 '06년 2,026농가와 비교하여 7.4% 성장하였음.
- 출하농가의 증대에 한계가 있으나, 공동선별·공동계산 농가와 적극적인 품질관리 수용 농가를 확산함으로써 내실 있는 농가 조직화와 참여 농가의 생산 기술 향상에 노력해야 함.

⑨ 기타 사업실적

- 시행주체가 복숭아 판매 이외에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으나, 포장재 공동구매를 신규로 추진하여 농가의 비용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나, 농가의 소득증대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확대가 필요함.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 매년 연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만족도 및 지원 사업 개선점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구성하였고 설문결과는 "하등급 상품의 별도 브랜드화" 등 '08년 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음.
- 설명회, 평가회 등에서 설문 결과를 공개하고 추상적인 설문 문항보다는 농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추가하여 실질적 의견 수렴이 진행되도록 해야 함.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법인과 음성군, 이천시, 여주군 공동으로 자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부 사업 개선에 이용함으로써 우수한 사례로 파악됨.
- 법인 연차 총회와 연차 평가회 등과 연계하여 FTA사업 평가 및 출하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공개를 정례화해야 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재배기술 교육과 직접적인 농가조직화, 리더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 지역특성화교육 등을 통해 리더, 품질관리, 재배기술 등 체계화되고 성과 측정이 가능한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매뉴얼을 '07년 8월 제작하였으며, 11월에 일부 수정.
- 진흥청의 복숭아 전문가를 포함한 재배매뉴얼 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통하여 작성한 점은 우수함.
- 농가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특히 거점APC 운영과 맞물려 수확후 관리 지침, 시설 운영 지침, 상품화 및 마케팅 지침 등으로 확장함으로써 사업담당자/실무자의 일관된 품질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해야 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사업실적이 405억으로 규모화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햇사레 상표수수료 제도 도입(일반적 판매수수료 이외에 박스당 50원/4.5kg, 30원/3kg이 내의 상표수수료를 부과)으로 법인의 독립경영 기반을 마련하였음.
- 파워브랜드대전 은상, 히트 상품 등 지속적인 인지도 향상 노력과 함께, 브랜드 활성화를 통한 소득향상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매뉴얼 개발 노력, 품질 향상 노력 등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며, 행정 및 사업담당자의 의지가 돋보임.

9(1-06)	충남남부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배, 포도 (보조) 사과, 복숭아	선정년도	2007
사업주관기관	논산시	사업시행주체	참후레쉬영농조합법인
참여시군	논산시, 부여군,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 서천군		
득점현황	합계(100)	3등급	
	계획단계(10)	C0	
	집행단계(50)	D+	
	성과단계(40)	B+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논산, 부여 등 6개 시군 광역사업이며, 논산의 참후레쉬 영농 조합법인을 시행 주체로 하고 있음. 참여 조직은 시행 주체와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지역별 작목반과 영농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음.
- '07년 신규 사업으로서 생산 시설 현대화는 18개 세부 사업, 57억원(국고 및 지방비 보조 29억원), 425농가가 추진하였음.
- 참후레쉬법인은 전국을 사업 권역으로 하여, 대만·러시아 등의 과일 수출 사업과 대형유통업체 마케팅에 특화된 전문 유통업체임.

### □ 핵심성과

- 배, 포도 등 과수 농가에게 생산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원사업과 출하약정을 직접 연계함으로써 시행 주체의 사업기반 확대, 출하 규모 확대, "참후레쉬" 브랜드화 추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음.
- 공동마케팅조직, 클러스터사업 등 사업 연계로 시행주체 사업 역량 강화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07년 신규사업으로서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18개 세부사업을 제시하여 추진. (실적은 13개 세부 사업임) 사업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참여 시·군별 집행체계가 통일되지 않은 등 시행착오를 겪었음.
- 특히, 사업 수요 파악이 부족한 상태에서 농가들의 사업 추진 인식도 미흡하였기 때문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세부 사업 중 일부 사업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핵심 사업 중심으로 세부 사업 메뉴를 정비하고, 신중한 사업 신청과 집행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참여조직이 작목반, 영농조합 등으로 구성되어 시행주체와 참여조직간 역할 분담이 곤란한 상황임. 시행 주체의 사업 집행·관리 노력을 체계화하고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논산시를 비롯한 참여 시·군간 협의를 활성화하여 사업 집행·관리의 효율화와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함.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품목이 주품목 배, 포도 부 품목 사과, 복숭아로 다양한 반면 수출배 이외 주력 품목이 특정화 되어 있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품목 집중 육성과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광역사업의 특성을 살려 고품질 단지화, 수출단지 간 연계로 규모화를 적극 추진해야 함.</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개 시군 광역사업이지만 행정간 협력이 미흡.</li> <li>참후레쉬영농조합과 수출 및 출하 관계에 있는 작목조직으로 구성 : 출하관리 및 거래는 체계화 되어 있으나 사업 집행 관리에 미흡한 조직 구조.</li> <li>"참후레쉬" 브랜드 활용과 러시아, 대만, 일본 등 배/딸기 수출 활성화 등 사업 성과 우수.</li> <li>공동마케팅조직육성, 과실브랜드 육성과 연계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사업으로 시군간 협력을 강화하고 담당자간 협의체 구성, 활성화함으로써 사업의 통일과 효율화 필요.</li> <li>시행주체 역량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행정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일체화된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li> <li>직원 역량 강화와 시설 운영 효율화, 물류 등 마케팅 추진 전반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개 세부 메뉴 운영과 시군별 추진 등으로 41명 포기자가 발생하고 집행률 70% 수준으로 미흡함.</li> <li>예산 배정 지연, 농가의 일부포기, 변경 등 혼란이 많아 하반기 집행 집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지원 메뉴를 조정하여 효율화해야 함.</li> <li>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사업비 배정과 제반 절차를 확고히 추진.</li> <li>일부포기, 변경 등 농가들의 임의적 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사업관리 필요.</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 주체 이외에 규모화된 참여 조직이 없어 집행 관리가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주체의 법인 내규, 품질 관리 기준 등 내부 관리 효율화 노력과 참여조직 역할 부여 강화.</li> <li>조합원 및 사업규모 확대에 부응하는 시행주체의 내부조직 강화가 필요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3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0</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C0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C0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D+</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C0</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C0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5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C+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C+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B0</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60	
③ 출하약정 주체	2	2.00	
④ 출하약정기간	1	0.2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5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1.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0.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D+
	① 예산집행률	10	6.15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C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D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D0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D0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28	
<b>성과단계 소계</b>		<b>40</b>	<b>B+</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C+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B0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1.86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1.6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3.00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2.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1.2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B+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3.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3.00
	⑨ 기타 사업실적	1	1.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C+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C+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B0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1.00
	② 교육 횟수	1	1.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C+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C+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1.29	
	비계량	C+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C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전문가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으며, 과수발전협의회(농정심의회 분과) 성격의 회의를 각 시/군이 별도로 운영.
- 농업인 의견 수렴은 설문 조사를 포함한 체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2회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사업안내로 처리.
- 광역사업, 다품목, 다주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주체 중심으로 통합된 의사결정체로서 <충남남부 과수발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농가조직 대표 등의 의견 수렴 및 추진 모니터링을 활성화해야 함.
- 특히, 지역 과수산업의 고품질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관리와 재배기술 향상, 효과적인 시설 도입 등 정례화 된 전문가 자문을 추진해야 함.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06년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07년 사업 추진 기간에는 협의 진행 실적이 없음. 6개 시군간 협의도 농가 선정 방법을 의제로 1회만 개최되었음.
- 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체·협의체 구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광역사업으로서 시·군간 사업체계 통일, 시행주체 중심의 규모화와 통합을 위한 협의체 정규화와 주체간 협의 활성화가 필요함.
- 6개 시·군 <충남남부 과수발전 협의회>를 최고 의사결정 조직으로 두어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6개 시군과 시행주체 담당자가 참여하는 "실무 운영위원회", 시행주체와 참여조직간 "농가대표자 협의회"를 두어 정기적인 의견 교환과 주요 사항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07년 신규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나. 집행단계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제 역할분담도 - 논산시>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도						○	
시·군				○	○	○	
읍·면		○					
사업시행주체	○	○	○	○	○	○	

<부여군>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도						○	
시·군	○	○	○	○	○	○	
읍·면	○	○					

<공주, 보령, 서천, 청양>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도						○	
시·군	○	○	○	○	○	○	

- 충남 남부 과수산업 육성사업은 6개시군 범위에서 참후레쉬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 있는 각 시군의 수출배 법인 및 작목반 조직이 참여.

- 논산시에서는 시행주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이외의 시군에서는 시/군 행정의 주도하에 사업을 추진하였음. 농가는 참후레쉬법인 조합원, 비조합원 여부와 상관 없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시행주체와 출하약정을 체결한 후 시/군에 사업을 신청하였음.
- 참여조직이 작목반 혹은 영농조합으로 FTA기금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곤란함.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군에서 사업 신청 접수, 현장 심사 등을 분담하여 시행하되 우선순위 심사, 지도·점검, 1차 정산 등 핵심 업무는 시행주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원사업과 지역 과수 판매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② 1,2순위 준수여부

- 신청서 단계에서 1, 2순위를 구분하지 않았으나, 심사표에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체결(80점), 80%이상 출하약정체결(70점), 약정미체결 (0점)으로 격차를 두어 순위 구분.
- 사업 신청단계부터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농가를 1순위로 구분하여 분리·평가함으로써 농가조직화 및 유통규모화를 위한 확고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농가 참여도 제고와 책임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행주체 판매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조합원, 비조합원 여부를 구분하고, 출하약정체결 (80), 경쟁력 확보(10), 용자지원가능(10)으로 단순한 지표로 운영하였고 세부사업별 구분 항목이 없어 적정성이 떨어짐.
  - 신청농가의 경영여건과 사업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심사표 운영 필요.
  - '08년 사업부터 표준 양식으로 변경하였으나, 지역과 품목에 적합하도록 항목과 배점을 조정하여 활용해야 함.
- ※ '07년 1차년도 사업으로 생산시설현대사업 세부사업 13종을 수행. 농가별로 2~3가지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 추진하였고 수시로 사업량 변경, 일부 사

업 취소가 발생하여 사업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핵심 사업 중심으로 세부 사업 메뉴를 정리하고, 농가들의 사업 인식을 제고하여 사업 신청 단계부터 신중한 세부 사업 선택과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607농가가 신청하여 425농가 선정. (선정율 70%)
- 동점자는 교육참여율, 출하비율, 출하물량 순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음.
- 접수분포는 비교적 고르게 이루어져 있으나 심사 지표가 단순하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심사결과의 객관성과 변별력에는 문제가 있음.
- 표준양식을 지역 여건에 맞게 수정 적용해야 하고, 사업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평가항목의 배점을 단계적으로 부여할 경우 동점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적 등과 연계하여 점수를 차등 부여함으로써 변별력을 강화해야 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주 사업지역인 논산시 '06.12.22. 부여군 '06.12.13.으로 전년말에 선정 완료함으로써 적절하게 처리하였음.
- 조기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나, 보조금 교부결정과 선정통보 등 행정 절차가 '07년 5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지체되어 4/4분기에 대부분 집행되었음. 예산 배정 및 제반 절차를 조기 이행하도록 개선해야 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시행주체의 수시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나, 행정과 시행주체가 협력하여 통보 후 2개월 경과 시점인 7월에는 일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시행하지 않았음.
- 미개시 농가도 다수 발생하였으나 안내장 발송으로 그쳐 처리가 미흡함.
- 6개 시군 행정 업무 추진 시기를 통일하고, 행정과 시행주체 및 참여조직 공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조기착공을 유도하고 중도 포기, 사업여건 미흡 등 문제 발생 사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세부사업 중 일부를 포기하고 변경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사업 포기자는 전체사업을 포기한 경우로 한정하였음에도 41명이 발생. (선정인원의 10% 수준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배제 등 제재 사항을 공지하였으나, 인식이 부족하여 포기서 징구가 농가 거부로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 사업 포기에 따른 불이익을 확고하게 공지할 뿐 아니라, 사업 포기서 작성, 시·군별 사업 포기자 명단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농가들의 인식을 제고해야 함. 또한, 일부 사업 포기, 변경 등 신중하지 못한 사업 신청과 즉흥적이고 손쉬운 사업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사업대상자 선정시 후순위자로 예비대상자를 선정.
- 포기자 물량을 예비대상자에게 배정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였음. 미 지원된 예비대상자는 다음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 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톤)			③ 약 정 주 체	④ 약 정 기간(년)
	지원농가수(A)	약정농가수(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D)	비율(%) (D/C)		
'07년	공주	35	35	100	575	460	참후레쉬 영농법인	5년
	논산	276	276	100	4,500	3,600		"
	보령	21	21	100	350	280		"
	부여	71	71	100	1,400	1,120		"
	서천	10	10	100	200	160		"
	청양	12	12	100	305	244		"
계	425	425	100	7,330	5,864	80		

- 시행주체와의 출하약정 체결이 심사에 중요 요소였기 때문에 사업지원 농가는 100% 약정을 체결하였음.

##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당초 출하 약정서(=협약서)에 약정 물량이 표시되지 않았으며, 생산량의 80%만 규정되어 있으며, 생산량 및 약정물량을 사업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로서 정상적인 출하약정 물량 관리에 미흡함.
- 출하약정서에는 1) 농가 재배면적 및 예상 생산량 2) 출하약정 물량 3) 약정기간 5년 4) 출하주체가 표시되어 생산량과 약정량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운영되어야 함. 이를 통해 농가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행주체의 판매사업 계획 수립과 운영의 효율화를 추구해야 함.

## ③ 출하약정 주체

- 시행주체인 참후레쉬영농조합법인과 약정 체결하여 적정히 시행함.

## ④ 출하약정기간

- 당초 출하 약정서에는 약정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음. 5년 이상함의 장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행주체 중심의 사업 규모화와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판매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08년 사업을 위해 약정서를 갱신하였으며 표준 양식을 적용하여 5년으로 출하약정기간을 변경하여 노력한 점은 인정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협약서에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배제를 명시하였고, 시행주체의 자체규약에 따른 제재조치도 존재. 반면, 사업 포기과 약정 불이행에 대한 실질적 제재와 페널티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음.
- 브랜드 파워 강화와 비용 절감 등 출하에 따른 소득 증대 효과를 실증하고 엄격한 불이행농가 퇴출 조치로 출하약정을 실질화해야 함.

##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시행주체 중심으로 자재일괄구매를 시행하지 않음.

- 시행주체가 주도하여 주요 자재를 공동구매 함으로써 농가 부담 경감과 우수 품질의 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추진이 필요함.

###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논산시는 시행 주체에서 기존에 사업경험이 있는 업체를 견적서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실무 검토를 통해 공지. 비적격 업체 탈락 등의 조치가 없고, 객관적인 업체 선정을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음.
- 부적정한 업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농가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업체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지하여야 함.

###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단가 검토 및 조정을 시행하지 않았음.
- 전국 평균의 사업단가와 사업 메뉴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가 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세부 시설 기준과 단가를 조정. 생산시설 설치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비용절감, 농가 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함.

##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18	18	0	0	10	10	9	0	53.0%
기타사업			7,259	7,259	185	679	4,754	5,618	2,055	0	77.4%
합계			7,277	7,277	185	679	4,764	5,628	2,064	0	77.3%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6개 시군별로 예산규모와 집행시기에 다소 격차가 있음. 전체로는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예산액 7,277백만원 중 5,628백만원을 집행하여 77.3% 집행.

- 시·군 별로는 논산 71.1%, 서천 74.0%으로 예산집행이 매우 부진하였음.
- 특히, 논산시의 예산현액이 5,646백만원으로 많은 상황에서 이월액이 2,046백만원이 발생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특단의 집행을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예산현액에 대비하여 상반기 집행실적은 2.5%에 불과하고 4/4분기에 65.5%를 집행하여 매우 미흡하고, 집행시기의 지연이 결국 이월로 연결되었으므로 개선이 필요. 조기에 사업을 집행하고 월별, 분기별 진도관리를 실시해야 함.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사업설명회, 담당자 교육 등 사업안내 시행.
- 시행주체가 수시로 사업진행 확인, 업체 점검 등을 수행하였으나 행정과의 협력이 미흡하여 미개시자 조사 등 체계적인 예산 집행을 제고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농업인 교육, 현장 확인, 미완료 농가 개별 방문 등으로 사업집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집행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시·군간 일체화된 추진 노력이 필요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용자 수요가 적어 별도의 집행을 제고 노력을 하지 않음.
- 사전 수요 조사, 용자 집행기관과의 협력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과 집행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관리기, 퇴비살포기, 보행형 관리기 공급, 저온저장고 설치, 착과봉지, 유기질 비료 등 자재 공급사업을 시행
- 시행주체 중심으로 활용하거나 FTA기금지원사업과의 연계성이 미약하므로  
1) 시행주체 지원 2) 참여농가 지원으로 구분하여 연계성을 강화해야 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교체점검, 자체컨설팅 평가 결과에서 과수발전심의회 의 인적 구성 인원이 적고, 전문성이 낮은 점이 지적되었으며, '07년말에 과수발전 심의회를 개편하여 노력한 실적이 인정됨.
- 행정서류 보고 제출 지연 (-0.28점) : 지연일 7일 (-0.07점), 조기보고 35일 (+0.35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시행주체인 참후레쉬영농조합법인은 '94년 설립되었으며, '04년 브랜드 개발과 함께 독립된 수출, 마케팅 전문 영농조합법인으로 성장. 정조합원 859농가, 준조합원 450농가가 참여하고, 농식품부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지정받아 매년 사업규모가 확장되고 있음.
- 시행주체는 FTA기금사업 추진 전담자 1인(상무)를 배치하여 사업관리 노력이 인정되나, 6개시군 광역사업으로 진행되고 예산액이 크기 때문에 내부조직 보강과 실무자 직원에 대한 추가적인 업무분장으로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약정량 5,864톤, 출하량은 3,636톤으로 62.0%에 해당.
- 수출/유통업체 내수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시행주체의 마케팅 추진 전략을 고려하면 약정이행을 제고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 정예농가 육성과 출하약정에 따른 농가 책임성 강화, 각종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저조한 약정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하 실적		이행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
2006년				%
<b>2007년</b>	<b>5,864</b>	<b>3,636</b>	<b>10,508</b>	<b>62%</b>
계	5,864	3,636	10,508	62%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b>11,778</b>	<b>13,035</b>	10.6%	<b>13,427</b>	<b>14,858</b>	10.6%

- 시행주체의 '07년 과일 출하액은 148억원으로 비교적 규모화된 사업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10.6% 증가율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충남지역을 대표하는 과일마케팅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 규모화·확장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10,692	13,427	14,858	10.6%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율(B/A)
실적(백만원)	14,858	4,365	29.38%

- 공동선별·공동계산은 4,365백만원으로 배수출 실적이 해당함.
- 공동선별·공동계산 물량이 규모화 되어 있으나, 사업 확장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농가와 책임분담이 이루어지는 공동선별·공동계산 비중을 확대하도록 해야 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2,713	2,829	4.3%	3,116	4,365	40.1%

- 공동선별·공동계산 성장률은 물량 4.3%, 금액 40.1%로 우수함.
- 공동선별·공동계산 물량의 추가적인 확대를 위해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 농가 확대, 작목반 조직 강화, 법인에 적합한 사업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율(B/A)
사업실적(백만원)	14,858	14,858	100%

- 법인 고유 브랜드이고 '04년부터 개발되어 활용하고 있는 "참후레쉬"(상표 등록) 사용중.
- 법인에서 출하하는 모든 품목에 부착하고, 브랜드력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우수함.

⑦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316	472	686	45%

- FTA사업 추진에 따라 비조합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참여농가 급증.
- 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유통사업 참여농가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지원만을 목적으로하는 단순 참여 농가가 아니라 실제 출하약정을 이행하고, 품질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농가조직을 재구축하고 정예농가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지도가 강화되어야 함.

## ⑧ 기타 사업실적

- 과일류 이외 채소 품목 실적이 있으며, 시행주체의 농자재 판매사업은 '06년 1,175백만원에서 '07년 2,087백만원으로 78% 증가하여 우수함.

###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외부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사업 전반의 개선 방안 도출과 함께 세부 사업 추진과 관련한 만족도, 개선방안 등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실제 사업 개선에 적용해야 함.

###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한 평가보고서 작성, 문제점 및 개선제안 사항 접수
- 시군과 시행주체가 개최하는 별도의 평가회, 환류체계 구축은 미흡하므로, 6개 시군과 주요 참여조직과 함께하는 연차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개선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지역특성화교육으로 메론, 토마토, 딸기, 배, 수박 등 시행주체의 취급품목에 대한 재배기술, 품질관리, 유통, 수출활성화 등 사업전반에 대한 교육 시행.
- 시행주체가 취급하고 있는 주요 품목에 대해 충실하고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GAP운영 매뉴얼을 활용하고 있음.
- 브랜드 마케팅에서 품질관리가 중요해지는 상황이고, 시행주체가 매년 사업 규모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부터 저장, 상품화, 판매·유통 단계를 아우르는 체계화된 품질관리 매뉴얼이 필요함. 특히 내수 상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주요 품목별 품질관리 매뉴얼을 보강하여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시행주체인 참후레쉬의 사업성과가 우수 : 산지유통종합평가 공동마케팅조직 1위, 과실브랜드육성사업, 대통령표창, 대산농촌문화대상 등 외부 인정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시행주체가 사업추진에 적극적이고 의지도 있으나 광역사업으로서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통일성과 협의 활성화를 추진해야함. 또한 신규사업의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정확한 사업 과정 이해가 필요함.

10(3-07)	연기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복숭아 (보조) 배	선정년도	2006
사업주관기관	연기군	사업시행주체	연기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시군	연기군		
득점현황	합계 (100)	5등급	
	계획단계(10)	D+	
	집행단계(50)	C0	
	성과단계(40)	F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연기군은 배 322ha 8,253톤, 복숭아 372ha 5,776톤(충남 전체 복숭아 생산량의 50%)이 생산되는 주산지.
- FTA기금지원사업은 연기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공식적인 사업시행주체이고 6개 지역농협이 참여.

### □ 핵심성과

-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 활성화 및 수출 증대.
-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로 농가 경쟁력 제고.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양곡관련 사업과 인력만 있고 참여조직인 조치원농협이 FTA기금지원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심으로 과수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참여농협간 의사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주체를 공식적으로 조치원농협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와 복숭아가 재배되고 있으나 주산지에 비해 생산량 및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음</li> <li>과수유통을 대표할 수 있는 유통조직이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주산지이기 때문에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차별화 요소를 발굴하여 강화해야 함</li> <li>시행주체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 브랜드 육성과 과수대표 유통조직 육성이 이루어져야 함.</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식적 사업시행주체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지만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조치원농협이 추진하고 있음</li> <li>조합공동사업법인은 양곡분야의 인력만 있어 형식적 사업주체이고, 조치원농협이 기존 지도판매부서에 업무를 분장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주체를 조치원농협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li> <li>사업조직을 명확하게 설정한 후 참여조직간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선정, 미개시자 조사, 분기별 예산 집행 실적 등은 양호하나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예산집행율이 87.6%로 낮음.</li> <li>지원농가의 출하약정 이행율이 21.9%로 매우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해 행정과 시행주체가 일체화된 집행을 제고노력 (현장모니터링, 시공업체 관리 등)이 필요.</li> <li>시행주체의 실질화와 함께 체계화된 판매사업의 규모확대, 공동선별·공동계산 및 브랜드 출하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주체가 과수분야에서 형식적 주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계성은 미흡.</li> <li>전반적으로 조치원농협과 행정기관 및 지역농협과의 연계성은 존재하고 있음.(통합RPC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식적이면서, 동시에 실질적 사업시행주체를 중심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참여조직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모화, 체계화된 협력을 이끌어내야 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5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D+</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C0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D0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D0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C0</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C+</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B0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D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C+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2.0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5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D+</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61	
③ 출하약정 주체	2	0.50	
④ 출하약정기간	1	0.2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D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1.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1.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0.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B0
	① 예산집행률	10	8.76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B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C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0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0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25	
<b>성과단계 소계</b>		<b>40</b>	<b>F</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3	C+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22	F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0.00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0.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00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0.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0.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C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0.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0.00
	⑨ 기타 사업실적	1	0.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2	F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2	F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5	F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00	
② 교육 횟수	1	0.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F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F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1.23	
	비계량	D0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D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과수발전협의회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아닌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한 내부 업무 협의체로 운영. 농업인 의견수렴은 견학 및 교육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이지 못함.
- 충실한 사업 계획 수립과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참여와 자문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문가 참여 회의를 정례화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서면 자문, E-Mail,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가 의견 수렴은 연례적 설문조사와 함께, 사업 계획 단계에 농가조직 대표자 간담회, 워크숍 등을 실시함으로써 현실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협의 횟수 및 내용이 미흡하고, 시행주체와 참여조직 협의 및 회의 실적이 없음.
- 비공식적 사업주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과 출하체계 개선이 연결되지 못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달성에 부적합하므로 조직간 협의회와 담당자 실무위원회, 농가조직 운영위원회 등으로 체계화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명확화와 조직간 협력을 강화해야 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농업인 의견수렴, 순위구분, 협의실적, 심사표 등 대부분 개선하지 않음
-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주체를 재설정 하는 등 전면적인 재검토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시·군		○	○	○		○	○
읍·면							
사업시행주체	○	○		○			○
참여조합	○	○	○	○	○		○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사업시행주체인 연기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동사업 추진에서 전혀 역할을 하지 않고 참여조직인 조치원농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함.
-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시행주체 중심으로 우선순위 심사 등 핵심 업무를 진행하고, 행정과 참여조직이 역할 분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해야 함.

#### ② 1,2순위 준수여부

- 1,2순위를 구분하지 않고 평가하여 공동선별·공동계산 추진 의지가 미흡함.
- 시행주체 중심의 출하체계의 개선을 위해 접수단계부터 "공동선별·공동계산 및 장기출하계약" 농가를 우대할 수 있도록 1,2순위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심사표의 평가항목이 과수목 수령, 용수확보 여부, 경영규모, 사업대상지여건, 경작자 연령, 자부담 능력, 평가자의견으로 구성됨.
- 정책수용성 및 유통규모화 촉진 등 종합적인 평가에 미흡한 내용임.
- 표준안을 적용하되 지역과 품목 여건에 적합하도록 항목과 배점을 조정하여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심사표를 개발해야 할 뿐 아니라 계량화된 실적과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연동될 수 있는 심사표 도입이 필요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145농가 중 134농가를 선정하여 92.4% 선정율을 보임. 점수대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어 변별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동점자 처리기준이 조치원농협 APC 출하실적 및 과원 경작면적으로 되어 있으나 출하약정 주체의 불분명함이 문제 요인으로 판단되므로 실적 등과 연계하여 점수를 차등 부여할 필요가 있음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사업대상자 선정을 '06년 11월 24일 실시하여 조기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적정하게 처리하였음.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미개시자에 대하여 읍면과 농협 직원이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대상자 선정 후 2개월인 '07년 1월 중에 실시하지 않고 '07년 4월, 9월 2차례에 걸쳐 실시함
- 미개시자 발생에 대하여 포기서 징구, 관리 명단 등재 등 적절히 처리하였으나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미개시자 조사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교부결정서에 조치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 적정함.
- 단, 중도포기자 비율이 선정농가수의 약 10% 수준으로, 주로 관정사업에서 발생. 중도포기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예비대상자를 30명 선정하였고 중도포기자를 대체하여 지원하여 적절함.
- 향후에도 미 지원된 예비대상자를 다음 연도에 우선 지원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 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해	당	없	음		
'06년	188	188	100	3,450	2,789	80.8	사업시행 주체	1년
'07년	134	134	100	1,790	1,439	80	사업시행 주체	1년
계	322	322	100	5,240	4,228	80.6	-	

- 사업신청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약정 체결하여 양호함.
- 향후에도 사업신청시 출하약정을 의무화하여 지원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07년 약정농가 생산량 대비 80% 출하약정 체결하여 양호함.
- 출하약정의 실질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③ 출하약정 주체

- 출하약정서의 약정주체는 “법인과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APC”로 되어 있어 출하약정주체가 불명확함
- 사업시행주체로 출하약정을 명확하게 하여 체결하도록 개선해야 함.

#### ④ 출하약정기간

- 출하약정기간을 약정서에 표기하지 않았음.
- 출하약정 기간을 5년 장기로 설정하여 농가 참여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출하약정주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행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법 및 인센티브의 실효성이 전혀 없음.
- 사업시행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행정 차원의 제재 방안과 사업 주체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참여농협이 동면농협을 통해 지주시설 일괄 구매.
- 시행주체를 중심으로 지역 수요가 많고, 공동 구매 효과가 큰 품목에 대해 일괄 구매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행주체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매년 품목별 공동구매 조합을 지정하는 방안도 있으나, 견적서 징구와 입찰에 의한 가격 비교, 품질관리 조건 요구 등 실질적 공동구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업체선정을 위한 업체 접수는 받았으나 전문업체 부재로 평가 없이 단순 선정 공지함.
- 업체선정을 위한 홍보,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전문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업체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평가표에 의거하여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을 하지 않았음.
- 전국 평균의 사업단가와 사업 메뉴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관계자가 참여하는 단가 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세부 시설 기준과 단가를 조정하여 적용해야 함.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5	5			5	5		0	100%
기타사업			479	479	85	120	214	419		60	87.5%
<b>합계</b>			<b>484</b>	<b>484</b>	<b>85</b>	<b>120</b>	<b>219</b>	<b>424</b>		<b>60</b>	<b>87.6%</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예산집행율이 87.6%로 다소 미흡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또한 상반기 예산 집행이 미흡한 문제도 있음. 조기에 사업을 개시하여 집행율을 높이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 요구됨.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지역농협별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초기 단계 사업 대상 농가 교육을 강화하고, 사업 과정 확인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 집행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용자예산 집행을 위해 사전 용자 가능성 여부 확인 등을 시행.
- 사업신청 단계부터 용자 의사 및 가능여부를 조사, 관리하여 용자 예산 집행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함.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자재 지원, 복숭아 축제 지원 등 통상적인 지자체 지원 사업임.
- 조치원농협 APC 미출하농가에 대해 군비 지원을 배제하는 등 연계 조치를 표시하였으나, 실제 이행 여부 등은 미흡함.
- 시행주체가 실시하고 있는 자체사업과 FTA기금 지원사업을 동일하게 운용함으로써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과수 통합마케팅을 위한 체계적 사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지적사항 없음.
- 보고서류 제출 지연(+0.25점) : 미제출 0건, 지연일 3일(-0.03점), 조기일 28일(+0.28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다. 성과단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기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RPC 통합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동사업의 형식적 사업주체임
- 실질적인 사업은 조치원농협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 실질적 사업시행주체 간 괴리가 발생해 사업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공식적, 실질적 사업시행주체를 선정하여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
2006년	2,789	827	2,067	29.6%
<b>2007년</b>	<b>1,439</b>	<b>316</b>	<b>1,198</b>	<b>21.9%</b>
계	4,228	1,143	3,265	27%

- 참여조직인 조치원농협의 출하약정 이행을 수치이며, 21.9%로 매우 미흡함.
- 출하약정의 실질화와 이행실적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조치원농협의 이행 실적으로서 평가에 미반영하였음.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872	753	-15.7	2,542	1,996	-21.5

- 단순계통 출하 실적을 제외한 조치원농협의 사업실적으로 전년에 비해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음. 공동선별·공동계산에 기초한 실질적인 판매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조치원농협의 이행 실적으로서 평가에 미반영하였음.

####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2,542	1,996	-21.5

- 조치원농협의 이행 실적으로서 평가에 미반영하였으며 향후 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1,996	1,996	100%

- 조치원농협의 이행 실적으로서 평가에 미반영하였으며 사업량 전체에 대한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시를 통한 유통규모화 노력이 요구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872	735	-15.7	2,542	1,996	-21.5

- 조치원농협의 이행 실적으로서 평가에 미반영하였음.
- 향후 사업에서는 유통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실적 증대에 대한 노력이 요구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04년 RPC를 통합하면서 개발한 '행복한 아침'을 과수까지 확장하여 지역 농협이 사용하고 있음
- 공동브랜드 중심의 마케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기과수를 대표할 수 있는 유통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 율(B/A)
사업실적(백만원)	21,244	21,244	100%

- 사업실적이 사업시행주체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실적이 아니고 참여조직인 조치원농협의 사업실적으로 표시.
- 조치원농협의 이행 실적으로서 평가에 미반영하였음.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1,146	1,254	9.4%

- 조치원농협의 참여 조합원 증가율을 표시하여 평가에 미반영하였으나, 향후 유통규모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예농가 위주로 참여농가수를 확대해 나가야 함.

⑨ 기타 사업실적

- 기타 사업실적은 조치원농협의 사업실적으로, 평가에 미반영하였음.
- 농가의 소득증대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적극적인 사업확대가 필요함.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지원농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을 전혀 하지 않음
- 예산집행을 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농가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사업시행 성과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 개선과 성과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실적이 없음.
- 행정, 시행주체, 참여조직이 공동으로 자체 평가회를 실시. 계획, 집행, 성과 단계의 주요 지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도출과 사업 계획 반영 등으로 사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조치원농협의 교육실적으로 평가에 미반영하였음.
- 농가의 사업참여율 제고 및 약정이행을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농가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농가의 사업이해도 증진과 유통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가 요구됨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매뉴얼 보유 및 활용 실적이 없음.
- 생산과 유통까지의 품질관리 매뉴얼을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 농가에 보급, 교육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상반기 및 3/4분기 예산 집행실적 인정됨.
- 전반적인 사업 성과가 미흡하므로 총 사업 실적의 규모화 된 경영 및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사업시행주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열의가 대체로 낮음.
- 사업시행주체를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조치원농협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11(5-06)	예산당진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사과 (보조) 배	선정년도	2006
사업주관기관	예산군	사업시행주체	예산농금농협
참여시군	당진군		
득점현황	합계 (100)	2등급	
	계획단계(10)	C+	
	집행단계(50)	B0	
	성과단계(40)	B+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예산농금농협은 사과를 주품목으로 하는 예산, 당진의 FTA기금 사업시행주체임. 묘목 재배장과 APC를 보유하여 규모화되고 역량 있는 사과판매 사업을 추진 중.
- 현재 거점APC를 설치하고 있고 완공 이후에 거점APC를 독립사무소로 운영할 계획임.

### □ 핵심성과

-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의 구축.
-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확대.
- 생산과 유통의 계열화 기반 구축.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거점APC 완공을 앞두고 있어 대규모 물량 취급과 시설운영을 위한 조직 확대, 원물조달 체계 확보 등 세밀한 준비가 필요.
- 당진군에서 별도의 APC 건립을 추진하고, 유통조직으로 만들고 있으므로 사업권역내에서 경합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간 협의가 필요함.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권역인 예산과 당진은 충남의 사과, 배의 주산지임</li> <li>• 사과 주산지로 품질경쟁력은 있으나 지역별로 분포된 유통조직이 경합관계에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과주산지로 거점APC를 설치하여 인근지역을 포괄토록 하였음</li> <li>• 당진의 APC 등 주변지역과 경합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정비하여야 함</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사업지역으로 예산능금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당진을 포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li> <li>• 2개 시군간 지원이 통일 되지 못하고 있음</li> <li>• 지도와 판매업무가 분리되어 있어 효율적인 농가조직화와 마케팅에서 한계가 있음</li> <li>• 매취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농가조직화가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와 사업시행주체의 협력체계는 우수한 편이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2개 시군의 사업방식 및 지원내용을 통일하여 적용해야 함</li> <li>• 특히, 거점APC 건립 후 지도와 판매업무의 통합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함</li> <li>• 거점APC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출하농가 조직화가 필요함. 안정적인 원물조달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과 당진이 대부분의 일정을 통일하여 대상자선정, 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음</li> <li>• 예산집행을, 집행시기 등 모두 우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자 1,2순위 구분 및 기금사업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심사기준 적용 등이 필요함</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사업 조직으로 행정과의 협력과 연계가 양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APC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농가조직화 및 원물조달을 위해서는 행정과 사업시행주체와의 협력 체계 강화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2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C0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C+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B0</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B0</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B0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C+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C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2.0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1.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B+</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60	
③ 출하약정 주체	2	2.00	
④ 출하약정기간	1	1.0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D0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5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1.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3.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B+
	① 예산집행률	10	9.57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B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C+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1.65	
<b>성과단계 소계</b>		<b>40</b>	<b>B+</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3	C+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22	C+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1.47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3.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3.00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1.94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2.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D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0.15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3.00
	⑨ 기타 사업실적	1	0.54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2	B0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2	D0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5	B+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1.00	
② 교육 횟수	1	1.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B0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B+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4.12	
	비계량	C0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B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자문회의는 심의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예산과 당진이 개별적으로 회의를 운영하여 통일된 사업계획 수립에서의 자문은 미흡.
- 또한 사안에 따라 특정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서면 자문, E-Mail 등 다양한 의견청취 통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대상자 선정 이전에 설문을 통한 수요조사 및 교육을 통한 각종 의견수렴은 매우 우수함.
- 예산 당진의 이원화된 자문회의를 시행주체 중심으로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의를 하였으나 당진군의 참여가 다소 미흡함.
-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직간 협의회와 담당자 실무위원회, 농가조직 운영위원회 등으로 체계화하여야 하며 예산농금농협이 주관하는 FTA기금사업 추진관련 협의와 회의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사업추진기관간 협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점검결과에서 대체로 개선됨.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구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시·군		○	◎	○	○	◎	
농업기술센터		○		○			
읍·면	○	○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합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예산능금농협이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정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향후에도 총괄적인 계획수립에서부터 집행까지 모든 업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은 예산능금농협이 담당하되,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조직간 협력 및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함.

#### ② 1,2순위 준수여부

- 1, 2순위를 구분하여 신청 접수, 평가하지 않았음.
- 1, 2순위의 구분은 사업에 지원하는 농가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로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단계부터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농가, 장기출하 약정 참여농가를 우대할 수 있도록 1순위로 배정하여 농가의 사업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예산 당진이 심사표를 통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우수하나 정책수용성 및 유통규모화 촉진 반영에서는 전반적으로 미흡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신청자의 점수대 분포가 고루 형성되어 있으나 변별력이 낮고 동점자 처리 기준이 미흡함
- 표준 심사표를 활용하되, 지역과 품목여건에 적합하도록 항목과 배점을 수정하여 적용함으로써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예산, 당진 모두 사업대상자 선정일을 통일하여 진행하였고, '06.11.17. 조기에 선정하였으며 12월 농정심의회에서 대상자 선정 완료하여 우수함.
- 대상자 선정을 전년도 연말까지 완료하여 영농철 이전에 사업이 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 역시 지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대상자 선정 통지 후 시행주체와 행정 합동으로 현장 확인을 시행하였고, 미개시자가 없었음.
- 총괄점검표로 사업 시작에서 종료까지 동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매우 우수한 사례로 이해됨.

###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중도포기시 3년간 FTA기금지원사업이 배제된다는 사실을 사업설명회 교재에 명시하여 알림.
- 중요한 행정적 제재사항을 교육 교재 뿐 아니라 교부결정서 등 행정문서와 출하약정서에 동시에 표시함으로써 농가들의 이해를 제고해야 함.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예비대상자를 선정하고, 중도포기자를 차순위로 우선 지원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였음.
- 향후 예비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미 선정된 예비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 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예측성을 높일 필요 있음.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6년	197	197	100	9,459	7,567	80 %	예산농금	5
'07년	92	92	100	2,446	1,957	80 %	예산농금	5
계	289	289	100	11,905	9,524	80 %	예산농금	5

- 사업신청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약정 체결하여 양호함.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07년 약정농가 생산량 대비 80% 출하약정 체결하여 양호함.

**③ 출하약정 주체**

- 시행주체인 예산농금농협으로 체결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였음.

**④ 출하약정기간**

- 출하약정을 5년간 장기계약으로 체결하여 매우 우수함.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제재방법 및 인센티브가 대체로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지자체의 조례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음.



-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규모화, 품질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실질적 실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키낮은사과원 조성 관련 주요 자재를 시행주체가 자체매취에 의해 일괄구매 하였으나 계통구매의 경우 실질적 가격절감 효과가 없음.
- 일괄구매 효과가 큰 품목에 대해 일괄구매 품목을 확대하고, 일반업체에 대하여 비교견적을 받아 봄으로써 교섭력 강화를 통한 단가 인하와 품질 검증에도 노력함으로써 농가 부담 경감과 품질 확보에 노력해야 함.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사전에 조사하여 시공 업체명을 교육 중 대상농가에 공지하여 자율 선택하도록 하였음.
-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은 공정성과 지역 공통의 판단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견적서와 시방서 등 업체의 신청 문서와 기존 시공 실적, 농가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업체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평가표에 의거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함.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과수산업육성대책협의회를 예산과 당진이 별도로 개최하였지만 단가 검토, 동일단가 적용을 시행하였으며 업체 시담과 단가 검토 과정 등에서 노력한 점이 인정됨.
- 향후에도 평균 사업단가 및 메뉴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관계자가 참여하는 단가 조정 위원회를 통해 지역여건에 적합한 세부 시설 기준 및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891	350	1,241	884	230	48.5	1,162.5	71.5	7	93.7%
기타사업			406	406	223	50	133	406	0	0	100%
<b>합계</b>		<b>891</b>	<b>756</b>	<b>1,647</b>	<b>1,107</b>	<b>280</b>	<b>181.5</b>	<b>1,568.5</b>	<b>71.5</b>	<b>7</b>	<b>95.2%</b>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생산기반조성											%
거점APC		4,450	10,448	14,898			2,982	2,982	11,916		20%
과실브랜드											%
<b>합계</b>		<b>4,450</b>	<b>10,448</b>	<b>14,898</b>			<b>2,982</b>	<b>2,982</b>	<b>11,916</b>		<b>20%</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예산집행율은 95.2%이며, 상반기 집행율이 높아 우수함. 다만, 일부 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집행율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소액이라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총괄점검표에 의해 농가별 연4회 현장 방문하여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예산집행을 관리하였으며, 우수한 사례로 이해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농협 소식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용자예산을 농가에 알리고 용자 대상자 확정 통보 공문을 보내는 등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음.
- 향후에도 사업신청 단계부터 용자 의사 및 가능여부를 조사하고 관리하여 용자 예산 집행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예산군의 농기계지원사업 및 영농자재지원사업은 거점APC 출하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있으나 당진군은 사업과 연계되지 못함.
- 거점APC 사업권역이기 때문에 2개 지자체의 생산과 유통의 계열화를 위한 통일된 지원은 더욱더 필요함.

※ 기존 조합 보유 APC와 함께 거점APC 가동을 앞두고 있으므로 예산, 당진 원물조달권역의 경우 국비지원사업은 물론 자체사업도 거점APC 물량결집을 위한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함. 소규모농가형 저온저장고, 작목단 단위 선별기 등 지원은 철저히 배제하고, 공동브랜드 활용을 위한 포장재 지원과 일관된 품질관리 적용을 위한 자재지원을 강화해야 함. 또한 시행주체 중심으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주체에 대한 직접지원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거점APC 사업집행 지연을 제외하고는 지적사항이 없음.
- 보고서류 제출 지연(+1.65점) : 미제출 0건, 지연일 9일(-0.09점), 조기일 174일(+1.74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예산능금농협의 기존 조직에 업무분장을 하였지만 체계성이 우수함.
- 거점APC 건립과 더불어 지도와 판매 인력을 거점APC 중심으로 통합 운영하고, 지도, 마케팅, 시설 운영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부조직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해야 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
2006년	7,567	671	1,627	8.86 %
<b>2007년</b>	<b>9,524</b>	<b>4,680</b>	<b>9,359</b>	<b>49.13 %</b>
계	17,091	5,351	10,986	32.84 %

- 출하약정이행율이 전년에 비교하여 증가하였으나 49.13%에 그쳐 낮은 수준임. 출하약정의 정규화, 실질화와 함께, 실제 출하이행을 통해 물량의 규모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3,276	5,371	63.94%	6,919	11,353	64.08%

- 단순 계통출하실적을 제외한 출하량 및 출하금액에서 모두 증가함.

####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2,895	6,919	11,353	64.08%

- 예산능금농협의 총사업실적은 '07년 11,353백만원으로 '06년 대비 '07년 64.08% 증가하였음.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11,353	1,944	17%

-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은 19억원으로 일정 규모는 확보하였으나, 지역 과수 생산기반 및 판매실적을 고려하면 매우 미흡한 규모임. 체계화된 판매 사업 물량, 규모 확대와 공동선별·공동계산에 기반한 탄력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648	691	7%	1,663	1,944	17%

-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의 증가율이 '06년 대비 '07년 17% 증가하였으나 거점APC 사업자로서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동선별·공동계산 물량을 확대하여 물량 결집력을 증대시켜야 하므로 배가된 노력이 필요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사업권역의 공동브랜드는 예산군이 개발 등록한 '의좋은형제', 당진군이 개발 등록한 '해나루', 예산능금농협의 자체브랜드간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거점APC가 가동되면 브랜드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공동브랜드 및 자체브랜드 간 브랜드 위계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지만 브랜드마케팅이 가능함. 가능한 방안은 거점APC 브랜드로 단일화 하되 지역 브랜드를 병기 혹은 하위 브랜드로 운영하는 것이며, 보다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 율(B/A)
사업실적(백만원)	11,353	557	4.9%

- 브랜드 간 위계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마케팅을 추진해야 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37	151	358	137%

- 사업 규모와 비교하여 참여 농가수가 적으며, 특히 거점APC 운영을 앞두고 있어 참여 농가 확대와 농가 조직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⑨ 기타 사업실적

- 과일류 이외 품목 판매 사업실적은 감소하였고 기타 사업(농자재, 포장재, 일반 자재 등)은 '06년 12,236백만원에서 '07년 13,594백만원으로 증가함
- 향후에도 농가의 소득 증대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확대가 필요함.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지원대상농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것은 우수하나 조사시기가 늦어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가 없었음.
- 설문조사 시기와 구체화된 조사문항을 통해 사업성과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써 개선 및 성과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지원대상 조직과 행정조직간 2회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하였으나 평가 방식이 체계적이지 못함.
- 평가위원회를 구성, 종합평가지표를 만들어 자체 평가를 하거나 외부업체를 통한 종합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계획, 집행, 성과 단계의 주요지표를 점검함으로써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도출과 사업계획 반영 등으로 사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교육 횟수 및 인원에서는 양호하나 교육내용이 재배기술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충실도에서 미흡.
- 거점APC 건립에 따른 안정적인 원물조달을 위한 체계적인 농가조직화 교육을 보강하도록 하고, 품질관리와 유통, 마케팅 측면의 이해를 높여 정예화된 농가조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할 것이 요구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기술센터와 예산능금농협이 공동으로 개발한 매뉴얼을 사용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킨 것은 우수함.
- 매뉴얼의 범위를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 저장, 유통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농가에 보급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출하증가율 64.8% 증가
- 예산 집행율 실적 인정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사업권역이 광역이기 때문에 예산과 당진간의 사업 통합과 생산과 유통의 계열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만 거점APC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주체들의 보다 세심한 운영 준비와 지역 통합을 통한 규모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의 노력이 필요함.

12(2-04)	천안거봉포도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포도 (보조)	선정년도	2005
사업주관기관	천안시	사업시행주체	입장농협
참여시군	천안시		
득점현황	합계 (100)	3등급	
	계획단계(10)	C+	
	집행단계(50)	C+	
	성과단계(40)	C+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천안시 거봉포도연합사업단 법인화 결렬로 입장농협으로 사업시행주체를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 연합사업단 운영원리가 적용되고 있음.
- 동일 시군내 배, 포도사업이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지자체와의 협의는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행정-농협 협력방식은 우수함
- 천안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그린'을 개발하고, 브랜드마케팅 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 □ 핵심성과

- 비가림시설사업을 통해 고품질 거봉포도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각 조합별로 진행되던 사업을 연합사업으로 전환, 공동선별·공동계산을 실시하고 천안시 공동브랜드로 출하함으로써 지역 포도산업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형성하였음.
- 공동브랜드 사용에 따른 지역 간 재배방법 통일 및 바이어 평가가 향상.
- 조합공동 진행 사업 외 도매시장에 대해서도 시장분할 방식의 자체협의를 준수함으로써 물량집중에 의한 가격폭락을 방지하고 있음.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07년 6월 사업시행주체가 기존 연합사업단에서 입장농협 주관조합방식으로 변경되었음.
- 참여조직의 변동은 없으며 사업운영 원리도 그대로 유지되는 편임.
- 그러나 주관농협 운영체제로 이행하고 각조합의 협의체 형태로 편성되어 사업구심력이 다소 낮아진 측면은 있음. 참여주체의 협력 노력으로 극복하여야 할 것임 .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적 거봉포도 주산지역으로 생산기반 안정적임</li> <li>• 별도의 공동이용 상품화 시설 기반은 부족한 편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li> <li>• 안정적 생산기반을 활용한 지역을 대표하는 마케팅 주체의 형성이 필요</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조합방식의 사업체제로 전환되었으나 연합사업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li> <li>• 지자체-농협 협력방식은 양호함</li> <li>• 전반적 이해도는 높은 편이며 형식적 체계는 모두 갖추고 있음</li> <li>• 사업량 확대를 위한 열정적 노력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사업단에서 주관조합으로 시행주체를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적합한 지역협력 방식과 사업운영 체계의 조정이 필요함.</li> <li>• 사업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자체평가 등 환류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실도 보완 필요</li> <li>• 시행주체의 체계화된 판매사업이 미흡. 검품, 출하처 관리 등 체계화된 판매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집행을 96.6%로 우수</li> <li>• 상반기 집행율도 양호한 편임</li> <li>• 용자예산 집행율은 높은 편이나 집행율 제고를 위한 노력은 부족한 편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심의, 교부결정, 통보 등 제반 행정절차가 지연되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li> <li>• 용자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안내 및 신용정보 조회 등 노력 강화 필요</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화 및 총괄 사업계획, 공동브랜드 사용 등에 대한 총괄적 협의는 진행되었으나 부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참여 조합간 보다 긴밀한 협의 및 접촉이 요구됨</li> <li>• 시장접근성 양호에 따른 개별적 시장대응 관행 극복 필요</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3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C+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C+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C+</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C0</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B0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C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C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1.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C+</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70	
③ 출하약정 주체	2	1.00	
④ 출하약정기간	1	1.0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D+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5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2.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3.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B+
	① 예산집행률	10	9.90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B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C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53
<b>성과단계 소계</b>		<b>40</b>	<b>C+</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C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D+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3.00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0.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42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1.11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0.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B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2.39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3.00
	⑨ 기타 사업실적	1	1.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C0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D0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C+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36
	② 교육 횟수	1	1.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C+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B0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1.73	
	비계량	C+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C+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선도농업인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센터 산하 천안포도연구회에서 자문위원회 역할을 겸해서 수행. 연구회 연차총회로 대체하였으며, 실질적인 자문위원회가 아님. 농업인 의견수렴은 농가 교육 후 토론시간을 통해 진행하는 수준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 사업계획 수립, 진행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농가 수요 조사를 체계화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기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개별면담, 전화,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배 및 포도 연합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지자체와 시지부, 시행주체 및 참여농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 법인화 및 연합마케팅 추진관련 시행 주체간 회의는 원활하게 추진 되었으나 지자체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회의는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 개최.
- 법인화 결렬로 주관농협 체계로 변경하였으나, 연합사업 형태가 일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되고 효율적인 조직운동을 위한 협의체 재정비와 추가적인 협력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07년 연차평가에 따른 표준 양식 적용으로 '08년도 사업에 대해 전반적 개선 노력이 보임.
- 통합 마케팅 사업 중 공동선별·공동계산 사업 규모를 늘려야 하며, 전담 부서의 독립화 등은 형식적인 것으로 이해됨.
- 평가 점검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업 개선에 적극 활용해야 함.

나. 집행단계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구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	
시·군	○	○	○	○		◎	
농업기술센터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합	◎	○	○	○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사업시행주체가 연합사업단에서 주관조합방식으로 전환, 각 조합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주관농협인 입장농협에서 취합, 우선순위 심사 등을 거친 후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 시행, 양호함.
- 시행주체를 중심으로 핵심업무를 진행하고 행정과 참여조직이 역할 분담을 하는 협력 구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

② 1,2순위 준수여부

- 신청서상 구분접수는 시행하지 않으며, 출하약정서에 출하방법란을 두고 공동선별·공동계산과 개별 선별을 구분하고 있음.
- 표준 양식에 따라 신청단계부터 공동선별·공동계산 농가를 1순위로 구분하여 우대함으로써 판매사업 활성화를 추진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정부정책수용성 측면에서는 사업목적이해(10) 등이 반영되었고, 유통규모화 촉진은 재배규모(10) 및 연합사업단 출하약정율(10)이 반영되었음.
- 기타 연령 및 사업활용성 등이 반영되었음.
- 사업 후 소득증대 가능성,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활용성 등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주관적 심사항목이 반영되었고, 품목특성 반영이 미흡함.
- 표준 심사표 양식을 적용하되, 지역 여건과 품목에 적합하도록 항목과 지표표를 조정하여 적용해야 하며 계량화된 실적과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연동될 수 있는 심사표 도입이 필요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07년 신청농가의 76%인 31농가를 선정하였으며, 점수대별 농가분포가 비교적 고른 편임.
- 동점자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이 많은 농가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표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주관적 항목이 많아 변별력을 갖기 어려우므로 실적 등과 연계하여 점수를 차등 할 수 있는 심사표 개선과 함께 심사 과정을 객관화함으로써 변별력을 높이도록 해야 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실무선에서 '06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현장 조사를 거쳐 1차 확정하고, 2차로 '07년 2월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최종선정은 '07년 3월 농정심의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4월 19일 보조금 교부 결정.
- 대상자 선정 및 확정을 시행 전년도말 이전에 완료하여 영농철 이전에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6월 25일 현황조사 공문 시행하여 7월 13일 시행주체가 확인결과를 시청에 보고, 미개시자 없음.

- 선정과 보조금 교부 결정, 미개시자 조사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조기에 진행해야 하는데 초기 절차 지체에 따라 영농철 중복으로 시공이 늦어지는 등 전반적인 사업 시행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개선 노력이 필요함.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교부결정서에 3년간 지원제외 명기하였고 구체 사례가 있으며 중도포기자에 대하여 실제 3년간 사업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적절하게 처리함.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중도포기자를 사전에 선정한 예비대상자로 교체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적절하게 처리하였음.
- 향후에는 예비대상자 선정 시 미선정 된 예비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예측성을 높여야 함.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24	24	100	148	121	82	연합사업	5
'06년	30	30	100	179	151	84	연합사업	5
'07년	31	31	100	100	85	85	연합사업	5
계	85	85		427	357	83.6	-	

- 사업신청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약정 체결하여 우수함.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07년 약정농가 생산량 대비 85.0% 출하약정 체결하여 양호함.

**③ 출하약정 주체**

- 출하약정 주체는 '07년 사업은 당초의 시행주체인 천안거봉포도연합사업단

으로 적정하게 표시하였음.

- 시행 주체 변경 이후 입장농협으로 출하약정을 갱신하는 과정이 필요하나 실행되지 않았으며, '08년부터 주관사업자인 입장농협으로 변경하였음.
- 시행 주체 중심으로 체계화된 판매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합사업단과의 업무, 역할 분담, 조정이 필요함.

#### ④ 출하약정기간

- 5년으로 장기 출하약정을 체결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였음.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출하약정서 및 협약서에 3년간 지원제외 등 제재사항에 대해 명기하고 있으나 제재사례는 없음.
- 이행농가 인센티브로 하늘그린 봉지지원사업의 경우 연합사업 참여농가는 보조율 50%, 일반농가는 40%를 적용하여 차등화한 점이 돋보임.

###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주요 자재인 하우스용 비닐 및 파이프를 일괄 구매하여 공급하였으나 농협 중앙회 계통조직을 통해 구입한 실적으로서 실질적 가격절감 효과가 없이 개별구입시에도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 시행주체를 중심으로 지역수요가 많고 공동 구매 효과가 큰 품목에 대해 견적서 징구, 입찰에 의한 가격 비교, 품질 관리 조건 요구 등 실질적 공동 구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시청, 농협, 기술센터, 농가대표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구성, 단가조정위원회와 겸해서 진행.
- 5개업체 중 5개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별도의 사업비 절감노력은 없음.



- 업체를 가부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 등 경쟁을 유도하여 농가에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업체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평가표에 의거하여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단가조정위원회를 통해 전년도 조정한(농식품부 기준단가보다 15백만원 절감) 사업단가를 재추인하여, 지역실정을 반영하였음.
- 매년 실무 차원에서 세부 사업 메뉴별 단가를 검토하고, 지역에서 수요가 많은 사업의 경우 업체 견적서와 비교 견적을 시행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단가 조정을 시행해야 함.

##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
기타사업			594	594	263	63	248	575		19	97%
<b>합계</b>			<b>594</b>	<b>594</b>	<b>263</b>	<b>63</b>	<b>248</b>	<b>575</b>		<b>19</b>	<b>97%</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체 집행률 99.0%(농식품부 정산 자료 기준)로 우수하고 조기 집행율도 우수한 편임.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집행을 제고를 위한 지도문서를 시행하였으며, 지자체와 사업시행주체간 회의 및 구두 협의시 예산집행율에 대해 확인 하였음.
- 집행율은 높은 편이나 사업지도를 위한 현장 방문 및 사업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주체간 협의 활성화, 업체별 추진 현황 모니터링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용자 희망자 신용조회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나 용자권유 등에도 신청자가 부족한 상황임.
- 용자 집행율은 높은 편이나 지자체 및 시행주체의 노력은 부족한 편이므로, 사전 수요 조사 강화, 용자 시기 대출실행기관 통지, 농가 안내 등 다양한 실행이 필요함.
- 또한 용자예산 필요농가가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신청시 용자예산 희망여부를 신청서 상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시행주체 및 참여조직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용자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지자체에서 별도로 사업비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 봉지 지원사업 추진 시 연합사업 참여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노력이 인정됨.
- 단, 자체사업의 정책 시행 방향에서 포괄적 연계고리가 있을 뿐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하고 있는 자체사업과 FTA기금 지원사업을 동일하게 운용함으로써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농식품부 등 기관의 점검 지적사항 미이행 없음.
-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및 제출 후 수정, 허위사실 기재 없음.
- 보고서류 제출 지연(+0.53) : 미제출 1건(-1점), 지연일 9일(-0.09점), 조기제출 162일(+1.62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 법인화 추진이 부결되어 입장농협 주관농협 방식으로 진행.
- 3개조합의 지도·판매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입장농협 주관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담팀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음.
- '07년 연합마케팅으로 1,112백만원, 농협 도매사업부를 통해 286백만원 실적을 올림.
- 조합별 판매·지도부서에서 기존업무에 추가하여 사업을 진행하므로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긴밀한 연계체계를 정비하여야 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실적보고서와 간사보고서 상의 실적 매칭)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121	141	558	117%
2006년	151	175	706	115%
<b>2007년</b>	<b>85</b>	<b>180</b>	<b>547</b>	<b>211%</b>
계	357	496	1,811	138%

- '07년 총 출하실적 180톤, 211%으로 우수함.
- FTA기금 지원 출하가능 85농가 중 이행 농가는 80농가이나, 이행 물량은 많음. (당초 약정량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FTA기금사업 이외에 사업 규모화를 위한 원물 조달 관리, 약정농가 중심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추진 등 보다 높은 수준의 판매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273	272	-37.0%	1,810	1,398	-22.8%

- 연합사업 출하 및 농협중앙회 도매사업부 통한 대형유통업체 출하 실적만 인정, 사업량 및 금액 역조로 위축되었음.
- 사업주체의 변경이 사업실적의 위축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7,261	8,374	8,697	3.85%

- 현장실사 시 자료를 통해 '07년 연합사업 1,112, 도매사업부 286백만원. 합계 1,398백만원의 실적 확인.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1,398	1,112	12.78%

- 현장실사 시 자료를 통해 연합사업 출하분은 공동선별·공동계산을 실시한 실적 '07년 219톤, 1,112백만원(전체의 79.5%) 확인.
- 기존 연합사업은 공동선별·공동계산을 원칙으로 진행하여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나 사업실적이 역조를 보이고 있으므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273	219	-19.8%	1,810	1,112	-38.6%

- 공동선별·공동계산은 '06년 대비 '07년 -38.6% 감소하였음.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하늘그린 브랜드를 '06년 2월 특허청에 등록하였음.
- 판촉행사 및 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지원.

- 공동선별·공동계산, 지역공동브랜드 사용 등 우수 시스템을 적용한 물량 및 사업실적 자체의 확대가 필요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 율(B/A)
사업실적(백만원)	1,398	1,112	79.5%

- 현장실사 시 자료를 통해 '07년 공동브랜드 실적이 전체실적의 79.5%임을 확인하였음.
- 지역의 거봉포도 생산 규모와 비교하여 사업 실적이 적고, 공동브랜드, 공동선별·공동계산 등 체계화된 판매사업 규모가 적음. 주산지로서의 장점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 물량 확대와 품질관리에 기반한 브랜드 마케팅 추진이 요망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250	304	506	66%

- 사업 참여 농가의 증가율은 매우 높은 편임.

⑨ 기타 사업실적

- 조합 구매사업이 총 22.8% 증대하였음.
-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여 효과적 사업 추진을 통해 농가 실익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개선사항에 대해 12개 항목에 걸친 설문조사 실시, 사업참여 농가 18농가 참가, 사업이해도 중심의 평가.
- 설문 참여농가가 적어 형식적이며 개선사항을 도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 착색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기술센터 의뢰 등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인정됨.

- 사업에 대한 농가 이해를 확대시켜야 하며 지속적 농가의견수렴을 통해 의견을 반영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차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항목별 우선순위 평가표로 시행주체가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점검표 수준으로 판단되며 환류체계는 미흡함.
- 행정, 시행주체, 참여조직이 공동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연차별 예산 집행, 사업 성과, 농가 만족도, 조직별 참가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차년도 사업 설계 및 개선 방안 도출에 노력해야 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조합장 주관 마을별 농업인 교육은 조합의 기본적 영농회별 좌담회로 판단하여 실적에서 제외.
- 유통사업 참여조합원이 500여명임에 비해 공동선별공동계산 연합사업관련 교육은 70여명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명품화 교육은 가락시장 경매사 위주로 진행되었고 별도의 교육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 지역 통합과 공동마케팅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조합원 자체교육 수준으로 참여율의 진폭이 크고 교육 충실도와 신뢰도가 떨어짐.
- 농가의 사업참여율 제고 및 약정이행율 제고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농가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선별·공동계산 중심으로 농가 참여를 확대하고 진성회원 중심으로 농가조직을 정예화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교육교재 형태이나 농가 활용도 및 내용측면에서 양호한 편임
- 생산과 유통까지의 품질관리 매뉴얼을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 농가에 보급, 교육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예산 상반기 45.7%, 3/4분기 11.03% 집행
- 기존 각 조합별로 진행되던 사업을 연합사업을 통해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실시하고 천안시 공동브랜드로 출하함으로써 지역 포도산업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형성하였음.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지자체와 시행주체 모두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편이나 사업추진 충실도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판단됨 .

13(2-05)	천안배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배 (보조)	선정년도	2004
사업주관기관	천안시	사업시행주체	천안배원예농협
참여시군	천안시		
득점현황	합계(100)	3등급	
	계획단계(10)	C+	
	집행단계(50)	B0	
	성과단계(40)	C+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천안배원협을 사업시행주체로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업무구조를 갖고 있으며 배 주산지역인 성환농협이 참여.
- 동일 시군내 배, 포도사업이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지자체와의 협의는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행정-농협간 협력방식은 우수함
- 천안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그린'을 개발하고, 브랜드마케팅 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 □ 핵심성과

- 공동선별·공동계산에 의한 농가조직화를 통해 대형유통업체 출하, 수출시행 등 신유통마케팅 시스템 적극 도입.
- 천안시 공동브랜드 사업에 참여하여 품질관리 향상.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천안배원협을 시행주체로 특이사항 없음.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장배 시장을 주도하는 주산단지 중 하나로 역사와 전통이 있음.</li> <li>지역내 다수의 선과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접근성이 좋아 산지 유통 주체가 난립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주체를 중심으로 농가조직화에 의한 브랜드마케팅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지역 대표 마케팅 조직 육성과 체계화된 천안배 판매 시스템 구축 필요.</li> <li>중부권 경쟁지역 분석과 협력 노력으로 효과적 시장대응 필요.</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와 품목농협간 협력체계로 단순하여 효과적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으나, 포도 사업과 공동추진·협약이 이루어져 혼란이 있음.</li> <li>전반적 사업 이해도는 높은 편이며 사업추진을 위한 관리 체계는 비교적 잘 갖추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자체평가 등 환류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실도 보완 필요.</li> <li>배, 포도 공동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품목특정의 의사결정과 사업관리를 강화해야 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집행을 99.7%로 높음</li> <li>조기 집행 노력이 미흡하여 상반기 집행율이 낮고, 용자예산 집행 노력은 저조한 편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통보 등 관련 절차를 조기에 수행하여 원활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li> <li>용자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안내 및 신용정보 조회 등 노력 강화 필요</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안배원협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성환농협은 명목상 참여조직에 불과.</li> <li>조합간 사업구역이 중복되고 특성이 달라 단일한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애로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합 상호간 상생이 가능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수출단지 지원,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기준 마련, 공동마케팅 및 홍보 추진 등 협력 과제 수행 필요.</li> <li>개별적 시장대응 관행을 극복하지 못한 지역내 농가 및 작목반 조직의 정예화 필요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3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C+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C0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B0</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C0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B0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C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C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1.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60	
③ 출하약정 주체	2	2.00	
④ 출하약정기간	1	1.0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D+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2.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3.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A0
	① 예산집행률	10	9.97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B+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C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0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0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51	
<b>성과단계 소계</b>		<b>40</b>	<b>C+</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C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D0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2.13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0.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1.55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2.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0.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B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2.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1.64
	⑨ 기타 사업실적	1	0.48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C0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D0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B0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1.00
	② 교육 횟수	1	1.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C+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C+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2.29	
	비계량	C+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B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선도농업인 및 외부전문가(3~4인 참석)로 구성된 천안배연구회에서 자문위원회 역할을 겸해서 수행하고 있으며 천안배연구회 연초 총회, 정기총회, 연말 총회시 운영.
- 농업인 의견수렴은 작목반 대표자 회의 시 의견수렴으로 대체.
- 자문위원회가 농가교육 형태로 이루어져 형식적이며, 특정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개별면담, 전화, E-mail 등을 활용하여 자문회의 구성과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배 및 포도 연합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지자체와 시지부, 시행주체 및 참여농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 사업단 법인화관련 및 연합마케팅 추진관련 사업시행주체 간 회의는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나 지자체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회의는 사업추진상 현안이 발생할 경우 개최.

※ 천안은 포도와 배 2개 사업이 분리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연합사업 형태를 취하고 있어 품목에 특정된 독립된 업무협의 내용이 매우 부족함. 기존 연합사업단 중심으로 "하늘그린" 브랜드 마케팅을 수행하나 FTA기금 지원사업은 시행주체와 품목이 구분되어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체 형성에 혼란이 있음. 품목, 지역 특성에 따라 분리된 사업계획으로 운영한다면 품목에 특성화된 협의와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강력한 내부 조정력이 발휘되도록 해야 함.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전반적 항목에 대해 개선노력 보임.

- 자문위원회 등 회의체의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 회의 및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과수산업의 발전 방향 및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방안 마련의 장으로서 활용해야 함.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	
시·군	○	◎	○	◎		○	
농업기술센터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합	○	○	○	○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사업시행주체가 신청서 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을 주도하고 있으며 정산업무는 지자체가 주관하여 양호함.
- 시행주체를 중심으로 핵심업무를 진행하고 행정과 참여조직이 역할 분담을 하는 협력 구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 특히 우선순위 선정 및 출하약정 주체, 마케팅 등은 사업시행주체인 천안배원협으로 단일화하여 진행하여야 함

## ② 1,2순위 준수여부

- 신청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접수하지는 않았으나 신청서 접수 시 공동선별·공동계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음.
- 신청 단계부터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약 농가를 우대하여 1순위를 부여함으로써 농가들의 참여와 출하체계의 개선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정부정책수용성 측면에서는 사업목적이해(10) 등이 반영되고 공동선별·공동계산은 동점자 처리 기준에 반영되었음. 유통규모화 촉진은 재배규모(10) 및 연합사업단 출하약정율(10)에 반영되었음.
- 기타 연령 및 사업활용성 등이 반영되었으며 동점자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 등으로 평가.
- 사업 후 소득증대 가능성,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활용성 등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주관적 심사항목이 반영되었으므로, 각 지표를 고루 반영하여 계량화된 실적과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연동될 수 있는 심사표로 개선이 필요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07년 신청농가의 60%수준에서 농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접수대별 농가분포가 비교적 고른 편임
- 주로 과원소유 형태, 재배규모, 연령에 의한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주관적 항목이 많아 변별력을 갖기에 어려움.
- 표준 심사표 양식을 적용하되 지역과 품목 특성에 적합하도록 항목과 지표를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객관적 실적 등과 연계한 점수를 차등부여 한 동점자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실무선에서 '06년 12월 28일 1차로 57호를 확정하였고, '07년 2월 14호를 확정하였으나, 최종선정은 '07년 3월(3.9) 농정심의회를 통해 이루어짐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년도말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해야 할 뿐 아니라 교부결정, 선정 통보 등 관련 행정 절차 역시 조기에 진행하여 영농철 이전에 사업이 개시되도록 노력해야 함.
- 또한 예산 규모에 따라 신청을 독려함으로써 2차 선정으로 객관성/공정성을 훼손과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함.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4월 19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시행하였고 2개월 이후인 6월 25일 현황조사 공문 시행하였으며 미개시자에 대하여 3년간 FTA사업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 보조금 교부 결정이후 좀 더 조속한 시일 내에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출하약정서상 3년간 지원제외를 명기하였으며, 중도포기자 명단을 관리하는 등 적절히 조치하였음.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중도포기자를 사전에 선정한 예비대상자로 교체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였음.
- 향후에는 예비대상자 선정 시 미 선정된 예비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예측성을 높여야 함.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121	121	100	3,474	1,737	50	배원예	5년
'06년								
'07년	67	67	100	1,400	1,120	80	배원예	5년
계	188	188	200	4,874	2,857	58.6	-	

- 사업신청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약정 체결하여 우수함.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07년 약정농가 생산량 대비 80.0% 출하약정 체결하여 양호함.

③ 출하약정 주체

- 출하약정 주체는 시행주체인 천안배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 적정함.

④ 출하약정기간

- 5년 장기 출하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적정하게 처리하였음.
- 향후에도 5년 이상 장기출하약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단순약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출하약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출하약정서에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어떠한 제재를 하여도 이를 제기하지 않으며 추후 향후 3년간 사업에서 배제함을 명기하였음. 구체적인 제재 사례는 없어 효력이 발휘되지 않음.
- 조합 환원사업에서 출하약정 이행율이 높은 농가는 약간의 점수를 더 부여 받고 있으나 일반적인 영농자재 무상 지원으로서 차별화된 인센티브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자체 및 사업시행주체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예산 및 제도를 통하여 출하약정 이행 및 위반 시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패널티 규정을 마련에 노력해야 함.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해당 실적 없음.
- 시행주체가 중심이 되어 생산시설 사업관련 주요 자재를 공동구매함으로써 교섭력을 확대하고, 단가 인하 등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매년 품목별 공동구매 조합을 지정하는 방안도 있으며, 견적서 징구와 입찰에 의한 가격 비교, 품질 관리 조건 요구 등 실질적 공동구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시청, 농협, 기술센터, 농가대표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구성, 단가조정위원회와 겸해서 진행.
- 7개업체 중 7개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단위사업당 복수의 업체를 선정하였으나 특별한 사업비 절감노력은 없음.
- 업체를 가부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 등 경쟁을 유도하여 농가에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 향후에는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업체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평가표에 의거하여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단가조정위원회를 통해 전년도 조정한(농식품부 기준단가보다 1백만원 절감) 사업단가를 재추인하였음.
- 단가 검토는 매년 시행하되 단순 검토하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업체 견적서 징구와 전년도 실제 시공실적 검토 등으로 지역 여건에 적합하도록 시공단가를 관리해야 함.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① 예산집행을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
기타사업			483	483		180	302	482		1	99.7%
합계			483	483		180	302	482		1	99.7%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예산집행율은 99.7%로 우수하나, 상반기에 예산 집행을 못하고 3분기 이후에 이루어졌음.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집행을 제고를 위한 지도문서 시행 확인, 지자체와 사업시행주체간 회의

및 구두협의시 예산집행율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상호 확인

- 집행율은 높은 편이나 통상적 업무추진을 위한 독려수준으로 파악되므로 상반기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예산집행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회의체계를 가동하고 시행주체에서는 조기에 농가들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 필요.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사업시행주체(대출기관 겸합)를 통해 사전 신용조회를 실시하고 용자예산 집행 지도공문을 시행하였으나 일반적 노력으로 미흡한 편임
- 용자예산 필요농가가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신청시 용자예산 희망여부를 신청서 상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시행주체 및 참여조직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용자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FTA사업 대상농가를 공동마케팅 농가조직화 측면에서 집중 육성하는 공동계산팀(수출, 친환경, 공동브랜드 겸합)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천안시 공동브랜드 하늘그린 포장재 지원사업 10% 보조우대 등은 연계가 효과적이거나 기타 자체사업은 정책시행 방향에서 포괄적 연계고리가 있을 뿐 연계가 미흡하므로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하고 있는 자체사업과 FTA기금 지원사업을 동일하게 운용함으로써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농식품부 등 기관의 점검 지적사항 미이행 없음.
-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및 제출 후 수정, 허위사실 기재 없음.
- 보고서류 제출 지연(+0.51) : 미제출 1건(-1점), 지연일 9일(-0.09점), 조기제출 26일(+1.60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천안배원협 지도판매과(3명) 총괄 주관, 성환농협 판매과(1명) 참여. 18,594 백만원 출하 실적
- 시행주체 기존부서, 담당자에게 사업 관리 업무를 맡긴 수준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담당자 지정과 책임자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1,737	1,737	2,895	100%
2006년				%
<b>2007년</b>	1,120	806	<b>1,343</b>	<b>71%</b>
계	2,857	2,543	4,238	89%

- '07년 총 출하약정 이행률 71%로 매우 미흡하므로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4,288	2,727	-36.4%	8,083	5,176	-36.0%

- 공동계산, 수출, 매취실적만 인정, 사업량 및 금액에서 역조 발생.
- 단순 계통 출하에서 탈피하여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한 체계화된 판매사업을 보다 확대·강화해야 함.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8,083	5,176	-36.0%

- 현장실사 시 자료를 통해 '07년 공동선별·공동계산 2,362, 수출 1,366, 매취 1,448. 합계 5,176백만원 확인.
- 조합의 판매사업 규모에 비해 체계화된 판매사업 규모가 다소 미흡하므로 공동선별, 공동계산 확대와 품질관리, 판매사업 관리 역량을 확대해야 함.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율(B/A)
실적(백만원)	5,176	3,728	72.0%

- 현장실사 시 자료를 통해 공동선별·공동계산 및 수출분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시한 실적 확인.
- 판매사업 실적을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위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07년 1,769톤, 3,728백만원, 전체의 72.0%로 높게 나타남. 비교적 공동선별·공동계산 물량이 규모화되어 있으나 품목조합으로서 타 산지와 경쟁하기에는 적은 규모이므로 체계화된 판매사업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2,890	1,769	△38.8%	5,789	3,728	△35.6%

- 공동선별·공동계산 사업 규모가 전년에 비교하여 물량은 38.8%, 금액은 35.6% 감소하였음.
- 공동선별·공동계산은 수탁방식으로 농가와 조합이 일체화되어 체계화된 물량통제와 마케팅 추진을 수행하는 검증된 사업방식임. 매년 사업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천안시 공동브랜드 하늘그린 배를 '06년 2월 특허청에 등록하였음.
- 판촉행사 및 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지원.
- 하늘그린은 지역, 다품목 공동브랜드로서 배의 경우에도 사용실적 양호.
- 지역 이미지 연계와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추진하고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 또한 다품목 브랜드로서 각 부문별 품질관리와 이용주체 관리 노력을 강화하여 브랜드 실패를 방지해야 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 율(B/A)
사업실적(백만원)	5,176	3,448	66.6%

- 전체 실적 중 공동브랜드는 사용실적이 66.7%이며 향후 지속적 증가 노력이 필요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345	357	396	10.9%

- 대상농가의 조직화가 안정화 단계로 증가세 둔화됨.

⑨ 기타 사업실적

- 조합 구매사업 등 9.6% 증대.
- 농가의 소득증대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한 지속적 사업 확대가 필요함.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농가만족도에 대해 19개 항목에 걸친 설문조사 실시, 사업참여 농가 66명 참가.
- 만족도에 대한 현황분석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개선 및 환류 체계는 미흡한 편이므로 설문 문항을 보다 체계화하고 대상 농가를 확대하여 농가 의견을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항목별 우선순위 평가표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오기된 평가표를 사용함으로써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점검표 수준으로 판단됨
- 계획, 집행, 성과 단계의 주요지표를 점검하고 항목 설계 및 객관적 평가지표 적용을 통한 항목별 환류체계 구축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친환경아카데미교육은 특정된 농가(60명)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실시하였으며 기타 친환경, 수출 등을 주제로 다양한 강사를 초빙하여 농가 집합교육 실시한 점은 양호하나 충실도 보통수준임.
- 단순 재배기술, 친환경농업 교육에서 탈피하여, 마케팅과 조직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공동선별, 공동계산 및 수출작목반 체계화를 위한 조직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친환경아카데미 교육교재를 매뉴얼로 활용, 월1회 정도 신규 내용 생산, 정리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생산위주로 편성되어 있음. 유통, 마케팅을 포함한 균형 있는 교육과 매뉴얼화가 필요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예산 조기집행이 다소 우수하고(3분기 37.3%), 시행주체의 주도성이 높은 편이며, 1,157백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APC를 보완하는 등 유통규모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또한 조합자체 역량만으로 국내 굴지의 대형유통업체 거래 코드 획득하였고, 당도 증진을 위한 다공질필름 재배 기술을 접목하고자 노력하였음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지자체와 시행주체 모두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편임.
- 품목조합 단독 주체로 사업추진 노력은 있으나 충실도는 일반적인 수준임.



## 전라북도·전라남도

14. 전북 고창과수육성사업 ..... 255
15. 전북 김제·완주 포도육성사업 ..... 271
16. 전북 남원과수육성사업 ..... 286
17. 전북 동부산악권 과수육성사업 ..... 300
18. 전북 서남부평야 과수육성사업 ..... 317
19. 전남 동부과수육성사업 ..... 333
20. 전남 배육성사업 ..... 350
21. 전남 유자육성사업 ..... 366
22. 전남 한국참다래육성사업 ..... 381





14(1-07)	고창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배 (보조) 복분자	선정년도	2005
사업주관기관	고창군	사업시행주체	고창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시군	고창군		
특점현황	합계 (100)	2등급	
	계획단계(10)	C0	
	집행단계(50)	B0	
	성과단계(40)	B0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고창군은 복분자 1,333ha, 4,800톤을 생산하는 최대 생산지역이며, 배는 167ha, 4,086톤을 생산. (2006년말 통계연보 기준)
- '05년부터 FTA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07년 생산시설현대화 등에 총 2,529백만원을 투자.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APC를 운영하는 통합마케팅조직이며, 7개 농협과 2개 영농조합법인이 참여하고 있음

### □ 핵심성과

- 복분자 비가림 시설 설치와 배 수출단지 집중 지원으로 지역특성화의 기반을 마련.
- APC와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RPC 업무를 포함한 운영관리는 불완전한 상황임.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고창조합공동사업법인을 시행주체로 하나 마케팅 기능을 주로 담당하며, 실제 FTA기금 생산·유통지원 사업 추진과 관리는 참여조직인 배영농조합과 복분자영농조합 2개 영농법인 중심으로 이루어짐.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는 생산규모가 다소 적고, 주산지로서의 지명도가 약함</li> <li>복분자는 전국 제1의 생산량과 우수한 품질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쟁산지 확장으로 가격 저하 경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는 수출 단지 중심의 차별화가 필요하고 브랜드화로 품질, 이미지 확대가 필요</li> <li>복분자 물량 결집과 대량/통합 마케팅으로 가치 향상에 노력해야 함</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 주체 역할이 한정되어 있고 참여조직이 주도하는 사업 추진</li> <li>배영농조합이 시공업체를 겸하여 효율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단점도 보유</li> <li>연합사업단은 APC운영을 중심으로 배, 수박, 배추, 무 등 다품을 취급하며 매년 성장</li> <li>"황토배기"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으나 본격적 브랜드 마케팅 추진은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케팅과 생산기반 지원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간 협의가 활성화되어야 함.</li> <li>사업추진의 객관성, 참여기회 확대 등 단점 보완을 위한 노력 필요</li> <li>복분자 수매, 통합판매 체계는 주체간 역할 분담과 리스크 회피 등 우수한 사업 방식으로 이해되나, 사전 협의, 단가 산정, 물량 관리 등 사업추진의 정밀화가 요망됨</li> <li>다품목 마케팅에 적합한 브랜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촉진 사업이 필요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반기에 1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전북지역 예산을 재배정받아 하반기에 14억을 추가 추진</li> <li>분기별 현장 모니터링 등 예산집행 관리를 위한 노력이 우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농가가 많고 관련 예산 수요가 많으므로 연차별 예산 수립을 철저히 해야 함</li> <li>효과적 활용을 위한 지원 아이템 정비, 집행 체계화 등 노력이 필요함</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케팅과 생산관리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나 통합 기획 및 연계가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마케팅 조직의 위상과 형태를 정리하여 혼란을 방지해야 함.</li> <li>RPC조합공동사업법인을 활용한 형식적 법인화에서 탈피, 실질적인 과수마케팅 조직으로 체계화해야 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2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0</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C0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C0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B0</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C+</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C0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5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C+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C+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1.0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1.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C0</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65	
③ 출하약정 주체	2	0.00	
④ 출하약정기간	1	0.6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C0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1.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3.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2.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A0
	① 예산집행률	10	10.00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A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B+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0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0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20
<b>성과단계 소계</b>		<b>40</b>	<b>B0</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C+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B0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2.04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0.73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3.00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2.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2.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B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1.73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3.00
	⑨ 기타 사업실적	1	1.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B0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D0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C0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51
	② 교육 횟수	1	0.71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C+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C0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1.27	
	비계량	C0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C+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자문단을 서면으로 구성하였으나 실제 운영 실적이 없음.
- 농업인 의견수렴은 "분기별 현장 모니터링"과 선진지 견학시 분임토론을 통해 시행하였음. 분기별 모니터링 시행과 참여 조직의 분임토론 시행 등 의견 수렴 노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산,학,관 협의회를 정규화하여 지역 과수산업 발전과 FTA기금사업 추진의 총괄적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사업에 반영·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농가 의견 수렴을 강화해야 함.
- 재배기술 향상, 품질관리 체계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정례화하여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영역의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개별면담, 전화,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야 함.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행정, 연합사업단, 배조합, 복분자조합으로 구성된 "과수발전위원회" 6회와 시행주체와 참여주체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및 "추진협의회"를 8회 개최하는 등 수시 협의.
- 사업 추진을 위해 소수 인원이 수시로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안전 및 의결 사항, 집행 성과가 미흡. 의사결정의 명확화를 위한 협의체계의 공식화와 회의 결과 정리, 추진 상황 모니터링 등 보다 체계화된 운영이 필요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07년 연차평가 결과 자문단 및 협의체 활성화, 지원대상자 1,2순위 구분 평가, 심사표 개선, 사업조직 법인화, 출하약정 체계화, 공동브랜드 강화, 농가 의견 수렴 강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

- '07년에 연합사업단이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되었고, '07년 하반기 사업부터 신청서, 평가표, 약정서 등을 표준양식으로 대체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체계화한 점이 인정됨.
- 다만, 연합사업단의 조합공동사업법인 전환은 시행 주체 법인화를 추진한 중요한 사안이지만, 기존 군지부 연합사업과 관계정립이 불분명하고 법인 중심의 사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지역 농산물 마케팅의 핵심 주체이자 FTA기금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 추진 주체로서 법인의 위상과 사업 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사업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시·군		○	○	○		○	
읍·면		○	○	○			
사업시행주체	○	○			○		
참여조합	○	○		○	○		

- 고창군연합사업단은 APC운영 조직으로 마케팅 기능을 수행. FTA기금 사업은 참여조직인 배영농조합과 복분자영농조합이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추천과 지도, 점검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 사업 과정에서 시행주체의 역할은 사업추진 관련 협의회에 참여하는 등으로 한정됨.

- 실제 배, 복분자 각각의 품목 대표 조직으로서 각 영농조합의 역할을 인정할 수 있으나 우선순위 추천, 지도·점검, 1차 정산 등 핵심 기능에 대해서 시행주체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통해 출하권 단일화, 집중화, 규모화와 지원사업이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함.

※ 고창군은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07년 상반기에 1,051백만원, 하반기에 1,440백만원 등 총2,491백만원의 사업을 수행. 하반기 사업은 전북도 타지역 예산을 전배 받아 추가 집행한 것임. 상반기는 농식품부에서 표준 양식이 배포되기 전이라 평가지표와 괴리된 내용이 많으나, 하반기는 연차평가 이후로 표준 양식이 배포된 이후의 시점에서 수행되어 평가지표와 합치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음.

## ② 1,2순위 준수여부

- 상반기 사업은 1,2순위를 구분하여 접수하지 않았음. 심사표에 출하약정율 지표에 50점을 부여함으로써 출하약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 등 사업체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순위 구분 평가로 이해하기 어려움.
- 하반기 사업은 농식품부 표준 양식에 따라 1,2순위 구분하여 접수, 평가를 시행하였음.
- 사업 신청단계부터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농가를 1순위로 구분하여 분리·평가함으로써 농가조직화 및 유통규모화를 위한 확고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농가 참여도 제고와 책임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행주체 판매사업을 연계하기 위한 사업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상반기 사업 심사표는 출하약정율, 전년도 약정 이행율, 전년도 생산량 대비 출하약정율, 조합회의 참여율, 교육 및 견학 참여율, 친환경 인증, 과원 규모, 재배경력, 의욕 등 9가지 지표를 적용. 출하약정 관련 지표 비중이 매우 높게 설정된 것이 특징. 생산량 산출 등 실제 지표 적용에 어려움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문제가 있음.
- 하반기 사업 심사표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적용함. 표준 양식을 적용하더라도, 지역과 품목 실적에 적합하도록 항목과 배점을 재구성해야 함.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상반기와 하반기 합계 175농가 중 152농가를 선정. (86.8%)
- 심사결과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
- 상반기 심사표에는 동점자 기준이 없으나, 배영농조합과 복분자영농조합의 자체 기준에 따라 회의 참여율, 재배경력, 연령 등으로 우선순위 적용.
- 신청농가가 많아 평가항목의 배점을 단계적으로 부여할 경우 동점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적과 연계하여 점수를 차등 부여함으로써 변별력을 강화해야 함.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07.2.27. 군 농정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연말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조기에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사업대상자 선정 후 1개월 경과 시점인 3.20.~3.31. 읍·면 직원과 참여조직 합동으로 일제조사 실시. (현장 모니터링)
-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미개시자 없이 착공한 것으로 파악하였음.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복분자 품목에서 중도포기자 3인 발생.
- 3년간 FTA기금지원사업 배제를 통보하고 예비대상자에서 재배정함으로써 걱정하게 조치.

※ 참여조직인 배 영농조합과 복분자 영농조합이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 농가를 사전에 선별함으로써 미시행 및 중도포기 사례가 적은 것으로 판단. 예산 집행에 효율적 측면이 있으나 공정한 지원 기회 부여 측면에서는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됨.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사업대상자 선정시 예비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였고 포기자 물량을 예비대상자에게 배정하여 시행함.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110	110	100	628	445	70.8	참여조합	1년
'06년	89	89	100	2,228	1,774	79.6	참여조합	1년
'07년	152	152	100	3,800	3,128	82.3	고창군 연합사업단	5년
계	351	351	100	6,656	5,347	80.3		

- 사업신청시 출하약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원농가 100%가 출하약정을 체결하여 적절하게 추진하였음.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3,800톤 생산량 대비 약정물량은 3,128톤으로 82.3%에 해당하여 적정함.
- 유통규모화를 위한 물량 확대와 약정물량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

③ 출하약정 주체

- 상반기, 하반기 모두 출하약정 주체는 고창군연합사업단으로 체결하였음.
- '06년 사업은 참여조합으로 약정주체를 설정하였으나, '07년 사업은 고창군 연합사업단으로 체결. 그러나, '07. 1월 법인설립이 되었는데도 연합사업단으로 출하약정을 체결한 것은 부적절한 사항임. 연합사업단 업무를 법인으로 이관하지 않고 사업주체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형식적인 법인화로 판단되며 이러한 문제점은 전년도 연차평가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신속한 개선/정리가 필요함.

#### ④ 출하약정기간

- 상반기는 출하약정 기간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하반기는 표준 양식에 따라 5년으로 적용.
- 5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행주체 중심의 사업 규모화와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판매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불이행 농가에 대해 배 영농조합 내규에 따라 정조합원 자격 박탈과 수익금 배당 제외, 각종 사업 후순위 배정 등으로 제재조치 마련.
- '07년 약정이행률 최하위 1명에 대해 준조합원 강등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약정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를 상징적으로 실천하였음.
- 출하약정서에는 약정미이행시 3년간 FTA기금지원사업 배제가 명시되어야 하고, 약정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상벌 조항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농가별 점검이 진행되어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농가들의 출하이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함.

###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배 영농조합이 직접 시공을 맡아 자재도 직접 일괄 구매하여 공급하였으며, 1,493백만원의 공급 실적을 올렸음.
- 참여조직이 직접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시공을 담당하는 특수한 경우이나,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시행관리를 위한 노력, 자재 일괄 구매를 통한 단가 절감 노력 등 유효한 사업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함.

####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배영농조합과 복분자영농조합에서 각기 시공업체에 대한 견적서 및 사업실적 검토를 시행하여 과수발전위원회에 추천하여 선정.
- 업체 선정은 참여조직의 실무 검토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 설정과 전문위원회를 통한 검토가 필요함.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덕시설을 14,000천원/ha에서 16,000천원/ha로 단가상향 조정을 시행.
- 단가조정위원회 없이 참여조직의 실무적인 판단으로 시행하여 결정 및 추진 과정이 미흡함.
- 실무자 검토에서 탈피하여,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세부 시설 기준과 단가로 조정해야 함. 생산시설 설치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비용절감, 농가 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함.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
기타사업			2,491	2,491	1,051		1,440	2,491			100%
<b>합계</b>			<b>2,491</b>	<b>2,491</b>	<b>1,051</b>		<b>1,440</b>	<b>2,491</b>			<b>100%</b>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생산기반조성			995				38				3.8%
거점APC											%
과실브랜드											%
<b>합계</b>			<b>995</b>				<b>38</b>				<b>3.8%</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은 전액 집행(100%)하였으며, 상반기, 하반기 각기 단기간에 집행완료.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매우 우수한 집행실적으로 평가됨.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농가교육, 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집행을 독려하고, 배영농조합은 자체 시공을 수행하므로 조기 시공에 주력하였음.
- 행정 차원에서 "분기별 현장모니터링"을 정례화 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집행 관리를 강화한 점은 우수한 실적으로 인정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용자 희망농가는 선정과 함께 농협에 명단 통보. 용자 시행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처리.
- 용자시점을 완공 이후로 연장 적용함으로써 용자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복분자 관련하여 신활력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외에 수출홍보, 참여조직 전산화 지원 등을 시행.
- 직접적인 사업간 연계는 미약하나 자체 사업 및 타 국비사업으로 홍보 지원 등 시행주체 및 참여조직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공공형 APC 건설, 공동마케팅 조직, 신활력사업 등 대규모 정책사업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사업간 경합 요소를 세밀히 검토하게 제거하고, 각각의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사업 주체 육성과 지역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에 집중되도록 해야 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외부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해당 없음.
- 보고서류 제출 지연 (+0.20점) : 제출 지연일 21일 (-0.21점), 조기 41일 (+0.41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06.5.26. 고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창립총회, '06.11.27. 법인 설립 인가, '07.1.8. 설립등기 완료하였음.
- 당초 연합사업단 참여조직 16개소였으나, 실제 법인 참여조직은 9개소로 법인화 참여가 미흡.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통합 RPC 법인을 모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합사업단은 군지부가 주도하는 연합사업단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 마케팅 체계화와 시행주체의 사업 추진 기능 확립을 위한 조직 운영 원칙 재정비가 필요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445	407	1,303	91.5%
2006년	695	601	1,529	86.5%
2007년	2,125	2,125	9,945	100.0%
계	3,265	3,133	12,777	96.0%

- 약정물량 2,125톤 대비 출하량 2,125톤으로 100% 출하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출하약정량, 출하량에 대한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평가는 2-2항의 3,128톤을 출하약정량으로 하여 출하량 2,125톤 대비 67.8%로 적용. 형식적인 사업관리, 정책 목표와 괴리된 시설 지원형 사업으로 추진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업 개념의 전환과 시행주체 정비가 필요함.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6,213	6,524	5.0%	12,702	13,303	4.7%

- APC 취급실적 중 채소류를 제외한 실적임.
- 고창군 APC는 수박, 배 등 집중을 가시화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다품목 취급에 따른 사업 집중력 부족, 지역농협의 역할 부족 등으로 시장 성과 도출은 다소 미흡함. 주품목 중심의 특성화와 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이 추진되어야 함.

###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654	12,702	13,303	4.7%

- 고창군연합사업단(조합공동사업법인 원예부)은 '05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여 초년도에 654백만원의 실적이었으나 '06년부터 APC를 운영하고 복분자 통합 판매를 시작하면서 활성화·성장하고 있음.

### ④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13,303	7,668	57.6%

- 공동선별·공동계산은 복분자를 제외한 전체 수박, 배 등 과일물량으로 모두 APC에 입고되어 처리되었음. 전체 실적 중 공동선별, 공동계산 비중이 크고 절대량도 규모화되어 있음.
- 수박 19억원, 방울토마토 3억원, 메론 6억원, 배 9억원 등 개별 품목의 규모가 적은 문제가 있으므로 소량 다품목 취급에 적합한 효율적인 공동선별·공동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케팅 측면에서도 품목 부류별 일괄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체계화된 노력이 필요함.

###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601	1,417	135%	4,889	7,668	56.8%

- 공동선별·공동계산 물량은 135.8%, 금액은 56.8%가 증가하여 우수한 사업 실적을 거두었음.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지역공동브랜드를 활용하고 있는데 배는 "황토배기", 복분자는 "선연" 브랜드를 등록하여 운영.
- "황토"를 모태로 하는 지역브랜드가 수개 존재(해남 등)하기 때문에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고, "선연"은 주류 브랜드로 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 율(B/A)
사업실적(백만원)	13,303	7,668	57.6%

- 복분자를 제외한 전체 APC 입고 과수물량을 "황토배기" 브랜드로 출하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2,701	3,229	3,962	22.7%

- 연합사업단에 실제 출하한 농가수를 표시하였으며, '06년 3,229농가에서 '07년에는 3,962농가로 22.7% 증가하여 우수함.
- 단순 참여 농가가 아니라 실제 출하약정을 이행하고, 품질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농가조직을 재구축하고 정예농가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및 지도가 강화되어야 함.

⑨ 기타 사업실적

- 과실류 이외 채소류 품목 판매실적이 '06년 1,200백만원에서 '07년 8,117백만원으로 576.4% 급증하였음.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성과단계에서 농가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분기별 현장모니터링과 선진지견학 분임토론으로 만족도 및 사업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
- 모니터링 및 토론결과의 정리, 사업 반영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농가 만족도, 추진 평가 및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함.



###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외부 평가나 자체 평가를 별도로 실행하지 않았음.
- 연차별 성과 검증과 사업 개선을 위한 평가회 개최, 평가보고서 작성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농협군지부 등 각 주체별로 재배기술과 일반 교육을 시행하였음.
- 시행주체 중심의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 실행 내용이 미흡하므로 보완이 필요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별도의 매뉴얼을 운영하지 않으며, FTA기금 대상농가에게 시행한 교육 자료 형태로 보유·활용하고 있음.
- 교육용 교재에서 탈피하여, 실제 농가 재배와 시행주체의 사업추진에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APC를 기반으로 하여 수확후 관리, APC 운영, 상품화 등 보다 체계적인 품질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계량부문의 가점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
- 연합사업단이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되었으며, 고창군, 연합사업단과 대형음료업체간 MOU체결로 복분자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였음.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전반적으로 집행 노력이 우수하나, 시행주체의 법인화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고, 참여조직간 역할 체계가 미흡하므로 조직간 협약과 사업운영 협의를 강화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함.

15(4-08)	김제·완주 포도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포도 (보조)	선정년도	2006
사업주관기관	김제시	사업시행주체	백구농협
참여시군	김제시, 완주군		
특점현황	합계 (100)	3등급	
	계획단계(10)	D+	
	집행단계(50)	D+	
	성과단계(40)	C+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김제·완주 ‘해가담긴’ 포도밸리 육성 계획 사업범위는 김제시와 완주군이 며, 사업시행주체 백구농협, 참여조직은 완주포도영농조합법인 1개임.
- 포도 농가 970호, 재배면적 555ha, 생산량 14천톤으로 대규모 산지는 아니 지만, 신흥산지로서 우수한 품질과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음.
- ‘06년 집행액은 1,268백만원임. (예산집행을 95%)

### □ 핵심성과

- 대형유통업체 직거래 확대.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농협물류센터 등)
- 선도농가 위주의 선택과 집중으로 경영규모 확대, 고품질 시설재배 증가로 생산기반 확대, 우량품종 개량으로 생산량 증대 및 품종 다양화.
- 공동선별·공동계산 조직 확대 및 APC(‘08년 건립중) 활성화의 기반 구축.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광역사업이나 김제-백구농협, 완주-포도영농조합 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시·군별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규모화, 집중화를 위한 지역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문제점	개선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도 재배지역이 백구 등 3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김제시와 완주군에 걸쳐 있어 집중적인 육성이 어려움</li> <li>캠벨의 점유율이 87%로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li> <li>전체 포도 재배면적이 555ha에 불과하여 생산기반이 부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라북도 차원의 포도산업 육성 전략과 종합계획 추진 필요</li> <li>적극적인 품종갱신으로 재배품종 다변화. 특히 거봉계 시설재배 확대 필요</li> <li>부족한 생산기반을 철저한 농가 조직화와 물량 결집을 통해 극복 노력 필요</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조직과 행정간 실질적 역할분담 체계와 업무협업체계 구축이 미흡함</li> <li>특히 완주군의 사업참여 및 사업참여조직에 대한 지도·지원이 취약함.</li> <li>자문기구 미구성, 농가의견수렴 및 사업모니터링 취약</li> <li>FTA사업에 대한 점검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사업시행주체에 사업전담 부서가 없는 상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과 사업참여조직간 실질적 업무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완주군의 사업참여 확대가 요구됨</li> <li>농가 의견수렴 확대 및 체계적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 체계 강화</li> <li>FTA사업 지자체 담당자 선진지 견학 등 인력육성 강화</li> <li>FTA사업 전담 인력 운영 및 APC 운영시 독립채산제 시행을 통한 책임경영체계 구축 필요</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반기 예산집행율이 저조하고 4/4분기에 예산집행이 몰려 있음</li> <li>농가간담회 등을 통한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효과가 미흡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조기 확정으로 조기 사업착수 유도</li> <li>시기별 사업비 차등화,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종합적 점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예산집행을 제고</li> <li>사업 담당자 관심과 노력 강화</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주체인 백구농협 이외 참여주체간 업무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함</li> <li>특히 완주포도영농조합법인의 사업참여율 저조(23명 약정. 12명 출하)하며, 완주군의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북도, 김제시, 완주군, 사업참여조직간 업무추진협의를 정례화하고 체계화하여 차질없는 사업추진 필요</li> <li>특히 완주군과 완주포도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참여 유도책이 필요</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3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D+</b>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 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D0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D0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D0
	<b>집행단계 소계</b>	<b>50</b>	<b>D+</b>
집 행 단 계  I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b>14</b>	D+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C0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D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D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1.0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b>10</b>	B0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96	
③ 출하약정 주체	2	2.00	
④ 출하약정기간	1	0.2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5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0.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2.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B0
	① 예산집행률	10	8.51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C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D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D0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D0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3.12	
<b>성과단계 소계</b>		<b>40</b>	<b>C+</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D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B0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1.84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3.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1.19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1.75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2.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B+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3.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3.00
	⑨ 기타 사업실적	1	1.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F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F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C+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40
	② 교육 횟수	1	1.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B0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F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1.00	
	비계량	C+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D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자문회의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농가 의견수렴은 김제 지역에서는 사업시행주체를 중심으로 선진지 견학, 연찬회, 작목반 총회 등을 통해 비교적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완주 지역 농가의 의견수렴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FTA사업 계획 수립시 전북도 차원의 포도산업 육성 계획과 연계성이 미흡함.
- 향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완주지역의 농가의견 수렴 과정을 확대, 전북도 차원의 포도산업 육성 계획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특정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개별면담, 전화,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사업대상조직과 행정간 업무협약, 사업대상조직간 업무협약, 행정조직간 업무협약이 실질적으로는 모두 1회씩만 개최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 노력이 미흡함.
- 향후에는 전북도, 김제시, 완주군, 백구농협, 완주포도영농조합법인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뿐 아니라 협의회를 정규화, 정례화하고, 사전 안건 정리와 의사결정 결과의 적용을 체계화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사업추진 상황 점검해야 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전년도 연차평가 지적사항 가운데 신청서접수, 우선순위선정 등을 시행주체로 변경하였고, 우선순위 심사표 보완, 약정기간 연장, 약정 불이행 제재 사항 명기 등은 개선됨.

- 반면, 농가의견수렴 실적, 행정기관과의 협의 강화, 약정이행을 제고,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구축 등은 미흡.
- 2개 시군 연합, 행정과 시행주체간 협력, 수요 중심의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협의와 의견수렴, 평가/환류가 중요하므로 지적사항의 이행이 필요함.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	
시·군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합	○	○	○	○	○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사업시행주체와 행정기관, 참여조직간 역할분담 불명확
-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향후에는 사업진행에 있어 주도적역할은 사업시행주체가 수행하되, 행정기관, 참여조직간 역할분담 체계 재정립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읍·면의 기능 활용 및 사업시행주체의 역할 강화 필요

## ② 1,2순위 준수여부

- 1, 2순위 구분 심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1, 2순위 구분은 사업에 지원하는 농가와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를 연계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지역통합과 협력적 농가조직화를 위한 연계방안으로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표준양식을 적용하되 지역실정에 적합한 내용을 보강,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농가를 우대하는 순위 구분이 필요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출하약정을>신규사업대상자>재배면적>친환경인증,전년 출하실적 순으로 배점, 규모화 지표는 잘 반영되어 있으나, 정책 참여 지표는 반영 미흡.
- 사업시행주체 실질적인 마케팅력 강화를 위한 공동선별·공동계산, GAP 등 품질관리 강화 지표와 지역여건 반영 지표 등의 보완 필요하며 계량화 된 실적과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연동 될 수 있는 심사표 도입이 필요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우선순위 심사 결과 점수대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동점자 처리 기준도 갖추고 있으나 심사 결과의 변별력이 다소 미흡.
- 엄격한 현장심사와 계량화/객관적 평가 운영으로 개선해야 하며 동점자 처리 기준 역시 실적 등과 연계하여 점수를 차등 부여해야 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사업시행주체에서는 우선순위를 심사하여 '06년 12월 22일에 김제시와 완주군에 통보하였으나 지자체의 농정심의회가 지연(김제, '07.2.28, 완주 '07.4.3)되어 사업 진행 시기가 지체되었으므로, 관련 행정 절차를 조기에 시행해서 실행시기를 앞당겨야 함.
-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전년도 말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교부 결정, 선정 통보 등 관련 행정절차를 조기에 진행하여 영농철 이전에 사업이 개시되도록 노력해야 함.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조사 미실시. 조치 실적 없음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자 선정 후 2개월 전후에 사업추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개시자에게는 사업추진 독려 또는 포기각서 징구 등 조치해야 함.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중도포기자에 대해서는 사업포기 각서를 징구하고, 향후 3년간 FTA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약정서 명기)
- 중도포기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신청시 농가들이 사업비, 실행 가능성 등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신청하도록 지도하고, 패널티 적용을 확고하게 실행해야 함.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중도포기자 발생시 후순위자에 지원됨을 농정심의회 의결로 확보하고,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인해 4명 추가 선정, 적정하게 처리하였음.
- 미지원된 예비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 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06년	74	74	100	614	296	48.2	백구농협	1
'07년	65	65	100	479	469	97.9	백구농협	1
계	139	139	100	1,093	765	73.1		

- 사업 지원 농가는 의무적으로 출하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여 모두 출하약정을 체결하였고, 생산량 대비 97.9% 물량을 약정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였음.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80% 이상 약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실제 약정율은 97.9%로 매우 우수함.

③ 출하약정 주체

- 약정주체는 사업시행주체인 백구농협으로 적정하게 체결하였음.

④ 출하약정기간

- 약정서에 약정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1년으로 간주.
- 향후 약정기간을 5년 장기로 설정하고 단순 약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출하약정을 유도함으로써 안정적 출하 체계를 만들어야 함.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약정 불이행시(FTA사업 중도포기 포함) FTA관련 사업 3년간 지원 배제.
- '07년 사업은 배제실적이 없으나, '08년에는 '07년 FTA사업 포기자 9명을 사업대상에서 제외시켜 적정하게 처리하였음.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06.12.12. 연찬회에서 '철재' 구매는 백구농협에서 일괄구매를 의결하여 계통구매 조직을 통해 173백만원의 공동구매하였으나 농협계통구매의 경우 실질적인 가격절감 효과가 없으며 개별 구입시에도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음
- 향후에는 일반업체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을 추가해야 하며 견적서 징구, 입찰에 의한 가격비교, 품질관리 조건 요구 등 실질적 공동구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실적 없음
- 향후 시공업체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심사평가를 통해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비교 견적, 시공 후 농가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농가 만족도 제고 필요.

-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품질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기준 점수 미달 업체에 대해 향후 FTA 및 기타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해 배제 등의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간이비가림시설 단가를 ha당 40백만원에서 54백만원으로 22% 인상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단가조정위원회 개최 및 비교견적을 통해 내실 있는 업무추진 필요함.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0	80	80		33	7	40	34	6	50%
기타사업		10	269	279	68	53	144	265	0	14	95%
<b>합계</b>		<b>10</b>	<b>349</b>	<b>359</b>	<b>68</b>	<b>86</b>	<b>151</b>	<b>305</b>	<b>34</b>	<b>20</b>	<b>85%</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반기 집행실적이 미흡하고, 4/4분기에 사업이 집중되는 등 사업추진 관리가 미흡함. 예산집행율이 85% 수준으로 미흡하며, 불용이 발생하였음.
- 향후에는 사업의 조기 확정과 사업기관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 필요하며, 특히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모니터링 강화, 정기 점검 등 사업 진도 관리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농가교육 및 업체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은 독려하였으나 체계적인 노력은 미흡.
- 현장 모니터링, 정기 점검 등 행정, 시행주체, 참여조직 공동의 일체화된 추진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지도를 위한 농가방문 및 사업별 체크리스트 작성 등 수시점검의 구체화된 방안이 요구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전화 등 단순 독려에 그쳐, 사전 용자예산 수요 조사, 신용도 평가, 대출기관 통지 등의 가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 관리 노력이 필요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07년은 연계실적 없음.
- '08년에는 백구농협의 APC 건립('08년말 완공. 1,350백만원)과 알슈음 지원('08년 50백만원. 67ha) 사업을 통해 고품질 포도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지원 등으로 개선이 기대되므로 시행주체가 실시하고 있는 자체사업과 FTA기금 지원사업을 동일하게 운용함으로써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사업신청을 사업시행주체가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07년부터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신청, 우선순위 심사를 담당하도록 사업추진체계 개선.
- 보고서류 제출 지연(-3.12점) : 미제출 3건(-3점), 지연일 37일(-0.37점), 조기일 25일(+0.25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FTA사업은 경제상무 주관 하에 유통활성화팀(상무1, 대리3)이 추진
- 현재 유통활성화팀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 체계화한 점이 인정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
2006년	296	166	505	56.0%
<b>2007년</b>	<b>469</b>	<b>287</b>	<b>782</b>	<b>61.2%</b>
계	765	453	1,287	59.2%

- 약정 이행율이 '06년 56%에서 '07년 61%로 높아졌으나, 아직 낮은 편임.
- 보다 적극적인 약정 이행을 제고 노력 필요함.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1,321	1,633	23.6%	3,023	3,965	31.1%

- 시행주체인 백구농협은 '06년 대비 물량, 금액 모두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지역 생산기반과 비교할 때 체계적인 판매사업 규모가 적음. 품질관리, 마케팅을 통한 체계화된 판매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함.
- 또한, 완주포도영농조합법인과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완주지역 법인 조합원의 사업참여가 거의 없음. 광역사업으로서 통합, 규모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함.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2,748	3,023	3,965	31.1%

- 총사업실적은 3,965백만원 규모이나 유통규모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3,965	1,754	44.2%

- 공동계산 실적은 17억원으로 전체 출하실적의 44%이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50% 이상으로 상향 필요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226	460	103%	828	1,754	112%

- 공동계산 실적이 '0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매우 우수함.
- 공동계산액이 급증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모화되지 않았음. 공동계산 확대를 위한 정예농가 조직 육성과 포도 품목에 적합한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규모화해야 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공동브랜드는 '해가담긴', '백구포도' 2종류 모두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백구농협 소유임.
- 공동선별·공동계산 상품인 '해가담긴'의 브랜드 품질관리와 홍보를 강화하여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 우수 브랜드 정착 요망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 율(B/A)
사업실적(백만원)	3,965	3,965	100%

- 공동선별·공동계산 비율 100%로 공동브랜드 활용 실적이 우수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267	216	274	26.8%

- 위 실적은 백구농협의 유통사업에 참여한 농가수로 완주포도영농조합법인 소속으로 백구농협에 출하한 농가수도 포함되어 있음.
- 향후 완주포도영농조합법인 소속 농가의 사업 참여율 제고 필요
- 향후 유통규모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예농가 위주로 참여농가수를 확대해 나가야 함.

⑨ 기타 사업실적

- 과일류 이외의 판매사업 실적 40.2%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농가의 소득 증대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확대가 필요함.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농가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실적이 없으며, 향후 체계적인 FTA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설문조사, 모니터링 등을 통해 농가만족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농가의견을 반영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차년 사업에 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평가 실적이 없으며 행정, 시행주체, 참여조직, 농가대표가 참여하는 연차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 요소 발굴하고 차년도 사업 개선에 활용해야 하며 계획, 집행, 성과 단계의 주요 지표를 점검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함.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농가조직화 교육실적은 9회 795명 실시. 매년 핵심 교육 과제 및 프로그램을 백구농협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07년 교육 주제 : 알슈이)
- 매년 조합 자체적으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한 점, 기술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결합한 교육 방식은 매우 우수함.

- 보다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위해 '지역특성화교육'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품질관리 매뉴얼 보유 및 활용 실적이 없음.
- 향후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등에서 제작한 표준매뉴얼을 활용하되 생산과 유통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 매뉴얼을 지역 여건에 맞도록 보완하여 농가에게 보급함으로써 고품질 과수 재배 확대 유도 필요.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출하증가율 31.16% 인정.
- 상반기 및 3/4분기 조기 예산 집행 실적 인정.
- '01년부터 공동선별·공동계산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 대형유통업체 직거래처 다변화(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입점)와 두바이 포도 수출(시범사업 1톤) 등 우수한 판매사업 사례.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전반적으로 사업시행주체인 백구농협이 중심이 되어 '01년부터 추진해온 공동선별·공동계산 사업과 연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전라북도, 김제시, 완주군의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완주포도영농조합 법인의 사업참여가 미흡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16(3-06)	남원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복숭아 (보조) 포도, 배	선정년도	2006
사업주관기관	남원시	사업시행주체	남원원예농협
참여시군			
득점현황	합계 (100)	2등급	
	계획단계(10)	B+	
	집행단계(50)	C+	
	성과단계(40)	B0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남원은 636ha의 재배면적(복숭아 237, 포도 292, 배 107)에서 10,828톤(복숭아 3,617, 포도 5,024, 배 2,187)의 과수가 생산되고 있음. ('06년말기준)
- 조생종 복숭아를 중심으로 특색있는 산지로 시장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05년 완공된 원협 APC를 중심으로 공동선별·공동계산 및 수출 활성화, 브랜드 사업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음.

### □ 핵심성과

- 품목별 생산자의 조직화 및 육성으로 판매사업 활성화.
- 과수 생산시설기반 확충으로 과수산업 발전 토대 구축.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남원원예농협 APC는 독립사업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어 효과적 조직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시행주체인 남원원예농협 이외에 춘향골 과수작목연합회만 참여하고 있어 지역 과수 대표조직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하여야 함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 및 유통에서 품목 집중성이 떨어짐</li> <li>• '05년 APC 건립으로 유통기반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별로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수의 차별성 강화</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원원협 APC 사무소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행정과의 협력관계가 우수함</li> <li>• APC에서 농가조직화 및 관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작목회가 잘 구성되어 있음</li> <li>• 하지만, 공동선별공동계산에 참여하는 농가와 작목반은 미흡</li> <li>•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표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체계적이지 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시군의 단일사업주체로써 배우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으나 사업시행주체가 주도성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여 개선이 필요함</li> <li>• 사업시행주체의 유통관련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함</li> <li>• 특히, 공동선별 공동계산 작목반 조직을 집중 육성해야 함</li> <li>• 정책사업방향에 부응하도록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표의 체계화가 필요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집행율이 100%이지만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 집행되었음</li> <li>• 대상자 선정 및 사업미개시자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고 미개시자 조사 및 조치를 하여 상반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li> <li>• 지역내 사업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사업량 및 사업메뉴 확장이 필요함</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원원협, 자문회의, 행정기관간 유기적 협조 체계가 우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주체가 전반적인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을 늘려야 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2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B+</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A0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B+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C+</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C+</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C+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1.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C+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C+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5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B0</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66	
③ 출하약정 주체	2	2.00	
④ 출하약정기간	1	0.2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D+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5	2.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3.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A0
	① 예산집행률	10	10.00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A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B+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1.43	
<b>성과단계 소계</b>		<b>40</b>	<b>B0</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B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C0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0.93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2.39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3.00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2.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2.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B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0.58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1.83
	⑨ 기타 사업실적	1	1.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B0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C0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B0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48
	② 교육 횟수	1	1.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B+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C0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비계량	0.47 B0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B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과수발전협의회 성격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중심으로 운영.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미흡함.
- 전문 분야 자문단을 운영. E-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안별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사업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농업인 의견수렴이 대표농가 중심의 회의 및 간담회로 추진되어 다수의 농가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의견수렴의 체계성이 없음.
- 지역 과수산업 발전을 위한 내외부 전문가 및 농가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실제 연차별 사업 추진에도 개선 방안을 적극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함. 특히 외부 전문가의 경우 회의참여와 함께 서면 자문, 교육 등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07년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단순 회합으로 실제 의사결정과 반영에 미흡함.
- 회의를 정규화, 정례화 하도록 하고, 행정과 참여조직간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내실 있는 회의가 되도록 해야 함.
- 지역대상조직 간 회의 및 협의는 남원원협APC를 중심으로 품목별 연합회, 공동선별 협의회 등으로 내실 있게 추진된 것으로 판단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농업인 의견수렴 방법은 개선이 미흡하므로 전체농가의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하여야 함.

- 우선순위 심사표, 출하약정기간, 출하약정 이행율, APC 분사의 역할 등에 서는 대체로 개선되었음.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시·군	○	○	○	○	○	○	○
읍·면	○			○	○		○
사업시행주체		○	○	○			

- 사업시행주체가 주도하기 보다는 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사업시행주체가 주도적으로 사업 추진에 참여하고 우선순위심사 등 핵심업무를 진행하되, 행정과 참여조직이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과 판매사업 연계를 강화해야 함.

#### ② 1,2순위 준수여부

- 1, 2, 3순위로 구분하여 접수 평가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였음.
-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농가, 수출농가, APC 출하농가에게 사업지원 우선권을 부여한 점은 우수한 사례로 인정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항목별 심사표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전년도 출하실적만을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하였음.
- 출하이행 등 실적 지표로 관리하였으므로 강력한 지표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정책 목표 달성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대상자 선정에는 매우 미흡한 평가 방식으로 이해됨.
-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항목별 계량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표준 양식을 활용하되 지역과 품목 여건에 적합하도록 항목과 배점을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공동선별·공동계산 평가지표만으로 1,2,3순위를 구분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변별력이 낮음.
- 심사표의 정상화와 함께 평가 진행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
- 시행주체 단독의 출하량 검증에서 탈피하여, 시행주체와 행정기관 공동으로 현장방문과 우선순위 부여 등 객관적 평가가 진행되어야 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07. 3. 28. 선정되었음.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연도 전년말에 조기에 완료되도록 개선되어야 함.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가 지연되면 영농철과 중복되어 사업관리와 예산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대상자 선정과 선정통보, 교부결정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조기에 진행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미개시자에 대한 조사(7. 18~7. 23)를 실시하였으나 대상자 선정과 미개시자 조사가 지체되어 영농, 수확기에 조사가 이루어졌음.
- 미개시 농가가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영농기임을 감안하여 단순 독려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선정 시기를 앞당기고 조기에 사업이 착공되어 원활한 집행 관리가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미개시자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중도포기자에 대해 3년간 FTA기금 지원사업 지원 제외를 명시하였으며, 중도포기자가 발생에 대해 걱정하게 처리하였음.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중도포기자 사업을 예비대상자에 지원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였음.
- 향후 미지원 된 예비 대상자를 다음 연도에 우선 지원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 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0	0	0	0	0	0	0	0
'06년	180	149	82.8	2,542톤	1,969톤	77.5	남원원협	1
'07년	92	92	100.0	775톤	644톤	83.1	남원원협	1
계	272	241	88.6	3,317톤	2,613톤	78.8	-	

- 사업신청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약정 체결하였음.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07년 약정농가 생산량 대비 80% 이상 약정토록 하였으며, 83.1% 출하약정 체결하여 적정함.
- 다만, 약정물량이 적어 지역 과수 집중화와 규모화된 마케팅 추진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합 판매사업과 출하약정, 지원사업간의 연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③ 출하약정 주체

- 시행주체인 남원원협으로 체결하여 적정함.



#### ④ 출하약정기간

- 출하약정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운영.
- 출하약정기간을 5년 장기로 운영하여, 농가 참여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행주체 중심으로 판매사업 계획수립과 사업 체계화에 기여하도록 개선이 요망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출하약정 불이행농가에 대한 제재방법이 추상적이고 인센티브 지원 내용은 타 사업 지원과 차이가 없음.
- 시행주체 및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각종 예산 및 제도를 통하여 출하약정 이행 및 위반 시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 패널티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며 품목별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확대하고 정예화된 농가 및 작목반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출하이행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함.

###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자재 일괄 구매를 시행하지 않음.
- 시공업체에게 모든 자재 공급을 일임하였으나, 지역에서 수요가 많은 주요 자재와 물량 확대에 따른 교섭력 강화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행주체 중심으로 일괄 구매를 실시하여 농가 부담 경감과 품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

####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시행주체 및 작목반의 추천을 받아 과수발전협의회에서 선정. 단순한 업체 추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미흡.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견적서, 시방서 등 기본 서류 검토를 시행하고, 시공실적과 농가 만족도를 반영하여 공신력 있는 업체가 선정/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과수협의회에서 과원퇴비사의 7개 사업에 대해 단가를 조정하여 우수함.
- 외부 여건에 따라 자재 수급, 가격에 변동 요인이 많은 상황이므로 전문가와 지역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적정 사업 단가를 매년 검토하도록 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시공·설비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0	0	12	12	0	0	12	12	0	0	100%
기타사업	0	0	340	340	0	129	211	340	0	0	100%
<b>합계</b>	<b>0</b>	<b>0</b>	<b>352</b>	<b>352</b>	<b>0</b>	<b>129</b>	<b>223</b>	<b>352</b>	<b>0</b>	<b>0</b>	<b>100%</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월, 불용 없이 전액 집행하여 우수함. 다만, 상반기 및 3/4분기 예산집행을 강화하여 원활한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농가교육 및 업체 간담회를 실시 등 노력을 통해 100% 예산 집행을 한 점이 우수함.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사업신청시 용자 희망여부를 확인하여 사전 신용조회 실시하여 양호함.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각종 지자체 지원사업에 APC출하 및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 농가에 우선 순위를 부여.

- 단, 자체 사업 내용이 수정촉진제, 스테비아 등 자재 지원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APC운영 활성화와 농가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자체감사 및 외부 점검 지적사항 없음.
- 보고서류 제출 지연(-1.43점) : 미체출 0건(0점), 지연일 178일(-1.78점), 조기일35일(+0.35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남원원협 APC는 독립사업소로 편제하여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지원팀에 FTA기금 사업을 업무분장하여 진행.
- APC 운영체계화를 위한 노력과 사업 실적 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0	0	0	0%
2006년	1,969	107	228	5.5%
<b>2007년</b>	<b>644</b>	<b>199</b>	<b>373</b>	<b>30.9%</b>
계	2,613	306	601	11.7%

- 출하약정 이행률이 전년 5.5%에 비교하여 30.9%로 개선되었으나 전반적인 이행실적이 매우 미흡함.
- 출하약정 이행을 제고를 위한 사업 시스템 강화, 농가 조직 강화 등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3,408	3,812	11.8	8,304	10,459	25.9%

- '06년 83억원에 비교하여 104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출하증가율 25.9%에 해당하여 우수함.
- 지속적인 판매사업 규모 확대와 체계화된 마케팅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6,750	8,304	10,459	25.9%

- 사업실적은 매년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07년 10,459백만원 달성하여 우수함.

④ 사업조직의 총 공동선별 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10,459	2,032	19.4

- 공동선별·공동계산 사업이 20억원으로 비교적 규모화 되어 있으나 전체 사업 규모와 비교하면 다소 미흡함. 참여 농가 조직화를 바탕으로 공동선별, 공동계산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525	1,045	99.0%	1,225	2,032	65.8%

-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이 65.8%로 매우 우수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07년 신규 브랜드 "상큼미소-아이맛나"를 개발하여 공동선별·공동계산 물량에 한해 사용하고 있음.
- 지역 대표성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소비자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브랜드 품질관리와 홍보가 진행되어야 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 율(B/A)
사업실적(백만원)	10,459	2,032	19.4%

- '아이맛나'는 공동선별·공동계산 하는 물량에 한해 사용하고 있고 비공동선별 물량에는 하위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어 브랜드 위계 설정 및 운영이 매우 양호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207	254	285	12.2%

-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을 고려할 경우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의 질적 증가는 매우 우수하나, 사업 규모 확대를 위해 양적 증가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

⑨ 기타 사업실적

- 과일류 이외 채소류 판매실적 47.9% 증가, 농자재 판매사업 16.2% 증가 등 기타사업 실적의 확대가 이루어져 우수함.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07년 연말, 08년 연초 73개 농가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
- APC 공동선별 출하율 증대방안, 비선호 세부사업 조정, 선진지 견학 등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음.
- 설문항목을 보다 정교하게 구성하고, 사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첨가함으로써 폭넓은 농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함.

###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평가와 환류체계를 구축한 실적이 없음.
- 자체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결과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계획, 집행, 성과 단계의 주요 지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도출과 사업 계획 반영 등으로 사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교육횟수는 매우 양호하나 교육인원 및 충실도는 미흡함.
- 농가들의 사업이해도 증진을 위해 교육대상을 정예화하고 품목별로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체계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실질적 농가조직화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품목별 공동선별 검품기준은 매뉴얼로 이해하기 곤란함.
- 규모화 된 APC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재배, 수확 후 관리, 포장 관리 등 사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부문별 매뉴얼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농가 인식 제고와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3/4분기 예산 조기집행 실적 인정.
- '07년 대미수출포도 단지 지정 및 포도, 배 수출 확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APC를 활용한 공동선별·공동계산조직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음.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사업시행주체 및 행정기관의 사업추진 열의가 매우 높음

17(1-10)	전북동부산악권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사과 (보조) 배, 토마토	선정년도	2004
사업주관기관	장수군	사업시행주체	농업회사법인(주)S-APC
참여시군	장수군, 무주군, 진안군, 남원시		
특점현황	합계 (100)	4등급	
	계획단계(10)	C0	
	집행단계(50)	C0	
	성과단계(40)	D+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장수, 무주, 남원, 진안 4개 시군 광역사업. ('07년 진안은 사업이 없었음.)
- 사과 재배면적은 장수 873ha, 무주 360ha, 남원 75ha로 장수는 홍로/홍월 조생종, 무주는 후지 만생종을 주로 생산.
- 거점APC운영조직 (주)S-APC는 장수군과 농민, 농협이 출자한 제3섹터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APC 운영부진으로 실적이 미흡함.

### □ 핵심성과

- 전북 산악권 고품질 사과 생산 기반 확보와 고효율 재배 기술 보급.
- 거점APC 설치, 생산기반 정비, 농기계 임대 사업 등 기반 확대에 기여.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주)S-APC는 공무원 파견 근무로 정상화 추진 절차 진행 중.
- 장수군, 농협, 군민 공동출자 체계에서 농협 장수군지부와 장수, 장계농협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주관 운영주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의결하였음. ('07.3.26.)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수군은 전북권 대안 산지로서 홍로/홍월 조생종으로 특화되어 있음. 무주는 후기 만생종이 주력이므로 상호 보완적 관계.</li> <li>전국적인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조직화와 체계적인 지역 마케팅이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규모, 명품화 중심의 개별 출하 방식에 탈피하여 조직화된 브랜드 마케팅 시스템으로 전환</li> <li>중장기, 단계적 사업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고, 지역농업클러스터 등 연계사업을 활용하여 조직 협력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개시군 광역사업이나 시행주체/거점APC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구심점 없이 시군별 개별 사업으로 추진됨</li> <li>출하약정을 시행주체로 체결하였으나 실질화되지 않아, 통합 마케팅, 브랜드화 추진이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기에 지역간 협력 구도를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대표 농가조직의 협력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사업일정, 표준양식 통일 등 단계적 협력 추진 필요.</li> <li>APC 정상화 이전이라도 참여조직 중심으로 출하약정을 정상화해야 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시군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가고 있으나, 집행성과 도출이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주체 운영 정상화 노력과 함께 예산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집행률 제고와 객관성·공정성이 발휘되도록 노력해야 함.</li> <li>광역사업으로 지역간 협의 활성화 필요함.</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점 APC 완공 직후 법인 운영의 내부분제가 발생하였으며, 비상경영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함</li> <li>시설 운영주체를 연합사업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나 '08년 판매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 운영과 거점APC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li> <li>'08년 시설 활용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목표물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마케팅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우선 추진 해야 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4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0</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C0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C0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0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C0</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D+</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D0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C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C+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B0</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55	
③ 출하약정 주체	2	2.00	
④ 출하약정기간	1	0.2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 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D+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3.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2.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C+
	① 예산집행률	10	8.17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C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C+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0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0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2.40	
<b>성과단계 소계</b>		<b>40</b>	<b>D+</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B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F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0.59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3.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71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0.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0.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B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3.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0.00
	⑨ 기타 사업실적	1	0.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C0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F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B0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68
	② 교육 횟수	1	1.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C+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B0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1.32	
	비계량	F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C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자문단은 구성하지 않았고, 장수, 무주, 남원 3개 시군별로 생산자단체, 농가를 포함하는 협의회를 운영. 대상자 선정 등 행정 절차 이행으로 단순 운영.
- 농가 의견수렴은 장수군의 경우 연차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무주, 남원은 사업설명회 및 사업집행 점검 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수행하였음.
- 시행주체 정상화 노력과 함께 시행주체 주도의 자문단 운영과 농가 의견수렴, 4개 시군간 협의체계를 확립해야 함.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각 시군내에서 행정과 참여조직 간 협의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무주군-무주과수영농조합, 남원시-남원원협)
- 장수군의 경우 거점APC 가동이 미흡하여 토마토 품목에 한정하여 일부 협의를 진행함.
- 비상경영 체제 하에서 시군간 협의를 활성화하여 신속한 정상화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07년 연차평가 결과 광역사업으로서 출하약정 정규화, 시군간 협력체계 구축 등 FTA기금사업 추진의 체계화를 요구하였음.
- 이에 반해 거점APC 운영 정상화가 지체되면서 사업개선 노력이 구체화되지 못했으며,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표준출하약정서 및 심사표 적용 등 최소한의 사항들이 진행되어 매우 미흡함. 보완 제시 과제의 충분한 검토와 이행노력이 필요함.

나. 집행단계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제 역할 분담 (장수군)>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설문조사)
시·도							
시·군	○	○	○	○		○	○
읍·면	○	○		○	○		
사업시행주체							
참여조합							

<기관별 실제 역할 분담 (무주군, 남원시)>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시·군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참여조합	○	○	○	○	○		

- 시행주체인 (주)S-APC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아 각 시군 개별적으로 행정주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무주와 남원은 참여조직을 통해 신청서 접수, 현장심사, 순위추천이 시행되었음.
- 시행주체 운영의 정상화와 함께 시행주체 중심으로 신청서 접수, 우선순위심사, 지도 점검, 1차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이 배분되어야 함.

## ② 1,2순위 준수여부

- 1순위, 2순위를 구분하여 평가가 하였으나, 1순위를 "전국화 된 출하조직"으로 규정하여 실제 평가는 모든 농가에 대해 2순위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음. (남원은 APC 출하계약 농가를 1순위로 분리 평가하였음.)
- 사업 신청단계부터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약정" 농가를 1순위로 구분하여 분리·평가함으로써 농가조직화 및 유통규모화를 위한 확고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농가 참여도 제고와 책임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행주체 판매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 방식을 도입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장수, 무주는 기본요건, 사업추진 여부, APC출하여부, 의욕 등 항목을 정하여 심사하는 등 비교적 체계화된 심사가 이루어졌음.
- 단, 남원의 경우는 선정인원이 적어 별도 심사표 없이 신청 과수 품목의 생산량이 많은 농가순으로 심사를 수행하여 미흡함.
- 3개 시군 심사기준을 통일하되, 농가의 규모, 시행여건, 사업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지표 (표준 심사표 적용)를 운용해야 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장수는 신청농가 대비 58.7%를 선정하였으나 70점대에 전체의 43.7%농가가 집중되어 변별력이 강하지 못했음.
- 무주, 남원은 참여조직이 추천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심사함으로써 지원농가를 100% 선정. 심사과정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 문제가 있음.
- 시행주체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정한 심사표에 의한 지원대상 농가 선정은 중요한 과제임. 참여조직 임의 선정, 배분을 방지하고 4개 시군이 공통으로 적용하는 객관적 순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
- 표준 양식을 적용할 때, 평가 지표와 배점을 지역 여건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 사용해야 하고, 다수의 농가가 신청하여 동점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계별 배점이 아니라 경영여건과 사업실적과 직접 연계한 평점 부여 방식을 적용해야 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장수 4.11. 무주 4.10. 남원 3.28.로 모두 3월 이후 선정하여 매우 미흡함.
- 사업 대상자 선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교부결정 및 농가 통지도 지체되고, 이후 사업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한 원인이 되었음.
- 사업대상자 선정시기를 시행연도 전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1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시행함으로써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선정이 늦었기 때문에 미개시자 조사도 하반기에 일부 이루어졌음. (장수군 '07.10.2.~10.10., 남원시 '07.7.18.~7.23.)
- 수확철과 겹치면서 미개시자 조사 결과도, 수확후 시행 독려 정도로 단순하게 처리되어 부적정함.
- 3개 시군 행정 업무 추진 시기를 통일하고, 행정과 시행주체 및 참여조직 공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조기착공을 유도하고 중도 포기, 사업여건 미흡 등 문제 발생 사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중도포기자는 장수 12명, 무주 3명, 남원 2명이 발생.
- 중도포기자에 대해서는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배제됨을 교부결정서, 출하약정서에 명기하였으며, 포기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였음.

###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장수군의 경우 신청농가 중 미선정 농가를 예비대상자로 지정하여 포기 사업물량을 예비대상자에게 배정하여 운영.
- 무주와 남원의 경우 예비대상자를 참여조직(무주과수영농조합, 남원농협)이 별도 선정하여 활용하였음.
-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미개시 및 포기 물량의 효율적 대체를 위해 예비대상자 운영이 필요. 참여조직에 대상자 선정과 예비대상자 추가 선정을 완전 위임하는 방식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정상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함.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197	197	100	5,905			시장.군수	1
장수군	134	134	100	4,772			군수	1
무주군	42	42	100	904			군수	1
진안군								
남원시	21	21	100	229			시장	1
'06년	110	110	100	3,551	1,027	28.9	시장.군수	1
장수군	87	87	100	3,093	765	24.7	군수	1
무주군	15	15	100	328	262	79.9	군수	1
진안군								
남원시	8	8	100	130			시장	1
'07년	139	139	100	2,309	1,780	77.1	S-APC	1
장수군	97	97	100	1,924	1,472	76.5	S-APC	1
무주군	28	28	100	385	308	80.0	S-APC	1
진안군								
남원시	14	14	100				S-APC	1
계	446	446	100	11,475	2,807	24.5		
장수군	318	318	100	9,789	2,237	22.9		
무주군	85	85	100	1,327	570	43.0		
진안군								
남원시	43	43	100	359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 신청당시 약정서를 징구함으로써 100% 출하약정을 체결하였음.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약정서에 출하약정물량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생산량 대비 80%이상 출하 약정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07년 약정물량 비율은 77.1%로 미흡함.

③ 출하약정 주체

- 출하약정서는 4개시군 공통양식을 적용하며 시행주체인 (주)S-APC를 약정 주체로 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는 장수군 이외 타 시군의 경우 거점APC 출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장수군의 경우에도 거점APC의 정상화까지는 실제 출하 이행여부를 독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출하약정의 의미가 없음.
- 거점APC운영의 정상화와 함께 기금지원과 연계한 실질적인 출하체계의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④ 출하약정기간

- 별도의 출하약정 기간을 산정하지 않아 부적절함. ('08년은 표준 약정서에 따라 개정)
- 5개년 장기 출하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계획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출하약정서에 FTA기금사업 3년간 배제, 위약금 징수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형식적 약정이므로 미이행 농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출하약정은 농가의 책임성 부여와 시행주체의 판매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계약임. 현재 시행주체 운영이 불안정하여 정상적인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시급하게 시행주체 안정화, 거점APC 운영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단계적으로 농가 신뢰를 확보하여 출하약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시행주체 중심으로 자재 일괄 구매를 시행하지 않음.
- 수요가 많고 품질관리가 필요한 주요 자재를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일괄구매, 공동구매를 추진해야 하며, 시행주체 운영이 활성화되기 이전이라도 참여조직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각 시군 과수발전협의회에서 각기 업체 선정 여부를 심의함.



- 장수군의 경우 군청에서 사전 견적서,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받은 후 실무 검토하였으며, 무주 및 남원은 참여조직에서 업체 추천.
- 무주군의 경우 전년도 불성실 시공, 문제발생 업체를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장수, 남원의 경우 신청업체를 모두 선정 공지하여 미흡함.
- 시공업체 선정은 사업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하여 공모, 경쟁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견적서, 시방서 등 기초 자료와 전년도의 사업성과를 검토하여 수행해야 함.

###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장수군은 시세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을 일부 시행하였음. 무주, 남원은 별도의 검토 없이 전년도 기준 및 표준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였음.
- 전국 평균의 사업단가와 사업 메뉴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가 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세부 시설 기준과 단가를 조정. 생산시설 설치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비용절감, 농가 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함.

※ 자재 일괄구매와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적정 사업단가 조정은 농가 부담 경감과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 전문 위원회 구성과 4개군 공동 검토/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 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b>품종갱신등</b>			<b>218</b>	<b>218</b>		<b>56</b>	<b>145</b>	<b>201</b>	<b>17</b>		<b>92.2%</b>
장수군			40	40			23	23	17		57.5%
무주군			178	178		56	122	178			100%
<b>기타사업</b>		<b>778</b>	<b>1,124</b>	<b>1,902</b>	<b>389</b>	<b>544</b>	<b>613</b>	<b>1,546</b>	<b>339</b>	<b>17</b>	<b>81.3%</b>
장수군		778	1,055	1,833	389	544	544	1,477	339	17	80.6%
남원시			69	69			69	69			100%
<b>합 계</b>		<b>778</b>	<b>1,342</b>	<b>2,120</b>	<b>389</b>	<b>600</b>	<b>758</b>	<b>1,747</b>	<b>356</b>	<b>17</b>	<b>82.4%</b>
장수군		778	1,095	1,873	389	544	567	1,500	356	17	80.1%
무주군			178	178		56	122	178			100%
남원시			69	69			69	69			100%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생산기반조성 (장수)			1,338	1,338			66	66	1,272		4.9%
<b>합 계</b>			<b>1,338</b>	<b>1,338</b>			<b>66</b>	<b>66</b>	<b>1,272</b>		<b>4.9%</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예산집행률은 82.4%로 미흡함. 무주, 남원은 100%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장수군에서 이월과 불용액이 발생.
- 장수군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교육, 설명회 등을 통해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있음.
- 일상적 교육, 설명회 이외에 현장점검, 품질관리사 활용(장수군), 업체 간담회, 참여조직간 회의 등으로 집행을 제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농협통보 및 농가안내문을 발송.
- 효과적 용자예산 집행을 위해 사전 용자 수요 조사 강화, 용자 가능여부 검토, 실행 시기 집중 안내 등 체계화된 노력이 필요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반사필름, 수정축진제 등 과원 자재지원을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으나 FTA기금사업과의 연계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음.
- 장수군의 경우 클러스터사업을 통해 산,학,관 협의체와 품질관리단 운영 등 농가기술향상을 위한 노력이 인정됨.
- 과수 지원 자체사업은 FTA기금사업과 연계하도록 하여 집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갖추어야 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06년~'07년에 걸쳐 거점APC 관련 경찰, 검찰 차원의 고발사건 조사가 있었으며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음.
- 3개 시군 공히 하반기 사업실적 자료 제출을 지연하였음.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보고 서류의 적기 제출을 위해 담당자와 관계자의 주의가 필요함.
- 보고서류 제출 지연 (장수군 기준, -2.40) : 미제출 1건 (-1.00점), 지연일 143일 (-1.43점), 조기일 3일 (+0.03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주)S-APC는 '06.3.10. 창립, 동년 3.23. 등기완료하였음.
- 거점APC 준공이후 외부 CEO영입, 인력 확충 등 사업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었으나 운영에 실패하고, 행정과전 인력이 비상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행정과전 2인과 계약직 4인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지역내 농협들이 주관하는 운영주체로의 전환을 변경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완전히 정비되지 못하였음. '08년 과실계약, 작목반 조직 재편 등 실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대책과 조직간 협의가 필요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
2006년	767	184	429	23.9%
2007년	2,038	350	980	17.2%
계	2,805	534	1,409	19.0%

- '07년 출하농가는 59농가로 미흡하고, 출하량도 350톤으로 매우 미흡함.
- FTA기금지원사업과 연계가 약해 출하약정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약정이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
- 대규모 거점APC 운영을 위한 농가조직화, 조직간 협력 강화 등 원물 확보를 위한 근원적인 사업추진 대책 마련이 필요함.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182	350	92.3%	430	980	127.9%

- 행정인력이 파견된 비상경영 상황에서 일부 수탁판매를 진행하였으며, '07년은 토마토 판매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여 출하액이 증가하였음.
- 총사업실적 기준으로 보면 '06년 출하액 1,406백만원에서 '07년 2,359백만원으로 67.8% 증가.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1,406	2,359	67.8%

- 총매출액 26억3천만원 가운데 농산물 판매사업은 사과 19억원, 토마토 4억5천만원이며, 저장고 임대, 위탁선별 등을 시행.
- 거점APC를 통한 체계적인 판매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립목적인 과실류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해 당	없 음	%

- 공동선별은 시행하였으나 도매시장 출하로 공동계산을 시행하지 않음.

- 공동선별·공동계산은 수탁판매 방식을 택하면서도 농가의 책임성과 판매 주체의 체계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한 검증된 사업 방식임. 공동선별·공동계산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의 마케팅 역량이 확보된 속에서 농가조직과 사업체와의 강력한 신뢰가 필요.
- 현재는 시행 주체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비상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거점APC 운영을 주관하게 될 농협연합사업단은 기존 농가조직 설득과 시설을 활용한 효율적 판매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체계 혁신을 추진해야 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기준)

- 공동선별은 시행하였으나 도매시장 출하로 공동계산을 시행하지 않아 앞으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거점APC 전용브랜드로서 [산드림]을 제작, 상표등록 완료함.
- 지역브랜드와의 통합, 단일화 노력은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거점APC 정상화와 함께 브랜드 재편 등 전면적인 이미지 쇄신이 필요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 율(B/A)
사업실적(백만원)	2,359	2,359	100%

- APC입고 물량은 전량 [산드림] 브랜드 출하하였음.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203	164	-16.9%

- 거점APC 이용농가는 '06년에 비교하여 -16.9% 감소하였음. 시설규모에 비해 이용농가수가 극히 적은 상황임. 농가조직 정규화, 협력체계 구축 등 정상화 노력 필요함.

## ⑨ 기타 사업실적

- 파프리카, 당근 등 비과일 품목 출하실적 3천9백만원으로 미미함.
- 시설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사업 계획과 지역농산물 취급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여 과일 품목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사업 확장과 시설 가동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

###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07년 연말 장수군, 남원시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
- 장수군 조사는 4개시군 농가를 포함한 광역, 과수산업 전반에 대한 의견 조사로 FTA기금 생산유통지원사업의 만족도 조사로 이해하기 어려움.
- 단순 만족도 및 의견 조사 성격이 강해 실제 사업 적용에 한계가 있음.
- 평가회 등에서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가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추상적인 설문 문항보다는 시공업체 만족도, 사업 시행 개선 사항 등 농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추가하여 실질적 의견 수렴이 진행되도록 해야 함.

###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평가회 개최 등 사업 추진을 평가하고 환류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 실적이 없음.
- FTA기금사업 전반의 추진 실적 점검과 거점APC운영 체계화 등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연차별 평가회 개최, 자체 평가회 운영 등 내부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장수와 무주에서 농가 교육을 진행. 주로 과원관리를 위한 재배기술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으로 진행되어 농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그러나, 교육에 대한 시행주체의 주도성이 미흡한 점은 문제로 이해되며, 농가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재배 기술과 농가 관심 사항 중심의 단계적 심화 프로그램 개발, 리더 중심의 조직혁신 방안 등 체계적 교육을 시행해야 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장수군은 클러스터사업의 일환으로 [장수사과 가이드북] 재배 매뉴얼을 보유, 운용하고 있음.
- 농가 지도를 위한 재배 가이드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활용되고 있음. 다만, 거점APC를 정점으로 한 실질적인 사업추진 매뉴얼을 작성함으로써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매뉴얼 체계화가 필요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장수군은 자체 점검에 의해 보조금 회수사례가 1건 있음.
- 이외에 사항은 시행주체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법인 운영 주체 변경 등 노력이 있으나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시행주체의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18(2-09)

전북서남부평야과수육성사업

지원품목	(주) 배 (보조) 사과, 복숭아	선정년도	2007
사업주관기관	정읍시	사업시행주체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
참여시군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정읍시		
득점현황	합계 (100)	5등급	
	계획단계(10)	D+	
	집행단계(50)	F	
	성과단계(40)	F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정읍시 관내 각 기관, 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사업시행 주체임.
- 사업시행 주체와 참여조직, 시군담당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 신규사업지역이고, 사업시행주체의 역할이 유통부분에 특화되어 있으며, 광역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계가 있음.

### □ 핵심성과

- 전북서남부평야 실무운영위원회 구성, 매월 정기모임 실시.
- 참여조직을 중심으로 6개 시군 공동 전문가에 의한 농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재배 매뉴얼화 병행.
-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를 광역 유통주체로 일원화하여 수출 및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사업 확장 시도.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광역 대표 마케팅 조직으로서 지역을 아우르는 본격적인 브랜드 마케팅과 통합적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사업 계획의 검토, 조정이 필요함.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급품목이 사과, 배, 복숭아로 다양하고 시군별로 주력품목이 상이함.</li> <li>• 배의 경우 3개 수출단지를 중심으로 운영.</li> <li>• 유통기반시설의 경우 대형유통업체 대응에 한계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 및 지역이 분산되어 통합조정기능의 수행이 매우 중요함. 현행 주관시군 형태를 벗어나 통합조정기능 주체가 발굴되어야 함.</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가 낮고 시군별로 별도의 사업진행으로 일관성이 부재함.</li> <li>• 시행주체와 참여조직간 실무협의회에 시군 실무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확대회의가 전부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간 협의체를 공식화하여 참여 시군의 일체화, 통일된 사업추진이 필요.</li> <li>• 사업초기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과수산업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활성화와 우수 사업 벤치마킹 노력 필요.</li> <li>• 시행주체의 지역한계,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보완조치와 역할 증대 필요.</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예산집행율이 46%로 매우 저조함.</li> <li>• 사업추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사업관리가 미흡하고, 집행을 제고할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매우 미흡함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지침에서 요구하는 연말 이전 사업자 선정 완료, 예비대상자 선정·활용, 2개월내 미개시자 조사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 개선 필요.</li> <li>• 특히, 시행주체와의 출하약정 체결 등 출하체계 재편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구조에 비해 시행주체와 참여조직간 협의 및 연계는 뛰어난 편임</li> <li>• 의사결정구조와 시군의 장벽은 여전히 현실적 한계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을 뛰어넘은 광역 사업추진체로써 사업시행주체와 참여조직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재정립하여야 함</li> <li>• 광역단위 조정과 지원을 담당하는 주체를 발굴하여야 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5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D+</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F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D0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0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F</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F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D0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D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D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0.5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0.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F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0.00	
③ 출하약정 주체	2	0.50	
④ 출하약정기간	1	0.2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D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 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1.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0.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0.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F
	① 예산집행률	10	3.85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D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D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D0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D0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1.04	
<b>성과단계 소계</b>		<b>40</b>	<b>F</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D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F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1.36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0.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30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0.99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0.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D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0.36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0.00
	⑨ 기타 사업실적	1	0.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D0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D0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D+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12
	② 교육 횟수	1	1.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D0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C0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0.01	
	비계량	F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D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농가의견 수렴은 자체 교육 및 설명회시 자유토론을 통해 주로 진행하였음.
- 자문위원회는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회의 개최만이 아니라 사안별 서면자문, E-Mail 활용으로 충분한 의견이 도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 및 참여조직으로 구성된 서남부평야과수산업 실무운영위와 참여시군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2개월에 1회 정도 개최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실무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과 사업 반영 등은 일반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사업시행 초기 단계인 현시점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시군간, 참여조직간 협의채널로서 지역에서의 의미는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의의 정례화와 실행력을 높이고 안전 및 의사결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분과 운영 등 보다 세부적인 의사결정과 협력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조직간 협의회와 담당자 실무위원회, 농가조직 운영위원 회 등으로 체계화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명확화와 조직간 협력을 강화해야 함.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신규사업 대상지역으로 해당 없음.

나. 집행단계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을 주도하지 못하며 시군별로 행정과 참여조직의 협의 하에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었음.
- 시행주체는 정읍 위주로 업무에 참여하였고 주로 유통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시행 주체 중심의 물량 통합을 위해서는 시행주체가 우선순위 심사 등 핵심 역할을 배치하는 것이므로 총괄적인 계획수립에서부터 집행까지 모든 업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시행주체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시행주체가 적극적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되 참여조합,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조직간 협력 및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함.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시·군		◎		○	○	○	
농업기술센터		◎					
읍·면	◎						
사업시행주체				○			
참여조합	◎	◎	◎	○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② 1,2순위 준수여부

- '07년도는 신청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접수하지는 않았으며, 1년이상 약정 체결한 농가만 접수되어 미흡함.
- 1, 2순위의 구분은 사업에 지원하는 농가와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를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신청서 접수단계에서부터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약정” 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지역마다 심사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광역사업으로 평가하는 데 애로가 있으며 바람직하지 않음.
- 정읍 기준으로 유통규모화 촉진 측면에서 과원규모(10), 조직참여(10) 등이 반영되었고 기타 농가연령(10), 과원 수령(10) 등 반영.
- 계량화된 실적과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연동될 수 있는 심사표 도입이 필요하며 정부정책 수용성 등 농식품부에서 제시된 지침에 맞도록 지표를 개발하고 시군별 협의를 통해 통일된 양식을 적용함으로써 사업통합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07년 신청대상농가의 95%가 선정되었음. 출하약정이 없는 농가와 35점 이하(퇴비사는 45점) 농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가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접수대별 농가분포는 비교적 고른 편이나 대부분의 농가가 선정되어 변별력 있는 심사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퇴색되어 있음
- 동점자는 과원 규모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출하이행 등 실제 사업 참여도를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표준 양식에 따라 심사표를 적정하게 개선하고, 배점별 변별력이 생길 수 있도록 심사과정, 현장심사 등을 객관화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업신청자를 충분히 확보하는 과제가 우선 추진되어야 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시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12월 중 실무선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07년 2월 농정심의회에서 확정하였음.

- 다만, 정읍의 경우 '06년 12월 21일 대상자 순위심사 후 '07년 2월 27일 확정, 익산은 '07년 7월에 선정하여 상당한 시차가 존재함.
- 모든 시군이 전년도 연말 이전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1월에 보조금교부결정 및 통보를 완료하여야 하며, 주관시군에서 총괄 선정인원을 관리하도록 하여 광역사업으로서 사업추진이 지체되고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미개시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미개시자 조사는 시군별로 시행하되 농가 통보 후 2개월 경과 시점에서 시/군, 읍/면, 시행주체 및 참여조직 공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야 함.
- 중도포기 방지, 사업 진행 곤란 물량의 재배정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중간 점검 및 지도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출하약정서에 실무운영위 회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사업설명회시 회의내용으로 중도포기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공지하였으나 구체적 제재사항은 없음.
- 시군별 사업진행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광역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현재는 일반적 제재사항 명시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실제로 농가 명단을 관리하고 확인하여 적절한 제재 조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 실적이 없음.
- 예산집행을 제고 등 원활한 사업추진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의 120% 수준에서 예비대상자를 반드시 선정하고 중도포기자 및 미개시자 발생시 순위에 의해 대체됨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함.
- 또한 예비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미 선정된 예비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시군별	① 약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전주시	55	55	100	70,000	52,000	74.2%	으뜸배	1년
익산시	58	58	100	9,300	7,533	81%	과수연합회	1년
정읍시	20	20	100	562	450	80%	정일과수, 정읍배	1년
김제시	38	38	100	509	408	80.3	원평배	1년
완주군	8	8	100	300	240	80%	완주과수	1년
임실군	-	-	-	-	-	-	-	-
계	204	204	100	80,671	60,631	75%	-	

- 사업신청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약정 체결하여 우수하며 추후에도 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출하약정을 의무화하여 지원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 약정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여야 함.

###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전주시는 약정물량을 7만톤으로 표시하는 등 자료의 신뢰성이 극히 낮아 사업관리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됨. 약정서를 실질화하여 생산 예상량 과 약정물량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함. 이를 통해 농가 책임성 제고와 시행 주체의 예측가능한 판매·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함.

### ③ 출하약정 주체

- 시행주체가 아닌, 시군별 참여조직이 각각 체결하여 미흡함.
- 참여조직이 시행주체와 다시 한번 출하약정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주체의 역량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실현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시행주체인 정읍농산물유통공사와 출하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행주체가 유통의 책임주체로 활동하여야 함.



#### ④ 출하약정기간

- 출하약정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5년 이상 장기 약정을 체결하여 농가의 책임성과 체계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행주체 중심의 효과적인 출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출하약정서에 지원금 회수 및 3년간 회원가입을 제한함을 명시하였으나 구체적 제재 실적은 없음.
- 약정자체가 기형적임. 최소한 시행주체, 참여조직, 농가 간 3자 계약 방식을 실현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페널티,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전북서남부 사업은 광역사업이나 시행주체가 미확립된 상태에서 6개시군 개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특히 출하와 관련하여 약정의 의미가 거의 없고 통합, 규모화의 성과 도출이 극히 희박한 상황으로 이해됨. 사업 계획과 사업 주체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전북도 차원에서 기존 FTA사업을 포함한 사업 계획의 재조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익산과수연합회에서 농업용파이프 등 32백만원 자재 일괄 구매하였음.
- 일부 참여조직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괄 구매로 사업 효과가 미흡하므로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간 협의를 거쳐 전체적으로 공동구매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과수산업육성을 위한 산학관연 협의체 위원회를 통해 24개 업체 중 21개 업체 선정, 사업비 절감 노력은 없음.
- 업체선정시 가부 차원을 넘어 등급에 의한 평가방식 도입을 검토하여야 하며, 입찰에 의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농가에 실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함.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사업단가 검토와 조정을 시행하지 않음.
- 업체 선정시 사업단가를 비교하여 검토하고, 전문가 및 농가 리더의 자문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설치 방식 및 부품구성을 검토하여야 함.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237	237			137	137	92	8	57%
기타사업			3,003	3,003		159	1,196	1,355	962	686	45%
합계			3,240	3,240		159	1,333	1,492	1,054	697	46%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율이 46.0%로 매우 저조함.
- 시군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주체의 역할이 미미하며, 사업집행 점검 및 지도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빚어진 사태로 총체적 점검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사업비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조정이 검토되어야 함.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사업지도를 위한 농가방문 및 사업별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통해 사업추진 진도를 수시로 파악하고 농가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명확하게 하여 예산집행율을 제고하여야 함.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익산의 경우 용자 희망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신청시 신용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시군별 사업진행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광역사업 평가에 애로가 있는 등 시군별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 여부 확인이 불가능함.

-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집행을 제고를 위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노력 뿐 아니라 신청서 접수단계에서부터 사전신용 조회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 융자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익산은 사업참여조직인 익산과수연합회에 국한하여 해충채집기지원의 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정읍은 사업참여조직인 정일영농조합법인 조합원에 국한하여 봉지지원사업 40백만원 지원하였음
- 그러나, 시군단위의 접근을 벗어나 전북도 차원의 사업추진 방향이 정립되어야 하며 광역사업을 지속할 경우 도차원의 강력한 의지표출과 적절한 사업이 개발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농식품부 등 기관의 점검 지적사항 미이행 없음. '07년 신규사업 지역으로 '08년 사업시행시 보완하여 시행.
-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및 제출 후 수정, 허위사실 기재 없음.
- 보고서류 제출지연(-1.04) : 미제출 0건(0점), 지연일 126일(-1.26점), 조기일 22일(+0.22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 '05년 12월 8일 설립등기.
- 법인은 현재 대표, 시청과견 2명, 농협과견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산(FTA기금관리 포함) 부문에 3명 배치.
- '07년 과일류 990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4,165백만원의 사업실적.
- FTA기금사업 참여조직들이 사업시행주체로 출하권을 위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나 사업체의 주주 등 의사결정권은 정읍시 관내 조직 및 단체로 구성되어 한계가 있으며 광역사업 추진 역량은 미흡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시군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전주시	574	250	350	43%
익산시	416	322	640	77%
정읍시	375	250	420	66%
김제시	408	93	112	23%
완주군	-	-	-	0%
임실군	-	-	-	0%
계	1,773	915	1,502	51.6%

- 참여조직 출하 이행 실적이지만, '07년 출하량 915톤, 출하약정 이행을 51.6%로 낮은 편임.
- 사업시행주체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야 출하약정 이행이 가능하므로 사업시행주체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121	100%		990	100%

- 시행주체는 '05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06년 출하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함

####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990	100%

- '07년도에 990백만원 실적이 있으나 지속적인 사업규모 확대와 마케팅 역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990	990	100%

- '07년도에 출하실적 전체 100%를 공동선별·공동계산 방식으로 시행하였음.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단위 : 톤, 백만원)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121	100%		990	100%

- '07년도에 출하실적 전체 100%를 공동선별·공동계산 방식으로 시행하였으나 '06년 출하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자연에플러스" 개발, 등록 중이며 실제 브랜드 이용 실적은 120백만원 수준으로 미미함
- 브랜드 활용을 증대하고, 홍보와 품질관리가 결합되어 체계화된 브랜드 마케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 율(B/A)
사업실적(백만원)	990	120	12.1%

- 전체 사업량의 12.1%만이 공동브랜드를 활용하고 있어 공동브랜드의 활용이 매우 낮음.
- 향후 유통규모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공동브랜드 사업실적 증대 노력이 필요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113명	

- 향후 유통규모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사업확대 및 지속적 교육사업운영이 필요하며 정예농가 위주로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수를 확대하여야 하며, '06년 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함

⑨ 기타 사업실적

- 학교 급식, 농자재 판매 실적 등 '07년 신규 3,951백만원의 기타사업 실적이 있으나 '06년 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함
- 향후에는 농가의 소득증대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확대가 필요함.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전라북도 FTA기금 사업 만족도 설문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시행하였으나 설문참여 농가가 21명으로 작은 편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지속적 교육실시가 의견으로 도출되었으나, 활용성이 미흡함.
- 사업규모에 비해 만족도 조사의 표본이 작고, 지표 등도 부실한 측면이 있어 활용성이 약함. 자체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함.
- 향후에는 농가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시행 성과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 개선과 성과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전북 5개 권역 관계자 연찬회를 통해 사업참여 애로사항을 조사하는 데 그쳤음.
- 광역사업단 공동 연차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어려울 경우 시군별 연차평가 실시. 정책 집행, 시공, 사업 메뉴 전반에 대한 조사와 출하 성과 등을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 활성화에 활용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일상적 사업 관리를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T/F 팀운영, 피드백(환류) 추진 등 보다 체계화된 사업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외부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GAP인증 및 FTA기금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노력이 엿보임.
- 지역 현실에서의 사업에 대한 이해증진 주력 측면은 인정되나 광역 마케팅 주체의 원물조달을 위한 농가조직화 차원의 체계적인 접근은 미흡하므로 농가의 사업참여율 제고 및 약정이행을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농가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필요가 있으며, 특히 농가들의 사업이해도 증진과 유통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가 요구 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재배관리기술을 중심으로 월별로 작성, 교육에 병행 사용하고 있음.
- 매뉴얼의 충실도가 일반적인 수준이므로 지역 여건에 맞는 재배 매뉴얼을 개발하여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상반기 및 3/4분기 예산 조기 집행을 우수함.
- 사업시행주체와 참여조직으로 구성된 실무운영위원회에 지자체 담당자가 결합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사업시행주체를 중심으로 농가 조직화 및 마케팅 역량을 키워가는 과정에 있음.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사업시행주체는 정읍에 국한된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통부문에 특화하여 참여조직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편임.
- 지자체는 실무 담당자의 노력은 엿보이나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은 수준으로 충실도가 미흡하며, 특히 전북도 차원의 사업지원 및 조정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시군에서도 실무담당자만의 업무로 취급되어 아쉬움이 있음.
- 개별 시군 사업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19(2-10)

전남동부과수육성사업

지원품목	(주) 단감, 배 (보조) 매실, 복숭아	선정년도	2005
사업주관기관	순천시	사업시행주체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시군	순천, 여수, 광양, 구례, 보성, 강진, 장흥, 곡성		
득점현황	합계(100)	4등급	
	계획단계(10)	C0	
	집행단계(50)	D+	
	성과단계(40)	F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전남동부 8개시군을 포괄하는 순천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이 사업시행주체 이나 순천중심 3개 농협이 출자하여 구성되어 있어 광역사업주체로써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 지역별로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참여하고 사업은 시군별 진행 .

### □ 핵심성과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지속 확대.
- 거점APC 운영 주체에 대한 지역내 공감대 형성으로 생산과 유통을 연계한 사업추진 기초를 형성.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동부권연합사업단에서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변경. '07년 1월 순천 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인가신청, 10월 법인인가 및 등록을 완료하였음.
- 기존 연합사업단 활동이 거의 없었으며, 신설 법인도 거점 APC 운영주체 로 인식하여 현재는 실질적 판매사업 기능이 없음. 거점APC 운영 이전에 라도 판매·마케팅 사업체로서 정상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품목인 단감의 경우 2,345ha로 전국 10%를 상회</li> <li>• FTA기금사업에 의한 거점APC 건립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시군의 실질적 참여가 가능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생산기반 규모화가 마케팅 규모화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함</li> <li>• 거점 APC의 안정적 물량확보 및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치밀한 준비가 지속되어야 함</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사업체이나 시군별로 각자 사업을 진행</li> <li>• 시군별 협의체가 없음</li> <li>• 사업시행주체가 형식적이며 사업구심력을 확보하지 못함</li> <li>• 광역사업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순천시 위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거나 시군별로 각자 사업을 진행하여 문제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천시 중심에서 벗어나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광역사업체계를 갖추어야 함</li> <li>• 사업시행주체가 형식성을 벗어나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li> <li>• 사업전반에 걸쳐 광역사업시행주체의 실질화와 8개시군 지자체 및 참여조직을 포괄하는 사업 운영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율은 전국 평균 수준</li> <li>• 예산집행노력도 일반적인 수준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함</li> <li>• 대상자 선정 및 점검, 환류체계 등 전반적 개선노력을 경주하여야 함</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주체와 사업참여조직간 협의도 미흡한 편임</li> <li>• 광역사업이 순천시사업, 순천농협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주체의 실질적 기능 수행이 우선되어야 하나 참여조직간 협의도 긴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임</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4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0</b>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C0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D0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0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D+</b>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b>14</b>	F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D0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C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C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1.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0.00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b>10</b>	C+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62	
③ 출하약정 주체	2	2.00	
④ 출하약정기간	1	0.2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D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1.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0.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B0
	① 예산집행률	10	8.69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C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C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0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0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1.09
<b>성과단계 소계</b>		<b>40</b>	<b>F</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C+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F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0.00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0.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00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0.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0.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D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0.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0.00
	⑨ 기타 사업실적	1	0.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C0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C0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C+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51
	② 교육 횟수	1	1.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C+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C0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0.21	
	비계량	D0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D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지역농업 주체의 순천대, 품질관리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으나 행정 절차 이행 수준으로 진행. 지역별 사업추진 의결은 시군별 농정심의회로 진행되었음.
- 농가의견 수렴은 자체 교육 및 설명회시 자유토론을 통해 주로 진행.
- 자문위원회가 광역단위로 통합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시군단위의 농정심의회로 대체되고 있으며, 위원이 순천시 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통합사업계획 운영에 필요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광역사업에 걸맞게 재편되어야 함.
- 중장기적인 지역 과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단을 구성하고, 정기회의, 사안별 서면 및 E-Mail 자문 등 의견 청취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전체 참여조직 및 지자체간 협의회는 운영되지 않음.
- 순천을 중심으로 행정 및 참여농협 등이 참여하는 운영협의회 진행, 브랜드 육성 및 FTA사업변경 관련 협의가 진행되었음.
- 8개 참여시군과 지원대상조직간에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가 이루어 질수 있어야 하며 최소 8개시군 협의체 구성이 필요함.
- 시행주체와 참여조직간 구체적 실행을 위한 협의체를 정규화하여 안전 토의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농식품부 사업개선 지침의 반영 등 전반적 항목에 대해 개선노력이 보이나 사업시행주체의 실질적 사업수행은 APC설립 이후로 예상됨.

-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광역연합사업단의 위상에 걸맞는 사업체계 구축과 사업운영 부분에 대한 보완이 미흡하므로 지속적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나. 집행단계

※ 순천지역 거점APC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생산시설현대화는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음 (총투자액 650백만원). 시군의 관심이 낮고, 행정 집행의 우선순위도 낮기 때문에 8개 시군 공통의 사업관리 노력이 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도 차원에서 전체 사업 계획의 재검토와 시행주체, 참여조직간 역할 재편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함.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참여조합	○	○	○			○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사업시행주체가 순천에 국한되어 사업은 지역별 시군이 주도하여 진행, '08년 사업부터 사업시행주체가 현장심사 동행 및 1차 정산 실시.
- 시군별 사업진행으로 사업시행주체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주체와 참여조합의 역할분담 및 관계정립도 부정확함.
- 따라서 총괄적인 계획수립에서부터 집행까지 모든 업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사업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함.

## ② 1,2순위 준수여부

- '07년도는 신청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접수하지는 않음.
- '08년도부터는 농식품부 지침에 의거 순위를 구분하여 접수,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 1, 2순위의 구분은 사업에 지원하는 농가와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를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신청서 접수단계에서부터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며 판매사업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과 정책 집행을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정부정책수용성 측면에서는 친환경(15) 등이 반영되었고. 유통규모화 촉진 은 출하실적(10), 수출실적(10), APC약정량(10), 과원규모(10) 등이 반영. 이외에 농가연령(10), 과원 수령(10) 등이 평가 항목으로 반영되어 있음.
- 유통규모화 촉진 부분을 반영하는 항목이 우수한 편이나 정부정책 수용성, 유통규모화 촉진, 기타 합리적 기준을 고루 반영하여 계량화된 실적과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연동될 수 있는 심사표 도입이 필요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07년 신청농가의 100%가 선정되었음. 점수대별 농가분포는 비교적 고른 편이나 신청농가 전체를 선정함으로써 의미가 퇴색되었음
- 동점자는 과원규모, 수출실적 등으로 선정. '08년부터 교육참여율, 출하비율, 출하물량 등으로 조정

※ 근본적으로는 사전 조정을 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와 사업 추진 이해를 전환해야 함. 또한 사업 신청자가 충분히 생기도록 사전에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따라야 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순천은 '06년 12월 20일 실무선 가선정, 이후 2월 16일 농정심의회에서 확정하였고, 장흥, 곡성 12월 이전 확정 확인, 강진, 구례는 '07년 1, 2월 확정
- 시군별 사업진행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추진 시기나 진행 협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도말 이전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전체 시군 집행 일정을 관리하여 체계적인 협의와 사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순천기준 5월 3일 교부결정 통보하였으나 미개시자 일제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음. (장흥은 3월 중 일제조사 실시)
- 시군별 사업진행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군별로도 사업관리가 미흡하여 미개시자 조사 및 조치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임.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행 과정을 모니터링 등 모든 시/군 공통의 노력이 필요함.
- 대상자 선정은 전년도 연말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영농철 이전에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미개시자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사업독려, 포기각서 징구 등 미개시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

####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중도포기자에 대한 구체적 제재사항 명시가 없으며 포기자도 없음.
- 시군별 사업진행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광역사업 평가에 애로가 있음. 시군별 조치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특단의 개선 대책이 필요함.

####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순천 기준 농정심의회(2/16)에서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대상자 선정, 상위자 포기시 차순위를 지원함을 의결. 포기자 없어 해당사항 없음.

- 시군별 사업진행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광역사업 평가에 애로가 있음. 시군별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였음.
-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 미개시자나 중도포기자 발생 시 지원농가를 교체해야 할 경우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미 선정된 예비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165	158	96	1,785	935	52	참여조합	1
'06년	93	93	100	911	563	62	"	1
'07년	50	50	100	778	630	81	연합조합	1
계	308	301	98	3,474	2,128	61		

- '07년 사업신청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약정 체결하여 적정함

###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07년 약정농가 생산량 대비 100% 출하약정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81% 출하약정 실적을 보여 양호함. 그러나, 기존 연합사업단 및 법인이 실제 판매 사업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약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음.
- 출하약정에 기반한 농가 참여와 책임성 있는 출하를 추진하여 시행주체 중심으로 예측가능하고 효과적인 판매·마케팅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③ 출하약정 주체

- '07년 사업은 동부권과수연합사업단(약정서상 순천시동부권연합사업단으로 명기)에서, '08년부터는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체결



- 출하약정 주체가 참여조합에서 사업시행주체로, 사업주체법인화로 인해 변경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계가 되지 못했으므로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순천지역 거점APC 사업과 연계하여 물량 확보를 위한 사업권역의 확립, 참여조직 및 산지 출하조직 재정비 등 출하 시스템의 체계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FTA기금사업 지원을 위한 단순 약정, 형식적 약정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거점APC 운영을 위한 약정으로 전환되도록 제도, 집행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④ 출하약정기간

- 출하약정기간을 1년으로 표기하였으나 5년 이상 장기 약정을 체결하여 농가의 책임성과 체계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행주체 중심의 효과적인 출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07년도 사업은 별도의 제재 명기 없음. '08년 사업부터 지원배제 명기.
- 불이행농가에 대한 제재 실적 없고 인센티브 내용도 1읍면 1특화사업 등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이사항 없음.
- '08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사업단 규약 등을 제작하였으나 적용사례는 없음.
- 사업시행주체를 중심으로 한 사업전개를 위해서는 출하약정 이행 방안에 대한 실행측면의 확실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자재 일괄구매 실적이 없음.
- 사업시행주체가 8개 시군을 포괄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함. 사업시행주체의 형식적 운영 탈피가 우선되어야 함.

- 자재일괄구매 시 구매 효과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일괄 구매 품목을 확대 하고 규모화를 통한 단가 인하, 품질 보증 등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07년은 실무진에서 평가 없이 단순선정 공지하였으며, 순천시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진행에 국한되며, 8개 시군 광역사업으로 보기에 는 어려움이 많음.
- 부실 시공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고,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8개 공동 추진이 어려우면 시군단위 혹은 권역단위로 선정해서 운영해야 함.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07년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업단가 조정도 '08년도 사업에 접목, 시행
- 전국 표준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전체 사업에 대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단가를 검토하고, 대상 사업에 대해 단가 조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단순한 실무 차원의 검토가 아니라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단가조정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지역 의견과 객관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우량품종등											
기타사업			354	354	54	161	84	299			84%
<b>합계</b>			354	354	54	161	84	299			84%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생산기반조성											%
거점APC			3,818	3,818					3,818		%
과실브랜드											
<b>합계</b>			3,818	3,818					3,818		%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체 집행율은 86.9%(국고기준, 농식품부)로 미흡하며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사업 중심이 거점APC에 있어 생산시설현대화는 부수적인 사업으로 취급되고 있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사업추진 설명회 및 농가교육시 예산집행을 제고 노력 강조.
- 일상적 수준으로 평가되며, 집행율을 제고하기 위한 미개시자 조사, 현장 모니터링, 시공업체 관리 등 체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곡성의 경우 사업신청 시 신용조회 병행하는 사례로 이해.
- 시군별 사업진행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사전 용자예산 조사, 용자 대상자에 대한 사전 신용 조회, 집행 시기 대출기관 통보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집행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단감브랜드화 육성사업으로 시비 169백만원 지원.
- 기타 시군별 과수산업 육성 관련사업 진행.
- 시군별 사업진행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시군별 과수산업 육성차원에서의 지원 노력은 인정되나 FTA기금사업과의 구체적 연계성은 미흡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농식품부 등 기관의 점검 지적사항 미이행 없음
-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및 제출 후 수정, 허위사실 기재 없음
- 보고서류 제출지연(+1.09점) : 미제출 1건(-1점), 조기일 209일(+2.09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07년 4월 10일 설립인가, 4월 15일 설립등록 완료.
- 법인은 3개 농협 외 12개 영농조합법인에서 참여, 현재 직원 2명, 자본금 15억원으로 운영중이나, 준회원 가입과 별도 사업 환코드를 부여받지 못해 실적 기표가 불가능한 상황.
- 법인의 참여조직 통제력이 결여되어 있어 실질적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참여조직간 협의를 보다 활성화하고 거점APC 운영 조직으로서 체계적인 내부 조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인력 확충과 실무 운영 시스템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07년말 기존 연합사업단은 FTA기금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형식적 주체로서 전혀 사업 실적이 없으며, 거점APC 운영을 위해 새로 출자,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설립 초기로서 판매사업을 시행하지 않음. 과수 판매와 관련하여 연차 평가를 위한 사업실적이 전혀 없음. '08년의 경우 거점APC 완공 이전이라도 기존 사업 물량 통합과 공동 마케팅을 실행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834	834	1,090	100%
2006년	850	850	1,110	100%
2007년	2,760	2,208	3,500	80%
계	4,444	3,892	5,700	88%

- '07년 출하약정량 2,760톤, 출하량은 2,208톤으로 80% 수준임.
- 연합사업단이 약정주체이나 농가가 소속된 참여조직에 출하를 하고 있어 실질적인 평가가 어려우며, 연합사업단(법인)은 사업 실적이 없음.
- 사업시행주체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기존 사업 물량 통합과 공동 마케팅을 실행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함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	-	-	-	-	-

- 사업시행주체인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순천시동부권연합사업단 사업실적이 전무함.
- 사업시행주체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기존 사업 물량 통합과 공동 마케팅을 실행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함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10,125	9,412	10,710	13.8%

- 해당 실적은 순천농협 실적으로 시행주체 사업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시행주체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기존 사업 물량 통합과 공동 마케팅을 실행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함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11,194	2,640	23.6%

- 해당 실적은 순천농협 실적으로 시행주체 사업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시행주체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기존 사업 물량 통합과 공동 마케팅을 실행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850	2,208	160%	1,110	2,640	138%

- 해당 실적은 순천농협 실적으로 시행주체 사업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시행주체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기존 사업 물량 통합과 공동 마케팅을 실행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순천시 공동브랜드인 순천미인 '07년 1월 특허청 등록.
- 8개시군 공동브랜드로 불수 없으며, 타시군의 경우 순천미인 사용에 대한 반발이 여전한 상태여서 공동사용이 가능한 광역브랜드 개발이 필요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 율(B/A)
사업실적(백만원)	2,400	2,400	100%

- 해당 실적은 순천농협 실적으로 시행주체 사업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시행주체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기존 사업 물량 통합과 공동 마케팅을 실행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1,036	1,377	1,427	3.6%

- 해당 실적은 순천농협 실적으로 시행주체 사업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향후 유통규모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사업확대 및 지속적 교육사업운영이 필요하며 정예농가 위주로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수를 확대해야 함.
- 사업시행주체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기존 사업 물량 통합과 공동 마케팅을 실행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함

⑨ 기타 사업실적

- 기타 사업실적 없음.
- 광역연합사업 시스템을 갖추고 실질적 사업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08년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설명회 및 기술교육('07.12.17)에서 사업설명 후 농가의 자유토론을 통해 문제점 대책 및 건의사항 접수 실시.
- 8개 시군 공통 혹은 개별 시군별 농가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기타 워크숍, 농가대표자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에서 의견 수렴이 필요. 시공업체, 정책집행, 사업메뉴, 진행상의 애로점 등 종합적이고 각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으로 의견 수렴하여 차년도 사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06년 과수종합평가회('06.11.30)에서는 60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사업시행주체를 중심으로 참여시군 전 대상자를 포괄하는 환류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07년 시행된 교육은 순천농협의 매실, 복숭아, 단감작목반을 대상으로 주로 재배기술을 교육한 것임.
- 시군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주체를 중심으로 농가조직화와 재배기술 정착,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함.
- 특히, 거점APC와 연계한 정예 회원농가 조직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농가 설명회에서 사용했던 교재 형태이며, 별도로 품목별 재배력 있음.
- 특정시군에 치우친 매뉴얼이 아니라 사업시행주체를 중심으로 광역사업 매뉴얼이 제작되어야 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예산 상반기 18.0%, 3/4분기 53.8% 집행.
- 시군별 사업추진으로 사업시행주체의 중심성을 확보한 실질적 역할은 미흡한 상태임. 순천시 사례 제시로 광역사업 평가에 애로가 있음.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광역사업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순천시와 순천시 관내농협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광역사업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충실도가 매우 미흡하므로 사업 전반의 재검토와 집행 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20(5-07)	전남배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배 (보조)	선정년도	2004
사업주관기관	나주시	사업시행주체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시군	나주시, 순천시, 강진군, 곡성군, 영암군, 함평군, 보성군		
득점현황	합계 (100)	5등급	
	계획단계(10)	F	
	집행단계(50)	F	
	성과단계(40)	D0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나주시는 배 주산지로서 75,000톤의 대규모 물량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며 인근 5개시군을 합쳐 약 12만톤의 배가 생산되는 지역임.
- 나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배를 비롯하여 다양한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우수 브랜드경영체임.

### □ 핵심성과

- 나주시를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 마케팅 시스템 구축.
-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지속적 추진으로 상품화 능력 향상 기대.
- 고품질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배 품질 경쟁력 제고.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나주배연합사업단에서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인 FTA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광역사업으로 나주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사업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규모화, 집중화와 무관하게 개별 시·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사업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주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의 배 생산량은 12만톤 규모로 전국 1위의 규모이나 실질적인 전남배육성의 목표 달성이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주시의 생산량으로도 충분히 시단위 생산-유통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한 광역화보다는 나주시를 분리하는 방식이 타당함.</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주시가 주관시군이 되고 5개시군이 참여시군이 되는 형태이지만 현재는 각 시군별로 지자체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li> <li>• 시행주체가 FTA사업을 총괄하기 어려운 형태임.</li> <li>• 사업시행주체에서 FTA사업에 대한 업무를 전혀 실행하지 않고 있어 전담인력 배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li> <li>• 광역 농가조직화의 경우에도 각 지자체별로 진행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남배육성사업에 대한 사업재검토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 마련 필요.</li> <li>• 광역사업으로서의 통일성이 없을 뿐 아니라 주관시(나주시) 중심의 사업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li> <li>• 시행주체 내부에 FTA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 강화 필요</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집행율은 81%로 다소 미흡</li> <li>• 예산집행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광역사업의 의미성이 상실된 상황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주체에서 광역사업에 대한 재판단을 실시하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 '08년 사업부터 시행주체 중심의 사업시스템으로 재판</li> <li>• 불가할 경우 전남배육성사업에 대한 사업 전면 재검토</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나주시 관내 14개 농협의 연합조직으로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업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li> <li>• 다만 5개 시군의 각 참여조직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사업으로서 규모화, 통합 추진 노력이 없으므로, 총괄적인 사업 조정이 필요함.</li> <li>• 나주시 중심으로 운영하되 전남도의 조정, 지도가 필요하며, 출하체계는 나주 인근 지역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5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F</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F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F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F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F</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F</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F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D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D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1.0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0.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0.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D+</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58	
③ 출하약정 주체	2	0.50	
④ 출하약정기간	1	0.2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F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0.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0.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C0
	① 예산집행률	10	8.11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D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D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F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F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2.81	
<b>성과단계 소계</b>		<b>40</b>	<b>D0</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D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C+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2.75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1.26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2.90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2.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1.66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C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3.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0.00
	⑨ 기타 사업실적	1	0.66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F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F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F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00
	② 교육 횟수	1	0.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F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F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0.85	
	비계량	F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F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각 참여시군별 생산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자문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나 원활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적구성이 미흡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07년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하여 '06년 1회, '07년 1회의 회의가 개최 되었으나 전남배 과수산업에 대한 자문실적은 없으며 각 시군별 회의 실적 밖에 없음.
- FTA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농업인 의견수렴실적은 1회에 걸쳐 진행된 사업평가회에 그치고 있어 각 시군별, 조직별 농업인들의 의견을 광역단위에서 수렴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
- 전반적으로 자문회의의 기능이 전혀 없으며 연차별로 광역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의지가 없으므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 운영을 활성화 하고, 기획단계 사업 수요 및 의견 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업 전반의 내실을 기해야 하며 특정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개별면담, 전화,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전남배육성 광역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전체 사업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 회의 실적은 영암에서만 1회 이루어짐.
- 지원대상조직간 회의 실적은 전체 참여조직간에는 없으며 순천 지역에서만 순천 참여조직간 회의 개최 .
- '07년 사업을 위한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 실적은 없음.
- 각 6개 시군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시행주체 및 참여조직은 배제된 채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어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행주체와 각 참여시군간 연계된 광역 회의 조직 구성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조직간 협의회와 담당자 실무위원회, 농가조직 운영위원회 등으로 체계화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명확화와 조직간 협력을 강화해야 함.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04년에 선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어 연차평가결과에 대한 반영 의지가 없음.
- 서류상으로 지적된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항을 지적받았는지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전남배육성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전남도, 각 참여시군 등이 합동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나. 집행단계

※ 전남배육성사업은 실적보고서 수치 및 내용의 불일치로 현장실사 및 종합평가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사업관리가 미흡함. 각종 행정 관련 자료도 영암군 이외에 적절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사업추진 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함. 광역사업으로 주관 시군의 주도, 관리 노력과 전남도의 지원이 필요하나, 체계적 관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 분리, 예산 재조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시·군	○	○	○	○	○	○	
농업기술센터	○	○		○	○	○	
읍·면	○	○		○	○		
사업시행주체							
참여조합	○	○	○	○	○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사업시행주체가 전반적인 업무를 전혀 주도하고 있지 못하며 각 참여시군 별로 지자체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 전남배육성사업의 경우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추진했던 광역사업에 대한 목표를 상실한 것으로 보여짐.
- 현재와 같이 개별, 분산적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전남배육성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

**② 1,2순위 준수여부**

- 1, 2순위를 구분하여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1, 2순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됨.
- 1, 2순위의 구분은 사업에 지원하는 농가와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를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신청서 접수단계에서부터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함.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우선순위 심사표의 경우 '07년 심사표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08년은 농식품부 표준안을 사용하였음.
- 다만 각 지자체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시행주체에서는 우선순위심사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각 지자체별로 심사 수행
- 시행주체에서 우선순위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참여조직 및 참여시군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우선순위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65점 이하 점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우선순위 심사표의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짐.
- 우선순위의 심사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강화하여 상하위 농가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며 특히 점수가 낮은 농가에 대해서는 신청자수가 부족하더라도 배제할 수 있는 하한선 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임.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사업대상자는 12월까지 신청 및 우선순위 심사를 끝내고 각 시군별 농정심의회에서 선정하여 적절하게 조치하였음 .
- 대상자 선정은 전년도 연말까지 완료하여 영농철 이전에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및 보조금교부결정 역시 지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07년 3월에 읍면사무소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전체 시군이 동일하게 진행하지 않았음.
- 영암에서는 미개시자를 사업포기 조치한 후 후순위자 대체 하였고 영암 이외 지역의 경우 미개시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전체 시군에서 미개시자 내역에 대한 확인이 불가함.
- 사업대상자 선정 2개월 후 일주일내 걸쳐 미개시자를 조사하여야 하며 미개시자 발생시 조치사항을 명확히 공지하고 미개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체계 구축 필요.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였으나 영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의 중도포기자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없음.
- 영암에서만 3년간 원예특작분야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공지.
- 중도포기자에 대해서는 신청서, 교부결정서, 출하약정서에 명시하여 농가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중도포기 발생시에는 포기각서 징구 및 FTA사업과 자체 지원사업에서 배제됨을 명시하여야 함.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영암에서만 후순위자로 대체 추진하였으며 타지역은 예비대상자 선정내역이 없음.
- 예비대상자를 20% 내외에서 선정하여 미개시 및 중도포기자 발생시 차순위자에게 사업을 배분하고 미 선정된 예비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579	421	92	421,144	205,025	48	참여조합	1
'06년	520	479	94	271,906	206,010	75	참여조합	1
'07년	367	367	100	157,784	124,523	78	참여조합	1
계	1,466	1,267	95	850,834	535,558	63		

- 출하약정을 100% 체결하여 우수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신청 단계에서부터 출하약정을 의무화하여 지원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80% 수준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출하약정서에 예상 생산량 및 약정량이 표시되지 않았음. 약정서에 생산 예상량, 출하 약정량을 명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③ 출하약정 주체

- 출하약정을 각 시군의 참여조합으로 체결하도록 한 점에 개선이 필요하며 출하약정주체는 사업시행주체로 변경하되 전남배육성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따라 보완이 필요함.

#### ④ 출하약정기간

- 출하약정기간은 1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5년 이상 장기 약정을 체결하여 농가의 책임성과 체계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행주체 중심의 효과적인 출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출하약정 불이행시 3년간 원예특작, FTA기금사업 지원 제외를 명시하였으나 영암에서만 시행하였고 타 지자체에서는 내용 확인이 불가하였음.
-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페널티 사항을 명확히 하고 농가들이 출하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장치 마련 필요 함.

###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추진하지 않았음.
- 수요가 많고 규모의 효과가 큰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일괄구매를 실시해야 함. 비교 견적으로 단가를 검증하고, 품질관리 관련 사항을 부대조건을 첨가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우수한 품질의 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업체 선정과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향후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으로 농가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도말에는 시공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불성실업체 및 만족도가 저하된 업체는 다음부터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필요.

####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단가 검토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단가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단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실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
기타사업	87	415	958	1,460	224	312	658	1,194	164	102	81
<b>합계</b>	<b>87</b>	<b>415</b>	<b>958</b>	<b>1,460</b>	<b>224</b>	<b>312</b>	<b>658</b>	<b>1,194</b>	<b>164</b>	<b>102</b>	<b>81%</b>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생산기반조성											
거점APC			12,724								
과실브랜드											
<b>합계</b>			<b>12,724</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거점APC 건립이 지체되어 '0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어 전반적인 출하체계 구성이 지체되어 사업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음. 그러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예산집행율이 81%에 그치고 있으며 이월,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여 사업 집행 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사업추진 전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기 마무리를 위해 농가 독려한 점은 우수함.
- 추가적으로 사업지도를 위한 농가방문 및 사업별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예산집행을 제고 노력은 미흡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영암에서만 용자희망농가에 대해 사전신용조회를 실시하고 농협군지부에서 조기 대출되도록 지도.

- 사업신청시 용자예산 희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농가에게 조기 대출될 수 있도록 조치.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각 시군별로 자체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통상적 지원사업으로 FTA사업 대상자를 정예농가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연계한 차별화된 시책사업 발굴이 필요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농식품부 등 기관의 점검 지적사항 미이행 없음.
- 보고서류 제출지연(-2.81점) : 실적보고서 제출지연1일 (-1점), 미제출 2건(-2점), 지연일 7일(-0.07점), 조기일 26일(+0.26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나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시행주체를 변경하였으나 FTA관련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단 나주를 중심으로 한 공동마케팅 등 튼튼한 사업체계를 구비하고 있으며 사업실적은 전국적으로 우수함.
- 시행주체에서 FTA관련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광역사업을 조직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함.
- 특히 참여시군 및 조직에서는 전남배육성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시행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임.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2,500	2,050	9,000	82%
2006년	3,500	3,100	13,950	88%
<b>2007년</b>	<b>3,500</b>	<b>3,210</b>	<b>14,605</b>	<b>91%</b>
계	9,500	8,360	37,555	98%

- 참여농가 중 91%가 출하약정을 이행하였으나 체계적인 관리는 미흡하므로 약정이행을 제고 등 전반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3,100	3,210	3%	8,537	9,668	4%

- 연합사업단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업추진체계가 안정화 될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기준 증가율이 4% 정도로 매우 미미하고 참여 시군의 물량 취급은 전무하는 등 특단의 노력이 요구됨

####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9,000	8,537	9,668	13.2%

- 사업실적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사업실적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참여 시군의 물량도 취급하도록 노력해야 함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율(B/A)
실적(백만원)	9,668	9,668	100%

-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은 전체 공동선별·공동계산을 추진하고 있어 유통규모화를 위한 노력은 우수하나 참여시군의 물량도 취급하도록 노력해야 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D-C)/C
3,100	3,210	3%	8,537	9,668	13.2%

- 공동선별, 공동계산 증가율은 13.2%로 우수하나 유통규모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참여 시군의 물량도 취급하도록 노력해야 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나주법인 자체적인 청미래 브랜드를 '04년부터 개발 사용하고 있으며 나주 시에서 공동브랜드인 “비단고을”을 새롭게 개발하여 '09년 APC 준공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할 계획임.
- 전체 사업물량에 대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수한 브랜드 관리 체계를 보유하고 있음.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율(B/A)
사업실적(백만원)	9,668	9,668	100%

- 사업량 전체를 공동브랜드를 활용하여 출하하는 것은 매우 우수하나 참여 시군의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은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여야 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C-B)/B
조합원수(명)	264	307	282	- 8%

- '06년 대비 '07년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8% 감소하였음
- 유통규모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사업확대 및 지속적 교육사업운영이 필요하며 정예농가 위주로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수를 확대해야 함.

### ⑨ 기타 사업실적

-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학교급식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향후에도 농가의 소득증대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확대가 필요함.

###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지원농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의 실적이 없음.
-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시급하며 향후에는 농가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시행 성과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 개선과 성과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평가 시행 및 환류체계 구축 실적이 없음.
- FTA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환류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시급하며 또한 연차 평가회를 실시함으로써 종합적인 농가 만족도 조사와 시공업체 평가, 유통사업 성과를 검토하고 차년도 예산 집행 및 성과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농가교육 등의 실적 없음.
-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하여 FTA사업대상자를 정예농가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농가의 사업참여율 제고 및 약정이행을 제고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농가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필요가 있으며, 특히 농가들의 사업이해도 증진과 유통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강

화가 요구 됨.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품질관리 매뉴얼의 제작 및 보유 실적 없음.
-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특히 시행주체 중심의 광역사업을 위한 사업운영지침이 없어 개선노력이 필요함.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상반기 및 3/4분기 예산 조기 집행 실적이 일부 인정됨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전남배육성사업을 담당하는 시행주체에서는 FTA사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며 담당 행정직원의 경우에도 사업추진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여 전남도를 중심으로 하는 개선 노력이 매우 시급함.



21(3-08)	전남유자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유자 (보조)	선정년도	2006
사업주관기관	고흥군	사업시행주체	고흥유자연합회영농조합
참여시군	고흥군, 완도군		
득점현황	합계 (100)	4등급	
	계획단계(10)	C0	
	집행단계(50)	C0	
	성과단계(40)	F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사업권역인 고흥, 완도 지역은 유자 재배 주산지(657ha)로 전국의 53%, 전남의 84%를 차지함.
- '90년대 중반까지 2,275ha에 달하는 재배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재배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반면, 가공산업이 활성화되어 '07년에는 22개 업체가 연간 160만불 수출 실적을 달성.

### □ 핵심성과

- 가공품의 수출량 증가와 적정면적 재배로 산지가격 안정화.
- 친환경인증면적 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
- 고흥유자연합회영농조합의 회원농가수 896명.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고흥유자연합회 영농조합은 가공업체 14개 및 재배농가가 각각 가입비 2만 원을 출자한 영농조합으로 직원은 대표이사 1명, 사무국장으로 구성됨.
- 유자 과수산업 육성을 위한 주도 주체로서 역할이 미흡하므로 시행주체 변경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함.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역의 유자재배 면적은 전국의 53%를 점유하고 있고 2007년 기준 6,029톤 수출하여 인지도 및 수요가 높음</li> <li>• 고흥유자 마케팅을 대표할 수 있는 유통조직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생산기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지역대표 마케팅조직을 육성하여 산업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해야 함</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흥유자연합회영농조합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li> <li>• 영농조합의 인력구성 등을 고려할 경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li> <li>• 협의와 사업이 분리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li> <li>• 사업시행주체인 영농조합에 많은 업체와 농가가 회원으로 가입은 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업 연계가 미흡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적 지원 및 조정 중심의 협의체적 성격의 조직으로 동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시행주체를 생산, 마케팅을 총괄하는 사업조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li> <li>• 시군중심의 기금집행 중심이 아니라 사업조직을 사업시행주체로 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체계 전반을 재편하여야만 정책적 요구에 상응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음</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율은 낮고 집행시기 또한 4/4분기에 집중되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자 선정을 조기에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집행율 제고를 위해 대상농가에 대한 홍보,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함</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농가 및 조직의 포괄적인 참여를 우선하는 지리적표시제 운영에서는 참여조직과 연계성이 높지만 동사업과 관련해서는 연계성이 낮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영농조합법인의 기능과 역할을 재부여하여 인력보강 등 사업주체로 전환하거나, 생산에서 유통까지를 포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시행주체의 발굴이 필요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4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0</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C0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C+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0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C0</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C0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C+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C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C+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5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0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60	
③ 출하약정 주체	2	2.00	
④ 출하약정기간	1	1.0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D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1.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1.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2.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C+
	① 예산집행률	10	7.61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D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C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B0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B0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33	
<b>성과단계 소계</b>		<b>40</b>	<b>F</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D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F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0.00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0.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00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0.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0.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F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0.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0.07
	⑨ 기타 사업실적	1	0.5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C+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D0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F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00
	② 교육 횟수	1	0.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F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C0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0.17	
	비계량	C0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D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자문회의를 개최한 실적은 있으나 FTA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활력사업을 위한 혁신협의회로서 과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현안에 대한 자문이 미흡함.
- 신활력사업 지역혁신협의회를 활용하는 점은 바람직하나, FTA사업 고유의 해결과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과로 분리하여 운영해야 하며, 농업인 의견수렴이 단순 토론에 그치지 보다는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실제 사업 개선을 위해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함.
- 전문가 참여 회의를 정례화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서면 자문, E-Mail,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선진지견학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농업인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한 성과가 인정됨.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07년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 실적은 3회에 불과하며, 그나마 전남도가 주관한 전체 점검회의에 참여한 실적임. 행정과 시행주체간 협의를 활성화하여 발전 과제 설정과 추진 상황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지원대상조직간 협의는 고흥유자연합회영농조합 이사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나 일상 협의 이외에 사업추진 관련 협의 실적이 미흡하며, 광역사업으로 고흥, 완도 시군간 회의 및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미흡함.
- 전반적인 협의 실적이 미흡하므로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계를 재정비하고 행정, 시행주체, 참여조직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정립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명확화와 조직간 협력을 강화해야 함.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자문회의 운영 및 각종 회의 및 협의의 개선 실적은 미흡하며, 표준 양식으로 적용되는 심사표 및 대상자 선정 방식이 개선되었음.
- 기타 집행단계 및 성과단계에서는 대부분 개선되지 않았으며, 고흥유자연합회영농조합법인의 위상과 역할이 재설정되지 않을 경우 개선될 수 없는 여건으로 판단됨.
- 시행주체 변경 및 실질화를 포함한 사업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함.

나. 집행단계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영농지도
시·도							
시·군		○(고흥)	○	○		○	
농업기술센터							○
읍·면		○		○	○(고흥)		
사업시행주체	○	○(완도)	○	○	○(완도)		○
참여조합							

- 행정에서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으며, 고흥/완도 각각의 역할 체계도 달리 적용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주체인 고흥유자연합회영농조합법인은 신청농가가 조합원인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소극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총괄적인 계획수립에서부터 집행까지 모든 업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시행주체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시행주체가 적극적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되 참여조합,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조직간 협력 및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함.

## ② 1,2순위 준수여부

- 1, 2순위에 대한 구분접수, 평가도 없었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함
- 유자에 적합한 농가조직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1순위, 2순위 구분은 사업에 지원하는 농가와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를 연계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지역통합과 협력적 농가조직화를 위한 연계 방안으로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적합한 구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심사표는 영농조합가입여부, 약정이행율, 과원규모, 친환경인증여부, 농업전문교육 이수, 재배경력, 자부담 능력, 재배작목 단지화 여부로 구성됨
- 표준 심사표를 지역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 정책 수용성, 유통규모화 촉진, 기타 합리적 기준을 고루 반영하여 계량화된 실적과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연동될 수 있는 심사표 도입이 필요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76농가중 57농가를 선정하여 75% 선정율을 보임. 신청자간 점수차가 크지 않고 신청자가 80~95점대에 집중 분포되어 변별력이 없으며, 동점자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신청자가 적어도 점수가 낮은 농가에 대해서는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한선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동점자 처리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사업대상자 선정이 '07년 3월에 완료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은 전년도 연말까지 완료하고 1월말까지 보조금교부결정 및 통보를 완료하여 영농철 이전에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07년 7월과 11월(11.29) 2차례에 걸쳐 미개시자 조사 후 미착공 농가에 대해 포기서 징구 등 적절하게 처리하였으나 사업대상자 선정과 미개시자 조사 시기를 조기에 시행하여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해야 함.

##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출하약정서에 중도포기자에 대해 3년간 FTA기금 사업 배제가 명시되어 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적절함.

##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예비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중도포기자의 지원사업을 대체 지원함으로써 적절하게 처리하였음.
- 그러나 향후 예비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미 선정된 예비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 고흥, 완도 유자 출하는 가공업체 매취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행주체가 마케팅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면 1, 2순위에 대한 출하약정이 가능하므로 마케팅 역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그러나 계속되는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행주체인 고흥유자영농조합은 실제 유자의 가공을 수행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료매입 알선 등 시행주체로서 유통사업 기능이 없는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어 모든 출하약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문제를 발생시킴. 사업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함.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64	64	100	148	148	100	고흥유자연	1년
'06년	76	76	100	234	234	100	고흥유자연	1년
'07년	57	57	100	141	113	80	고흥유자연	5년
계	197	197	100	523	495	95	-	

- 사업신청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약정 체결하여 양호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신청 단계에서부터 출하약정을 의무화하여 지원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07년 약정농가 생산량 대비 80% 이상 출하약정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80% 출하약정 실적을 보여 양호함.

③ 출하약정 주체

- 사업 시행주체인 고흥유자연합회영농조합법인으로 적정하게 체결하였음
- 그러나 현 사업시행주체인 고흥유자연합회영농조합법인은 실질적 사업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 출하약정 체결이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방향에 따라 사업주체와 출하약정 주체의 일원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④ 출하약정기간

- 출하약정기간을 5년 장기 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어 양호함.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제재방법 및 인센티브 지원 내용 등은 구체적이지만 별도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요구됨.
- 근본적으로는 출하약정 주체인 고흥유자연합회영농조합이 사업조직이 아니라 협의조직이기 때문에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와 인센티브는 의미가 없음.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미생물발효기 5대를 일괄 구매한 실적 등 자재를 일괄구매하기 위한 노력이 우수함.
- 향후에도 구매 효과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일괄 구매 품목을 확대하고 규모화를 통한 단가 인하, 품질 보증 등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시행주체 단독으로 실무자가 단순 선정 공지하였으며 체계적인 업체 선정 노력이 미흡함.
-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표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여 공지하도록 개선해야 함.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IFP사업에 대해 세부 지원품목 단가를 검토하였음.
- 실무자의 단순 검토로 시행되어 수행 체계가 미흡하며, 향후에는 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 지원사업별 단가 검토와 적정한 시설 기준 여부 검토,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
기타사업		38	172	210	12		150	162	41	7	77.1%
합계		38	172	210	12		150	162	41	7	77.1%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율이 77.1%로 사업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율이 낮고 대부분 4/4분기에 집행되어 조기 집행 실적이 없고 소액이

지만 불용액도 발생하였음.

- 각종 행정 절차를 조기에 시행하여 상반기 예산 집행 비율을 늘리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사업관리 노력이 필요함.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예산집행을 위한 자체노력이 대체로 미흡.
- 사업지도를 위한 농가방문 및 사업별 체크리스트를 작성 하거나 집행을 제고를 위한 별도의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집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용자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농협군지부에 신용조사 의뢰하고, 시공 50% 시점에서 용자 지원 되도록 하는 등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수행한 점이 인정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신활력사업과 연계하여 유자 가공, 홍보 판촉, 수출 촉진 등 생산 이외 부문에 대한 사업 지원이 이루어졌음.
- 중복, 경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단계부터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가공/유통 업체 지원이 농가 생산기반 지원 중심인 FTA기금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방식의 정비가 요망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보고서류 제출지연(+0.33점) : 미제출 0건(-0점), 지연일 55일(-0.55점), 조기일 88일(+0.88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고흥유자연합회영농조합법인은 판매, 마케팅 조직이 아닌 협의회 성격의 단체이며 FTA기금 사업시행주체로 역할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조직 형태임.
- 영농조합의 인력을 보강하여 사업조직으로 전환하든가 사업시행주체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시행주체가 실질적인 유통 주체가 아니어서 실적 수치와 평가에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실적 관련 수치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음.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148	-	-	%
2006년	234	-	-	%
<b>2007년</b>	<b>113</b>	<b>113</b>	<b>120</b>	<b>100%</b>
계	495	113	120	23%

- 고흥유자연합회영농조합이 사업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출하약정을 이행했다고 볼 수가 없음.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음.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1,867	1,926	103.2%	2,987	2,889	96.7%

- 두원농협과 한성푸드의 사업실적으로 고흥유자연합회영농조합과 무관함.
- 부적절한 실적 제시로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음.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1,684	2,987	2,889	96.7%

- 부적절한 실적 제시로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음.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 유자는 매취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이 없음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 유자는 매취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이 없음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고흥군이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는 'Only one'은 브랜드가 아닌 품질인증 마크로 공동브랜드를 신규로 개발하여 생산과 유통이 계열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 율(B/A)
사업실적(백만원)		130	

- 'Only one' 출하실적으로 고흥유자연합회영농조합법인과 무관한 실적임
- 부적절한 실적 제시로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음.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709	892	896	0.4%

- 고흥유자연합회영농조합에 회원으로 가입한 가공업체 및 농가수로 영농조합의 유통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업과 연계가 되지 않은 조합원임
- 부적절한 실적 제시로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음.
- 향후 유통규모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사업확대 및 지속적 교육사업운영이 필요하며 정예농가 위주로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수를 확대해야 함.

### ⑨ 기타 사업실적

- 시행주체의 포장재 공동구매 실적 36백만원으로 저조합.
- 각종 농자재 구매사업은 많은 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영농조합에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향후에 추진하여 영농조합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단, 참여조직간 경합 문제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함.) 또한, 농가의 소득증대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확대가 필요함.

###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대상농가에 대한 사업종료 후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하였음.
- 지속적인 농가 의견 수렴 노력과 사업 이해 확대를 추진하고, 농가 의견을 반영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차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행정주관의 자체평가는 실시하였으나 시행주체 주관의 자체평가를 하지 않고 있으며 환류체계를 구축하지 않음.
- 영농조합 주도의 자체평가는 어려움. 행정, 시행주체, 참여조직이 공동으로 자체 평가회를 실시. 계획, 집행, 성과 단계의 주요 지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도출과 사업 계획 반영 등으로 사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새해영농설계 교육, 친환경 바우처 교육 등 지역 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시행주체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 환경변화와 유자산업 전망을 바탕으로 출하, 유통체계 개선과 농가 조직 강화를 위한 지역차원의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에 기반한 체계적인 농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기술센터에서 작성한 매뉴얼은 재배만 다루고 있어 매뉴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업데이트를 하지 않음.
- 재배매뉴얼을 업데이트하고 수확 후 관리, 저장, 유통까지 매뉴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유자 가공품의 해외시장 개척한 실적 및 친환경인증 유자를 생산하여 차별성을 강화한 점이 우수한 실적으로 인정 되며, 예산 조기 집행율도 다소 우수함.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사업시행주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리적으로 원(遠거)리인 완도군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함.

22(4-09)	한국참다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키위 (보조)	선정년도	2005
사업주관기관	해남군	사업시행주체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
참여시군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내 12개 시군		
특점현황	합계(100)	3등급	
	계획단계(10)	C+	
	집행단계(50)	C0	
	성과단계(40)	B+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한국참다래종합육성계획은 사업범위가 전남, 경남, 제주도에 걸친 18개 시·군이며, 23개 조직이 참여하는 초광역사업임.
- 국내 생산농가의 95% 이상이 (사)한국참다래연합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조금 사업을 통해 참다래 시장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05~'06년까지 FTA사업으로 총 14,436백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지난 2년간의 예산집행율은 85% 수준임.

### □ 핵심성과

- 광역전국조직의 조직력 강화 : 3개도, 23개 조직의 규모화 및 조직력 강화.
- 계열화사업을 통해 공동선별·공동출하 계산 활성화 : 대형 유통업체, 전국 시장 장악, 전국 출하량 대비 80%이상 공동 출하.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기존 12개 조직에 11개 조직 추가 총23개 조직. (지역별 "참다래협의회"로서 영농조합 법인격을 갖추)
- 유통사업단 이외 (사)한국참다래연합회를 구성하여 자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산 참다래의 농가당 평균 재배 면적은 0.5ha, 평균연령은 68세로 고품질 생산과 생산성 낮음</li> <li>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미흡으로 수급조절에 애로발생</li> <li>전국적 광역사업으로 참여농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재해 방지, 안정적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내실있게 지속적 추진 필요</li> <li>체계적 농가교육을 통해 농가역량 강화 필요</li> <li>광역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권역별 조직운영 등 실질적 조직재정비가 필요</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반적인 참여조직간 역할분담체계는 우수하나, 행정조직간 협의(도·시군, 도간 협의) 및 시군내에서 읍·면의 역할분담 미흡</li> <li>참여조직간 역할분담 명문화 및 상호 점검체계 미흡</li> <li>FTA사업에 대한 행정과 시행주체 공동의 내부 점검체계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와 시군간 협의, 도간 협의 강화 필요하며, 시군내에서 읍·면의 기능 활용 강화</li> <li>참여조직간 역할분담 명문화 및 정례적 점검체계 구축 필요</li> <li>참여조직별, 시군별 참여율에 따른 예산배정의 차등화 등 인센티브 체계 강화 방안 추진 필요</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7년 예산집행률이 56.3%(농식품부기준)로 매우 저조하며, 시행주체와 참여조직간 회의를 통해 사업추진을 독려하였으나 효과 미흡</li> <li>사업지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용예산 과다 발생</li> <li>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사업집행 점검을 통해 예산집행을 제고 필요.</li> <li>사업지침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사전 확인을 통해 사업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li> <li>용자예산 집행을 제고 노력 강화 필요</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재 공동구매 및 비교견적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 노력 미흡</li> <li>참여조직과 사업시행주체간 공동마케팅을 위한 노력 미흡</li> <li>품질관리 매뉴얼은 작성·활용되고 있으나 작업 프로세스에 대한 매뉴얼에 그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재 공동구매 및 비교견적 등을 통한 비용절감 추진 강화 필요</li> <li>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공동마케팅 체계 구축 및 노력 강화 필요</li> <li>보다 넓은 범위의 브랜드관리 매뉴얼로 업그레이드 필요</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3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C+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B0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C0</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B0</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C+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1.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B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C+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1.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A0</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87	
③ 출하약정 주체	2	2.00	
④ 출하약정기간	1	1.0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B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D+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3.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2.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D+
	① 예산집행률	10	5.63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D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C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2.28	
<b>성과단계 소계</b>		<b>40</b>	<b>B+</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B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B0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2.84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1.5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2.81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2.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1.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C+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3.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3.00
	⑨ 기타 사업실적	1	1.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C+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D0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B0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78
	② 교육 횟수	1	1.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C+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B0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0.36	
	비계량	B0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B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07년의 경우 2회 개최에 그침. 자문내용도 FTA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보다는 기술적 자문 또는 현안 과제 중심이었음.
- 농가 의견수렴은 설문조사와 지역별 순회 출장 등을 통해 수행.
- 향후 자문회의 정례화 및 행정조직 자문위원 위촉 등의 개선 조치와 농가 의견수렴 및 자문내용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특정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개별면담, 전화,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행정과는 주로 사업단가 조정 및 사업추진 상황 점검 위주로 협의하고, 참여조직 간에는 유통 및 정책대응 위주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 사업참여 시군과 참여조직수 등을 고려할 때 각 지역별로 세부 상황을 파악하고 FTA사업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다소 미흡함. 또한, 참여 시군 간 협의실적은 '07년에는 없음.
- 전체적으로 사업시행주체에 의한 개별적 협의보다는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 권역별로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강화 필요.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지난 연차평가 지적사항 가운데 신규과원 지원기준 준수 및 사업비 집행시 사업지침서 준수 부문과 공동브랜드 활용을 제고, 참여조합원 증가를 통한 규모화 및 사업실적 증가 등 유통 분야의 활성화 및 규모화 부문은 대부분 개선됨.

- 그러나 자문기구 강화, 지원대상조직간 협의 강화, 지원대상자 1·2순위 구분, 공신력 있는 업체의 선정 및 공지 부문은 실행되지 않거나 미흡함.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	
시·군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합	○	○	○	○	○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전반적으로 각 업무별로 사업시행주체, 참여조합, 시군의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1차 정산이 읍·면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개선이 요구됨.

#### ② 1,2순위 준수여부

- 1, 2순위 구분하지 않고, 공동선별·공동계산 및 전량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만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접수.

- 1, 2순위 구분은 사업에 지원하는 농가와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를 연계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지역통합과 협력적 농가조직화를 위한 연계방안으로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접수단계에서부터 1, 2순위를 구분하여 평가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공동선별·공동계산 및 전량 출하약정을 의무화하고 있고, 친환경·교육실적, 재배규모 및 전업농 여부, 연령, 자조금사업 참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정책의 수용성, 규모화 촉진, 품목특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음.
- 전체적으로 우선순위 심사표는 적정하지만, 점수화 방식 도입을 통해 세분화 필요, 표준양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지역 여건에 맞도록 조정해야 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농가선정율은 81.8%이며, 심사결과 점수대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변별력은 있음.
- 그러나, 동점자 처리기준은 우선순위 심사표 상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
- 향후 동점자 처리기준을 제시하여 객관성을 강화해야 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사업시행주체가 우선순위를 심사하여 12월 각 시군에 통보하였으나 사업자 대상 선정이후 농정심의회 확정이 시군별로 달리 이루어져 교부금 결정이 지연됨.
- 통보 및 선정뿐 아니라 교부금 결정에 이르기까지 전 행정절차를 조기에 이행(전년도 12월말 선정, 1월말 보조금교부결정 및 통보)함으로써 실제 사업 개시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매년 3월말(3월 20일 ~ 31일) 각 시군별로 참여조직, 사업시행주체가 사업개시 여부 일제 조사 실시를 실시하고, 미개시자에게는 사유를 확인하고 사업추진 독려 또는 사업포기서 징구하여 적절히 처리함.

- 관련 자료를 정리해 놓지 않아 업무추진 결과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경우, 향후 3년간 FTA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을 약정서에 명기하였고 중도 포기자 6명에 대해 사업포기서 징구하여 적절하게 조치하였음.
- 중도포기자 명단 관리 및 차년도 신청여부 검증 등 체계적 관리 요망됨.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농정심의회에서 중도포기자 또는 결원 발생시 차순위자에게 자동 지원됨을 의결하고 농가에도 공지하여 적절히 처리함.
- 향후 미지원 된 예비 대상자를 다음 연도에 우선 지원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 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 정 주 체	④ 약 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204	204	100	1,063	999	93.9	시행주체	8년
'06년	176	176	100	1,026	999	97.4	시행주체	8년
'07년	91	91	100	1,818	1,698	93.4	시행주체	8년
계	471	471	100	3,907	3,696	94.6	-	

- 출하약정을 미체결 시에는 사업신청에서 배제하고 있어 100% 출하약정 체결하여 우수함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약정물량 비율이 93.4%로 우수함

③ 출하약정 주체

- 약정주체는 사업시행주체인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영농조합법인과 체결하여 적정하게 체결하였음.

④ 출하약정기간

- 약정기간은 8년으로 설정하여 유통규모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중에 있음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약정 불이행시 조합원 및 회원자격 박탈, FTA관련 사업 3년간 지원 배제 등의 제재사항을 약정서에 명기 (약정서 확인) 하였으나 제명 실적은 없음.
- 약정 이행시 인센티브 : 참다래 출하가격 kg당 200원 추가지급을 규정하였으며, '07년 213백만원 추가 지급하여 실행하였음.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자재 일괄 구매 실적이 없음.
- 필수 자재를 중심의 공동구매 효과가 큰 품목에 대해 일괄구매를 추진하여 적절한 비용절감 노력이 시행되어야 함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회원조직별로 일정기준에 의한 심사, 비교견적을 통해 8개 업체를 선정, 공시하였으나 자료관리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초광역 사업의 특성 때문에 전 사업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이 어려움. 다만, 지역별 업체를 선정하되 단순 선정에서 탈피하여 체계적인 근거 자료 검토와 지역 의견 수렴 등 우수한 업체를 추천하여 농가 피해를 방지하고 우수한 시공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해야 함.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비가림하우스, 관정에 대한 단가조정을 시행하였으나 단순실무 검토로 향후 단가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업체선정, 단가 검토 등은 공정성, 외부 업체의 문제제기 등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 ① 예산집행을

#### □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
기타사업		704	2,992	3,696	1,182	302	892	2,376	372	948	64.3%
합계		704	2,992	3,696	1,182	302	892	2,376	372	948	64.3%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07년 예산집행을 56.3% (농식품부 정산 자료 기준)로 이월·불용 예산 발생하였음. 예산 집행율이 전반적으로 낮고, 이월·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요소로 이해됨.
- 이월·불용 예산 발생 방지를 위해 사업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며, 참여 시·군과 시행주체, 참여조직간 협력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사업시행주체가 직접 농가를 방문하거나, 시행주체와 참여조직간 회의를 통해 사업추진을 독려하였으나 미흡함.
- 사업지침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와 집행 노력 필요. (지침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특히 광역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사업 집행 점검을 통해 예산집행을 제고 필요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해당실적 없음.
-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함.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인공수분자재 무상공급 : '07년 19백만원 지원, 참다래 맞춤형 퇴비 공동구매 : '07년 20,380포 공급 등 연계 사업 있음.
- 특화 품목인 점을 고려하여 FTA기금사업과 시군 자체 지원의 효과적 연계 방안, 통일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신규과원지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행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였음.
- 보고서류 제출 지연(-2.28점) : 연차평가 실적보고서 제출지연 1일(-1점), 미 제출 0건(-0점), 지연일 132일(-1.32점), 조기일4일(+0.04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다. 성과단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FTA사업 및 참다래사업 전담팀을 기금사업부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5명으로 직원 편성.
- 사업 범위가 넓고 다수 주체를 포함하므로 법인만의 노력이 아닌 행정, 참여주체 간 협력을 통하는 실행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1,063	999	2,457	93.9%
2006년	1,026	990	2,727	96.5%
2007년	1,698	1,609	4,660	94.8%
계	3,787	3,598	9,844	95.0%

- 약정 이행율이 94.8%로 매우 우수함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 연합사업단 실적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2,497	2,470	-1.1%	7,210	9,354	29.7%

- 사업실적은 물량은 감소하였으나,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출하금액은 29.7%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지속적으로 유통규모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7,241	7,210	9,354	29.7%

- 참다래유통사업단법인의 사업실적 규모는 9,354백만원 규모로 단일품목에서 상당한 물량 집중을 달성하였음.
- 납품처 경쟁, 타 수입 과실과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영역이므로 품질관리, 특성화와 함께 규모화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확고히 확보해야 함.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9,354	9,354	100.0%

- 전체 출하량을 모두 공동선별·공동계산을 실시하고 있어 매우 우수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2,497	2,470	-1.1%	7,210	9,354	29.7%

- '06년 대비 '07년 29.7%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유통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실적 증대노력이 필요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공동브랜드로 다래마을, 맛젤 2종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2종 모두 상표등록을 완료함.
- 참다래 상품 인지도는 높으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으므로, 지속적인 이벤트, 시식행사 등으로 브랜드인지도 향상과 소비자 직접 접근을 강화해야 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율(B/A)
사업실적(백만원)	9,354	9,354	100.0%

- 전체 출하량 모두 공동브랜드로 출하되어 우수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C-B)/B
조합원수(명)	1,780	1,669	2,678	60.4%

- 경남 6시군, 전남 1시군 확대로 참여조합원이 60.4% 증가함.

⑨ 기타 사업실적

- 고구마 사업 실적이 15,92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5.2% 증가.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06~'07년 사업참여 농가 및 참다래 재배농가 대상(1,325명) 의견수렴 및 만족도 설문조사 시행.
- 체계적인 설문 항목 구성과 사업 만족도 조사, 개선 의견 조사를 강화하여 연차별 사업 개선에 직접 활용하도록 해야 함.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실적이 없음.
- 행정, 시행주체, 참여조직이 공동으로 자체 평가회를 실시하여 계획, 집행, 성과 단계의 주요 지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도출과 사업 계획 반영 등으로 사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07년 9회 교육에 1,565명 참석. 자조금사업, 재해보험, 참다래산업 발전전략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교육 실시. 강사도 관계분야 전문가 활용 우수.
- 그러나 농가별 교육횟수는 1~2회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농가조직화에는 한계가 있음.
- 향후 농가조직화를 위해서는 농가별 교육횟수 증대 노력 필요.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품질관리 매뉴얼(제정 '07.3.6, 개정 '07.12.19), 환원순환농업에 의한 참다래 재배법 매뉴얼 보유.
- 수매·입고, 선별·정산, 자재관리, 선별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나, 개략적인 내용임이므로 향후 생산부터 유통까지를 포괄하는 브랜드마케팅 매뉴얼로 발전 필요하며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재배매뉴얼로 개선이 필요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격자형 방풍펜스 개발 : 풍동실험 연구(포항공대 이상준 박사팀)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농가비용 부담 절감 실현
- 상반기 및 3/4분기 예산집행을 실적이 인정됨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전반적으로 사업시행주체인 참다래법인은 FTA사업을 통한 고품질생산기반 구축 및 유통사업 기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지도 강함.
- 그러나 사업범위가 넓고, 18개 시군이 참여함으로써 전체적인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참여조직의 사업실적 관리 등은 다소 미흡함.

## 경 상 북 도

23. 경북 경산과수육성사업 .....	397
24. 경북 경주과수육성사업 .....	413
25. 경북 군위·구미사과육성사업 .....	428
26. 경북 김천과수육성사업 .....	443
27. 경북 문경·상주과수육성사업 .....	459
28. 경북 봉화과수육성사업 .....	474
29. 경북 상주과수육성사업 .....	489
30. 경북 성주과수육성사업 .....	506
31. 경북 안동과수육성사업 .....	522
32. 경북 영덕과수육성사업 .....	538
33. 경북 영주과수육성사업 .....	554
34. 경북 영천과수육성사업 .....	569
35. 경북 예천과수육성사업 .....	585
36. 경북 의성과수육성사업 .....	600
37. 경북 청도과수육성사업 .....	615
38. 경북 청송영양과수육성사업 .....	630
39. 경북 칠곡과수육성사업 .....	646
40. 경북 포항과수육성사업 .....	660



23(3-02)	경산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복숭아, 포도 (보조) 자두	선정년도	2007
사업주관기관	경산시	사업시행주체	자인농협
참여시군	경산시		
득점현황	합계 (100)	3등급	
	계획단계(10)	C+	
	집행단계(50)	C+	
	성과단계(40)	D0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경산은 전국 복숭아 생산량의 11% (천도계 70%), 포도 생산량의 7%를 점유하는 대규모 주산지임.
- 시행주체인 자인농협은 관내 과수 50%를 점유하고 있는 합병조합이고, 경산시 공동브랜드인 "옹골찬"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새롭게 품질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FTA기금 생산·유통지원사업은 '07년 생산시설현대화에 총 15억원을 투자하였음.

### □ 핵심성과

-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 구축.
- APC 설치를 통한 유통인프라 구축.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07년 신규사업이지만 당초 선정시에는 시행주체를 연합사업단 →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07년 사업 진행 중에 시행주체를 자인농협으로 변경.
- 자인농협은 경산과수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2개 읍면 합병조합이며, 군특회계 예산으로 APC 건립을 추진 중임.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산 천도계 복숭아는 전국 천도계 복숭아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li> <li>경산 거봉포도는 품질 경쟁력이 있지만 기타 품종은 경쟁력이 낮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인농협과 참여농협간의 연합사업을 통한 천도계 복숭아의 시장 교섭력 제고해야 함.</li> <li>거봉 중심의 포도 마케팅으로 경산과수의 유통경쟁력 제고해야 함.</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합사업단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인농협으로 사업시행주체 변경.</li> <li>자인농협으로 변경되면서 자인농협의 역할이 정상화되지 못함.</li> <li>자인농협은 2개 읍면을 사업권역으로 하는 합병조합으로 조직운영에서 합병조합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첫 사업으로 인해 다소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기에 주관농협인 자인농협과 행정간의 사업추진체계를 안착시키는 것이 필요함.</li> <li>APC 건립과 더불어 2개 사무소의 마케팅인력을 통합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선정시기, 미개시자조사, 중도포기자 조치, 예비대상자 선정 지원 등 예산 집행 전반이 우수함.</li> <li>용자예산 집행에 많은 노력은 했으나 수요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반적인 예산집행, 사업관리는 우수하나 효과적 예산집행 노력이 미흡 : 우수 시공업체 선정, 단가조정, 일괄자재 구매를 통한 사업비 절감 노력 등이 이루어져야 함.</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협경산시지부가 주관한 판매담당자 실무협의회를 통해 FTA사업, APC 운영, 마케팅, 교육을 추진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인농협이 적극적으로 참여농협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경산과수의 대표 유통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3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b>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C+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B0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
	<b>집행단계 소계</b>	<b>50</b>	<b>C+</b>
집 행 단 계  I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b>14</b>	C+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B0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C+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C+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2.0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1.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1.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b>10</b>	C0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60
	③ 출하약정 주체	2	0.50
④ 출하약정기간	1	0.2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0.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3.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A0
	① 예산집행률	10	9.98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A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C+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20
<b>성과단계 소계</b>		<b>40</b>	<b>D0</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C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F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0.00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0.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00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0.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0.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C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0.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0.00
	⑨ 기타 사업실적	1	1.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C+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F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B0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80
	② 교육 횟수	1	1.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B0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F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6.28	
	비계량	C+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B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과수발전협의회가 자문회의를 대체하고 있고 자문회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미흡함.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로 확보하고 자문회의를 정례화해야 함. 전원 참석 회의와 함께 사안별 서면 자문, E-Mail 자문 등 의견 청취통로를 다양화하여 활성화를 추구해야 함.
- 농업인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연초에 개최하였으나, 의견 수렴을 위한 전반적인 활동이 미흡. 농가조직 대표자 간담회, 워크숍,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활동과 사업 개선 반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FTA사업 실무자회의를 구성하여 행정과 시행주체 간 상시적인 회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FTA사업 관련 실무협의 뿐만 아니라 공동브랜드 리뉴얼 및 품질관리방안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이 우수함.
- 지원대상조직간에는 조합장 회의를 상시화하여 연합사업단 운영 및 APC 설립 등에 대한 회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양호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07년 신규사업자로 해당사항 없음.

나. 집행단계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시·군			○	○		◎	
읍·면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합	◎	○	○	○	○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사업시행주체가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하고 있으며 신청서 접수는 참여조합에서 추진함.
- 자인농협이 사업시행주체로 FTA기금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통분야 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사업관리 및 판매관련 지사무소의 인력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② 1,2순위 준수여부

- 1, 2순위 구분 접수 및 평가가 시행되지 않았음.
- 공동선별·공동계산 희망 농가가 적어 구분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공동선별·공동계산은 판매사업의 체계화와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 시스템임.

- 사업 신청 단계부터 1순위로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농가를 구분 접수하고 평가에 우대함으로써 지원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도록 해야 하며, 시행주체 중심으로 공동선별·공동계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정부정책수용성 평가지표가 없으며 유통규모화 및 기타 과수목 수령 등의 지표가 포함되어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한 심사평가표로서 다소 미흡.
- 정부정책수용성 지표를 포함하여 모든 지표를 고루 반영하여야 하며 공동선별, 공동계산 실적 등 계량화 된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심사표 도입과 마케팅사업의 연계방안을 강구해야 함.
- 표준안을 활용하되 지역과 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과 배점을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전체 신청 농가 대비 선정률은 60.7%로 실질적인 심사 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동점자가 22건이나 발생하는 등 순위 부여에 문제가 있으므로 심사표의 변별력을 확대하고, 동점자 처리 기준을 엄밀히 정의/적용하도록 개선해야 함.
- 우선순위 심사는 민원 발생 여지가 있어 주된 관리 영역으로 인식해야 함. 경산은 신청자가 400명 이상으로 많고 선정대상자도 250명이상 많기 때문에 시행주체와 행정의 공동 현장조사와 순위 부여의 객관성이 최대한 확보 되도록 노력해야 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사업대상자를 '06년 12월 28일, 시행 전년말에 조기에 선정하여 양호함.
- 향후에도 대상자 선정뿐 아니라 교부결정, 선정통보 등 관련 행정절차를 조기에 진행하여 영농철 이전에 사업이 개시되도록 해야 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07년 2월(2. 16~2. 28) 참여농협에서 사업대상자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미개시자 조사 및 조치를 시행하여 적절히 처리하였음.

- 참여농협만의 단순 조사에서 탈피, 행정과 참여조직 공동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점검 결과 자료를 명확히 관리하여 사업 집행을 제고에 활용하여야 함.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출하약정서에 표시되어 있으며 중도포기자 20명에 대해서는 3년간 FTA기금 지원 제외를 공지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였음.
- 사업신청서, 교부결정서 상에 명기하여야 하며 중도포기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사항, 시행주체의 사업적 조치사항 등 제재사항에 대한 명확한 고지와 철저한 적용이 필요함.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사업대상자 선정시 예비대상자 (20%, 50명)을 함께 선정하고 공지하였고, 미개시 및 중도포기 물량을 예비대상자에게 자동 지원함으로써 적절하게 처리하였음.
- 다만, 세부 사업별 예비대상자 운용을 보다 철저히 하고, 수요가 많은 세부 사업에 예비대상자 풀을 확대함으로써 추가 선정 등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06년								
'07년	260	260	100	1,310	1,049	80	참여조합	1년
계	260	260	100	1,310	1,049	80	참여조합	1년

- 사업 지원의 전제로 약정체결을 의무화하여 100% 약정 체결하였음.

##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출하약정기준이 재배면적과 지원면적이 동시에 적용되어 혼선이 발생했음. 시행 초기 혼선으로 이해되며, 향후에는 재배면적 생산량 대비 출하약정을 80% 이상으로 명확히 하여 출하약정을 체결해야 함.

## ③ 출하약정 주체

- 사업시행주체는 FTA기금사업 신청 당시 연합사업단이었으며, '07년 출하약정을 참여조합과 체결.
- 참여조합은 실질적 시행주체가 아니며 출하약정은 실질적 주체인 사업시행주체와 체결해야 하며 시행주체를 사업기간 중 변경하였으므로 향후 출하약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시행주체인 자인농협을 약정 당사자로 해야 함.

※ 지역 통합 마케팅 주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 형식적인 연합사업단이 아닌 주관농협 방식으로 시행주체를 설정한 점은 유리한 의사결정이라 판단 되나, 자인농협이 주도적 마케팅 주체로 성장하고, 지역통합적 판매사업 시스템을 구축해 내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됨. 참여조합간 협의를 활성화하고, 출하약정을 실질화하기 위한 사업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④ 출하약정기간

- 출하약정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였으므로 향후 5년 장기출하약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단순약정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출하약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제재방법 및 인센티브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실효성이 낮음.
-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관리를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내용으로 개선하고 규정화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자체 및 사업시행주체의 각종 예산 및 제도를 통하여 출하약정 이행 및 위반 시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 인센티브, 패널티 규정을 마련해야 함.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자재 일괄 구매를 시행하지 않음.
- 사업비 절감을 위해 주요 자재에 대한 일괄 구매를 실시해야 함.
- 현재 농협경산시지부 주관의 포장재 공동구매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시행주체와 참여조합간 협력으로 공동구매 효과가 큰 품목에 대해 주요 자재 일괄구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견적서 징구, 입찰에 의한 가격 비교 등으로 농가 부담 경감과 우수 품질의 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업체 선정, 공지를 시행하지 않았음.
- 기존 과수발전협의회 혹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실무선정위원회를 구성, 업체평가표를 작성하여 업체를 선정, 공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과수발전협의회에서 관정, 비가림시설에 대해 지자체 자체 지원 단가와 동일하게 사업비를 조정하였음.
- 단순한 동일 단가 적용 수준에서 탈피하여, 매년 자재 및 시공단가의 변동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시공과 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① 예산집행률

- 초년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이 99.8%로 우수하고 비가림시설을 중심으로 상반기 집행 실적도 우수하여 조기 집행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됨.
-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가 요망됨.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과원퇴비사	-	-	37.5	37.5	-	17.8	19.5	37.3	-	0.2	99.5%
관수시설(A1)	-	-	30.2	30.2	-	8.9	20.0	28.9	-	1.3	95.7%
관수시설(A2)	-	-	25.1	25.1	-	-	25.1	25.1	-	-	100.0%
관정개발	-	-	111.0	111.0	42.0	42.0	27.0	111.0	-	-	100.0%
비가림시설	-	-	564.2	564.2	497.5	33.5	33.2	564.2	-	-	100.0%
<b>합계</b>	-	-	<b>768.0</b>	<b>768.0</b>	<b>539.5</b>	<b>102.2</b>	<b>124.8</b>	<b>766.5</b>	-	<b>1.5</b>	<b>99.8%</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사업대상자를 상대로 사업추진 교육을 실시하여 노력하였음.
- 단순 교육, 안내에서 탈피, 사업대상 농가별 점검표 관리와 주기적 현장 모니터링 등 예산 집행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용자 의사 및 규모를 파악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용자실적이 없음.
- 용자 규모 파악에 그치지 않고 자금 필요 농가에게 용자예산이 원활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FTA기금지원사업과 연계한 유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APC 설치는 연계 장치로 보기 어려우며, 유통분야에서 생산과 유통을 계열화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미흡함.
- 시행주체 중심으로 규모화와 지역마케팅 통합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재배치와 연계 장치를 강화해야 함.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보고서류 제출 지연(+0.20점) : 미체출 0건(0점), 지연일 8일(-0.08점), 조기일28일(+0.28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다. 성과단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자인농협으로 시행주체를 변경하였으며 자인농협 내에 FTA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겸직의 직원을 업무분장하여 배치함.
- APC가 건립되고 있는 단계이므로, 자인농협 지사무소의 지도 판매 인력을 통합하여 APC를 독립사무소로 개설, 독립회계를 실시하도록 준비해야 함. 독립회계는 판매사업 성과의 명확한 이해와 집중력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물량 구상, 수수료 체계 재편, 공동선별·공동계산 활성화, 내부 조직 재편 등 전반적인 운영 계획 수립이 필요함.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경산과수육성의 실적 파악을 위해 시행주체 변경 전 연합사업 실적과 변경 후 자인농협 실적을 상·하반기로 각기 구분하여 실적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 실적보고서의 기술(記述)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음.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	-	-	%
2006년	-	-	-	%
<b>2007년</b>	<b>1,049</b>	<b>2,242</b>	<b>3,663</b>	<b>214%</b>
계	1,049	2,242	3,663	214%

- 약정량과 비교하여 출하물량이 많아 약정이행율은 매우 높게 표시되었으나, 농가별로 출하약정에 대한 기준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부적정한 수치로서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음.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10,607	12,699	19.7%	19,970	20,410	2.2%

- 출하금액 증가율이 낮은 반면 출하량은 증가하여 대체로 출하 규모가 증가하였음.
- 부적정한 수치로서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음.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17,650	19,970	20,410	2.2%

- 총 사업실적이 200억 이상으로 일정정도 규모화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단순 계통출하실적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고, 시행주체가 출하권 등을 위임받은 주도적인 유통물량(공동선별, 공동계산 등) 규모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부적정한 수치로서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음.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20,410	6,749	33%

-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이 67억원 정도로 규모화 되어 있으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
- 부적정한 수치로서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음.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300	4,214	1,304%	609	6,749	1,008%

- 공동선별, 공동계산 증가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지속적으로 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부적정한 수치로서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음.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7개 지역농협의 공동브랜드인 "옹골찬"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단순 계통출하에 모두 활용되고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미흡.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옹골찬 공동브랜드 리뉴얼과 연계하여, 지역 이미지 확대와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규정 강화 및 APC 중심의 포장재 운영으로 무분별한 사용을 통제해야 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율(B/A)
사업실적(백만원)	20,410	6,749	33%

- 공동브랜드 사업이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부적정한 수치로서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음.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55	105	145	38%

- 공동선별·공동계산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의 증가율이 우수함. 단, 전체 사업 규모와 비교하여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 농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유통형 작목반 육성과 정예농가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함.
- 부적정한 수치로서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음.

## ⑨ 기타 사업실적

- 농자재 및 포장재 공동구매 실적이 '06년 7,325에서 '07년 8,814로 증가율 20.3%임.
- 가공판매품, 농자재 판매사업 등은 우수하나 포장재 공동구매 사업 등은 확대 추진해야 함.

###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사업참여 농가에 대한 전화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개선에 활용한 점은 우수함.
- 보다 체계화되고, 세분화된 설문지를 토대로 만족도 조사를 강화하고 워크숍, 농가대표자 간담회, 워크숍 등 평가와 의견 반영 통로를 다양화하고 차년도 실제 세부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활용하도록 해야 함.

###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실적이 없음.
- 매년말 사업계획에서 종료까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체 연차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정, 시행주체, 참여조직, 농가대표가 참여하는 연차평가회를 실시, 차년도 사업 개선에 활용하는 등 환류체계를 구축해야 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체계화 된 교육을 통해 농가를 조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특히, APC 설치와 더불어 안정적으로 원물조달을 할 수 있도록 농가조직화 교육에 집중해야 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매뉴얼 제작 혹은 보유 실적 없음.
- 재배, 수확후 관리, 유통, 브랜드관리, 농가관리 등에 대한 생산자를 위한 매뉴얼과 유통담당자를 위한 매뉴얼을 구분 제작, 보급하여 브랜드 마케팅의 기초를 다지도록 노력해야 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보조금 회수 1건 : 관수관비시설 사업대상자가 신규과원을 조성하여 보조금 회수 조치 시행.
- 상반기 및 3/4분기 예산 조기집행을 실적이 인정됨.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사업담당자의 사업의지는 강하나 참여조직(농협) 참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므로 지역 과수산업 통합 마케팅을 위한 노력이 추가로 필요함.

24(5-03)	경주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사과, 배 (보조) 양앵두	선정년도	2006
사업주관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사업시행주체	대구경북농금 경주지점
참여시군	경주시		
득점현황	합계 (100)	4등급	
	계획단계(10)	C+	
	집행단계(50)	D+	
	성과단계(40)	D+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대구경북농금농협 경주지점은 경주시 관내를 사업권역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사과와 배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전체농가 중 80% 이상이 가입.
- 농협연합사업단에서 APC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과 부문은 기간 중에 임가공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 핵심성과

-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과수산업 경쟁력 향상.
- 경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통한 브랜드 경쟁력 확보.
- GABA 기능성 사과 개발로 고가격 수도권 시장 진출 가능성 확보.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07년에 경주농협연합사업단에서 대구경북농금농협 경주지점으로 시행주체를 변경하였음.
- 경주시 APC 운영은 농협연합사업단이 담당하고, 대구경북농금농협 경주지점은 참여조직임.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과, 배가 주요 과수 생산 품목이나 주산지역에 비해 생산규모는 적은 편임.</li> <li>사과, 배의 생산규모에 비해 시행주체의 취급규모는 크지 않은 편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주체가 경주시 과수산업 전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li> <li>상품화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함.</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구경북농협과 행정간 FTA 사업 관련 업무협약이 미흡한 편임</li> <li>각종 생산시설, 브랜드 등의 시설 및 제도 기반은 잘 마련되어 있으나 시행주체는 상품화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못함.</li> <li>FTA 전담인력의 배치는 양호하나 전반적인 주도성은 미흡</li> <li>FTA대상농가를 정예농가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주체가 품목농협으로 단순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합사업단 체계의 주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 사업 전반을 주도하여야 함</li> <li>FTA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협의 체계 구축</li> <li>시행주체와 참여조직간 업무협조 체계 정비 및 FTA 대상농가 대상의 생산-유통 계열화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집행율은 88%로 다소 미흡</li> <li>상반기 예산집행실적은 50% 이상을 조기 집행할 정도로 우수함</li> <li>사업대상 선정 방법 및 시기가 모두 농식품부의 지침과 거리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집행율 개선을 위한 농가설명회 및 사업시스템 구축</li> <li>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마케팅적 접근을 통하여 농가실익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판매사업 정비</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사업운영은 대구경북농협에서 담당하고 APC는 경주연합사업단에서 담당하여 이원화된 사업운영</li> <li>사과 출하시기에 APC 품목 중복으로 사과 선별에 애로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주체와 참여조직간 체계적 협력 체계 구축 및 공동마케팅 추진이 필요함</li> <li>APC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확보</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4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C+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C+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D+</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F</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B0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C+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C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1.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0.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B+</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60	
③ 출하약정 주체	2	2.00	
④ 출하약정기간	1	1.0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1.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0.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B0
	① 예산집행률	10	8.75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C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C+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0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0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1.03	
<b>성과단계 소계</b>		<b>40</b>	<b>D+</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C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F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1.14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0.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39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0.44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1.19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B+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1.56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1.50
	⑨ 기타 사업실적	1	0.87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C+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D0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C0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15
	② 교육 횟수	1	1.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C+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B0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0.34	
	비계량	C0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C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과수발전협의회가 자문회의를 대체하고 있으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과수산업 발전을 위한 자문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으며 과수발전협의회에서 사업심의, 의결 기능 수행.
-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을 위하여 수요조사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한 실적은 우수함.
- 전반적으로 자문회의를 통해 단순 심의, 의결기능에서 벗어나 지역과수산업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실질적인 자문기능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요 분야 전문가 참여를 추진하고, 회의 및 E-Mail, 서면자문 등 의견 청취통로를 다양화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야 함.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행정과 시행주체간 4회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FTA사업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품목별 작목반 활성화 및 조직화를 위한 회의를 실시하는 등의 실적은 양호함.
- 다만 행정과 시행주체의 경우 FTA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과수산업 전반에 대한 혁신계획을 공유하고 있지 못함.
- 사업시행주체와 참여조직간 회의 실적이 부재하여 시행주체가 참여조직을 리드하지 못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계를 정비하고 행정, 시행주체, 참여조직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정립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명확화와 조직간 협력을 강화해야 함.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평가·점검결과 중 전체적으로는 개선노력이 양호하나 시공업체 선정 및 1,2 순위 구분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나. 집행단계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시·군		○	○	○		◎	
읍·면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합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사업시행주체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참여조직과 연계되지 않고 대구경북능금 단독 사업으로 운영.
- 사업시행주체가 적극적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되, 참여조합,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조직간 협력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함.

## ② 1,2순위 준수여부

- 1,2순위를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 및 평가를 수행지 않았음.
- 1, 2순위 구분은 지원과 출하를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신청단계부터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농가를 1순위를 구분하여 분리·평가함으로써 농가조직화 및 유통규모화를 위한 확고한 기반마련이 필요하며 농가참여도 제고와 책임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행주체 판매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06년 연차평가 이후 우선순위 심사표 사용에 대한 지적을 받은 이후 '07년 사업대상자의 경우 선정 이후 사후에 농식품부 표준안 우선순위심사표를 적용하였음.
- 정부정책수용성, 유통규모화 촉진, 지역특성반영 지표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구간별로 계량화된 실적과 연동되어 있음.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전체 신청 농가 대비 선정률은 80%이지만 사업비가 남는 상황으로 변별력이 매우 미흡함.
- 심사결과를 보면 전 접수대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30점 미만의 사업대상자까지도 선정되어 이에 대한 제재방안이 필요.
- 향후 우선순위 심사 시 지역여건에 맞게 표준심사표를 수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하위권 농가는 사업비가 남더라도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하여야 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사업대상자를 '07년 3월(3. 15)에 최종 선정하는 등 전반적인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 영농철과 중복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음
- 사업대상자는 전년도 12월 이전에 선정하고, 1월에 보조금교부결정과 통보를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조기에 완료하여 상반기 내 조기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함.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07년에는 미개시자가 없었으나 향후 미개시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조금 결정 이후 미개시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를 농가들에게 공지하여야 함.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제재사항이 출하약정서에 표시되어 있으며 중도포기자 2명에 대해서는 3년간 FTA기금 지원 제외 실시.
- 출하약정서 뿐만 아니라 사업신청서, 보조금교부결정서에 동 사항을 명기하고 농가들에게 중도포기 시 발생하는 불이익사항에 대해 공지하여야 함.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음.
- 예비대상자를 20% 수준에서 선정하여 미개시나 중도포기로 인한 사업포기 발생시 차순위자에게 배정하고 사업물량 초과시 익년도 사업대상 선정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미 선정된 예비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06년	103	103	100	1,431	795.2	55.6	능금농협 경주지점	1
'07년	47	47	100	379.2	304.3	80.2	"	5
계	150	150	100	1,810.2	1,099.5	60.7		

- 사업대상 전농가가 출하약정을 체결하여 양호함.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생산량대비 출하약정량을 80%이상으로 운영하였으며, '07년 80.2%에 해당.

③ 출하약정 주체

- 시행주체인 대구경북농협농협 경주지점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였음.

④ 출하약정기간

- 출하약정기간은 5년으로 명시하여 장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정함.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출하약정서 상에 향후 3년간 FTA기금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브랜드 사용권이 배제됨을 명시.
- 인센티브 내역이 있으나 통상적인 지원사업으로 보여 차별화된 인센티브 및 페널티 규정을 명시해야 함.
- 인센티브 및 페널티 내용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주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금을 차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농가들에게 명확하게 공지하여야 함.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자재일괄 구매 추진 실적이 없음.
- 시행주체 중심으로 지역 수요가 많고, 공동구매가 큰 품목에 대해 일괄구매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견적서 징구와 입찰에 의한 가격비교, 품질관리 조건 요구 등 공동구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과수발전협의회에서 업체 선정을 하였으나, 서면심사 후 전체 업체 선정.
- 시공업체 선정 시 업체에 대한 공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며 반드시 연말에 시공에 대한 품질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품질만족도가 낮거나 시공에 불만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부여되어야 함.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 실적이 없음.
- 단가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평균의 사업단가와 사업 메뉴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관계자가 참여하는 단가 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세부 시설 기준과 단가를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 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60	70	130	38	70	22	130			100%
기타사업		360	203	563	295	93	89	477	86		85%
합계		420	273	693	333	163	111	607	86		88%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예산 집행률은 88%로 다소 미흡하나 상반기 집행 실적이 우수하여 조기 집행 노력이 인정됨.
-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 강화, 농가 인식 제고 등 보다 체계화된 노력을 기울여야 함.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사업대상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주의사항을 교육하였으나 실질적인 제고 노력은 보이지 않음.
- 사업대상농가 확보를 위한 홍보 노력이 필요하며 미개시 및 중도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점검회의, 사업별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한 사업추진 진도 파악 등 사업관리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사업신청 시 용자희망여부를 파악하고 있고 사전 신용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대한 조기대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양호함.
- 용자예산의 경우 사업신청 단계에서부터 희망농가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자 소요 규모를 신청단계부터 파악할 수 있는 업무 체계를 갖추어야 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APC 참여농가에 대한 우선지원을 토대로 하여 각종 지자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양호함.
- 우선지원 뿐만 아니라 FTA사업 대상농가와 연계한 시책을 발굴하여 정예농가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농식품부 등 기관의 점검 지적사항 미이행 없음.
-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및 제출 후 수정, 허위사실 기재 없음.
- 보고서류 제출지연(-1.03점) : 미제출 1건(-1점), 보고지연일 17일(-0.17점), 조기일 14일(+0.14점)
- 미제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및 관계자의 관심이 필요하고,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대구경북능금농협으로 시행주체를 변경하였으며 사업담당 직원이 FTA기금 사업을 겸직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는 FTA사업 시행주체인 능금농협 경주지점과 마케팅 사업 주체인 연합사업단(APC운영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음.

- 지역 대표 조직간 역할 분담과 판매·마케팅 연계 강화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시행주체가 참여조합을 대상으로 FTA사업을 리드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
2006년	795.2	235	411.1	29.5%
<b>2007년</b>	<b>304.3</b>	<b>115.7</b>	<b>161.1</b>	<b>38.0%</b>
계	1,099.5	350.7	572.2	32.0%

- 출하약정이행율이 38%로 전년보다 다소 개선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출하약정이행률이 매우 떨어지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996.3	971	-2.5%	1,703.8	1,285.6	-24.5%

- 취급물량 및 취급액이 감소하였음.
- 지역 내 판매사업 규모화를 위한 사업 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경주지점의 판매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공동선별·공동계산 등 체계화된 판매사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1,932.5	1,703.8	1,285.6	-24.5%

- '06년 대비 '07년 총 사업 실적이 크게 감소하였고, 사업규모도 영세하므로 향후 시행주체의 사업실적이 대폭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1,285.6	435.3	34%

-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이 전체 실적의 34%에 지나지 않아 향후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의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170	176.4	0.6%	303.9	435.3	43.2%

-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증가율은 대폭 개선되었으나 취급액 규모가 크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필요.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경주시 공동브랜드인 '이사금'이 개발되어 있으며 경주시 APC를 이용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만 공동브랜드 활용하고 있어 브랜드 관리 체계는 우수함.
- 능금농협에서는 사과 품목에 한해 APC를 공동 이용하고 '이사금'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어 양호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 율(B/A)
사업실적(백만원)	1,285.6	670.1	52.1%

- 공동브랜드 활용 실적이 52.1%로 보다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를 통해 활용 실적 증대가 요구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50	55	10%

- 사업 규모에 비해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수가 매우 적어 개선이 필요함.
- 유통규모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사업확대 및 지속적 교육사업운영이 필요하며 정예농가 위주로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수를 확대해야 함.

⑨ 기타 사업실적

- '07년에 학교급식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도입하였으나 규모는 미미함.
- 농자재 판매실적의 경우 20% 이상 증가하였음.
- 농가의 소득 증대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07년 중반기에 사업대상농가를 대상으로 전화조사 및 직접면담을 통하여 만족도 등 모니터링 실시.
- '07년 하반기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방풍망, 키낮은사과원 등 다양한 사업을 익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양호함.
- '08년 사업 추진에 있어 FTA사업 만족도 뿐만 아니라 자재 및 시공업체 품질만족도를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대책회의를 중도 실시하였으나 환류체계 구축으로 보기 어려움.
- FTA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매년 목표에 따른 지표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자체 평가가 어려울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음.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농금농협에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기술 및 유통교육을 8회에 걸쳐 약 295명을 대상으로 추진.
- 교육횟수는 양호한 편이며 교육을 통하여 GABA 기능성 사과작목반을 집중 육성하는 등의 교육내용은 우수함.
- FTA사업 대상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정예농가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추가 도입이 필요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GABA 재배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음
- '이사금' 및 GABA 브랜드의 품질관리에 해당 재배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매뉴얼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기능성 GABA 사과 육성을 통한 수도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음.
- 향후에도 총 사업 실적의 규모화 된 경영 및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FTA사업과 APC의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계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함.
- 행정과 시행주체의 사업추진의지가 미흡한 편이므로, 전반적인 사업추진 개념과 필요성, 성과 향상을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25(4-04)

군위·구미사과육성사업

지원품목	(주) 사과 (보조) 자두	선정년도	2006
사업주관기관	군위군	사업시행주체	대구경북농협농협 군위지소
참여시군	군위군, 구미시		
득점현황	합계(100)	4등급	
	계획단계(10)	C0	
	집행단계(50)	D+	
	성과단계(40)	D0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동 사업은 군위군, 구미시의 연합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역사업으로 군위군이 주관이 되고, 대구경북농협농협 군위지소가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품목 사과, 부품목 자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
- 지역내 사과재배농가는 군위군 1,006농가(재배면적 815ha, 생산량은 13,041톤), 구미시 230농가(재배면적150ha, 생산량은 1,800톤)임.

### □ 핵심성과

-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고품질 사과 생산기술 및 친환경과실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e로운' 브랜드를 활용하여 유통계열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사업시행주체인 대구경북농협농협 군위지소의 경우 전체 인력이 5명에 불과하고 유통사업을 위한 기반(유통시설, 농가조직 등)이 취약한 실정임.
- 관내 농협유통센터 선별시설과 인근 의성군 거점APC 등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의 성과를 유통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노력이 요구됨.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변화에 따른 사과산지이동 현상에 따라 군위군 관내 사과재배면적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li> <li>'이로운' 브랜드를 활용한 사과상품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상품화 시설 부족, 농가조직화 미흡 등으로 성과 부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배면적 축소를 구조조정의 기회로 활용하여 고품질 사과 생산 농가 중심의 정예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li> <li>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지자체 지원을 조직화된 농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사업추진의 연속성이 떨어짐</li> <li>군위군과 구미시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구축이 미흡하고, 사업시행주체인 대구경북능금 군위지소의 사업역량 미흡</li> <li>현재 군위지소의 사업담당자 1명이 지도업무 등 타 업무와 FTA 기금사업 관리를 겸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추진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구되며, 사업담당자 교체시 철저한 업무인수인계 필요</li> <li>사업시행주체인 군위지소 전담인력 배치가 요구됨</li> <li>행정과의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구축을 통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집행률은 78.8%로 다소 낮은 편임</li> <li>불용예산이 133백만원으로 전체 계획예산 735백만원의 18%에 해당하고 있음</li> <li>잦은 담당자 교체로 인해 실제 사업지도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금 교부결정을 적기 내 시행하고 정기적인 예산집행을 점검 회의를 통하여 농가들이 기간 내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됨.</li> <li>이를 위한 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체계 구축이 요구됨</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미시와 군위군의 사업이 별도로 진행되고 업무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함</li> <li>주관시군인 군위군과 시행주체인 군위지점을 통한 사업통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위군과 구미시, 대구경북능금 군위지소와 구미사업소간 긴밀한 업무협약의 역할분담이 요구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4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0</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D0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C+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D0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D+</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C0</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C+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C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D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2.0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1.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D+</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14	
③ 출하약정 주체	2	0.50	
④ 출하약정기간	1	0.2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D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1.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1.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2.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C0
	① 예산집행률	10	7.82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D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D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D0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D0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61	
<b>성과단계 소계</b>		<b>40</b>	<b>D0</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C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F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0.21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1.8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56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0.35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2.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C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0.57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3.00
	⑨ 기타 사업실적	1	0.58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C0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D0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C+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40
	② 교육 횟수	1	1.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C+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F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0.09	
	비계량	F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D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자문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나, 구미시와 군위군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통합관리가 안되고 있음.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획단계 사업 수요 및 의견 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업 전반의 내실을 기해야 하며 특정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개별면담, 전화,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을 2회 실시하였으나 다소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음.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농가의견수렴 절차를 도입해야 할 것임.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지원대상조직간 또는 행정조직간 별도의 협의는 없었으나, 행정과 사업시행주체간 협의 시 사업시행주체, 참여조직, 참여시군이 모두 참석하여 관련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음.
- 회의추진실적은 인정되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회의라기 보다 통상적 회의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회의 및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과수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 모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협의노력이 요구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주관시군 담당자가 교체되고, 업무이관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개선실적이 미흡함.
- 1, 2순위 구분, 동점자 처리기준 등이 '08년 사업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나. 집행단계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경상북도				○			
군위군,구미시		○	○	○	○	◎	
읍·면	○						
사업시행주체	◎	◎	◎	◎	◎	○	
참여조합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사업시행주체가 신청서 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 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구미시의 경우 별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에서의 다양한 기능을 대구경북농업농협 구미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음.
- 그러나 총괄적인 계획수립에서부터 집행까지 모든 업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시행주체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시행주체가 적극적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되 참여조합,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조직간 협력 및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함.

## ② 1,2순위 준수여부

- 1, 2순위 구분 없이 사업신청을 받고 심사평가를 진행함.
- 1, 2순위의 구분은 사업에 지원하는 농가와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를 연계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지역통합과 협력적 농가조직화를 위한 연계 방안으로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적합한 구분 방안을 마련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정부정책수용성, 유통규모화 촉진, 지역특성반영 지표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구간별로 계량화된 실적과 연동되어 있음.
- 다만, 심사항목 중 농가의 노력여부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항목(예를 들어 연령, 과원규모 등)의 배점 비중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고 사업지원을 위해 의무조항인 출하약정 체결을 점수에 반영하고 있는 점 등은 보완이 필요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71~80점대가 36.4%, 61~70점대가 30.8%가 집중되어 있어 변별력이 크지 않으며, 동점자 처리기준이 심사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표준양식을 적용하되 지역 및 품목 여건에 적합하도록 항목과 배점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점자 발생에 대비하여 실적 등과 연계하여 점수를 차등 부여할 필요가 있음.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06년 12월 13일 가선정이 완료되었으며 '07년 1월 4일 군에서 개별농가에 통지하고 사업대상자 설명회를 동년 2월에 개최하여 적절한 시기에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경과 시점인 '07년 2월 미개시자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미개시자 일제조사를 유선 상으로만 실시하여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해당 미개시자에 대하여 사업독려 및 포기서 징구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총 6명의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여 사업포기각서를 받고 차순위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적절하게 처리하였음.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후순위자를 별도 관리하여 선 순위자 사업포기 시 후순위자를 자동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향후 예비대상자 선정시에는 미 선정된 예비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예측성을 높여야 함.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 원 농가수 (A)	약 정 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6년	114	114	100	1,824	1,163	63.8	능금농협 군위지소	5년
'07년	104	104	100	1,664	952	57.2	능금농협 군위지소	5년
계	218	218	100	3,488	2,115	60.6	-	

- 사업신청시 출하약정서를 체결하고 있어 지원농가의 100%가 출하약정을 체결하였음.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군위APC 이용 협약(약정)서상 생산한 과실의 50%이상을 의무 출하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출하약정물량 비율이 57.2%에 그치고 있음
- 농식품부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80%이상으로 협약서 내용을 바꾸어야 하며, 동시에 지원사업과 출하약정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행주체 중심의 사업 규모화에 적극 활용해야 함.

### ③ 출하약정 주체

- 출하약정 주체가 군위지소와 구미지소로 별도 구분되어 있으며, 일원화되어 있지 않음.
- 시행주체인 대구경북농협농업협동조합 군위지소가 출하약정을 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일원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④ 출하약정기간

- 약정서상에 별도 약정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나 유통규모화를 위해서는 출하약정 물량을 5개년에 걸쳐 표시하도록 양식화하고, 5년간 적용됨을 문구로 표시할 필요가 있음.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약정서상 제 7조에 '위반시에는 각종 지원중단은 물론 APC이용을 금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나 실제 제재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하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과 실적이 없음.
- 적극적인 사업추진의지를 전제로 관련사항을 명문화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APC 이용과 관련해서는 단순 출하에서 탈피하고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이 필요함.

##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철재, 파이프 등 키낮은 과원조성 및 IPM단지조성용 자재 공동구매 실적이 있으며 130백만원 정도에 이룸.
- 향후에도 수요가 많고 공동구매 효과가 큰 품목에 대하여 일괄구매 추진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검토하여 다소 미흡.
- 선정위원회 혹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업체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표에 의거하여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별도의 단가조정위원회는 없었으며, 실무자 회의에서 단가 조정함
-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회의를 통해 세부 지원사업 별 단가 검토 및 적정한 시설 기준 여부 검토,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	368.3	90.5	458.8	202.7	53	91	346.7	22.5	89.6	75.6%
기타사업	-	-	275.8	275.8	45.8	36.7	149.7	232.2	-	43.5	84.2%
<b>합계</b>		<b>368.3</b>	<b>366.3</b>	<b>734.6</b>	<b>248.5</b>	<b>89.7</b>	<b>240.7</b>	<b>578.9</b>	<b>22.5</b>	<b>133.1</b>	<b>78.8%</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예산집행률이 78.8%로 예산집행노력이 미흡하고 불용예산이 발생하였음.
- 보다 체계화되고 강도 높은 예산집행 관리 노력으로 예산집행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행정차원에서 사업시행 독려를 위한 문서시달과 유선독려 정도에 그치고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을 적기 내 시행하고 정기적인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통하여 농가들이 기간 내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적극적 독려노력이 요구됨.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행정차원에서의 사업시행 독려를 위해 문서 시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사업집행 노력이 요구됨



- 용자 소요 규모를 신청단계부터 사전 파악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산 활용에 대한 홍보 등 사전 농가 설명회 등 농가 이해도 향상을 통한 집행율 제고 관리가 필요함.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반사필름, 전기목책기,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유기질 비료, 곤충포집기, 부직포 등 대부분의 사업이 FTA기금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기금사업에 참여하고 유통계열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에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해당 사항 없음.
- 보고서류 제출지연(+0.61점) : 미제출 0건(-0점), 보고지연일 6일(-0.06점), 조기일 67일(+0.67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다. 성과단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지도업무 등 일상업무를 겸하면서 업무분장 상 FTA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추진팀을 구성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6년	5,163	117	190	2.3%
2007년	952	66	98	6.9%
계	6,115	183	288	3.0%

- 출하약정 이행률이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대구경북능금농협 군위지소의 유통사업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출하약정이 형식적으로 체결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군위지소의 경우 관련 산지유통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근 APC(농협군위유통 APC)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물량해소를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작용함.
- 농협군위유통과의 상시적 협의를 통해 APC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문서화된 출하약정을 체결하여 보다 명확한 출하물량 파악과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됨.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893	1,001	12.1%	1,668	1,867	11.9%

- 절대금액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출하량 12.1%, 출하금액 11.9%의 실적으로 출하증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1,620	1,668	1,867	11.9%

- '06년 대비 '07년 사업실적이 11.9% 증가하였으나 사업규모가 영세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④ 사업조직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사업실적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1,867	352	18.9%

- 공동선별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352백만원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을 올렸으나 실적이 매우 적으므로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됨

- 공동선별·공동계산 규모 매우 적기 때문에 정예농가조직 육성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 시스템을 확립하여 사업 활성화를 추진해야 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74	188	154.1%	138	352	155.1%

- '06년 대비 '07년 실적이 155% 증가하여 유통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서의 노력이 인정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주체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브랜드가 아님.
- 또한 농가개별단위로 박스가 지원 되고 개별선별이 대부분이어서 실질적 품질관리가 되는 물량이라고 보기 힘들.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율(B/A)
사업실적(백만원)	1,001	352	35.2%

- 농협에서 실질적 브랜드관리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집계가 어려운 상황임.
- 즉 농가에서 공동브랜드 박스에 담아 출하하는 물량을 거래처를 구분하거나 별도 기표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집계가 어려움.
- 향후 '이로운'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행정의 지원을 집중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 (군위,구미)	225	270	358	32.6%

- 전체 조합원이 아닌 실제 FTA기금사업을 지원받은 농가 중 출하실적이 있는 농가수만 기재한 수치로 32.6%의 신장율을 기록함.
- 단순한 물량확대가 아닌 조직화 된 농가를 육성하여 안정적 브랜드 마케팅 사업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을 확대해야 함.

### ⑨ 기타 사업실적

- 기타 사업실적이 적은 편이며, '06년 2,304백만원에서 '07년 2,570백만원으로 12% 증가함.
- 농가 소득 증대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한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사업확대가 필요함.

###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으나, 다소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 설문 조사를 사업에 반영한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음.
- 설문지 설계 및 분석,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시행 성과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 개선과 성과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실적이 없음.
- 자체적인 평가지표 개발을 통하여 FTA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행정, 시행주체, 참여조직이 공동으로 자체 평가회를 실시하여 계획, 성과 단계의 주요 지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도출과 사업 계획 반영 등으로 사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교육횟수 15회, 교육인원 796명 등 비교적 교육 실적이 양호하지만 체계적인 농가교육이 아닌 통상적 품목농협에서 실시하는 분기별 현장강습중심의 교육이며, 대부분 기술교육에 치우쳐 있음.

- 향후 유통규모화를 촉진하고 농가조직화에 도움이 되는 유통관련 교육 및 의식개혁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매뉴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재배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며 품질관리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확 후 관리, 저장, 유통 등 매뉴얼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상반기 및 3/4분기 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인정됨.
- 전반적인 사업성과가 미흡하므로 총 사업 실적의 규모화 된 경영 및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행정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이관이 제대로 안되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시행주체의 사업추진 역량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군위군과 구미시가 자문단 구성에서부터 사업신청, 보고서 제출, 약정 물량 출하 등에 있어 별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통합관리가 필요함.
- 또한 초기 구상했던 출하량 확대 및 유통규모화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므로 농협군위유통(주) APC의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26(4-10)	김천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포도 (보조) 자두, 사과, 배, 복숭아	선정년도	2004
사업주관기관	경북 김천시	사업시행주체	남면농협
참여시군	김천시		
득점현황	합계(100)	2등급	
	계획단계(10)	C+	
	집행단계(50)	B0	
	성과단계(40)	B0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김천은 포도, 자두의 전국적 주산지로서 생산량은 전국 2~3위권임.
- 김천시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은 '04년 선정되었으며, 사업범위는 김천시 전역이며, 사업시행주체가 연합사업단에서 남면농협으로 전환됨.
- 참여조직은 11개 농협이며, 품목도 포도, 복숭아, 사과임. 사과사업은 협약에 의해 경북농협 김천지소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음.
- '04~'06년까지 총 11,508백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됨.

### □ 핵심성과

- 고품질·안전과실 생산 기반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의 집중지원 및 생산시설의 현대화 추진으로 품질경쟁력 향상에 기여.
- 고품질의 안정된 과실생산 기반조성 및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
- 지역내 유통사업이 가장 우수한 남면농협을 사업시행주체로 선정. 사업의 실행효과 극대화 기반 창출.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관내 12개 농협이 참여하는 김천시 농협연합사업단이 법인화를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여 사업시행주체가 유통사업기반과 인력풀이 갖추어진 남면농협으로 전환되었음.
- 관내 유통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여러 농협들의 자금집행 및 관리에서의 역할분담과 브랜드통일 및 유통규모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됨.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수 주산지인 김천은 포도가 전국 2~3위권, 자두는 1~2위권의 생산규모 보유</li> <li>포도는 전국에서 가장 빨리 출하하기 위한 무리한 조치가 오히려 품질 하락으로 이어져 부정적 이미지 발생. 캠벨 중심 생산.</li> <li>자두와 사과는 품질관리 및 브랜드화가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생산시설현대화 및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지속적으로 확충 필요</li> <li>포도는 고품질화를 통해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신 및 이미지 탈피 필요</li> <li>자두와 사과는 품질관리, 상품화 강화를 통한 브랜드화 추진 필요</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등 업무 추진 체계가 행정위주로 편재</li> <li>새로 선정된 시행주체인 남면농협과 참여조직간 역할분담 체계 불명확.</li> <li>FTA사업에 대한 행정과 시행주체 공동의 내부 점검체계 미흡</li> <li>시행주체의 FTA사업 전담부서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계를 재정비하고 행정, 시행주체, 참여조직의 역할에 대해 재정립함으로써 조직간 협력을 강화해야 함.</li> <li>새로 선정된 시행주체인 남면농협의 전담부서 설치 등 보다 적극적인 의지 필요</li> <li>FTA사업 담당자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선진사례 습득 및 사업체계 조기 안정화 필요</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집행을 83%로 저조. 특히 불용예산 전체 예산의 17%인 469백만원 발생.</li> <li>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행정, 참여조직의 유기적 협조 및 관리감독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과 참여조직간 유기적 협조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예산집행을 제고</li> <li>선정농가의 사업조기 추진 및 미착공 농가에 대한 신속한 조치 단행 필요</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조합별 출하약정 이행을 위한 농가관리 및 독려가 미흡하고 시행주체인 남면농협과 참여조직간의 실질적 협력체계 미흡</li> <li>품질관리 매뉴얼 작성 등 고품질 농산물의 체계적 생산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조합별로 출하약정 농가에 대한 관리 및 사업참여 독려 강화 필요</li> <li>남면농협 중심의 실질적 연합사업 추진 체계 구축 필요</li> <li>품질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품질관리체계 구축필요</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2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C+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C0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B0</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B0</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C+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C+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C+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2.0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1.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B0</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75	
③ 출하약정 주체	2	2.00	
④ 출하약정기간	1	0.2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D+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1.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1.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3.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C+
	① 예산집행률	10	8.27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C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C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B+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B+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97	
<b>성과단계 소계</b>		<b>40</b>	<b>B0</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C+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C+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2.63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1.63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1.82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2.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0.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C+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2.08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3.00
	⑨ 기타 사업실적	1	1.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B0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C+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B0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1.00
	② 교육 횟수	1	1.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C+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D0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2.28	
	비계량	B+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C+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07년 자문회의는 2회 개최하였으며, 농가 의견수렴은 설문조사 및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실시.
- 그러나 자문회의, 실무위원회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FTA사업 전반에 대한 결친 평가 및 의견수렴 활동은 미흡함.
- 향후 자문회의 및 농가의견수렴 과정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특정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개별면담, 전화,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사업대상조직과 행정의 협의, 사업대상조직간 협의 모두 사업내용의 내실화 보다는 형식적 절차 위주로 진행.
- 향후에는 FTA사업이 김천시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사업추진 상황 점검 회의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계를 재정비하고 행정, 시행주체, 참여조직의 역할에 대해 재정립함으로써 조직간 협력을 강화해야 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07년 연차평가 보완 지적사항 가운데 자문회의 강화, 농업인 의견수렴 강화 및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정산주체의 변경, 우선순위 심사표 및 약정서 보완 등은 개선됨.
- 그러나 사업실적 100억원 달성, 조합원의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지자체 연계사업 강화, 공동브랜드 활성화 방안 등은 개선 조치가 미흡함.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	
시·군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합	○	○	○	○	○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현재는 김천시가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을 주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사업시행주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약하고, 주체별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읍·면의 역할도 미흡함.
-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역할분담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재설정 할 필요가 있으며 읍·면의 기능도 적절하게 활용하여 조직간 협력을 유도해야 함.

#### ② 1,2순위 준수여부

- 1, 2순위 구분 없이 사업신청과 심사가 이루어짐.
- 1, 2순위 구분은 사업에 지원하는 농가와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를 연계 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지역통합과 협력적 농가조직화 를 위한 연계방안으로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접수단계에서부터 1, 2순위를 구분하여 평가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전체적으로 공동계산조직 여부, 수출 및 친환경, 재해보험, 농협출하실적, 유통형작목반 여부, 연령 등 정부정책의 수용성과 규모화 촉진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나, 배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향후 정책수용성과 규모화 촉진 부문의 각 항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GAP 등 품질관리 지표 강화 및 배점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계량화된 실적과 세밀하게 연동될 수 있는 심사표로 개선해야 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우선순위 심사 결과 점수대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동점자 처리 기준은 우선순위 평가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상자 선정 협의회에서 '재배면적'으로 처리기준 마련.
- 동점자 처리기준을 사업신청서에 명시하고, 사업신청 대상농업인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조치 필요.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김천시는 '06년 11월까지 사업신청 접수와 현장조사를 통한 우선순위 심사를 완료하고 동년 12월 김천과수산업육성실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여 정상적 시기에 사업이 추진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3월~6월(3. 30-6. 30)까지 지속적으로 미개시자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 독려 및 장기 미개시자에 대해서는 직권제외, 3년간 FTA사업 배제 등 강력한 제재조치 실행.
- 전체적으로 선정농가 비율이 26.7%에 불과한 상황에서 관망 또는 장기 미개시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바람직함.

###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중도포기자에 대해서는 사업포기 각서 징구하고, 향후 3년간 FTA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적절하게 조치하였음.
- 중도포기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신청시 농가들이 사업비, 실행 가능성 등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신청하도록 지도·지원 필요.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예비대상자 50명을 선정하여 결원 발생시 차순위자 선정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후순위자 18명을 추가 선정한 사실을 확인함.
- 향후 미지원 된 예비 대상자를 다음 연도에 우선 지원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 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 정 주 체	④ 약 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394	394	100	2,015	1,915	95.0	연합사업단	1년
'06년	532	532	100	2,729	2,410	88.3	연합사업단	1년
'07년	199	199	100	3,735	3,271	87.6	연합사업단	1년

- 약정을 체결한 농가 100%로 사업지원농가는 의무적으로 출하약정을 체결 하도록 한 점은 우수함.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실제 약정율은 87.6%로 우수함.

③ 출하약정 주체

- 약정주체는 출하약정 체결당시 사업시행주체인 농협연합사업단(농협김천시 지부)으로 일원화 되어 있음.
- 시행주체가 변경되었으므로 적절한 업무 이관과 역할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출하약정은 '08년 사업 추진 중에 갱신하여 실질적인 출하약정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해야 함.

④ 출하약정기간

- 약정서에 약정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향후 5년 이상 장기 출하약정을 할 수 있도록 명기하여야 하며 또한 실질 적 출하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 지도가 필요함.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약정 불이행시(FTA사업 중도포기 포함) FTA 관련 사업 3년간 지원 배제, 농업종합자금대출 제한.
- 출하약정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실적이 없으며 제재조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지자체 및 사업시행주체가 가지고 있는 각종 예산 및 제도를 통하여 출하약정 이행 및 위반 시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 패널티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능금농협 김천지소에서 사과 방조망을 일괄구매하여 비용절감 도모하였으나, 관련 협의, 비교견적 접수를 통한 평가 등 투명성제고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미흡했음.
- 향후 견적서 징구와 입찰에 의한 가격비교, 품질관리 조건 요구 등 실질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참여조합 추천업체 15개소를 김천시 홈페이지, 시정소직지 등을 통해 공지.
- 그러나 일정 기준에 의한 심사 절차는 없었음.
- 향후 시공업체 선정기준에 의해 심사포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업체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비교 견적, 시공 능력 평가 등을 통해 농가 만족도 제고 필요.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포도비가림 시설에 대하여 김천과수산업육성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단가 조정을 수행하였음.

##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110	58	168	46	15	41	102		66	60.7%
기타사업		1,467	1,086	2,553	1,075	430	645	2,150		403	84.2%
<b>합계</b>		<b>1,577</b>	<b>1,144</b>	<b>2,721</b>	<b>1,121</b>	<b>445</b>	<b>686</b>	<b>2,252</b>		<b>469</b>	<b>82.8%</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07년 예산집행률 82.7% (농식품부 정산 자료 기준)로 불용 예산 발생
- 향후 예산 불용율을 낮출 수 있도록 철저한 농가지도 필요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농가교육 및 업체 간담회를 2회 실시하여 사업추진 독려
- 사업의 조기 집행 및 사업지도를 위한 농가방문, 사업별 체크리스트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예산집행을 제고 필요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용자희망 문의시 즉시 전산 확인하여 용자가능여부 통보하고, 용자 희망농가는 보조금 신청과 동시에 용자금 대출 조기 실시 추진 등 일부 진행
- 향후 보다 적극적인 용자 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포도 특구, 자두 특구 지정을 통해 자체 예산으로 홍보 및 가공·기술 지원을 시행하고,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은 FTA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연계 사업 추진하여 우수함.
- 자체 시비사업에 있어 FTA사업 추진한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한 부분은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향후 FTA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시 우선권 부여 등 지속적인 연계장치 마련 필요.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 보고서류 제출 지연(+0.97점) : 미체출 0건(0점), 지연일 12일(-0.12점), 조기일109일(+1.09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07.10. 사업시행주체 변경 승인 획득 : 연합사업단 → 남면농협
- 남면농협의 FTA사업, 유통분야 담당인력은 상무 등 총 4명임.
- 향후 규모화된 판매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독립부서 설치, 독립채산제 등 책임경영체계 및 사업기능 강화가 필요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1,915	1,613	2,361	84.2%
2006년	2,410	2,128	5,958	88.3%
2007년	3,271	2,865	6,059	87.6%

- 약정 이행율은 87.6%로 양호한 편이나, 이행율 제고 노력 필요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2,128	2,865	34.6%	5,958	6,059	1.7%

- '06년 대비 물량은 34.6%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1.7% 증가에 그침.
- '07.5. 사업시행주체 변경 협의를 계기로 김천시 연합사업단의 주관조직을 김천시지부에서 남면농협으로 이관 협약을 체결하고, 연합사업 기표를 김천시지부와 남면농협이 동시에 실시함.  
※ 시지부 연합사업 실적 : 3,230백만원 / 남면농협 연합사업 실적 : 2,828백만원
- '07년 출하실적은 시지부 연합사업 실적과 남면농협 연합사업 실적을 합산한 것임.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2,361	5,958	6,059	1.7%

- '06년에는 '0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07년에는 사업실적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함.
- 사업시행주체 변화에 따른 사업체계 안정화 및 참여조합의 출하율 제고 노력 필요.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6,059	4,206	69.4%

- 공동계산 실적은 42억원으로 전체 출하실적의 69.4%로 높은 편임.
- 공동계산 실적은 시지부 공동계산 실적과 남면농협 공동계산 실적의 합임.  
※ 시지부 연합사업 실적 : 3,230백만원 / 남면농협 공동계산 실적 : 976백만원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2,128	1,997	-6.1%	5,958	4,206	-29.4%

- 사업시행주체 변경에 따른 사업방식의 변화로 공동계산 실적 감소.
- 향후에는 사업시행주체인 남면농협에서 공동선별·공동계산을 적극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연합사업단은 공동브랜드로 '푸름찬'을 사용하였으나, 남면농협은 '과수원의 아침'을 주력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음.
- 향후 브랜드간 관계정립 필요. 또한 공동브랜드는 사용권자를 단일화 하여 실질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체계 개선 필요.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율(B/A)
사업실적(백만원)	6,059	4,206	69.4%

- 공동선별·공동계산 상품은 모두 공동브랜드 '푸름찬'으로 출하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394	926	1,125	21.5%

- 최근 3년간 연합사업 참여농가가 빠르게 증가하여 우수한 실적으로 평가됨. 참여 농가 확대와 함께 정예농가화 하여 지역 과수 판매·마케팅의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해야 함.

⑨ 기타 사업실적

- 축산물 판매실적(17.5%)과 농기계 판매실적(25%)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으나, 농가의 비용절감을 위한 농자재판매 및 포장재 공동구매사업을 확대하여야 함

###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07년 10월 지원농가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만족도가 높은 포도비가림시설을 우선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이 인정됨.

###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김천시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탈락자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사업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려는 노력이 인정됨.
- 향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나 행정, 시행주체, 참여조직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자체 위원회 구성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임.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농가조직화 교육실적은 8회 2,046명 실시.
- 그러나, 사업시행주체에 의한 계획적 교육 진행과 공동계산조직 등 동일 농가조직에 대한 지속 교육은 미흡했음.
- 향후 일반적인 기술교육,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보다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조직 육성을 목표로 보다 체계적인 교육 필요. 특히 '지역특성화 교육'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와 해당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매뉴얼은 일회성 교육교재로서 향후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등에서 제작한 표준매뉴얼을 지역 여건에 맞도록 보완하여 보급함으로써 고품질 과수 재배 확대 유도 필요.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예산 조기집행 실적과 출하증가율(물량, 34.6%)이 우수하며, 포도와 자두에 대한 특구 지정을 통한 생산부터 가공까지의 연계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이 우수함.
- 김천형 개량 비가림 하우스 개발 및 무병묘 품종갱신사업 추진 등은 우수 사례로 보여짐.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율, 사업 미개시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은 우수함.
- 그러나 사업시행주체가 연합사업단에서 남면농협으로 바뀌면서 전체 사업 체계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김천시 주도의 사업 추진으로 사업시행주체와 참여조합의 역할과 참여율이 저조함. 향후 사업시행주체 중심의 사업추진 체계로 전환 필요.

27(4-06)	문경·상주 사과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사과 (보조)	선정년도	2006
사업주관기관	문경시	사업시행주체	대구경북농협 문경지소
참여시군	문경시, 상주시		
득점 현황	합계 (100)	3등급	
	계획단계(10)	C+	
	집행단계(50)	D+	
	성과단계(40)	C+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동 사업은 대구경북농협 문경지소가 사업시행주체가 되어 문경·상주시 관내를 사업지역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구경북농협 상주지점이 참여조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추진품목은 사과 단일품목임.
- 키낮은 사과원 조성, 관수관비시설, 방조방풍망시설, 지주시설, 친환경 과원 관리, 야생동물방지시설, 미세살수장치 등의 생산시설현대화사업과 '08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거점APC설치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 핵심성과

- IPM사과단지 조성, 수출단지(사과농가96호, 112ha) 조성 등 고품질 사과생산기반 조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경약돌사과” 기능성 브랜드개발.
- 문경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으로 유통계열화를 위한 시설기반 확보.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품목농협인 대구경북농협 문경지소와 상주지점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들간의 유기적 업무연계가 미흡함.
- 향후 설치될 문경 거점APC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문경지소로 출하를 일원화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며, 문경지소의 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내실 있는 APC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품질 사과생산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확실한 유통주체가 없고 공동선별, 공동계산 조직화가 미흡</li> <li>지자체의 사과산업에 대한 지원이 산지유통주체 육성과 맞물리지 못하고 과수농가에 대한 일반적 지원에 머물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PM, 친환경인증, 기능성사과개발 등 고품질생산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li> <li>동시에 능력있는 산지유통주체를 육성하여 새로 설치되는 거점APC와 연계할 수 있는 전략 필요</li> <li>이를 위해 FTA기금사업체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차별적 지원강구</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구경북농협농협 문경지소와 상주시점이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과 유통계열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li> <li>사업시행주체의 인적구성이나 사업능력이 취약하여 사업추진에 전념하기 힘든 상황임</li> <li>사업시행주체인 대구경북농협농협 문경지소의 경우 전체직원이 8명이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사업추진 여력이 충분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경지소와 상주시점간 업무협력체계 구축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li> <li>문경지소의 사업역량강화를 위한 직원보강, 읍면사무소 등 행정력을 활용한 사업내실화가 요구됨</li> <li>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활한 업무지원체계와 전담인력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업무이동 최소화 필요</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7년 사업비 집행률이 66.1%로 저조하여 이월액(501백만원)이 전체사업금액(1,549백만원)의 32%에 이르고 있음</li> <li>관수관비시설 및 관정개발 사업의 집행률이 특히 저조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정확한 사전수요조사가 이루어져 중도포기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이 필요</li> <li>중도포기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예산집행률 제고 필요</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과 사업참여 주체간 연계성 부족으로 사업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함</li> <li>대구경북농협농협 문경지소와 상주시점간 사업적 연계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경시, 상주시, 대구경북농협농협 문경지소, 상주시점간 원활한 업무협력체계 구축과 회의공식화 및 정례화 필요</li> <li>실질적 유통규모화를 위한 사업조직간 협력체계 구축 시급</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3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C+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C+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D+</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D+</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C+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B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C+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1.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0.5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D+</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60	
③ 출하약정 주체	2	0.50	
④ 출하약정기간	1	0.2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1.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1.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2.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C0
	① 예산집행률	10	6.98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C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C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B0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B0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1.59	
<b>성과단계 소계</b>		<b>40</b>	<b>C+</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B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D+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3.00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2.61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1.29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1.51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0.73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B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0.23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2.02
	⑨ 기타 사업실적	1	0.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C+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F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B+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1.00
	② 교육 횟수	1	1.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B0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C0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0.59	
	비계량	C+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B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자문위원회가 거점APC자문위와 FTA기금 자문위로 분리되어 있으며, 거점APC설치를 위한 자문회의는 수시로 개최되었으나, FTA기금 자문위 실적은 저조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획단계 사업 수요 및 의견 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업 전반의 내실을 기해야 함.
- 또한 특정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개별면담, 전화,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07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농가의견 수렴이라고 인정되는 회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내실 있는 회의와 의견수렴 과정의 도입이 필요함.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문경시와 대구경북농협 문경지소간 업무협의를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원대상조직인 상주지점간 업무협의를 '07년 1회에 그치고 있음.
- 문경시, 상주시 행정담당자와 대구경북농협 문경지소, 상주지점 연석회의를 매분기 첫째주 금요일에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07년 3회 실시하였음.
- 지원대상조직간 업무협의를 보다 내실화하고 정규화, 정례화하여 사전 안건 정리와 의사결정 결과의 적용을 체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대부분 제도개선에 반영하였으나 FTA기금사업 업무전담팀 구성은 업무지원팀 구성에 그침.
- 자재일괄구매는 몇가지 안을 농가의견을 반영하여 선택하는 정도에 그치고 업체선정을 위한 별도의 입찰과정과 투명한 심사과정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시·군	○	○	○	○	○	◎	
농업기술센터							
읍·면	○						
사업시행주체	◎	◎	◎	◎	◎	○	
참여조합	○	○	○	○	○	○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전체 사업과정에서 사업시행주체인 대구경북농금 문경지소의 역할이 확인되고 있으나 상주지점 간 업무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임.
- 시행주체 중심으로 우선순위 심사 등 핵심 업무를 진행하되, 조직간 협의회, 담당자 실무위원회, 농가조직 운영위원회 등으로 체계화 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명확화와 조직간 협력을 강화해야 함.

#### ② 1,2순위 준수여부

- 1,2순위 구분 없이 사업신청을 받음.
- 그러나, 1, 2순위 구분은 사업에 지원하는 농가와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를 연계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지역통합과 협력적 농가조직화를 위한 연계방안으로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사업 신청단계부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별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정부정책수용성, 유통규모화 촉진, 사업여건 및 특성지표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을 반영한 지표(경사도 등)를 일부 반영하고 있음.
- 거점APC 신설에 따라 APC장기출하계약에 대한 점수를 15점으로 과감하게 부여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계량화 된 실적과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연동될 수 있는 심사표 도입이 필요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심사표 기준이 상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동점자는 많지 않으며 변별력을 갖추고 있음.
-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농가선정 심사표에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음.
- 일부항목(갱신면적, 경사도, 출하율 등)의 경우 구간별로 계량화된 실적과 연계되어 있는데 구간별이 아닌 실적과 직접적인 연동이 되도록 변경이 요구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담당자 변경으로 인하여 '07년 4월 2일 시청에 최종 대상자보고를 하였으며, 4월 9일 심의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추진상의 난맥을 드러내고 있어 개선 필요.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년도 말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교부 결정, 선정 통보 등 관련 행정절차를 조기에 진행하여 영농철 이전에 사업이 개시되도록 노력해야 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미개시자를 조사하였고 해당 미개시자에 대하여 사업포기각서를 징구함으로써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음(사업변경 및 사업대상자 선정 : '07년 7월 23일자 공문 확인).

###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교부결정서를 개별 통지할 때 사업포기시 조치에 대한 사항을 공지하였으나 사업포기각서에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신청불가'를 정확하게 명기하여 사업대상자가 정확하게 인지토록 조치하지는 않음.

- 향후 중도포기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출하약정서에 3년간 FTA사업지원 중단, 농림사업 지원제외, 과수사업지원 최하위 배정 등 패널티 적용 사항을 명기해야 함.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과수발전협의회에서 지원 우선순위, 사업계획 변경, 예비사업자 선정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개별 통보하여 예비대상자를 공지함.
- 미지원된 예비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 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 정 주 체	④ 약 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06년	219	219	100	4,772	3,818	80	참여농협	1
'07년	133	133	100	3,092	2,474	80	참여농협	1
계	352	352	100	7,864	6,292	80	-	

- 지원농가 전체가 약정을 체결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였음.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출하약정서에 약정물량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어 약정물량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향후 개선 필요.

**③ 출하약정 주체**

- 대구경북농협농협 문경지소, 상주지점 두 곳으로 출하약정 체결하고 실질적인 출하도 별도로 이루어짐.
- 문경거점APC가 설치되고 있으므로 APC 건립이전에 출하와 관련한 부분을 협의함으로써 출하약정 주체를 사업시행주체로 변경하여야 하며, 출하와 관련된 관리 역시 사업시행주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④ 출하약정기간

- 별도의 출하약정기간 없어 1년으로 간주하였으나 '5년'이상 장기 출하약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출하약정서에 약정위반 시 '지원중단, 지원자금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문구만 사업되어 있으나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실적은 없으며, 인센티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실적도 없음.
- 단순히 명문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한 사업추진이 필요함.

###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지주시설 자재, 관수관비시설 자재, 방풍/방조망 자재 등 총 459백만원의 자재일괄 공동구매 실적이 있음.
- 향후에도 구매효과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일괄 구매 품목을 확대하고 규모화를 통한 단가 인하, 품질 보증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자재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4가지 안을 가지고 '07년 4월 11일 사업설명회 시 대상농가들이 직접 선택하게 함.
- 특별한 하자가 없는 업체의 경우 신청하면 대구경북농금 문경지점에서 평가하여 대부분 사업자로 선정함.
- 단,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는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업체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평가표에 의거하여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품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점수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FTA 및 기타 지자체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패널티를 부여하여 품질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도 모색해야 함.

###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고, 실무자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단가조정을 시행하여 다소 미흡함.
- 전국 평균의 사업단가와 사업 메뉴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가 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세부 시설 기준과 단가를 조정. 생산시설 설치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비용절감, 농가 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함.

##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355	31	386	191	21	31	242	134	9	63.0%
기타사업		524	639	1,163	123	217	441	781	367	15	67.2%
<b>합계</b>		<b>879</b>	<b>670</b>	<b>1,549</b>	<b>314</b>	<b>238</b>	<b>472</b>	<b>1,024</b>	<b>501</b>	<b>24</b>	<b>66.1%</b>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생산기반조성											%
거점APC			4,482	4,482			148	148			4%
과실브랜드											%
<b>합계</b>			<b>4,482</b>	<b>4,482</b>			<b>148</b>	<b>148</b>			<b>4%</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예산집행률이 66.1%로 저조한데, 특히 관수관비시설 및 관정개발 사업의 집행률이 40~50%대에 머물고 있음
- 거점APC의 경우,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사업점검이 지속되면서 사업시행이 늦어진 점이 인정되나 향후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사업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사업시행주체와 시청담당자가 수시로 방문 또는 유선상으로 예산집행 독려하였으나, 이월이 크게 발생하고 있어 사전 정책수요조사를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 과정상 사업지도를 위한 농가방문 및 사업별 체크리스트 작성 등 수시점검을 통해 사업포기물량을 예비선정자에게 바로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필요.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사업완료와 동시 용자 희망여부를 확인하여 사전 신용조회 등을 실시하는 등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수행한 점이 인정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FTA기금사업대상자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사업임. 단, '문경약돌사과브랜드화사업'을 거점APC로의 출하를 전제로 하는 농가에 우선 지원함으로써 유통계열화를 유도하고 있는 점은 인정됨.
- 향후 친환경, 기능성 영농자재 지원, IPM, 수출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거점APC출하와 연계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자체 사업과 FTA기금사업 연계를 강화하여야 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지적사항 없음.
- 보고서류 제출 지연(-1.59점) : 미제출 2건(-2점), 지연일 20일(-0.20점), 조기일 61일(+0.61점)
- 행정서류 미제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및 관계자의 주의가 필요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판매 사업을 전문하는 독립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문경지점 내 지점장 포함 5명으로 업무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예지도사 1명을 전담자로 두고 있어 시행주체 차원에서 사업관리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
2006년	4,212	2,121	4,243	50.4%
<b>2007년</b>	<b>3,092</b>	<b>2,659</b>	<b>5,317</b>	<b>86.0%</b>
계	7,304	4,780	9,560	65.4%

- '07년 출하약정이행률은 86.0%로 전년도 50.4%에 비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이행율과 이행 규모가 미흡한 수준이므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1,970	2,866	45.5%	3,796	4,306	13.4%

- 출하물량 증가율 45.5%, 출하금액 증가율 13.4%를 달성하고 있음.

####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5,089	3,796	4,306	13.4%

-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은 4,306백만원 규모로 증가율 13.4%를 달성하고 있음.

④ 사업조직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율(B/A)
실적(백만원)	4,306	1,510	35.0%

- 전체 사업물량중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으로 인정되는 실적은 35.0%를 나타내고 있음.
- 향후 거점APC가 설치되면 공동선별·공동계산 및 체계화된 판매사업으로 전환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 물량 및 비중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D-C)/C
738	798	8.1%	1,421	1,510	6.3%

-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은 물량기준 8.1%, 금액기준 6.3% 증가하였음.
- 공동선별, 공동계산 물량의 추가적인 확대를 위해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 농가 확대, 작목반 조직 강화, 법인에 적합한 사업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문경약돌사과”브랜드는 사용권을 개별작목반에 부여하고 있어 사업시행주체를 통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기존 광역브랜드인 썬플러스를 활용한 실적은 있으나, 그 실적이 136.3톤, 327백만원에 그치고 있음.
- 향후 거점APC와 연계한 브랜드 운영체계가 필요하며, 행정차원에서 브랜드 운영권과 품질관리의 책임을 거점APC 운영주체에게 집중 부여할 필요가 있음.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 율(B/A)
사업실적(백만원)	4,306	327	7.6%

- 공동브랜드 추진실적이 전체의 7.6%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 보다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는 공동브랜드 실적 비율을 증대시켜야 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442	453	514	13.5%

- '05년 이후 유통사업 참여 농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유통규모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예농가 위주로 참여농가수를 확대해 나가야 함.

⑨ 기타 사업실적

- 품목농협의 특성상 기타 사업실적이 많지 않으나 향후에는 농가의 소득증대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확대가 필요함.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07년도 사업대상농가 중 30명을 대상으로 서면 및 전화조사 실시하여 만족도가 높은 관정개발, 키낮은 사과원, IPM사업 등을 확대 시행함.
- 하지만, 샘플농가가 지원농가에 비해 너무 작고 조사대상 농가의 선정에 있어서도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해당실적이 없음.
- 행정, 시행주체, 참여조직 등이 참여하는 연차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 요소 발굴하고 차년도 사업 개선에 활용해야 하며 계획, 집행, 성과 단계의 주요 지표를 점검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교육 횟수 10회, 교육인원 2,150명으로 실적은 양호하나 기술교육에 집중되어 있어 농가조직화 및 농가들의 사업이해 증진을 위한 유통마인드 교육이 요구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현재 활용하고 있는 재배매뉴얼은 단순 방재력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별도의 품질관리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거점APC 건립과 함께 브랜드개발 및 품질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상반기 및 3/4분기 예산 조기 집행 실적이 인정됨.
- 사업시행주체가 농가자부담 분을 먼저 임금토록 하고 자재가 농가에 공급되면 농가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업체의 부실화를 막고 농가와 업체간 자부담금에 대한 시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행정, 사업시행주체 사업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짐
-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공동선별·공동계산 농가조직 육성, 거점APC를 통한 유통계열화, 브랜드 운영체계 구축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내부협의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

28(2-07)	봉화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사과      (보조) 토마토	선정년도	2004
사업주관기관	봉화군	사업시행주체	봉화군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시군	봉화군		
득점현황	합계 (100)	2등급	
	계획단계(10)	B0	
	집행단계(50)	C+	
	성과단계(40)	B+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봉화군은 1,350ha에서 22,698톤의 사과를 생산하고 있음. ('07년말 기준)
- 다년간의 협력 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사업시행주체의 협력이 원활함.

### □ 핵심성과

- 담당자를 지도사업과 결합하여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농가 맞춤형 사업으로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였음.
- 시행주체 중심의 출하체계 구축으로 영세분산적 판매를 지양하고 공동마케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06년 3월 법인설립 인가를 신청하여, '06년 6월 인가가 이루어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 도입 초기에 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음. 그러나, 실제 사업자 등록은 '07년 1월에 시행하여 사업 착수 시기는 다소 늦어졌음.
- 기존 농협 연합사업단의 사업체계 및 시스템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은 없음
- '08년 11월 APC 완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완공 이후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본격적인 판매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농가조직화에서부터 상품화, 마케팅 등 종합적 체계를 갖추어야 함.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과가 총 1,350ha이며 '06년을 기점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li> <li>'08년 11월 균특사업에 의한 APC 준공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PC 완공에 따라 사업물량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농가조직화, 마케팅 등 전반적 사업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사업시행주체의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의 법인에 대한 집중적 지원 의지가 높은 편이며 지자체와 시행주체의 협조도 원활함</li> <li>자문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참여도 보완하였음</li> <li>야심찬 브랜드는 봉화농협 소유로 사업시행주체의 통제력이 약한 측면이 있음</li> <li>품질관리 매뉴얼 다소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와 시행주체, 참여농협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법인 인력 충원 등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li> <li>브랜드 및 품질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차원의 체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li> <li>보조금 교부 결정시기를 앞당기고 미개시자에 대한 일제조사도 조기에 시행하여야 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박 등 천재지변이 있었으나 예산집행율이 부진한 수준임</li> <li>이월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집행율도 저조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li> <li>지역특성을 반영한 신규사업 개발 등 사례를 더욱 확장하여야 할 것임</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합사업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법인은 초기단계로써 연합단 및 조합과 연계를 유지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PC완공 이후 법인의 사업영역이 확대되면서 참여조합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여야 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2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B0</b>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 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B0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B+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B0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C+</b>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b>14</b>	<b>C0</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B+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1.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B+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B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5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0.00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b>10</b>	<b>B+</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59	
③ 출하약정 주체	2	2.00	
④ 출하약정기간	1	1.0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B+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5.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3.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C+
	① 예산집행률	10	7.18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C+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B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B+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B+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45
<b>성과단계 소계</b>		<b>40</b>	<b>B+</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3	B+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22	C+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3.00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3.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96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2.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2.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C+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1.01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3.00
	⑨ 기타 사업실적	1	0.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2	C+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2	C0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5	B+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95	
② 교육 횟수	1	1.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B0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B0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2.65	
	비계량	B+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B+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지역농업 주체 외 원예연구소, 안동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자문위원회를 구성('07년 12월 외부전문가 참여, 개편)하여 주요 현안 처리, 운영한 점이 돋보임.
- 농가대표자 간담회, 운영위원회 및 사업설명회시 자유토론 등을 통해 농업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됨.
- 특히, 지역 과수산업의 고품질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관리와 재배기술 향상, 효과적인 시설 도입 등 정례화 된 전문가 자문을 추진해야 함.
- 자문위원회는 외부전문가 의견수렴을 활성화 하기 위해 회의 참석 뿐 아니라 경우 전문 영역에 대한 서면 자문, E-Mail 자문 등 다양한 의견 청취 통로를 활용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지자체 및 사업시행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FTA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현안 발생 시 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유기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사업시행주체는 사업 참여조합과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법인과 참여 조직, 연합사업단 간 업무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표준 양식을 적용하고 사업 개선 지침을 반영하여 전반적 항목에 대해 개선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	○	◎	◎		◎	
읍·면	○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합	○	○		○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사업시행주체가 신청서 접수, 과원확인,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을 주도하고 있으며 자체정산 후 지자체에 제출하여 우수함.
- 특히, 현장심사 농가의 신청내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지도를 통해 사업내용 조정함으로써 중도포기율을 줄이고 사업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점은 모범사례임.

#### ② 1,2순위 준수여부

- 신청서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출하약정서상 공동선별·공동계산을 의무화 하여 사실상 1순위 농가만 접수하고 있으며 출하약정 이행 여부 등을 기본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음.

※ APC출하, 공동선별/공동계산 추진 등 엄격한 시행요건이 실질화 되기 위해서는 시행주체 중심의 사업활성화와 제반 정책적 절차와 연계사업에서의 우선 지원 등 체계적인 농가조직 육성이 뒷받침되어야 함. 또한, 신청서 등 관련 행정 절차에서도 우대됨을 명시하여 농가들의 이해가 확산되도록 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정부정책수용성 측면에서는 GAP(6), 재해보험(6), 친환경(6)등이 반영되었고. 유통규모화 추진은 출하약정(16), 약정이행(31), 면적(5), 공동브랜드(6), 출하권위임(8)등이 반영되었음.
- 기타 연령(3), 수출(2), 교육이수(6), 과목수령(5) 등을 반영.
- 심사표상 기본 요건 충족농가에 대해 각 항목을 평가하는 시스템은 우수하나 연령, 면적 등 가부로 기준이 제시된 항목은 단계별 점수 부여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계량화된 실적과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연동 될 수 있는 심사표 도입이 필요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07년 신청농가의 76.6%수준에서 농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점수대별 농가분포가 비교적 고른 편임.
- 동점자는 출하실적이 많은 농가가 우선하며, 기존과원 여부, 출하약정 이행, 중도포기, 자부담 능력 등 4가지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동점자 처리기준은 구체적 물량과약이 가능한 전년도 출하실적이 많은 농가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06년 12월 21일 FTA기금사업 대상자 선정심의회를 개최, 확정하였으나 교부결정이 3월 19일에 행해져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미흡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년도말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교부결정, 선정통보 등 관련 행정절차를 조기(1월)에 진행하여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도록 해야 함.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07년 6월(6월 11~15)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기간이 다소 지체되었고 미개시자에 대해서는 사업독려 및 포기서를 징구하여 적절하게 처리함.
- 향후에는 대상자 선정 2개월 후에 미개시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미개시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서약서에서 포괄적인 이행서약을 받고, 출하약정 및 내부규정 안내공문을 통해 FTA기금 3년간 사업참여 불가를 명기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도 확인하여 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평가함.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사업신청자가 적어 예비대상자는 선정하지 않고 중도포기자는 추가 신청을 받아서 대체하였음.
- 사업신청이 충분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여야 하며 향후에는 미지원 된 예비대상자를 다음 연도에 우선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 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 수 (A)	약정농가 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227	183	80.6	1,770	1,470	83.1	연합사업단	3
'06년	356	345	96.9	1,910	1,514	79.3	봉화군조합 공동사업법인	5
'07년	332	291	87.7	2,285	1,814	79.4	봉화군조합 공동사업법인	5
계	915	819	89.5	5,965	4,798	80.4	봉화군조합 공동사업법인	5

- 사업신청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약정 체결하여 우수함.

##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07년 출하약정물량 비율은 79.4%였음.
- 생산량의 80%이상 출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 출하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 노력이 필요함.

## ③ 출하약정 주체

- 시행주체인 봉화군조합공동사업법인과 출하약정을 체결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였음.

## ④ 출하약정기간

- 5년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적절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출하약정 안내공문을 통해 출하 협약 위반시 3년간 FTA사업 참여불가를 명시하였으나, APC 설립이전에는 지역농협을 통한 공동출하로 실질적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임. 제재 실적 없음.
- APC 출하에 대한 별도의 제재사항은 조례형태로 준비 중.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과 실행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하며, '08년도 말에 APC가 건립되어 가동되는 만큼 차후에는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임.

##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어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자재 일괄 구매 추진 실적이 없음.
- 지역에 상당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시행주체가 주도하여 공동구매 효과가 큰 품목에 대해 주요 자재 일괄구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견적서 징구, 입찰에 의한 가격 비교 등으로 농가 부담 경감과 우수 품질의 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업체선정 심의회 운영, 심의위원회 결정 후 실무진 협의 진행.
- 13개 업체 중 7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업체 비교견적 및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사업비 절감노력이 이루어졌음.
-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품질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기준 점수 미달 업체에 대해 향후 FTA 및 기타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한 배제 등의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파이프 자재비의 상승으로 심의회를 개최하여 단가를 상향 조정하였음.
- 지역실정에 맞는 단가조정은 바람직하나 3개 항목이 모두 자재비 인상에 따른 단가 상승분으로 이루어진 점은 아쉬운 사항임.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483	353	155	991		177	411	588	155	248	59.3%
기타사업	74	333	434	841		80	178	258		83	75.6%
<b>합계</b>	<b>557</b>	<b>686</b>	<b>589</b>	<b>1,832</b>	<b>0</b>	<b>257</b>	<b>589</b>	<b>846</b>	<b>155</b>	<b>331</b>	<b>67.5%</b>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생산기반조성		592	484	1,076			742	742	334		69%
거점APC											
과실브랜드											
<b>합계</b>		<b>592</b>	<b>484</b>	<b>1,076</b>			<b>742</b>	<b>742</b>	<b>334</b>		<b>69%</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우박피해로 사업포기자가 다수 발생하여 집행율이 71.8%(농식품부 정산 자료 기준)로 부진함 .

- 또한 이월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사업시행 독려공문 발송(2개월 당 1회), 사업대상자 상대로 사업 조기 종료 안내 및 교육 실시 등 일반적인 수준임.
- 우박피해 등 감안 요소가 있으나 신청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읍/면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농가방문, 사업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사업신청 시 신용조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조치하고 있어 우수함.
- 또, 사고이월 대상자들에 대한 용자를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 및 질의를 통해 실행한 부분은 지자체 및 시행주체의 노력으로 평가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활성화를 위해 군비 39백만원 보조 및 승용제초기 지원사업 시행지침상 FTA기금사업 대상농가를 우선 선정토록 하는 항목 등은 효과적인 연계장치로 평가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농식품부 등 기관의 점검 지적사항 미이행 없음.
-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및 제출 후 수정, 허위사실 기재 없음.
- 보고서류 제출 지연(-0.45점) : 미제출 1건(-1점), 지연일 16일(-0.16점), 조기일71일(+0.71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기존 농협봉화군지부 중심의 연합사업단을 운영하였고 법인으로 전환하였음. 연합사업단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공존.
- 법인은 '06년 6월 1일 설립인가, '06년 7월 21일 법인登記했으며, 관내 6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으며, 직원은 대표 포함 총 3명임.
- '07년 법인은 총 3,398백만원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과수는 3,210백만원임.
- APC 가동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함. 지역 및 품목조합과 법인 사업의 경합 요소를 해소하고, 물량결집과 마케팅추진, 법인 내부조직 확대/역량강화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1,470	1,192	2,272	81.1
2006년	1,514	1,063	1,840	70.2
<b>2007년</b>	<b>1,814</b>	<b>1,955</b>	<b>3,210</b>	<b>107.8</b>
계	4,798	4,210	7,322	87.4

- '07년 약정량 1,814톤, 출하량은 1,955톤으로 107.8%
- 약정 불이행농가가 일부 있으나 실제 출하량은 높은 편임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1,063	1,955	83.9%	1,840	3,210	74.5%

- 봉화군지부연합사업단과의 유기적 연관관계가 인정되어 사업실적을 인정하였으며 출하 증가율이 높아 우수한 실적을 보임.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2,272	1,840	3,210	74.5%

- '07년 총사업실적은 3,210백만원 규모로 타 경쟁 산지 주체와 비교하여 규모가 적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확대 노력이 필요함.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3,210	3,210	100%

- 사업실적 전체를 공동선별·공동계산으로 처리하여 우수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1,063	1,955	83.9%	1,840	3,210	74.5%

-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 74.5%로 우수하나, 유통규모화 확대를 위해 지속적 노력이 요구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봉화농협 "야심찬", '04년 상표등록.
- 사업시행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07년 528톤 출하.
- 봉화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이므로 법인 정상 운영과 APC 가동 시 브랜드 소유권을 이전하여 지역공동브랜드로 확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 율(B/A)
사업실적(백만원)	3,210	1,084	33.8%

- 공동브랜드 실적이 전체의 33.8%에 그쳐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183	528	819	55.1%

- 사업참여 농가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으며 APC가 완공되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바람직함.

⑨ 기타 사업실적

- 과실류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설정하여 과실류 외 사업실적은 -70.6%로 역조.
- 이외에도 지역 대표 품목조직으로서 자재 공동구매 등 농가 실익 제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자재, 포장재 등은 APC준공 이후 취급 예정이므로 기존 지역농협과의 경합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 협의가 필요.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07년 9월 사업추진의 적절성 및 효과를 중심으로 50농가 설문조사 실시하였으나 형식적인 것으로 보임.
- 설문항목에 대한 구체성 강화 및 분석 항목을 염두에 둔 체계화가 필요하며 성과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사업개선 및 성과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07년 12월 평가자가 의견을 제시토록 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일반적 수준임.
- 시공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여 일시에 시공이 몰려 혼란이 발생, 작업 순기표를 작성하여 진행, 지역 현실을 반영한 우박피해방지시설 추가, 용자금집행 애로 해결 등 성과 있음.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시기별 과원관리 및 IPM생산단지 육성 중심의 교육사업을 진행함.
- 보다 체계적인 농가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술센터 자체인력 중심의 교육 진행 외에도 외부 전문인력 초빙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야 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고품질 과실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방법, '07년 11월 제작.
- 재배 기술 위주로 제작되어 있어 출하 개선, 수확 후 품질관리 등 판매사업 전반의 품질관리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음.
- 생산, 수확 후 관리, 상품화, GAP 인증, APC 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매뉴얼로 확장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출하증가율 74.5%
- 예산 상반기 0%, 3/4분기 5.5% 집행으로 일부 실적 인정.
- 사업비 안내공문, 지역현실을 반영한 신규사업 발굴 등 추진.
- 지자체의 담당자를 지도직으로 전환하여 고유의 지도사업을 결합하여 추진하고, 현지조사 시 사업대상지 적격 여부 및 신청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는 농가맞춤형 사업으로 효율성을 높인 것은 우수 사례임.
- 친환경 및 GAP면적이 780ha로 전체면적의 57.8%를 차지하고 있음.
- IPM생산단지의 각 단체로부터 예찰용역을 위임받아 봉화군 전체 차원에서 예찰사업을 실시하고 맞춤형 방제력 개발을 추진하여 우수사례로 꼽힘.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지자체 및 사업시행주체 모두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열의가 높은 편임.
- 현장중심의 맞춤형 사업전개 및 친환경 단지화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

29(4-07)	상주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포도 (보조) 배, 복숭아	선정년도	2005
사업주관기관	상주시	사업시행주체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시군	상주시		
득점현황	합계 (100)	3등급	
	계획단계(10)	C0	
	집행단계(50)	D0	
	성과단계(40)	B+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사업시행주체로 관내 13개 농협이 참여하여 주 품목인 포도(재배면적 1,566ha, 생산량 28,002톤)와 부품목인 배(1,345ha, 32,977톤), 복숭아(153ha, 2,364톤)의 고품질화를 위해 시설하우스개보수, 우량품종갱신, 친환경미생물 발효기, 점적관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시청에서 지역농산물 공동브랜드 '명실상주'를 개발하여 품질관리와 브랜드 사용권을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위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 핵심성과

-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추진 : '07년 3월 22일 농식품부 인가.
- 14개 포도작목반을 상주포도회로 조직화하여 체계적인 농가관리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07년 모동백화명산 포도작목반(202농가)이 GAP우수농산물 인증을 획득함.
-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과 함께 '명실상주'브랜드마케팅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08년도 농식품부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됨.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사업시행주체가 연합사업단에서 관내 12개 지역농협과 2개 품목농협이 참여하는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되었음.
- 동 법인은 '07년 3월 22일자로 농식품부 설립인가를 받고 '07년 8월 31일 농협중앙회 상주시지부에 사무실을 개소하였으며 CEO, 중앙회파견직원1, 조합파견직원1, 계약직1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이관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실질적 유통주체로서의 역할과 FTA기금사업의 책임있는 관리를 위해서는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체계 구축과 사업이관이 필요한 상황임.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주지역은 다양한 과수가 생산되는 만큼 품목별 유통주체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어 통합유통주체의 형성을 위한 의견조율이 어려운 상황임</li> <li>농업인구 고령화로 인한 품질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도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생산되는 양곡, 축산, 과수 전반의 유통을 책임질 수 있는 대표 유통조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li> <li>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정예농가 조직화가 필요</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사업시행주체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조직체계 구축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며, 법인으로의 FTA 관련 업무의 실질적 이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li> <li>행정의 잦은 인사교체로 인한 업무인수인계가 매끄럽지 못함</li> <li>의사결정을 농가조직인 상주포도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사업관리의 책임성, 투명성, 객관성 확보가 힘든 상황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관리 능력을 배가 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 재정비 하여야 하며, 법인으로 실질적 업무이관이 필요</li> <li>시청의 관련 업무인수인계 철저</li> <li>농가조직과 사업시행주체간 명확한 역할분담과 사업시행주체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사업관리의 투명성 확보 필요</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7년 예산집행실적이 62%로 낮은 편이며, 전체 사업액 1,409백만원의 28%에 해당하는 391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li> <li>결과적으로 사업신청 단계의 현장점검, 사업진행 단계의 지도,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다 철저한 사전점검과 사업시행주체 및 주관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li> <li>특히 예상 소요예산을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하여 이월이나 불용예산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차단하는 노력 필요</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주체인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과 행정의 긴밀한 협조와 역할분담이 미흡</li> <li>사업주관기관의 사업역량 부족을 메울수 있는 협력체계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다 활발한 업무협의를 현장점검, 지도과정에서의 확실한 역할분담과 협조체계구축이 필요</li> <li>면단위 행정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행력을 제고하여야 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3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0</b>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C0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C0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0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D0</b>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b>14</b>	D0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C+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D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D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1.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b>10</b>	F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2.00	
③ 출하약정 주체	2	0.50	
④ 출하약정기간	1	1.0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1.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1.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2.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D+
	① 예산집행률	10	6.21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D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D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1.12
<b>성과단계 소계</b>		<b>40</b>	<b>B+</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C+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B+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3.00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3.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94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2.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2.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B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3.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3.00
	⑨ 기타 사업실적	1	0.3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C+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F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C0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44
	② 교육 횟수	1	0.57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C+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B0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2.31	
	비계량	C+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C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자문단이 생산시설현대화 사업과 APC설립 자문을 겸하고 있음에 비해 자문위원 인력풀이 부족함.
- 특정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개별면담, 전화,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 의견수렴은 '06년말 2회, '07년 3회가 있으나, 전체를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실적으로 보기 어려움.
- 보다 내실 있는 자문회의 구성·운영 및 농업인 의견수렴이 필요함.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회의실적이 '06년 2회에 그치고 '07년 실적이 전혀 없으며, 지원대상 조직간 협의는 3회 실시함.
- 대부분의 회의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투명한 사업관리를 위한 공식화, 관련 증빙자료의 구비가 필요함.
-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체계화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명확화와 지원대상조직과 행정 조직간 협력을 강화해야 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출하약정관련 우선순위, 지표설정, 약정기간, 인센티브 및 패널티 등은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실질적 사업이양 및 성과 거양은 미흡함.
- 입찰을 통한 공동구매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단 간이형강선사업은 작목반 대표회의를 통해 선정된 업체를 통해 일괄 구매함.

- 전반적으로 개선노력은 보이나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의 실질적 사업이양, 사업의 투명한 관리,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심사표에 의한 업체평가를 통한 투명성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시·군		◎	○	○		◎	
농업기술센터							
읍·면		○					
사업시행주체	◎		◎	◎	◎		
참여조합	○	○	○	○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사업시행주체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에서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특이한 점은 10여개의 작목반이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임.
- 사업시행주체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시행주체, 참여조직,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재정립의 기회를 갖음으로써 시행주체를 중심으로 한 협력구도를 형성해야 함.

## ② 1,2순위 준수여부

- 지원대상자 접수과정에서 1,2순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였음.
- 그러나, 1, 2순위 구분은 사업에 지원하는 농가와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를 연계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지역통합과 협력적 농가조직화를 위한 연계방안으로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사업 신청단계부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별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우선순위 심사표는 정부정책수용성지표, 유통규모화촉진지표, 기타지표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
- 유통규모화촉진지표 중 '출하약정여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출하약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정부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당연한 부분이며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심사지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계량화된 실적과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연동될 수 있는 심사표로 개선이 필요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심사점수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여부만으로 점수를 주게 되어 있어 변별력이 떨어짐.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42.1%) 81~90점대에 분포하고 있음.
- 심사점수 부여 시 작목반 대표회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여 심사의 객관성이 떨어짐.
- '출하실적 우수자'라는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 출하실적을 조회하여 동점자 심사에 활용한 실적은 인정되나 애초에 동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심사표 개선이 필요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06년 12월 11일 FTA기금사업 추진협의회시 농가를 선정하고 과수발전협의회 심의에서 최종확정하였으나 교부결정 통보가 '07년 3월 16일에 행해졌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년도 말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해야 할 뿐 아니라 교부 결정, 선정 통보 등 관련 행정절차 역시 조기(1월)에 진행하여 영농철 이전에 사업이 개시되도록 노력해야 함.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결과고지, 통보 및 관련서류 구비 미흡.
- 향후에는 선정 후 2개월 경과시점에서 미개시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미개시자에 대해서는 포기서 징구, 관리 명단 등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중도포기자 조치사항에 대한 근거자료 미흡하며, 사업포기 각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사업포기각서를 '08년 4월경에 받았음.
-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부결정서에 패널티 사항을 명기하여 중도포기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예비대상자를 70명 선정하고 미개시자 및 중도포기자 발생시 차순위자에게 자동지원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우수함.
- 향후 미지원된 예비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 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 정 주 체	④ 약 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633	616	97	3,178	3,178	100	연합사업단	1
'06년	830	774	93	4,164	4,164	100	연합사업단	1
'07년	466	461	99	2,305	2,305	100	조합공동 사업법인	5
계	1,929	1,851	96	9,647	9,647	100	-	

- 사업실무자의 시행지침 해석 착오로 우량품종 갱신농가에 대해 출하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지원을 함으로써 약정미체결 농가에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결과를 낳았음.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됨.

##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출하약정서에 정확한 약정물량이 표기되지 않아 사업신청서 상의 사업면적에서 추산된 예상생산량을 출하약정물량으로 하고 있음. 그 결과 약정농가 생산량 대비 약정물량 비율이 100%에 이름.
- 유통규모화, 계열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정부정책 방향에 맞추어 출하약정물량을 정확하게 약정서에 기재하고 농가의 전체생산량 대비 약정량을 파악하여 관리해야 할 것임.

## ③ 출하약정 주체

- 출하약정 주체가 사업시행주체인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 되어야 하나 출하약정서에는 상주시포도발전연합사업단 서상주농협 조합장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출하처가 법인으로 아직 이관되지 못하였음.
- 사업시행주체가 출하약정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일원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④ 출하약정기간

- 5년으로 '계통출하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유통규모화를 도모하고 있음.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계통출하협약서 3조에 “을”이 본 협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하였을 시 향후 3년간 FTA기금지원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주체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나 시행실적은 없음.
- 인센티브는 내부원칙으로는 존재하나 이를 문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며, 실제 적용한 실적은 없음.
- 패널티와 인센티브에 대한 문서화, 공식화가 필요하고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약정 대상자에 사업주관기관인 시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비가림파이프, 필름, 백선철사 등 635백만원의 자재공동구매 실시함.
- 공동구매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점은 우수하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을 추가해야 하며 향후에는 견적서 징구, 입찰에 의한 가격비교, 품질관리 조건 요구 등 실질적 공동구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사업시행주체가 주도하는 공개적인 업체선정과정 없이 작목반회의에서 선정한 업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공지는 없었음.
- 향후 시공업체 선정기준 설정·심사하여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비교 견적, 시공후 농가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농가 만족도 제고 필요하며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품질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기준 점수 미달 업체에 대해 향후 FTA 및 기타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해 배제 등의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A1형 점적관수에 대하여 사업단가를 검토하여 조정하였으나 실무수준의 검토로 진행하여 다소 미흡함.
- 전국 평균의 사업단가와 사업 메뉴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가 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세부 시설 기준과 단가를 조정. 생산시설 설치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비용절감, 농가 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함.

##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 ① 예산집행을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103	5	108		2	9	11	1	96	10%
기타사업		588	713	1,301	230	308	326	864	142	295	66%
<b>합계</b>		<b>691</b>	<b>718</b>	<b>1,409</b>	<b>230</b>	<b>310</b>	<b>335</b>	<b>875</b>	<b>143</b>	<b>391</b>	<b>62%</b>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생산기반조성		1,275		1,275			1,275	1,275		0	100%
거점APC											%
과실브랜드											%
<b>합계</b>		<b>1,275</b>		<b>1,275</b>			<b>1,275</b>	<b>1,275</b>		<b>0</b>	<b>100%</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07년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예산집행율은 62%로 매우 미흡함. 특히 불용액이 391백만원 발생하여 사업 관리가 미흡하였음을 반증.
- 전반적인 예산 집행율 증대를 위해 행정과 시행 주체의 일체화된 사업 관리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FTA기금사업관련 협의회시 예산집행을 독려하였으나, 별도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함.
- 저조한 예산집행율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추진의지 제고, 사업초기 사업미개시자나 사업포기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 인력보강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용자실적이 없으며 확인되는 별도의 노력이 없음.

- 적정예산 수립을 위해 용자예산에 대한 사전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용자 예산 소유 규모를 파악하여야 하며 농가설명회를 통한 예산 활용에 대한 홍보를 통해 예산활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친환경 기자재 공급사업,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사업,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지역특화사업, 고랭지포도특구 홍보시설 지원사업 등 과수농가에 대한 일반적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상주시 지역공동브랜드 '명실상주'에 대한 규격포장박스 지원사업(120백만원)은 사업연관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인정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지적사항은 해당 없음.
- 보고서류 제출 지연(+1.12점) : 미제출 0건(-0점), 지연일 9일(-0.09점), 조기일 121일(+1.21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구성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중앙회, 지역농협 직원 각 1명을 파견 받았으나, 타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기능은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임.
- FTA기금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을 위한 조직 정비를 추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3,178	3,178	8,721	100%
2006년	4,164	4,164	12,445	100%
<b>2007년</b>	<b>2,305</b>	<b>2,305</b>	<b>6,915</b>	<b>100%</b>
계	9,647	9,647	28,081	100%

- 출하약정량대비 출하실적 100%를 달성하고 있으나, 출하약정량이 사업신청 서상의 대상면적을 통해 추정된 예상생산량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완벽하게 약정이 이행되었다고 보기 힘들.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960	1,499	156%	2,031	3,131	154%

-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출하된 물량은 실질적인 공동선별·공동계산, 공동브랜드 사용이 이루어진 것이며, 물량기준 56%, 출하금액 기준 54%의 증가율을 보임.

####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	2,031	3,131	154%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총사업실적은 '06년 2,031백만원에서 '07년 3,131백만원으로 증가함.
- 법인 운영 초기 단계이지만, 사업 규모가 적어 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있음. 지역 물량 결집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화된 판매사업을 강화하여 지역 대표 조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다 규모화된 사업을 지향해야 함.

④ 사업조직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율(B/A)
실적(백만원)	3,131	3,131	100%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실적은 서상주농협으로 들어온 물량 중 공동선별을 거쳐 지역공동브랜드인 '명실상주' 브랜드를 사용하는 물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D-C)/C
960	1,499	56%	2,031	3,131	54%

- 법인의 전체실적이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과 동일함.
- 물량증가율 56%, 금액증가율 54%임.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지역농산물 공동브랜드인 '명실상주'가 '06년 3월에 개발되었음.
- 브랜드 사용 대상품목이 FTA기금사업 품목인 포도, 배, 복숭아 이외에도 꽃감, 사과를 포함하고 있어 FTA기금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개발된 브랜드라고 보기 힘들.
- 하지만, 브랜드사용권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독점적으로 부여되어 있고, 품질관리 책임이 법인에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인정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율(B/A)
사업실적(백만원)	3,131	3,131	신규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실적은 전량 서상주농협 입고 물량에 대해 공동선별·공동계산이 이루어지고, 지역공동브랜드인 '명실상주'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음.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616	1,390	1,851	33%

- '07년 전년대비 33%의 참여조합원 증가율을 보여 우수하나 향후 유통규모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예농가 위주로 참여농가수를 확대해 나가야 함.

⑨ 기타 사업실적

- 기타 사업실적이 미미하여 향후에는 농가의 소득증대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확대가 필요함.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100농가에 대한 농가설문을 실시하여 농가만족도 및 건의사항, 사업개선 방향 의견을 수렴함.
- 사업이해 확대 및 지속적인 농가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사업 개선과 성과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실적이 없음.
- 계획, 집행, 성과 단계의 주요지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도출과 사업 계획을 반영한 평가시스템 개발 및 실질적 환류체계 구축이 필요.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농가조직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워크샵, 유통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회수 4회, 교육인원은 878명으로 교육실적이 인정됨.
- 하지만 상주농업유통혁신 워크숍, 농산물유통교육, 농업경영컨설팅 등 FTA 기금사업과의 연계성이 다소 떨어지는 실적이 함께 들어가 있으며, 사전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추진이 필요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지역공동브랜드인 '명실상주' 품질관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음.
- 이 매뉴얼에 포도, 배, 복숭아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이 들어가 있으나, 향후에는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매뉴얼에 포함시켜 매뉴얼의 범위를 확대해야 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출하실적 증가율이 154%에 달하고 있음.
- 예산 상반기 30.0%, 3/4분기 10.0% 등 예산 조기 집행 실적이 인정됨.
- '07년도 상주시가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제안한 무가온형 포도 비가림하우스시설공사가 FTA지원 중앙정부사업으로 인정되어 '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반영됨.
- '08년도 농식품부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신규 선정됨(총사업비 12억원을 3년간 균분지원)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실질적인 FTA기금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으며, 서상주농협 직원이 타 업무와 겸임하고 있음.
- 행정, 법인, 농협 담당자가 매년 교체됨에 따라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고 업무과약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관리가 제대로 안됨. 그 결과 관련 증빙 서류의 생성, 보관이 제대로 안되어 현장평가 시 제대로 제시가 안된 문제가 있었음. 세밀한 사업관리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 집행을 위한 각종 자료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

30(3-01)	성주과수산업육성
----------	----------

지원품목	(주) 사과 (보조) 참외	선정년도	2004
사업주관기관	성주군	사업시행주체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시군	성주군		
득점현황	합계 (100)	2등급	
	계획단계(10)	B+	
	집행단계(50)	B0	
	성과단계(40)	B+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동사업의 시행주체인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은 9개 지역농협이 출자하여 '06년에 설립되었고 대표 포함 11명의 조직원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음
- '07년 사업실적은 약 112억원으로 '06년 대비 531% 급성장하였으나 이는 과채류인 참외에 대한 실적으로 주품목인 과실류(사과 등)에 대한 사업실적은 전무함
- 과실류를 위주로 한 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시 시너지 효과를 위해 부품목으로 과채류 취급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과채류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 당초 사업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있으며, '06, '07년도 연차평가에서 지적된 과실류 위주 사업추진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또한 '09년도부터는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의 사업취지에 맞게 과실류(사과)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한·미 FTA 관련 지원대책인 시설원예사업 등 신규사업을 활용하여 과채류에 대한 지원대책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 핵심 성과

- 행정-출자농협-법인간 협력체계 구축
- 안정적인 지역협력 기반으로 사업의 외형적 내용적 성과 달성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당초 사업계획의 참여조직인 성주참외원협, 대구경북농협 성주지소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지역내부에서 경합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동사업의 주품목인 사과에 대한 지원 및 취급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사과원물을 상당부분 취급하는 경북농협 성주지소가 조합공동법인과는 별도로 유통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어 당초 사업지원목적을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문제점	개선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사업의 주품목은 사과이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부품목인 참외 중심으로 추진되어 과수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미흡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실류(사과)에 대하여 법인이 적극적으로 취급하여 품목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참여농협-법인-외부전문가 네트워크와 협력 체계는 우수하나 행정이 주도하는 형태의 사업 추진 체계임</li> <li>•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 농가조직이 확대되고 있고 성주참외자조금단체 구성으로 인해 법인과 생산자조직간 유기적 협력관계가 우수</li> <li>• 2개 조직이 법인에 미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li> <li>• 자조금단체와 법인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li> <li>• 법인에 미참여한 2개 조직과의 체계적인 역할분담과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경합관계 해소가 요구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선정 시기 및 방법은 양호하나 예산집행이 참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개시가 참외 품목 특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사업의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참외 중심의 예산 집행을 주품목인 사과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됨</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체간 협력관계 및 역할분담 체계는 매우 우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의 기획과 집행 기능을 더욱 더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행정 및 참여농협은 지원하는 형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되며 사과를 주품목으로 하는 경북능금의 참여가 필요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2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B+</b>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A0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B+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B+
	<b>집행단계 소계</b>	<b>50</b>	<b>B0</b>
집 행 단 계  I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b>14</b>	C+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B+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5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B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B+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b>10</b>	A0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76	
③ 출하약정 주체	2	2.00	
④ 출하약정기간	1	1.0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B+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C+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5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3.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3.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A0
	① 예산집행률	10	10.00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A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B+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F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F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56	
<b>성과단계 소계</b>		<b>40</b>	<b>B+</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A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B0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2.88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3.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3.00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2.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2.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B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0.88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3.00
	⑨ 기타 사업실적	1	0.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B+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B0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C+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33
	② 교육 횟수	1	0.86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B0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C+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3.39	
	비계량	F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B+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계획, 집행, 평가 각 단계별로 학계, 연구, 지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과채류 위주의 자문으로 과실류에 대한 실적은 거의 없고, 운영방식도 사안별 서면 자문, E-Mail 자문 등 의견 청취통로를 다양화하여 활성화를 추구해야 함.
- 농업인 의견수렴 시기가 늦어 동 사업 계획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미흡하였음. 계획단계에서 세부 사업별 수요조사와 제도, 집행시의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 단계에서도 농가 의견 수렴이 가능한 협의회, 위원회, 간담회, 워크숍 등으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 유기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 보조금 청구, 사업평가 등 사업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추진함.
- 지원대상조직간 협의와 회의는 조합공동사업법인 이사회 및 실무자회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었음.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전년도 연차평가에 대한 개선실적 제출이 미흡하여, 특히 과실류 위주의 사업추진 권고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본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함.
- 다만, 1,2순위 구분평가, 심사표 개선, 출하약정기간 등은 '08년 사업부터 일부 개선하였음.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이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정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적정함.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시·군			○	○		○	
농업기술센터							
읍·면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합	○	○	○	○	○		

#### ② 1,2순위 준수여부

- 사업신청서와 우선순위 심사표에서 1·2순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공동선별·공동계산 점수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1, 2순위를 구분 평가하려는 노력은 있음.
- 사업 신청단계부터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농가를 1순위로 구분하여 분리·평가함으로써 농가조직화 및 유통규모화를 위한 확고한 기반만련이 필요하며, 농가 참여도 제고와 책임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행주체 판매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심사표의 평가항목은 공동선별·공동계산실적, 수출실적, 유통물류개선노력,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 연령, 영농규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대체로 정책수용성 및 유통규모화 촉진을 반영하였으나, 동점자 처리기준 중 고령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나 기 지원받은 농가에게 감점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 또한, 사과와 참외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심사표 작성이 요구되고 영농규모화와 참여농가의 조직화를 위해 전업농여부, 농업인연령, 친환경농업, 농업후계자 유무 등을 반영하는 것이 요구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점수대별로 신청자가 고루 분포되어 일정부분 변별력은 확보하였으나 고령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나 기 지원받은 농가에게 감점을 적용하는 동점자 처리기준은 개선해야 함.
- 표준 양식에 따라 심사표를 개선하되 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항목과 배점을 조정하여 적용해야 함. 또한 심사과정도 주관성을 배제하고, 행정/시행주체 공동으로 현장심사와 순위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06. 12. 12 농정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보조금교부결정은 4월에 시행하는 등 예산조기집행을 위한 사전조치가 미흡하므로 향후에는 1월에 보조금교부결정 및 통보를 실시하여 영농철 이전에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사업대상자 선정 4개월 후인 '07. 4월에 미개시자를 조사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보조금교부결정이 4월에 이루어졌으므로 조사시기가 부적절하며, 미개시자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집행은 4/4분기에 전액 집행되어 조사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 미개시자 조사를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고, 관련 조사 결과를 문서화함으로써 집행 문제 요소를 사전에 해소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함. 참여농협과 읍면 합동으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한 점은 바람직한 방식으로 이해.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출하약정서상에 중도 포기자에 대한 향후 FTA기금 사업배제, 자체사업 1년간 자금지원 중단 명시하였음.
- 지원대상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과 대상자 선정과정이 우수하였기 때문에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았음.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예비대상자를 65명 선정하였으나 미개시자 및 중도포기자가 없어 활용한 사례는 없으나 다음년도 사업으로 예비대상자를 우선 지원토록 한 점은 행정 및 농가의 투자 예측성을 높인 것으로 우수한 사례임.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743	697	93.8	20,081	17,603	87.7	농협연합 사업단	1
'06년	344	344	100	15,183	13,513	89	"	1
'07년	324	324	100	9,471	8,334	88	조합공동 사업법인	5
계	1,411	1,353	97.9	44,735	39,450	88.2	-	

- 사업신청시 출하약정을 의무화하여 지원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약정 체결하여 양호함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07년 약정농가 생산량 대비 88% 출하약정 체결하여 적정함.

③ 출하약정 주체

- 시행주체인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과 출하약정을 체결하여 생산과 유통의 계열화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우수함.

- 다만, 조합공동사업법인이 APC 운영조직으로서 과실생산·유통의 통합 창구역할을 강화하여야 하며, 출하약정의 실질적 이행과 참외 이외의 과실류(사과)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함.

#### ④ 출하약정기간

- 출하약정 기간을 5년으로 체결하여 적절하며, 유통규모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음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인센티브로 "배당금"을 가산·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당·장려금 등 금전적 보상 이외에 농가 참여를 강화할 실효성 있는 출하우대책을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하약정 불이행 농가에 대해 “성주군 참외산업발전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서 1회 위반시 당년 지원 중단, 2회 위반시 3개년 지원 중단 등으로 일관되게 3년간 지원 배제를 규정한 시행지침과 다소 다른 내용으로 적용되고 있고, 과실류(사과)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 개선이 필요.
-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 관리와 지원방안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과 시행주체 모두의 강제력 있는 규정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됨.

###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시설하우스 개선사업용 파이프를 100% 일괄 구매하여 자재의 품질은 확보하였으나, 농협중앙회 계통구매를 활용하여 구입 비용절감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은 미흡함
- 시행주체와 참여조직이 협력하여 지역내 수요가 많고 품질관리가 필요한 품목으로 일괄 구매를 확대하고, 교섭력을 바탕으로 단가와 품질 개선, 감독 요구를 강화함으로써 농가 실익 증대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입찰지침서(규격, 사양, 안전성 등)에 의거하여 추진협의회 실무위원이 00 사업에 대한 4개 업체를 평가하여 모두를 선정.
- 업체를 직접 현장 방문하여 시공능력 등을 확인·평가하여 선정된 점은 우수하나, 입찰지침서의 평가항목은 개선이 필요하고 평가위원은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 시설하우스 개선사업의 시공업체만 평가하였으나, 외부전문가로 업체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세부사업별 견적서, 지방서 등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시공실적, 농가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업체를 선정,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 중 파이프 교체사업에 대한 지원단가를 추진협의회 의 검토를 통해 하향 조정하여 지원(당초 25,000천원/ha → 변경 18,0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	-	242	242	-	-	242	242	-	-	100%
기타사업	-	-	1,586	1,586	-	-	1,586	1,586	-	-	100%
<b>합계</b>	-	-	<b>1,828</b>	<b>1,828</b>	-	-	<b>1,828</b>	<b>1,828</b>	-	-	<b>100%</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율은 100%로 매우 우수하나, 4/4분기에 집중 추진된 점은 개선이 필요함. 영농철을 고려하되,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참여조직과 읍면직원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통해 대상농가를 독려하여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으나, 4/4분기에 집중되어 집행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용자가능여부 조사 의뢰 등을 실시하여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음.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반사필름 및 착색봉지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동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우며, 대부분 참외를 중심으로 지원되어 향후에는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자체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지적사항 없음.
- 보고서류 제출지연(-0.56점) : 미제출 1건(-1점), 지연일 38일(-0.38점), 조기일 82일(+0.82점)
- 보고서류 미제출과 지연 제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와 관계자의 주의가 요망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은 '06.6.29.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실질적인 사업조직으로 FTA기금사업 및 마케팅주체로 역할을 하고 있음.
- 정규직 8명, 파견직 3명 등 총 11명으로 사업부서를 구성하였으나, FTA기금사업과 관련한 업무분장이 미흡하고, 사업규모에 비하여 사업관리 인력이 부족하므로 업무분장의 효율화와 참여조합과의 역할 배분을 철저히 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농협 이외 대구경북농금 성주지소, 성주참외원협이 불참하여 사업경합 해소 및 지역의 유통주체로서의 역할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속적인 협의와 참여 확대가 필요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20,081	17,603	29,338	87.7%
2006년	13,513	13,029	21,715	96.4%
<b>2007년</b>	<b>8,334</b>	<b>8,000</b>	<b>14,595</b>	<b>96.0%</b>
계	41,928	38,632	65,648	92.1%

- 출하약정 이행율은 96%로서 우수하나 사과 농가의 이행실적은 전무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함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1,066	5,800	444%	1,778	11,217	531%

- 법인설립 후 조직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06년 대비 '07년 사업실적이 급증하여 매우 우수하나 과실류에 대한 실적이 전무하여 개선이 필요함

####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1,143	1,778	11,217	531%

-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이 전년대비 531% 증가로 매우 우수하나 과실류에 대한 실적이 전무하여 개선이 필요함

####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11,217	3,301	29%

- 사업실적 대비 공동계산실적 비율이 29%로 높고, 규모도 33억에 달하고 있어 규모화도 일부 달성하고 있음.

- 총사업규모의 확대와 함께 공동선별, 공동계산 규모도 확대함으로써 단순 판매에서 탈피한, 본격적인 시설(APC)활용과 마케팅 성과를 도출하도록 해야 하며, 과실류에 대한 취급확대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340	1,400	312%	658	3,301	402%

-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이 전년대비 402% 증가로 매우 우수하나 과실류에 대한 실적이 전무하여 개선이 필요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참외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가 '06년 11월에 '참별미소'를 공동 브랜드로 등록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으나 과실류에 대한 공동브랜드는 준비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마케팅 조직의 위상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브랜드 소유권을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이관하고 통합마케팅 추진을 위한 사업 시스템을 갖추는 등 실질적인 지역 브랜드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율(B/A)
사업실적(백만원)	11,217	3,301	29%

- 공동선별·공동계산하는 참외만 '참별미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품목, 주체 활용을 감안한 하위 브랜드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2,976	2,976	3,815	28%

-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은 매우 우수하나 유통사업 참여 농가수에 비해서 사업실적이 오히려 낮은 수준임. 출하약정이행율을 제고와 정예농가, 정예작목반 육성을 중심으로 농가조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함.

### ⑨ 기타 사업실적

- 과일류 이외 타 품목 판매사업 실적이 없으며, 농자재판매사업, 포장재 공동 구매사업 등은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가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실적으로 보기에 어려움.
- 장기적으로 법인의 사업영역 다양화 및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법인의 조직을 확대하여 직접 각종 구매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자체 설문조사에 의하면 참여농가 85%가 만족하고 있어 사업 추진 성과가 긍정적임.
- 하지만, 사과와 참외 품목별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농가를 분리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 사업 대상농가와 일반 농가를 구분하여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됨.

###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08년 사업에 반영함.
- 특히, '07년 자체평가 및 설문조사에서 지적된 과수에 대한 지원 부족을 '08년에 개선하여 과수분야 지원예산을 확대함.
- 체계적인 환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평가방법, 평가지표, 평가자, 평가시기 등을 개선하여야 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참외 재배기술 중심의 농가교육만 추진되어 과수, 유통, 조직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농가교육은 미흡함.
- 향후 농가교육은 법인의 사업목표 달성에 적합하도록 교육을 기획하고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되고 조직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해야 함.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품질관리매뉴얼은 부품목인 참외만 있고 주품목인 사과에 대해서는 없으므로 사과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함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출하증가율은 매우 우수(531%)하나 참외 품목에 국한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참외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는 매우 강한데 비해 과실류(사과)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와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현저히 낮아 보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31(1-05)	안동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사과 (보조)	선정년도	2004
사업주관기관	안동시	사업시행주체	대구경북능금농협 안동지점
참여시군	안동시		
특점현황	합계(100)	3등급	
	계획단계(10)	C+	
	집행단계(50)	D+	
	성과단계(40)	C+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안동은 사과재배 면적 2,690ha, 68,763톤으로 전국적인 주산지임. (통계연보, '06년말 기준)
- 도매시장, APC 등 유통 기반을 갖추고 있어, 생산시설 현대화와 기반정비 등에 사업을 집중.

### □ 핵심성과

- 전통적 주산지이며 강력한 지역 인지도를 확보, 지리적 표시제 추진으로 특성화를 추진.
- 시행주체인 대구경북능금안동지점은 홈쇼핑 판매, 안심사과 상품화, 대만 및 일본 사과 수출 등에서 안정적 성과를 내고 있음.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 사항

- 1시, 1주체로 단순한 사업유형 : 시행주체가 대부분의 기능을 전담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행정과 협력/결합함으로써 사업효과 향상을 추구해야 함.
- 능금농협 안동지점 사업관리가 본점(정책관리, 지도), APC(판매)로 분산되어 있음. 전담직원 배치 등 우수한 사례이나 사무실 기능 조정 필요.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배면적 축소와 고품질화 추진 목표”와 달리 매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확대되고 있음</li> <li>도매시장 물량 확대 등 사과 집산지 역할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부권 및 경쟁지역 사과의 특성화/차별화에 대응하여 기존 주산지의 명성을 유지·발전 시키기 위해 브랜드화와 고품질화 노력이 필요</li> <li>APC 시설의 지속적 보완과 효과적인 도매시장 연계 추진 필요</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단이 구성되지 않았으며, 행정과 시행주체간, 농가조직간 협의가 체계화 되지 않음</li> <li>출하약정 이행실적이 극히 미흡: 약정농가가 206농가 중 3농가 출하, 4,848톤 중 8.7톤 출하</li> <li>매취사업 중심의 사업 운영으로 리스크 노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일 시, 단일 주체로 단순하나 지역 생산규모와 사업범위가 크기 때문에 시, 조합간 협의 강화와 농가대표조직을 포함하는 사업추진 체계를 적극 구축해야 함</li> <li>기금지원에 따른 출하약정의 정상화와 농가조직 강화로 안정적인 원물 조달</li> <li>리스크 보완을 위한 기금 적립과 출하처 물량 분산 등 안전장치 마련 필요</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집행률이 70%로 매우 미흡</li> <li>시행 주체 지원 강화, 사업 단가 조정, 집행 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개선 필요</li> <li>신청서, 심사표, 약정서 등 표준양식으로 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서, 심사표, 약정서 등 행정 및 사업추진 관련 기본 제도 정비 : 지역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li> <li>시행주체나 시공업체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 행정과 시행주체 협력의 예산 집행 강화</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동시-대구경북농협안동지점 단일사업으로 단순하며, 타 농협의 사과취급량이 적어 광범위한 지역협력 필요성 낮음.</li> <li>안동지점이 신용지점, APC, 경제사업소로 3개 사무실 운영하여 사업관리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사업소에 전담책임자와 직원을 배치하여 관리하는 점이 매우 우수.</li> <li>다만, 3개 사무소 분리에 따른 보완 조치 필요 : 책임자간 협의를 활성화, 지도조직과 판매조직 단일화 추진 요망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3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b>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C0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C+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D+</b>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b>14</b>	C0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B0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1.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C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C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1.0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1.00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b>10</b>	C+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0.66	
③ 출하약정 주체	2	2.00	
④ 출하약정기간	1	0.6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D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5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5	0.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3.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C0
	① 예산집행률	10	7.04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D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D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0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0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1.38	
<b>성과단계 소계</b>		<b>40</b>	<b>C+</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C+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D+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0.01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1.52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3.00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1.78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2.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B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0.59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1.54
	⑨ 기타 사업실적	1	1.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C+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C0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C+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65
	② 교육 횟수	1	1.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C0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C0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1.61	
	비계량	C+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C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하지 않았으며, 산/학/연/관 협의회로 연1회 단순 운영하였음.
- 과수발전협의회를 외부전문가와 안동지역 과수산업 주체가 참여하는 계획 수립,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협의체로 활성화해야 함. 또한 지역 과수산업의 고품질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관리와 재배기술 향상, 효과적인 시설 도입 등 정례화 된 전문가 자문을 추진해야 함. 특정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개별면담, 전화,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농가의견 수렴을 통해 목적 및 관정 확대 등 요구가 일부 사업에 반영되었으나,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 수요 조사가 체계화되지 않았음. 농가조직 대표자 간담회와 체계적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농정과장과 지점장이 참석하는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였으며, 업무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실무 사안을 처리하여 실제 사업 집행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음.
- 그러나, 협의체가 정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FTA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판매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협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회의체를 제대로 구성하고 정례화하여 의사결정을 명확히 하고, 효과적 사업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07년 연차평가에서 협의회 활성화, 출하약정 체계화, FTA사업 전담조직 구성 등을 요구.

- 표준 양식에 따른 출하약정 체계화, 대구경북농금 안동지점에 FTA사업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개선 노력과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판단됨.
- 협의회 운영 활성화, 농가 의견 수렴을 강화 등 일부 사업체계 재정비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시·군		○	○	○		○	
농업기술센터							
읍·면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합							

○ 주관기관

- 시행주체인 안동지점이 현장심사, 우선순위 부여 및 추천, 점검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적절히 역할 분담하고 있음.

## ② 1,2순위 준수여부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농가를 1순위로 접수. 해당 농가는 수출단지 농가이며, 우선 지원 대상으로 편성하여 심사함으로써 적절하게 처리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07년도 사업 적용 심사표는 연령10, 영농경력10, 전업농여부 10, 사업대상 면적 15, 추진의지 및 융자가능성10, 기반시설 및 보유 현황 10, 나무수령 15, 농림사업참여도5, 과원입지조건10, 종합평가5로 구성.
- 농가 특성, 기반, 입지, 정책 수용성 등 종합적인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운용하였으나 공동브랜드 활용, 친환경재배 등 규모화와 품질관리 강화에 대한 지표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농식품부가 제공한 표준 양식으로 개선 활용하되, 지역 실정과 품목에 적합하도록 항목과 배점을 조정하여 적용해야.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07년 사업은 240농가가 신청하여 234농가를 선정. (97.5%)
- 심사표가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 심사결과는 71~80점대에 35.8%가 몰려 충분한 변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내 생산시설 개선 수요를 충실히 파악하여 사업 신청농가를 적정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고, 농가 사업 실적과 연계하여 점수를 차등 부여함으로써 변별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심사과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07.2.15. 농정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년말 이전에 사업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대상자 선정 후 농가통보는 3.12.에 시행하였음. 4.1~4.5.간 시행주체의 직원들이 전화로 사업개시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미개시 대상자를 파악하거나, 조치한 실적이 없음.

- 시행 주체만의 노력이 아니라 행정 차원의 집행 확인 노력이 필요하며, 행정과 시행주체가 협력하여 선정 통보후 2개월 경과 시점에 일제 조사(현장 방문, 확인 포함)를 실시하여 조기착공을 유도하고, 중도 포기, 사업 여건 미흡 등 문제 발생 사안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함.

###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농가설명회 자료 등 사업대상자를 상대로한 교육, 통보사항에 중도포기자의 3년간 지원배제를 명시하였음. 보조금교부결정서, 농가통보 문서 등 공식 문서에도 중도포기시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배제를 명시하여 농가들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중도 포기 농가가 세부 사업별로 2명~10명씩 총25명이 발생하였고, 3년간 FTA기금지원사업, 농협 경제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지원 제외 조치를 취하여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

###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농정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와 후순위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그러나, 사업 규모에 비교하여 신청자 확보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포기자 물량 재배정 단계에서 예비대상자 활용실적이 미흡하고, 추가로 사업 대상 농가를 추천·선정하여 배정하였음.
- 사업 신청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미개시 및 중도포기 물량에 대한 대체농가 선정에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대상자의 적절한 활용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미 지원된 예비대상자는 다음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 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 출하약정을 전제로 FTA기금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100% 약정을 체결함.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 정 주 체	④ 약 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89	89	100	2,529	1,264	50	사업시행 주체	1
'06년	221	221	100	5,964	2,982	50	사업시행 주체	3
'07년	234	234	100	6,226	4,871	78.2	사업시행 주체	3
계	544	544	100	14,719	9,117	61.9	-	

- '07년 약정농가 생산량 6,226톤 대비 약정 물량은 4,871톤으로 78.2%임.
- 당초 50% 약정 기준에서 80%로 상향 조정한 결과로 이해되나, 생산량대비 약정물량이 80%에 미달하고, 출하약정이행률도 매우 저조하므로 지원사업이 시행주체 중심의 판매사업 규모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출하약정의 실질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③ 출하약정 주체

- "안동APC이용협약서"로 체결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대구경북농협안동지점으로서 시행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였음.

④ 출하약정기간

- 이용협약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출하약정의 실질화를 전제로 5년 장기 출하 약정을 운영해야 함.
- 5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행주체 중심의 사업 규모화와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판매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약정서에 미이행농가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출하약정 미이행시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 제외를 명시.
- 출하약정이 형식화되어 이행실적이 극히 미흡하나, 미이행농가 파악, 제재 사례 등 출하 확대를 노력이 전혀 없음. 기금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출하약정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함.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키낮은 사과원 갱신사업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주대, 하부피복제 등 690백만원 공동구매 실적이 있음. 구매방식은 대구경북능금농협 본점에서 일괄구매계약 체결하여 시행.
- 대구경북능금농협 차원의 공동구매와 우량 자재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안동지점에서도 수요가 많고 품질관리가 필요한 주요 자재를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본점과의 협력, 공동구매 추진 노력을 강화해야 함.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06년 3월 시공업체를 단순 선정, 공지하였으나, '07년에는 시공업체 선정, 공지를 하지 않는 등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함
- 시공업체 선정은 사업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하여 공모, 경쟁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견적서, 시방서 등 기초 자료와 전년도의 사업성과를 검토하여 매년 수행해야 함.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산학관연 협의회에서 안동 지역 현실에 맞도록 고정식 스프링클러를 농림사업 지침의 미니스프링클러에 준하여 사업메뉴에 포함시키도록 의결하여 시행 노력이 인정됨.
- 다만, 지역 여건과 맞지 않는 단가와 세부 지원 사항이 제시되지 않도록 현실에 부합하는 세부 시설 기준과 단가 검토 범위를 확대해야 함.

##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 ① 예산집행을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879	792	609	2,280	548	411	412	1371	107	802	60.2%
기타사업	333	950	114	1,397	592	356	237	1185	128	84	84.8%
<b>합계</b>	<b>1,212</b>	<b>1,742</b>	<b>723</b>	<b>3,677</b>	<b>1,140</b>	<b>767</b>	<b>649</b>	<b>2,556</b>	<b>235</b>	<b>886</b>	<b>69.5%</b>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생산기반조성	0	1,093	0	1,093	43	164	886	1093	0	0	100%
거점APC											%
과실브랜드											%
<b>합계</b>	<b>0</b>	<b>1,093</b>	<b>0</b>	<b>1,093</b>	<b>43</b>	<b>164</b>	<b>886</b>	<b>1093</b>	<b>0</b>	<b>0</b>	<b>100%</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생산시설현대화 예산집행율은 69.5%로 매우 미흡한 수준임. 전년의 39.2%와 비교하면 다소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하며, 특히 품종갱신 등의 부문에서 불용액이 8억이상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 예산 집행 원활화를 위해 배가된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키낮은사과원갱신 등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수요 파악을 강화하여 예산 규모 조정과 집행관리 노력을 배가해야 함.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설명회를 통해 절차를 설명하는 수준에서 시행하고 있어 미흡함.
- 사업 안내 이외에 행정과 시행주체 공동의 미개시자 확인, 집행 독려,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용자 예산은 1.8%만 집행되는 수준으로 극히 저조함.

- 용자 선호가 떨어지는 문제는 있으나, 사전에 용자 수요를 파악하여 적정 예산을 수립하고, 실제 자금이 필요한 농가는 사전에 용자가능성을 확인하고, 사업 집행 시기에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시행주체의 신용부문과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사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착색방지, 반사필름 지원과 수분용 꽃가루 지원, 저온저장고 지원, 과실장기저장제 지원, 과원 전용 농기계 공급 등 과수산업 발전을 위한 자체 사업 지원.
- FTA기금지원사업과 직접적인 연계가 미약하나, FTA기금사업 대상자를 우선 선정, 우대하고 있음.
- 각종 과수 지원 사업에서 시행주체 중심으로 규모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1) 생산 부자재 등 농가 직접 지원과 2) 홍보비 지원 등 시행주체 지원을 구분하되 사업 통합과 규모화를 위해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 조건 등 연계장치를 강화해야 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외부 감사, 자체 점검 사항 없음.
- 보고서류 제출 지연 (-1.38) : 미제출 2건(-2점), 조기보고 62일 (+0.62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미제출 사항이 없도록 담당자와 관계자의 노력이 필요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품목조합으로서 공공유형의 APC를 운영하고 있음.
- APC의 경우 안동지점의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의 독립 회계, 독립채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음. APC 운영 체계화를 위해 독립 회계를 실시하고 내부 조직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1,264.7	215.1	281.6	17 %
2006년	2,982.2	279	588.6	9.4 %
<b>2007년</b>	<b>4,848.9</b>	<b>8.7</b>	<b>14.9</b>	<b>0.1 %</b>
계	9,095.8	502.8	885.1	5.5 %

- 약정량 4,849톤에 비교하여 출하량은 8.7톤으로 극히 미미하여 FTA기금지 원사업에 의한 출하약정이 시행주체의 판매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시행주체는 매취, 수탁을 병행하면서 홈쇼핑, 대형유통업체 직거래 등 사업 활성화 노력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계획적인 판매·마케팅 추진을 위해 출하약정의 실질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정예 농가 육성, 공동선별·공동계산 유통형 작목반 육성, 출하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 패널티 강화 등 다각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함.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9,760	9,993	2.4 %	11,401	13,432	17.8%

- 출하증가율은 물량은 2.4%로 적지만, 금액은 17.8%로 증가하였음. 사과와 전반적 시세 상승과 대형유통 직거래, 홈쇼핑 등 마케팅 확대 노력의 결과로 이해됨.

####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10,905	11,401	13,432	17.8 %

- '07년 안동지점의 출하액은 134억원임. 74억원이 매취 (홈쇼핑 판매)이고 59억원이 수탁이나 전량 APC 입고/처리한 실적임.
- 안동지점은 세척사과("안심사과")와 홈쇼핑판매, 대형유통업체 판매 등 직거래 유통이 활발하고, 수출 등 실질적인 유통사업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13,431	1,775	13.2 %

- 공동선별·공동계산은 수출물량에 대해 시행하였으며, 1,775백만원 13.2% 수준임.
- 매취 중심의 사업운영으로 직거래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나, APC를 기반으로 농가 책임성과 리스크 분담이 가능한 공동선별·공동계산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체계적인 유통형 작목반 육성 노력이 필요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D-C)/C
349	858	145 %	588	1,775	201 %

- '07년은 안동시의 적극적인 사과수출 확대 지원에 따라 수출 물량이 급증하였기 때문에 공동선별, 공동계산 실적도 급증하였음.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 율(B/A)
사업실적(백만원)	13,432	2,646	19.7 %

- "안동사과", "안심사과", "안동산사과"를 브랜드로 활용하고 있으나 브랜드가 분산되어 있고, 품질관리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아 고유 브랜드를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이미지화에는 미흡함.
- 대형유통업체 직거래가 활성화되어 PB출하가 많기 때문에 공동브랜드 실적이 다소 저조함.

- 전통적인 주산지로서 지역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제를 추진하는 등 노력이 있으나, 품질관리를 철저히하고, 소비자 홍보와 자체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통해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이 추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741	806	889	10.3 %

- 실제 판매사업 참여 농가(=출하실적이 있는 농가)수는 '06년 806농가에서 '07년 889농가로 증가하였음.
- 출하 농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품목조합으로서 정예화·규모화된 정예 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추가되어야 함.

### ⑨ 기타 사업실적

- 가공상품(사과쥬스 퓨레) 매출액이 '06년 182백만원에서 274백만원으로 50.5% 증가하였으며, 농자재 판매도 '06년 9억7천만원에서 14억3천만원으로 47.4%증가. 이외에 포장재, 농약, 비료 등의 사업실적도 향상되었음.

###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07년 연말,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안동지점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를 파악. 보조금 청구 서류가 복잡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조합에서 서류대행을 적극적으로 지원.
- 소수의 농가를 대상으로 한 단순한 설문조사 평가를 지양하고, 보다 체계화되고 광범위한 농가 의견 수집이 필요함.

###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시행주체인 안동지점의 업무위원회에서 자체 평가를 실시.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간단한 평가 보고서 작성.
- 지원농가, 행정, 시행주체 등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대규모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차년도 사업 개선 과제를 발굴, 활용할 필요가 있음.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안동지점 자체로 재배기술 교육을 주로 시행하였음.
- 일상적인 교육과 차별성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됨. 시행주체 중심으로 출하 규모화와 조직 몰입을 강화할 수 있는 유통, 마케팅, 조직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농업기술센터의 동계영농교육 교재를 품질관리 매뉴얼로 제시하였음.
- 교육용 교재에서 탈피하여, 실제 농가 재배와 시행주체의 사업추진에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추가적으로 수확후 관리, APC 운영, 상품화 등 보다 체계적인 품질관리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GAP와 IPM 등 사업과 연계한 품질관리 매뉴얼 관리가 필요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실적보고서에는 상반기 예산집행을 31.0%(1140/3677), 3/4분기 20.8%(767/3677)로 우수하나 집행실적 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인정하지 않음.
-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파워브랜드 대상 등 외부 인정이 우수하나 지역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스템 정비가 필요함.
- 시행주체 중심으로 홈쇼핑 대량판매, 수출 추진 등 판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있음.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체계적인 생산유통지원사업 관리 노력과 예산집행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으므로 개선 노력이 필요함.

32(1-09)	영덕과수육성계획
----------	----------

지원품목	(주) 사과 (보조) 배, 복숭아	선정년도	2007
사업주관기관	영덕군	사업시행주체	대구경북농금농협 영덕지소
참여시군	영덕군		
득점현황	합계 (100)	4등급	
	계획단계(10)	C0	
	집행단계(50)	D+	
	성과단계(40)	D+	

## 1. 총괄

### 사업체 일반현황

- 사과 440.6ha, 7,500톤 복숭아 226.9ha 4,340톤으로 비교적 규모가 적음.
- '07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어 미약정 농가에게 사업을 지원하는 등 시행착오가 있었음.

### 핵심성과

- 사과 노목 갱신과 키낮은 과원 조성으로 생산기반 확충.
- 규격화, 상품화가 미흡하고 농가개별출하, 노변판매가 많은 상황에서 출하 체계화와 지역마케팅의 인식이 확산됨.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대구경북농금농협 영덕지소 시행주체이외에 영덕복숭아영농조합이 참여하였으나, 영농조합은 직원이 없고, 폐업 상태임.
- FTA기금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신활력사업(보조지원)으로 동시에 진행하여 보조율 격차에 따라 사업 포기가 발생하는 등 사업 기획과 관리에 불철저함. 집행 상황을 검토하여 예산 조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과, 복숭아, 배 등 다양한 과수 품목이 있으나 재배면적이 적어 규모화에 미흡</li> <li>농협을 통한 계통출하가 미흡하고 개별출하, 노변판매가 활성화 되어 마케팅 추진 곤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공용복숭아 품종 개선과 사과 특성화를 위한 노력이 우선 추진 되어야 함</li> <li>전통적 재배 기술에서 탈피, 고품질화 재배기술의 확산 필요</li> <li>소규모성을 극복하기 위한 틈새 시장 개척과 다양한 마케팅 전략 개발 필요</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일 군, 단일 주체로 단순하나 공식적인 지역협의체와 행정, 농협, 농가조직이 참여하는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지 않음</li> <li>출하약정이 "청송APC"출하를 조건으로 하여 실질화 되지 않음 ('08년 표준 양식으로 개선)</li> <li>영덕지소는 직원 6인이 근무하는 소규모 조직으로 지도, 마케팅 사업화에 미흡 (판매실적 49억원)</li> <li>유통 시설을 갖추지 않아 선과장을 임대 운영함으로써 공동선별/공동계산 등 사업추진이 곤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덕군 지역 과수산업 발전에 대한 목표, 전략 계획 검토.</li> <li>내부 역량과 H/W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독자적 사업화 보다는 타 시군 협력사업으로 편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li> <li>유통사업 농가참여, 약정 이행, 브랜드 출하, HW 확보 등 판매사업 전반의 활성화와 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사업으로 성과 및 과정 관리가 미흡 (약정 체결 미흡, 시공업체 선정 미흡 등)</li> <li>3억2천만원 소액 예산 집행으로 행정, 시행주체 모두 집행 조직을 완비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 단계부터 조직간 역할 분담을 시행하고, 효과적 집행 관리를 위해 의견수렴, 모니터링을 활성화해야 함.</li> <li>지자체 자체사업 및 타 사업과의 중복, 경합이 일어나지않도록 주의해야 함.</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덕지소의 조직규모가 적고, 출하 시스템을 건립중인 청송APC로 구상하여 문제 요소로 파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덕 고유의 브랜드화와 집중화, 특성화를 추구하되 규모화가 미흡할 경우 사업계획의 전면적 재검토와 권역 조정이 필요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4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0</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D0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C0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D+</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C0</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C+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C+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B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1.0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1.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1.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F</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60	
③ 출하약정 주체	2	1.00	
④ 출하약정기간	1	0.2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2.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0.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B+
	① 예산집행률	10	10.00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B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C+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90	
<b>성과단계 소계</b>		<b>40</b>	<b>D+</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C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D0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3.00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0.94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1.50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0.53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0.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C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0.9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3.00
	⑨ 기타 사업실적	1	0.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B0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F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D+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14
	② 교육 횟수	1	1.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C0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F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0.96	
	비계량	D0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C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지 않았으며, 의사결정을 위한 심의회로 운영하였고, 사업대상자 선정 등 행정 절차 수행을 위해 형식적으로 1회 운영하였음.
- 농가 의견 수렴도 설문조사, 토론회 등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1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한 실적만 있음.
- 사업초기에는 추진 방향 설정과 전략 과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농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므로, 외부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체계적인 농가 의견수렴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행정기관과 시행주체가 단일하여 일상적 회합과 업무협약이 진행되었으나 정규화된 회의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였음.
-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회의체를 제대로 구성하고, 회의의 정례화와 안건 의결과 적용을 정규화할 필요가 있음.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신규사업으로 기존 지적사항이 없음.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영덕군		○		○		○	
읍·면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합							
작목반							

○ 주관기관

- 시행주체인 영덕지소가 신청서 접수, 현장심사, 순위추천, 점검 등 사업 전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적절히 역할이 배분되었음.

#### ② 1,2순위 준수여부

- '07년 사업자의 경우 신청서, 지원 조건 등에서 1순위와 2순위를 구분하지 않았음.
- 사업 신청단계부터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약정" 농가를 1순위로 구분하여 분리·평가함으로써 농가조직화 및 유통규모화를 위한 확고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농가 참여도 제고와 책임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행주체 판매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사업주체 구성원 여부(5), 사업주체 참여실적(10), 농가주연령(15), 과원규모(10), 사업규모(10), 사업장위치(10), 기반시설(20), 사업신청연차(10), 과목수령(10), 사업의지(5), 사업별 추가심사(10) 등 비교적 체계화된 심사평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였음.
- 정책수용성, 유통규모화 촉진,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지표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표준 양식을 조정하여 적용해야 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137농가 신청 중 40농가를 선정하여 29%의 선정율을 보였으며, 세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가 전체 점수대로 분포하고 있음.
- 동점자의 경우 연소자를 우선하여 순위 부여함.
- 신청량과 비교하여 선정량이 적기 때문에 조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고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표 적용이 필요함. 사업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평가항목의 배점을 단계적으로 부여할 경우 동점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적 과 연계하여 점수를 차등 부여함으로써 변별력을 강화해야 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07.1.25.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였고 동년 2.13. 보조금 결정 통보를 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를 사업 시행 전년도 말 이전으로 앞당겨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기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선정후 2개월, 교부 결정 1개월 경과시점인 3.15.~3.19. 시행주체 직원들이 전화 및 현장방문으로 미개시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경고 조치 시행.
- 미개시 농가에 대해서는 상황을 고려하되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면 단순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포기 조치하여 집행률을 제고하는 원칙을 적용해야 함.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중도포기시 3년간 FTA기금지원사업에서 배제됨을 공지. (시행주체가 사업 신청농가에게 선정 여부를 통보하고, 통보문에 중도포기시 패널티를 명시)
- 중도포기자의 사업물량을 예비대상자에게 배정하고 해당자를 3년간 FTA기금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여 적절하게 조치하였음.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추진위원회에서 사업대상자 선정당시 후순위자로 예비대상자를 선정, 공지 하였음.
- 포기물량 재배정시기가 늦어 후순위 예비대상자가 사업 시행을 기피하였기 때문에 신규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 예비대상자는 행정 및 농가의 투자 예측성을 높일 뿐 아니라 미개시자 및 중도포기자 발생시 대체농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비대상자 지정과 운영을 엄격하게 진행해야 함.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분	①약정농가			②약정물량			③약정주체	④약정기간(년)
	지원농가 수(A)	약정농가 수(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	-	-	-	-	-	-	-
'06년	-	-	-	-	-	-	-	-
'07년	40	34	85	408	326.4	80	대구경북농금 농협영덕지소	1
계	40	34	85	408	326.4	80	대구경북농금 농협영덕지소	1

- 출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농가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하였음. (현장실사 시 사례 확인.) 약정농가는 34농가인데 반하여 사업지원 농가는 40농가임.

- 출하 약정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전제 조건임. FTA기금 생산유통지원사업은 단순하게 농가들의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주체 중심의 규모화와 지역 마케팅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므로 출하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농가는 지원하지 않아야 함.

##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출하약정에 물량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보고서에 표시한 약정농가 생산량, 약정물량 등은 명확한 수치가 아니고, 사업신청면적을 기준으로 약정물량과 생산량을 환산하여 제시한 수치임.
- 출하약정서에는 1) 농가 재배면적 및 예상 생산량 2) 출하약정 물량 3) 약정기간 5년 4) 출해주체가 표시되어 생산량과 약정량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운영되어야 함. 이를 통해 농가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행주체의 판매사업 계획 수립과 운영의 효율화를 추구해야 함.
- 표준양식을 적용하여 출하약정을 정규화하고, 생산물량과 약정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정상적인 계약출하 방식을 도입해야 함.

## ③ 출하약정 주체

- 시행주체인 대구경북농협영농협 영덕지소와 약정 체결하였음.
- 그러나, 약정의 효력은 청송군 APC가 완공된 이후에, 청송군 APC로 출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속력 있는 약정서가 아님. ('08년 사업은 표준 약정서로 교체하여 개선하였음.)
- 단일 군에 생산면적이 적은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시행주체의 역할, 지역브랜드화 및 틈새시장 공략 등 체계적인 사업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전제로 한 출하 시스템을 재확립해야 함.

## ④ 출하약정기간

- 별도의 출하약정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음.
- 5년 이상함의 장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행주체 중심의 사업 규모화와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판매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출하약정 미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각종 정책 지원사업 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이 아님.
- 출하약정서에는 약정미이행시 3년간 FTA기금지원사업 배제가 명시되어야 하고, 약정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상벌 조항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농가별 점검이 진행되어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농가들의 출하이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함.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자재 일괄 구매를 시행하지 않았음.
- 시행주체가 주도하여 주요 자재를 공동구매 함으로써 농가 부담 경감과 우수 품질의 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추진이 필요함.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지역내 과수산업 규모가 적어 전문업체 선정이 곤란. 능금농협 각 지소에서 우수 업체를 추천 받아, 영덕지소에서 각 사업별로 2개씩 업체 선정하여 공지. (별도의 전문위원회나 심의회 없이 시방서, 견적서 등을 토대로 실무적으로 선정하였음.)
- 부적정한 업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농가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업체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지하여야 함.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하지 않았음.
- 전국 평균의 사업단가와 사업 메뉴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가 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세부 시설 기준과 단가를 조정. 생산시설 설치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비용절감, 농가 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함.

※ 시행주체를 중심으로 자재 공동구매와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적정 단가 조정을 수행하는 것은 사업추진을 효율화하고 추진 과정에서 농가 부담을 경감 혹은 합리화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임. '07년은 예산 규모가 적어 체계적인 보조금 집행 노력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원 농가 확대 및 예산 확대에 대비하여 지속적 정보 입수와 선진지 사례 분석, 방문 등으로 지역에 적합한 효과적 집행 방안을 마련해야 함.

##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 이월	'06 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0	0	132	132	0	0	132	132	0		100
기타사업	0	0	188	188	0	29	159	188	0		100
합계	0	0	320	320	0	29	291	320	0		100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예산 규모가 작아 전액 집행하였음. '08년 확대된 예산 규모에서도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농가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 절차를 교육하고, 시공업체를 포함한 간담회를 열어 공사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자금집행 시기를 사전 파악하는 노력을 수행하였음.
- 단순한 사업 안내, 설명에 그치지 말고, 추진 시기별 농가 모니터링과 업체 점검 등 실질적인 예산집행 제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용자예산 규모 사전 파악과 농협 통보로 원활한 대출 실행 노력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사과판매촉진, 승용예취기 지원, 과수품종갱신과 착색봉지지원, 개량 부직포 지원, 반사필름지원 등 자체지원 사업을 병행 추진하였으나, 각종 지원사업이 FTA기금사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음.
- 농가조직화, 사업조직 통합화, 규모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집중화가 필요함. 또한 신활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원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보조율이 다른 반면 동일한 사업 메뉴로 진행되고 있어 FTA기금 지원사업과 경합되므로 사업 조정이 필요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농식품부 점검과 시도 교체점검에서 출하약정, 1·2순위 구분 접수평가, 조기에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등을 요구 받음.
- 대부분 초년도 사업의 시행착오로서 '08년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개선한 노력이 인정됨.
- 보고서류 제출 지연 (-0.90) : 미제출 1건(-1.00점), 지연일 10일(-0.10점), 조기일 20일(+0.20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시행주체인 대구경북농금 영덕지소는 총원 6명으로 지도, 판매, 구매사업을 시행중임.
- 유통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북송아영농조합법인의 선과장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조직 규모도 적기 때문에 지소 단독으로 체계화된 판매·마케팅을 추진하는 데 미흡함.



- FTA기금 생산유통지원 사업은 예산 규모가 적어 영덕지소 지도사 1인을 FTA기금사업 담당자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행주체, 행정의 업무 분담을 강화하고 영덕지소의 조직 보강이 필요.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	-	-	-	0%
2006	-	-	-	0%
2007	326.4	527.6	1,232.8	161%
계	326.4	527.6	1,232.8	161%

- FTA기금사업 지원농가 40농가, 출하 가능 농가 34농가 중 출하농가는 12농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약정이행 물량은 매우 높으나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3,702	3,662	-1.0%	4,429	4,984	12.5%

- 대부분 수탁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2%의 수수료를 징구. 작목반별 순회수집을 실시하여 조합이 판매사업 역할을 수행.
- '06년 대비 '07년 12.5% 증가하여 양호하나 출하량은 감소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3,967	4,429	4,984	12.5%

- 출하액은 4,984백만원으로 규모가 적으므로 영덕지역 과수의 취급확대와 물량 결집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함.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율(B/A)
실적(백만원)	4,984	533	10.6%

- 영덕복숭아영농조합법인의 선과장 시설을 임대하여 일부 공동선별·공동계산을 실시하고 있음.
- '07년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은 533천만원으로 전체 출하액의 10.6%에 해당함. 규모화가 미흡하므로 공동선별·공동계산 작목반 육성과 사업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D-C)/C
506	361	-28.6%	744	533	-28.3%

-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은 '06년 744백만원에서 28.3%가 감소하였음.
- 수탁 위주의 사업 방식에서 공동선별·공동계산은 농가 책임성을 강화하면서도 조합의 체계적인 마케팅을 수행할 수있도록 하는 검증된 사업 방식임. 우수 출하처 납품을 중심으로 품질관리, 사업 시스템을 정비하고 의욕적인 작목반을 선정, 집중 육성함으로써 공동선별·공동계산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영덕군청은 '07년 "그대 그리고 영덕" 지역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진행하였음. ('07.12.3. 상표등록)
- 공동브랜드 초기 단계로서 상품화 및 활용성과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음.

- 군청과 시행주체의 일체화된 노력으로 시행주체를 중심으로 브랜드 활용 조직으로 단일화하고, 품질관리 기준 마련, 조례화 등 추가적인 기반 구축과 브랜드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율(B/A)
사업실적(백만원)			%

- 연도말 상표 등록 이전에 출원단계에서 브랜드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나 시행주체를 기준으로 실적이 표시되지 않았으며, 보완자료 제출도 없었으므로 인정하지 않음.
- 브랜드력 강화와 성과 검증을 위한 자료 관리가 필요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45	32	39	21.8%

- 유통사업 참여 농가 수가 소수에 불과하여 미흡하므로 농가 조직화와 참여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⑨ 기타 사업실적

- 군청지원에 의한 포장재 공동구매사업 실적 250백만원이 있으나, 시행주체의 사업 실적으로 인정 불가함.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07년 사업 만족도에 대해 시행주체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08년 1월에 시행.
- 사업추진, 필요성, 담당직원 친절도 등을 평가.
- 설문내용에 구체성이 떨어지고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다소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설문 항목고 응답 샘플을 늘림으로써 체계적 만족도 조사와 개선점 도출이 필요함.

###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별도의 평가회와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환류체계를 구축하지 않았음.
- 연차별 자체평가를 통해 예산 집행, 판매, 농가 출하 이행 실적 등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전반의 개선점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사업 발전을 추구해야 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영덕지소에서 재배기술 위주로 자체 교육을 시행하였음.
- 사업조직 통합, 농가조직화, 출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매뉴얼을 작성하지 않음.
- 브랜드 마케팅과 지역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품질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생산부터 저장, 상품화, 판매·유통 단계를 아우르는 체계화된 품질관리 매뉴얼을 확보하여 운영해야 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3/4분기 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일부 인정됨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07년은 사업 초년도로서 충분한 사업 이해가 부족하여 시행착오가 있었음. 지속적인 사업 추진, 향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33(2-02)	영주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사과 (보조)	선정년도	2004
사업주관기관	영주시	사업시행주체	대구경북농금영주지소
참여시군	영주시		
득점현황	합계 (100)	2등급	
	계획단계(10)	B0	
	집행단계(50)	B0	
	성과단계(40)	A0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대구경북농금농협 영주지소가 단독 운영주체이며, 참여조직은 없음.
- '07년 10월 FTA기금사업에 의한 거점APC 준공으로 사업 역량의 급속한 진전을 위한 기반 형성.

### □ 핵심성과

- 지자체에서 FTA사업관련 별도의 사업시행지침서를 책자로 제작하고 이를 농가에 배포하였음.
- 사업 점검 및 지도대장을 작성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농가방문 때 활용함으로써 지도 점검의 효율성 제고.
- 개별 대응에 어려움이 있던 국립공원내 과원에 대한 인·허가 사항을 지자체에서 일괄 대응하여 환류체계 사례가 확인됨.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변경내용 없으며, 참여주체가 없는 단일 시행주체로 사업진행이 단순하나 거점APC 운영 활성화로 사업 성과가 높게 나타났음.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사과 주산지로서 갱신면적이 28.5%, 친환경인증 11.1%, 친환경 기술 적용면적이 15.5%를 차지</li> <li>07년 10월 거점APC 완공으로 유통기반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수한 생산기반에 맞는 유통기반 시설 활성화 노력 지속</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와 사업시행주체가 시군단위 단일로 단순하고 협력도도 높음</li> <li>자문위원회 등 외부전문기관 활용도는 높지 않은 편임</li> <li>교육사업에서의 사업시행주체의 주도성 다소 약함</li> <li>브랜드 농산물 출하가 미미하였으나 개발 등으로 기반은 형성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주체 중심의 마케팅 시스템 구축 및 역량에 의해 향후 승패가 좌우될 것임</li> <li>다양한 외부자원의 지역내 유치 및 전문가 활용도 제고가 필요함</li> <li>APC 본격 가동과 더불어 사업시행주체가 마케팅 중심형 사업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임</li> <li>공동계산율, 공동브랜드 출하율 제고, 브랜드 위계정립과 이미지 제고 노력이 필요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집행율 80.1%로 전국 평균 수준이며 용자금 집행비율(74.8%)은 높은 편임</li> <li>사업신청시 단순 안내 외 사업시행주체를 통한 신용정보조회가 없는 것은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사전 개인신용정보 조회 실시</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주체 외 별도의 참여주체는 없으며 유통형 작목반원, 썬플러스 회원농가, GAP작목반원 등 511명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성농가 1천호 육성 목표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농가조직화 및 교육 추진</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2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B0</b>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 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B+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B0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B0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B0</b>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b>14</b>	<b>C+</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B+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B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B+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1.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b>10</b>	<b>B+</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60	
③ 출하약정 주체	2	2.00	
④ 출하약정기간	1	1.0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B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B+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1.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4.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3.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B0
	① 예산집행률	10	8.02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B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C+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0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0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20	
<b>성과단계 소계</b>		<b>40</b>	<b>A0</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B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C+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2.35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3.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1.06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2.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2.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B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0.44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3.00
	⑨ 기타 사업실적	1	0.41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C+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C+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B+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1.00
	② 교육 횟수	1	1.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B+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B0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4.16	
	비계량	B0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B+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지역농업 주체 외 농산물품질관리원, 동양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FTA 기금 과수산업발전 심의회를 구성하여 수시 개최함으로써 우수함.
- '농가의견 수렴함' 설치 및 시행주체에서 자체 운영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농가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우수함.
- APC 건립이 끝난 이후에도 "과수발전 협의회"에 기술, 마케팅 외부 전문가의 추가 위촉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신설 APC운영의 활성화와 품질관리 향상에 노력해야 함.
- 또한 특정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개별면담, 전화,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지자체와 시행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업무협의체(6인)를 구성하여 월1회 정도 사업추진 협의를 지속하여 우수함.
- 현재 FTA기금사업과 APC운영을 위한 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체계화되지 않았음. 조직간 협의회와 담당자 실무위원회, 농가조직 운영위원회 등으로 체계화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명확화와 조직간 협력을 강화해야 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농식품부 사업개선 지침의 반영 등 전반적 항목에 대해 개선노력 보임.
- 사업별로 시행지침서를 제작 배포하여 농업인의 인지도를 높인 점은 우수 사례로 평가됨.
-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특허등록 중에 있으며, 거점APC 완공에 따른 농가조직화에 의한 안정적 물량확보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나. 집행단계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 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사후관리)
시·군	○	○		○		◎	◎
읍·면	○						
사업시행주체	◎	◎	◎	◎	◎	○	◎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사업시행주체가 신청서 접수, 과원확인,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을 주도하고 있으며 자체정산 후 보조금 청구서까지 작성하여 우수함.

② 1,2순위 준수여부

- '07년도는 공동계산 등 참여농가에 10점의 배점을 두고 있으나 신청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접수하지는 않음.
- 1, 2순위 구분은 지원과 출하를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 신청서 접수 단계부터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약정" 농가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정부정책수용성 측면에서는 수출, 친환경, 재해보험(10) 등이 반영되었고, 유통규모화 촉진은 출하계약(15), 공동선별공동계산, 브랜드(10), 과원면적(15) 등이 반영되어 양호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07년 신청농가의 49%수준에서 농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점수대별 농가분포가 비교적 고른 편으로 우수함.
- IPM, IFP사업은 지구단위 사업으로 일괄 선정함으로써 집중육성 방식을 택했고, 동점자는 출하실적이 많은 농가를 우선하여 선정하여 유통규모화를 촉진하였음.
- 표준양식을 지역 여건에 맞게 수정 적용해야 하되, 평가항목의 배점을 단계적으로 부여할 경우 동점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적 등과 연계하여 점수를 차등 부여함으로써 변별력을 강화해야 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06년 12월 19일 FTA기금 과수발전심의회에서 확정, 조기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은 4월말에 이루어지는 등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미흡.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선정 통보를 1~2월 내에 진행하여 조기에 사업 착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07.4.30) 후, 현황조사(07.5.17)를 실시하여 미개시자 사업독려 및 포기서를 징구함으로써 적절하게 처리하였음.

###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출하약정서 및 신청서상 지원제외를 명기하였고, 사업관리 대장 및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현장을 순회하며 사업 추진을 확인하여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할 사례로 평가됨.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중도포기자를 사전에 선정한 예비대상자로 교체하여 사업 시행하였으나, 미 지원된 예비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 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 정 주 체	④ 약 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4년	133	133	100	918	747	81.4	사업시행주체	6
'05년	347	347	100	5,039	4,031	80.0	사업시행주체	6
'06년	268	268	100	6,272	5,018	80.0	사업시행주체	6
'07년	176	176	100	2,992	2,394	80.0	사업시행주체	6
계	924	924	100	15,221	12,190	80.1	-	

- 사업신청시 출하약정을 의무화하여 지원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약정 체결하여 양호함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생산량의 80% 이상 출하를 의무화하였고, 출하약정비율에 따라 평가점수를 차등 적용하여 약정을 제고를 유도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의문시 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③ 출하약정 주체

- 시행주체인 대구경북농금농협 영주지소와 약정을 체결하여 적정하게 처리.

④ 출하약정기간

- 출하약정기간은 6년으로 설정하여 유통규모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출하약정서상 "어떠한 처리에도 이의 없이 따른다"고 명기하여 다소 불명확하였으나 '08년부터는 제재조항을 명확히 기술하여 변경. 약정불이행 14농가는 '08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는 제외하여 제재 사례가 있음.
- 출하량에 따라 시행주체가 27,061천원 출하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 출하농가에 지자체가 승용예취기를 지원하는 사례는 강력한 인센티브 시책으로 이해됨.
- 거점APC 가동과 관련하여 단순 출하에서 탈피하고,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를 확대하고 APC 출하 물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교미교란제 외 6종을 시행주체가 일괄 구매, 지역을 4개 지구로 구분 공급하였음
- 소모성 자재 위주의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주대 등 규모가 큰 시설용 자재로 일괄구매를 확대하여 농가 부담 경감, 우수 자재 공급에 노력해야 함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FTA기금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업체 평가, 단가조정 겸함
- 22개업체 중 21개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업체 집합교육은 우수한 사례로 인정되나 업체 평가에서 가부 방식을 보다 강화하여 점수제 도입, 입찰에 의한 경쟁유도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업체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지하여야 함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FTA기금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키낮은 사과원 갱신사업시 과도하게 투입되는 장비대 금액을 조정하고 현장에서 실식재 묘목 주수를 확인하여 정산함으로써 우수함

##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1,148	644	137	1,929	592	480	272	1,344	585	-	69.7%
기타사업	285	377	388	1,050	298	143	602	1,043	-	7	99.3%
<b>합계</b>	<b>1,433</b>	<b>1,021</b>	<b>525</b>	<b>2,979</b>	<b>890</b>	<b>623</b>	<b>874</b>	<b>2,387</b>	<b>585</b>	<b>7</b>	<b>80.1%</b>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생산기반조성	172	960	635	1,767	511	58	597	1,166	601	0	66%
거점APC	4,989	6,064	2,846	13,899	4,396	4,988	4,515	13,899	0	0	100%
과실브랜드											%
<b>합계</b>	<b>5,161</b>	<b>7,024</b>	<b>3,481</b>	<b>15,666</b>	<b>4,907</b>	<b>5,046</b>	<b>5,112</b>	<b>15,065</b>	<b>601</b>	<b>0</b>	<b>96.2%</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율이 80.1%로 미흡하며, 특히 이월액이 과다하므로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

### ②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사업 지도를 위한 농가방문 및 사업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업추진 진도를 수시 파악하여 농가를 독려한 것은 우수 사례로 인정됨

### ③ 용자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용자 대출 안내문 발송 및 사전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용자예산 집행률도 높은 편으로 우수함
- 안내문 발송에 그치지 말고 신청서 접수단계에서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징구, 사전 신용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유인용 너트(10백만원), 장기저장제 지원(45백만원), 유통장비 지원 등은 FTA기금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움
- 향후에는 자체 사업과 FTA기금사업 연계를 강화하여 선택과 집중의 과수 산업 육성이 필요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농림수산식품부 등 외부기관의 점검 지적사항은 없으며,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및 제출 후 수정, 허위사실 기재 없음
- 보고서류 제출지연(+0.2점) : 미제출 1건(-1점), 지연일 0일(0점), 조기일 120일(+1.20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08년 2월까지 4명이 별도의 팀으로 FTA기금사업을 담당하였으나 '08년 2월부터 5명이 APC와 결합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단일한 시행주체가 사업을 진행하여 단순한 구조이며 생산과 상품화, 유통을 결합한 조직체계 개편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07년 약정량 12,190톤 대비 출하량 9,542톤은 78.3%로 다소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출하약정 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하 실적		이행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2,739	2,322	3,715	84.8%
2006년	7,634	5,663	9,061	74.2%
2007년	12,190	9,542	15,173	78.3%
계	22,563	17,527	27,949	77.7%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235	2,836	1,106.8%	610	3,530	478.7%

- '07년 10월부터 거점APC를 가동하여 출하실적이 급격히 증대되었고 '08년도는 더욱 큰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됨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500	610	3,530	478.7%

- '07년 총 3,530백만원이나 거점APC가 본격 가동되는 '08년도는 그 위상에 맞게 실적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율(B/A)
실적(백만원)	3,530	2,164	61.3%

- 전체 사업실적 중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은 61% 수준으로 양호하나 거점 APC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로서는 그다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235	1,718	631.1%	610	2,164	254.8%

- '07년 사업실적이 전년대비 631% 증가하는 등 매우 우수하므로 지속적으로 유통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실적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썬플러스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07년 선비숨결을 등록하고, '08년 1월 아이♥영주사과를 특허 출원하였음
- 썬플러스, 선비숨결, 아이♥영주사과의 브랜드간 시장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면서 거점APC와 연계한 브랜드 활용율을 높이는 것이 향후 과제로 판단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율(B/A)
사업실적(백만원)	3,530	512	14.5%

- 전체 사업실적 중 공동브랜드 사업실적이 14.5%로 미미한 수준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311	404	511	26.5%

- 거점APC 준공으로 조직화된 농가의 수가 빠르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 거점APC 활용률 제고를 위한 단순한 물량확대가 아니라 조직화된 농가를 육성하여 안정적 브랜드마케팅 기반을 형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영주시 과수산업육성의 승패가 좌우될 것임

## ⑨ 기타 사업실적

- 농자재 판매사업 8.1% 증대하였으나, 농가의 소득증대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확대가 필요함.

###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업체만족도 및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사업 참여농가(35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항목이 단순하고 형식적임.
- 설문조사 대상자의 확대 및 피드백이 가능한 체계적인 설문지 작성 및 분석이 필요함.
- '08년 사업부터 전기목책사업의 자가 설치를 허용하고, 소백산 국립공원내 사업대상농가를 대신하여 지자체에서 인·허가 관련사항을 일괄 사전 협의 진행하였음 확인.
- 농가 의견수렴함을 운영함으로써 수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나, 연차 설문조사 및 평가회 등을 통해 사업시행 성과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 개선과 성과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사업 추진 담당자간 토론을 통한 사업평가회를 개최하였고, 평가요소별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등 체계상 완성도는 높음.
- 국립공원 민원해결 등은 우수하나 사업추진 실무자만이 아니라 조직 책임자, 농가 대표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영농강습회 외 작목반별 유통사업 참여 의식교육, 썬플러스 종합교실 실시.
- 특히, 썬플러스 종합교실은 시행주체가 기획을 담당하고 농가가 자부담금을 납입하고 실시한 교육으로, 8차에 걸친 체계적이고 지속적 교육으로 우수성 인정됨.
- 농가별 현장방문을 통한 사업지도 노력 우수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션플러스 참여 농가는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션플러스 브랜드관리 규약 준수,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음.
- 자체 브랜드인 '선비숨결'은 영주시 공동상표 관리지침에 따라 진행하고 있어 일반적 수준임.
- 거점APC 운영에 따른 물량확대와 품질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재배단계, 수확 후 관리 단계, APC운영 단계, GAP 인증 관리 등 세분화된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출하증가율(478.7%)이 우수하고, 상반기 및 3/4분기 예산 조기 집행율도 우수함.
- 거점APC 취급량 확대를 위한 진성농가 1천호 육성 특화교육 실시와 GAP 작목반 전체를 공동선별, 공동계산 체계를 적용하여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우수함.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지자체 및 사업시행주체 모두 FTA기금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축적되어 있음.
- 지역내 숙원사업이던 거점APC의 완공으로 새로운 기회가 도래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주체의 마케팅 역량강화 등 새로운 도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브랜드 체계 정비 및 이미지 제고, 농가조직화와 사업물량 확대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업모델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34(5-08)	영천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포도 (보조) 사과, 복숭아	선정년도	2004
사업주관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사업시행주체	영천농협
참여시군	영천시		
득점현황	합계 (100)	4등급	
	계획단계(10)	C0	
	집행단계(50)	D+	
	성과단계(40)	F	

## 1. 총괄

### 사업체 일반현황

- 영천시는 포도, 복숭아, 사과 등 다양한 과일이 생산되고 있으며 전국적인 주산지임.
- 농협영천연합사업단은 지속적으로 공동마케팅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07년에는 산지유통전문조직에 선정될 정도로 역량 확보.

### 핵심성과

- 생산기반시설현대화로 고품질 과일생산 기반 조성으로 경쟁력 제고.
- 연합사업단의 전문조직 선정과 참여조직의 판매사업 강화.
- 공동브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마케팅시스템 구축.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연합사업단에서 영천농협으로 사업시행주체를 변경하였으나 실질적인 FTA 사업 기능은 연합사업단에서 담당.
- 향후 FTA사업 및 마케팅사업에 대한 역할분담체계 구축 필요.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천시는 복숭아, 포도 등 다양한 과일이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규모도 전국 1, 2위에 해당하는 대량 생산 지역임.</li> <li>산지유통시설 부족 등 상품화 능력이 제한적이며 취급물량 확대의 어려움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량 물량을 기반으로 품질관리, 차별화 노력을 배가하여 고부가가치 마케팅과 고소득 과일 생산 지역으로 전환되어야 함.</li> <li>적정 규모의 상품화시설 도입을 모색하여 체계화된 마케팅이 강화되어야 함.</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주체가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인 업무 이관에 어려움 존재, 기존 연합사업단(마케팅), 시행주체(사업관리)를 구분하였으나 시행주체의 역할이 미흡.</li> <li>'싱아람', '별빛촌' 브랜드 혼란 : 대표브랜드 미정립.</li> <li>정예농가조직 중심의 계통출하 물량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관련 업무(영천농협)와 마케팅(연합사업단) 기능 분리는 정책적 요구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li> <li>지역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한 브랜드 통합과 품질관리 체계 강화 필요.</li> <li>시행주체, 참여조직간 정예농가 교육을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 관리 수행이 필요.</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7년 예산집행율은 75%로 전년보다 오히려 더 저조하였음.</li> <li>'05년 이월액을 모두 집행하지 못해 불용예산도 323백만원이나 발생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해야 함.</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과 농협연합사업단, 참여조직간 협력, 사업의지는 우수하나 사업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이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주체, 브랜드 마케팅 실질화를 위한 과수출하, 사업집행 시스템 구축 노력 필요.</li> <li>현재 준비중인 APC시설 활용에 대한 시행주체와 참여조직간 사업운영시스템을 준비해야 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4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0</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D0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C0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0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D+</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C+</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B0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5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D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D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2.0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5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C0</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74	
③ 출하약정 주체	2	1.00	
④ 출하약정기간	1	0.2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0.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2.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D0
	① 예산집행률	10	4.59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C+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C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60	
<b>성과단계 소계</b>		<b>40</b>	<b>F</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3	C0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22	F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0.00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0.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00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0.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0.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C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0.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0.00
	⑨ 기타 사업실적	1	0.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2	C+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2	F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5	F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06	
② 교육 횟수	1	0.29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D0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B0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0.18	
	비계량	D0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C+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과수발전협의회가 자문회의 대체하고 있음.
- 과수발전협의회는 사업변경, 사업자 선정 등 통상적인 기금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서만 자문이 이루어졌으므로 특정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개별면담, 전화,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과수발전협의회 구성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유통 분야의 외부 전문가 선정이 필요하며 FTA생산시설현대화사업 뿐만 아니라 영천시 과수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자문회의 체계 구성이 필요함.
- 농업인 의견 수렴은 교육 및 설문조사를 통해 추가요구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연도 혹은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 실적이 돋보임.
- 시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의견수렴창구 마련 등 우수함.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시행주체간 협의 체계가 FTA기금 추진협의회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약 3회에 걸쳐 운영되었음.
- 시행주체 및 참여조직간에 사업실무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실무자 중심의 회의가 운영되며 연합사업 및 FTA사업 연계방안에 대한 회의 운영.
- 전반적으로 시행주체와 행정기관 간 다양한 회의 체계의 구성 및 실질적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조직간 협의회와 담당자 실무위원회, 농가조직 운영위원 회 등으로 체계화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명확화와 조직간 협력을 강화해야 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06년 평가점검결과에 대한 보완은 대체적으로 미흡한 편임.



- 전문가 보완 및 심사표 보완 등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시행주체와 참여조직, 행정기관 간에 인지하고 상호 역할분담계획을 수립해야 함.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시·군	○			○			◎
읍·면	○			○	◎		
사업시행주체	○	○	◎	◎	○	◎	
참여조합	◎	◎	○	○	◎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신청서 접수 및 현장심사의 주체가 참여조합으로 되어 있어 사업시행주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완료점검 시 별도로 참여조합과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은 우수 사례임.
- 사업시행주체가 실질적인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도점검, 1차정산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정비해야 함.

## ② 1,2순위 준수여부

- 우선순위 심사 시 연합사업단에서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이 있는자를 1순위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나 신청서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음
- 실질적인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농가의 참여도에 따라 1, 2순위를 구분한 것은 우수사례이나, 1, 2순위의 구분은 사업에 지원하는 농가와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를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신청서 접수단계에서부터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별도의 우선순위 심사표 없이 공동계산 실적순, 계통출하 실적순으로 선정하고 있어 심사표의 개정이 필요함.
- 농식품부 표준안을 지역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우선순위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정책 수용성, 유통규모화 촉진, 기타 합리적 기준을 고루 반영하여 계량화된 실적과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연동될 수 있는 심사표 도입이 필요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전체 신청 농가 대비 선정률은 36.9%임.
- 우선순위 심사표가 없어 개선이 요구되며 공동선별, 공동계산 실적으로 우선순위를 심사할 경우 하한선을 두어 참여 실적이 적은 농가는 탈락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06년 12월에 과수발전협의회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적정함.
- 향후에도 대상자 선정은 전년도 연말까지 완료하여 영농철 이전에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및 보조금교부결정 역시 지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4월에 일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미개시자 45명에 대해 조기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화독려에 그쳤음.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등 농가에게 해당사항을 통지할 때 미개시에 대한 불이익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및 보조금교부결정 역시 형식에 그치지 않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출하약정서에 중도포기자에 대한 조치 여부를 명시하였으며 4명의 중도포기자 발생하여 차순위자 선정.
- 신청서와 보조금교부결정서에도 중도포기자에 대한 조치 사항을 명시하고 중도포기자 발생시 포기각서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한 명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예비대상자 20%를 선정하였으며 7명의 예비대상자 활용 실적이 있음.
- 예비대상자의 경우 당해연도 뿐만 아니라 익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해야 하며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422	422	100	2,500	2,098	83	연합사업단	1
'06년	479	479	100	3,050	2,526	82	연합사업단	1
'07년	294	294	100	3,160	2,743	87	연합사업단	1
계	1,195	1,195	100	8,710	7,367	85		

- 100% 출하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출하약정물량에 대한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생산량 대비 약정량을 80%이상 추진하였고 '07년 사업은 87%에 해당하여 적정함.

## ③ 출하약정 주체

- '07년 사업을 기존 사업시행주체인 영천연합사업단으로 출하약정 체결하였으나 연합사업단에서 영천농협으로 시행주체변경에 따른 이관 및 갱신 작업이 미흡함.

## ④ 출하약정기간

- 출하약정기간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5년 이상 장기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농가 참여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행주체 중심으로 안정적인 판매사업 체계를 구축해야 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출하약정서 상에 향후 3년간 FTA기금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음.
- 연합판매사업 참여농협 협약서 상에 출하규약 등을 명시하여 운영
- IPM농가에 대해 “별빛촌” 브랜드 사용권을 승인
- 출하약정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으나 실질적인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행주체에서는 출하약정이행률을 높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형식적인 출하약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출하약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참여농협에서 일괄구매 실시. 시행주체를 통한 일괄구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시행주체가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참여조직간 공동 구매를 실시함으로써 효과적인 구매사업 추진이 가능함. 공동구매 효과가 큰 품목을 선정하여 참여 농협 간 협의, 주관 농협 추진, 업체 선정 및 입찰 실시 등으로 단가 인하를 통한 농가 부담 경감과 우수한 품질의 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시공 업체 선정 및 공지 추진 실적이 없음.
-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으로 농가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도말에는 시공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불성실업체 및 만족도가 저하된 업체는 다음부터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필요.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IPM사업에 대해 과수발전협의회에서 세부단가를 조정하여 시행하였음.
- 전국 표준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전체 사업에 대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단가를 검토하고, 대상 사업에 대해 단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단순한 실무 차원의 검토가 아니라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단가조정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지역 의견과 객관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176	638	69	883	145	144	90	379	359	145	43%
기타사업	261	643	1,139	2,043	1,064	349	390	1,803	62	178	88%
<b>합 계</b>	<b>437</b>	<b>1,281</b>	<b>1,208</b>	<b>2,926</b>	<b>1,209</b>	<b>493</b>	<b>480</b>	<b>2,182</b>	<b>421</b>	<b>323</b>	<b>75%</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예산집행율은 45.9% (농식품부, 국고 기준)로 매우 미흡함. '06년 사업의 75%보다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특히 05년 이월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예산을 발생시켜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시급함. 예산집행율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사업 관리 노력이 필요함.

## ② 예산집행율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년 3회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한 시행주체-참여조직간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미사업농가에 대해 전화 독려 추진
- 사업 독려를 통하여 예산집행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했으나 실질적인 개선 실적은 보이지 않았음.
- 사업지도를 위한 농가방문 및 사업별 체크리스트를 작성 하거나 집행율 제고를 위한 별도의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집행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의 선진지 벤치마킹이 요구되며 행정과 시행주체가 협력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 ③ 용자예산 집행율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사업신청시 용자희망여부를 파악하고 사전신용조회 등 실시.
- 용자예산의 경우 사업신청 시 용자예산희망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여 예산 집행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IPM단지 회원농가에 대해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승인하고 관련 포장재 등을 지원하였음.
- 기타 FTA사업 대상농가를 중심으로 정예농가로 육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연계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음.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농식품부 등 기관의 점검 지적사항 미이행 없음.
-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및 제출 후 수정, 허위사실 기재 없음.
- 보고서류 제출지연(-0.60점) : 미제출 1건(-1점), 조기일 40일(+0.40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미제출 사항이 없도록 담당자의 주의가 요구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법인화의 어려움으로 영천농협 주관조합으로 시행주체를 변경하였음.
- 시행주체가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인 FTA사업 업무는 연합사업단에서 추진하고 '08년 이후 영천농협으로 변경될 예정임.
- 단 시행주체가 영천농협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FTA 및 연합마케팅 업무의 분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연합사업단이 지속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해서 시행주체인 영천농협과 연합사업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체계 마련이 필요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 영천과수육성계획은 '07년 시행주체가 연합사업단에서 영천농협으로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변경 시점에 사업 이관과 역할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07년 판매사업 실적과 관련하여, 상반기 연합사업실적과 하반기 영천농협 실적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적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음. 연합사업 실적을 제시하였으나 평가에 미반영하였음.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2,098	2,496	5,489	119
2006년	2,526	2,980	6,705	118
<b>2007년</b>	2,743	<b>3,380</b>	<b>8,154</b>	<b>123</b>
계	7,367	8,856	20,348	120

- 출하약정 이행율은 123%로 표시하였으나 참여조합을 통한 단순 계통출하 실적이 포함되어 인정하기 어려움.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2,178	2,025	△7%	5,262	4,988	△5%

- 연합사업단의 취급량 및 출하금액이 일부 감소되었음. 지역의 생산기반을 고려할 때 통합 마케팅 규모가 적으며, 사업 확장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부적정한 자료로서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음.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3,247	5,262	4,988	△5%

- 사업실적이 일부 감소되는 등 유통규모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됨
- 부적정한 자료로서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음.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4,988	2,383	47.8%

- 전체 사업실적 중 약 50% 정도를 공동선별·공동계산 취급하였고 규모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규모 전체의 확장과 함께 공동선별·공동계산 규모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부적정한 자료로서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음.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850	1,001	17.7%	1,761	2,383	35.3%

- 공동선별, 공동계산 실적 증가율은 양호하나 취급금액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다만 부적정한 자료로서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음.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연합사업단에서는 “별빛촌”, “싱아람” 등 공동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싱아람은 연합사업단 자체 공동브랜드이며, 별빛촌은 시의 공동브랜드로써 양 브랜드간 품질 및 출하처에 따라 별도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음.
- 지역내 브랜드 활용과 소비지에서의 인지 저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브랜드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브랜드 위계 설정 및 적절한 홍보 전략을 구사하여 과일 주산지로서의 마케팅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율(B/A)
사업실적(백만원)	4,988	2,725	54.6%

- 연합사업 취급 실적 중에서 공동선별·공동계산된 부분에 대해서만 공동브랜드 사용하였고, 그 비중도 우수하나 취급금액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다만 부적정한 자료로서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음.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359	525	569	8.4%

- 유통사업 조합원 증가율은 양호하나 그 인원수가 너무 적으므로 정예농가 육성을 위한 세부계획수립과 농가조직화 교육 등을 통해 사업 참여 조합원 수를 대폭 늘려야 함. 다만 부적정한 자료로서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음.

## ⑨ 기타 사업실적

- 농자재판매, 포장재 등 기타 사업실적이 증가하였음.
- 부적정한 자료로서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음.

###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07년 말에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세부사업 추가 지원 등의 환류 체계를 구축하였음.
- 설문지 설계를 지역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실적이 없음.
- FTA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환류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시급하며 또한 연차 평가회를 실시함으로써 종합적인 농가 만족도 조사와 시공업체 평가, 유통사업 성과를 검토하고 차년도 예산 집행 및 성과도출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에서 공동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기술교육을 2회에 걸쳐 약 117명을 대상으로 추진.
- 사업단에서 실질적인 교육을 운영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나 사업단에서는 전체 교육을 기획하고 참여조합에서 교육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협력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가의 사업참여율 제고 및 약정이행율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농가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필요가 있으며, 특히 농가들의 사업이해도 증진과 유통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가 요구 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일반적인 생산재배매뉴얼이며 체계적인 품질관리매뉴얼을 보유하지 않음.

-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작업매뉴얼과 품질관리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상반기 및 3/4분기 예산 조기 집행 실적을 일부 인정하였음.
- 시공업체와 시행주체 간 FTA기금사업 도우미센터 운영 협약을 체결, 생산 시설 정기 점검 등을 추진함.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행정과 사업시행주체에서 FTA사업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의욕이 높은 편이나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함. 또한 시행주체 변경으로 인해 영천농협과 연합사업단간의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35(2-06)	예천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사과 (보조)	선정년도	2006
사업주관기관	예천군	사업시행주체	대구경북농금농협예천지소
참여시군	예천군		
득점현황	합계 (100)	3등급	
	계획단계(10)	C+	
	집행단계(50)	C+	
	성과단계(40)	D+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대구경북농금농협 예천지소가 단독 운영주체이며, 예천농협과 상리영농조합법인이 참여조직임.
- 단일 시군 지자체와 품목농협이 사업을 시행하여 비교적 단순한 구조이나 인근시군에 비해 규모나 경험은 부족한 편임.

### □ 핵심성과

-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개인별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시행주체가 상담일지를 비치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예산집행율 100% 달성.
-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출원 중이며 영주 거점APC와 이용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선별, 공동계산제를 확대할 예정으로 브랜드마케팅 시스템의 초기단계를 완성.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대구경북농금농협 예천지소가 사업시행 주체이나, 영주지소가 운영하고 있는 영주거점APC로 물량통합 구상. 지소간 업무연계와 농금농협 차원의 통합조정 기능이 필요함.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과가 전국 대비 3.4%를 차지하여 인근 시군에 비해 많은 물량은 아님</li> <li>• 유통기반시설은 없음</li> <li>• 산업곤충연구소 운영을 통한 수분용 유용곤충증식사업 진행 등 우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내 생산, 유통기반이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특화사업으로 차별화 시도.</li> <li>• 영주 거점APC 활용을 구상하고 있으므로, 협약을 실현과 출하체계 확립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와 사업시행주체간 협력은 양호한 편임</li> <li>• 사업체 보유 자원이 다소 미흡한 편임</li> <li>• 출하약정 이행율이 매우 낮음</li> <li>• 사업시행 전반에서 서류에 의한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다소 미흡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주체의 역량을 높이고 구심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집중 육성책이 필요함</li> <li>• 근본적으로는 사업시행주체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나 단기적으로 약정이행과 관련한 제재 및 인센티브를 체계화</li> <li>• 인근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사업운영의 전반적 흐름과 세부 근거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시행할 것을 권장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집행율이 100%로 매우 우수하나 상반기 집행율은 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조기집행 및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에도 관심이 필요하며 현행 개인별 모니터링,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함.</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천농협 및 상리영농조합법인이 참여조직이나 역할이 미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조직의 위계를 재정립하여 조정하거나 시행주체를 중심으로 명확한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li> <li>• 참여조직 유지시 조직간 협의 활성화 필요</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3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B0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C+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
	<b>집행단계 소계</b>	<b>50</b>	<b>C+</b>
집 행 단 계  I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D0</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B0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C+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D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1.0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1.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1.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0.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B0</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60
	③ 출하약정 주체	2	2.00
	④ 출하약정기간	1	1.0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D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B0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1.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4.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2.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A0
	① 예산집행률	10	10.00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B+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C+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0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0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70	
<b>성과단계 소계</b>		<b>40</b>	<b>D+</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3	C+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22	F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0.61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0.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49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0.33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2.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D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0.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1.55
	⑨ 기타 사업실적	1	1.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2	C+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2	C+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5	B0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1.00	
② 교육 횟수	1	1.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C+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C+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0.07	
	비계량	C0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C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기존 지역농업 실무책임자 중심의 과수발전심의 및 자문위원회를 경북도립대 교수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및 자문위원회로 개편하였고, 사업계획수립과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 기존 과수발전심의 및 자문위원회를 운영.
- 협의회 재구성 운영 등 노력은 인정되어 양호한 편이나 전문가 참여가 미흡하므로 전문가 참여 회의와 함께 교육, 사안별 서면, E-Mail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자문을 활성화.
- 주로 농가설명회 시 자유토론 방식을 활용하여 농가의견 수렴하였으나, 대상자 선정이후 의견수렴이 주로 수행되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사전 수요조사와 집행기간 의견수렴을 강화해야 함.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지자체 및 사업시행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FTA기금사업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현안 발생 시 협의회 개최. 협의회 운영 실적이 양호한 편이며 노력한 부분이 인정됨.
- 향후에도 조직간 협의회와 담당자 실무위원회 등으로 체계화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명확화와 조직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농식품부 사업 개선 지침의 반영 등 전반적 항목에 대해 개선노력이 보임. 자금집행실적이 30%에 불과하였으나 개인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노력한 결과 100%로 올라 우수함.
-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에 대한 개선의지는 미약한 편이며 출하약정 이행율도 매우 낮아 판매사업 성과를 올리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함.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시·군	○	○		○		○	
읍·면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합	○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사업시행주체와 지자체가 신청서 접수, 과원확인,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을 병행하지만 시행주체는 사업을 주도하며, 지자체는 확인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기관별 역할 분담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시행주체를 중심으로 핵심업무를 진행하고 행정과 참여조직이 역할 분담을 하는 협력 구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

#### ② 1,2순위 준수여부

- 사업시행주체와 장기출하계약을 체결한 농업인으로 2순위만 접수.
- 1, 2순위 구분은 사업에 지원하는 농가와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를 연계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지역통합과 협력적 농가조직화를 위한 연계방안으로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사업 신청단계부터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약" 농가를 1순위에 배정하여 확고한 우대 장치를 만들도록 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정부정책수용성 측면에서는 재해보험(15)이 반영되었고, 유통규모화 촉진은 과실계약출하(15), 과원규모(15) 등이 반영되었음. 기타 경작자 연령(15) 등이 반영되었음.
- 심사표의 정책방향 반영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표준 양식을 기초로 활용하되, 지역과 품목여건을 고려하여 항목과 배점 지표를 조정하여 적용해야 하며 계량화된 실적과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연동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07년 신청농가의 27% 수준에서 선정하였으나 전체의 75%가 한 점수대에 몰려있어 변별력에 문제가 있으며, 동점자 처리 기준 없음.
- 평가항목에 대해 가/부로 단순화하여 배점 기준을 만든 것이 원인이므로, 심사표를 표준 양식에 근거하여 개선하고 심사 과정도 현장 실사 및 영농 상황 등을 점수와 연계하여 지수화함으로써 변별력을 높여야 하며 동점자 발생에 대비하여 실적 등과 연계한 점수를 차등 부여할 필요가 있음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06년 12월 20일 예천군 과수발전심의회에서 선정하였고 2월 20일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시행.
- 조기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이후 교부결정, 대상자 통보 등 관련 행정 절차가 다소 늦어졌는데 대상자 선정을 전년도 연말까지 완료하여야 할 뿐 아니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 역시 조기(1월)에 실시하여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대상자 통보 2개월 경과 시점인 '07년 4월(4.3~4.6)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미개시자는 사업포기 조치함으로써 적절하게 처리함.

###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교육교재에 포기자에 대한 지원제외 명기 확인, 포기사례 확인

- 출하약정서, 사업신청서 등에 중도포기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사항, 시행주체의 사업적 조치사항 등 제재사항을 명기하여 농가가 직접 날인하게 함으로써 사업외적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소지를 제거하도록 해야 함.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미개시자나 포기자발생시 차순위자에 자동지원됨을 의결하였으나 예비대상자 명단과 실제 차순위 배정 지원 여부 관리가 불철저하여 확인 곤란.
- 예비대상자 선정은 사업지침 등에 명확하게 표현하고, 예비대상자 선정 시 미선정된 예비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 (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06년	88	88	100	1,477	1,182	80	능금농협	5
'07년	139	139	100	1,883	1,506	80	“	5
계	227	227	100	3,360	2,688	80		

- 사업신청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약정 체결하여 우수함.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약정토록 하며, '07년에도 80% 약정.

**③ 출하약정 주체**

- 시행주체인 대구경북능금농협 예천지소 약정을 체결하여 적정함.

#### ④ 출하약정기간

- 출하약정 기간은 5년 장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절함.
- 5년 이상 장기출하약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단순약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출하약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시행주체는 농가의 협약사항을 매년 평가하여 차후 지원 중단, 지원 자금 회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출하약정서에 명시하고 있으며 제재실적은 없음
- 별도의 제재 사항으로 예천군과수발전심의회 내부규정이 있으나 불확실하고, 인센티브도 일상적 과수지원사업 추진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출하약정 이행율이 20.4%에 불과하여 매우 미흡하므로 출하약정이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페널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영주거점APC 이용 체계 확립 등 실행 측면에서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됨.

###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농업용 파이프 36백만원 일괄구매 실적이 인정됨.
- 향후 지역 수요가 많고 공동 구매 효과가 큰 품목에 대해 일괄 구매를 추진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시설설치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예천과수발전심의회에서 평가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음.
- 14개업체 중 10개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농업용 파이프에 대해 비교견적을 통해 단가 인하에 노력하는 등 사업비 절감하여 우수한 편임.
- 업체 선정에서 견적서를 바탕으로 한 단순 심의에서 탈피, 시공능력과 실적, 공급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업체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평가표에 의거하여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실무검토를 통해 지역여건을 고려한 시설 설치 기준을 보완하였음.
- 심의회, 혹은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지원 사업 메뉴와 단가를 검토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단가가 반영됨으로써 업체 시공과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90	5	95		0	95	95			100%
기타사업		96	47	143		13	130	143			100%
<b>합계</b>		<b>186</b>	<b>52</b>	<b>238</b>		<b>13</b>	<b>225</b>	<b>238</b>			<b>100%</b>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생산기반조성		702	1,192	1,894	538		1,356	1,894			100%
거점APC											%
과실브랜드											%
<b>합계</b>		<b>702</b>	<b>1,192</b>	<b>1,894</b>	<b>538</b>		<b>1,356</b>	<b>1,894</b>			<b>100%</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생산시설현대화는 보조예산이 238백만원으로 소액이며, 100% 집행하여 우수함. 이외에 생산기반조성사업 예산도 전액 집행하여 우수함.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사업시행 이전 교육 및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집행 독려.
- 사업시행주체가 전화 및 면담을 통해 농가에 수시로 독려.
- 전년도 집행율이 미미하였으나 개인별 관리대장 작성 등 지자체와 사업시행주체의 공동 노력을 통해 개선한 사항으로 모범사례로 인정됨.
- 향후에도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예산집행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회의체계를 가동하고 시행주체에서는 조기에 농가들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사업신청 시 용자 희망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사업비가 30백만원 미만으로 별도의 신용조회는 실시하지 않음. 자체 수요가 낮은 편임.
- 일반적 수준의 노력은 인정되나 향후에는 용자예산 필요농가가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신청시 용자예산 희망여부를 신청서 상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시행주체 및 참여조직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용자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지역 특화사업인 과수수분용 유용곤충증식사업 및 사과품질회 개최하였으나 FTA기금사업과의 연계성을 부족함.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하고 있는 자체사업과 FTA기금 지원사업을 동일하게 운용함으로써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출하약정 이행을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사업의 지원조건을 FTA기금지원 농가 및 출하이행 우수 농가를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농식품부 등 기관의 점검 지적사항 미이행 없음.
-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및 제출 후 수정, 허위사실 기재 없음
- 보고서류 제출 지연(-0.70): 미제출 1건(-1점), 지연일 18일(-0.18점), 조기제출 48일(+0.48점)
- 보고 서류 미제출 및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와 관계자의 주의가 요망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 내 FTA기금사업 전담자 1명 배치, 지소장 총괄, 용자업무 지원 직원 별도 배치 등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음.
- 그러나, 능금농협 예천지소 전체 직원 6명, '07년 판매사업 3,531백만원으로 사업 관리에 일부 지원이 가능하나, 지역 과수산업을 이끌어 가는 독립된 사업체계를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음. 영주APC와의 연계와 함께 능금농협 차원의 사업 재편, 통합 노력이 시행되어야 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2006년	1,182	758	1,137	64.1%
<b>2007년</b>	<b>1,507</b>	<b>308</b>	<b>462</b>	<b>20.4%</b>
계	2,689	1,066	1,599	39.6%

- '07년 약정량 1,507톤, 출하량은 308톤으로 20.4%에 해당하여 매우 미흡함.
- 출하약정 이행율이 매우 낮은 편으로 실질적 제재의 강화 및 인센티브 유인책 마련 등이 필요함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845	807	-4.5%	1,884	1,646	-12.6%

- 출하량 -4.5%, 출하금액 -12.6% 감소하였음.
- 사업 규모 축소는 단순 계통출하가 아닌 공동선별·공동계산 등 체계화된 판매사업 규모의 축소로 이해되므로 품질관리에 기반한 보다 체계화된 판매·마케팅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	1,884	1,646	-12.6%

- 농금농협 전체 과수실적 중 매취와 공동계산만 인정하였으며, 체계화된 판매사업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 325백만원으로 전체의 9.1%로 미흡함.
- 공동선별·공동계산 비율 및 물량이 매우 미흡하므로 출하체계의 혁신과 확대를 위한 배가된 노력이 필요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111	147	32%	260	325	25%

- '06년 대비 '07년 25% 증가하였으나, 향후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시를 통한 유통규모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공동브랜드 '예품' 신규개발, 등록 중에 있으며 '썬플러스' 활용하고 있음
-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낮고, 현재 제대로 활용중인 브랜드도 부재. 중장기적인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브랜드 정착과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단기 개발에 치우치기 보다는 품질관리와 지역특성화를 기반으로하는 브랜드 운영 전략과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야 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 율(B/A)
사업실적(백만원)	1,646	0	0.0%

- 공동브랜드 개발 중에 있어 활용도 0%



- 향후 공동브랜드 사업실적 향상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241	213	235	10.3%

- 공동계산 사업참여 농가 증가율로 양호한 수준임. 그러나 전반적인 사업 참여 농가가 적으므로 지속적인 농가 확대, 정예화를 추진해야 함.

### ⑨ 기타 사업실적

- 사업시행주체 농자재 판매 등 69.7% 증가하여 우수함.

###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FTA기금 사업 지원농가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인지도 중심의 설문조사 실시하였으나 환류체계는 미흡. 외부용역을 통한 공동브랜드 개발 관련 설문을 시행한 것이며, FTA지원사업과 직접 연계된 것은 아님.
- 사업추진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정례화하고, 참여 농가와 출하 확대를 위해서 간담회, 워크숍, 설명회 등 다양한 통로에서 농가 설득과 의견수렴 노력이 확대되어야 하며, 수렴의견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차년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07년 6월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농가 사업 조기 추진 독려.
- 평가회 진행 등은 일반적 수준으로 판단되며, 사업진행 중간 뿐만 아니라 사업 종료 후 종합적인 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이를 보완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대구경북농금농협 본소의 분기별 영농 및 유통교육 실시.
- 도매시장 경매사 중심의 유통교육은 교재 없이 진행.
- 조합의 일상적인 유통교육 수준의 교육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체계적인 농가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의 사업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시행주체의 농가조직화에 초점을 둔 자체 교육사업 강화가 요구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시기별 과원관리 중심의 영농교육 교재 보유, 썬플러스 공동매뉴얼 활용.
- 영농교육교재는 출하약정 규약 및 등급규격을 제시한 형태로 체계적 항목을 갖출 수 있도록 보완하여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 지역실적에 맞는 재배매뉴얼로 향상시켜야 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예산 상반기 0%, 3/4분기 5.4% 집행으로 조기 집행 성과를 일부 인정함.
-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개인별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시행주체가 상담일지를 비치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예산집행율 100% 달성.
-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출원 중이며 영주 거점APC와 이용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선별, 공동계산제를 확대할 예정으로 브랜드마케팅 시스템의 초기단계를 추진 중임.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지자체 및 사업시행주체의 노력이 엇보이나 사업시행 경험이 부족하고 시행주체의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편임.

36(1-02)	의성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사과 (보조) 자두, 포도	선정년도	2004
사업주관기관	의성군	사업시행주체	의성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시군	의성군		
특점현황	합계(100)	3등급	
	계획단계(10)	B0	
	집행단계(50)	B0	
	성과단계(40)	D0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전국대비 사과 9%(39,175톤), 자두 17%(8,753톤) 생산점유율로 집중화된 주산지임 <'06년 말 기준, 통계연보>
- 기존 연합사업에서 거점APC 완공을 앞두고 '07년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 조합1개, 지역농협8개 참여) 설립을 비롯하여 조직체계를 정비하였음

### □ 핵심성과

- 키낮은 사과원 등 6개 사업에 23억원의 투자를 시행 과원 시설 현대화를 추진, 거점APC는 부지 6,940평, 건평 2,963평으로 추진, '07년초 사업계획 수정·보완 이후 시설 건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08년 하반기 완공)
- 전년에 비해 예산집행 실적이 개선되었고 (67.4%→98.9%), 법인 운영, 사업추진 체계화 등 개선 되었음.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07년 6월 법인화를 완료하고 7월부터 법인 사무국 운영
- 시행주체는 연합사업단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7년 과수 판매 사업은 연합사업단에서 시행하는 등 유통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음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과, 자두 주산지로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경쟁 산지 대비 특성화가 부족</li> <li>'08년 거점 APC 완공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분야 효율화와 함께 거점 APC 중심의 판매, 마케팅 체계 확립으로 지역차별화 추진 필요</li> <li>관내 사과(옥산, 춘산, 점곡), 자두(봉양, 안평) 주생산지 집중 관리 추진</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 시행주체 중심으로 사업 추진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인 초기 단계로 연합 사업단에 기능 의존</li> <li>APC이외 추진 주체간 협의 구조 미흡</li> <li>시행주체 중심의 사업 확대와 독립 법인화 추진 등이 인정되거나 연합사업단의 실적이 법인으로 이관되지 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수전반에 대한 자문조직 활성화와 농업인 의견수렴 활성화</li> <li>행정, 시행주체, 참여조직간 의견소통을 위한 의사결정 구조를 재정비해야 함 &lt;과수발전 협의회, 법인 이사회, 실무협의회&gt;</li> <li>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운영시스템 정비 : 마늘, 거점APC 2대 시설별 전담 관리·운영 조직 구성</li> <li>원물 조달 강화를 위한 농가 조직 강화, 출하약정 등 제반 제도 정비 강화</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행실적 98.9%로 추진 노력이 인정됨</li> <li>출하약정의 효력이 거점APC 이후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화 되어 있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사표, 약정서 등 표준양식을 활용하되 지역 여건에 맞는 세부 지표 조정 필요</li> <li>시행지침 준수, 약정 이행을 위해 농가 이행사항 점검과 자체사업 연계를 통한 인센티브 강화 필요</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점APC 운영 주체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지정 : 자두 주산지 농협(중부농협)이 참여하지 않았고, 기존 연합사업단과의 역할 배분이 모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합사업단의 통합 마케팅 기능의 법인 이관과 참여 농협과 법인간 역할 재정비 필요</li> <li>주생산지 농협의 사업불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3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B0</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B0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B0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B0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B0</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0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B+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5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C+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B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2.0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5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0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99	
③ 출하약정 주체	2	1.00	
④ 출하약정기간	1	1.0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D+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2.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3.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B+
	① 예산집행률	10	9.91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C+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B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02	
<b>성과단계 소계</b>		<b>40</b>	<b>D0</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B+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F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0.00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0.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00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0.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0.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B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0.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0.00
	⑨ 기타 사업실적	1	1.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B+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D0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C+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66
	② 교육 횟수	1	1.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C0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C+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1.75	
	비계량	C0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C+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거점APC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단만 구성되었으며, APC 예산조정 과정 등에서 자문회의가 1차례만 개최되어 활성화 되지 못함.
- 형식적인 "과수산업발전 협의회" 운영에서 탈피하여 조직간 협의와 농가 의견 수렴 강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재정비해야 하며 특정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개별면담, 전화,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거점APC사업 등 지역 과수산업 및 FTA사업 추진 관련 현안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체간 협의 노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T/F를 APC운영을 비롯한 과수사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정규화 하고, 실무 의사결정과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07년 연차평가 결과 협의 활성화, 시행주체 중심의 사업 추진, 지원대상자 순위별 구분 접수, 평가, 거점APC의 신속한 건설, 예산 집행률 제고, 유통 규모화와 공동브랜드 활용 강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음.
- APC건립 T/F 구성, 법인 설립 및 시행주체의 주도적 역할 부여,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표 개정, 예산집행률 제고 등 핵심사안에 대한 개선 실적이 인정됨.

나. 집행단계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시·군			○	○		○	
읍·면	○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합	○	○		○			

○ 주관기관

- '07년 사업 시행주체(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이 FTA기금사업의 신청서 접수, 우선순위 심사, 1차 정산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적절하게 추진. 하반기 법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업무이관, 조정이 필요.

② 1,2순위 준수여부

- 사업신청서와 우선순위 심사표에서 1·2순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평가 단계에서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약정 농가를 30점, 단순 약정 농가를 10점으로 평가하여 있어 1, 2순위를 구분 평가하려는 노력은 있음.
- 사업 신청단계부터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약정" 농가를 1순위로 구분하여 분리·평가함으로써 농가조직화 및 유통규모화를 위한 확고한 기반만련이 필요하며, 농가 참여도 제고와 책임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행주체 판매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함.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비교적 체계적인 심사표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과도한 지표 항목을 적용하기 보다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현실성 있는 심사표의 운영이 필요.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315농가 중 207농가를 선정하여 선정율은 65.7%임.
- 동점자는 출하실적과 출하약정량 많은 농가로 적절히 규정하였으나, 평가 항목의 점수가 단계적으로 부여되고 있어 동점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적 등과 연계하여 점수를 차등 부여할 필요가 있음.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사업시행 전년('06.12.20)에 사업대상농가 선정을 완료함으로써 적정하게 추진하였음.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농가 선정통보는 조기에 시행('06.12.28) 하였으나, 선정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가 너무 늦게 개최('07.3.7)되었고, 설명회를 기점으로 2개월 경과한 시점('07.5.22~6.1)에 읍면동 및 농협직원이 사업개시 여부를 일제 조사한 것은 미흡함.
- 선정 및 대상통보와 설명회 개최 시기 격차가 존재. 실질적인 사업 추진 시기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조기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영농철 이전 사업개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중도포기자는 19명이 발생하였으며, 포기서를 징구하고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제외 등을 통지하였고, 출하약정서와 사업신청시 별도로 징구한 서약서에 패널티 사항을 명시하여 적정하게 조치하였음.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사업대상자 선정시 예비대상자도 선정하여 농가에게 통보하였고, 미개시자 및 중도포기자 사업물량을 예비대상자에게 재배정 추진하여 적정하게 처리

하였으나, 미 지원된 예비대상자는 다음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 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 '07년 사업의 출하약정서 명칭은 "의성거점산지유통센터 의무출하 계약서"로 되어 있으며, 계약 주체와 무관하게 약정의 효력이 거점APC 완공 이후로 규정되어 약정이 실질화되지 않은 상황임.

※ '08년은 거점APC 완공 및 실제 운영이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출하약정의 체계화와 농가의 출하 이행이 실질화되도록 노력해야 함.

###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 정 주 체	④ 약 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499	499	100	3,608	2,891	80.1	연합사업단	1
'06년	411	411	100	4,056	3,250	80.1	연합사업단	5
'07년	207	207	100	2,120	2,110	99.5	의성연합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	5
계	1,117	1,117	100	9,784	8,251	84.3		

- 사업신청시 출하약정을 의무화하여 지원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약정 체결하여 양호함

###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생산량의 80%이상을 출하약정하도록 약정서에 명시 하였고, '07년은 생산량 대비 99.5% 약정량을 보여 우수함

### ③ 출하약정 주체

- 출하약정 주체는 시행주체인 "의성연합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 명의로

체결하였으나, 약정의 효력이 거점APC 완공 이후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화 되어 있지 않음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과수 판매사업 강화와 거점APC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출하약정 항목과 의무 이행 사항 등을 갱신하여 원물확보와 출하이행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해야함.

#### ④ 출하약정기간

- 5개년 출하약정 물량을 표시하고 5년간 출하약정함을 문구로 명시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의무출하 계약서에 출하약정 미이행시 3년간 사업지원 배제 등 패널티를 명시하고,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우선 지원의 인센티브를 규정하였으나 현재 약정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적용 사례는 없음.

###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 시행주체가 주관하거나, 참여조직과 협력한 자재일괄 구매와 경쟁 요소를 도입한 업체 평가로 비용 절감과 농가의 안심 시공에 기여해야 함.

####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사업시행주체에서 자재일괄구매를 추진하여 자재의 품질확보 및 구입단가를 낮추어 예산절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과수발전 심의회에서 시공업체를 일괄 선정(5개 업체 공모, 전체 선정) 하였으나 시공실적 및 제시 단가 등 체계적 검토가 미흡하고, 견적서 등을 첨부한 실무적 검토 수준임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업체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지하여야 함.

####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농가에서 액비제조기술 부족과 잦은 고장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에 따

라 액비제조기가 없는 미니스프링쿨러 시설로 조정한 후 별도 견적을 통해 단가를 조정하여 적용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 노력이 우수함

##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 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491	886	1,377	491	240	646	1,377			100%
기타사업		324	625	949	324	82	517	923	26		86%
<b>합 계</b>		<b>815</b>	<b>1,511</b>	<b>2,326</b>	<b>815</b>	<b>322</b>	<b>1,163</b>	<b>2,300</b>	<b>26</b>		<b>98.9%</b>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 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생산기반조성											
거점APC	7,726	9,863		17,589			5,579	5,579	9,541		32.3%
과실브랜드											
<b>합 계</b>	<b>7,726</b>	<b>9,863</b>		<b>17,589</b>			<b>5,579</b>	<b>5,579</b>	<b>9,541</b>		<b>32.3%</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율이 99%로 우수한 편이나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농가들의 사업 이해도를 제고, 군 및 읍면 직원의 현장 확인 등으로 사업 추진 독려하는 등 집행을 제고 노력이 인정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농협군지부에 사업대상 농가 용자 내역을 통보, 해당농협에 통지하도록 하고, 농협으로부터 월별 용자 추진 계획 접수.
- 사업 완료 이전에도 요건 충족시 용자가 시행되도록 협조공문 시행.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퇴비비료, 영농기자재, 개량부직포, 착색봉지, 반사필름, 굴삭기,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나 FTA기금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움.
- 향후에는 자체 사업과 FTA기금사업 연계를 강화하여 선택과 집중의 과수 산업 육성이 필요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외부 감사, 자체 감사 등의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 없음.
- 보고서류 제출지연(-0.02점) : 미제출 1건(-1점), 지연일 25일(0.25점), 조기일 123일(+1.23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인가 신청('06. 12. 10), 설립 인가 완료('07. 6. 18), 설립 등기 완료 및 사무국 개소 ('07. 7. 18) 외부전문가로 CEO를 위촉하였고 본부장, 기획, 유통, 생산 등 직원 6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음.
- 연합사업단에 10개 농협이 참여하였으나 법인출자는 9개 농협이 참여. (1개 농협은 경영악화우려로 이사회 부결)
- 마늘사업(의성마늘종합타운)과 과수사업(거점APC) 운영으로 품목 구분과 시설분리가 이루어지므로, 마케팅·기획과 시설운영, 지도관리 등 내부조직의 체계화가 필요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조합공동사업법인이 '07년 7월 연도중 설립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7년 사과, 자두 출하 사업은 농협연합사업단이 시행하였음. 본 자료의 내용은 실적보고서에 제출된 연합사업단의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과수 마케팅 사업에서 시행주체가 실질적인 유통 주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조정해야 함.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2,886	2,891	4,706	100.1%
2006년	3,244	3,250	6,095	100.1%
<b>2007년</b>	<b>2,110</b>	<b>2,240</b>	<b>4,480</b>	<b>106.0%</b>
계	8,240	8,381	15,281	102.0%

- 출하이행은 약정농가들의 연합사업단 출하량으로서 106.0%로 우수함.
- 적정한 자료가 아니므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401	1,151	187%	1,037	2,480	140%

- 의성군농협연합사업단의 출하액은 10.3억원에서 24.8억원으로 급증하나 취급금액 확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됨.
- 적정한 자료가 아니므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265	1,037	2,480	140%

- 의성군농협연합사업단의 사업실적은 '05년부터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취급 금액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적정한 자료가 아니므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2,480	1,075	43.35%

- 의성군농협연합사업단은 참여농협 선별장에서 공동선별·공동계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출하액의 43.4%에 해당하나 취급금액이 매우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적정한 자료가 아니므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199	482	142%	431	1,075	149%

- 의성군농협연합사업단은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인 '06년 199톤, 4.3억원에서 '07년 482톤, 10.7억원으로 급증하였으나 취급금액이 매우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적정한 자료가 아니므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공동브랜드는 군청이 보유하고 있는 "의성옥" 브랜드를 활용하며, '05년에 상표 등록을 완료.
- 지역공동브랜드와 함께 거점APC 브랜드를 "화요미"로 신규 개발하여 활용을 준비하고 있음.

- 브랜드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브랜드와 마케팅 주체 브랜드간 위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소비자 인지, 홍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 율(B/A)
사업실적(백만원)	2,480	1,946	79%

- 연합사업단 실적 중 공동브랜드 "의성옥" 판매비율은 79%이나 취급금액이 매우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적정한 자료가 아니므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15	187	207	10.7%

- 연합사업단 실적으로 참여농가 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참여조합원수가 매우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적정한 자료가 아니므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⑨ 기타 사업실적

-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마늘을 취급하고 있으며, '06년 1,273백만원에서 '07년 1,676백만원으로 31.7% 증가하였으나 농가의 소득증대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확대가 필요함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연도별로 사업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의 추진방향, 만족도, 희망사업, 애로 건의사항 등 10개 항목에 대해 설문이 이루어졌으며, 사업 완료 확인에서부터 보조금지급까지의 빠른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환류체계를 구축하였음



###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실적이 없음.
- 농가 설문조사와 연차별 평가회를 통해 정책 집행 만족도 제고와 시행 주체 중심의 출하, 마케팅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시행주체를 중심으로 8회에 걸쳐, 1,324명을 교육하였으나, 재배기술, 의식 향상 등 단편적 교육 내용에서 탈피하여 품질관리와 농가조직화, 원물조달 체계화 등 종합적인 내용으로 전환되어야 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실적보고서에 매뉴얼을 보유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농업기술센터의 새해 영농설계 교육 및 FTA사업 농가설명회시 병행하여 진행된 교육 교재임.
- 재배, 수확 후 관리, APC관리 등 분야별 매뉴얼 작성과 관리로 체계화된 품질관리와 조직간 역할 분담 정규화가 이루어져야 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예산 조기 집행율이 우수함.
-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광판 광고 등 행정, 시행주체 협력 홍보 노력 등이 인정됨.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사업추진 의지와 열의는 높으나 시행 주체의 유통 사업에 대한 추진력이 미흡하므로, 거점APC 활성화를 위한 지역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37(3-09)	청도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복숭아 (보조) 감, 사과	선정년도	2006
사업주관기관	청도군	사업시행주체	청도농협
참여시군	청도군		
득점현황	합계 (100)	4등급	
	계획단계(10)	B0	
	집행단계(50)	D+	
	성과단계(40)	D0	

## 1. 총괄

### 사업체 일반현황

- 복숭아, 뽕은감이 각각 1,000ha를 초과하는 주산지로서, 꽃감, 감말랭이 등 가공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음.
- 청도농협이 '08년 농림사업으로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고 있음.

### 핵심성과

- 꽃감, 감말랭이 원료감 매입으로 출하기 가격안정 기여.
- 공동브랜드를 통한 사업 극대화.
- 고품질 안전 과수생산 기반 구축.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연합사업단의 법인화 곤란으로 '07년 사업시행주체를 청도농협으로 변경 .
- 청도농협은 현재 APC를 설치하고 있어 주관사업자로서의 유통기반을 구축하는 중에 있음.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숭아, 뽕은감을 주품목으로 하는 사업지역으로 뽕은감(청도반시)은 전국 재배면적의 16%를 점유하고 있음</li> <li>• 현재까지 청도과수 산업을 리드할 대표유통조직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도농협과 참여농협간 효율적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시행주체를 중심으로 지역 과수 산업을 대표하는 생산, 유통 대표 조직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사업단에서 청도농협으로 사업 추진체계가 변경됨</li> <li>• 청도농협이 동사업을 추진하고 대표 유통조직으로 성장하기에는 농가조직, 내부업무분장, 참여조직과의 협력 측면에서 미흡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연합사업단 체계가 가진 주도성을 새로운 사업시행주체인 청도농협이 갖출 수 있어야 함</li> <li>• 이를 위해 참여농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협의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 시행주체와 참여농협의 역할분담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함</li> <li>•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농가조직화와 관리, 시행주체의 안정적인 원물확보 체계 구축과 마케팅 역량 강화가 필요</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집행율이 저조한데 이는 사업대상자 선정이 지연되고 미개시자를 조사하여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적 사업홍보, 설명회 실시를 체계화 하고, 대상자 선정 및 선정이후 미개시자 조사를 조기에 실시하여야 함</li> <li>• 예산집행율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사업단의 법인화 설립추진 과정에서는 참여조직간의 연계성이 우수했으나 청도농협으로 주관농협이 변경되면서 느슨해지고 있음</li> <li>• 행정기관과의 연계성은 우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주체와 참여조직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실질적 사업집행시스템을 갖추어야 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4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B0</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B+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B0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D+</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D+</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B0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B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B+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1.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B0</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60	
③ 출하약정 주체	2	1.00	
④ 출하약정기간	1	1.0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0.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2.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C+
	① 예산집행률	10	7.47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C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C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0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0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1.71	
<b>성과단계 소계</b>		<b>40</b>	<b>D0</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D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F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1.24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1.5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06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0.06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1.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C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3.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0.00
	⑨ 기타 사업실적	1	0.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C0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F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D0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06
	② 교육 횟수	1	0.29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C+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D0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비계량	1.14 B0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B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자문회의를 구성하였으나, 주품목인 복숭아에 대한 전문가 구성이 미흡. 또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함.
- 사업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실질적 자문단 운영이 어려운 여건으로 이해. 주요 의결에 전문가를 참여 시키고, 사안별로 서면 자문, E-mail, 교육 등으로 활용하여 충실한 의견 청취와 사업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교육 및 전화를 통한 농업인 수렴 방법은 미흡하며, 사전 수요조사와 설명회, 각종 교육시 간담회, 농가대표자 간담회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는 양호하나 지원대상 조직간 회의나 협의는 미흡.
- 협의 및 회의 내용이 대부분 시행주체 변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실질적인 사업 개선, 집행을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자문회의 및 사업조직간 회의 및 협의는 개선이 미흡하며, 표준 양식을 적용한 우선순위 심사표, 출하약정 기간 설정, 자금집행 실적 등이 개선됨.
- 사업시행 주체 변경으로 연합사업단 법인화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전반적인 사업 추진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
- 연차 평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노력으로 사업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이행노력이 필요함.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홍보)
시·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	○	○		○	○
읍·면				○	○		○
사업시행주체		○	○	○	○	○	○
참여조합	○			○	○		○

○ 주관기관

- 기존 연합사업단 체계에서는 행정의 주도력이 발휘되었으나 사업시행주체가 청도농협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총괄적인 계획수립에서부터 집행까지 모든 업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청도농협이 수행 할 수 있어야 하며, 청도농협이 적극적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되 참여조합,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조직간 협력 및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함.

#### ② 1,2순위 준수여부

- 당초 사업 추진시에는 1순위와 2순위를 구분하여 접수, 평가하지 않았음.
- 추가 신청자 접수에서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농가를 구분하여 평가하여 개선하려고 노력함.

- 시행주체 중심의 출하체계의 개선을 위해 접수단계부터 "공동선별·공동계산 및 장기출하계약" 농가를 우대할 수 있도록 1,2순위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06년말 초기 신청자 심사표는 농업경영인, 친환경인증, 재해보험가입여부, 약정량, 사업추진의지 등을 반영하였음. 농가 경영여건과 정책 수용성, 유통 규모화 등 종합적인 평가에는 다소 미흡하고, 주관적 평가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 '07년 추가선정에서는 표준양식을 적용하여 정책수용성, 유통규모화 촉진에 관한 평가지표를 추가해야 하며 또한 계량화된 실적과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연동될 수 있는 심사표 도입이 필요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07년 7월 추가선정자를 농식품부 표준 심사표에 의거하여 평가하여 변별력있게 평가하였으나, 표준심사표가 지역여건에 맞지 않아 대부분의 신청자가 70점 이하에 분포하고 있어 지역여건에 맞게 표준심사표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동점자 발생에 대비하여 실적과 연계하여 점수를 차등 부여해야 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사업대상자 선정을 '07년 2월에 실시하였으나 중도 포기과 세부 사업 변경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7월에 추가선정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사업대상자 선정을 전년도 12월말까지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1월에 보조금교부결정 및 통보를 완료하여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보다 체계적인 사업 수요 예측과 농가 선정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사업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후 시점인 '07년 4월과 9월 미개시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관련 조사 및 조치가 없음.



- 미개시자에 대하여 사업독려 및 포기서 징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중도포기자에 대해 향후 3년간 FTA기금 사업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였음.
- 중도포기자가 많기 때문에 사업대상자 접수와 평가를 더욱 엄격하게 추진하여 중도포기자와 세부 사업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당초 사업에서는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추가 사업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 예비대상자 5농가 중 1농가만 활용되었고, 예비대상자도 사업포기가 발생.
- 사업대상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개별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하며, 지원사업이 실제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하며 예비대상자 선정시에는 미 선정된 예비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 정 주 체	④ 약 정 기간(년)
	지원농가수(A)	약정농가수(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D)	비율(%) (D/C)		
'05년	0	0	0	0	0	0		
'06년	149	149	100	2,003	1,603	80	사업시행주체	1년
'07년	21	21	100	248	198	80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5년
계	170	170		2,251	1,801		-	

- 사업신청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약정 체결하여 양호함.

##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07년 약정농가 생산량 대비 80% 출하약정 체결하여 양호함.

## ③ 출하약정 주체

- 당초 사업에서는 기존 사업시행주체인 연합사업단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추가 사업에서는 청도농협으로 주체 변경이 완료된 상황이었음에도 연합사업단과 군수 3자 계약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음.
- 출하약정을 실질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약정 주체도 시행주체인 청도농협으로 갱신하여 운영해야 함.

## ④ 출하약정기간

- 5년 장기 약정을 체결하여 유통규모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제재방법과 인센티브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낮음.
-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제재방법과 인센티브를 규정화하여 출하약정을 관리하도록 개선해야 함.

##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자재 일괄 구매를 시행하지 않음.
- 수요가 많고 규모화의 효과가 큰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일괄구매를 실시해야 함. 비교 견적으로 단가를 검증하고, 품질관리 관련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첨가하여 농가 부담과 품질 보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업체 평가 및 선정, 공지 실적이 없음.
- 견적서, 지방서 등 기초 서류 검토와 함께 시공 실적, 농가 만족도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판단 지표로 세부 사업별로 복수 이상의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해야 함.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과수발전협의회에서 주요 사업 중 하나인 퇴비사 단가 조정을 시행.
- 지역에서 적용하는 세부 사업 전체를 검토하여, 전국 평균의 사업단가와 사업 메뉴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관계자가 참여하는 단가 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세부 시설 기준과 단가를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0	28	0	28			3	3		25	11%
기타사업	0	766	186	952	310	142	261	713	21	218	75%
합계	0	794	186	980	310	142	264	716	21	243	73%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예산 집행률이 73%로 미흡함. 특히 불용액이 218백만원이나 발생하는 등 엄격한 사업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결과로 이해.
-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의 시행 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행지침에 충실한 사업관리로 예산집행률 제고와 불용액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예산집행을 제고 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함
-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해 홍보, 설명회, 선정, 관리, 평가 등 단계별 점검을 추진하고, 사업지도를 위한 농가방문을 통해 사업추진 진도 파악을 통한 농가독려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용자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함

- 용자 소요 규모를 신청단계부터 사전 파악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산 활용에 대한 홍보 등 사전 농가 설명회 등 농가 이해도 향상을 통한 집행율을 제고 관리가 필요함.
- 또한 용자대상자에 대하여 농협에 신용조사를 의뢰,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신활력사업과 연계하여 저온창고, 선별장, 선별기 등 산지유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청도농협에 지원하여 유통인프라를 구축한 것은 우수함.
- 생산과 유통의 계열화를 유인할 수 있는 연계 지원은 미흡하므로 FTA기금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보고서류 제출지연(-1.71점) : 미제출 2건(-2점), 보고지연일 0일(-0.00점), 조기일 29일(+0.29점)
- 보고 누락이 없도록 담당자와 관계자의 주의가 필요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청도농협의 기존부서에 업무를 분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청도농협의 주도적 역할 발휘를 위한 내부조직 강화가 필요. 특히 APC 인수,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므로 독립채산에 의한 사업 시스템 체계화가 필요함.
- 기존 연합사업단을 대체하여 "유통사업단"을 구성하였으나 실질화 되어 있지 않음. 청도를 대표하여 동사업 추진, 농가관리, 마케팅을 위해서는 참여농협과 효율적 역할분담과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
2006년	1,603	1,210	1,776	75.5%
<b>2007년</b>	<b>198</b>	<b>82</b>	<b>159</b>	<b>42%</b>
계	1,801	1,292	1,935	72%

- 출하약정율이 42%로 낮기 때문에 대상 농가를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조직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통출하를 할 수 있도록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0	149	-	0	184	-

- 단순 계통출하실적을 제외하였을 경우 '06년 사업실적은 없고 '07년은 공동선별 및 매취사업 등의 실적이 신규로 발생했지만 사업실적이 매우 미흡함
- 기존의 단순 계통출하농가를 조직화하여 체계적인 상품화와 품질관리를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0	0	184	-%

- '07년 총 사업 실적은 184백만원이나 향후 APC가 설치와 더불어 사업실적 규모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

④ 사업조직의 총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율(B/A)
실적(백만원)	184	61	33 %

- 공동계산 실적이 매우 낮는데 이는 조직화된 농가와 상품화를 위한 유통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임.
- '08년 APC 설치와 더불어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농가를 조직화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유통규모화를 도모해야 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D-C)/C
0	19	%	0	61	-%

- '07년 처음으로 공동선별·공동계산을 실시한 것은 우수하나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청도군이 개발한 공동브랜드는 '청리브'로 농협 및 농업인이 사용 중.
- 공동브랜드의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공동브랜드 사용과 관리를 계열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율(B/A)
사업실적(백만원)	184	184	100%

- 전체 물량을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점은 우수하나 향후 공동브랜드와 자체 브랜드간의 위계설정 등 보다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C-B)/B
조합원수(명)	2,492	4,065	4,209	3 %

- 유통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시된 수치는 유통사업 참여조합원수가 아닌 전체 조합원수로 평가에 반영하기 곤란함
- 기존의 유명무실한 작목반을 정리, 재편하여 유통형 작목반으로 육성하여 정예농가, 정예작목반 중심의 체계화된 마케팅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⑨ 기타 사업실적

- 기타 판매사업 실적은 감소하고 농자재 취급액이 증가하였음.
- 판매사업의 증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외부 여건을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민원 건의함을 운영하여 19건의 의견을 수집. 농가만족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사업개선 활동은 미흡함.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체계적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농가 만족도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사업에 활용해야 하며 설명회, 평가회 등을 통해 설문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실질적 의견 수렴이 진행되도록 추진해야 함.

###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실적이 없음.
- 행정, 시행주체, 참여조직이 공동으로 자체 평가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계획, 집행, 성과 단계의 주요 지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도출과 사업 계획 반영 등으로 사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동사업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매우 미흡함.
- 시장환경 변화와 품목산업 전망을 바탕으로 출하, 유통체계 개선과 농가조직 강화를 위한 지역차원의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에 기반한 체계적인 농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품질관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가 미흡함.
- 청도과수의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품질관리에 있어 재배 매뉴얼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 과수의 전반적인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출하증가율 우수이나 사업규모 매우 작아 우수 사례로 인정하지 않음.
- 향후 총 사업 실적의 규모화 된 경영 및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사업시행주체 변경에 따라 사업추진의 체계화는 미흡하지만 차년도 사업에 있어서의 개선 의지는 높은 것으로 이해되며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 개선 노력이 이행되어야 함.



38(1-11)	청송영양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사과 (보조)	선정년도	2004
사업주관기관	청송군	사업시행주체	대구경북농금농협 청송지소
참여시군	청송군, 영양군		
득점현황	합계 (100)	4등급	
	계획단계(10)	C0	
	집행단계(50)	F	
	성과단계(40)	D0	

## 1. 총괄

### 사업체 일반현황

- 청송, 영양지역은 사과 2,461ha, 48,036톤 ('07년말 기준)이 생산되는 주산지 지역이며 전국적 생산량과 재배 적지로서 명성을 보유.
- '06년 예산집행율이 67%였으며, '07년에도 69%에 머물러 전반적인 사업 집행 실적이 미흡.

### 핵심성과

- 키낮은 사과원 조성과 관수/관비 시설 확충 등 생산 기반 확충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대구경북농금농협 청송지소가 청송지역 사업을 담당하고, 청송지소 진보사업소가 영양지역 사업을 담당 : 시행주체는 통일되어 있으나 청송, 영양 개별 사업으로 진행하는 문제가 있음.
- 청송군 APC (신활력사업) 건립 중이며, 완공시 운영주체 선정과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함.
- '07년은 청송지역에 심한 우박 피해가 발생, 수확과 출하 실적이 저조하였으며 피해과 수매 등 재해대책이 시행되었음.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송, 영양지역은 경북 2위의 사과 대규모 산지이며, 높은 고도차로 고품질 명성과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li> <li>• 반면, 관행적 출하가 일반화되어 있어 통합된 마케팅 기반이 취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마케팅과 신유통 시스템에 적합한 출하 체계로의 개편 노력 필요</li> <li>• 신규 APC 운영을 위한 체계적 준비로 지역 과수산업의 혁신이 필요함</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 군 광역사업이나 실제 통합, 규모화는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군 단위 개별 사업임</li> <li>• 지역간 협의 성과가 부족할 뿐 아니라 지역내 협력 성과도 미흡</li> <li>• 청송 지소와 진보사업소에 FTA 사업 추진 인력 업무 분장</li> <li>• 조합 판매사업은 2% 수수료 징수, 순회 수집으로 물류, 계통출하에 한정 : 공동선별/공동계산과 마케팅 수행 실적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기금사업과 지역 과수산업 발전을 위한 효과적 협력, 협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li> <li>• 핵심 작목반 육성과 공동선별/공동계산 활성화로 조합 판매사업 체질을 개선해야 함</li> <li>• 사과 거점 조직으로서 농가조직화와 마케팅 강화를 위한 사업 역량 강화 필요</li> <li>• FTA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분장 뿐 아니라 책임자의 내부 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시행의 주도력을 발휘해야 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집행 과정이 치밀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음</li> <li>• 예산 집행율이 69%로 미흡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수요조사&gt;→&lt;예산수립&gt;→&lt;선정&gt;→&lt;집행관리&gt;→&lt;평가&gt;로 이어지는 정책 순환 사이클을 이해하고, 주요 단계별 집중 관리와 조직간 역할 배분으로 예산 집행 실적을 제고해야 함</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송지소와 진보사업소로 구분되어 있으나, 사무소간 일체화된 사업추진, 통일 노력이 부족.</li> <li>• 청송APC 운영주체에 대한 지역내 협의가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사업을 추진하는 단일주체로서 내부 협의와 사업통일, 체계화된 통합마케팅 추진 필요.</li> <li>• 지역내 협의를 활성화하여 APC 운영주체 선정을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해야 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4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0</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C0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C0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0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F</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D0</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C+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C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C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1.0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0.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F</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59	
③ 출하약정 주체	2	0.50	
④ 출하약정기간	1	0.2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D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0.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2.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C0
	① 예산집행률	10	6.85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D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D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0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0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02
<b>성과단계 소계</b>		<b>40</b>	<b>D0</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C+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F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2.82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0.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26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2.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0.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C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3.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0.00
	⑨ 기타 사업실적	1	0.35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C0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F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C+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76
	② 교육 횟수	1	1.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C0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F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0.37	
	비계량	D0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D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청송군, 영양군 각기 [농정심의회]로 사업 대상자 선정 등 업무추진 관련 의사결정을 시행함.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자문단은 구성하지 않았음.
-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간담회 등 별도의 의견 수렴 실적이 없으며, 설명회를 통한 사업내용 공지만 수행하여 미흡함.
- 과수발전 협의회를 지역 과수산업 발전과 관련한 기획과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정례화된 협의체로 활성화해야 하고, 재배기술 향상과 시설도입,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활용을 강화. 전문가 자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별면담, 전화,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행정과 시행주체, 행정간의 공식적인 협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각 군별로 4차례 이루어졌으며, 회의 참석자, 안건 및 회의 결과도 추상적인 사항만을 논의하여 실제 사업에의 적용성이 매우 미약함.
- 2개 군 협력을 위한 협의회도 3차례 이루어졌으나, 청송/영양 2개 지역 사업 규모화를 위한 사업 통일, 협의, 의견 교환 노력이 미흡함.
- 실무자간 수시 협의회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식적, 공개적인 의사결정과 사업 집행을 위해 회의체계를 <과수발전협의회>, <군 협의회>, <실무협의회> 등으로 정규화하고, 안건에 따른 의사결정, 결정 사항의 실행 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07년 연차평가 결과 계획, 집행, 성과 전 단계에 걸쳐 협의 활성화, 사업대상자 선정, 출하약정 이행, 효과적 예산 집행을 위한 시공업체 선정, 전담

조직 편성 등을 요구하였음.

- 개선 실적은 신청서, 심사표 등을 표준 양식으로 전환한 것에 한정되어 있으며, 연차 평가에서 요구한 사업 집행 전반의 개선 실적은 매우 미흡함.
- 점검, 평가의 요구사항은 지침, 전국적인 사업 시행 경험과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한 모범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시·군		○		○	○	○	
농업기술센터							
읍·면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합							

○ 주관기관

- 청송군 사업은 청송지소를 중심으로 신청서 접수, 순위 심사, 1차 정산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 영양군 사업은 청송지소 관할의 진보사업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비교적 적정하게 역할분담하고 있음.
- 다만, 시행주체 사무소간 분리되어 업무가 추진되는 점은 문제로 파악되며 내부 정보교류, 사업관리 총괄 책임자 역할 강화가 필요함.

## ② 1,2순위 준수여부

- 사업신청시 1, 2순위를 구분하여 접수하지 않았으며, 구분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단, 평가표에 "장기출하계약" 여부를 항목으로 반영하였으나 10점 對 1점으로 확고한 순위 구분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신청단계부터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약정" 농가를 1순위로 구분하여 분리·평가함으로써 농가조직화 및 유통규모화를 위한 확고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농가 참여도 제고와 책임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행주체 판매사업을 연계하기 위한 사업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나무수령(20), 경작자 연령(20), 사업규모(30), 기반조성(10), 장기출하계약여부(10), 기타 평가자 판단(10) 으로 사업기반 중심으로 평가.
- 지표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표를 운영하고 사업별로 중요 요소를 반영하였으나, 정부정책 수용성, 유통규모화 촉진, 농가 경영여건 등을 반영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적용해야 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동점자 기준은 세부사업별로 심사표에 명기하여 운영함.
- '07년 사업은 514농가가 신청하여 454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선정을 88.3%) 심사결과는 전체접수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여 적정함.
- 표준양식을 지역 여건에 맞게 수정 적용해야 하고, 사업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배점을 단계적으로 부여할 경우 동점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적 등과 연계하여 점수를 차등 부여함으로써 변별력을 강화해야 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청송군 '07.2.23., 영양군 '07.1.24. 선정.
-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시행 전년도말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교부결정, 농가통보 등 관련 행정절차도 조기(1월)에 진행해야 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군과 시행주체간 협의에 의해 조사하고 미개시자 43명을 파악한 것으로 실적이 나타났으나 조사일시, 조사 결과, 조치 결과 등 관련 자료가 전무함.

- 2개 시군 행정 추진 일정을 통일하고, 농가 통보 후 2개월 시점을 전후하여 일제 점검을 시행해야하며,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농가는 포기서 징구하는 등 조치를 시행, 근거와 결과를 명확히 관리해야 함. 조기착공 유도과 중도 포기, 사업 여건 미흡 등 문제 발생 사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중도 포기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월, 불용 예산이 다수 발생하였음.
- 중도포기시 3년간 FTA기금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대상자 확정 통지 및 보조금교부결정서에 명시해야 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실시하되 중도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포기서 징구, 중도포기자 명부 등재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함.

####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청송군에서 퇴비사에 대하여 예비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포기 물량에 대해 활용하였음.
- 세부 사업별 수요를 감안하여 사업별로 20% 내외의 예비대상자를 선정 운용해야 하며, 미 지원된 예비대상자는 다음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 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 출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농가도 사업신청을 받아, 동일하게 평가했음.
- 출하약정 여부를 심사표에 반영하였으나, 약정 체결여부를 사업 대상 선정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음.
- 현장실사시 지원농가 리스트를 확인하였으며, 시행주체와 출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농가도 우선 순위에 따라 FTA기금사업을 지원한 사례를 확인.
- 출하 약정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전제 조건임. FTA기금 생산유통지원사업은 단순하게 농가들의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주체 중심의



규모화와 지역 마케팅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므로 출하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농가는 지원하지 않아야 함.

##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 정 주 체	④ 약 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06년	554	554	100	13,210	6,605	50	청송군수	1
'07년	410	410	100	6,864	5,452	79	"	1
계	964	964	100	20,074	12,057	60	-	

- 약정농가 생산량, 약정량, 출하량 등을 일괄하여 농가별 이행여부 리스트를 제시하였음. 생산량은 약정량을 80%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수치로 파악되었음. '07년 사업 종료시 표준 양식에 의한 약정서로 갱신한 노력이 있음.
- 출하약정은 농가의 책임성 강화와 시행주체의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장치이므로 사업 지원을 위한 형식적인 내용으로 진행하지 않고 실질적인 출하 이행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함.

## ③ 출하약정 주체

- '07년 사업을 위해 체결한 당초 출하약정서는 "청송군 APC 의무출하 계약서"로 작성되었으며, 계약 주체는 청송군수임.
- 계약의 효력도 현재 건립중인 청송군 거점APC (신활력사업)가 준공된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현실성이 없는 내용임.
- 출하약정은 실제 판매사업을 수행할 시행주체와 체결하도록 하고, 건설중인 APC 등 효력발생 유보 조항을 삭제. APC 완공 이전이라도 시행주체 중심의 판매사업 활성화가 진행되도록 해야 함.

## ④ 출하약정기간

- 별도의 출하약정 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미흡함. '07년 사업 완료 시점에서 표준 양식에 따라 출하약정을 갱신한 노력이 있음.
- 5년 이상함의 장기계약은 시행주체 중심의 사업 규모화와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판매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약정서에 출하 약정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수는 약정농가에게 정부 및 지자체사업 우선지원, 청송군 APC 운영 등 중요프로그램 우선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 우선권 부여를 규정. 그러나 약정서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하 이행의 구속력이 없음.
- 출하약정서에는 약정미이행시 3년간 FTA기금지원사업 배제가 명시되어야 하고, 약정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상벌 조항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농가별 점검이 진행되어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농가들의 출하 이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함.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IPM 친환경과원 관련 구매실적이 있으나 통상적 계통구매로 별도의 노력으로 평가하기 곤란함.
- 시행주체가 주도하여 주요 자재를 공동구매 함으로써 농가 부담 경감과 우수 품질의 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추진이 필요함.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업체 선정, 공지 실적 없음.
- 부적정한 업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농가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업체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신력 있는 시공 업체를 선정하여 공지하여야 함.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별도의 심의회 없이 청송군에서만 실무적으로 검토하여 전력 공사비용을 포함하여 방상팬 사업 단가를 조정하였음.
- 단가 조정 노력은 있었으나, 실무자 검토에서 탈피하여,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2개 시군의 지역 여건에 적합한 세부

시설 기준과 단가를 조정해야 함(2개 시군 공동 시행). 생산시설 설치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비용절감, 농가 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함.

##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B/A)
	시군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청송	231	17	248	122	62	32	216	32		87.1%
	영양	106	11	117	21		21	42	11	64	35.9%
기타사업	청송	315	744	1,059	83	152	449	684	375		64.6%
	영양	90	268	358	26	28	225	279		79	77.9%
<b>합계</b>		<b>742</b>	<b>1,040</b>	<b>1,782</b>	<b>252</b>	<b>242</b>	<b>727</b>	<b>1,221</b>	<b>418</b>	<b>143</b>	<b>68.5%</b>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B/A)
	시군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생산기반조성	영양		<b>1,108</b>	<b>1,108</b>	<b>22</b>	<b>209</b>	228	459	721		41.5%
거점APC											%
과실브랜드											%
<b>합계</b>			<b>1,108</b>	<b>1,108</b>	<b>22</b>	<b>209</b>	228	459	721		<b>41.5%</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예산집행률이 68.5%로서 매우 부진함. 이월액이 418백만원, 불용액도 143백만원이 발생. '07년 연초 청송지역 우박피해가 극심하여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예산 집행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 농가 수요의 확인, 기존 지원사업과의 중복/경합 검토, 단가 검토와 함께 철저한 사업 추진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추구해야 함.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별도의 노력, 추진 현황이 없음.
- 농업인 교육, 현장 확인, 미완료 농가 개별 방문 등으로 사업집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집행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과 시행 주체의 일체화된 추진 노력이 필요함.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개량부직포 설치, 반사필름, 착색봉지, 승용예취기 및 리프트기, 농약방제기 등 자체지원사업과 명품과실생산단지육성, 사과거점농가 육성 사업 등을 자체사업으로 추진.
- 단순 자체 지원사업으로 FTA기금사업과의 연계성이 약함. 명품과실생산단지, 거점농가 등 주체육성과 관련된 사업은 FTA기금사업과 반드시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경합을 해소하도록 하고 집중화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함.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외부 감사 및 점검 사항 없음.
- 보고 서류 미제출 및 제출 지연 (-0.02) : 미제출 1건 (-1점), 제출 지연일 8일 (-0.08점), 조기일 110일 (+1.10점)
- 보고 서류 미제출 및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다. 성과단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청송지소 및 진보사업소에 FTA기금사업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청송지소는 직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산지 품목농협으로서 지도, 판매사업을 전개 중. 규모화된 APC를 보유하지 않아 선과장에서 지소 판매 사업을 추진.

- 청송군 APC (신활력사업) 건립에 따른 운영주체 선정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혼란이 예상되며, 청송지소의 역할도 미확정 상태임. 사과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내 주체간 협의를 통해 운영 주체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 준비가 이루어져야 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
2006년	6,605	6,420	8,324	97.2%
<b>2007년</b>	<b>5,452</b>	<b>5,131</b>	<b>4,266</b>	<b>94.1%</b>
계	12,057	11,551	12,590	95.8%

- FTA기금사업 지원을 받은 농가의 출하약정량 및 출하량은 각각 5,452톤과 5,131톤으로 94.1%임. 출하량은 우박피해를 감안, 정품이 아닌 우박피해사과 출하실적도 포함하여 산출한 것임.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3,149	286	△90.8%	2,917	864	△70.4%

- 우박피해로 인해 출하량은 90.8%, 출하액은 70.4% 급감하였음.
- 기상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판매사업 확대와 내실 있는 마케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	2,917	864	△70.4%

- 사업실적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864	864	100%

- 청송지소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은 864백만원으로 전체 판매 실적의 100%에 해당하여 우수하나 취급금액이 매우 미미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선과장이 협소하고, 신유통 마케팅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로 파악되며, 본격적인 청송 사과 마케팅과 가치향상을 위해 공동선별·공동계산제 도입 확대와 지소의 마케팅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3,149	286	△90.8%	2,917	864	△70.4%

- 우박피해로 인해 출하량, 출하액이 급감하였음. 특히 공동선별을 주로 진행했던 청송지점 선과장 출하농가 지역(부남면)이 집중피해가 발생하여 실적 급감하였음.
- 공동선별·공동계산제 작목반을 복구하고 작업 체계와 출하처 확보 노력을 배가하여 공동선별·공동계산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청송꿀사과"(등록), "영양사과"로 지역브랜드를 사용하여 통합되어 있지 않으며, 청송지소 고유브랜드화를 위한 품질관리와 마케팅, 홍보가 미흡함.
- 특히 "청송" 지역 이미지에 치중하여 체계화된 브랜드 관리 노력이 미흡. 행정이 소유한 지역공동브랜드로 다수의 지역농가가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례화를 통한 전반적인 품질관리 노력과 함께 시행주체가 주도할 수 있는 브랜드 재구축 (신규 브랜드 개발 검토) 노력이 필요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 율(B/A)
사업실적(백만원)	864	864	100%

- 시장에서 높은 지역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 "청송꿀사과" 브랜드로 주로 출하하며, 100%의 공동브랜드 활용율을 보이고 있음.
- 지역브랜드의 한계 때문에 영양지역 사과의 통합이 불가능하고, 도매시장 중심 출하로 소비자 마케팅 추진이 어려운 점 등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브랜드 관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1,306	1,349	1,405	4.1%

- 조합원수를 표시하여 평가지침의 요구를 맞추지 않았음.
- 조합원수는 1,405농가로 전년에 비해 4.1% 증가하였음. 단순 참여 농가가 아니라 실제 출하약정을 이행하고, 품질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농가조직을 재구축하고 정예농가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지도가 강화되어야 함.

⑨ 기타 사업실적

- 농자재 취급실적이 '06년 2,144백만원에서 2,293백만원으로 6.9% 성장함.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청송지소에서 '07년말 사무소에 설문지를 비치하여 설문조사하였음.
- 24농가가 응답하여 실제 농가 만족도 조사로 이해하기 어렵고 설문 문항도 단순한 내용임.
- 평가회 등에서 설문조사 및 간담회로 농가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추상적인 설문 문항보다는 시공업체 만족도, 사업 시행 개선 사항 등 농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추가하여 실질적 의견 수렴이 진행되도록 해야 함.

###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연차 사업평가회, 자체 평가 보고서 작성 등 평가업무 실적이 없음.
- 자체평가를 통해 예산 집행, 판매, 농가 출하 이행 실적 등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전반의 개선점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사업 발전을 추구해야 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청송지소가 주관하여 동계전정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친환경과원관리, 농작물 재해보험 교육 등으로 농가조직화, 사업체계화를 위한 교육내용과 다소 거리가 있음.
- 농가 교육은 리더, 품질관리, 재배기술, 마케팅 인식 제고 등 체계화되고 성과 측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매뉴얼을 제작/보유하지 않음.
- 브랜드 마케팅과 지역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품질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생산부터 저장, 상품화, 판매·유통 단계를 아우르는 체계화된 품질관리 매뉴얼을 확보하여 운영해야 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청송 지역은 '07년 우박피해가 극심하였던 지역이었으며, 우박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 우박피해사과 매입 지원 등 피해복구 노력이 시행되었음.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예산 집행율이 낮고, 전반적인 사업 관리가 미흡하므로 사업 개선 대책이 필요함.



39(3-10)	칠곡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사과, 포도 (보조) 참외	선정년도	2007
사업주관기관	칠곡군	사업시행주체	대구경북농금 성주지소
참여시군	칠곡군		
득점현황	합계 (100)	3등급	
	계획단계(10)	C0	
	집행단계(50)	C+	
	성과단계(40)	D0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07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총797백만원 투자.
- 칠곡군은 사과, 포도를 과수 주품목으로 하고 있으나 사과 108ha, 1,570톤, 포도 228ha, 3,585톤 ('06년말 기준) 으로 타 주산지와 비교하여 생산규모가 적음.

### □ 핵심성과

- 생산과 유통의 계열화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음.
- 칠곡군 공동브랜드 개발 등록(2007.2.)으로 브랜드마케팅 기반 구축.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칠곡에는 별도의 품목농협 지점이 없으며 대구경북농금 성주지소의 사업 지역이어서 성주지소를 시행주체로 선정하여 운용함.
- 대구경북농금 성주지소와 참여 지역농협간의 협력은 매우 미흡함.
- 경북농금 성주지소의 조직 및 사업규모가 전반적으로 작기 때문에 칠곡군을 대표하는 유통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농협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 및 조직 규모화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과, 포도 등이 재배되고 있으나 해당 품목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음</li> <li>부품목인 참외 또한 인근 지역대비 인지도가 낮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차별화 요소를 발굴, 마케팅에 활용하여 인지도를 제고해야 함</li> <li>인근 지역과의 협력가능성을 타진하고 협력체계를 추진하여야 함</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북농금 성주지소와 칠곡군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협력은 미흡</li> <li>성주지소의 기존 부서에 업무를 분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선별공동계산 농가조직은 전혀 없음</li> <li>이는 사업시행주체가 칠곡군 관내 조합과의 협력체계를 원활하게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과 사업시행주체, 참여조직간 적극적인 사업협력이 필요</li> <li>사업시행주체인 경북농금 성주지소와 칠곡군 관내 조합과의 협력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지역농업주체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함</li> <li>공동선별공동계산 농가조직화를 통한 사업확대와 더불어 조직화대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정, 미개시자 조사 및 조치, 예산집행을, 융자집행을 대부분 양호함</li> <li>생산시설현대화에 국한된 사업진행으로 사업성과가 저조하고 환류체계가 부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선정 심사표가 전국적 지표를 답습하여 지역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함</li> <li>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역농업대표조직의 마케팅기능과 이를 위한 농가교육 및 환류체계와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함</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주체와 참여 지역농협과의 연계성이 전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주체를 중심으로 마케팅의 집중화, 규모화를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이 필요함</li> <li>사업시행주체와 지역농협의 효율적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해야 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3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0</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C0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C0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C+</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C+</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B0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B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B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2.0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B0</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60	
③ 출하약정 주체	2	2.00	
④ 출하약정기간	1	0.2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5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1.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0.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A0
	① 예산집행률	10	9.91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B+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B+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B+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B+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19	
<b>성과단계 소계</b>		<b>40</b>	<b>D0</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D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F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2.80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2.49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71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0.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0.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C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0.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0.53
	⑨ 기타 사업실적	1	1.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B0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F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C0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45
	② 교육 횟수	1	0.71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C0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F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1.61	
	비계량	C+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B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구성하지 않았고, 지역 사업 관계자로 구성된 사업 집행 협의회로 운영되었음. 1회 운영으로 형식적 운영하고 있음.
- 전문 분야 자문단을 운영하되 E-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안별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사업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 및 전화, 방문을 통해 농업인 의견을 수렴하였고 의견수렴 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나 다수의 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의견 수렴은 미흡. 보다 개선된 형식과 내용으로 의견 수렴을 추진해야 함.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협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횡수 또한 미흡하며, 관내 지역농협이 참여하고 있으나, 능금농협 성주지소와 협의 공동사업 추진, 사업관리를 위한 협의가 전혀 없어 성주지소 단독사업으로 이해됨.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지역 통합과 공동마케팅 추진을 위한 조직간 역할 분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특히 성주지소 단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협력 구조로 전환할 것이 요망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07년 신규사업으로 해당 없음.

나. 집행단계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시·군	○	○		○		○	
농업기술센터				○			
읍·면	○						
사업시행주체	○	○	○	○	○	○	
참여조합							

- 경북능금 성주지소가 신청서접수, 현장 심사, 우선 순위 심사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② 1,2순위 준수여부

- 1, 2순위를 구분의 개념은 있으나 시행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 "전국화된 거점APC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없으므로 모든 농가를 2순위로 접수하여 평가함.
- 1, 2순위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구성해야 하며, 시행주체 중심의 출하체계의 개선을 위해 접수단계부터 "공동선별, 공동계산 및 장기출하계약" 농가를 우대할 수 있도록 1,2순위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기존 심사표는 정책수용성 및 유통규모화 촉진 등에서 미흡함.
- 표준 심사표를 지역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 정책 수용성, 유통규모화 촉진, 기타 합리적 기준을 고루 반영하여 계량화된 실적과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연동 될 수 있는 심사표 도입이 필요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86농가 중 45농가를 선정하여 52%의 선정율을 보임. 51~60점대에 심사대상농가의 30%가 몰린 문제가 있으며, 동점자 처리기준이 변별력이 미흡.
- 지역여건에 맞고 주관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한 공정한 평가 지표를 사용하고, 심사 과정도 행정과 시행주체가 공동으로 현장조사 하여 시행함으로써 심사 결과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동점자 처리기준을 실적 등과 연계하여 점수를 차등 부여할 필요가 있음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06년 12월 21일 과수발전협의회에서 선정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였음.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07년 8월에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형식적이었고, 이미 영농, 수확기가 도래하여 미개시 12농가에 대해 전화 독려 수준으로 조치하여 미흡함.
- 대상자 선정 통보 후 2개월 경과시점인 '07년 2월(2.21~2.28)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어야 하고, 단순 전화조사가 아니라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미개시 농가의 조기 착공과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농가의 사업은 포기하도록 요구했어야 함.
- 또한 정확한 점검으로 예산 집행 미흡, 타 농가 피해를 방지해야 함.

###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중도포기자에 대한 제재방법 명시는 현재 교육자료집에 명시하였으며 중도포기자는 3개년간 FTA기금사업 지원에 배제하여 명단 관리함으로써 적정하게 처리함.

- 신청서, 교부결정서, 출하약정서 등 농가에게 통보되는 공식 문서에도 명시하여 중도포기 농가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함.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중도포기 물량을 예비대상자에게 지원하였기 때문에 적절하게 처리하였음.
- 미지원된 예비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 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06년								
'07년	32	32	100	330	264	80	시행주체	1년
계	32	32	100	330	264	80	시행주체	1년

- 사업신청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약정 체결하여 양호함.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07년 약정농가 생산량 대비 80% 출하약정 체결하여 양호함.

**③ 출하약정 주체**

- 출하약정은 시행주체인 대구경북농금 성주지소와 체결하여 적절함.

**④ 출하약정기간**

- 출하약정기간은 별도의 약정기간을 설정하지 않아서 1년으로 간주
- 5년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농가 참여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행주체 중심으로 체계화된 판매,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제재방법 및 인센티브가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없음.
- 제재방법 및 인센티브를 출하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관련 지자체 사업 시행지침과 시행주체의 내부 규정을 만들어 제도화, 실제 엄격히 적용하여 농가들의 출하이행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함.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성주지소가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를 통해 주요 자재를 일괄 구매하였으나 본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괄 구매 계약에 의거하여 추진하였으므로,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자재 품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는 실질적 가격 절감 효과가 없으며 개별 구입시에도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일반 업체의 견적서 징구, 입찰에 의한 가격비교, 품질관리 조건 요구 등 실질적 공동구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업체선정기준이 있으나 기준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미흡함.
- 선정기준을 보완하고 선정도 시행주체 단독의 실무자 선정에서 탈피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업체선정평가위원회 등을 활용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을 하지 않았음.
- 전국 평균의 사업단가와 사업 메뉴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관계자가 참여하는 단가 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세부 시설 기준과 단가를 조정하여 적용해야 함.

##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 ① 예산집행을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55	55	35	20		55			100%
기타사업			743	743	369	39	328	736			99%
<b>합계</b>			<b>798</b>	<b>798</b>	<b>404</b>	<b>59</b>	<b>328</b>	<b>791</b>			<b>99%</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예산 집행율은 99%로 우수하며, 상반기 조기 집행비율도 높아 우수함.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행정과 시행주체간 수시협의, 일제점검, 하반기 주간 보고 노력 등 상당한 노력이 이루어졌음.
- 사업지도를 위한 농가방문 및 사업별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통해 미개시자를 적기에 점검하는 관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부족한 용자금 예산을 전배 받아 집행하는 등 사업 추진 노력이 인정됨.
- 사전 용자 자금 수요 파악을 철저히 하고, 집행 시기, 대출기관 통보 등 실제 집행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은 경북능금 성주지소를 통하여 FTA기금 사업 대상 농가에 우선 지원한 실적은 우수하나 이외의 사업은 대부분 일상적 과수 지원사업으로 연계성이 약함.
- 향후에는 시행주체가 실시하고 있는 자체사업과 FTA기금 지원사업을 동일하게 운용함으로써 연계성을 확보하고 과수 지역통합 마케팅과 직접적 연계된 사업을 개발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경북도 점검에서 지적된 자문회의 개선을 제외하고 당해 연도 및 차년도 사업에서 대부분 개선하여 노력이 인정됨.
- 보고서류 제출 지연(+0.19점) : 미제출 0건(-0점), 지연일 5일(-0.05점), 조기일 24일(+0.24점)
-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와 관계자의 주의가 요망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경북능금 성주지소의 기존부서에 업무를 분장하여 사업을 추진.
- 성주지소는 조직 규모와 출하규모가 작기 때문에 칠곡군을 대표하는 유통 조직을 성장하는데 한계가 존재.
- FTA기금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여 지역농협과 연계한 협력체 구성과 활용이 필요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
2006년				%
<b>2007년</b>	<b>264</b>	<b>246</b>	<b>536</b>	<b>75%</b>
계	264	246	536	75%

- 출하약정 이행율이 대체로 양호하나 단순계통출하를 벗어나 공동선별·공동계산에 참여하여 출하약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1,139	1,290	13%	1,893	2,373	25%

- 출하증가율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공동선별·공동계산에 기반한 체계화된 마케팅 운영이 아닌 순회수집과 도매시장 출하관리에 기반.
- 사업 규모화와 함께 사업 추진 방식, 마케팅 성과 향상에 노력해야 함.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1,812	1,893	2,373	25%

- 사업실적 규모가 2,373백만원으로 '07년 25%의 증가율을 보임.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동선별·공동계산 신규 작목 반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 실적 없음.
- 유통규모화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공동선별·공동계산의 실적 및 증대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07년 칠곡군에서 '아침해칠곡'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지역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로 광범위하여 브랜드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여건임.
-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한 지역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품질관리에 기반한 브랜드 상품화와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권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재정비가 필요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 공동브랜드가 '07년에 개발되어 브랜드 사업 실적이 없음
-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사업시행 주체와 참여농협, 참여농가가 계열화될 수 있도록 공동브랜드관련 사업을 계열화 지원하는 것이 요구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137	85	88	4%

- 유통사업 참여 농가수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농가수가 적어 미흡함.
- 향후 유통규모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예농가 위주로 참여농가수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사업 규모화 노력과 체계적인 농가조직 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⑨ 기타 사업실적

- 과일류 이외의 판매사업은 전혀 없고 각종 구매사업 증가율은 양호함
- 향후에는 농가의 소득증대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판매사업 확장과 지소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08년 3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나, 구체성 및 사업개선 활용 실적이 매우 미흡함.
- 설문조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조사시기를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시행하여 실제 사업 개선에 반영하도록 해야 함.
- 기타 농업인 의견수렴 대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단편적인 사항으로서, 체계화된 만족도 조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시행 성과와 만족도 파악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여 지속적인 사업개선과 성과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실적이 없음.
- 행정, 시행주체, 참여조직이 공동으로 자체 평가회를 실시. 계획, 집행, 성과 단계의 주요 지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도출과 사업 계획 반영 등으로 사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교육 횟수 및 충실도는 다소 미흡하고 교육내용의 범위는 매우 미흡함.
- 전문강사를 통한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일관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에서 제작한 재배력, 영농지침서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매뉴얼이라기 보다는 교육교재로 판단됨.
- 향후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일관된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재배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함.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상반기 및 3/4분기 예산 조기 집행 실적이 인정됨.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신규조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추진의지가 대체로 양호함.

40(5-01)	포항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사과 (보조) 배, 단감	선정년도	2005
사업주관기관	포항시	사업시행주체	기계농협
참여시군	포항시		
득점현황	합계 (100)	5등급	
	계획단계(10)	D+	
	집행단계(50)	F	
	성과단계(40)	D0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기계농협을 주관으로 하며, 참여조직은 포항시 전체 과수 생산의 73%를 취급하고 있음.
- 특히 기계농협의 경우 APC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선별, 공동계산 우수조직으로 최근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을 확대하고 있음.

### □ 핵심성과

- 친환경 고품질 과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 APC 중심의 공동선별, 공동계산 시스템 구축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참여조직별로 생산시설현대화자금을 운영하였으며 영농법인의 경우 참여조합원의 전량 물량 출하 및 매취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출하약정 체결을 하지 않음.
- 규모화, 집중화를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불합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체계를 기계농협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함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분 참여농가가 고령화로 인하여 과원 정비에 대한 참여율이 떨어짐.</li> <li>배, 단감 부품목의 경우 생산기반이 취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항시라는 지역단위 과수산업의 약점을 기회로 살리기 위하여 기계농협을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과수산업으로 지속적 육성이 필요.</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개 참여조직 개별로 대상자 선정 등 사업 관리를 수행함.</li> <li>3개 참여조직간 회의체계 구축이 미흡하여 상호 네트워크 구축 노력 부족</li> <li>시행주체의 전담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미흡하며 농가 조직화 유도 미흡</li> <li>사업관리는 단일화 할 예정이나, 이질적인 조직특성으로 인해 실질적 마케팅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주체의 주도적 역할이 미흡하고, 3개 참여조직별로 지원사업과 판매사업이 전개되어 통합, 규모화 노력이 매우 미흡.</li> <li>참여조직간 협의체계를 재정비하고, 사업계획 전반의 점검을 통해 공동사업 추진 가능성 및 규모화, 공동브랜드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해야 함.</li> <li>담당인력 교체시 명확한 업무인수인계 실시로 사업관리의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항시의 자체예산 확보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및 상반기 사업집행실적이 저조</li> <li>'07년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예산 집행율은 69%로 저조하며 전년보다도 감소</li> <li>예산집행, 관리가 시행지침과 괴리되어, 사업 선정, 예비대상자 선정, 미개시자조사, 중도포기자 관리 등 전반적 사업관리가 매우 미흡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시기에 늦지 않도록 자체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li> <li>시행지침의 규정 사항을 준수. 사업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고 예비대상자 확보, 미개시자 조사, 중도포기자 관리 등 사업관리 전반의 개선 노력 필요.</li> <li>특히, 시행주체가 대상자 선정, 출하약정 체결을 전담하여 규모화, 집중화된 지역과수 마케팅 기반 마련 필요.</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개의 조직이 이질적 조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개별적으로 상당한 사업성과를 이룩하고 있어 주체간 공동사업에 대한 어려움 존재.</li> <li>각 조직별로는 사업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연계사업 구축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물조달 및 상품화는 각 참여조직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분담하여 시행하되 마케팅은 기계농협이 책임지고 실시.</li> <li>공동브랜드 활용, 공동 홍보·판촉, 친환경상품 출하선 공유 등 실질적 협력 노력 필요.</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5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D+</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D0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C0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D0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F</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F</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D0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C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D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0.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0.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F</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0.00	
③ 출하약정 주체	2	0.50	
④ 출하약정기간	1	0.2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D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1.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0.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C+
	① 예산집행률	10	8.12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D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C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F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F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32	
<b>성과단계 소계</b>		<b>40</b>	<b>D0</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C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F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2.77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0.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80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2.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0.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C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0.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3.00
	⑨ 기타 사업실적	1	0.09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C+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F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D+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24
	② 교육 횟수	1	1.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D0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D0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0.31	
	비계량	D0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D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과수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자문회의를 대체하고 있으나 학계나 연구계의 외부 전문가 확보가 미흡하고, 자문회의 실적이 없음.
- 농업인 의견수렴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나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주요 분야 전문가 참여를 추진하고, 회의 및 E-Mail, 서면자문 등 의견 청취통로를 다양화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야 함.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행정과 시행주체 간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되어 4회에 걸쳐 운영되고 있으나 행정이 전반적인 FTA사업에 대한 기획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참여조직 실무자간 회의를 통하여 사업추진방향 등에 대한 실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공동마케팅 등 유통 부문에 대한 회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실질적인 회의 및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포항시 과수산업의 발전방향 및 공동마케팅사업에 대한 대안 제시 노력이 필요함.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06년 연차평가 결과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해 자체사업 지원 및 출하약정이행률 개선 노력은 있으나 실질적인 개선노력은 부족함.
- 자문회의 체계 구성 및 전문가 영입 등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사업시행주체가 참여조직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참여조직별 사업으로 진행되는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함.

나. 집행단계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시·군				○		◎	
읍·면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합	◎	◎	◎	◎		○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사업시행주체의 역할이 매우 미흡하며 신청서접수, 심사, 지도점검 등 시행주체가 총괄해야 되는 기능을 각 참여조직별로 시행하고 있음.
  -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시행주체 중심으로 우선순위 심사 등 핵심 업무를 진행하고, 행정과 참여조직이 역할 분담하도록 해야 함.
- ※ 포항과수발전사업의 경우 신청서 접수, 심사 단계부터 사업시행 지침과 괴리되어 추진. 충분한 사전 홍보와 수요조사로 사업 신청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공정하고 객관적 대상자 선정, 예비대상자 선정 및 운용 등 사업전반이 시행지침에 적합하도록 진행되어야 함.

## ② 1,2순위 준수여부

- 1, 2순위를 구분하여 접수, 평가하지 않았음.
- 1, 2순위를 구분하여 접수하는 것은 지원과 출하를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신청단계부터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농가를 1순위로 구분하여 분리·평가함으로써 농가조직화 및 유통규모화를 위한 확고한 기반마련이 필요하며, 농가 참여도 제고와 책임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행주체 판매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개별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심사표는 없으며 IFP사업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하였음.
- IFP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심사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후계농업인여부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보완 필요하며 계량화된 실적과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연동될 수 있는 심사표 도입이 필요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전체 신청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우선순위 심사의 변별력이 매우 미흡함.
- 우선순위 심사표의 공정한 적용 및 탈락 기준점수 산정 등이 필요함. 표준양식을 적용하되 지역 및 품목 여건에 적합하도록 항목과 배점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점자 발생에 대비하여 실적등과 연계하여 점수를 차등 부여할 필요가 있음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07년 3월에 사업대상자 선정하였음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년도말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교부 결정, 선정통보 등 관련 행정절차를 조기(1월)에 진행하여 영농철 이전 사업이 개시되도록 노력해야 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음

- 사업대상자 선정 2개월 전후로 미개시자를 조사하여야 하며 해당 미개시자에 대하여는 사업독려 및 포기서 징구 등 적절히 조치해야 함.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과수원 매도로 사업포기자가 2명 발생하였으나 사업신청서, 교부결정서, 출하약정서 상에 중도포기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재사항을 적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 중도포기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사항, 시행주체의 사업적 조치사항 등 제재사항에 대한 명확한 고지와 철저한 적용이 필요함.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예비대상자 미확보.
-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시 예비대상자를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체계 보완해야 하며 미 지원된 예비대상자를 다음 연도에 우선 지원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 출하약정이 시행주체 주도의 통합, 규모화의 개념으로 적용되지 않고 참여조직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별도의 통합 노력도 없음. 단순한 생산기반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마케팅 개념으로 확장하기 위한 사업계획 전반의 검토와 시행주체, 참여조직간 협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98	98	100	785	559	71	참여조합	1
'06년	134	134	100	1,035	1,001	97	"	1
'07년	152	152	100	1,220	1,090	89.3	"	1
계	384	384	100	3,040	2,650	257.3	-	

###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 영농조합법인은 출하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음.
- 사업대상자 농가들의 경우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장기 출하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출하약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 설명을 강화해야 하며 사업신청 시 출하약정을 의무화하여 지원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기계농협에 한정하면 89.3%에 해당하나 참여조직별 출하약정으로 총량이 집계되지 않음.

### ③ 출하약정 주체

- 출하약정은 시행주체가 아닌 참여조직별(농협)로 체결.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출하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대구경북농협농협의 경우에도 시행주체가 아닌 자체적인 출하약정을 체결하는 등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향후 출하약정은 시행주체인 기계농협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기존 출하약정도 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④ 출하약정기간

- 별도의 출하약정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음.
- 향후 5년 이상 장기출하약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단순 약정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출하약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출하약정서 상에 향후 5년간 FTA기금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으나 형식적인 측면이 강함.
- 별도의 규정 및 인센티브 방안은 없음.
- 향후 지자체 및 사업시행주체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예산 및 제도를 통하여 출하약정 이행 및 위반 시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 페널티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미추진하였음.
- 시행주체를 중심으로 지역 수요가 많고, 공동 구매 효과가 큰 품목에 대해 일괄 구매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행주체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매년 품목별 공동구매 조합을 지정하는 방안도 있으나, 견적서 징구와 입찰에 의한 가격 비교, 품질관리 조건 요구 등 실질적 공동구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05년 선정업체를 그대로 공유
-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업체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평가표에 의거하여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특히 시공업체에 대해서 매년 품질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기준점수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FTA 및 기타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한 배제 등의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적정 사업단 검토 및 조정을 시행하지 않았음.
- 전국 평균의 사업단가와 사업 메뉴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가 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세부 시설 기준과 단가를 조정. 생산시설 설치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비용절감, 농가 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함.



##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 ① 예산집행을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407	231	32	670			385	385	209	76	57%
기타사업	511	1,010	318	1,839			1,345	1,345	380	114	73%
<b>합계</b>	<b>918</b>	<b>1,241</b>	<b>350</b>	<b>2,509</b>			<b>1,730</b>	<b>1,730</b>	<b>589</b>	<b>190</b>	<b>69%</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예산 집행률은 69%로 매우 미흡하고, '06년 예산집행률보다도 오히려 감소하였음.
- 이는 포항시의 자체예산 확보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포항시에서는 본 사업예산에 관련 지방비를 반드시 편성하고 사업시행주체에서는 상반기 중 조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포항시 자체 예산 확보가 7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예산집행이 늦어짐.
- 보조금 교부결정을 적기 내 시행하고 정기적인 예산집행을 점검회의를 통하여 농가들이 기간 내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키낮은사과원에 한해 용자예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전 신용조회 등 실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노력은 미흡
- 용자 소요 규모를 신청단계부터 사전 파악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산의 활용에 대한 홍보 등 사전 농가설명회 개최 노력 필요.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과수착색봉지지원사업, 반사필름 지원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동사업과 연계한 사업시행노력이 엇보이나 지원대상농가가 FTA사업 참여농가에 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계성이 미흡함
- FTA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적인 연계사업 발굴이 필요.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농식품부 등 기관의 점검 지적사항 미이행 없음.
-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및 제출 후 수정, 허위사실 기재 없음
- 보고서류 제출 지연(+0.32점) : 지연일 11일(-0.11점), 조기일 43일(+0.43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다. 성과단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회(과수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07년 7회 실시하였음. 그러나, 시행주체 중심의 규모화를 요구하는 정책 목표와 불합치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음.
- '08년 사업부터 출하약정물량에 대한 실질적인 공동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525	559	785	106%
2006년	1,001	778	1,083	78%
<b>2007년</b>	<b>1,090</b>	<b>1,008</b>	<b>1,216</b>	<b>92.5%</b>
계	2,616	2,345	3,084	89.6%

- 출하약정이행률은 92.5%로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출하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음.
- 시행주체 중심으로 공동판매 체계를 구축하고, 문서화된 출하약정을 체결하여 보다 명확한 출하물량 파악과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판매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2,116	1,532	△27.59%	3,794	2,671	△29.60%

- 기계농협의 출하량과 출하액이 모두 감소하는 등 유통규모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됨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	3,794	2,671	△29.60%

- 총 사업실적이 크게 감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되며, 사업 실적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같이 요구됨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2,671	2,671	100.0%

- 공동선별·공동계산실적은 2,671백만원으로 우수하며 APC간 연계 및 신규 APC 증설에 대비한 보완대책이 필요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2,116	1,532	△27.59%	3,794	2,671	△29.60%

- '06년 대비 '07년 실적이 크게 감소하였으므로 유통규모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공동브랜드가 없으나 각 참여조직별로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개별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현재 참여조직간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지역이미지를 강화하고, 품질관리 기준을 통일하여 운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업준비가 이루어져야 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율(B/A)
사업실적(백만원)	2,671	0	0.00%

- 참여조직별 브랜드 사용으로 공동브랜드 사용 안 되고 있어 공동브랜드 사업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467	377	466	23.61%

- 참여조직간 APC 및 판매사업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유통사업 참여조합원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⑨ 기타 사업실적

- 과일류 이외의 판매실적 및 농자재, 포장재 공동구매 실적이 우수한 편에 속하며 특히 기계농협의 경우 과일류를 비롯한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을 확대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향후에도 농가의 소득증대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확대가 필요함.

###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07년 말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향후 사업계획 반영 등의 환류체계 구성이 미흡함.
- 지역실정에 맞는 설문지 설계 및 분석,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시행 성과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 개선과 성과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실적이 없음.
- 자체적인 평가지표 개발을 통하여 FTA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지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행정, 시행주체, 참여조직이 공동으로 자체 평가회를 실시하여 계획, 집행, 성과 단계의 주요 지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도출과 사업 계획 반영 등으로 사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기계농협에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기술 및 유통교육을 7회에 걸쳐 약 476명을 대상으로 추진
- 특히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계농협 뿐만 아니라 참여조직간 교육사업의 통합으로 FTA사업과 유통사업간 연계방안 마련 필요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기계농협에서 APC 관련 청초롬 운영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품질관리매뉴얼로 보기 어려움.
-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재배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향후 사용할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매뉴얼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할 것임.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해당사항 없음.
- 전반적인 사업 성과가 미흡하므로 총 사업 실적의 규모화된 경영 및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07년 사업추진 방식이 시행 지침의 요구와 불합치하여 미흡하므로 전반적인 사업 개선이 필요함. 사업 담당자의 열의가 높으므로, 지역내 협력 노력과 참여조직간 협의 활성화를 통해 개선된 성과를 도출해야 함.



## 경 상 남 도

- 41. 경남 김해단감육성사업 ..... 679
- 42. 경남 밀양열음골사과육성사업 ..... 696
- 43. 경남 사천과수육성사업 ..... 711
- 44. 경남 서북부과수육성사업 ..... 728
- 45. 경남 진주과수육성사업 ..... 744
- 46. 경남 창녕단감육성사업 ..... 762
- 47. 경남 창원단감육성사업 ..... 777
- 48. 경남 하동과수육성사업 ..... 793
- 49. 경남 함안과수육성사업 ..... 809





41(5-05)

김해단감육성사업

지원품목	(주) 단감 (보조)	선정년도	2004
사업주관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사업시행주체	김해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시군	김해시		
득점현황	합계(100)	4등급	
	계획단계(10)	C0	
	집행단계(50)	C0	
	성과단계(40)	F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김해시는 전국 단감 재배면적의 6.1%를 점유하며 단일 시군으로는 경남 창원에 이어 2위 생산지역임.
- 김해시 농협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시단위 연합마케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경쟁력 있는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 핵심성과

- 연합사업단의 법인화 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경영전문성 확보.
- 시설현대화를 통해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정비.
- 지속적인 단감 수출을 통한 판로 다변화 추진.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김해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07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양곡 부문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08년 말부터 과수원예팀을 운영할 계획임.
- 실질적인 과수유통의 주체로서 농가조직화 및 APC 운영시스템 확보 필요.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한 농지가 격 상승으로 전반적인 과수산업의 활력 저하.</li> <li>• 부채지주의 증가로 인한 고품질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저하.</li> <li>• 단감 농가의 신규진입은 거의 없는 실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예화된 단감 생산농가 조직화를 통한 차별화된 과수산업 활로 모색.</li> <li>• 친환경 과수산업 발전 등 새로운 형태의 과수산업 발전계획 수립.</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년 FTA사업예산이 42백만원으로 지역 내 과수산업 발전 동력을 찾기에 는 미흡한 실정임.</li> <li>• 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하는 과수 및 과채 공동마케팅은 활성화 되어 있음.</li> <li>•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설립되었으나 실질적인 원예,과수 업무는 연합사업단 및 참여조직에서 수행</li> <li>• 법인의 과수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및 자체사업 예산의 증대를 통해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체계적 지원 체계 마련.</li> <li>•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실질적인 시행주체로서 과수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조기에 조직 확충과 역할 부여 필요. 과수부문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됨.</li> <li>•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집행율은 100%로 양호하나 예산규모가 매우 적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교부결정, 통보 등 행정절차를 조기에 시행하여 원활한 예산집행 요망됨.</li> <li>• 출하약정이 실질화되지 않아 이행율이 50%로 저조하므로 개선이 필요.</li> <li>• 효과적 예산집행을 위한 자재일괄 구매, 단가 조정 시행 요망.</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해 단감 유통은 경남단감농협, 진영농협, 김해농협에서 4개 브랜드로 출하될 만큼 참여조직간 통합 논의 미흡.</li> <li>• 산지유통시설이 분산되어 APC의 통합 관리와 운영이 당면 과제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한 일체화된 공동마케팅시스템 구축 필요.</li> <li>•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해 브랜드 통합을 달성하고, 효과적 품질관리로 체계적인 단감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4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0</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C+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C0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C0</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C0</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C+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C+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C+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1.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D+</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00	
③ 출하약정 주체	2	1.00	
④ 출하약정기간	1	0.2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3.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0.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B+
	① 예산집행률	10	10.00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B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C+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F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F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81	
<b>성과단계 소계</b>		<b>40</b>	<b>F</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B+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F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0.00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0.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00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0.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0.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D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0.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0.00
	⑨ 기타 사업실적	1	1.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C+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F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D0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11
	② 교육 횟수	1	0.43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C0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C0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0.48	
	비계량	D0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C+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과수발전협의회가 자문회의 역할 대행. 과수발전협의회에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나 단감연구소를 제외한 자문위원은 참여조직(농가조직, 참여농협)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계획 수립 및 피드백에 필요한 자문기능은 어려움.
- 김해시 단감과수산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하며 특정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개별면담, 전화,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07년 FTA기금사업과 관련된 과수발전협의회는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주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공업체 변경, 기타 의결사항 등 기금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이 대부분임.
- 농업인 의견 수렴은 연초, 연말에 사업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농가들에게 홍보와 각종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접수받고 있어 정례화된 농업인 의견 수렴체계를 확보하고 있음.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행정과 시행주체 간 사업계획 수립 및 연합사업단 법인화 추진을 위한 회의 체계는 구성되어 있으나 정례화 되어 있지 못하여 개선 필요.
- 단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이외에도 한미FTA 추진에 따른 행정-농협 간 실무 대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능동적인 사업추진노력이 돋보임.
- 연합사업단에서는 FTA사업 추진과 연합마케팅 사업을 연계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회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나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상시적인 회의 체계로 전환이 필요함.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대부분의 항목에 있어 개선실적 노력은 돋보임. 다만 외부 여건 및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하여 실제 개선되지 못한 부분도 발생하였음.
- 자문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위원 구성은 시도했으나 개인사정 및 어려움이 있어 '07년에는 추진되지 못하였음. 현재 “전문위원 위촉팀”을 구성하여 '08년 상반기 중으로 재확보 추진 중.
- 출하약정이행율은 전년보다 낮아졌으나 이는 기상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08년의 경우 개선의 여지가 보임.
- 공동브랜드의 경우 자체 네이밍 설문조사를 통해 ‘가야뜰’ 출원을 준비 중이나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개발은 아님.

나. 집행단계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시·군				○	◎	◎	
읍·면							
사업시행주체	◎	◎	◎	◎			
참여조합	○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사업시행주체가 신청서 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07년 3월에 설립된 김해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되었는데 이후 실질적인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함.

## ② 1,2순위 준수여부

- '07년 사업 신청시('06년 12월) 신청서 상에는 1, 2순위를 구분하지 않았음
- '07년 6월 실시한 연차평가 이후 신청서 및 출하약정서 등을 표준안으로 갱신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후 갱신한 사업신청서에는 1, 2순위를 구분하고 표준(안)보다 더욱 강화된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향후 1, 2순위 구분 접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우선순위 심사항목 중 고품질 농산물 생산, 공동계산 등 정부 정책 수용성 지표와 계통출하, 출하약정 등 유통규모화 촉진 부문이 우수하게 반영되어 있음.
- '08년 대상자 선정 시에는 농식품부 표준안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정책 수용성, 유통규모화 촉진, 기타 합리적 기준을 고루 반영하여 계량화된 실적과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연동 될 수 있는 심사표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전체 신청 농가 대비 선정률은 54.5%로 실질적인 심사결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다만 심사 결과를 보면 선정농가의 점수가 65~80점대에 집중 분포되어 있어 심사표의 변별력은 떨어지며 동점자 처리 기준은 출하실적, 전업농, 주소지 등의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음.
- 선정농가의 점수 분포가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심사표의 개정 혹은 심사표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며 특정 점수 이하의 농가들은 신청자수가 부족하더라도 본 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사업대상자 확정은 연합사업단에서 우선순위 심사를 1월에 완료하고 2월에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인 선정은 2월 21일 과수발전협의회에서 사업대상자 심의, 의결.
-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신청농가에 대한 우선순위 심사를 마치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야 하며, 보조금교부결정 및 통보를 조기(1월)에 실시하여 영농철 이전에 사업 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07년 5월 (5.1~5.4)에 미개시자에 대한 일제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독려를 실시하였으며 1회에 걸쳐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사업을 포기하여 포기각서 및 기금사업 및 농림사업 불이익 조치 사항을 고지하였음.
- 사업시행주체에서 미개시자에 대한 점검회의체계 구축 및 행정, 참여조직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더욱 강화해야 함.

###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신청서에 중도포기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고시하였으며 '07년 사업에서는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았음.
- 신청서 뿐만 아니라 보조금 교부결정서 및 출하약정서에 중도포기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사항, 시행주체의 사업적 조치사항 등 제재사항을 명시하여 농가들이 중도포기에 대한 페널티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사업대상자 추천시 130%를 확정하여 예비대상자 명단을 관리하였으며 미개시자 발생건에 대해 차순위에게 사업 배정.
- 당해연도 차순위 뿐만 아니라 차년도에 동일 사업 대상자 선정시 예비대상자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예비대상자 선정 시 미선정된 예비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25	23	92	1,108	755	68.1	연합사업단	1
'06년	30	30	100	798	590	73.9	연합사업단	1
'07년	6	6	100	230	115	50.0	연합사업단	1
계	61	59	96.7	2,136	1,460	68.4		

- 사업신청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체결하여 양호하며 향후에도 사업신청 단계에서부터 출하약정을 의무화하여 지원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약정을 체결해야 함.

###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냉해 피해로 인하여 출하약정이행률이 매우 저조하였으나 출하약정물량은 기존 약정서 상에 50%로 되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08년부터 80%로 재갱신하였음.)

### ③ 출하약정 주체

- 사업시행주체인 김해시연합사업단으로 출하약정을 하였으며 '08년 사업대상자부터는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변경

### ④ 출하약정기간

- 출하약정기간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1년으로 간주하였음
- 5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농가 참여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계획적인 판매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신청서 및 출하약정서 상에 향후 3년간 FTA기금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음.

- 별도의 규정 및 인센티브 방안은 없음.
- 지자체 및 사업시행주체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예산 및 제도를 통하여 출하약정 이행 및 위반 시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 패널티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07년 세부사업별 사업비가 적어 자재일괄구매 기대효과 저하가 예상되어 미추진 하였음.
- 자재일괄구매를 통하여 사업비 절감 노력이 요구되며 시행주체를 중심으로 지역 수요가 많고 공동 구매 효과가 큰 품목에 대해 일괄 구매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과수발전협의회에서 업체 선정, 2차에 걸쳐 업체 선정을 추진하는 등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으며 평가표에 의해 공정한 서면심사 추진
- 업체 선정시 시공 포기 시 3년간 사업시행 포기각서를 받는 등 우수 업체 선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
- 향후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업체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평가표에 의거하여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적정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 실적이 없음.
- 전국 평균의 사업단가와 사업 메뉴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관계자가 참여하는 단가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단가를 조정하여 농가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 ① 예산집행을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기타사업			21	21		8	13	21	0	0	100%
합계			21	21		8	13	21	0	0	100%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예산 규모가 적으며, 집행률은 100%로 모든 예산을 집행하여 우수함.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사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조기 추진 및 미개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독려
- 상반기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예산집행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회의체계를 가동하고 시행주체에서는 조기에 농가들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 필요.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사업신청시 용자희망여부를 파악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 심사를 할 때 대출가능여부 등 사전 신용조회 실시
- 용자예산 필요농가가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신청시 용자예산 희망여부를 신청서 상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시행주체 및 참여조직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용자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통상적인 지자체 지원사업은 있으나 효과적으로 연계된 지원사업은 없음.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하고 있는 자체사업과 FTA기금 지원사업을 동일하게 운용함으로써 연계성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주체와 연계한 유통사업시스템 구축.

- 도시화로 인한 더 이상의 신규과원 조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 정예화된 농가를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농식품부 등 기관의 점검 지적사항 미이행 없음.
-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및 제출 후 수정, 허위사실 기재 없음.
- 보고서류 제출 지연(-0.81) : 미제출 1건(-1점), 지연일 7일(-0.07점), 조기제출 26일(+0.26점)
- 보고서류 미제출과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07년 3월에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登記 완료
-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구성되었으나 실질적인 FTA관련 원예품목 업무는 연합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08년 말까지 법인 내 원예과수팀을 구성하고 업무를 이관할 계획임. (법인의 현재 취급 품목은 쌀에 국한)
- 법인 내 FTA 및 과수원에 담당팀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실질적인 김해시 과수산업을 총괄할 수 있는 사업팀을 구성해야 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 사업시행주체가 연도중에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유통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제시된 실적은 연합사업단 실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수 없음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755	115	121	15.2%
2006년	590	263	303	44.6%
<b>2007년</b>	<b>115</b>	<b>12</b>	<b>14.2</b>	<b>10.4%</b>
계	1,460	390	438.2	26.7%

- 단감의 동해 피해 발생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출하약정이행률은 10.4%로 대폭 감소하였음.
- 출하약정의 실질화와 이행실적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유통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 제시된 실적은 연합사업단 실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수 없음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1,127	1,572	39.4%	3,033	3,123	2.96%

- 연합사업단의 취급량 및 출하금액 2.96% 증가하였으나 향후 증가율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유통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 제시된 실적은 연합사업단 실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수 없음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2,458	3,033	3,123	2.96%

- 총 사업실적 3,123백만원 규모로 증가율은 2.96%
-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유통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 제시된 실적은 연합사업단 실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수 없음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율(B/A)
실적(백만원)	3,123	3,123	100.0%

-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100%로 우수함.
- 공동선별·공동계산 수용 농가만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조직의 APC와 연계된 유기적인 사업시스템 구축이 가능하였음
-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유통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 제시된 실적은 연합사업단 실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수 없음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D-C)/C
1,127	1,572	39.5%	3,033	3,123	2.96%

- '06년 대비 '07년 2.3% 증가에 그쳐,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시를 통한 유통규모화 노력이 요구됨.
-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유통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 제시된 실적은 연합사업단 실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수 없음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단감 주취급 참여조직인 진영농협의 “진토박이”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였음. 단감 출하조직은 전체가 진토박이 브랜드 사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공동브랜드 체계는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공동브랜드 “가야뜰”을 특허 출원 중임. “가야뜰”은 네이밍만 있으며 아직까지 포장재 디자인 등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공동브랜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참여조직간 브랜드 공동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시에서는 성공적인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조례 제정 등으로 제도적 지원 실시.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 율(B/A)
사업실적(백만원)	3,123	3,029	97%

- 개별농협 브랜드 사용하지만 전체 참여농협이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어 준 공동브랜드로서 인정이 가능.
- 다만 '08년부터는 시행주체를 통한 공동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 브랜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존 개별조직의 브랜드와 공동 브랜드간 브랜드 위계시스템 구축해야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유통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 제시된 실적은 연합사업단 실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수 없음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287	413	465	12.6%

- 향후 유통규모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사업확대 및 지속적 교육사업운영이 필요하며 정예농가 위주로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수를 확대해야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유통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 제시된 실적은 연합사업단 실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수 없음

⑨ 기타 사업실적

- 기타사업은 과일류 이외 품목 및 농자재, 포장재 공동구매 실적이 있으며 특히 과일류 이외 품목의 사업 확대가 주목할 만함.
- 농가의 소득증대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한 지속적 사업 확대가 필요함.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김해시에서 '07년 말, '08년 초에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수요조사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였음.
- 특히 '08년 초에 실시한 설문에서는 시공업체에 대한 품질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마감 공사에 대한 불만 사례가 많다는 것을 '08년 업체 선정시 활용할 계획임.



- 다만 설문지 설계시 척도간 거리 계측에 어려움이 있어 설문지 설계 수정이 요구됨.
- 지속적인 농가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차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실적이 없음.
- 계획, 집행, 성과 단계의 주요 지표를 점검함으로써 FTA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지표 개발을 통하여 자체적인 성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용역업체 등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컨설팅을 받도록 해야 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에서 공동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기술 및 유통교육을 3회에 걸쳐 약 220명을 대상으로 추진
-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성공적인 업무 이관을 위하여 연합사업단 참여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시스템에 대한 교육 및 사업이해도 증진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정예화 된 농가 선정 및 육성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매뉴얼 제작, 보유 없음.
- 생산과 유통까지의 품질관리 매뉴얼을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공동브랜드 사용에 따른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차별화된 재배매뉴얼 및 A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 품질관리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상반기 및 3/4분기 예산 조기 집행 실적이 인정됨.
- 기타 사업 부문에서 생산시설 시공업체와 시행주체간 FTA기금사업 도우미 센터 운영 협약 체결(생산시설 정기 점검 등 추진 및 유지보수)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농업인의 투자여력이 낮아지고 임대농가가 증가하는 등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점이 많으나 사업시행주체 및 행정의 사업에 대한 열의가 높은 편임.

42(3-03)	밀양얼음골사과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사과 (보조)	선정년도	2004
사업주관기관	밀양시	사업시행주체	밀양얼음골유통사업단
참여시군	밀양시		
득점현황	합계 (100)	5등급	
	계획단계(10)	C+	
	집행단계(50)	D0	
	성과단계(40)	F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사업시행주체는 밀양농협, 얼음골유통영농조합, 얼음골영농조합이 참여하는 유통사업단임
- 유통사업단은 비법인 사업단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법인화를 유예. 그러나 실제 사업은 밀양농협과 유통영농조합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 요소임.

### □ 핵심 성과

- 2개 조직이 거점APC 자금으로 중규모 APC를 신설, 보완하여 사용 중. 마케팅 통합과 지역 주체간 경합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처를 분할 운영하는 등 일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얼음골사과' 브랜드 가치를 확립하여 소비자 인지와 선호가 높아 판로 운영과 가치 향상에 성과를 내고 있음.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사업주체인 유통사업단은 유명무실한 비정규 조직임.
- 주도력을 가진 2개 참여조직이 실질적인 유통사업단을 구성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사업시행주체를 변경하여 정상적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함.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양 얼음골사과는 일교차가 심한 자연조건으로 인해 고당도 고품질 사과로 유명하여 소비자 인지도 및 수요가 높음</li> <li>• 2개 참여조직의 거점APC의 분리설치로 인해 마케팅의 규모화 한계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권 고품질 사과로서의 인지도, 마케팅 주체의 높은 사업 역량을 보다 체계화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마케팅을 강화.</li> <li>• 소규모 산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친환경, GAP, 편의성 등 차별화, 특성화된 과수산업으로 방향 설정 필요.</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협의가 추진되고 있음</li> <li>• 하지만 FTA기금사업과 관련한 자문회의, 조직간 협의 및 회의는 미흡함</li> <li>• 개별 참여조직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군단위의 체계적인 농가조직 관리는 불가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적인 지역내 의사결정, 협의체 활동이 미흡하므로, 얼음골사과발전협회의 활성화가 필요.</li> <li>• 거점APC를 운영하는 2개 조직간 체계적인 판매활동을 전제로 "유통사업단"을 인정하였으나 형식적 출하약정, 행정 협력 미흡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시행 주체의 재정립(법인화)추진 필요.</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 적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개시자 조사를 하지 않고 집행시기도 4/4분기에 집중되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개시자 조사 및 조치 활동을 통해 예산 집행시기를 개선하여 농가에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과 참여조직간 협의가 매우 미흡함</li> <li>• 사업시행주체가 유명무실하여 체계적인 참여조직간 협의 회의는 불가능한 여건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사업단을 실질적 사업주체로 구성하거나 사업시행주체를 변경하여 사업의 구심체를 재설정하는 조치가 요구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5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B0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C0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D0</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F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F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1.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D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D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1.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0.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F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0.54	
③ 출하약정 주체	2	0.50	
④ 출하약정기간	1	0.2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D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4.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0.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B+
	① 예산집행률	10	9.66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B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C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F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F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86	
<b>성과단계 소계</b>		<b>40</b>	<b>F</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F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F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0.00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0.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00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0.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0.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B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0.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0.00
	⑨ 기타 사업실적	1	0.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C+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F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F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00
	② 교육 횟수	1	0.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F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C0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0.00	
	비계량	D0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C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대상자 선정, 생산기반정비 지구 선정 등 행정 절차에 활용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과수발전협의회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자문위원들의 구성 역시 다양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자문회의가 구성되어 운영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농업인 의견수렴은 행정과 시행주체가 교육, 설명회 과정에서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이고 내용 있게 추진되어 우수함.
- 중장기적인 지역 과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단을 구성하고, 정기회의, 사안별 서면 및 E-Mail 자문 등 의견 청취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행정기관과의 협의, 회의 횟수가 미흡하고 내용적 측면에서도 사업 지원 및 추진에 대한 협의가 미흡함.
- FTA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과 사업주체간 협의를 활성화해야 하고, 시행주체와 참여조직간 구체적 실행을 위한 협의체를 정규화하여 안건 토의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표준양식을 활용한 신청 순위 구분, 심사표 개선 등은 이루어졌으나 주체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 실적이 없음.
- 법인화 유예에 걸맞는 연합판매 체계를 전혀 구축하지 않고 있으므로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행주체의 법인화가 반드시 필요함

나. 집행단계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시·군			○	○		○	
농업기술센터							
읍·면	○						
사업시행주체							
참여조합		○	○				

- 동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주체의 역할이 전혀 없고 2개의 참여조직 또한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등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형식적으로 구성된 유통사업단은 실질적인 사업시행주체로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총괄적인 계획수립에서부터 집행까지 모든 업무에 있어 책임있는 역할을 사업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주체에 대하여 법인화가 필요

② 1,2순위 준수여부

- 우선순위 심사표에 1, 2순위를 구분하여 접수하여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생산량 대비 출하량 비율"만으로 평가하는 단순한 평가 지표를 운영. 농가 여건과 정책 수용성, 유통 규모화 등 종합적인 평가 요소가 반영되지 않음.
- 표준안을 활용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심사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표준안을 적용할 때 지역과 품목 여건에 적합하도록 항목과 배점을 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해야 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37농가가 신청하여 100% 전원 선정.
- 심사를 출하비율 단일 지표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점수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20% 미만에 대부분의 신청자가 집중되어 있어 심사결과의 변별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동점자는 생산량이 많은 농가를 우선하고 설치량이 많은 농가를 차순위로 하고 있음.
- 정상적인 심사표를 운영하여 근본적인 선정과정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 사업 수요에 대한 판단과 홍보를 강화하여 신청 물량을 예산대비 12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공정한 심사를 추진하여 농가호응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사업대상자 선정이 '07. 3. 6 전문가협의회에서 선정되어 대상자 선정 시기가 지연됨.
- 대상자 선정은 전년도 연말까지 완료하고 보조금교부결정 및 통보를 조기(1월)에 실시하여 영농철 이전에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대상자 선정 2개월 후에 미개시자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정상적인 사업 추진과 중도포기, 이월 등 문제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지침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반드시 행정과 시행주체가 협력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해야 함.
- 또한, 미개시자 발견 시 사유를 확인하고 사업추진 불능인 경우 포기서를 징구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해야 함.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중도포기자에 대한 제재 내용이 전문가협의회 회의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데 신청서와 교부결정서, 출하약정서 등 농가가 직접 인지할 수 있는 관련 자료에 표시하여 농가의 이해를 명확히 해야 함.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사업신청자가 사업예산보다 적어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함.
-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 수요조사와 사업예산 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상자 선정과 집행 노력이 요구됨.
- 더불어 향후 예비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미 선정된 예비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31	31	100	743	347	46.7	사업시행주체	1년
'06년	42	23	55.0	600	167	27.9	사업시행주체	1년
'07년	34	21	61.7	372	101	24.7	사업시행주체	1년
계	107	75	70.0	1,715	615	35.8	-	-

- 일부 지원농가에 대해 출하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지원하였는데 이는 FTA 기금사업의 추진원칙과 어긋나는 것으로, 출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농가는 FTA기금사업에서 배제해야 함.
- 추후에는 사업신청 단계에서부터 출하약정을 의무화하여 지원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07년 약정농가 생산량 대비 24.7% 출하약정 체결하여 미흡함. 생산량 대비 80% 이상 출하 약정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실제 이행을 위한 실적관리와 사업주체의 마케팅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 ③ 출하약정 주체

- 시행주체가 아닌 참여조직인 밀양농협과 얼음골유통영농조합법인별로 출하약정을 체결.
-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유통사업단을 형식적인 사업단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로 유통사업단을 실질적인 사업조직으로 구성하고 책임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법인화를 추진한 후 출하약정을 정상화 해야 함.

## ④ 출하약정기간

- 출하약정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였는데 FTA기금사업과 연계하여 생산과 유통의 계열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하약정기간을 5년 이상으로 장기 계약을 개선해야 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제재방법 및 인센티브가 2개 참여조직의 것으로 유통사업단과 무관하고 2개 참여조직의 제재방법 및 인센티브 규정도 통일되지 않음.
- 전반적인 출하약정 이행율이 낮은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페널티를 적용하여 출하를 유인하고, 현재의 혼란된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농가들의 사업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함.

##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자재일괄구매를 시행하지 않음.
- 수요가 많고 규모화의 효과가 큰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일괄구매를 실시해야 함.

- 비교 견적으로 단가를 검증하고, 품질관리 관련 사항을 부대조건을첨가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우수한 품질의 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전문가협의회에서 업체 심사표에 의거하여 60점인 이상인 업체를 선정한 것은 매우 우수하지만 사업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미흡함.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을 시행하지 않음.
- 전국 평균의 사업단가와 사업 메뉴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관계자가 참여하는 단가 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세부 시설 기준과 단가를 조정하여 적용해야 함.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기타사업	-	-	60	60	-	-	58	58	-	2	96.6%
<b>합계</b>	-	-	<b>60</b>	<b>60</b>	-	-	<b>58</b>	<b>58</b>	-	<b>2</b>	<b>96.6%</b>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생산기반조성	-	-	551	551			30	30	515	4.6	5.5%
거점APC											%
과실브랜드											%
<b>합계</b>	-	-	<b>551</b>	<b>551</b>			<b>30</b>	<b>30</b>	<b>515</b>	<b>4.6</b>	<b>5.5%</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율이 96.6%로 예산집행은 잘 하였으나 배정된 예산액 규모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상반기에 조기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함.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미개시자 조사, 현장 모니터링 등 예산 집행 관리를 위한 노력이 미흡.
- 조기에 예산이 집행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지도를 위한 농가 방문 및 사업별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통해 사업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농가당 사업비가 적어 모두 자부담을 하여 용자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함
-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확대하고 신청단계에서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농가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FTA기금 사업과 지자체 사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밀양얼음골사과의 경쟁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분야에서 지자체의 자체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 지원되는 것이 필요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지적사항 없음
- 보고서류 제출지연(+0.86점) : 미제출 1건(-1점), 지연일 10(-0.10점)일, 조기일 24(+0.24점)일
- 보고서류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인 유통사업단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사업과 관련하여 유통사업단이 하는 역할은 전혀 없음.
- 동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주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법인화가 필요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347	175	525	50.5%
2006년	167	130	390	77.7%
<b>2007년</b>	<b>101</b>	<b>95</b>	<b>294</b>	<b>94%</b>
계	615	400	1,209	65%

- '07년 출하약정 이행율은 94%로 매우 높지만 유통사업단과의 출하약정 이행율이 아니라 참여조직과의 출하약정 이행율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1,184(농협) 1,920(유통) 3,104	1,792(농협) 1,835(유통) 3,627	16.8%	2,805(농협) 5,534(유통) 8,339	3,952(농협) 6,133(유통) 10,085	20.9%

- 참여조직의 개별 사업실적으로 연차평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7,500	7,500	3,952(농협) 6,133(유통) 10,085	34.4%

- 참여조직의 개별 사업실적으로 연차평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사업조직의 총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3,952(농협) 6,133(유통) 10,085	3,369(농협) 6,133(유통) 9,502	94.2%

- 2개 참여조직의 개별 사업실적으로 얼음골유통영농조합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은 수탁형 매취사업 실적임
- 참여조직의 개별 사업실적으로 연차평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D-C)/C
646(농협) 1,920(유통) 2,566	991(농협) 1,835(유통) 2,826	10.1%	2,116(농협) 5,535(유통) 7,651	3,369(농협) 6,133(유통) 9,502	24.1%

- 참여조직의 개별 사업실적으로 연차평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얼음골사과' 공동브랜드를 얼음골사과협의회 추진으로 운영하여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임
- 하지만, 개별 참여조직별 품질관리 방식에서 체계적이고 통일된 품질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 율(B/A)
사업실적(백만원)	3,952(농협) 6,133(유통) 10,085	3,777(농협) 6133(유통) 9,910	98.2%

- 참여조직의 개별 사업실적으로 연차평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841	266(농협) 495(유통) 761	291(농협) 436(유통) 727	△4.4%

- 참여조직의 개별 사업실적으로 연차평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유통규모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사업확대 및 지속적 교육사업 운영이 필요하며 정예농가 위주로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수를 확대해야 함.

⑨ 기타 사업실적

- 사업실적 없음
- 향후에는 농가의 소득증대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확대가 필요함.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밀양시가 '06년말과 '07년 8월에 2회의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 문항을 개선하여 지원농가의 만족도를 정확히 조사하도록 하고, 문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연차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실적이 없음.
- 지자체, 참여조직, 사업시행주체가 공동으로 자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부 지표에 따라 성과를 평가해야 하며 또한 연차 평가회를 실시함으로써 종합적인 농가 만족도 조사와 시공업체 평가, 유통사업 성과를 검토하고 차년도 예산 집행 및 성과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현재 참여조직별로 개별 농가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 출하조직 규모화와 지역 통합 마케팅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함께 체계적인 농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업 활성화와 직접 연계해야 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지리적표시 등록과 연계된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나 내용이 형식적이어서 지역여건에 맞는 재배, 유통, 수확후관리 등 품질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출하증가율, 예산 조직 집행 등 우수 실적 해당 사항 없음.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사업추진에 있어서 행정 및 참여조직간 연계가 부족하고 사업시행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함.
- 거점APC 등에 대해서는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고 있으나 생산시설현대화 및 생산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관심과 지원이 매우 적음.
- 앞으로는 유통과 생산 간의 균형 있는 사업 지원과 추진이 필요함.

43(2-03)	사천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단감 (보조) 배	선정년도	2005
사업주관기관	사천시	사업시행주체	사천농협
참여시군	사천시		
득점현황	합계 (100)	4등급	
	계획단계(10)	C0	
	집행단계(50)	C0	
	성과단계(40)	F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사천농협이 주관농협 방식의 사업시행주체이며 사천시 관내 8개 조합이 참여조직으로 참여
- 당초 연합사업단이 시행주체였으나 법인화 이행이 결렬된 결과임
- 사업량이 크지 않아 지자체가 주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합사업단이 마케팅 기능을 지속하고 있어 주관조합의 실질적 역할은 크지 않음

### □ 핵심성과

- 수출중심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시스템 안착을 통한 유통주체 육성 지속
- 사업비 단가 조정에 의한 사업량 확대
- 과원내 작업로 정비 사업 등 농가 호응도 높음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07년 7월 사천연합사업단에서 사천농협 주관조관조합 방식으로 사업주체 유형 변경
- 출하약정의 주체가 변경되었으며 기존 주산농협 중심의 참여조직을 관내 8개 농협으로 확대
- 기존 소속조합을 통한 조합 간 거래, APC이용, 시지부 연합사업단 중심의 마케팅 등 사업내용상 큰 변동사항은 없음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품목인 단감이 117억원 수준이고 전체과수는 205억원 수준으로 대규모 주산지는 아님</li> <li>기존 3개 산지유통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하나 시행하지 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근 지역에 비해 호당 경지면적 및 소득이 낮은 편으로 개선이 필요함</li> <li>인근 지역을 포함하는 포괄적 지역협력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함</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기금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주체를 포함한 농협이 유통을 담당토록 사전에 역할분담이 있었음</li> <li>자문위 운영 등은 다소 형식적으로 미흡하나 절대적 사업량이 미미함</li> <li>약정기간이 짧고 약정이행율이 높은 편이 아님</li> <li>시공업체 선정 및 연관사업 시행 등도 노력이 부족함</li> <li>사업계획과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다소 형식적인 측면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관농협의 기능은 미흡한 편이나 주품목의 경우 전체 물량의 10%이상을 APC를 통한 연합사업으로 취급하여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함.</li> <li>출하약정과 품질관리는 지역 유통주체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 잣대로써 인식하고 실행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li> <li>선택과 집중에 의한 연계사업 또한 유통주체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노력이 필요함</li> <li>계획-집행-평가의 사업체계화로 농가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정책방향 실현 및 유통주체 강화의 흡인력을 높여야 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집행율은 90.2%로 양호한 편이나 작은 사업량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신청자가 충분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 홍보 강화, 사업관리대장 작성 등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li> <li>사업대상자 선정 등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조기에 이행해야 함.</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추진주체의 기능이 불분명하고 유통기능은 연합사업단이 수행하여 체계도 형식적임</li> <li>참여조직간 협의가 미흡한 편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주체를 주관조합방식으로 전환하였으나 마케팅은 기존 연합사업단이 담당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li> <li>참여조합간 긴밀한 협의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조합별 APC운영 미흡에 대한 보완이 필요</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4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0</b>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C0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C0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C0</b>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b>14</b>	<b>D+</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B0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C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C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b>10</b>	<b>D+</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60	
③ 출하약정 주체	2	0.50	
④ 출하약정기간	1	0.2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D+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5	2.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3.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B0
	① 예산집행률	10	9.02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C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C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D0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D0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15	
<b>성과단계 소계</b>		<b>40</b>	<b>F</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D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F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0.00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0.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00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0.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0.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C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0.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0.00
	⑨ 기타 사업실적	1	0.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C0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D0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D0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17
	② 교육 횟수	1	0.43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C0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D0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1.29	
	비계량	D0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C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지역 내 농업주체와 단감시험장, 경상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운영과 의견수렴이 미흡.
- 농업인 의견수렴은 사업설명회 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형식적임.
- 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FTA기금사업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단 보다는 재배, 마케팅 등 전문 분야 자문단을 운영. E-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안별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사업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수요자(농업인)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세부사업의 메뉴를 선정하고 지원조건 및 제도 변경 등 실질적인 기획에 반영하도록 해야 함.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지자체 및 시행주체간 업무협의를 수시로 실시하였으나(관련 서류는 없음) 공식적 회의는 사업단 법인화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2-3회 실시
- 사천시 연합사업단 차원의 마케팅을 위한 농협간 회의는 수시 개최
- FTA기금사업과 지역공동마케팅을 위해서는 지역 주체간 협력이 필수적임. 협의체를 정규화하고 안전에 따라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사업 집행과 협력에 활용해야 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07년 연차평가 결과를 토대로 '08년도 사업에 대해 전반적 개선노력이 보임. 그러나 자문회의, 협의회 활성화 등 의견수렴단계에서의 시행 등은 실행되지 못했고 기타 항목의 보완 내용이 다소 형식적임.
- 개선 요구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노력이 필요.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시·군		◎	◎	○	◎	◎	
읍·면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합	◎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사업시행주체가 연합사업단에서 주관조합방식으로 전환, 각 조합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주관농협인 사천농협에서 취합, 현장심사 등은 지자체와 협력하에 사업 시행, 우선순위 심사는 농정심의회에서 진행
- 기관별 역할분담은 양호한 편임

#### ② 1,2순위 준수여부

- 신청서상 별도로 구분접수하지는 않고, 사업자 선정심사표상 공동선별 조직의 지역적 범위에 따라 30~10점 부여토록 하였으나 실효성이 떨어짐
- 시행주체 중심으로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약정 농가를 1순위로 배정하여 선정함으로써 판매사업 체계 개선과 정책 지원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 1, 2순위의 구분은 사업에 지원하는 농가와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를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신청서 접수단계에서부터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유통규모화 촉진은 공동선별출하조직 범위(30), 재배규모(10) 및 수출실적(10) 등이 반영되었음. 기타 기존 사업수혜여부(10), 사업수행적합성(30), 조직체활동(5) 및 조사자종합의견(5) 반영.
- 정부정책 수용성 지표가 없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객관성확보가 어려운 지표가 포함됨으로써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 표준양식을 적용하여 심사표를 개정하되, 지역 여건에 맞도록 항목과 평가지표를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량화된 실적과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연동될 수 있는 심사표 도입이 필요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07년 신청농가의 57%수준인 26농가를 선정하였으나 컷트라인 부근 점수대에 농가가 집중되어 있고, 재배규모에 의한 농가 간 격차가 가장 크게 좌우하는 등 변별력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동점자 처리기준이 없음.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표를 개선하고, 현장 심사를 철저히 하여 심사결과가 적절한 변별력을 가지도록 해야 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실무선에서 '07년 4월 26일 대상자를 가선정하고 '07년 5월 농정심의회 유통분과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년도 말 이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교부결정 및 통보를 조기(1월)에 실시하여 영농철 이전에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농가선정과 통지가 늦기 때문에 미개시자 조사도 전화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결과나 조치도 미흡.



- 미개시자 확인은 사업추진 지연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이므로 행정과 시행주체가 공동으로 현장확인,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야 함. 미개시자 발견시 현장 독려, 안내문 발송, 중도포기 조치 등 적절히 조치해야 함.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출하약정서상 3년간 FTA사업 지원중단, 농림사업 지원제외를 명기하였음. 2농가가 포기하였으며, 포기서를 징구하여 적절히 처리하였음.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 중도포기 물량에 대해 대체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적절하게 처리하였음.
- 향후 예비대상자 선정시에는 미 선정된 예비대상자를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에서 법인화를 중단하고, 사천농협을 시행조직을 변경하여 운영. 그러나, 시행주체인 사천농협은 주관농협으로서 대표성이 미약하며, 실제로 출하는 기존 시지부 연합사업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사천농협이 지역 대표 판매조직, 통합 마케팅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에서 요구하는 틀과 괴리되어 있음.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톤)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53	53	100	998	798	80	주관농협	1
'06년	92	92	100	2,484	1,987	80	"	1
'07년	50	50	100	895	717	80	"	1
합계	195	195	300	4,377	3,502	80.0		

- 사업신청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약정 체결하여 우수함.

##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생산량 대비 80% 이상 약정을 추진하여 양호함.

## ③ 출하약정 주체

- 주관농협(사천농협)이 FTA 사업 단장이라는 이유로 약정서를 체결한 것은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이고, 당초에는 사업시행주체가 연합사업단이므로 출하약정주체가 연합사업단이었어야 하며, 이후 사천농협으로 시행주체가 변경된 이후 약정주체를 사천농협으로 변경했어야 함.
- 실제로는 사천농협 이외 물량은 각 조합에서 처리하여 마케팅을 연합사업단이 실시하기 때문에 약정이 실질화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판매사업 체계의 재정비와 주관조합, 연합사업단 역할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며, 출하약정을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④ 출하약정기간

- 출하약정 기간은 1년으로 단기 계약함.
- 출하약정의 실질화와 함께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하여 농가의 책임성과 체계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행주체 중심의 효과적인 출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출하약정서에 3년간 기금사업 제외, 농림사업 지원제외 명시하였음. 위약 농가에 대해 차년도 사업지원 제외
- 이행농가 인센티브로 우선순위 심사표에 수출실적(10점배점)을 넣어 출하약정 우수농가 우대
- 제재의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으며 인센티브 내용도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출하약정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형식적인 출하약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출하약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해당 없음
- 시행주체가 주도하는 자재 일괄 구매는 구매량 확대와 교섭력 강화로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우수한 품질의 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일반 계통구매 이외에 주요 자재의 공동구매를 실시해야 함.
- 특히 수요가 많고 규모화의 효과가 큰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일괄구매를 실시해야 함. 비교 견적으로 단가를 검증하고, 품질관리 관련 사항 등의 부대조건을 첨가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우수한 품질의 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농정심의회 유통분과위원회에서 세부사업별 2~3개 업체 선정
- 8개업체 중 8개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별도의 사업비 절감노력은 없음
- 업체의 가부 뿐만 아니라 등급 점수화를 통한 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최소한 견적서 등을 징구하여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농가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야생동물 방지 및 작업로 정비사업에서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사업단가를 조정하여 비용을 절감한 사례가 인정됨

##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
기타사업			122	122		12.7	97.3	110		12	90.1%
<b>합계</b>			122	122		12.7	97.3	110		12	<b>90.1%</b>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생산기반조성	213.3	1,052.7	509.5	1,775.7			1,266.	1,266	509.5		71%
거점APC											%
농기계임대											%
<b>합계</b>	213.3	1,052.7	509.5	1,775.7			1,266	1,266	509.5		71%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예산집행율은 90.2%(국고기준, 농식품부)이지만 예산 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생산기반조성사업의 예산액의 경우 예산액이 크지만 4/4분기에 71% 집행하고 이월.
- 소규모 예산이지만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효과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함.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중도포기자 및 단가조정에 의한 잉여 예산 집행을 위해서 최초 신청시 신청자가 적었던 세부사업에 대해 추가 신청자를 모집하여 자금집행.
- 추가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예산집행 제고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사업추진 모니터링, 현장 방문 등 집행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사업신청시 시지부 대부계의 협조를 통해 용자가능여부 확인
- 공문시행 등 일반적 사항 이외에 사전 수요 조사 강화, 사전 용자 가능성 검토, 대출기관 통보, 시행 관리 등 별도 노력이 더 필요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연합사업단 수출사업 지원을 위해 포장제 제작 지원('07년 6,454천원) 외 연계장치가 없어 미흡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농림수산식품부 등 기관의 점검 지적사항 미이행 없음
-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및 제출 후 수정, 허위사실 기재 없음
- 보고서류 제출지연(-0.15점) : 미제출 1건(-1점), 지연일 41일(-0.41점), 조기일 126일(+1.26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법인화가 결렬되어 주관농협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주관농협 상무를 FTA 사업단장으로 기존 업무에 추가 분장하였음.
- 시행주체는 FTA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출하약정 주체가 된 이외에 역할이 없으며, 마케팅과 관리업무는 기존 연합사업단이 수행.
- 예산 규모가 작아 별도의 독립된 전담부서를 만들 필요는 없으나, 주관농협, 연합사업단, 행정간 협력과 실무 담당자 TFT 구성 등 사업 추진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제출된 실적의 대부분이 시행주체가 제출한 실적 보고서 상의 내용으로서 농식품부의 인정기준인 상반기 연합사업실적, 하반기 사천농협 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였음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436.4	129.7	184.3	30%
2006년	993.5	410.7	527.8	41%
2007년	716.8	434.7	407.2	61%
계	<b>2,146.7</b>	<b>975.1</b>	<b>1,119.3</b>	<b>45%</b>

- 출하약정이행율이 61%로 매우 저조하므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제출된 실적이 평가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였음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987.8	1,331.4	35%	1,402.9	1,493.4	6%

- 사업조직의 출하량 증가율은 35%로 양호하나 출하액은 6% 증가에 그쳐 유통규모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
- 제출된 실적이 평가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였음

####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1,402.9	1,493.4	6%

- 취급금액 15억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므로 취급금액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파프리카는 과채류이나 과일류는 아니어서 파프리카 실적을 제외한 실적제출을 요구하였고, 상반기 연합사업 실적, 하반기 사천농협 실적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실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함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율(B/A)
실적(백만원)	1,493.4	1,375.2	92%

- 전체 사업실적 중 공동선별, 공동계산실적이 92%로 매우 우수하나 취급금액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제출된 실적이 평가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였음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D-C)/C
893	1,296.8	45%	1,092	1,375.2	26%

- 공동선별, 공동계산 증가율이 물량이나 금액면으로 아주 우수하며 지속적으로 취급금액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제출된 실적이 평가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였음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사천시 공동브랜드 "별그리고" (연합사업단) 브랜드를 특허청에 등록하였음
- 내수용 물량에 공동브랜드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사천 대표브랜드로서 인지도 극히 낮은 상황임.
- 브랜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율(B/A)
사업실적(백만원)	1,375.2	343.7	25%

-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이 전체 사업실적 중 25% 차지하고 있어 다소 미흡한 면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동브랜드 사업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제출된 실적이 평가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였음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250	267	7%

-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절대적이 수가 너무 적으므로 정예농가 육성 및 농가조직화 교육 등을 통해서 참여 조합원수를 확대하여 유통규모화를 도모하여야 함
- 제출된 실적이 평가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였음

⑨ 기타 사업실적

- 해당 없음
- 전반적인 사업 성과가 미흡하므로 총 사업 실적의 규모화 된 경영 및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08년 2월 사업만족도 위주의 10개 항목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참여 농가 26명(회의 76명 참가)이 설문 참가하였음.
- 항목 및 참여자가 적어 신뢰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가 미흡하고 결과 활용에도 문제가 있음.
- 간담회, 워크숍 등 설문조사 이외 대면 방식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대상농가 40여명, 일반농가 30여명 등이 참여한 '07년 사업 평가회를 통해 사업추진방향 및 설문조사, 자유토론 순서로 추진



- 설문조사에서는 출하량 증감, 소득, 연합사업, 사업만족도 등을 조사
- 평가가 통상적 업무수행 수준으로 항목의 구체성 및 환류체계를 통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보기 힘들
- 자체적인 평가지표 개발을 통하여 FTA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행정, 시행주체, 참여조직이 공동으로 자체 평가회를 실시하여 계획, 집행, 성과 단계의 주요 지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도출과 사업 계획 반영 등으로 사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단감재배 기술 및 상품화, 수출상품관리 교육 실시하였으나 교육 횟수가 3회에 그쳐 다소 미흡함.
- 교육내용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양호함
- 농업기술센터 중심의 노력은 인정되나 교육 횟수와 참여 농가 등 실적이 미흡하므로 체계화된 교육 노력이 필요하며, 재배 이외에 조직화, 마케팅 등 보다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단순 상품선별 기준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이라고 볼 수 없음.
- 중앙정부 등의 각종 매뉴얼을 지역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는 방식이라도 생산 및 유통관리를 위한 매뉴얼 제작이 필요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예산 조기 집행을 실적
- 포도 관광체험농원 운영 및 우수지역 견학 실시
- 사업의 핵심이 사업시행주체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강력한 유통주체에 있음을 인식하고 사업시행주체의 규모화, 공동선별·공동계산 체계 안착, 수출과 연계한 마케팅 활로 개척 등의 과제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양호한 편이며 지자체의 시행주체로의 선택적 집중에 의한 육성 의지는 높은 편임
- 그러나, 실제 사업추진은 일반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고, 충실도도 미흡하므로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인 예산집행과 실적 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44(1-08)	경남서북부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사과 (보조) 포도, 배, 단감	선정년도	2004
사업주관기관	거창군	사업시행주체	농업회사법인(주)NH유통
참여시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특점현황	합계 (100)	4등급	
	계획단계(10)	C0	
	집행단계(50)	C0	
	성과단계(40)	D0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거창, 함양, 합천 3개군 15개 조직이 참여하는 광역사업임.
- 3개 시군은 사과 재배 2,100ha, 39,909톤 (07년 기준)이 생산되는 주산지임.
- '07년 생산시설현대화에 1,792백만원 투자하였으며, 거점APC 및 과실브랜드사업을 추진 중임.

### □ 핵심성과

- 연합사업단 법인화를 완료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조직적 기반 확보.
- 생산기반 투자와 출하 체계화, 마케팅 추진 등 대부분의 시장 성과를 거점 APC 완공 이후로 미루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사전에 사업 실적 확대와 사업 체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07년 연합사업단에서 농업회사법인(주)로 전환 : 거창원예농협 대주주
- 기존 연합사업 실적이 전무하였으나 법인화 이후 사과 공동선별/공동계산 판매사업을 추진.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과는 2,001ha, 39,909톤으로 규모화된 생산기반 보유 : 거창이 1,362ha, 28,418톤으로 68% 차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창, 함양은 경남권 사과주산지로서 성과를 가지고 있으나 경북권 경쟁산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이미지화, 브랜드화와 품질향상을 통한 차별화/특성화가 추진되어야 함.</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내 협의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시행주체와 참여조직간 협력도 미흡.</li> <li>출하약정이 APC 완공, 가동 시 효력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실질화 되지 않음.</li> <li>브랜드 육성 등 체계적 마케팅이 필요하나 조직 및 사업 체계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사업, 다주체 참여로 사업 중심점이 미약하기 때문에 주관 거창군의 주도적 노력과 시행주체인 (주)NH유통 중심의 통합운영 노력이 필요 .</li> <li>"울썩" 브랜드 정착과 통합화를 위한 시행주체 노력 필요</li> <li>기존 출하사업과의 차별화와 참여농가 확대, 조직 협력 강화 등 사업 전반의 체계화 필요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개군 개별사업으로 추진되어 일관성이 미흡하고, 통합 및 규모화 성과가 미흡.</li> <li>17개 세부메뉴로 분산.</li> <li>정책간 연계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양식을 개선한 공통의 사업관리, 3개군 공동 관리, 점검 및 모니터링 추진 필요.</li> <li>수요에 기반한 사업 메뉴 단순화와 집중 추진.</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추진의 조직들을 마련하였으나 거창사과원협이 주도, 주관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조직간 협력이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점APC 운영시 가동을 제고를 위한 원물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참여조직간 협력이 필요.</li> <li>건립이전 단계부터 점진적 사업확장과 운영 방식 확립이 진행되어야 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4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0</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C0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C+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C0</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C+</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C+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5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D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C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1.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C0</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61	
③ 출하약정 주체	2	1.00	
④ 출하약정기간	1	0.2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D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5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5	0.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0.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B0
	① 예산집행률	10	8.22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B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C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0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0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1.16	
<b>성과단계 소계</b>		<b>40</b>	<b>D0</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B+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D0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0.14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1.5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18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2.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1.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D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3.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1.50
	⑨ 기타 사업실적	1	0.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D0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F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F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00
	② 교육 횟수	1	0.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F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F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비계량	1.53 C0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C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광역사업으로서 거점APC 설치를 위한 자문단을 중심으로 자문회의를 구성 하였으나, 거점APC 추진이 지연되면서 '07년에는 거점APC 자문회의를 1회 개최하는 데 그쳤음.
- 계획 수립, 수요발굴을 위한 농업인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 노력이 미흡.
- 재배기술 향상, 품질 관리 향상, 효과적 과수 생산시설 설치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활성화하고, 농가조직 대표 등의 의견 수렴 및 추진 모니터링을 활성화해야 함.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행정과 지원조직, 참여조직, 행정간 회의는 사안이 발생할 때 시행되었으며, 연례적으로 시행되는 설명회, 간담회 외에 과실브랜드사업 관련 협의를 1회 진행하는 등 정규화 되지 못하였고 의사결정 성과 역시 미흡함.
- 광역사업으로 다수의 주체가 참여하고, 거점APC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주체 중심으로 통합된 의사결정체로서 "경남서북부 과수발전협의회"를 정규화해야 함. 이를 통해 군간 사업체계를 통일하고 효과적 사업관리와 시행주체가 주도하는 판매사업 규모화를 달성하도록 해야 함.
- 이외에 행정-시행주체간 실무 협의회, 농협 판매담당자 회의(실무운영협의회) 등 중층적 사업 협의, 의사결정 체계를 정례화 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 시행을 도모해야 함.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법인화 추진 요구를 달성하였고, 과실브랜드육성사업을 통해 신규브랜드 사업을 추진, 행정 처리 절차 명확화 (포기자 3년간 사업 배제 명시) 등 중요한 개선 요구사항은 이행이 이루어졌음.

- 그러나 자문단 정규화, 협의체 활성화 및 의견 수렴 강화 등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군(농업기술센터)		○	○	○		○	
읍·면	○	○	○	○			
사업시행주체		○	○	○			
참여조합	○	○	○	○	○		

- 3개군에 걸친 광역사업으로 시행주체 보다는 참여농협을 중심으로 현장 심사, 우선순위 심사가 이루어졌음. (주)NH유통은 사업초기로 주로 거창군의 핵심농가를 중심으로 판매 사업을 추진.
- (주)NH유통 사업의 조기 정착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NH유통이 현장심사, 우선순위 심사, 지도·점검, 1차 정산 등 핵심 기능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역할 분담 방식을 개선해야 함.



## ② 1,2순위 준수여부

- 사업 신청단계에서는 구분하지 않았으나, 평가 단계에서 1순위, 2순위를 구분하였음. 그러나, 1순위를 전국화된 사업조직과 출하계약을 체결한 농가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모든 농가를 2순위로 평가한 점은 잘못 추진된 사항임.
- 사업 신청단계부터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약정" 농가를 1순위로 구분하여 분리·평가함으로써 농가조직화 및 유통규모화를 위한 확고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농가 참여도 제고와 책임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행주체 판매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 방식을 도입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심사표, 심사 기준 등 사업추진 양식이 3개 시군별로 각기 달라 통일이 필요함.
- 합천, 함양군은 세부화된 평가지표를 운영하였으나 거창군은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협약체결, 사업신청횟수, 수출참여 등으로 단순 평가함.
- 심사기준의 통일, 농가의 규모, 시행여건, 사업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지표 (표준 심사표 적용)를 운용해야 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신청농가 375농가 중 선정농가는 218농가로 선정율이 58.1%였으며, 점수분포가 81~85점대에 집중 분포. (거창군은 합천, 함양과 심사기준이 달라 합산표시 하지 않았으며, 거창군을 포함한 전체 선정농가는 254농가임.)
- 동점자 기준은 출하약정물량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운영하였으나, 거창군은 연소자 우선 기준을 적용.
- '08년 사업은 표준 양식에 따라 동일하였으나 지역 실정에 적합하도록 세부 지표 및 적용 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또한 다수 농가가 사업 신청을 하기 때문에 단계별 점수 부여가 아닌, 농가의 사업 실적, 경영 여건과 연계한 점수 부여방식을 도입하여 변별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심사과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거창군 '07.2.13., 함양군 '07.1.9., 합천군 '07.2.28. 시행하였음.

- 거창군을 기준으로 보조금교부 결정 및 통보는 '07.4.6. 시행하여 행정 처리가 지체되어 미흡함.
- 사업대상자 선정시기를 시행연도 전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1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시행함으로써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4.6일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후 2개월 경과 시점인 '07.6.25~7.3. 7일간 기술센터, 읍면담당자, 농협담당자 등 합동으로 사업개시 여부에 대해 현지 확인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음.
- 26농가 32개 사업에서 미개시자가 다수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7.16. 추진협의회에서 대상자 선정을 취소, 3년간 FTA기금지원사업 배제를 통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였음.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하반기에 9농가의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였으며, 포기서 징구,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하고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배제를 통보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였음.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사업비 기준으로 27%인 34농가를 예비대상자를 선정.
- 미개시 농가의 사업물량을 예비대상자에게 배정하여 집행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였음.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660	660	100	11,850	6,864	58	조합공동 사업법인	3년
'06년	801	801	100	12,486	7,682	62		3년
'07년	252	252	100	7,028	5,662	81	거점APC	3년
계	1,713	1,713	100	31,364	20,208	64	-	3년

- 사업신청과 출하약정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지원농가 100%가 약정을 체결하였음.

##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출하약정물량은 시행지침에 따라 생산량의 80% 이상으로 규정하여 체결하였으며, 생산량 및 출하물량에 대한 약정을 체결.
- 심사평가시 동점자 기준을 출하약정물량 다수 농가로 책정하는 등 약정량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됨.

## ③ 출하약정 주체

- '07년 사업은 (주)NH유통 설립 이전에 출하약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합사업단 명의로 약정 체결. 법인 설립에 따라 약정 갱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당초 약정의 내용도 거점APC 완공 시점에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여 미흡함.
- 거점APC 완공전이라도 시행주체 중심의 출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시행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출하약정과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기능이 발휘되도록 해야 함.

## ④ 출하약정기간

- 당초 약정서에는 별도의 출하약정기간을 표시하지 않아 부적절함.
- 표준 양식에 따라 5개년 출하약정으로 안정적인 출하물량 확보와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출하약정서에 약정 불이행시 '10년까지 FTA기금사업 지원중단, 농림사업 지원 제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출하약정서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 실행 사례 없음.
- 출하약정서에는 약정미이행시 3년간 FTA기금지원사업 배제가 명시되어야 하고, 약정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상벌 조항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농가별 점검이 진행되어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농가들의 출하이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함.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참여조직인 거창농협에서 사과 지주시설(농업용 파이프) 122백만원의 계통 구매 실적은 있으나 시행주체 중심의 자재 일괄구매 실적은 없음.
- 시행주체의 본격적 사업추진과 거점APC운영에 대비하여 효과적 농자재 구매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지역내 시공업체가 부족하여 별도로 업체 공모와 선별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나 지역범위를 확대하고 우수 시공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 공모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적정한 업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농가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업체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신력 있는 시공 업체를 선정하여 공지하여야 함.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단가조정은 '06년 3월에 키낮은 과원의 묘목 단가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07년의 경우 '06년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였음.
- 전문가를 포함한 단가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세부 사업 시설 기준 및 표준 단가의 지역 적용성을 검토하고 조정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395	159	293	847	235	429	183	847	0	0	100%
기타사업	906	1,597	1,204	3,707	800	1,412	1,173	3,385	204	118	91.3%
<b>합계</b>	<b>1,301</b>	<b>1,756</b>	<b>1,497</b>	<b>4,554</b>	<b>1,035</b>	<b>1,841</b>	<b>1,356</b>	<b>4,232</b>	<b>204</b>	<b>118</b>	<b>92.9%</b>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생산기반조성	-	-	-	0	-	-	-	-	-	-	%
거점APC	-	8,510	10,120	18,630	2,228	-	-	2,228	16,402	-	11.9%
과실브랜드	-	-	376	376	-	-	-	0	376	-	0%
<b>합계</b>	<b>0</b>	<b>8,510</b>	<b>10,496</b>	<b>19,006</b>	<b>2,228</b>	<b>0</b>	<b>0</b>	<b>2,228</b>	<b>16,778</b>	<b>0</b>	<b>11.7%</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92.9%를 집행하였으며, 상반기와 3/4분기 집행 비중이 높아 비교적 우수한 추진 성과를 거두었음. ('06년도 50.3% 집행을 대비 개선.)
- 다만, 거점APC 추진이 지체되어 예산집행율이 저조하고, 과실브랜드육성사업은 '07년 하반기에 선정되어 전액 이월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예산 집행 노력이 필요함.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사업설명회 개최와 추진상황 점검, 조기완료 촉구 안내문 발송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
- 농업인 교육, 현장 확인, 미완료 농가 개별 방문 등으로 사업집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집행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시·군간 일체화된 추진 노력이 필요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대출실행확인서를 농협에 통보함으로써 용자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함.
- 용자는 자금 선호가 떨어지는 문제는 있으나, 사전에 용자 수요를 파악하여 적정 예산을 수립하고, 실제 자금이 필요한 농가는 사전에 용자 가능성을 확인, 사업 집행 시기에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대출기관과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냉해예방제, 주문자 맞춤사과(문양), 부직포 구입, 친환경관비시스템 등과 과실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농가 부자재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음.
- FTA사업 및 시행주체의 사업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계성을 갖지 않음. 거점 APC 및 시행주체 중심으로 과수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계사업 개발과 지원이 필요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외부감사, 자체 감사 및 점검 해당사항 없음.
- 보고 서류 제출 (+1.16) : 미제출 사항과 지연일이 없고 모든 자료를 조기에 제출하여 우수함. 조기 제출일 116일 (+1.16)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주)NH유통은 '07.5.21. 창립총회, 5.30.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6.27. 사무소를 개소하여 업무를 개시하였음.
- 당초 거점APC 운영조직으로 농협이 참여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진하였으나, 품목전문조합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15개 농협이 출자하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으로 선회하여 법인화를 완료.
- 주관농협 중심으로 법인화를 함으로써 책임성에는 유리하나 지역 협력 노력이 미흡할 경우 APC 원물 조달에 문제 발생 여지가 존재함. 농가조직화를 포함한 참여조직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6,864	6,864	12,651	100%
2006년	7,682	7,682	12,499	100%
<b>2007년</b>	5,662 (272)	5,662 (272)	9,212 (611)	<b>100%</b>
계	20,208 (272)	20,208 (272)	34,362 (611)	100%

- 출하약정/가능 농가 235농가 중 실제 (주)NH유통에 출하한 농가는 23농가이며, 출하량은 272톤으로 미미함.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0	272	-%	0	611	-%

- 기존 연합사업단 실적은 전무(全無)하며, (주)NH유통은 '07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611백만원의 출하실적을 보임.
- 평가는 신규조직으로 인정하여 반점인 1.5점 부여.
- 3개 시군 대표 조직으로서 규모화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거점 APC 완공 이전이라도 사업규모 확대와 실질적인 판매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함.

####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0	0	611	-%

- 사업 규모가 611백만원으로 적기 때문에 적극적 사업확장 노력이 필요함.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금액 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율(B/A)
실적(백만원)	611	611	100%

- (주)NH유통 판매사업은 거창사과원예농협 선과장을 임대 활용하여 전량 공동선별·공동계산을 실시하였으나 취급금액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0	272	-%	0	611	-%

- 모든 물량을 공동선별·공동계산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는 규모화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예 농가 육성, 핵심 작목반 육성 등 공동선별·공동계산 시스템에 기초한 물량 확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과실브랜드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브랜드를 제작하고 있음. "올썩"으로 네이밍이 완료되어 출원중.
- '07년은 지역브랜드인 "맛있다 거창"을 활용하였음.
- "맛있다 거창"은 지역브랜드로서 3개 군 공동 브랜드로 활용이 불가능하고, 경남 주산지로서 명성은 있으나 브랜드 인지는 낮은 것으로 평가됨. 거점 APC 활용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과정이므로 기존 지역 브랜드에서 탈피하여 품질관리에 기반한 본격적인 브랜드 마케팅 체계를 갖추어야 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율(B/A)
사업실적(백만원)	611	611	100%

- '07년 사업은 거창군 이외 타 군의 물량 반입이 없었기 때문에 취급물량을 전량 "맛있다 거창" 사과로 출하하였음.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0	0	23	-%

- '07년 유통사업에 참여 조합원은 23농가로 미미한 수준임.
- 거점APC 추진과 함께 농가조직 재편, 기존 농협조직과의 협력 방안 등 브랜드마케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체계를 갖추어야 함.

⑨ 기타 사업실적

- (주)NH유통의 기타사업 실적은 없음.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자체 설문조사는 시행하지 않았으며, 경상남도에서 FTA기금사업 시행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3개 시군 해당농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 전개 및 사업 반영 여부는 불분명함. 자체기획에 의한 만족도 조사와 개선 과제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함.
- 평가회 등에서 설문조사 및 간담회로 농가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추상적인 설문 문항보다는 시공업체 만족도, 사업 시행 개선 사항 등 농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추가하여 실질적 의견 수렴이 진행되도록 해야 함.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별도의 평가회 및 평가보고서 작성, 환류체계 구축 실적이 없음.
- 자체평가와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집행, 판매, 농가 출하 이행 실적 등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전반의 개선점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사업 발전을 추구해야 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시행주체인 (주)NH유통이 주도하는 농가 교육 실적은 없으며, 주관조직인 거창사과원예농협에서 재배기술 교육을 시행한 성과를 제시.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음.
- 농가조직화 및 시행주체 중심의 통합마케팅 추진을 위한 교육으로 체계화할 필요 있으며, 특히 거점APC 운영을 앞두고 있어 시행주체가 주도적으로 재배 기술 향상과 품질 관리, 농가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기획하여 실행해야 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매뉴얼 제작, 보유 없음.
- 고품질 과실 생산, 품질관리 매뉴얼은 농가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과 연계되도록 하고, 특히 거점APC 운영과 맞물려 수확후 관리 지침, 시설 운영 지침, 상품화 및 마케팅 지침 등으로 사업담당자/실무자의 일관된 품질관리가 시행되도록 확장해야 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상반기 및 3/4분기 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인정됨.
- '07년 탐푸르트(홍로) 전국품질평가 대상 수상 (농촌진흥청 평가)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3개군 광역사업으로 추진 방식이 통일 되지 못했으며, 집행 노력 등도 체계화되지 못했으므로 개선 노력이 필요함.
- 거점APC 건립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 주체 중심의 판매사업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신규 법인으로서 시행주체의 사업 확대와 역량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함.

45(2-11)	진주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단감, 배 (보조)복숭아	선정년도	2004
사업주관기관	진주시	사업시행주체	진주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시군	진주시		
득점현황	합계(100)	4등급	
	계획단계(10)	C0	
	집행단계(50)	C0	
	성과단계(40)	F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진주원예농협과 진주단감농협이 출자하여 설립한 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 시행주체이나 기능이 미비하고 운영이 형식적임.
- 실질적 시행주체 역할은 품목별로 나누어 양 조합이 수행하고 있으며, 협약에 의해 11개 지역농협이 사업참여를 약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화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사업시행지침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이 필요함
- 지자체와 농협간 협력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사업시행주체 법인화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함.

### □ 핵심성과

- 지자체가 시행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수출사업 등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조례에 의해 공동선별·공동계산을 실시하는 농산물수출농가에 대하여 경영비대출 이차보전사업을 실시(보전을 5%, 150백만원)함.

-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표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으며 신청자도 많고 예산집행율도 100%로 매우 우수함.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07년 3월 농식품부 설립인가를 얻어 4월 등기를 완료하였음.
- 2개 조합만 법인에 출자하여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 사업진행은 어려운 상황으로 품목별로 2개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기존 연합사업단 및 참여농협, 지자체가 함께 법인화 추진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으나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고, 법인의 실질적 사업주도에는 외부적 조건 충족 등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함.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감은 전국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주산단지이며 배는 경남의 44%를 점유하고 있음.</li> <li>• 신선농산물 수출 특화 도시로 인정받고 있으나 유통기반시설은 미비한 편임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현대화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li> <li>• 안정적 생산기반을 활용한 지역 대표 마케팅 주체의 형성이 필요함.</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농협의 협력체계에 의한 연합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된 지역임.</li> <li>•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법인화를 추진하였으나 실질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li> <li>•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농가의견수렴, 사업평가를 위한 환류체계가 미흡한 편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연합사업단과 신규 법인이 각각 품목 및 정책사업 메뉴에 의거하여 공존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일원화하여야 함</li> <li>• 품목별 주관조합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즉시 개선하여야 하며, 법인화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은 사업참여를 철저히 금지하여야 함</li> <li>• 사업계획 수립-집행-평가를 일관되게 체계화하고 외부전문가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함.</li> <li>• 호응도가 높은 농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예산 확보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가 모두 뛰어난 수준임.</li> <li>• 융자집행을 제고 노력은 다소 미흡한 편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자집행을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및 사전 신용조회 실시 등 노력이 필요함.</li> <li>• 자재일괄 구매, 업체선정 및 관리 등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주체와 참여농협간 협약서 체결 등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법인화 이후 실질적 협의와 사업추진은 미흡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조직간 접촉 및 제도화된 협의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실질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li> <li>• 사업운영 조직의 참여도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4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0</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C0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C0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0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C0</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D+</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D0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C+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B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C+</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62	
③ 출하약정 주체	2	1.00	
④ 출하약정기간	1	1.0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1.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3.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A0
	① 예산집행률	10	10.00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B+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C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62	
<b>성과단계 소계</b>		<b>40</b>	<b>F</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C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F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0.00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0.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00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0.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0.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D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0.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0.00
	⑨ 기타 사업실적	1	0.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C0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C0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F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00
	② 교육 횟수	1	0.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F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F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1.86	
	비계량	F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C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지역농업주체 외 경상대, 진주산업대 교수 및 단감연구소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07년 1회 실시예 그치고 전문가 참여가 부족하여 운영이 미흡함.
- 농업인 의견수렴은 기술센터 산하 품목별 연구회 회의 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
- '07년도 계획수립단계에서의 자문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으며, 농가의견수렴 절차도 체계적이지 않음.
- 자문위원회 운영을 체계화/실질화 하고 전문영역에 따라 서면 자문, E-Mail 등 다양한 의견청취 통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가 의견수렴은 설문조사, 간담회, 대표농가 운영위원회 등 보다 체계화, 정규화된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법인화 관련 사업벤치마킹 및 법인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농협이 공동으로 참여 진행, 당면현안이 있을 경우 비정기적으로 개최
- 행정과 사업시행조직간 협의회 실적은 양호한 편이나 지원대상조직간 협의회 실적은 미흡하므로 조직간 협의회와 담당자 실무위원회, 농가조직 운영위원회 등으로 체계화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명확화와 조직간 협력을 강화해야 함.

※ 기존 농식품부의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인정받은 연합사업단과 별개의 법인을 신규로 구성하여 지역내 혼란 발생, 조합법인은 단감농협 및 원예농협이 출자하여 설립하고 다른 조합은 APC건립 등 사업진척에 따라 참여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지역 내 협의 구조가 미흡.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농식품부 사업지침 시달 이후 '08년도 사업에 대해 전반적 개선노력은 있으나 일부 항목이 누락되었음.
- 법인화 추진관련 노력이 엇보이나 출하증가율,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개선 등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미흡한 편임.

나. 집행단계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	◎	○		○	
읍·면							
사업시행주체	○	○					
참여조합	◎	◎	◎	○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사업시행주체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구성원인 단감농협 및 원예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자체에 전달하였고 우선순위 심사는 단감, 원예농협에 각각 구성된 과수발전 추진협의회에서 사전심의 후 농정심의회에서 최종 확정하였음.

- 법인의 실질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고, 품목별로 양 조합으로 나누어져 시행주체의 역할이 제한적이며 참여조합이 주도하고 있음.
- 통합 주체인 법인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법인이 우선순위 심사 등 사업 추진 핵심기능을 담당토록 하여 역할을 제고하여야 하며, 법인화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은 철저히 사업에서 배제하여야 함

## ② 1,2순위 준수여부

- 신청서를 구분하여 접수하지는 않으나 우선순위심사표에 공동선별(수출) 항목에 10점 배점하여 우대하는 수준임.
- '08년도부터는 농식품부 표준 양식에 의거 순위를 구분하여 접수함.
- 1, 2순위의 구분은 사업에 지원하는 농가와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를 연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신청서 접수단계에서부터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정부정책수용성 측면에서는 공동선별(10), 재해보험(10), 친환경(10) 등이 반영되었고, 유통규모화 촉진은 출하약정이행(10) 및 출하계약의무이행(10) 등 반영
- 기타 전업농후계자(10), 과수목수령(10), 농가교육(10) 등이 반영되었음
- 정책방향 반영 등 전반적으로 심사표 구성은 양호한 편임
- 표준 양식을 적용하되, 지역여건과 품목 조건 맞추어 심사 항목과 배점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실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정책 수용성, 유통규모화 촉진, 기타 합리적 기준을 고루 반영하여 계량화된 실적과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연동될 수 있는 심사표 도입이 필요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07년 신청농가의 41.3%수준에서 농가를 선정하였으며, 접수대별 농가분포가 비교적 고른 편이며 양호함
- 동점자는 공동선별(수출) 및 출하약정이행율에 의거 선정하여 적정함.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실무선에서 '07년 1월 12일 가선정하였고 최종선정은 '07년 2월 농정심의회 유통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보조금 교부 결정이 3월 12일 행해져 실질적 사업대상자 선정이 다소 지체됨.
- 전년도 12월말 이전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및 보조금교부결정을 1월에 실시하여 영농철 이전에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후('07.3.12) 미개시자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관련 기록, 자료를 확보하지 않음.
- 미개시자 조사와 함께 사업독려, 포기각서 징구 등 조사결과 조치를 적절하게 진행해야 함.
- 사업신청서 상 1~4월 중 사업완료 안내한 점은 우수함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출하약정서에 모든 정부지원에서 제외함을 명기하였고, 중도포기자를 적절하게 조치한 구체적 사례를 확인하였음
- 중도포기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구체화하고 교부결정서 등 공공기관 서류에도 명시하여 농가들의 이해를 분명히 하도록 해야 하며 중도포기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함.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중도포기자를 사전에 선정한 예비대상자로 교체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였음.
- 향후 미 선정된 예비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능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299	299	100	6012	4828	80%	참여조합	
'06년	66	66	100	2300	1840	80%	참여조합	
'07년	38	38	100	905	735	80%	참여조합	
계	403	403	100	9,217	7,404	80%	-참여조합	

- 사업신청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100% 출하약정 체결하여 우수함.

###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시행지침상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약정 하도록 하였으며, '07년 80.0%로 출하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출하약정서에 예상 생산량 및 약정량을 명시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③ 출하약정 주체

- 약정은 실질적 주체인 진주단감과수농업협동조합, 진주원예농업협동조합과 품목별로 체결하였으며 사업시행주체(법인)과 참여조합간 별도의 협약이 존재하지만 법인의 기능이 형식적인 역할에 그쳐 시행주체 중심의 출하약정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법인이 실질적 기능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참여조합 주도로 진행되는 현재의 출하, 판매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④ 출하약정기간

- 5년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출하약정서에 모든 정부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을 명기하였으며, 불이행농가에 대한 재제실적은 없음

- 연속사업 참여시 농가선정 심사표상에 공동선별(수출) 참여경력 및 출하약정이행율을 각 10점씩 배점하여 우대하고 있음
- 명목상 제재사항이 일반적이며 인센티브 제공 역시 구체적이지 못함. 출하약정의 정규화와 농가조직 강화, 출하회원 내부 규약 작성을 통해 제재와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확고한 출하약정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해당 없음
- 지역에 상당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시행주체가 주도하여 주요 자재일괄구매를 실시하되 구매 효과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일괄 구매 품목을 확대하고 규모화를 통한 단가 인하, 품질 보증 등의 노력을 기울여 농가 부담 경감과 우수 품질의 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행정과 시행주체의 서면심의 시행에 의한 전체업체 선정
- 10개 업체 중 10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별도의 사업비 절감노력은 불인정
-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해 평가표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여 공지하도록 개선해야 하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 선정의 충실도를 높이고 입찰에 의한 품질 및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농가에 이익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단가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주대시설의 주요 부품구성을 변경하여 단가를 조정함(기존 7,600백만원에서 7,260백만원으로 변경)
-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단가를 절감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하여 우수함
- 향후에도 단순한 실무 차원의 검토가 아니라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단가조정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지역 의견과 객관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 ① 예산집행을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
기타사업			390	390	142	123	125	390	0	0	100%
<b>합계</b>			390	390	142	123	125	390	0	0	100%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생산기반조성	1,038	694			855	877		1,732	0	0	100%
거점APC											%
과실브랜드											%
<b>합계</b>	1,038	694			855	877		1,732	0	0	100%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생산시설현대화는 390백만원으로 규모가 적으나 전액 집행하였고, 생산기반 조성도 100% 집행 완료하여 매우 우수함.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집행을 제고를 위한 지도문서 시행 확인, 농가교육 및 지자체와 농협 협의 회시 지속적인 홍보 시행
-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일상적 노력과 성과가 모두 우수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농가교육시 홍보하였으나 용자 희망자 신용조회 시스템은 부재
- 사업신청시 용자예산 희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사전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필요농가에게 대출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20백만원 지원은 우수하나 나머지 지원 사업은 연계성을 찾기가 어려움.
- 이마트 홍보행사 진행시 단감농협에 20백만원 지원함으로써 홍보, 참여조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됨.
- 다만, 법인 중심의 출하체계를 확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해되나 지역 과수 출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관련 사업을 재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농식품부 등 기관의 점검 지적사항 미이행 없음
-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및 제출 후 수정, 허위사실 기재 없음
- 보고서류 제출지연(-0.62점) : 미제출 1건(-1점), 지연일 43일(-0.43점), 조기일 81일(+0.81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07년 3월 22일 법인 설립, 4월 30일 인가.
- 대표이사(무보수 전직 조합장) 및 조합과견직원 2명으로 구성되었으나 기능이 미비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조합공동사업법인 기표 사업실적은 99백만원으로 낮으나 제도정비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수기에 의한 실적으로, 사업추진 의지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 법인은 원예농협(배담당)과 단감농협(단감담당)만이 출자하여 구성하였으며 사업추진경과에 따라 다른 조합도 참여기로 협약 체결하였으나, 법인화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은 사업참여를 제한하여야 함. 또한 기존 진주연합사업단은 농식품부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인정받을 만큼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운영이 안정적이므로 법인과는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실적보고서 상에 제시한 출하실적은 사업시행주체(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실적이 아니어서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였음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4828	865	2,338	17.9%
2006년	1840	593	1,446	32.2%
<b>2007년</b>	<b>735</b>	<b>258</b>	<b>629</b>	<b>35.1%</b>
계	7,404	1,716	4,413	23.1%

- 출하약정 이행율이 35.1%로 매우 저조하므로 이행을 제고를 위한 농가교육, 제재사항 보완 및 시행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제시한 실적은 사업시행주체의 실적이 아니어서 평가에 반영하지 못함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1422	1,716	20.6%	2,963	4,413	48.9%

- 출하량과 출하액 증가율이 상당히 우수하므로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실적은 전무하므로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 제시한 실적은 사업시행주체의 실적이 아니어서 평가에 반영하지 못함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2,551	2,963	4,413	48.9%

- 총 사업실적 44억은 규모화를 논하기에 부족한 실적이므로 지속적으로 취급금액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실적은 전무하므로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 제시한 실적은 사업시행주체의 실적이 아니어서 평가에 반영하지 못함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계	4,413	4,413	100%
배	191	191	
파프리카	2,614	2,614	
단감	1,572	1,572	
딸기	36	36	

- 공동선별, 공동계산으로 44억을 이루어 양호하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실적은 전무하므로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 제시한 실적은 사업시행주체의 실적이 아니어서 평가에 반영하지 못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1,422	1,716	20.6%	2,963	4,413.	48.9%

- 공동선별, 공동계산 증가율이 매우 우수하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실적은 전무하므로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 제시한 실적은 사업시행주체의 실적이 아니어서 평가에 반영하지 못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단감농협 "구월애단감" 및 "진주비타단감" 특허청에 등록하였음

- 조합 고유브랜드이고, 품목 통합, 사업 통합에 적합한 브랜드가 아니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시군단위의 공동브랜드 확장을 전제로 조합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존 연합사업단 브랜드 ("초로미", "다로미") 등을 포함한 브랜드 재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 율(B/A)
사업실적(백만원)	4,413	1,596	36.2%

- 사업추진실적 16억은 다소 미미한 실적이고 전체 실적 중 36%를 차지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여야 하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실적은 전무하므로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 제시한 실적은 사업시행주체의 실적이 아니어서 평가에 반영하지 못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173	185	186	0.1%

- 사업참여 조합원수가 매우 미미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예농가 육성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실적은 전무하므로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 제시한 실적은 사업시행주체의 실적이 아니어서 평가에 반영하지 못함

⑨ 기타 사업실적

- 조합 농자재 판매사업 등 10.3% 증대하였으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실적은 전무하므로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 제시한 실적은 사업시행주체의 실적이 아니어서 평가에 반영하지 못함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외부기관을 통해 '04년부터 '06년도까지의 FTA사업의 효율성 및 만족도 조사 실시, 472농가 중 150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전화조사 실시

- 작업로정비, 야생동물방지시설, 지주시설 등 개선사항 도출
- '07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시행하지 않았으며 구체성도 미흡한 편임
- 지속적인 농가 의견 수렴 노력과 사업 이해 확대를 추진하고, 농가 의견을 반영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차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외부기관을 통해 '04년부터 '06년도까지의 FTA사업의 효율성 및 만족도 조사 실시, 472농가 중 150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전화조사 실시함.
- '07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시행하지 않았으며 환류체계 및 결과의 구체성도 미흡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향후에는 계획, 집행, 성과 단계의 주요 지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도출과 사업 계획 반영 등으로 사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생산관리 및 농산물 유통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교육 진행
- 농가의 교육인원이 적고, 단순한 교육 내용으로 파악. 정예농가 중심의 조직화와 출하이향 및 사업 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장환경변화와 해당품목의 산업 전망을 바탕으로 출하, 유통체계 개선과 농가 조직 강화를 위한 지역차원의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에 기반한 체계적인 농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시기별 생산관리사항을 중심으로 리플렛을 제작하여 농가에 송부
- 단순 교육교재 수준으로 판단되며 체계적인 품질관리 매뉴얼이 제작, 활용 되는 것이 바람직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예산 조기 집행 실적이 우수하여 인정됨.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편이나 지자체의 사업추진 충실도는 일반적인 수준이며 시행주체는 다소 미흡한 편이므로,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46(3-05)	창녕단감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단감	선정년도	2006
사업주관기관	창녕군	사업시행주체	창녕농협
참여시군	창녕군		
득점현황	합계 (100)	3등급	
	계획단계(10)	C+	
	집행단계(50)	C0	
	성과단계(40)	D+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07년에 사업시행주체를 연합사업단에서 창녕농협으로 변경하고 지역농협 전체가 참여하고 있음
- 단감을 주품목으로 한 사업조직으로서 현재 APC를 설치하고 있음

### □ 핵심성과

- FTA기금사업과 연계한 탐푸르트 단지 2개 선정
- 생산시설현대화로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 구축
- 단감, 배 수출시장 개척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07년에 연합사업단 법인화 불가로 인해 창녕농협으로 사업시행주체를 변경하여 사업 추진
- 주관농협인 창녕농협과 참여농협간 효율적인 협력과 공동마케팅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녕 단감은 연간 약 12,000톤이 생산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농가 조직화가 미흡하고 유통이 활성화되지 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주체인 창녕농협이 주도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생산, 유통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li> <li>• 생산과 유통의 체계적인 계열화를 달성해서 사업을 확장하여야 함</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명무실한 연합사업단에서 창녕농협으로 사업시행주체가 변경되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됨</li> <li>• 하지만, 참여농협과의 협력은 미흡함</li> <li>• 주관농협으로서 단감 공동마케팅 및 FTA기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보강해야 함</li> <li>• 농가조직화 및 관리가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농협인 창녕농협을 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강화하여야 하고 참여농협의 역할을 분명히 제시(단순 협조)하여야 함</li> <li>• 특히 유통부분은 전적으로 창녕농협이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주체들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함</li> <li>• 약정체결 농가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업확장을 위한 교육 및 조직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집행은 100% 추진되었으나 사업시행주체 변경으로 인해 대상자 선정시기가 지연되어 예산 집행시기가 4/4분기에 집중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주체의 변경이라는 요인이 있었으나 사업대상자 선정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미개시자 조사 및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해야 함</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주체와 행정기관간의 협력과 연계성은 매우 우수함</li> <li>• 하지만, 참여농협과 시행주체간의 연계성은 약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기금사업 및 창녕군 공동브랜드를 매개로 주관농협인 창녕농협과 참여농협이 계열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함</li> <li>• 주체간 연계강화를 통한 농가조직화, 사업량 확대 지속 추진</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b>총 계</b>	<b>100</b>	<b>3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b>
계 획 단 계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B0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B0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
	<b>집행단계 소계</b>	<b>50</b>	<b>C0</b>
집 행 단 계  I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C+</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C+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C+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C+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1.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C0</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77	
③ 출하약정 주체	2	0.50	
④ 출하약정기간	1	0.2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B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0.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0.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A0
	① 예산집행률	10	10.00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A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B+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03	
<b>성과단계 소계</b>		<b>40</b>	<b>D+</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3	D0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22	F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0.70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1.5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22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0.72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2.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D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3.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0.00
	⑨ 기타 사업실적	1	0.06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2	C0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2	D0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5	D+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24	
② 교육 횟수	1	0.86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C0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D0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0.00	
	비계량	C0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B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회의 운영은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대상자 선정, 시행주체 변경 등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짐. 농업인 의견수렴은 사업대상 농가 교육 단계에서 단순하게 처리되어 미흡함.
- 과수발전협의회 등 행정 협의 기능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개별면담, 전화,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농가 의견 수렴을 활용화하기 위해서 사전 수요조사와 설명회, 각종 교육 시 간담회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행정기관과의 참여조직간 협의, 회의 관계는 대체로 양호함
- 참여조직간 협의는 법인설립 및 시행주체 변경 관련 협의 중심으로 추진되어 내용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의견 토론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실질적인 회의 및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과수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 제시 노력이 필요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농업인 의견수렴, 심사표, 1,2순위 구분평가, 출하약정 체결기간 등은 '08년 사업에서 대부분 개선됨
- 시행주체 문제는 창녕농협으로 사업시행주체를 변경하여 해소하였으며, 이외의 항목에서도 개선노력을 시행한 점이 인정됨.

나. 집행단계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시·군		○	○	○	○	○	
읍·면	○						
사업시행주체		○	○	○			
참여조합							

- 창녕농협에서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나 신청서접수를 읍면에서 시행하고, 1차 정산도 군에서 직접 담당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이 미흡함.
-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여 시행주체 중심으로 우선순위 심사 등 핵심 업무를 진행하고 행정과 참여 조직이 역할 분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행정, 주체 협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

② 1,2순위 준수여부

- 1, 2순위를 구분하여 신청 접수, 평가를 시행하지 않음. ('08년 신청자는 1, 2순위를 구분 평가하여 개선함)
- 1, 2순위의 구분은 사업에 지원하는 농가와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를 연계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지역통합과 협력적 농가조직

화를 위한 연계 방안으로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적합한 구분 방안을 마련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07년 9월)으로 인해 '07년 사업은 농식품부 표준 심사표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대체로 양호함.
- 표준 양식을 활용하더라도 지역과 품목에 따라 항목과 배점을 조정하여 현실성 있는 심사표가 되도록 개선해야 하며 계량화된 실적과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연동될 수 있는 심사표 도입이 필요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심사 점수결과 33농가중 14농가를 선정. 점수분포가 60점 이하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식품부 표준 심사표를 그대로 사용한 결과임.
-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표준 심사표를 개선해야 하고,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과 시행주체가 공동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순위 부여도 시행주체 검증과 행정 검증 등 2단계로 실시하도록 해야 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사업시행주체 변경으로 인해 '07년 9월에 사업대상자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이 매우 지연되었음.
- 전년도 12월 말까지 대상자농가 선정을 완료하고, 1월에 보조금교부결정 및 통보를 완료하여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를 조사하였고,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조기에 착공 공동계산을 제출하도록 노력한 점이 인정됨.
- 향후에도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관리 및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대상자 통보 후 2개월 경과시점에서 행정, 시행주체가 협력하여 미개시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조치 여부가 명시되어 있고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았음.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6명의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중도포기 물량이 없기 때문에 차년도 사업에 우선 지원하였기 때문에 적절하게 처리하였음.
- 향후 예비대상자 선정 시, 미 선정된 예비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06년	21	8	38	311	249	80	참여농협	1년
'07년	14	14	100	464	410	88	참여농협	1년
계	35	22	63	775	659	85		

- '07년 사업에서는 출하약정을 전제로 사업 신청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지원 대상 농가 전체에 대하여 출하약정을 체결하였음.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07년 약정농가 생산량 대비 88% 출하약정 체결하여 양호함.
- 출하약정 이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농가관리와 지도가 필요함.

③ 출하약정 주체

- 기존 시행주체는 연합사업단이었으나 출하약정을 참여조직별로 체결하여 미흡함.

- 시행주체 변경과 함께 공동마케팅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사업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에 적합하도록 시행주체와 출하약정이 체결되도록 해야 함.

#### ④ 출하약정기간

- 출하약정 기간을 1년으로 운영.
- 출하약정 기간을 5년 장기로 설정하여 농가 참여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유통규모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제재방법이 "모든 정책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추상적인 내용이며 전혀 실효성이 없음.
- 여타 규정 등에서 전혀 약정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 패널티 부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가 인식을 향상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음. 출하약정의 실질화와 이행 강화를 위해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함.

###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자재일괄구매를 시행 하지 않음.
- 수요가 많고 규모화의 효과가 큰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일괄구매를 실시해야 함. 비교 견적으로 단가를 검증하고, 품질관리 관련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추가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우수한 품질의 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과 공지를 하지 않음.
- 기존 과수발전협의회 혹은 별도의 실무선정위원회를 구성, 업체평가표를 작성하여 업체를 선정, 공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견적서, 지방서 등 기초 서류 검토와 함께 시공 실적, 농가 만족도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판단 지표로 세부 사업별로 복수 이상의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해야 함.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을 하지 않았음.
- 전국 평균의 사업단가와 사업 메뉴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관계자가 참여하는 단가 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세부 시설 기준과 단가를 조정하여 적용해야 함.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
기타사업			86	86			86	86			100%
<b>합계</b>			<b>86</b>	<b>86</b>			<b>86</b>	<b>86</b>			<b>100%</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예산규모가 적어 사업대상자 선정 등 전반적인 진행이 지체되었으나 집행율은 100%로 우수함.
- 적정 예산 규모 산정과 지역농가들에게 실익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 방향을 설정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업 확대 노력이 실행되어야 함.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행정에서 FTA사업 추진 현장지도를 통해 예산 집행을 100% 달성하는 등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향후에도 집행을 제고를 위한 별도의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행주체와 행정 간의 일체화된 추진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교육 시 용자금 지급 방법을 안내하고, 도를 통해 추가 용자예산을 확보하는 등 노력한 점이 인정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다양한 사업이 연계지원 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만 직접적으로 FTA기금사업과 연계되고 있음.
- FTA기금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시행주체를 연합사업단에서 창녕농협으로 변경, 심사표를 농식품부 표준 심사표로 개선하였고,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간의 회의 개최는 하였으나 횡수 및 내용적 측면에서 다소 미흡함.
- 보고서류 제출지연(-0.03점) : 미제출 0건(-0점), 보고지연일 12일(-0.12점), 조기일 9일(+0.09점)
- 보고 제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담당자 및 관계자의 주의가 필요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동사업과 연계한 사업운영은 창녕농협 기존 부서에 업무 분장으로 추진하였으나, 시행주체로서의 주도력이 미흡하므로 창녕농협 내부 조직의 역할 강화와 함께 참여농협과의 상시적 협의 및 역할분담을 위한 실무협의회 기구가 필요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
2006년	249	59	133	24%
<b>2007년</b>	<b>410</b>	<b>96</b>	<b>184</b>	<b>24%</b>
계	659	155	317	24%

- '07년 출하약정이행율이 24%로 매우 낮음.
- 시행주체의 체계적인 농가 조직화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판매사업 연계로 이행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0	325	100%이상	0	724	100%이상

- 단순 계통출하실적을 제외하였을 경우 사업실적이 매우 적음.
- 공동선별·공동계산을 확대하고 브랜드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공동선별·공동계산이 어려울 경우 검품과 출하처 통합 관리 등 보다 체계화된 사업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함.

####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0	0	724	100%이상

- '07년 총사업실적 724백만원 규모로 향후 사업실적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④ 사업조직의 총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율(B/A)
실적(백만원)	724	724	100%

-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으로 7억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됨
- 향후 사업 물량 확대와 공동선별·공동계산에 근거한 안정적 판매사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0	325	100%이상	0	724	100%이상

- '07년 처음으로 공동선별·공동계산을 도입하고 성과를 내었으나 취급실적이 매우 미미하므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기존 창녕군이 개발한 공동브랜드 '우야와뽀야'(우포늪을 형상화)를 사용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여 소비자 인지가 낮고 품질관리와 공동브랜드 판매사업 계열화 체계가 전혀 없는 단순 브랜드 부착 수준임.
- 공동브랜드 사용권의 명확한 정의와 조례 등에 단순하게 표지 이용만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체계적인 지역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율(B/A)
사업실적(백만원)	724	724	100%

- 공동선별·공동계산 상품은 전량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점이 매우 우수함.
- 향후에도 전량 공동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2,529	2,490	2,540	2%

- 유통사업에 2,54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였으나 그 자료의 신빙성이 없어 평가에 반영하지 못함
-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의 양적 참여보다 질적 참여에 집중하여 농가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함.

⑨ 기타 사업실적

- 기타 품목 판매사업 실적은 감소한 반면 농자재 판매사업은 증가함.
- 양과 등 지역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한 판매 사업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연말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나 12농가에 그치고, 설문 내용도 추상적임.
- 사업대상 농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하고, 적극적인 사업 수요 개발과 농가확대를 위해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단순 농가 설문조사 실적에 그쳐 환류체계를 위한 자체평가라고 볼 수 없음.
- 농가 설문조사 실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시행주체, 참여조직이 공동으로 자체 평가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획, 집행, 성과 단계의 주요 지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도출과 사업 계획 반영 등으로 사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작목반 회의, 단순 집체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교육횟수, 내용, 충실도 등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함.

- 시행주체를 중심으로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되도록 사업초기에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단순 교육에 탈피하여 정예농가, 정예농가 조직을 육성할 수 있는 집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도 있음.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작한 단감 재배력을 보유하고 있음
-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서는 품질관리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배 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하며 수확 후 관리, 저장, 유통 등 매뉴얼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전반적인 사업성과가 미흡하므로 총 사업 실적의 규모화 된 경영 및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사업규모는 작지만 창녕농협 및 행정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열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47(5-04)	창원단감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단감 (보조)	선정년도	2005
사업주관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사업시행주체	창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시군	창원시		
득점현황	합계 (100)	3등급	
	계획단계(10)	B0	
	집행단계(50)	C+	
	성과단계(40)	C+	

## 1. 총괄

### 사업체 일반현황

- 경남 창원시는 단일시군으로 전국 단감 생산량의 11%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1위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음.
- 연합사업단을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등록 완료하여 단일 유통 조직력을 갖추어 공동마케팅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핵심성과

- 조합공동사업법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자체 자체 지원사업 확대
- 단감과인 개발 및 상품화 추진으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상품화 추진
- FTA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체계적인 사업추진프로세스 정립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연합사업단은 공동선별·공동계산 수용농가만을 회원농가로 확보하고 있어 사업추진력이 탄탄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아직까지 원예과수팀 설립은 미흡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원시는 단감생산 최적지로 전국 제1위의 단감 생산 주산지임</li> <li>• 창원단감은 수도권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아 80% 이상을 수도권으로 판매하고 있음.</li> <li>•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통해 '97년부터 단감 수출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감을 활용한 다양한 신상품 개발로 소비지 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자들에게 창원단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필요.</li> <li>• 브랜드화 및 단일화 된 출하체계 구축으로 부가가치 향상 필요.</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년까지는 연합사업단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마케팅 체계를 구축</li> <li>• 행정과 시행주체간 협력체계는 양호하여 실질적인 사업시스템 구축 마련</li> <li>• 연합사업단을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원예과수팀 구성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li> <li>• 원예과수팀에서 FTA사업 및 유통사업에 대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 마련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과 시행주체간 유기적인 협력체를 활성화하고, 농가 의견 수렴을 체계화하여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실익을 제공해야 함.</li> <li>•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쌀 뿐만 아니라 원예과수품목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하여 법인 운영 체계화 필요.</li> <li>• 연합사업단에서 법인으로 사업이 관, 출하약정 갱신 등 전반적인 업무 조정을 시행하여 형식적 사업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집행률은 100%로 우수하나 상반기 집행실적은 저조함</li> <li>• 사업규모가 적어 농가들에 대한 실익지원은 약한 편임</li> <li>• 생산기반조성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 선정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조기에 실행하여 상반기 중 사업비 집행을 확대</li> <li>• FTA사업예산 확대를 통하여 다수 농가들에 대한 실익 제고 노력 필요</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사업단은 공동선별·공동계산 수용농가를 회원농가로 확보하고 있어 농협과 시행주체간 연계성이 강함.</li> <li>• 행정과 시행주체의 네트워크도 양호하여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예화 된 농가 확보를 위하여 시행주체와 행정, 참여조직간 체계적인 농가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필요</li> <li>• 법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단기·기간적인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 체계 마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3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B0</b>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B0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B0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B0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C+</b>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b>14</b>	<b>C0</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C+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5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C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C+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5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b>10</b>	<b>B0</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83	
③ 출하약정 주체	2	2.00	
④ 출하약정기간	1	0.6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2.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2.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A0
	① 예산집행률	10	10.00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B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B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87	
<b>성과단계 소계</b>		<b>40</b>	<b>C+</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A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D+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2.37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0.38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1.08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2.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0.25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B+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2.98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1.39
	⑨ 기타 사업실적	1	1.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B0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B+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C0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17
	② 교육 횟수	1	0.71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B0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B0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0.76	
	비계량	C+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B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과수발전협의회가 자문회의 역할 대행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추가 선정하여 보강하였음. (학계, 연구계, 유통 전문가 보강)
- 자문회의에서는 FTA기금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심의, 의결 등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창원단감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기능은 미흡.
- 참여농업인의 의견수렴은 연합사업 발대식 및 교육을 통해 구두 의견,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음.
- 전반적으로 자문회의를 통해 창원시 단감과수산업 발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요 분야 전문가 참여를 추진하고, 회의 및 E-Mail, 서면자문 등 의견 청취통로를 다양화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야 함.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행정과 시행주체 간 협의는 4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FTA기금사업을 위한 법인화 및 연합사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한 회의 추진으로 양호함.
- 실질적인 회의 체계구축을 위하여 1박 2일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
- 지원대상조직간에는 연합사업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조합간 연합사업 추진 방향 및 FTA기금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실무적인 회의 체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짐.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전반적으로 '06년 평가, 점검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양호함.
- 특히 출하약정은 표준안을 토대로 하여 별도로 다시 체결하였으며 '07년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은 '08년에 반영 추진.



나. 집행단계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참여조합	◎	○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사업시행주체가 신청서 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전반적 핵심 업무를 시행주체가 담당해야 하나 1차 정산 등 시군에서 주도하고 있어 시행주체를 중심으로 핵심업무를 진행하고 행정과 참여조직이 역할 분담을 하는 협력 구도를 유지해야 함.

② 1,2순위 준수여부

- 사업신청서 취합시 시행주체에서 공동선별·공동계산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1, 2순위의 점수를 차등하여 순위 배정하여 1순위를 3명 선정하였다고는 하나 '07년 사업 신청시 신청서 상에는 1, 2순위를 구분하여 접수하지 않음,

- 사업신청 단계부터 1순위, 2순위를 구분하여 접수하고, 평가 시에도 분리평가 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업참여농가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정부정책 수용성 지표에서는 친환경 인증 여부를 반영하고 있음. 유통규모화 촉진 지표에서는 출하약정률을 반영하였고 이외에 과수목 수령, 농업인 후계자 여부 등의 지표 사용
- 표준심사표를 지역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지표를 고루 반영하고, 계량화된 실적과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연동 될 수 있는 심사표도입이 필요함.
- 또한 기타 수출실적 및 사업신청년도 이전 지원대상자에게는 감점을 부여하여 지역실정을 반영하고 있으나 감점 부분의 배점이 너무 커서 개선 요망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전체 신청 농가 대비 선정률은 22.2%로 실질적인 심사 결과가 반영됨.
- 심사 결과를 보면 전체 점수대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으나 사업신청년도 이전 지원대상자 감점 항목 때문에 하향 평준화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함.
- 동점자 발생시 출하약정량비율, 재배면적 순으로 선정하고 있음
- 우선순위 심사시 아무리 우수한 농가라고 할지라도 전년도 사업신청이 이루어졌으면 선정되지 못하는 불합리성이 지적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함.
- 사업대상자 선정 시 탈락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가 선정되지 못하도록 개선을 요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사업대상자 확정은 연합사업단에서 1월초까지 사업신청을 받고 우선순위 심사를 완료하여 최종적인 선정은 5월 말에 과수발전협의회에서 사업대상자 심의, 의결.

-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교부 결정, 통보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조기(1월)에 시행하여 영농철 이전이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해 우선으로 수시 사업착공여부 확인 및 독려 실시.
- '07년 8월 전화독려를 시행하였으나 형식적 측면에 가까워 인정하기 어려우며 11월(11.9)에 실시한 행정과 시행주체의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미개시자 2명에 대해 사업시행촉구 문서 발송 및 과수발전협의회에서 재선정한 것을 인정함.
- 그러나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합동조사 및 점검회의가 사후에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2개월 이내에 미개시자에 대한 조사 및 독려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

####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중도포기자 없음.
- 중도포기자 발생에 대비하여 신청서 및 보조금교부결정서, 출하약정서에 중도포기자에 대한 제재조치사항을 마련해야 함.

####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예비대상자를 20%를 선정하여(2명) 미개시자 2명 발생으로 1명을 예비대상자 중에서 선정하였음.
- 예비대상자 활용시 당해연도 차순위 선정 뿐만 아니라 익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도 차순위자를 우선 선정하고 또한 예비대상자 선정 시 미선정된 예비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예측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26	26	100	583	435	74.6	연합사업단	1
'06년	36	26	100	542	502	92.6	연합사업단	1
'07년	10	10	100	231	211	91.3	연합사업단	3
계	62	62	100	1,356	1,148	84.6		

- 사업신청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체결하였으며 농식품부 표준안에 의거하여 선정 후 출하약정을 재체결하였음.

###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출하약정은 최소 80% 이상 약정하도록 하며 80%를 초과 약정할 경우 우선순위 심사 평가시 가점 부여 (5점~20점까지 차등)

### ③ 출하약정 주체

- 사업시행주체인 창원시연합사업단으로 출하약정 체결하여 우수하나 시행주체가 법인화 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체결하여야 함.

### ④ 출하약정기간

- 출하약정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으며 '08년 사업자부터 5년으로 변경하였음.
- 향후 5년 이상 장기출하 약정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출하약정 체결 시 실질적인 공동마케팅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행주체의 노력이 필요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신청서 및 출하약정서 상에 향후 3년간 FTA기금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제외, FTA기금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사항 명기.

- 별도의 규정 및 인센티브 방안은 없음.
-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페널티 사항을 명확히 하고 특히 지자체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주체에서도 출하선도금 및 과실계약 출하사업과 연계한 페널티 조항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임.

##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자재 일괄구매 미추진.
- 시행주체를 중심으로 지역수요가 많고 공동 구매 효과가 큰 품목에 대해 견적서 징구, 입찰에 의한 가격 비교, 품질 관리 조건 요구 등 실질적 공동 구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과수발전협의회에서 업체 선정. 6개 업체 중 6개 업체 전체 선정하였으며 사업대상 선정농가에게 공문서로 통지하고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였음.
- 업체 선정시 시공에 따른 불편사항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정한 심사표를 마련하고 매년 품질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 사업배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또한 업체 선정에 있어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업체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평가표에 의거하여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시행지침 표준단가와 견적서의 차이가 없어 실무검토 후 표준지침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함.
- 실무적 검토에서 탈피하고 보다 면밀한 단가 검토를 위해 단가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단가를 조정, 적용함으로써 농가 실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 ① 예산집행을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관정개발			8	8			8	8			100%
모노레일			36	36		29.5	9.1	38.6			107.2%
야생동물 방지시설			5.6	5.6			3	3			53.6%
<b>합계</b>			49.6	49.6		29.5	20.1	49.6			100%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생산기반조성			611.4	611.4			42.9	42.9	568.5		7.0%
거점APC											
과실브랜드											
<b>합계</b>			611.4	611.4			42.9	42.9			7.0%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예산집행을 100%로 우수함.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사업대상농가를 대상으로 유선 및 공문서로 사업시행촉구문서를 시행하고 예비대상자를 활용하여 예산 불용 예방
- 상반기 예산집행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사업조기착수를 위한 예산집행을 점검회의 및 일제 합동조사 등의 체계적인 사업시스템을 마련하여 농가들이 기간 내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용자예산 소요액을 사전에 요청하였으며 사전 신용조회 등으로 용자가능여부를 파악하고 당초 배정액(15백만원)을 초과하여 추가 배정받아 집행(27백만원)하는 등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이 돋보임.

- 사업신청시에 용자예산희망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 용자예산 필요농가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시행주체 및 참여조직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용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연합사업 및 FTA기금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았으며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운영비(300백만원)와 단감 와인 개발 등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연계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이 엿 보임.
- 기타 홍보, 관측비 및 FTA사업 참여농가 중 친환경농가에게 별도의 동력 분무기를 연계 지원.
- 시행주체의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자체의 연계사업을 발굴 하여 FTA대상농가를 정예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농식품부 등 기관의 점검 지적사항 미이행 없음.
-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및 제출 후 수정, 허위사실 기재 없음.
- 보고서류 제출 지연(-0.87) : 미제출 1건(-1점), 지연일 17일(-0.17점), 조기제출 30일(+0.30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08년 3월에 창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등기 완료

-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구성되었으나 실질적인 FTA관련 원예품목 업무는 연합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08년 말까지 법인 내 원예과수팀을 구성하고 업무를 이관할 계획임. (법인의 현재 취급 품목은 쌀에 국한)
- 조합공동사업법인 내 원예과수팀을 조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FTA관련 업무 및 연합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가 실행될 수 있도록 개선노력이 필요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436	324	429	74.3%
2006년	502	315	574	62.7%
<b>2007년</b>	<b>211</b>	<b>167</b>	<b>225</b>	<b>79.1%</b>
계	1,149	806	1,228	70.1%

- 출하약정이행률 79.1%로 전년 대비 향상되었으며 약정이행을 제고를 위하여 농가교육 및 제재사항 강화 등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1,988	1,950	-1.9%	3,430	3,604	5%

- 연합사업단 출하량은 전년과 비슷하고 출하금액은 일부 증가하였으나 그 실적이 매우 미미하므로 증가율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1,858	3,430	3,604	5%



- '07년 연합사업단 실적은 약 36억원으로 성장세 유지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매우 미미하므로 취급금액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율(B/A)
실적(백만원)	3,604	3,604	100%

- 공동선별·공동계산을 수용하는 농가만이 연합사업단에 참여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량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시행하여 우수하나 취급금액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D-C)/C
1,988	1,950	-1.9%	3,430	3,604	5%

- '06년 대비 '07년 5% 증가에 그쳐,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시를 통한 유통규모화 노력이 요구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연합사업단에서 단감과 수박에 공동브랜드 “感! 좋은 창원단감”, “더위날린 창원수박”을 활용하고 있음.
- 단감은 상표등록이 되어 있으나 수박은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율(B/A)
사업실적(백만원)	3,604	3,583	99.4%

- 연합사업단 자체 공동브랜드를 활용하고 있어 99.4%에 달하는 실적이 공동브랜드 실적으로 우수하나 취급금액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93	119	130	9.2%

- '06년 대비 '07년 9.2%의 증가율을 보여 연합사업단 참여농가의 지속적 증대 노력이 돋보이나 참여농가수가 적으므로 정예농가 육성 및 농가조직화 교육 등을 강화하여 참여농가수를 확대하여야 함

⑨ 기타 사업실적

- 채소류 및 포장재 구매실적이 일부 있음.
- 향후 농가의 소득증대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한 지속적 사업 확대가 필요함.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창원시농협연합사업단에서 사업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등 조사.
- 특히 조사결과 중에서 관정개발사업 확대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08년에 추가 사업물량 배치 활용
- 향후 만족도 조사에 대한 설문지 설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농가수 요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이외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 또한 지속적인 농가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차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외부 컨설팅업체를 통하여 FTA사업 전반에 걸친 평가를 실시하였음.
- FTA사업 추진현황 및 참여조직별 면담 조사 등 다양한 조사 및 컨설팅 결과를 통해 자체 평가 시스템 구축.
-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지원 사항을 반영하여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중 임.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에서 공동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기술 및 유통교육을 5회에 걸쳐 약 330명을 대상으로 추진
- 향후 연합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선별·공동계산 중심으로 농가 참여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정예농가 육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단감 공동선별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주로 선과장의 작업장 관리기준에 그치고 있으며 생산을 포함한 전체 품질관리 체계화를 위한 매뉴얼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창원단감에 대한 고품질 생산을 위한 재배매뉴얼을 개발하고 브랜드에 대한 품질관리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할 것임.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예산집행을 우수 실적 인정
- 단감과인 개발을 통해 하품 처리 노력이 돋보이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를 위한 자체 예산 지원 사업도 모범적 사례로 뽑을 수 있음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행정과 사업시행주체가 FTA사업에 대한 업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 사업추진노력이 돋보임.

48(2-08)	하동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배 (보조) 단감	선정년도	2005
사업주관기관	하동군	사업시행주체	하동농협
참여시군	하동군		
득점현황	합계 (100)	3등급	
	계획단계(10)	D+	
	집행단계(50)	D+	
	성과단계(40)	C+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하동농협이 사업시행주체로서 관내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 4개가 참여하고 있음.
- 신청서 접수 등은 참여조직이 주도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등 후속작업은 지자체에서 주도하여 사업시행주체의 역할이 약한 편임.
- 시행주체인 하동농협은 주로 유통사업에 주력하고 있음.

### □ 핵심성과

- 전국에서 2번째로 호주수출단지로 지정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수출단지 공동 선별장 정비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하고 있음.
-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하동배명품센터를 건립하였음.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주체 변경 없으며, 참여조직의 역할이 타조직에 비해 큰 것을 제외하면 특이사항 없음.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 외 5대 작목의 총 조수익이 358억원임.</li> <li>수출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자체 선과장 보유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산지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 아니므로 주체 간 협력을 통한 규모화에 중점을 두어야 함.</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은 전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하동농협은 유통을 전담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음.</li> <li>사업계획 수립, 사업집행,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등 전반적으로 미흡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주체의 역할이 미비함.</li> <li>하동농협이 유통을 전담하는 체계이나 사업추진 전반을 시행주체를 중심으로 재편성하여야 함.</li> <li>농식품부에서 제시하는 평가기준 및 사업실행 지침에 부합하도록 전반적 사업운영관리 개선이 요구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집행율이 저조함.</li> <li>사전 조치를 통한 집행율 제고 노력보다는 사후적 대응이 중심임.</li> <li>5차에 걸친 대상자 선정으로 비효율 발생하며, 체계적 심사표 적용이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용액 등이 많아 사업비가 과다하게 배정된 것으로 보임.</li> <li>예산집행율 제고를 위한 사전홍보 강화, 관리대장의 작성, 수시 점검체계 등이 구축되어야 함.</li> <li>사업대상자 선정을 체계화하여 비효율을 제거하고 시기도 앞당길 필요가 있음.</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참여 조직이 자체 이사회를 통해 생산관련 자재 구매, 업체 선정, 사업 신청서 접수 및 적격 여부 판정 등을 주도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자단체 주도는 현장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각종 심사 등은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신력을 높여야 함.</li> <li>사업대상자 심사 기준 설정 등도 사업시행주체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임.</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3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D+</b>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C0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C0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D0
	<b>집행단계 소계</b>	<b>50</b>	<b>D+</b>
집 행 단 계  I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b>14</b>	D+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D0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D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D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2.0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1.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0.00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b>10</b>	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74	
③ 출하약정 주체	2	2.00	
④ 출하약정기간	1	1.0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D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1.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2.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0.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C0
	① 예산집행률	10	7.15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D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D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0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0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1.69	
<b>성과단계 소계</b>		<b>40</b>	<b>C+</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C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D+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1.74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2.47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27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0.89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1.65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C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3.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0.55
	⑨ 기타 사업실적	1	1.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C+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D0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D0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16
	② 교육 횟수	1	0.57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C0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C0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2.74	
	비계량	D0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C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지역농업주체 외 경상대, 원예연구소, 도농업기술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하고 있으며 배/단감 및 참다래로 품목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 기술센터 산하 품목별 연구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므로 이를 농업인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형식적이며 실시 횟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 개최 등이 미흡함.
- 외부전문가의 회의 참여와 활용을 강화하고,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도록 서면 자문, E-Mail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행정 및 농협, 참여조직(영농조합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과수육성 및 FTA사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관련 현안 발생 시 개최하고 있음.
- 협의회 실적이 적고 내용 또한 일상적 수준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미흡함.
- 협의회를 정규화, 정례화하고, 시행 주체를 중심으로 주관/간사제를 운영함으로써 사전 안건 정리와 의사결정 결과의 적용을 체계화해야 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연차평가 시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실적이 형식적이며 파악하기가 어렵고 개선의지 또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연차평가는 전국 사업을 대상으로 핵심적인 운영 개선사항을 지적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이행 노력으로 사업 활성화에 활용하도록 해야 함. 성실한 이행 노력이 요망됨.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			
시·군		◎	◎	○		○	
읍·면	○	○			○		
사업시행주체	○			○			
참여조합	◎	○	○	○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현장심사 및 우선순위 심사는 행정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사업시행주체인 하동농협보다 사업에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역할이 큼.
- 시행주체의 역할이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며, 우선순위 심사 등 핵심 기능을 시행주체가 직접 담당함으로써 물량 통합과 농가 결집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시행주체가 주요 사업 기능을 담당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 ② 1,2순위 준수여부

- 사업신청량이 적기 때문에 구분하여 접수하지 않음.
- 사업 설명자료에는 공동선별공동계산 농가에게 우선 순위 부여한다고 명시 하였으나, 실제로는 신청농가에 대해 사업 참여조직이 타당성 조사를 거쳐 적격 부적격 여부만 판단함.

- 그러나, 1, 2순위 구분은 사업에 지원하는 농가와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를 연계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지역통합과 협력적 농가조직화를 위한 연계방안으로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사업 신청단계부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별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심사표가 출하약정율, 약정이행율, 약정기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선 순위는 참여조직인 영농조합법인의 소속여부에 따라 결정토록 함
- 정부정책수용성, 유통규모화 촉진 등에서 종합적인 항목이 적용되지 않아 부적절한 심사표로 이해됨.
- 표준 양식을 적용하되, 지역과 품목 여건에 적합하도록 항목과 배점 기준 등을 조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사업신청서를 접수하는 영농조합법인에서 부적격 농가를 제외하고 있으며, 사업량에 비해 신청농가가 적어 실질적인 우선순위 심사는 시행하지 않음.
- 보조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상적인 심사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하며, 시행주체, 참여조직, 행정 등이 참여하는 현장실사를 실시 하는 등 정상적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실무선에서 1차로 '06년 12월 26일 가선정, 최종선정은 '07년 1월 농정심의회를 통해 이루어짐
- 사업대상자가 미달되어 '07년 추가 대상자 선정을 5회나 실시하여 비효율적이며 행정력 낭비 요소가 있음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보조금 교부 결정(3월 15일) 후 미개시자 조치
- 5월 중 사업대상자 재선정하였음
- 각종 행정사항에 대한 근기 서류 등은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완 필요함

- 향후에는 선정 후 2개월 경과시점에서 미개시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미개시자에 대해서는 포기서 징구, 관리 명단 등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업대상자 신청, 선정, 집행 전 과정에서 미흡한 요소가 있음. 신청 단계부터 사전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고, 시행주체, 참여조직의 참여 확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 규모에 적합하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해당중도포기자 7농가에 대하여 출하약정서에 3년간 FTA사업지원중단, 농림사업 지원제외, 과수사업지원 최하위 배정 등을 명기하였음
- 향후 중도포기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신청시 농가들이 사업비, 실행가능성 등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신청하도록 지도하고, 패널티 적용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함.

####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사업신청 미달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중도포기자는 추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체하였음.
- 중도포기자에 대비하여 후순위자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해 두어야 하며 또한 미지원 된 예비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 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능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103	103	100	1,307	1,085	83	하동농협	5
'06년	117	117	100	1,314	1,117	85	“	5
'07년	141	141	100	1,749	1,522	87	“	5
계	361	361	300	4,370	3,724	85	“	5

- 사업신청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약정 체결하여 우수함.

###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07년 출하약정물량 비율 87%로 출하약정 실질화를 더 향상시켜야 함.

### ③ 출하약정 주체

- 출하약정주체는 하동농협(하동군과수유통사업단)으로 적정하게 체결하였음.

※ 하동농협이 과수유통사업단을 구성하여 유통,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영농법인 등 참여조직의 자율적 사업관리,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음. 시행주체와 참여조직간 역할 재구축과 지역 과수산업 통합 마케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 ④ 출하약정기간

- 출하약정 기간은 5년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향후에도 농가 참여와 책임성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출하약정서에 3년간 FTA사업지원중단, 농림사업 지원제외, 과수사업지원 최하위 배정 등을 명기하였음.

- 그러나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는 일반적 수준이며 인센티브가 수출농가 위주로 이행되고 있어 연관성이 다소 미흡하므로 불이행 농가에 대하여 FTA기금 사업 대상 제외 등 가시적인 제재를 시행하여 출하약정 불이행을 사전 방지하여야 함.

###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농업용 파이프 등을 참여조직인 영농조합별로 일괄 구매하여 사업 추진한 실적이 있음.
- 교섭력 강화를 위한 물량 결집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매효과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일괄 구매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세부 품목과 가격 조건 등에 대해 검토가 충분히 진행되어야 함.

####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사업참여조직인 영농조합법인에서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음.
- 2개 업체 중 2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별도의 사업비 절감노력은 없음.
- 공신력 있는 평가위원회 체계를 도입하고 입찰에 의한 견적서 징구 등으로 사업비 절감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특히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품질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기준 점수 미달 업체에 대해 향후 FTA 및 기타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해 배제 등의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해당 없음.
- 행정과 시행주체,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메뉴 조정과 단가를 적용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 ① 예산집행을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
기타사업	315	370	300	985	184	62	368	614	106	660	62%
<b>합계</b>	<b>315</b>	<b>370</b>	<b>300</b>	<b>985</b>	<b>184</b>	<b>62</b>	<b>368</b>	<b>614</b>	<b>106</b>	<b>660</b>	<b>62%</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07년 예산집행율도 62%에 그쳐 부진함.
- 지역의 과수 재배면적에 비해 과도하게 예산을 신청하여 집행율이 낮고 사업 관리의 불철저, 참여조직 중심의 사업 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 요소를 가지고 있음.
- 실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규모와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함 .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사업추진 설명을 위한 별도의 책자를 제작하고 설명회를 실시함.
- 매우 저조한 예산집행율을 감안하면 단순히 설명회 진행만으로는 예산 집행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개인별 관리대장 작성, 참여조직 사업 추진 독려와 시공업체 감독, 진행 상황 모니터링 등 추가적인 노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용자희망농가에 보조금 교부 시 신용조사서 작성토록 하고 농협에 통보하여 대출 협조를 요청한 점은 우수함.
- 집행율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수출 및 친환경사업 촉진을 위해 자체사업자금 집중 지원하고 있으나 효율적 연계장치로 보기에 미흡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시행주체가 실시하고 있는 자체사업과 FTA기금 지원사업을 동일하게 운용함으로써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농식품부 등 기관의 점검 지적사항 미이행 없음.
-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및 제출 후 수정, 허위사실 기재 없음.
- 보고서류 제출 지연(-1.69점) : 미제출 2건(-2점), 지연일 33일(-0.33점), 조기일 64일(+0.64점)
- 행정 보고서류 미제출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보다 철저한 관심이 필요함.

다. 성과단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인 하동농협 내 유통전담조직을 지역별/기능별로 재편하여 총괄상무 등 총 8명을 총괄, 수출 및 국내유통, 업무지원으로 업무분장하고 있음.
- 유통 판매를 위한 사업팀 구성을 비교적 체계화되어 있으나, FTA사업 관리의 일상적 지도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주도성을 확보하기 위해 FTA사업 관리 업무분장과 조직 내 역할분담이 필요함.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1,085	821	332	75.7%
2006년	1,117	781	624	70.0%
<b>2007년</b>	<b>1,522</b>	<b>882</b>	<b>891</b>	<b>58.0%</b>
계	3,400	2,484	1,847	73.1%

- '07년 총 출하실적 882톤, 58.0%로 출하약정 이행 실적이 낮으므로, 출하이행 확대와 사업 물량 확대를 위한 농가교육 및 제재사항 강화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781	882	12.9%	624	891	42.7%

- 총 891백만원으로 규모가 작으므로 품질관리와 마케팅에 기반한 과수 판매 시스템을 혁신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한 물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332	624	891	42.7%

- 총사업실적이 '06년 대비 '07년 42.7% 증가하였으며, 향후 사업실적 증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781	882	12.9%	624	891	42.7%

- 공동선별, 공동계산 실적이 882톤, 9억원은 다소 미미한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781	882	12.9%	624	891	42.7%

- 금액기준 증가율은 42.7%로 높은 것으로 인정되나 증가율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지역공동브랜드 "하옹촌" '06년 10월 특허청에 등록하였음.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율(B/A)
사업실적(백만원)	891	891	100%

- 사업량 전체를 공동브랜드로 출하하여 활용실적은 우수함.
-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436	384	397	3.6%

- 사업 참여 농가수의 증가는 미미하며 1인당 금액도 작은 편임.
- 향후 유통규모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예농가 위주로 참여농가수를 확대해 나가야 함.

⑨ 기타 사업실적

- 조합 농자재 판매사업 등 165.8% 증대(농자재사업 대폭 증대)
- 향후에도 농가의 소득증대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확대가 필요함.

###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배연구회원 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 및 애로사항 조사하였고, 기타 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농가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의견수렴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설문 항목 개발과 워크숍, 모니터링 등 의견 수렴 방법을 다양화하여 농가 만족도 조사와 사업 개선 의견 수렴에 노력해야 함.
- 또한 사업시행 성과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개선과 성과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평가회를 통해 농업인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체계적 설문문항 구성 및 환류체계 구축은 미흡
- 계획, 집행, 성과 단계의 주요지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도출과 사업 계획을 반영한 평가시스템 개발 및 실질적 환류체계 구축이 필요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생산관리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으로 보기에 전반적으로 미흡함.
- 교육이 상반기에 집중되어 계획성이 부족해 보임. 연차적 계획에 의거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배 연구회에 배포되는 생산 및 유통관련 자료를 확인하였으나, 체계화된 매뉴얼로 보기 어려움.
- 수확 후 관리, 저장, 유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매뉴얼 작성이 요구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출하증가율 42.8%로 우수하고, 자체점검을 통한 보조금 회수 2건과 예산 조기 집행실적이 인정됨

- 이외에도 전국에서 2번째로 호주수출단지로 지정된 것과 자체사업으로 수출단지 공동선별장 정비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을 수행한 것,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하동배명품센터 건립, 공동브랜드 '하옹촌'을 개발, 활용. 조례 제정, 지자체 농협 협력 하동군 지역특화작목 발전 컨설팅 시행 등이 있음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사업 시행 주체의 역할이 부족하고 전반적인 사업 진행 충실도가 미흡하므로 개선 노력이 필요함.

49(5-09)	함안과수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단감, 감 (보조)	선정년도	2005
사업주관기관	함안군	사업시행주체	삼칠농협
참여시군	함안군		
득점현황	합계 (100)	5등급	
	계획단계(10)	D+	
	집행단계(50)	D0	
	성과단계(40)	F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함안군의 감 생산규모는 1,144ha이며 약 19,763톤의 물량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단감은 15,960톤 규모임.
- 함안군에서는 삼칠 지역을 중심으로 90% 이상의 감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는 약 25% 수준임.

### □ 핵심성과

- 단감 주 생산지역 및 취급농협을 중심으로 하는 주관농협 방식의 사업시스템을 정비하였음.
- 재배생산시설현대화를 통하여 고품질 생산 및 비용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과일연합사업단에서 삼칠농협 주관농협으로 변경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업시행주체로서의 역할 수행이 미흡함.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안군 삼칠지역을 중심으로 감이 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물량은 약 2만톤 규모임.</li> <li>• 뽕은감의 경우 약 4천톤 규모가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량의 30% 이상을 꾀감으로 가공하여 판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해, 창원에 이은 단감 주산지로서 유통주체의 통합·일원화된 생산-유통 계열화시스템 구축 필요함.</li> <li>• 함안군 꾀감의 시장, 소비지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함.</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주체 변경 이후 주관농협에서 FTA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li> <li>• 행정과 시행주체간 FTA사업과 유통사업을 연계하여 과수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협의 및 로드맵 미흡</li> <li>• 단감 공동선별, 공동계산 참여농가가 미흡한 편임.</li> <li>• APC 중심의 생산-유통계열화시스템 구축이 미흡</li> <li>• 시행주체의 FTA사업관리 역량이 미흡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과 사업시행주체의 FTA사업에 대한 목표와 취지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우수 추진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효과적 사업 추진 모델을 정립해야 함.</li> <li>• 함안군 과수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필요.</li> <li>• APC를 중심으로 하는 정예화된 회원농가 육성 필요.</li> <li>• 시행주체의 FTA사업 관리 조직 강화와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집행율은 100%로 매우 우수</li> <li>• 상반기 조기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대상 농가들이 조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칠농협에서 전체 단감 취급량의 90%를 취급하고 있으며 타 참여조직의 경우 참여율이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농협의 취급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참여조직에서는 생산물량 100%를 주관농협에 출하를 하여 완전계열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 시행주체와 참여조직간 실질적인 협의체계 및 사업시스템 구축 필요.</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5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D+</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D0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D0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D0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D0</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b>F</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D0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0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D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D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0.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0.00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b>C0</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70	
③ 출하약정 주체	2	1.00	
④ 출하약정기간	1	0.2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D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1.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2.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B+
	① 예산집행률	10	10.00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C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C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D0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D0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2.38	
<b>성과단계 소계</b>		<b>40</b>	<b>F</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D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F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0.34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0.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0.02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0.05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0.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D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0.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0.00
	⑨ 기타 사업실적	1	0.65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F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F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F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14
	② 교육 횟수	1	0.43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D0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F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0.96	
	비계량	F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D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자문회의가 학계, 연구소, 농가, 생산자단체 등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자문기능이 매우 미흡.
- '07년 사업의 경우 전체 자문회의는 개최되지 않았고 단감연구소 자문위원을 통한 1회의 자문 수행.
-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단감 전문가를 추가 보완하고 실질적인 자문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별도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FTA사업 및 기타 과수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해야 함.
- 또한 주요 분야 전문가 참여를 추진하고, 회의 및 E-Mail, 서면자문 등 의견 청취통로를 다양화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야 함.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시행주체 변경을 위하여 행정과 참여농협 간 회의가 1회에 걸쳐 추진되었으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미흡함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주체와 행정기관 간의 FTA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 지역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06년 연차평가 결과 중 법인화 및 일부 공동브랜드 사용 실적 이외에는 개선되지 못하여 개선의 의지가 매우 약한 것으로 보여짐.
-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담당 실무자들 간의 실질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나. 집행단계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	◎	◎	◎		◎	
읍·면	○	○		○			
사업시행주체	○	○	○	○	◎	○	
참여조합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신청서 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 심사, 지도점검 등 대부분의 업무를 사업시행주체가 아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함.
- 신청서 접수 및 현장 심사의 경우에도 참여조직이 접수를 하지 않고 읍면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 시행주체의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에서는 시행주체가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에 대한 이해 및 역할분담체계 구축 필요

② 1,2순위 준수여부

- 신청서 부속서류에 1, 2순위를 구분하고 있으나 1순위가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농가가 아니라 단순 출하약정체결농가로서 개선이 요구됨.

- 실질적인 1, 2순위 구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표준양식에 따라 1,2순위를 구분하여 신청단계부터 "공동선별·공동계산 및 장기출하약정" 체결 농가를 1순위로 우대하여 선정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행주체가 주도하는 판매사업 시스템의 개선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 5백만원에 불과)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유통 규모화 촉진 지표에서 계통출하 실적을 반영하고 있음.
- 기타 지역여론 및 사업추진능력을 심사하여 평가
- 공동선별·공동계산 지표에 대한 반영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실질적인 출하약정을 이행할 수 있고 고품질 과수산업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는 심사표 마련이 시급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전체 신청 농가 대비 선정률은 66%로 실질적인 심사결과는 양호함.
- 다만 심사 결과를 보면 상위 점수대에 심사 결과가 분포되어 있어 심사표의 변별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 우선순위 심사시 변별력을 높힐 수 있는 심사표의 개선과 하위점수의 농가들에 대한 선정탈락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동점자 처리 기준이 없으므로 실적 등과 연계하여 점수를 차등 부여할 필요가 있음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우선순위 심사를 3월 초에 완료하고 3월말에 농정심의회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을 전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와 보조금교부결정을 1월에 실시하여 영농철 이전에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미개시자 없음.

-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미개시자에 대한 합동조사 등의 점검회의체계를 마련하여 참여조직에서 사업독려, 포기서 징구 등 미개시자에 대한 각종 조치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가 요구됨.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중도포기자 발생 시 적절한 대책 마련이 미흡함
- 신청서, 출하약정서,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중도포기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기하고 농가들에게 홍보하여 타당한 이유 없이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심사를 강화해야 함.
- 포기자 발생 시에는 포기각서 및 향후 FTA 및 자체지원사업, 시행주체의 선도금 등 다양한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재방안 마련.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아 미흡하며 향후에는 예비대상자를 20% 정도 선정하여 미개시자나 중도포기자 발생 시 지원농가를 교체해야 할 경우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예비대상자의 경우 당해 연도 뿐만 아니라 익년도 우선순위에서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함.
- 또한 미 선정된 예비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55	55	100	1,121	673	60.0	연합사업단	1
'06년	68	68	100	1,452	871	60.0	연합사업단	1
'07년	50	50	100	1,106	942	85.0	연합사업단	1
계	173	173	100	3,679	2,486			

- 사업신청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체결하였으나 별도의 출하약정기간 명시 안됨.

- 사업신청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약정 체결 하도록 해야 하며 사업신청 단계에서부터 출하약정을 의무화하여 지원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약정을 체결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07년 약정농가 생산량 대비 80% 이상 출하약정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85% 출하약정 실적을 보여 양호함.

## ③ 출하약정 주체

- 기존 시행주체인 과수연합사업단(사업시행주체)으로 약정이 체결되었으나 5개 지역농협참여하에 유통시설 확장 추진 지역으로 출하약정 주체가 실질적 시행주체라고 볼 수 없음

## ④ 출하약정기간

- 출하약정기간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
- 향후에는 5년 이상 장기 약정을 체결하여 농가의 책임성과 체계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행주체 중심의 효과적인 출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출하약정서 상에 향후 '10년까지 FTA기금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음.
- 별도의 규정 및 인센티브 방안은 없음.
- 시행주체에서는 출하약정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형식적인 출하약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출하약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감박피기, 수확상자, 제습기 등의 자재일괄구매는 FTA기금사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자재로서 동사업과 관련하여 자재일괄구매 품목을 확대하여야

하며 수요가 많고 규모화의 효과가 큰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일괄구매를 실시해야 함.

- 비교 견적으로 단가를 검증하고, 품질관리 관련 사항을 부대조건을 첨가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우수한 품질의 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농가로부터 3개 업체를 추천받아 최저 가격을 제출한 1개 업체 선정하였으나 별도의 공지 등은 없었음.
- 시공업체 선정시 가격 뿐만 아니라 시공품질만족도 등 다양한 시공업체에 대한 평가지표를 통해 공정한 선정을 할 필요가 있음.
- 매년 시공업체에 대한 품질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현저하게 만족도가 저하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FTA사업 및 기타 사업에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제재사항을 도입하여 업체의 시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농식품부 표준단가를 검토하였으나 문제가 없어 조정 없이 사업을 시행함.
- 업체의 가부 뿐만 아니라 등급 점수화를 통한 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최소한 견적서 등을 징구하여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농가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단순 검토 수준에 그치지 말고, 단가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사업단가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추진하여 지역실정을 반영한 현실적인 사업단가를 산출하고 농가들의 실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모노레일등			150	150	21	64	65	150			100%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예산 규모가 1억5천만원으로 소액이며 집행률은 100%로 우수함.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비선호 사업물량을 선호사업으로 재신청하여 농가에 필요한 사업 전환 실시한 사례는 우수함.
- 상반기 예산집행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사업대상자 선정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상반기 조기에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 사업대상자 선정을 지침에 의거하여 전년도 12월 말까지 시행하고 농가들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강화해야 함.

## ③ 융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소액 사업의 경우 자부담으로 전환하여 처리하였음.
- 대상 농가 중에서 융자예산희망농가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신청 단계부터 시행하여 필요농가에게 조기 대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FTA사업 대상농가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사업은 없으나 기타 대상농가가 포함된 부직포 등의 지원사업이 일부 이루어짐.
- 행정과 사업시행주체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되며 동 사업과 연계한 차별화된 사업 발굴을 통하여 함안군 과수산업의 혁신을 유도해야 할 것임.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농식품부 등 기관의 점검 지적사항 미이행 없음.
-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및 제출 후 수정, 허위사실 기재 없음.
- 보고서류 제출지연(-2.38점) : 미제출 3건(-3점), 지연일 6일(-0.06점), 조기일 68일(+0.68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07년 7월에 연합사업단에서 삼칠농협으로 시행주체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업시행주체에서 FTA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며 조합의 판매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FTA사업과 연계한 함안군 과수산업 발전계획 수립이 요구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673	689	1,184	102.0%
2006년	113	103	169	91.0%
<b>2007년</b>	<b>942</b>	<b>108</b>	<b>357</b>	<b>11.5%</b>
계	1,728	900	1,710	52.1%

- 시행주체에서 출하약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출하약정물량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880	103	-88.3%	274	52	-81.0%

- 출하량이나 출하액이 현격히 감소하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 수정 실적보고서 상의 자료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 평가팀이 별도로 농협 전산자료를 통해 별도로 실적자료를 취합하여 평가하였음.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1,197	274	52	-81.0%

- 시행주체의 사업실적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52	52	100.0%

- 전체 실적에 대하여 공동선별·공동계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실적 증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880	103	-88.3%	274	52	-81.0%

- 공동선별·공동계산이 '06년 274백만원에서 '07년 52백만원으로 81% 감소하여 향후 공동선별·공동계산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e-아라리 공동브랜드가 개발되어 있으나 단감 부문에 있어서의 활용실적은 매우 미흡함
- 단감 부문에서 공동브랜드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전체적인 사업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 율(B/A)
사업실적(백만원)	52	0	0%

- 전체 사업실적 중에서 공동브랜드 사용실적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실적을 인정하기 어려움.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58	10	14	40%

- 일부 유통사업 참여농가가 늘어났으나 워낙 사업량이 미미하여 40% 증가율을 인정하기 어려움.

⑨ 기타 사업실적

- 채소류 판매실적과 농자재, 포장재 등의 기타사업실적이 일부 증가하였음.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만족도 조사와 추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음.
- 사업대상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FTA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 다양한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함.
- 특히 시공업체 등에 대한 품질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함.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평가회와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음.
- FTA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환류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시급하며 또한 연차 평가회를 실시함으로써 종합적인 농가 만족도 조사와 시공업체 평가, 유통사업 성과를 검토하고 차년도 예산 집행 및 성과도출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삼칠농협에서 3회에 걸쳐 단감 영농기술 교육을 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농가의 사업참여율 제고 및 약정이행율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농가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필요가 있으며, 특히 농가들의 사업이해도 증진과 유통마인드 제고를 위해서는 단순 교육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생산-유통 계열화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정예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일반적인 월별 재배기술(새해영농설계교육 등) 이외에 별도의 품질관리매뉴얼 미보유.
- e-아라리 공동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품질관리매뉴얼을 개발하여 농가에게는 재배매뉴얼, APC에서는 작업 및 운영 매뉴얼 등을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주체가 노력하여야 함.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없음.
- 향후 총 사업 실적의 규모화 된 경영 및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행정과 시행주체의 사업의지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제주도·전국

- 50. 제주 감협감굴육성사업 ..... 827
- 51. 제주 농협감굴육성사업 ..... 842
- 52. 전국 과실공동브랜드육성사업 ..... 858



50(4-02)	제주감협감귤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감귤 (보조)	선정년도	2004
사업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시행주체	제주감귤농협
참여시군	제주시, 서귀포시		
득점현황	합계 (100)	2등급	
	계획단계(10)	B0	
	집행단계(50)	C+	
	성과단계(40)	A0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제주감귤농협이 사업시행주체가 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관리를 맡고 있는 동사업은 제주감귤을 주품목으로 하여 우량품종갱신사업과 감귤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비가림하우스 시설확충을 통해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품종 및 작형안배를 통한 연중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06년 11월 22일 설립된 신흥리 거점APC에 이어 회수동에 제2거점APC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유통시설 중심의 유통계열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 핵심성과

-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노력과 유통현대화를 통해 최고급 감귤브랜드인 '블로초'를 시장에 연착륙시킴
- 신흥리 제1거점APC의 성공적 운영으로 1차년도 흑자시현과 제2거점APC의 차질 없는 도입 추진
- 폐원, 품질갱신, 간벌 등을 통해 제주감귤 전체의 품질이 제고됨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제주전역을 사업범위로 하고 있는 제주감협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사업 관리를 함으로써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제주감협은 본소에 기금담당부서 외 유통사업소를 별도로 설치하여 전문화를 꾀하고 있고, 각 지소에 기금사업담당자를 둬으로써 사업 시행과 관리 능력을 배가하고 있음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5%이상이 노지감귤이며, 고품질 감귤 생산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미미한 형편임</li> <li>소규모 농가들의 경우 여전히 관행농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품질 브랜드화 노력이 미흡함.</li> <li>APC를 중심으로 한 농가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속화가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농법들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전체 감귤의 품질수준을 한단계 높여야 함.</li> <li>거점APC중심의 농가조직화의 완성도를 높이고 농가참여도를 높여나가야 함.</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사업은 전문농협인 제주감귤농협의 13개 지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유통분야를 담당하는 별도의 사업소인 '유통사업소'를 두고 있어 비교적 사업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li> <li>FTA기금사업을 위한 별도의 자문회의는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실무추진협의회가 그 역할을 함</li> <li>자재일괄 구매를 통한 예산절감 및 공신력 있는 업체선정을 위한 노력이 미흡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무추진협의회'의 명칭을 'FTA기금사업자문위원회'로 바꾸고 실질적인 사업점검과 자문이 가능한 체계로 재정비가 필요함.</li> <li>사업시행주체인 감귤농협 차원에서 자재일괄구매, 시공업체 선정 등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집행율이 92%에 이를 정도로 양호한 편임</li> <li>일부 품종갱신사업에서 사업포기자가 발생하고 태풍으로 인한 사업차질로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이 일부 이월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품종갱신사업에 대한 지침에 대해 사업대상 농가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인지시켜 중도사업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됨.</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와 제주감귤농협간 업무협의를 대체로 원활하게 진행되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없음.</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2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B0</b>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B0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B+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B+
	<b>집행단계 소계</b>	<b>50</b>	<b>C+</b>
집 행 단 계  I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b>14</b>	<b>C+</b>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B0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5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B+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B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1.0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b>10</b>	<b>B+</b>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1.74	
③ 출하약정 주체	2	2.00	
④ 출하약정기간	1	1.0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 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1.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3.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B+
	① 예산집행률	10	8.21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B+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A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05	
<b>성과단계 소계</b>		<b>40</b>	<b>A0</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B+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B+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2.01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2	3.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3.00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2.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3	2.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3	B+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1.06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3.00
	⑨ 기타 사업실적	1	1.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B+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F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B+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1.00
	② 교육 횟수	1	1.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B+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B+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2.51	
	비계량	C+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B+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APC자문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며 FTA기금사업 관련 자문회의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있으나 실무협의회에 유통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참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문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농업인 의견수렴은 원활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단순 집합교육이나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보다 정량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자치도가 주관이 되어 실무추진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도내 2개 FTA기금 사업자를 통합관리하고 있음.
- 제주감귤농협 본점과 13개 지소간 협의회도 원활하게 진행되었음.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07년 연차평가결과를 대체적으로 사업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나. 집행단계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 우선순위 심사 및 정산업무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주체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	○	◎	◎	
시·군				○	○		
농업기술센터							
읍·면	○	○		○			
사업시행주체	◎	◎		◎			
참여조합	○			○			

◎ 주관기관 ○ 지원기관

**② 1,2순위 준수여부**

- 사업신청서와 우선순위 심사표에서 1·2순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심사표내에서 1, 2, 3순위자를 구분하고 2순위자는 다른 기타 평가점수를 만점 받더라도 1순위자보다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1, 2순위 점수를 차등하려는 노력은 있음.
- 사업 신청단계부터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농가를 1순위로 구분하여 분리·평가함으로써 농가조직화 및 유통규모화를 위한 확고한 기반마련이 필요하며, 농가 참여도 제고와 책임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행주체 판매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함.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정부정책 수용성, 유통규모화 촉진, 기타 합리적 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계량화된 실적과 구간별로 연동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
- 계량화된 실적과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연동될 수 있는 심사표 도입이 필요함.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1, 2, 3 순위자에 대한 기본점수인 80, 60, 40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지표만을 보았을 때, 변별력이 어느 정도 있으나 평가항목의 점수가 단계적으로 부여되고 있어 동점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적 등과 연계하여 점수를 차등 부여할 필요가 있음.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06년 12월 7일자로 사업자 가선정하였고 '07년 1월 29일 농정심의회를 거쳐 확정 후 '07년 2월 2일 교부 결과 개별통지 하였음. 향후에도 전년도 12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1월에 보조금교부결정 및 통보를 완료하여 영농철이전에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07년 2월 최종 대상자 선정 후 미개시자에 대한 조사를 시도 교체점검에서 지적 받은 후 실시하는 등 사업점검이 미흡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중도사업포기자에 대해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제외 등을 통지하였고, 관련 사실 확인결과를 도에 통보('07. 5. 4)하고 2차교부 결정을 개별 통지('07. 5. 15)함.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감귤하우스시설은 사업대상자 70명 외에 예비대상자 15명을 선정하고 중도포기자 물량을 후순위에 따라 재배정 추진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였으나, 미지원된 예비대상자는 다음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 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정 주체	④ 약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5년	50	50	100	314	251	79	제주감협	5년
'06년	197	197	100	3,845	2,603	67	제주감협	5년
'07년	80	80	100	1,722	1,499	87	제주감협	5년
계							-	

- 사업신청 시 출하약정을 의무화하여 지원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약정 체결하여 양호함.

###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출하약정서에 예상생산량 및 약정량을 명시하고 있으며, '07년 약정물량 비율은 87%로 전년 67%에 비해 대폭 개선이 됨.

### ③ 출하약정 주체

- 출하약정 주체가 시행주체인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우수함.

### ④ 출하약정기간

- 출하약정서에 약정기간이 5년임을 명기한 점이 우수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출하약정물량 미이행농가에 대한 제재사항은 출하약정서에 명시된 수준이며 실질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없으며,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은 별도 명시하지 않음.
- '08년도에는 출하약정서상에 제재사항과 인센티브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됨.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사업시행주체에서 자재일괄구매를 추진하여 자재의 품질확보 및 구입단가를 낮추어 예산절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관내 시공업체 중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전년도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를 무조건 선정하기 보다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업체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지하여야 함.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도차원에서 별도로 구성한 단가조정위원회를 통해 발전기 단가를 일괄 조정하여 성능균일화 및 민원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함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207		207	157			157		50	76%
기타사업			6,649	6,649		1,403	4,779	6,182	467		93%
<b>합계</b>	<b>0</b>	<b>207</b>	<b>6,649</b>	<b>6,856</b>	<b>157</b>	<b>1,403</b>	<b>4,779</b>	<b>6,339</b>	<b>467</b>	<b>50</b>	<b>92%</b>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생산기반조성		690		690			690	690		2,760	100%
거점APC		4080		4080			110	110	3970	12,350	3%
과실브랜드			400	400				0	400	1,200	0%
<b>합계</b>	<b>0</b>	<b>4,770</b>	<b>400</b>	<b>5,170</b>	<b>0</b>	<b>0</b>	<b>800</b>	<b>800</b>	<b>4,370</b>	<b>16,310</b>	<b>%</b>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예산집행을 89.9%(농식품부 정산 기준)이나 품종갱신사업에서 일부 불용예산이 발생하였으며 거점APC사업과 과실브랜드사업에서 일정 지연으로 인한 이월예산이 많이 발생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이 대책이 요구됨

##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태풍 나리 내습에 따른 감귤하우스 피해복구 관련 업체간담회도 실시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은 우수하나 품종갱신 등의 사업비 집행을 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

##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사업 신청 시 용자 희망여부를 확인하여 사전 신용조회 등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용자예산 집행으로 타지역 미사용 용자금(25억원)을 전배 받을 정도로 우수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감귤원 1/2 간별지원사업 대상자를 우선 지원하여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연계장치를 마련하였으나, 토양피복, 방풍망, 작업로 설치 등은 FTA기금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시도 교체점검시 지적된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사항을 '08년 사업부터 반영하고 있음
- 보고서류 제출지연(-0.05점) : 미제출 0건(0점), 지연일 85일(-0.85점), 조기일 80일(+0.80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별도의 사업부서인 유통사업소를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소 및 13개 지소에 FTA기금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251	3,110	2,776	1,237%
2006년	3,845	979	1,516	25.4%
<b>2007년</b>	<b>1,499</b>	1,006	<b>1,421</b>	<b>67.1%</b>
계	5,595	5,095	5,713	91.0%

- '06년 출하약정량 대비 출하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으나, '07년 67.1%로 개선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이행율이 저조하므로 이행율 제고를 위한 농가교육 및 제재사항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2,141	12,974	505%	3,341	25,253	655%

- 제1거점APC가 '06년말 준공이 되면서 이전 단순계통 출하량이 APC를 통해 유통되면서 사업량이 크게 신장되었으나 감귤생산액에 비하면 아직도 노력할 부분이 많음

####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2,141	12,974	505%	3,341	25,253	655%

- 전년대비 사업실적이 크게 신장되었으나 전체 감귤 생산액 및 제주감귤 취급액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미미하므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④ 공동선별, 공동계산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25,253	8,910	35%

- 전체 사업실적 중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은 35% 수준으로 양호하나 거점 APC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로서는 그다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D-C)/C
1,775	4,411	248.5%	3,198	8,910	278.6%

- 제1거점APC 준공 후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이 물량기준으로 약 2.5배, 금액기준으로 약 2.8배 증가하여 우수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불로초, 굴림원 등 품질별 브랜드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등 상품의 차별화 노력을 하고 있음.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 율(B/A)
사업실적(백만원)	25,253	8,910	35.2%

- 공동선별 감귤에 대해 자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출하실적이 35%가 되는 등 브랜드관리를 위한 노력이 엿보임.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 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C-B)/B
조합원수(명)		425	1,163	273%

- 제1거점APC 준공 후 참여농가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전체 조합원 대비 10% 정도이므로 지속적으로 정예농가 위주로 유통사업 참여농가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⑨ 기타 사업실적

- 농약, 비료, PE필름 등 농자재 판매사업 실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기타사업실적이 '06년 23,618백만원에서 '07년 28,858백만원으로 22% 증가하여 우수하나, 농가의 소득증대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확대가 필요함.

###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제주감귤농협 APC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제주대학교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고 FTA기금지원사업 관련 만족도 조사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에서 실시하는 등 농가만족도를 조사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있으나 감귤 주 재배지인 서귀포시의 만족도조사는 실시되지 않아 추후 전체 농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함.
- 비교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농가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신규로 설치예정인 제2거점APC 운영활성화방안 용역을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컨설팅을 받았으나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 실적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감귤주산단지별 교육 12회 실시하였으며, 감귤 브랜드지도전문대학을 별도로 설치하여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술, 유통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함.
- 지역특성화 교육을 활용하여 난지농업연구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한 감귤브랜드지도전문대학은 1기 30강좌, 2기 21강좌는 내용면에서 있어 내실 있게 추진되었음.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브랜드감귤생산을 위한 감귤원 관리기술 매뉴얼을 활용하고 있으며, 감귤원예지를 통한 기술지도를 격월간으로 시행하고 있음

- 매뉴얼 업데이트는 현재까지 실시한 적은 없으나 '08년부터 실시할 계획 중에 있음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출하증가율 655%로 우수함.
- 총사업실적 253억원으로 규모화 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예산집행율 실적 인정
- 경제사업 달성탑 수상, 대한민국 품질경영 우수기업상(특산품 부문) 수상, '07대한민국 우수특산품 대상 수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브랜드 활성화를 통한 소득향상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사업추진의지가 강하고 사업관리가 체계화 되어 있으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음

51(4-03)	제주농협감귤육성사업
----------	------------

지원품목	(주) 감귤 (보조)	선정년도	2007
사업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시행주체	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시군	제주시, 서귀포시		
득점현황	합계(100)	3등급	
	계획단계(10)	C+	
	집행단계(50)	C+	
	성과단계(40)	B0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본 사업은 제주도 관내 19개 지역농협이 모두 출자하여 '06년 설립한 '제주 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을 사업시행주체로 하여 추진되는 사업임
- 주요 사업으로 우량품종갱신, 비가림시설지원 등을 통한 고품질 생산기반 사업과 '08년말 완공 예정인 거점APC(서귀포 토평소재, 총사업비 약 125억원) 건립을 통한 유통규모화,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 핵심성과

- 농가들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로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 거점APC 건립을 통해 고품질·안전 감귤의 규모화, 차별화 여건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주감귤 고품질화를 위한 간별사업, 신품종도입 등의 농정방향과 연계하여 생산, 구조개선 촉진하고 있음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기존 농협제주지역본부에 설치되었던 연합사업단의 사업체계를 그대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이어받아 큰 무리 없이 첫째 사업을 진행하였음
- 특히 생산시설현대화사업과 함께 거점APC가 추진되고 있고 기존 연합마케팅사업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효과는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기금사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 기금사업 관리 노하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은 큰 장점으로 보여짐

## □ 주요 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문제점	개선 의견
지역과수 산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지재배 비중이 95%가 넘고, 소규모 선과장의 산재로 규모화, 상품화가 미흡함.</li> <li>• 고품질 생산을 위해 만감류 및 하우스, 비가림 재배를 확대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고품질 생산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 못함.</li> <li>• 잦은 자연재해로 농가소득 불안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APC 건립의 철저한 관리로 완공시점의 지연을 방지해야 함.</li> <li>• 거점APC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농가조직화 및 참여조합의 역할 분담 체계 강화해야 함.</li> <li>• 품종갱신, 비가림시설 등 고품질 생산시설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 관리 강화해야 함.</li> <li>• 재해보험가입지원 등 소득 안정책 마련해야 함.</li> </ul>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APC 위주 자문으로 지역 감귤산업 및 FTA사업 전체에 대한 자문은 미흡함.</li> <li>•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참여조합간 역할분담 및 거점APC 운영체계 불명확함.</li> <li>• 참여조직 자체 협의가 미흡함.</li> <li>• 사업추진조직이 중앙회와 주관농협 직원으로 구성된 임의조직으로 불안정함.</li> <li>• '06년 법인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적 기표를 하지 않고, 거점APC 건립과 FTA자금 집행 업무만 수행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기구 운영 활성화. 지역과수 산업 전반, 거점APC 건립 및 운영 등 자문 범위 확대 필요</li> <li>•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참여조합간 역할분담 및 거점APC 운영체계 명확히 설정 필요함.</li> <li>• 거점APC 건립 이전이라도 유통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편제 확대 개편 필요.</li> <li>• 조합공동사업법인 직원구성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소속감, 책임감 강화가 필요하며, 농협중앙회는 지원업무 중심으로 역할 재편 필요함.</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월, 불용이 총사업비의 7%에 달함.</li> <li>•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해 도 차원의 점검 및 독려는 이루어졌으나, 자체 점검 및 독려는 미흡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월,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및 예산집행을 관리 강화</li> <li>• 정기적인 자체 점검을 통한 사업 추진 독려를 강화해야 함.</li> </ul>
주체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조합별로 출하약정 이행에 대한 관리 및 독려 미흡함.</li> <li>• 거점APC 활성화를 위한 참여조합별 농가조직화 교육 미흡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조합별로 출하약정 농가에 대한 관리 및 사업참여 독려 강화가 필요</li> <li>• 참여조합별로 공동선별·공동계산 조직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3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C+</b>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C+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B0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
	<b>집행단계 소계</b>	<b>50</b>	<b>C+</b>
집 행 단 계  I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b>14</b>	C0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B0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0.50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B0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B0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0.50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0.00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2.00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2.00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b>10</b>	C+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2.00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0.00	
③ 출하약정 주체	2	2.00	
④ 출하약정기간	1	1.00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 단 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F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0.00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1.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3	3.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B+
	① 예산집행률	10	8.99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C0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A0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C+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C+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0.06	
<b>성과단계 소계</b>		<b>40</b>	<b>B0</b>
성 과 단 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3	B0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22	C0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0.00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2.6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3.00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0.63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2.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B0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0.45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3.00
	⑨ 기타 사업실적	1	1.00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2	C+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2	C+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5	C+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51	
② 교육 횟수	1	1.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C+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D0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4.64	
	비계량	F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B0	

### 3. 평가항목별 의견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전문가 14명으로 구성. 3회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나, APC 건립관련 내용 위주로 FTA사업과 연계한 감귤산업 발전 및 육성 차원의 자문은 이루어지지 못함.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획단계 사업 수요 및 의견 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업 전반의 내실을 기해야 하며 특정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개별면담, 전화,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농가 의견수렴은 FTA사업 설명회 과정에서 1회 실시되었으나, '07년이 사업 첫해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농가의견수렴은 없음. '07년 연말에 농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향후 FTA사업과 감귤산업의 연계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자문과 농가 의견수렴 기획 확대 필요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제주도간 업무협약, 지역농협 간 업무협약은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안건도 FTA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우수함
- 특히, 도차원에서 수시 협의회 개최를 통해 FTA기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수함.
- 보다 실질적인 협력체제로 발전시켜 과수산업발전방향 및 공동마케팅사업에 대한 대안 제시 노력이 필요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07년 선정된 사업대상자로 해당사항 없음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집중 평가항목)

<기관별 역할분담도 표준(안)>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시·군	○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직	○	○	○	○	○	

● 책임기관 ○ 보조기관 ◎ 확인기관

<기관별 실 역할분담도 >

구 분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심사	지도·점검	1차정산	최종정산	기타( )
시·도						◎	
시·군	○	○	○	○			
읍·면	○	○					
사업시행주체	◎	◎	◎	◎	◎		
참여조합	○	○	○	○	○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전반적으로 각 업무별로 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조합, 제주도의 역할분담이 비교적 양호
- 그러나 사업시행주체와 참여조합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정산주체를 도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총괄적인 계획수립에서부터 집행까지 모든 업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시행주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참여조합,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조직간 협력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함.

#### ② 1,2순위 준수여부

- 1, 2순위를 구분하여 접수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점수를 차등하여 평가하고 있음

- 접수단계에서부터 공동선별·공동계산 및 장기출하계약 농가를 우대할 수 있도록 1, 2순위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출하약정기간, 간벌, 계약출하 실적, 동점자 처리 기준 등이 심사 기준표에 반영되어 있어 정책의 수용성, 규모화 촉진 분야의 심사표는 적정함
- 다만, GAP, 친환경 등 고품질 생산과 과목 수령, 전업농 등 장기영농의지 부문 지표는 미흡함.
- 각 지표를 고루 반영하여 계량화된 실적과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연동될 수 있는 심사표 개선이 필요함.

###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 1,465농가 선정에 386농가가 선정되어 농가선정율은 26%이며, 심사결과 점수대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심사표는 적정함.
- 동점자 처리기준도 공동선별·공동정산 약정량>간벌면적>계약출하량 순으로 되어 있어 적절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사업시행주체가 우선순위를 심사하여 12월 도로 제출하였으나 사업대상자 교부결정통보가 4월에 이루어져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에 상당히 지체됨.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년도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완료하고 교부결정, 선정통보 등 관련 행정절차를 조기(1월)에 진행하여 영농철 이전에 사업이 개시되도록 노력해야 함.

###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4월 보조금 교부 통보. 5월부터 미개시자 조사를 시작하여 7월('07. 7. 20) 종합실태조사 결과 통보 여부를 공문으로 확인하였음.
- 태풍 피해로 인한 미개시자 이외에는 직접 방문, 전화통화를 통해 사업 추진 독려. 또한 시공업체 회의를 통해 신속 시공 독려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 중도포기자에 대해서는 사업포기 확인서 징구하고, 향후 3년간 FTA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중도포기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신청시 농가들이 사업비, 실행 가능성 등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신청하도록 지도·지원 필요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 차순위자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고, 결원 발생시 차순위자를 추가 선정
- 향후 미지원 된 예비 대상자를 다음 연도에 우선 지원하여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 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단위 : 호, 톤, %)

구 분	① 약 정 농 가			② 약 정 물 량			③ 약 정 주 체	④ 약 정 기간(년)
	지원농가수 (A)	약정농가수 (B)	비율(%) (B/A)	약정농가 생산량(C)	약정물량 (D)	비율(%) (D/C)		
'07년	408	408	100	사업시기 미도래			조합공동법인 (지역조합병기)	5
계	408	408	100					

- 출하약정을 미체결시에는 사업신청에서 배제하고 있어 100% 출하약정을 체결하였음
- 사업 신청 시 출하약정을 의무화 하여 지원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하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약정서 상에는 80% 이상 약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약정농가 생산량과 약정물량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적을 제출하지 못함.

③ 출하약정 주체

- 약정주체는 사업시행주체인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역농협이 공동 체결하여 적정함.

#### ④ 출하약정기간

- 약정기간은 5년 이상으로 약정서에 명기하였음
- 향후 5년 이상 장기 출하약정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뿐 아니라 단순약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출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약정 불이행시 FTA관련 사업 3년간 지원 배제
- 약정 이행시에는 FTA사업 대상자 선정시 우선 순위 추천, 거점APC 완공시 정회원 가입, 공동선별비 차등 지원 추진
- 그러나 전반적으로 약정 이행여부에 대한 총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정 이행·불이행에 따른 조치사항은 형식에 그치고 있음.
- 지자체 및 사업시행주체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예산 및 제도를 통하여 출하약정 이행 및 위반 시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 패널티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

###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시행주체를 중심으로 지역수요가 많고, 공동 구매 효과가 큰 품목에 대해 일괄 구매를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행정에서 사업지침으로 시공업체 선정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해당업종 면허를 득하고 주사무소가 제주도내에 있는 업체에 한하여 사업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시달하였으나 지침에 의해 자격이 있지만 확인한 후 업체를 선정하였으므로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가 미흡함.
- 농가가 시공업체 선정시 유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협직원 입회하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사업비 절감을 위해 시공과 자재를 분리 계약하여 농가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 점은 매우 우수함.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비상발전기시설 단가조정을 위해 심의회 구성 및 단가조정 시행하여 우수함.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① 예산집행을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품종갱신등			50	50			50	50			100%
기타사업			14,044	14,044	1,134	4,250	7,685	13,069	799	176	93%
합계	0	0	14,094	14,094	1,134	4,250	7,735	13,119	799	176	%

기타 생산유통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생산기반조성											
거점APC		4,247		4,247			120	120	1,241		3%
과실브랜드											
합계	0	4,247	0	4,247	0	0	120	120	1,241		%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07년 예산집행을 89.9%(국고기준, 농식품부)로 다소 미흡함
- 향후에는 사업의 조기 확정 및 이월·불용 예산 발생 방지를 위해 사업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자체평가 및 사업대상자 교육을 3회 실시하고, 업체 간담회를 통해 태풍피해 조기 복구 및 사업추진 독려
- 상반기 자체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독려
- FTA사업에 대한 사전교육, 점검회의 강화, 현장확인, 미완료 농가 개별 방문 등 예산집행을 제고 노력 필요

### ③ 융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업종합자금지원시스템에서 사업대상 농가별로 융자 가능여부를 조회하여 행정예 사전 통보하고, 융자금 부족으로 제주도 전체 융자금 전배하여 사용하는 등 융자예산 집행을 제고 노력이 우수함

###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간별사업 참여농가 여부를 FTA사업 선정 기준에 높은 배점(9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토양피복 지원, 방풍망설치, 작업로설치, 에너지 절감형 공기팩 설치 사업 등은 간별사업 참여농가 우선 지원을 통해 FTA사업과 자체사업의 연계성 확보
- 시행주체가 실시하고 있는 자체사업과 FTA기금 지원사업을 동일하게 운용함으로써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과수 통합마케팅을 위한 체계적 사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07.7.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지적된 '계약전 공사시작으로 현지 점검 부실화 및 서류보완 지연' 사항에 대해 서류보완 및 준공검사 강화 조치 실시
- 보고서류 제출 지연(+0.06점) : 미체출 0건(0점), 지연일 49일(-0.49점), 조기일55일(+0.55점)
- 각종 행정 보고, 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업무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다. 성과단계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06.11.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등기 완료.



- 법인 구성은 대표이사(직무대행) 1명, 농협중앙회 2명, 지역농협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거점APC 건립 및 FTA사업 총괄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참여조합과 법인간에 물량 규모화를 위한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2006년				
2007년	사업시기 미도래			%
계				%

- 출하약정 실적과 실제 농가출하 실적에 대한 관리 부재로 실적과악이 안됨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 연합사업단 실적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13,184	15,065	14.3%	26,327	36,726	39.5%

- 연합사업단 실적은 전년 대비 물량은 14.3%, 금액은 39.5% 증가하여 우수하나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13,361	26,327	36,726	39.5%

- 연합사업단의 사업실적은 매년 100억원 정도씩 성장하고 있어 매우 우수하나 감귤생산액에 감안하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구 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 율(B/A)
실적(백만원)	36,726	633	2%

- 공동계산 실적은 전체 실적의 2%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함.
- 향후 공동선별·공동계산을 형식적인 우선순위 심사기준이 아닌, 실제 시행할 수 있는 적극적 사업추진 필요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 (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 (D-C)/C
281	904	222%	365	633	74%

- 공동계산 실적이 '06년에 비해서는 74%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체 사업실적에 비해서는 매우 미미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제주 연합사업단의 공동브랜드는 기존에 '한라라이'를 사용하다가 '햇살바람'을 새로 개발하고, 상표등록을 완료함
- 현재 연합사업단에서 출하되는 감귤 가운데 농협유통을 비롯한 대형유통업체에 출하되는 상품에 사용되고 있음.
- 향후 상품별, 품위별로 브랜드를 차별화하고, 품질관리 기준도 차별화하는 것이 과정이 필요함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브랜드 실적(B)	비율(B/A)
사업실적(백만원)	36,726	5,500	14.9%

- 공동브랜드 사용실적은 전체 실적의 14.9%로 낮은 편이므로 향후 공동브랜드 출하실적 확대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 (C-B)/B
조합원수(명)	-	10,638	13,139	23.5%

- 연합사업 참여한 조합원수가 김녕, 대정, 중문 농협의 신규참여로 23.5% 증가하여 매우 우수하나 정예농가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추가로 요구됨

### ⑨ 기타 사업실적

- 채소류 연합사업 실적이 25.0% 증가하여 우수하나 농업인의 비용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수행되어야 함

###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07.12. 사업참여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시행한 결과 사업홍보 강화, 서류 간소화, 자재값 상승분 반영 등의 요구사항을 파악
- 그러나 사업 만족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미흡함.
- 지역실정에 맞는 설문지 설계화 분석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시행 성과와 만족도를 파악하여 사업개선과 성과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07.6. 자체 사업평가 실시.
- 전반적으로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일부는 실행되지 못함. 특히 매월 사업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함.
- 행정, 시행주체, 참여조직이 공동으로 자체 평가회를 실시하여 계획, 집행, 성과 단계의 주요 지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도출과 사업 계획 반영 등으로 사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07년 8회 교육에 1,014명 참석. 기술교육, 정책방향, 브랜드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체계적 교육 실시.
- 농가조직화를 위해 FTA사업 대상자와 조직화대상 농가에 대한 보다 집중적, 체계적 교육을 운영해해야 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농식품부 발행 '감귤브랜드 경영지침서' 활용하고 있음.

- 감귤은 제주도 지역을 모델로 작성한 것이기는 하지만, 품질관리 뿐만 아니라 농가조직화, 홍보·마케팅 계획 등을 보완한 종합적인 브랜드관리 매뉴얼로 향상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연합사업단의 출하증가율이 39.5%, 총사업실적은 367억원으로 우수하며, 예산 조기 집행 실적도 인정됨

###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전반적으로 사업시행주체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은 FTA사업에 대한 전반전 추진 및 사업관리는 매우 우수하게 수행함.
- 그러나 출하약정 이행을 제고 노력, 참여조합과의 보다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거점APC의 안정적 운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52(1-04)

전국과실브랜드육성사업(전국)

지원품목	사과, 배, 감귤, 단감		선정년도	2007
사업주관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주체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참여시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득점현황	합계(100)		2등급	
	계획단계(10)		D+	
	집행단계(50)		C+	
	성과단계(40)		A0	

## 1. 총괄

### □ 사업체 일반현황

-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과수계 품목조합의 연합회로서 사과, 배, 감귤, 단감의 생산지도와 "썬플러스"공동브랜드판매, 자재공동구매 사업을 추진
- FTA기금 전국 과실브랜드 사업을 추진하여 '07년 1,258백만원을 1)브랜드 품질관리 2) 마케팅 운영 지원 3) 브랜드 홍보 지원 등 3개 부문에 투자
- "썬플러스" 브랜드 사업은 회원농가 운영과 선택적 고품질 출하 등 사업시스템을 확충하는 초기 단계로 이해됨

### □ 핵심성과

- 친환경기술지원단의 회원 지도와 출하를 직접 연계, 고품질 브랜드 상품 납품으로 가격차별화 성과
- 썬플러스 종합교실, 전산시스템 구축 등 농가 생산관리와 강화와 신규 포장 개발, 물류비 지원, TV홍보 등 공격적 마케팅 추진

### □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

- 농협법상의 품목조합 연합회이며 13개 과수 품목농협이 회원임.
- "썬플러스" 전국 브랜드와 참여조합 브랜드간 체계화가 필요함.

## □ 주요개선 내용 및 향후 과제

항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의견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썸플러스" 회원농가를 지정하고, 납품처의 사전 예약에 근거하여 일정 품위 이상 물량만 납품</li> <li>• 구분 선별, 벤더 중심 유통, 참여 조합 정산을 특징으로 함</li> <li>• 연합회와 참여조합간 브랜드 분리, 사업 분리가 일반적임 : 전국 브랜드로서의 사업 모델이 미확립 되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케팅 타겟과 사업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 기획이 수립되어야 함</li> <li>• 중간 벤더 중심 유통에서 탈피, 특화품의 대중 유통을 위한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해야 함</li> <li>• 전국 조직으로서 회원 조합과의 역할, 기능 분담 필요 : 농가 기반에서 조직 기반으로 전환, 브랜드 통합의 범위와 출하업무 담당 영역의 구분이 필요</li> <li>• APC 시설 활용과 브랜드 상품화 등 업무 체계화 추진 필요</li> </ul>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CF 및 라디오-CF 등 홍보부문에 675백만원(53.6%) 투입했으나 인지도 확대에 미흡</li> <li>• 홍보 업체 선정을 일괄 대행함으로써 효율성은 높였으나 주체 중심의 주도성이 약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전략과 결합된 예산 투자 기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효과성을 고려한 예산 투입 우선 순위 선정이 필요함</li> <li>• 일괄 대행 방식에서 탈피, 직접 우수 업체를 탐색하고 홍보 기획 의도가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함</li> </ul>
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기술지원단을 정점으로 하여 높은 현장 적용성을 보유</li> <li>• 브랜드화를 통한 유통관리 및 판매, 마케팅 추진 조직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기획, 참여 조직 조정 등 사업 추진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판매/마케팅 추진을 위한 내부조직 보강이 필요함</li> </ul>

##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획 단 계	<b>총 계</b>	<b>100</b>	<b>2등급</b>
	<b>계획단계 소계</b>	<b>10</b>	<b>D+</b>
	<b>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자문회의 실적, 농업인 의견수렴 실적(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의견 등)	4	D0
	<b>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b> * 평가대상 : '07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06년 하반기 이후 실적) ..... ◦ 광역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시군간 지원대상조직, 시군간 행정조직 회의·협의 등 실적 ..... ◦ 시군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조직과 행정조직간, 지원대상조직간 회의·협의 등 실적	3	D0
	<b>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b> ① '07년 연차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 등 개선 실적 * '07연차평가보고서상 미흡으로 평가한 내용	3	C+
집 행 단 계  I	<b>집행단계 소계</b>	<b>50</b>	<b>C+</b>
	<b>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b>	<b>14</b>	미적용
	① 지원대상자 접수·선정 및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추진 주체	2	미적용
	② 1, 2순위 준수여부	1	미적용
	③ 우선순위 심사표의 적정성	2	미적용
	④ 우선순위 심사의 적정성(심사표의 변별력 여부)	2	미적용
	⑤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2	미적용
	⑥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개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미적용
	⑦ 중도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2	미적용
	⑧ 예비대상자 선정 및 활용여부	2	미적용
	<b>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b>	<b>10</b>	C+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2	미적용	
② 출하약정 물량비율	2	미적용	
③ 출하약정 주체	2	1.50	
④ 출하약정기간	1	미적용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제재방법, 실적 등의 효과성에 따라 평가)	3	C+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집행단계 II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9	B+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1	미적용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역부	5	4.00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 여부	3	3.00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5	B+
	① 예산집행률	10	9.63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3	C+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2	미적용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2	미적용
	◦ 자체지원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내용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을시 고득점 부여)	2	미적용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감점	-3.00	
<b>성과단계 소계</b>		<b>40</b>	<b>A0</b>
성과단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사업단의 경우 : 법인화 추진 내용 및 현황(법인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 품목조합(단일법인) 등 기타의 경우 : 독립사업부서, 전담팀 구성 등 그 내용과 현황(독립부서, 팀구성, 실적 등 종합평가)	3	B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단순계통출하 실적 등은 제외 / *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선별포장 * 공동브랜드 사용 및 판매처 관리	22	B+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품목별, 시군별, 조직별로 실적 기재	3	미적용
	②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 실적, * 참여조직 전체 실적기준	3	3.00
	③ 사업시행주체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 과실, 과채류만 해당	3	2.80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기준)	2	2.00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및 금액기준)	2	2.00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2	B+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실적(금액기준)	3	3.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3	2.51
	⑨ 기타 사업실적	1	0.12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장치와 이를 통한 주요 애로사항, 민원 등 해결내용	2	C0
	3-4.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자체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 환류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내용	2	C+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사업시행주체가 실시한 교육에 한함	5	B+
	① 교육실시 연인원	1	0.00
② 교육 횟수	1	1.00	
③ 교육내용의 충실도	3	B0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3	C+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계량 비계량	2.47 C+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3	C+	



### 3. 평가항목별 의견

- ※ 주의 : 일반적인 FTA기금사업 연차평가와 달리, 시행 주체가 직접 수행하는 과실브랜드 육성사업만을 평가 대상으로 함으로 일부 지표는 미적용 하였음.

#### 가. 계획단계

##### 1-1. 사업계획 수립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과실브랜드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자문회의를 구성하지 않았으나, 컨설팅사업을 통하여 자문과 인지도 조사 등을 수행하였음.
- 의견 수렴은 농가대표 회의 및 워크숍을 통해 2회 실시하였고, 농가교육과정에서 사업설명을 실시하였으나 미흡.
- 전국 브랜드 육성 사업의 의미와 중장기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브랜드 사업의 실질적 성과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과 방향설정이 필요함.
- 특정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개별면담, 전화,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1-2.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브랜드육성사업을 위한 별도의 추진체계, 회원조직간 협의체계를 구축하지 않았으며 연합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출하유통협의회 등에서 전반적인 사업추진을 논의함.
- 본 사업은 전국단위로 상당한 자금이 투입되고, 브랜드 통합, 전략적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임. 참여조직의 의견 수렴, 시행 성과 모니터링, 방향 설정을 위한 협의 체계화가 필요함. 별도의 TFT를 구성하거나 실무협의체를 구축하여 보다 실질화 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1-3. 평가점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해당 없음. ('07년 신규사업)

## 나. 집행단계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는가?

- ※ 사업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체항목을 평가에서 제외함. (미적용)

### 2-2. 출하약정 체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확보하였는가?

- ※ "썬플러스" 회원농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제조건으로 참여조합에 생산량의 50% 출하약정을 의무화하고 있음.
- ※ 그러나 출하선택은 당년 작황과 상품성을 고려하여 기술지원단에서 일정 품위등급 이상의 농가들을 선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하약정 물량과 무관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
- ※ 출하약정을 정규화하고 참여 조직과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면 물량 확보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에 부정적 요인이 되므로 전반적인 사업 추진 방식의 재검토가 요망됨.

#### ① 출하약정여부 및 비율 ※ 평가에서 제외함 (미적용)

#### ② 출하약정물량 비율 ※ 평가에서 제외함 (미적용)

#### ③ 출하약정 주체

- 과수연합회가 아닌 소속조합(품목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함.
- 과수연합회의 "썬플러스" 브랜드사업은 소속조합과의 출하약정을 기반으로 "썬플러스 브랜드관리규약"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친환경기술지원단의 지도에 따르고, 일정 품위 이상에 도달한 농가만이 선택적으로 출하하는 방식임. 품위 미도달 상품은 소속조합 브랜드로 출하.
- 연합회와 소속 조합간 역할 배분, 마케팅 통합의 범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

#### ④ 출하약정기간 ※ 평가에서 제외함 (미적용)

- 회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약정 기간은 운용하지 않음.

⑤ 출하약정 이행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내용 또는 인센티브 및 그 실적

- 출하약정 불이행농가의 경우 브랜드 사용을 배제하고, 친환경기술지원단의 현장방문 지도에서 배제. (매년 1개농가 제재 사례가 있음.)
- "썬플러스 브랜드관리 규약", "친환경기술지원단 운영지침"에서 출하 불이행농가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하여 제도적 틀을 완성하였음.

2-3.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자재일괄구매, 업체선정 및 공지여부, 입찰시공, 단가조정 등)

① 자재일괄구매 여부 ※ 평가에서 제외함 (미적용)

②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공지여부 / ③ 적정 사업단가 검토 및 조정여부

- 선정과정 전체를 한국언론재단에 위탁하였으며, 공개프리젠테이션, 단가 검토 등을 위탁주체를 통해 시행하였음.
- 사업 초년도로서 인력 부족, 업체 정보 미흡 등 전문기관 위탁의 타당한 이유가 있으나, 직접 사업으로 전환하고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심사/선정이 바람직함 : 홍보 기획 의도 반영, 적합한 사업 파트너 탐색

2-4.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① 예산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계획액)				집행실적				이월	불용	집행률 (B/A)
	'05이월	'06이월	'07	계(A)	상반기	3/4	4/4	계(B)			
생산기반조성	-	-	-	0	-	-	-	0	-	-	0%
거점APC	-	-	-	0	-	-	-	0	-	-	0%
과실브랜드	-	-	1,107	1,107	52	285	729	1,066	-	41	96.3%
합계	0	0	1,107	1,107	52	285	729	1,066	0	41	96.3%

\* 시행주체가 제출한 위 자료와 농식품부 정산자료상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1억7백만원 예산 중 10억6천6백만원을 집행. 96.3%의 집행율로 비교적 양호. 그러나 4/4분기에 집행실적이 집중되어 있음. (7억2천9백만원)

- 브랜드 시스템 개발, 농가 지도, 홍보 등 전체적인 사업집행 스케줄을 작성하여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②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07.11.15. 자체 점검을 통해 예산항목을 조정함으로써 예산 집행 효율화를 추진하였음.
- 항목조정을 집행을 제고 노력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보다 세밀한 사전 기획과 효과성 있는 집행을 위한 사업 체계화가 필요함.

**③ 용자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여부 ※ 해당 없음 (미적용)**

2-5.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및 동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장치가 있는가? ※ 해당 없음 (미적용)

2-6.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지적사항 유무

- 농식품부 점검이 있었으며 자부담 우선 사용, 자체추진 계획 미수립, 취득기자재 사후관리대장 미비 등을 지적 받음.
- 대부분 '08년 사업을 통해 개선해야 할 내용임.

**다. 성과단계**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연합회에 "생산유통부"를 두어 기술지원단과 기획홍보팀을 운영하고 있음.
- 연합회의 고유기능으로 브랜드 사업 조직 구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술지원단 이외에는 시책 및 과제별 업무 분담 방식임. 브랜드 마케팅 추진을 위한 내부 조직 보강이 필요함.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① 출하약정 이행률 (출하약정물량 대비 약정농가 실출하량 비율) ※ 평가 제외 (미적용)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출하 약정량(A)	출 하 실 적		이 행 률 (B/A)
		출하량(B)	출하액(C)	
2005년	175	175	725	100.0
2006년	2,353	2,353	4,779	100.0
<b>2007년</b>	<b>4,057</b>	<b>4,057</b>	<b>9,328</b>	<b>100.0</b>
계	6,585	6,585	14,832	100.0

주. '출하량' 및 '출하액'은 '브랜드 출하량 및 출하액'임.

- '07년 출하농가는 780농가이며, 출하량은 4,057톤임. 이중 감귤(제주감귤농협 취급)이 3,384톤으로 83%를 차지하여 절대적인 비중임.
- 감귤의 경우 제주감귤농협의 불로초, 귤림원 등 자체 사업 성격이 강하고 사과 이외에는 기술지원단 활동이 미흡. 판매사업 실질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② 사업조직의 출하 증가율(물량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출하량 기준(톤)			출하금액 기준(백만원)		
'06출하량(A)	'07출하량(B)	증가율 (B-A)/A	'06출하액(C)	'07출하액(D)	증가율 (D-C)/C
2,353	4,057	72.4%	4,779	9,328	95.1%

#### ③ 사업조직의 총 사업실적(금액기준)

구 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07 증가율 (C-B)/B
사업실적(백만원)	725	4,779	9,328	95.1%

※ 사업조직 출하 물량, 금액은 소속 조합의 "썬플러스" 브랜드 출하실적을 집계한 것임. "썬플러스"는 고품위, 사전 예약을 특징으로 하고 고단가 수취가 이루어짐으로써 출하 농가 확대와 실적 확대가 달성된 것으로 이해.

④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금액 기준) / ⑤ 공동선별·공동계산 증가율(물량, 금액 모두 기재)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율(B/A)
실적(백만원)	9,328	9,328	100.0%

물량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06 실적(A)	'07 실적(B)	증가율(B-A)/A	'06 실적금액(C)	'07 실적금액(D)	증가율(D-C)/C
2,353	4,057	72.4%	4,779	9,328	95.1%

- "썬플러스" 출하는 APC입고 공동선별을 시행하며, 사전 예시가격에 따라 출하가격이 결정됨. (일반적인 의미의 사후적 공동계산과 다른 방식임.)

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실적 / ⑦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실적(금액기준)

- "썬플러스"는 '04년 개발하여 등록한 고유 상표로 사업 추진 방법에 따라 전량 브랜드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음.

구분	'07 전체 실적(A)	'07 공동선별·계산 실적(B)	비율(B/A)
실적(백만원)	9,328	9,328	100.0%

⑧ 유통사업 참여 조합원 증가율

연도	2005년말(A)	2006년말(B)	2007년말(C)	'07 증가율(C-B)/B
회원농가수(명)	250	668	780	16.8%

- 회원 농가의 지속적 확대 ('06년 1,541농가 → '07년 1,906농가)와 실제 브랜드 출하 농가의 증대는 성과 요소로 인정됨.
- 소득 향상 효과에 대한 검증으로 농가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참여조합과 효과적 역할 분담을 통한 회원농가 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함.

⑨ 기타 사업실적

- 연합회는 농약 및 유기복합비료 공동구매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농약은 2.3% 소폭 취급액이 증가하였으나 유기복합비료는 -12.6%로 취급액이 감소하였음.

###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썬플러스 시범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기술지원단 사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시행.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표시하였으나 설문내용이 추상적임.
- 현장방문 교육, 썬플러스 종합교실 등에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브랜드 출하 성과와 농가, 조직에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의견 수렴 활동이 필요함.

### 3-4.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과실브랜드 육성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회, 사업 실적 분석 등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음. 컨설팅사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로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에 반영하였음.
- 연차별 성과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특히 CF홍보 등 대중 홍보에 대한 성과 분석이 이루어져서 차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함.

### 3-5. 체계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친환경기술지원단의 현장지도를 다수 시행하였고, 연합회 본원적인 사업내용으로 이해됨.
- 체계적인 농가 교육은 "썬플러스 종합교실"로서 8차에 걸쳐 2,307명이 수강. 재배기술 관련 교육 이외에 브랜드, 마케팅, 인증 등 보다 체계적인 조직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3-6.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은 제작(보유)하였는가?

- 친환경기술지원단 현장교육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 농가가 이해하기 위한 브로셔 형태로 제작되었음.
- 매뉴얼의 업데이트 등 개정/향상 노력을 이루어지지 않았음.
- 고품질과실 브랜드 생산을 위해 실질적 품질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야 함.

3-7.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가?

- 출하실적 증가율 95.19%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 등 해외 상표등록 추진

3-8. 사업추진 충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 전국 조직으로서 사업 체계화에 약점을 가지고 있으나, 과수산업의 차별화, 선도적 사업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